

발간등록번호

11-1092000-000041-13

정부업무평가 백서

(2017~2021)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는 정부의 정책이 시대적 상황과 국민의 요구에 맞게 제대로 기획되었는지, 집행과정은 투명하고 효율적이었는지, 그 결과는 의도한 효과를 충분히 달성했는지를 객관적이고 엄밀하게 살펴보는 과정입니다. 또한 정부의 성과와 개선 필요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국정운영의 연속성과 다음 정부의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정부는 지난 1961년 심사분석제도를 도입한 이래 국내외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게 평가제도를 계속 보완해왔습니다. 또한 김대중 정부 이래로 매정부마다 '정부업무평가 백서'를 발간하여 누구나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2006년에 통합 국정평가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을 제정한 이후로는, 국정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체계적인 정부업무평가를 실시하여 이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문재인정부의 정부업무평가는 대통령 공약이 반영된 국정과제를 매년 평가하면서, 각 기관의 정책성과를 견인하고 미흡한 사항은 계속 보완함으로써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유사·중복적인 개별평가는 과감하게 정비하는 등 정부업무평가가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무엇보다 과거에 비해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고 부처간 조정과 협력이 필요한 정책사안이 늘어났기 때문에, 다수 부처가 관련된 정책이나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사안들에 정부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하여, 지난 5년간의 정부업무평가와 성과관리제도의 운영 결과를 소상하게 담은 정부업무평가 백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임시정부를 이끄시면서도 ‘답설야중거(踏雪野中去)’라는 서산대사의 시귀를 모범으로 삼으셨습니다. 문재인정부의 정부업무평가가 눈길 위의 발자국처럼 다음 정부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기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이번 백서가 앞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평가제도 운영에 도움이 되고, 국민들께도 정부업무평가제도를 이해하는 유용한 자료와 정보로써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2년 4월
국무총리

김부겸



통합적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제도가 2006년 4월 도입된 이후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진행된 통합적 성과관리는 국정운영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정부업무평가’란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시행하는 정책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입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5년 동안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정부업무평가의 기획·조정·총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으로서 각종 정부업무평가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였고,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중앙행정기관 대상 평가에서 특정평가 부문은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으로 대폭 간소화하였고, 전문가 평가단을 개편하고 국민만족도 비중을 강화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는 국정과제와 연계를 강화한 지표체계 개편,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의 전환 등 평가방식 개선, 국민관심도 제고를 위한 국민평가단 운영과 같은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공공기관 평가에서는 사회적 가치 중심의 평가체제를 구축하고, 수요자 맞춤형 평가로 전환하였으며, 과학기술계 연구기관의 안정적 중장기 연구활동을 위한 평가 이원화 등 개혁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부처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에서는 부처별 상위목표의 성과관리를 위한 전략목표별

성과지표를 신설하는 등 기관 전체의 업무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2020년 초 발생한 역사상 유례없는 코로나19 팬데믹은 2022년 상반기까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운영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초유의 재난 상황에 대처하여 중앙행정기관 대상 특정평가 등 각종 평가의 평가지표에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회복을 위한 기관별 성과를 비중있게 반영하였고,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물론 각종 평가활동에도 비대면 영상회의를 적극 활용하여 평가제도를 차질없이 운영하였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정부업무평가제도를 운영해온 경험을 토대로 향후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특정평가 대상 전환, 개별평가 관리강화, 정책분석 활성화, 기관별 상위목표 성과관리 강화, 자체평가 내실화 등 발전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정부업무평가제도 운영 및 평가결과에 관한 5년간의 기록은 학계의 귀중한 연구자료로 활용되고, 행정부처와 공공기관이 성과정보에 기반을 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운영과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정부업무평가위원들과 정부업무평가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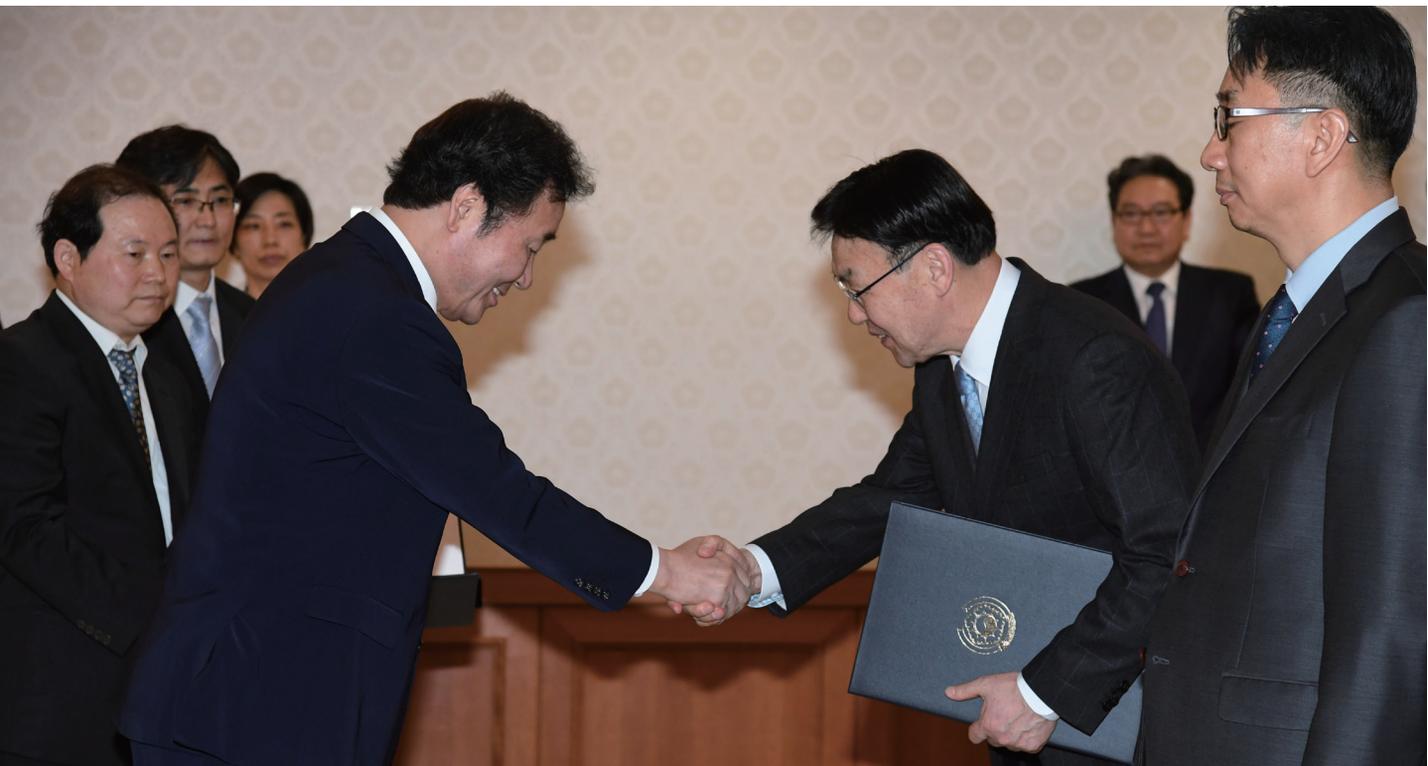
2022년 4월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장

심중근



“더 나은 정책, 더 나은 만족”



2018.4.2. 7기 정부업무평가위원 위촉식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정부업무평가를 통해
보다 나은 정책과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정책, 대한민국의 미래”



2022.4.27. 2021년도 정부업무평가 유공자 포상식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회의와 워크숍을 개최하여 정책개선사항을 연구하고, 정부업무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회의

2019년도 국정과제 평가지원단 워크숍

일시 2019. 8. 26.(월) 15:00~17:30 장소 더케이호텔 3층 거문고홀  국무조정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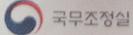
“행정의 효율성, 책임성 담보”



2022.2.18.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워크숍



2019년도 국정과제 평가지원단 워크숍

일시 2019. 8. 26.(월) 15:00~17:30 장소 더케이호텔 3층 거문고홀 



정부업무평가는 행정의 능률성, 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등
국정운영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1.1.26. 2020년도 우수기관 포상금 수여식

제1장 정부업무평가 개요

제1절 정부업무평가 체계	4
1. 기본개념	4
2. 목적 및 기본원칙	5
3. 추진체계	6
4. 정부업무평가 종류 및 절차	7
5. 정부업무평가 결과의 공개 및 활용	13
제2절 정부업무평가의 연혁 : 정부업무평가 60년사	14
1. 정부업무평가의 변천 개요	14
2. 정부업무평가 제도 및 추진체계의 변화	15

제2장 정부업무평가 운영 실적

제1절 중앙행정기관 평가	26
1. 특정평가	26
2. 자체평가	93
3. 개별평가	123
4. 정책분석	126
제2절 지방자치단체 평가	148
1. 개요	148
2. 평가 내용 및 추진성과	155
제3절 공공기관 평가	165
1. 개요	165
2. 운영 실적 및 성과	172

제3장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 실적

제1절 정부업무 성과관리 체계	188
1. 기본개념	188
2. 목적 및 기본원칙	189
3. 추진체계	191
4. 운영성과	194
제2절 정부업무 성과관리 연도별 주요내용	195

제4장 향후 발전방향

제1절 정부업무평가 발전방향	214
1. 중앙행정기관 평가 발전방향	214
2. 지방자치단체 평가 발전방향	215
3. 공공기관 평가 발전방향	217
제2절 정부업무 성과관리 발전방향	224

• 부 록 •

부록 1-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228
부록 1-2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241
부록 2-1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017~2019)	248
부록 2-2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020~2022)	260
부록 2-3	2017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270
부록 2-4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297
부록 2-5	2019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329
부록 2-6	2020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수정)	368
부록 2-7	2021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378
부록 3-1	2021년도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	403
부록 3-2	2018년도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자체평가계획 수립 결과	452
부록 3-3	2019년도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자체평가계획 수립 결과	471
부록 3-4	2020년도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자체평가계획 수립 결과	480
부록 3-5	2021년도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자체평가계획 수립 결과	493

부록 4-1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504
부록 4-2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개최일지	506
부록 5-1	2017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526
부록 5-2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608
부록 5-3	2019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671
부록 5-4	2020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732
부록 5-5	2021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782

표 목차

제1장

〈표 1-2-1〉 정부업무 평가제도의 변천 개요	14
〈표 1-2-2〉 정부업무평가 체계도	21

제2장

〈표 2-1-1〉 2017년도 국정과제 평가 대상기관	28
〈표 2-1-2〉 국정과제 체계도	29
〈표 2-1-3〉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목록	30
〈표 2-1-4〉 2017년도 국정과제 부문 평가항목	31
〈표 2-1-5〉 2017년도 국정과제 부문 평가결과	32
〈표 2-1-6〉 2017년도 일자리 창출 평가대상기관	33
〈표 2-1-7〉 2017년도 일자리 창출 부문 평가항목	33
〈표 2-1-8〉 2017년도 규제개혁 평가대상기관	35
〈표 2-1-9〉 2017년도 규제개혁 부문 평가항목	35
〈표 2-1-10〉 2017년도 규제개혁 부문 평가결과	36
〈표 2-1-11〉 2017년도 정책소통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37
〈표 2-1-12〉 2017년도 정책소통 기관별 평가결과	38
〈표 2-1-13〉 2017년도 국민만족도 부문 평가항목	39
〈표 2-1-14〉 2017년도 국민만족도 부문 평가결과	39
〈표 2-1-15〉 2017년도 현안관리 부문 평가항목	40
〈표 2-1-16〉 2017년도 현안관리 부문 평가결과	41
〈표 2-1-17〉 2017년도 갈등관리 부문 평가항목	41

〈표 2-1-18〉 2017년도 갈등관리 부문 평가결과	42
〈표 2-1-19〉 2017년도 인권개선 부문 평가항목	43
〈표 2-1-20〉 2017년도 인권개선 부문 평가결과	44
〈표 2-1-21〉 2017년도 특정시책 부문 평가항목	45
〈표 2-1-22〉 2017년도 기관종합평가 결과	46
〈표 2-1-23〉 2018년도 일자리·국정과제 부문 평가항목	46
〈표 2-1-24〉 2018년도 국민만족도 조사결과	47
〈표 2-1-25〉 2018년도 일자리·국정과제 부문 평가결과	48
〈표 2-1-26〉 2018년도 규제혁신 평가 대상기관	49
〈표 2-1-27〉 2018년도 규제혁신 부문 평가항목	50
〈표 2-1-28〉 2018년도 규제혁신 부문 평가결과	51
〈표 2-1-29〉 2018년도 정부혁신 부문 평가항목	52
〈표 2-1-30〉 2018년도 정부혁신 부문 평가결과	53
〈표 2-1-31〉 2018년도 정책소통 부문 평가항목	54
〈표 2-1-32〉 2018년도 정책소통 부문 평과결과	55
〈표 2-1-33〉 2018년도 소통만족도 부문 평가항목	56
〈표 2-1-34〉 2018년도 소통만족도 부문 평가결과	57
〈표 2-1-35〉 2018년도 지시이행 부문 평가항목	57
〈표 2-1-36〉 2018년도 지시이행 부문 평가결과	58
〈표 2-1-37〉 2018년도 기관종합평가 결과	59
〈표 2-1-38〉 2019년도 일자리·국정과제 부문 평가항목	60
〈표 2-1-39〉 2019년도 국민만족도 조사결과	61
〈표 2-1-40〉 2019년도 일자리·국정과제 부문 평가결과	62
〈표 2-1-41〉 2019년도 규제혁신 평가 대상기관	63

TABLE OF CONTENTS

표 목차

〈표 2-1-42〉 2019년도 규제혁신 부문 평가항목	63
〈표 2-1-43〉 2019년도 규제혁신 부문 평가결과	64
〈표 2-1-44〉 2019년도 정부혁신 부문 평가항목	65
〈표 2-1-45〉 2019년도 정부혁신 부문 평가결과	66
〈표 2-1-46〉 2019년도 정책소통 부문 평가항목	67
〈표 2-1-47〉 2019년도 정책소통 부문 평가결과	68
〈표 2-1-48〉 2019년도 지시이행 부문 평가항목	69
〈표 2-1-49〉 2019년도 지시이행 부문 평가결과	69
〈표 2-1-50〉 2019년도 기관종합평가 결과	70
〈표 2-1-51〉 2020년도 일자리·국정과제 부문 평가항목	71
〈표 2-1-52〉 2020년도 국민만족도 조사결과	72
〈표 2-1-53〉 2020년도 일자리·국정과제 부문 평가결과	73
〈표 2-1-54〉 2020년도 규제혁신 평가 대상기관	74
〈표 2-1-55〉 2020년도 규제혁신 부문 평가항목	74
〈표 2-1-56〉 2020년도 규제혁신 부문 평가결과	75
〈표 2-1-57〉 2020년도 정부혁신 부문 평가항목	76
〈표 2-1-58〉 2020년도 정부혁신 부문 평가결과	77
〈표 2-1-59〉 2020년도 정책소통 부문 평가항목	78
〈표 2-1-60〉 2020년도 정책소통 부문 평가결과	79
〈표 2-1-61〉 2020년도 기관종합평가 결과	80
〈표 2-1-62〉 2021년도 일자리·국정과제 평가대상기관	81
〈표 2-1-63〉 2021년도 일자리·국정과제 부문 평가항목	81
〈표 2-1-64〉 2021년도 국민만족도 조사결과	82
〈표 2-1-65〉 2021년도 일자리·국정과제 부문 평가결과	83

〈표 2-1-66〉 2021년도 규제혁신 평가대상기관	84
〈표 2-1-67〉 2021년도 규제혁신 부문 평가항목	84
〈표 2-1-68〉 2021년도 규제혁신 부문 평가결과	86
〈표 2-1-69〉 2021년도 정부혁신 부문 평가항목	87
〈표 2-1-70〉 2021년도 정부혁신 부문 평가결과	87
〈표 2-1-71〉 2021년도 정책소통 부문 평가항목	88
〈표 2-1-72〉 2021년도 정책소통 부문 평가결과	89
〈표 2-1-73〉 2021년도 적극행정 부문 평가항목	90
〈표 2-1-74〉 2021년도 적극행정 부문 평가결과	91
〈표 2-1-75〉 2021년도 기관종합평가 결과	92
〈표 2-1-76〉 자체평가 부문 변동 현황	94
〈표 2-1-77〉 2018년도 재정사업 자율 평가결과	100
〈표 2-1-78〉 2018년도 R&D사업 부문 평가대상	101
〈표 2-1-79〉 2019년도 재정사업 자율 평가결과	106
〈표 2-1-80〉 2019년도 R&D사업 부문 평가대상	107
〈표 2-1-81〉 2020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112
〈표 2-1-82〉 2020년도 R&D사업 평가대상	113
〈표 2-1-83〉 2021년도 R&D사업 평가대상	119
〈표 2-2-1〉 지방자치단체 대상 평가 종류	149
〈표 2-2-2〉 합동평가 흐름도(2018년 이후부터)	152
〈표 2-2-3〉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교부 내역('17~'21년)	153
〈표 2-2-4〉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유공자 포상 현황	153
〈표 2-2-5〉 연도별 컨설팅 실시내역('11~'20년)	154
〈표 2-2-6〉 온라인 합동평가시스템(VPS) 구성도	163

TABLE OF CONTENTS

표 목차

〈표 2-3-1〉 개별 법률에 의한 평가대상 공공기관(2021년 기준)	166
〈표 2-3-2〉 개별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평가 절차	167
〈표 2-3-3〉 2022년도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평가급 지급률	172
〈표 2-3-4〉 자산운용평가 대상기금	175
〈표 2-3-5〉 존치평가 대상기금	175
〈표 2-3-6〉 연기금 투자폴 예탁 현황	176
〈표 2-3-7〉 자산운용 결과	176
〈표 2-3-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체계	177
〈표 2-3-9〉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결과	179
〈표 2-3-10〉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평가유형(2022년 기준)	183
〈표 2-3-11〉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 평가결과	184

제3장

〈표 3-1-1〉 정부업무 성과관리체계도	191
〈표 3-1-2〉 정부업무 성과관리 추진체계도	192
〈표 3-2-1〉 2017년도 성과관리계획 수립 현황	196
〈표 3-2-2〉 연도별 계획 현황 비교	197
〈표 3-2-3〉 2017년도 성과관리 운영실태 점검항목 및 배점	197
〈표 3-2-4〉 2018년도 성과관리계획 수립 현황	199
〈표 3-2-5〉 연도별 계획 현황 비교	200
〈표 3-2-6〉 2018년도 성과관리 운영실태 점검항목 및 배점	201
〈표 3-2-7〉 2019년도 성과관리계획 수립 현황	203
〈표 3-2-8〉 2019년도 성과관리계획 지표 현황	203

〈표 3-2-9〉 2019년도 성과관리 운영실태 점검항목 및 배점	204
〈표 3-2-10〉 2020년도 성과관리계획 수립 현황	206
〈표 3-2-11〉 2020년도 성과관리계획 지표 현황	207
〈표 3-2-12〉 2020년도 성과관리 운영실태 점검항목 및 배점	208
〈표 3-2-13〉 2021년도 성과관리계획 수립 현황	210
〈표 3-2-14〉 2021년도 성과관리계획 지표 현황	210
〈표 3-2-15〉 2021년도 성과관리 운영실태 점검항목 및 배점	211

제4장

〈표 4-1-1〉 지방공기업경영평가시스템(EMS) 경영평가체계 구성도	223
--	-----

제1장

정부업무평가 개요

제1절 정부업무평가 체계

1. 기본개념	4
2. 목적 및 기본원칙	5
3. 추진체계	6
4. 정부업무평가 종류 및 절차	7
5. 정부업무평가 결과의 공개 및 활용	13

제2절 정부업무평가의 연혁 : 정부업무평가 60년사

1. 정부업무평가의 변천 개요	14
2. 정부업무평가 제도 및 추진체계의 변화	15

제1절 정부업무평가 체계

1. 기본개념

정부업무평가란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행하는 정책 등을 평정하는 것이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은 제2조 제1호에서 “평가라 함은 일정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정책·사업·업무 등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어서 제2조 제2호는 정부업무평가를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관·법인 또는 단체가 행하는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이라 정의한다. 종합하면 정부업무평가란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행하는 정책·사업·업무 등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이라 표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책집행과정은 ‘계획-집행-평가’의 단계를 의미하며, 정부업무평가는 그 중 마지막 단계로서, 집행된 정책이 당초 설정한 목표나 효과를 달성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는지 등을 분석하고 평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업무평가는 정책추진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후적 점검이라는 점에서 감사원 감사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감사가 준사법적 행위로서 업무추진의 합법성과 책무성 확보에 중점을 두는 데 비해, 정부업무평가는 정부 정책의 성과와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부업무평가는 평가 대상과 평가 주체 등 수행 방식에 따라 ‘특정평가’, ‘자체평가’ 등으로 나뉜다.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법령

또는 정부업무평가지행계획 등에서 정한 일정 범위의 정책 등을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시행하는 평가를 말하며, '자체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 등에 대해 일정 절차를 거쳐 스스로 수행하는 평가를 의미한다.

2. 목적 및 기본원칙

정부업무평가는 정책의 품질을 제고하여 국민의 정책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통합적 정부업무평가제도를 구축함으로써 평가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자율성, 독립성, 객관성, 전문성, 참여기회 보장'을 기본원칙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가. 목 적

정부업무평가는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 확보를 통해 정책 등의 품질을 제고하여 국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관련 시책, 주요 현안시책, 혁신관리 등에 대한 '특정평가'를 실시한다.

이와 더불어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체평가'를 통해 해당 기관이 수행하는 정책 및 사업 등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스스로 평가함으로써 자체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나. 기본 원칙

정부업무평가는 통합적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3조에 의하면 각 중앙행정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평가는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평가는 이 법에 따라 통합해서 실시해야 한다. 정부는 평가의 통합적 실시를 위해 평가시기를 가급적 일원화하고 평가대상을 조정하는 한편, 평가지표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7조는 평가의 자율성, 독립성, 객관성, 전문성, 참여기회 보장 등을 평가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시하는 평가는 각 기관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의 객관성,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 등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아울러 평가대상이 되는 정책 관련자가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평가의 공정성 및 수용성을 제고시키고 있다.

3. 추진체계

가. 국무총리

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특정평가를 시행한다.

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을 설정하는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국무총리는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필요한 정책등에 대한 특정평가를 실시한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결과를 확인·점검하여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에 있어 문제가 있을 경우,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그 밖에 평가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도개선방안 강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업무평가의 기획·조정·총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정부업무평가의 실시와 평가기반 구축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다. 국무총리 및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한 자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있으며,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15인 이내로 구성된다. 정부위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대상 자체평가의 각 부문을 주관하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의 장을 위원으로 하고 있으며, 민간위원은 대학,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대상이 되는 평가결과 또는 업무에 관여하는 등의 이유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제척 또는 회피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정부업무평가의 기획·조정·총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증장기 평가기반 구축·추진에 관한 사항,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정부업무평가제도와 관련된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평가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평가관련 기관 간 협조 및 평가업무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 자체평가 및 특정평가의 운영과 개선 등에 관련된 사항 등을 그 심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 평가총괄 관련기관

평가총괄 관련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자체 평가 결과의 확인 및 점검을 시행한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 부문별 총괄 관련 중앙행정기관에 대해 자체평가 결과의 확인 및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현재 자체평가는 주요정책, 재정사업, 조직·정보화, 인사 등 4대 부문으로 구분되며, 각 부문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은¹⁾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한 자체평가 결과의 객관성 및 공정성 등에 대해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게 된다.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확인·점검 시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평가총괄 관련기관에 대해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평가총괄 관련기관은 부문별 평가지침 및 평가지표의 작성, 자체평가 결과의 확인·점검 및 재평가 실시여부 등 자체평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정부업무평가 종류 및 절차

가. 중앙행정기관 평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는 국무총리가 실시하는 특정평가와 해당기관이 스스로 실시하는 자체평가로 크게 구분된다. 또한 각 기관에서 개별 법률에 의해 평가하는 개별 평가가 있다.

1) 주요정책부문(국무조정실), 재정사업부문(기획재정부), 조직·정보화부문(행정안전부), 인사부문(인사혁신처)

1) 특정평가

(1) 개요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실시하는 하향적 평가라는 점에서 기관이 스스로를 평가하는 자체평가와 구분된다.

특정평가는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관련 시책, 주요 정책, 혁신관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부문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은 대상부문을 각 중앙행정기관이 공통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시책으로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부문,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국가의 주요 사업으로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부문, 기관 또는 정책 등의 추진에 대한 국민 만족도를 측정하는 부문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그 밖에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평가 필요성이 인정되는 부문도 특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체적인 평가대상은 매년 초에 수립되는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을 통해 확정·공개된다.

(2) 절차

특정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당해연도 특정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특정평가의 대상·방법·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정평가의 시행에 앞서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지표 등을 마련하여 이를 평가대상기관에 통보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특정평가의 대상기관은 부문별로 평가실시에 필요한 실적자료 등을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평가를 실시하며, 국민만족도 조사의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이때 특정평가를 위해 국무총리는 대상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평가업무 수행자로 하여금 특정평가 대상기관을 방문하여 평가에 관한 자료를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각 부문별 특정평가 결과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국무총리는 특정평가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 후 이를 평가대상기관에 통보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2) 자체평가

(1) 개요

‘자체평가’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은 평가의 자율성 보장 및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위해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업무평가지행계획을 기초로 하여 자체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사업, 업무 등을 스스로 선정하되, 기관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필수적 정책,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 자체평가 결과와 조직·예산 등 성과관리를 위한 연계가 필요한 정책 등을 포함하여 평가대상을 선정한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평가의 실시를 위해 평가 담당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자체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원의 2/3 이상을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2) 절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업무평가지행계획에 기초하여 당해 기관의 자체평가 대상 및 구체적인 평가방법,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4월 말까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제출된 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계획의 보완 또는 자료의 추가 제출이 필요할 경우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자체평가는 평가실시 시점을 기준으로 전년도에 추진된 정책 및 사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각 중앙행정기관은 전년도 정책 및 사업 등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매년 3월 말까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고,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자체평가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해 확인·점검을 실시한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확인·점검 결과 자체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최종 심의·의결을 통해 각 기관의 자체평가결과는 최종 확정된다. 그러나 확인·점검 결과 평가결과의 객관성·공정성에 있어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평가결과를 확정한다.

3) 개별평가

(1) 개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중앙행정기관이 다른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평가는 통합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업무 특성·평가시기 등으로 인해 통합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개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절차

평가주체는 평가대상 업무를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며, 평가주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평가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평가주관 중앙행정기관은 평가계획을 평가대상기관에 통보하고 각 평가절차에 따라 평가를 시행하며, 그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 평가

지방자치단체 대상 평가는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평가인 합동평가와 개별평가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자체평가로 구분된다.

1)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평가

(1) 개요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평가는 ‘합동평가’와 ‘개별평가’가 있다. 합동평가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국고보조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의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실시된다.

개별평가는 업무의 특성·평가 시기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평가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협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개별적으로 실시한다.

(2) 절차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하여 합동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 및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동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합동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안전부 소속하에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별평가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이 직접 평가를 실시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합동·개별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평가 결과를 지체없이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제출토록 규정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객관성·공정성의 검증 및 통합적인 평가추진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2)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1) 개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소관사무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대상 기관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모두 포함한다. 평가대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정책 및 사업 전반이며,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및 업무 등도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2) 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기초하여 소관 정책 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자체평가 계획에는 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② 당해연도 주요 정책 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 ③ 자체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④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⑤ 자체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⑥ 자체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기반의 구축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다. 공공기관 평가

공공기관 평가는 '개별 법률에 의한 평가'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업무평가 위원회와 협의하여 실시하는 평가'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다.

1) 개별 법률에 의한 평가

(1) 개요

개별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평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에서 평가대상 기관을 명시하고 있으며, 개별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평가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한 공공기관 평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절차

공공기관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은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그 평가계획을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제출된 평가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은 개별 법률 등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평가

(1) 개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상이 아닌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절차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2조 제3항에 의해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공공기관 평가의 경우에도 평가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평가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은 개별 법률 등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정부업무평가 결과의 공개 및 활용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평가결과는 공개한다. 또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기관장은 평가결과를 조직·예산·인사 및 보수체계에 반영한다.

가. 평가결과의 공개 및 보고

정부업무평가는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평가결과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각종 평가결과는 평가 실시주체가 전자통합평가시스템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국무총리는 각종 평가결과를 종합한 평가결과보고서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거나 별도의 평가보고회를 개최해야 하며,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자체평가결과를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나. 평가결과와 예산·인사 등의 연계 및 후속조치

정부업무평가결과의 환류를 위해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조직·예산·인사 및 보수체계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사례로 인정되는 소속부서·기관 및 조직구성원에 대해서는 포상, 성과급 등 경제적 인센티브 및 인사상의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고, 우수기관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표창수여 및 포상금 지급을 통해 정책의 성과제고 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은 평가 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정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정부업무평가의 연혁 : 정부업무평가 60년사

1. 정부업무평가의 변천 개요

정부업무평가는 2006년 4월에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 제정·시행되면서 통합 평가제도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1년 5·16 직후 공공분야에 심사분석제도가 도입된 이래 심사분석, 심사평가, 정책평가, 국정평가 및 기관평가 등이 유사하지만 다양한 개념과 형태로 정부업무평가를 실시하여 왔다.

우리나라의 정부업무평가제도는 2006년 4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통합 정부업무평가제도가 도입된 이후를 통합단계로 보고, 크게 5단계(도입, 과도, 재정비, 개편, 통합)로 구분하고 있다.

〈표 1-2-1〉 정부업무 평가제도의 변천 개요

단계 내용	도 입	과 도		재 정 비	개 편	통 합
담당 기관	기획조정실	경제기획원	행정조정실	행정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시기	'61.9~ '81.10	'81.11~ '90.3	'90.4~ '94.12	'94.12~ '98.2	'98.3~ '06.3	'06.4~ 현재
평가 제도	심사분석		정책평가	심사평가	기관평가	통합평가
내용	5·16직후 1961년 정부부문에 최초로 심사분석제도를 도입하여 기획조정실에서 정부정책의 평가기능을 수행	1981년에 심사분석 업무를 경제기획원 심사평가국으로 이관	행정조정실에 정책평가기능 신설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경제기획의 심사분석업무와 행정조정실의 정책평가업무를 통합하여 심사평가기능 수행 - 정부투자기관평가는 경제기획원에서 계속 수행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심사평가제도를 대폭 개편하여 「기관평가제도」 도입	참여정부 출범 이후 통합적 정부업무평가 제도 및 성과관리제도 도입 추진
근거	정부기획및심사 분석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6143호 '72.4)	정부가획및심사 분석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0821호 '82.5)	정부주요정책평가 및조정에관한규정 (총리령 제364호 '90.4)	정부업무의심사평가 및조정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4531호 '95.2)	정부업무등의 평가에관한기본법 (법률제6347호 '01.1.8)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법률제7928호 '06.4.1)

2. 정부업무평가 제도 및 추진체계의 변화

1) 기획조정실의 심사분석제도 : '61. 9. ~ '81.10.

기획조정실의 심사평가제도는 1961년 5.16 직후, 국가·경제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었다.

정부업무에 대한 평가라는 개념이 우리 정부에 처음 도입된 시기로 당시 내각수반(現 국무총리) 기획조정실의 심사분석이라는 업무로 추진되었다. 5·16 직후인 1961년에 정부부문에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 기능이 「정부조직법」 상 최초로 신설되면서 기능이 경제기획원으로 이관될 때까지 국무총리 기획조정실에서 심사분석 업무를 담당하였다.

- 1961년 9월 내각수반 하에 내각기획통제관실을 신설하고 최초로 심사분석제도를 도입하여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기능 수행
- 매년 정부업무 전반에 관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집행결과에 대하여 분석·평가 실시
- 평가 교수단 등을 활용하여 예산사업 중심으로 사업추진 관련 진도분석,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중심의 '과정평가' 기능 수행(「정부의 기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947호)
- 동 평가제도는 1981년 제5공화국 출범 후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 시 그 기능을 경제기획원에 이관하고 폐지('81.11)

2) 경제기획원 심사분석제도 및 행정조정실 정책평가제도 : '81.11. ~ '94.12.

경제기획원의 심사분석('81.11~'94.12)과 행정조정실(現 국무조정실)의 정책평가('90. 4~ '94.12)로 평가가 이원화되어 실시된 과도기 단계이다.

1981년부터 1994년까지 경제기획원은 각 기관의 주요업무 전반에 대한 심사분석을 실시하였고, 1990년부터 행정조정실은 각 기관의 핵심시책에 대한 「정책평가제도」를 별도로 도입하여 운영하였다.

먼저, 경제기획원의 심사분석은 원칙적으로 정부활동 전반을 평가대상으로 하며, 정부에서 추진하는 어떠한 시책이나 사업에 대하여도 심사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대통령의 지시에 의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어 심사분석을 실시한 경우에는 심사분석 결과는 수시로 대통령에게 보고 되었다.

심사분석 결과는 「정부의기획및심사분석에관한규정」에 의거, 경제기획원 장관(지방의 경우 내무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시정을 요하는 예산사항에 대해서는 경제기획원 장관이 예산편성 또는 분기별 예산배정에 반영토록 배치하며, 비 예산사항에 대하여는 국무총리를 통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였다. 시정을 요구받은 기관장은 지체없이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경제기획원 장관(지방의 경우, 내무부 장관)에게 통보하였다.

■ 경제기획원에 의한 심사분석

- 1981년 심사분석업무를 경제기획원 심사분석국으로 이관
- 기관업무에 대한 심사분석은 기관 자율로 수행하도록 하고, 기획원은 각 기관의 심사분석결과를 종합·조정하는 데 주력
- 사업진도 위주의 분석 및 공기업 등 투자기관의 경영평가에 역점

반면, 행정조정실의 정책평가제도는 경제기획원의 심사분석 제도가 전체 정부 차원의 국정흐름을 진단하기에 한계를 갖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점검·평가·조정을 통해 국무총리의 내각통할 기능을 강화하여 대통령에 대한 보좌기능을 수행하고자 도입되었다.

총리령(제364호)으로 「정부주요정책평가및조정에관한규정」이 공포('90.4.16)됨에 따라 행정조정실에 평가기능이 신설되었다. 당시 행정조정실의 정책평가는 각 기관의 자체평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상위평가를 실시하는 종합평가 형태를 취하였다. 상위평가는 기관별로 1~2개 특정정책의 추진상황에 초점을 둔 실적평가 중심으로 시행되었다. 평가절차는 총리실에서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된 정책 평가를 위해 「평가지침」을 각 기관에 시달(정책평가심의관실 주관)하면, 각 기관은 평가지침에 근거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총리실에 제출하고, 총리실은 기관 자체평가를 토대로 종합조정평가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종합조정평가는 10개 항목으로 구성된 “점검리스트(세부실천계획 포함)”에 대한 사실 검증으로, 정책평가심의관실은 각 평가반의 평가결과를 사항별로 종합조정하기 위하여 「평가조정회의」를 운영(행정조정실장 주재)하였고, 기관별 과제에 대한 「평가조정회의」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 하였다.

평가 결과는 제도보완, 예산의 효율적 활용, 포상제도 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독려·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었고, 차년도 각 기관 업무계획에도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중·장기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다.

-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의 정책평가
 - 범정부적 차원의 국정흐름을 진단하는 데 한계를 지닌 경제기획원의 심사분석제도를 보완하고, 총리의 내각통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행정조정실에 정책평가기능을 신설(「정부 주요정책평가 및 조정에 관한 규정」, 총리령 제364호, 1990. 4)
 - 주요 국정현안과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각 기관이 추진 중인 시책들을 분석·평가하고 정책목표 달성여부를 점검(연 2회 정책평가보고회)
 - 평가대상정책의 적합성, 시의성, 정책추진의 효과성·능률성, 국민 만족도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 각 기관 자체평가를 연 2회 보고하고, 총리실의 종합조정평가(자문회의의 활용) 실시
 - 상반기에는 국무회의 보고(7~8월), 하반기에는 연말 국무회의 및 대통령 (국정평가에 포함) 보고

※ 심사분석과 정책평가의 기능 비교

- 정책평가는 국정전반에 걸친 주요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발굴하여 해당 기관의 차기 업무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 제고 도모
- 심사분석은 개별 단위사업 및 예산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진도와 부진원인을 분석하여 해당사업의 합리적 추진을 도모
- 양 제도는 대상과제의 선정기준과 평가목적에서 차이점이 있었으나, 정책추진의 합리성이라는 측면에서 상호보완성을 가짐

3) 행정조정실의 심사평가제도 : '94.12. ~ '98. 2.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경제기획원의 심사분석업무와 행정조정실의 정책평가업무를 통합했다. 이에 따라 행정조정실에서 심사평가를 종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1994년 이전의 정책평가는 각 기관의 자체평가 자료를 기초로 한 상위평가 방식으로 실시됨에 따라, 평가가 단기적이고 외형적이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었다. 이에 1994년 12월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종래 경제기획원의 심사분석업무와 행정조정실의 정책평가업무를 통합한 행정조정실의 심사평가제도가 시행되었다.

심사평가제도에서는 정기 심사평가와 함께 수시 심사평가가 실시되었다. 정기 심사평가는 업무 추진 성과에 대한 집중분석 실시 시 전체적인 사업목적이나 취지 등을 감안하여 실질적인 내용의 달성 여부와 당초 기대하였던 정책효과 달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평가하였다.

수시 심사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중 국무총리가 국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실시하였다. 주로 현장중심의 구체적 사례분석의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현지 확인·점검을 통해 문제해결 위주의 심사평가를 실시하고, 신속한 대응방안을 강구하였다.

정기 심사평가 실시결과는 반기별로 국무회의에 보고하였으며 수시 심사평가결과에 대해서도 수시로 차관회의 등에 상정하였다. 특히 심사평가결과 및 시정조치이행상황에 대해서는 「정책평가보고대회」 등의 형식으로 별도로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한편 분석·평가 결과를 집행과정 및 향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토록 하였는데, 예산반영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반영하였으며, 기관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관리하고, 이행상황을 국무회의에 보고하는 등 평가결과의 환류를 강화하였다.

-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경제기획원의 심사분석업무와 총리실의 정책평가업무를 통합하여 심사평가기능을 수행(「정부업무의 심사평가 및 조정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431호, '94. 12.)
- 다만,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평가는 경제기획원에서 계속 수행
- 정부시책 및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 정부시책의 책임성 확보가 목적
- 당해연도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주요시책에 대한 '정기평가'와 국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한 '수시평가'로 구분

4) 국무조정실의 기관평가 : '98. 2. ~ '06. 3.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심사평가제도를 대폭 개편하여 '기관평가 제도'를 도입했다. 행정조정실이 국무조정실로 격상되면서 관련업무의 중요도도 높아졌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된 국무조정실에서 심사평가('98. 3~'06.3) 기능을 강화한 시기를 정부업무평가 제도의 개편 단계라 할 수 있다.

1997년 말 국민의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책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심사평가제도가 대폭 개편되어 이른바 '기관평가제도'가 도입되었다.

기존의 「정부업무의심사평가및조정예관한규정」을 전부개정(대통령령 제15774호, '98.4.15)하면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기관평가의 실시근거를 마련하였다.

기관평가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업무의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이를 추진하는 행정체제의 추진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분석·평가하는 것으로, 이전의 실적중심 평가에서 기관간 경쟁요인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기관평가의 총괄적 주관은 국무조정실이 담당하며, 심사평가조정관 밑에 심사평가1심의관실과 심사평가2심의관실을 두었다.

정부업무평가의 전문성, 객관성을 제고하고 평가제도 발전을 위하여 1998년 4월에 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의 각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정책평가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자문기구로 출범하였으며, 2001년 5월에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시행 이후 심의기구로 변화되었다.

-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 제정·운영
 - 정부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에 대한 평가근거 마련 등을 통해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통합성 도모
 - 평가대상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

정부업무 등에 관한 평가의 종류에는 기관평가와 특정과제평가, 자체평가, 지방자치단체평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평가가 있다.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미흡 사항은 개선조치토록 하여 사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개선조치 이행상황은 상·하반기 정기평가 시 점검하였다.

5) 통합 정부업무평가 : '06. 4. ~ 현재

참여정부 출범 이후 통합적 정부업무평가제도 및 성과관리 제도가 도입되었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통합적 평가활동을 진행하였다.

현재의 정부업무평가 체계는 2006년에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확립되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종전의 평가에 대해 개별·중복적인 평가로 인한 평가업무의 과중, 자체평가제도의 형식적 운영, 평가결과의 활용 미흡 그리고 평가와 성과관리의 연계 미흡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획기적 개편을 추진하였다. 이에 기존의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을 대체하는 「국정평가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 2006년 3월에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06년 4월부터 통합 정부업무평가제도를 도입·시행하게 되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은 그간 개별적·중복적으로 실시되던 각종 평가의 통합실시를 규정함으로써 평가대상기관의 부담을 경감하고, 자체평가 중심의 평가를 통해 자율적 정책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평가결과를 예산, 조직 및 인사관리 등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그간 제기되어온 정부업무평가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였다.

중전의 정책평가위원회는 정부업무평가 관련 사항에 대한 최종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로 개편되었다.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행정안전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국무조정실장이 정부위원으로 참여하며,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총 15인 이내로 구성된다.

2007년도까지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산하에 실무위원회(정부업무평가위원회 업무 지원을 위해 국무조정실 차장 및 정부업무평가위원 중 민간위원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전문가, 국무조정실 소속 1급 등 25인)를 두었으나, 2008년도부터는 폐지되고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직접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조정되었다.

국무조정실 내 정부업무평가실은 간사기관으로서 정부업무평가에 대한 총괄·지원 기능을 담당한다. 즉, 매년도 정부업무평가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업무평가기준 및 평가지표 설정, 평가대상 확정 등 평가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2010년도 이전에는 심사평가조정관실이 간사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이후 정책분석평가실, 다음은 정부업무평가실로 직제가 개편되었다.

평가결과는 전자통합평가시스템(e-IPSES)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되어야 하며 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거나, 평가보고회를 개최하고, 특정평가결과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한다.

또한 평가결과에 따라 승진·채용·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 및 개인별 성과관리에 반영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은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현재 정부업무평가 체계도는 아래와 같다.

〈표 1-2-2〉 정부업무평가 체계도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적용대상 평가

대상	평가유형	평가부문	근거법률	평가주관	
중앙 행정 기관	특정평가 (45개)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정부업무평가법	국조실 등	
	자체평가 (46개) * 45+국조실	주요정책(성과관리)		정부업무평가법	국조실
		재정 사업	일반재정사업	국가재정법	문체부
			R&D평가	연구성과평가법	과기정통부
			재난안전	재난안전법	행안부
행정 관리 역량	균형발전	국가균형발전법	균형위		
	조직	정부업무평가법	행안부		
	인사		인사처		
	정보화		행안부		
	개별평가	개별근거법률	주관부처		
지방 자치 단체	합동평가	25개 기관, 116개 지표	정부업무평가법	행안부 등	
	자체평가	중앙행정기관과 동일	정부업무평가법	지자체장	
	개별평가		개별근거법률	주관부처	
공공 기관	공기업(36개) 준정부기관(96개)		공공기관운영법	기재부	
	기금(준치평가 24개, 자산운용평가 45개)		국가재정법	기재부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47개)	과기연 소관(25개)	과학기술기본법 과기출연기관법	과기연 과기정통부 해수부 원안위 방사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16개)			
		해양수산부 산하(3개)			
원안위 산하(2개)					
	방사청 산하(1개)				
경제·인문사회분야 연구기관(26개)		정부출연기관법	경인사연		
지방공기업(241개)		지방공기업법	행안부		

가. 중앙행정기관 평가

현재 국무조정실을 제외한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로 특정평가, 자체평가, 개별평가로 구분된다.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통해 직접 평가를 실시하는 반면, 자체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이 주요정책, 재정사업, 행정관리역량 등에 대해 스스로 평가한다. 개별평가는 각 기관이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이외의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의미한다.

- 특정평가 : 국무총리는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필요한 정책 등을 특정평가의 형태로 평가한다. 주로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관련 시책, 주요 현안시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부문에 대하여 직접 평가를 실시하며, 2021년도의 경우는 4개 부문과 1개 가점 분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 자체평가 : 주요정책, 재정사업, 행정관리역량 등 3개 영역으로 구분되며, 각 기관은 부문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개별평가 : 원칙적으로 평가시기·절차 등의 통합실시가 원칙이나 업무의 특성·평가시기 등으로 인하여 평가의 통합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 별도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017년 이전까지는 중앙행정기관 대상 개별평가가 부재하였으나, 2016년말 개별평가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7년도부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전반적인 개별평가 정비를 추진하였다.

나. 지방자치단체 평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는 자체평가와 중앙행정기관 위임사무 평가인 합동평가와 개별평가로 구분된다.

자체평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유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민간인이 2/3 이상으로 구성되는 자체평가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합동평가는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중앙행정기관(행정안전부 주관)이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며, 합동평가가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개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 공공기관 평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의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소관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및 업무의 능률성 등에 대해 평가하며, 평가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외부의 기관에서 평가를 실시한다.

제2장

정부업무평가 운영 실적

제1절 중앙행정기관 평가

1. 특정평가	26
2. 자체평가	93
3. 개별평가	123
4. 정책분석	126

제2절 지방자치단체 평가

1. 개요	148
2. 평가 내용 및 추진성과	155

제3절 공공기관 평가

1. 개요	165
2. 운영 실적 및 성과	172

제1절 중앙행정기관 평가

1. 특정평가

가. 개요

1) 개념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국정외 통합적 관리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필요한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 제4호). 특정평가는 국무총리에 의한 하향식 평가라는 점에서 중앙행정기관 스스로 평가하는 자체평가와 구별된다.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관련 시책, 주요 현안시책, 혁신관리, 기관 또는 정책 등의 추진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부문 등이 대상이 되며, 매년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을 통해 평가대상 등이 확정된다.

2) 연도별 평가부문(괄호 안은 비중)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 국정과제(50)	1. 일자리·국정과제(65)	1. 일자리·국정과제(65)	1. 일자리·국정과제(65)	1. 일자리·국정과제(65)
2. 일자리 창출(20)	*정책만족도(5점) 포함	*정책만족도(5점) 포함	*정책만족도(5점) 포함	*정책만족도(5점) 포함
3. 규제개혁(10)	2. 규제혁신(10)	2. 규제혁신(10)	2. 규제혁신(10)	2. 규제혁신(10)
4. 정책소통(10)	3. 정부혁신(10)	3. 정부혁신(10)	3. 정부혁신(10)	3. 정부혁신(10)
5. 국민만족도(10)	4. 정책소통(10)	4. 정책소통(15)	4. 정책소통(15)	4. 정책소통(15)
6. 기관공통사항(±10)	5. 소통만족도(5)	*소통만족도(5점) 포함	*소통만족도(5점) 포함	*소통만족도(5점) 포함
· 현안관리(±3)	6. 지시이행 가감점(±3)	5. 지시이행 가감점(±3)		5. 적극행정 가점(+3)
· 갈등관리(±3)				
· 인권개선(±2)				
· 특정시책(±2)				

3) 특징

2013년도부터 이어진 국정과제 중심 기관종합평가 체계의 큰 틀은 2021년도까지 유지되었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중요성이 크게 확대된 일자리 창출이 특정평가에 추가로 반영되었다. 2017년도에는 일자리 창출이 별도 부문으로 신설되었으나, 2018년도부터는 국정과제 부문과 통합하여 일자리·국정과제 부문으로 변경되었다.

2018년도부터는 정부혁신 부문이 신설되어 매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의 이행과제를 중심으로 기관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평가 부문이 대체로 간소화되어 왔다. 2017년도에는 단독평가 대상이었던 국민만족도 부문이 이후 일자리·국정과제 부문(정책만족도), 정책소통 부문(소통만족도)으로 통합되었다. 가감점 부문의 경우, 2017년도의 기관공통사항 4개 항목이 삭제되고, 2021년도에는 1개 항목(적극행정)만 평가되었다.

나. 연도별 평가내용 및 결과

1) 2017년

새 정부 출범 첫 해 국정과제와 일자리 창출 노력에 최우선 비중을 두고, 규제개혁, 정책소통, 국민만족도 부문과 현안관리·인권개선·갈등관리 등을 포함한 기관공통사항을 평가하였다.

(1) 국정과제

① 개요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이행과 성과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2013년도부터 국정과제를 대상으로 특정평가가 시작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에는 새롭게 선정된 100대 국정과제에 대한 기관별 이행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고, 환류를 통해 정책 추동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② 대상

43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3개, 차관급 20개)의 국정과제 이행노력과 성과를 평가하였다. 주

관 국정과제가 1개 이하인 21개 기관은 국정과제와 관련된 주요정책을 선정(37개 과제)하여 평가하였다.

〈표 2-1-1〉 2017년도 국정과제 평가 대상기관

구 분	기 관 명 (직제순)
장관급 (23개)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차관급 (20개)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해양경찰청, 원자력안전위원회

2017년 8월 발표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① 국민이 주인인 정부, ② 더불어 잘사는 경제, ③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④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의 5대 국정목표,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20대 국정전략과 100대 국정과제로 구성되었다.

〈표 2-1-2〉 국정과제 체계도

국가비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5대 국정목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0대 국정전략	1. 국민주권의 쏠쏠 민주주의 실현 2.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3.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4.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2.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3.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4.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5.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1.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3.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4.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5. 자유와 창의를 넘치는 문화국가	1.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2.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3.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1.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2.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3.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100대 국정과제 (528개 실천과제)	15개 과제 (74개 실천과제)	26개 과제 (151개 실천과제)	32개 과제 (170개 실천과제)	11개 과제 (57개 실천과제)	16개 과제 (76개 실천과제)

※ 2017년 8월 100대 국정과제 확정 당시에는 실천과제가 487개였으나, 이후 수차례의 조정·보완을 거치면서 실천과제의 수가 528개로 늘어났다.

〈표 2-1-3〉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목록

	국정과제 (주관기관)
국민이 주인인 정부	■ 전략 1 :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
	1 적폐의 철저하고 안전한 청산 (법무부)
	2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권익위·법무부)
	3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 (행안부)
	4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 (권익위)
	■ 전략 2 :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5 365일 국민과 소통하는 광화문 대통령 (행안부)
	6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법무부·행안부·인권위)
	7 국민주권적 개헌 및 국민참여 개헌(국조실)
	■ 전략 3 :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8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행안부)
	9 적재적소,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인사처)
	10 해외 체류 국민 보호 강화 및 재외동포 지원 확대 (외교부)
	11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 (보훈처)
	12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기재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 전략 4 :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3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법무부·경찰청·감사원·국정원)
	14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경찰청)
	15 과세형평 제고 및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 (기재부)
	■ 전략 1 :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16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고용부)
	17 생활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복지부)
	18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고용부)
	19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 (고용부)
	20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혁신 (기재부)
	2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기계부채 위험 해소 (금융위)
	22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금융위)
	■ 전략 2 :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23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금융위)
	24 개별 중소기업 지원 방식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 (공정위)
25 공정거래 감시 역량 및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공정위)	
26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재부)	
27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중기부)	
■ 전략 3 :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28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 (중기부)	
29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 (금융위)	
30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국조실)	
31 교통·통신비 절감으로 국민 생활비 경감 (국토부·과기정통부)	
32 국가기간교통망 공공성 강화 및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강화 (국토부)	
■ 전략 4 :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33 소프트웨어 강국, ICT 리테상으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과기정통부)	
34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산업부·과기정통부·국토부·복지부·기재부)	
35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과기정통부)	
36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으로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 (과기정통부)	
37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 (산업부)	
38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경제의 활력 회복 (산업부)	
■ 전략 5 :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39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 (중기부)	
40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 환경 구축 (중기부)	
41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축소 등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중기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 전략 1 :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42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복지부)
	43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복지부)
	4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복지부)
	45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복지부)
	46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 (국토부)
	47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국토부)
	■ 전략 2 :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48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복지부)
	49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교육부)

	국정과제 (주관기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0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교육부)
	51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교육부)
	52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교육부)
	53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여가부)
	54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교육부)
	■ 전략 3 :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55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계 구축 (행안부)
	56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 (행안부)
	57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환경부·식약처)
	58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환경부)
	59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환경부)
	60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 (산업부·원안위)
	61 신기후체제에 대한 건설한 이행체계 구축(환경부)
	62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 (해수부)
	■ 전략 4 :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없는 공정사회
63 노동존중 사회 실현 (고용부)	
64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고용부)	
65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 (여가부)	
66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여가부)	
■ 전략 5 : 자유와 창의를 넘치는 문화국가	
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공정위)	
68 창작 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문화부)	
69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 확산 (문화부)	
70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방송위)	
71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 (고용부)	
72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 (문화부)	
73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 (문화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 전략 1 :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74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 (행안부)
	75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행안부·기재부)
	76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교육부)
	77 세종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행안부)
	■ 전략 2 :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78 전 지역에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산업부·국토부·행안부)
	79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 (국토부)
	80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 (해수부)
	■ 전략 3 :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81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농식품부)
	82 농업인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농식품부)
	83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농식품부)
	84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해수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85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 (국방부)	
86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략적 조기 전환 (국방부)	
87 국방개혁 및 국방 문화의 강력한 추진 (국방부)	
88 방산비리 척결과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 (국방부·방사청)	
89 장병 인권 보장 및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 (국방부)	
■ 전략 2 :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90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통일부)	
91 남북기본합정 체결 및 남북관계 재정립 (통일부)	
92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통일부)	
93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통일부)	
94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연합 추진 (통일부)	
95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외교부)	
■ 전략 3 : 국제협력에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96 국민외교 및 공공외교를 통한 국익 증진 (외교부)	
97 주변 4국과의 당당한 협력외교 추진 (외교부)	
98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외교부)	
99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 (외교부)	
100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산업부)	

③ 방법

정부 출범 첫해인 점을 감안하여 각 기관의 정책추진 노력을 우선시하였다.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업무평가위원을 중심으로 민간전문가와 정책수요자가 참여하는 437명 규모의 '국정과제 평가지원단'을 구성하였다. 평가지원단은 10개 분과로 구성되어, 분과별로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하였다.

〈표 2-1-4〉 2017년도 국정과제 부문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지표	비중
정책추진 노력	과제 추진계획을 충실히 수립하고, 이에 따라 차질 없이 이행했는지 여부	40
성과지표 달성도	사전에 제시된 성과지표 목표치를 달성하였는지 여부	30
정책효과	성과지표로 측정할 수 없는 정책성과를 종합적으로 판단	30

④ 성과지표 선정

국정과제 추진성과 제고 및 국민체감도 향상을 위해 과제별로 성과지표를 선정하였다. 2017년 7월부터 각 기관이 제출한 국정과제 성과지표(안)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공동으로 '성과지표 자문단'을 구성하여 지표의 적합성, 타당성, 목표치의 구체성 등을 검토하고 보완하였다.

2017년 8월 이후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국정과제 537개, 주요정책과제 156개 지표를 확정하였다. 특히, 국민 관심도가 높고 국정과제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사항 등은 과제를 대표하는 핵심지표(175개)로 선정하여, 집중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⑤ 결과

적폐청산·반부패 개혁 추진과 함께 신고리 원전 공론화 등 국민참여 확대를 통해 국정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일자리 추경,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일자리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을 본격 추진하고, 4차산업혁명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한 점이 성과로 제시되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주거복지로드맵 등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포용적 복지기반을 구축하고,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아동수당 도입 등 교육·보육에서의 국가 책임이 강화된 점도 성과였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한미동맹·국제사회 공조 강화, 정상외교를 통한 주변 4국과의 관계 복원, 신북방·신남방 정책 등 외교 다변화 추진도 주요 성과로 꼽혔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과거사 문제 해결, 부패방지 추진기반 강화 등 개혁과제 이행을 위한 주요 입법이 일부 지연되었고, 국민소득·경제성장률 등 거시 경제지표의 호전에도 불

구하고 청년실업과 가계부채 부담이 증가하는 등 내수·고용 시장에서의 체감경기 회복은 더디다고 평가되었다.

또한 화재·해상사고 등으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사고예방·현장대응체계와 생활 속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하된 점도 미흡한 점으로 평가되었다.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됨에 따라 한반도 안보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한계도 제기되었다.

2017년도에는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에 대하여 각각 우수, 보통, 미흡기관 비중을 30%, 50%, 20%로 설정하고, 장관급 상위 6개 기관, 차관급 상위 6개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하였다. 장관급 기관 중에서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차관급 기관 중에서는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산림청, 특허청, 새만금개발청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표 2-1-5〉 2017년도 국정과제 부문 평가결과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우수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산림청, 특허청, 새만금개발청
보통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세청, 병무청, 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미흡	통일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민권익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위사업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2) 일자리 창출

① 개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일자리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으로 추진됨에 따라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특정평가 내에 일자리 창출 부문이 신설되었다.

② 대상

43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3개, 차관급 20개)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로드맵」 이행을 위한 기관별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일자리 창출 추진 성과를 종합 평가하였다. 일자리 관련성, 기관 규모 등을 고려하여 3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표 2-1-6〉 2017년도 일자리 창출 평가대상기관

구분		기관명
장관급 (23개)	일자리창출 중점(13개)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인프라·여건 개선 중점 (10개)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환경부, 국가보훈처,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차관급 (20개)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해양경찰청, 원자력안전위원회

③ 방법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자리위원회가 추천한 민간전문가와 정부업무평가 위원 등이 참여한 ‘일자리 창출 평가지원단’을 구성하였다. 기관별 일자리 과제에 대해 정책이행-목표달성-정책효과를 평가하고, 기관의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일자리 정책 이행노력을 평가하였다. 또한 기관별 우수사례 등을 가점항목으로 포함하여 평가하였다.

〈표 2-1-7〉 2017년도 일자리 창출 부문 평가항목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비중
일자리과제	정책이행	추진계획 이행도	30
	목표달성	성과지표 달성도	20
	정책효과	성과지표 외 성과 및 경제·사회적 기대효과	20
공통지표	일자리창출 및 질 개선	근무실태 개선(초과근무 단축, 연가활성화)	20
		일자리 나누기(총액인건비제도 활용 신규채용)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력	
	일자리정책 이행노력	전담조직 운영 및 협업	10
일자리 정책·성과 홍보			
가점	기관 자율 제출 우수사례		+5

④ 결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 기관의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 창출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일자리 관련 정책과 제도를 재설계하였다.

공공일자리 측면에서는 현장민생공무원 1만여 명 충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1.1만 개 확충으로 민간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공공부문 6만 9천여 명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여 공공부문이 모범적인 고용문화 확산을 선도하였다는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ICT 융합산업, 5G 등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고, 벤처펀드 확대·사내 벤처 촉진 등 혁신형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점도 성과로 제시되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가족친화기업인증 등 청년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여건을 대폭 개선한 점, 신중년, 노인 등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늘려 사회안전망을 강화한 점도 성과로 꼽혔다.

다만,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제한적이었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시장 차별해소를 위한 정책에 대해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발생하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 또한, 청년구직촉진수당 지급 등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 해소가 여전히 더딘 점도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되었다.

(3) 규제개혁

① 개요

2017년도 규제개혁 평가는 민생부담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앙행정기관의 규제개혁 노력 및 성과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특히 신산업 분야 네거티브 규제전환 노력도와 일자리 창출 규제개선 성과를 점검하여 주요 과제를 평가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규제 개혁신문고 건의 등을 포함한 현장·수요자 중심의 규제애로 개선과 규제개혁 만족도도 평가의 주요 항목에 포함되었다.

② 대상

규제개혁 평가는 정부업무평가 대상기관 중 기관별 규제정비계획상 정비과제가 3개 이하인 기관(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세청, 통계청, 방위사업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해양경찰청, 원자력안전위원회) 14개를 제외한 29개 중

양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29개 기관을 장관급 기관(19개)과 차관급 기관(10개)으로 구분하였으며, 과제 성격·기관특성 등을 기준으로 하여 5개 분과(경제1·2, 사회1·2, 일자리 창출 규제개선)로 나누어 평가를 진행하였다.

〈표 2-1-8〉 2017년도 규제개혁 평가대상기관

구분	기관명
장관급 (19개)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차관급 (10개)	관세청, 조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병무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③ 방법

평가항목은 크게 규제개선 60%, 규제심사 25%, 체감도 15%로 구성하였으며, 규제개선 항목에 규제개선과제 정비 성과, 신산업 관련 과제 정비, 일자리 창출 규제개선 성과 등 중점 추진 항목이 포함되었다. 규제심사 항목에는 절차 준수도 및 일몰규제 정비·규제등록 실적이 포함되었고, 체감도 점검을 위해 규제개혁 만족도와 국민소통 실적에 대해서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규제개혁 추진에 현장·수요자의 입장을 반영하고, 평가의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관합동 규제개혁 평가지원단'을 구성·운영하였으며, 규제개혁 만족도는 전문리서치 기관을 활용하였다.

〈표 2-1-9〉 2017년도 규제개혁 부문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지표
규제개선 (60)	규제개선과제 정비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개혁과제 정비 실적(민생부담 해소 등) • 규제개혁신문고 건의 처리 실적 • 지방규제 정비(인허가제도 합리화 포함) • 현장 규제애로 개선 실적
	신산업 관련 과제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산업 규제애로 건의 수용·이행 실적 • 네거티브 규제전환 노력도
	일자리 창출 규제개선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개선 성과 및 제도보완·개선계획
규제심사 (25)	규제심사절차 준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심사절차 준수 및 영향분석 등
	일몰규제 정비 및 규제등록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검토행 일몰규제 정비 및 규제등록 실적
규제개혁 체감도 (15)	규제개혁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
	규제개혁 국민소통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개혁 관련 언론소통·현장행보 등
기타(+3)	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개혁 교육 참여도 및 활성화 노력

④ 결과

2017년도 규제개혁은 신산업 분야의 속도감 있는 발전을 위해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을 중점 추진하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도입하는 한편, 현장의 규제애로를 발굴·혁파하여 제도 및 과제 개선을 병행 추진하였다.

또한, 생활 속의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여 국민생활 안정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국민과 중소기업의 대표적인 불편·부담 사항으로 인식되는 행정조사를 「행정조사기본법」 제정(2007) 이후 처음으로 전수 점검·정비하였고, 불합리한 지역규제를 혁파하여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법령·절차 등을 지역 현실에 맞게 개선하였다.

현장·수요자 중심의 규제혁파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 국무총리 주제로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 대화’를 2번 개최하였고, 규제개혁신문고 및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을 통해 다양한 현장 규제애로를 발굴·혁파하여 규제개혁의 국민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2017년도 기관별 평가결과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오던 공통과제를 준수하게 이행하고 2017년도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한 네거티브 규제전환 등에서 성과가 큰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평가되었다.

장관급 기관에서는 네거티브 규제전환 등 신산업 관련 기반 조성(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등), 국민생활 밀접 규제혁파(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농림축산식품부)를 추진한 기관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차관급 기관에서는 산림이용 규제 완화로 국민 불편해소와 기업활동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산림청), 식품·의료기기 분야 네거티브 규제전환 추진으로 신기술의 신속한 시장출시에 기여한 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 지식재산 업체 진입 규제개선 등으로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한 기관(특허청)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상대적으로 기관 공통과제에 대한 이행도 등이 저조하고, 규제개혁 건의에 대한 수용률이 낮은 기관이 미흡한 기관으로 평가되었다. 장관급 기관으로는 교육부, 여성가족부, 금융위원회가, 차관급 기관으로는 병무청, 소방청이 미흡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표 2-1-10〉 2017년도 규제개혁 부문 평가결과

구 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우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림청, 특허청
보통	기획재정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조달청, 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미흡	교육부, 여성가족부, 금융위원회	병무청, 소방청

(3) 정책소통

① 개요

2017년도부터 정책홍보에서 정책소통 평가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와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소통 노력 및 성과를 평가하여 정책 및 정책성과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과 체감 확산을 도모하였다. 평가점수는 특정평가에 10점으로 반영되었으며, 소통만족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고 민간 전문조사기관이 설문조사한 결과로 국민만족도 부문에 포함되어 5점으로 반영되었다.

② 대상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하였다.

③ 방법

분야별 민간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 등으로 ‘민관합동 정책소통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평가지표의 특성에 따라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병행 활용하였으며 월별, 분기와 반기별 등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연말 종합 평가에 반영하였다.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는 다음과 같다.

〈표 2-1-11〉 2017년도 정책소통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정책소통 활동 (31점)	• 정책소통 기획 실적	7
	• 기관 간 정책소통 협업 실적	16
	• 정례브리핑 및 언론 반영 실적	8
정책소통 성과 (69점)	• 방송·신문 보도성과 * 외신 반영 실적	13 (±2)
	• 기관 정책소통 활동성과	16
	• 온라인 정책소통 활동성과 * 온라인 홍보체계 강화 노력	40 (+1)
	기관의 쉽고 바른 보도자료 사례 평가	±2

④ 결과

새 정부 국정기조와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제고하고자 일자리 정책·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등 국정과제,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계부채 등 정책 현안과 평창동계올림픽 붐업에 범부처 협력 홍보를 추진하였다. 정책홍보전략회의(차관급)를 신설하여 정책과 홍보를 연계한 효율적 협업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광화문 1번가’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등 국민 목소리를 듣는 새로운 정책소통방식이 제시되었다.

아울러, 누리소통망(SNS) 온라인 중계와 정책질의·제안 관련 의견수렴 및 참여형 이벤트 등 온라인 소통 강화를 통해 대국민 직접 소통과 쌍방향 소통이 확대되었다.

다만, 청년·주부 등 다양한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콘텐츠 제작과 매체 활용 전략이 필요하며 위기관리 소통 노력과 누리소통망(SNS) 등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온라인 정책소통 전문성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기관별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1-12〉 2017년도 정책소통 기관별 평가결과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우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경찰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보통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국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문화재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미흡	통일부, 법무부, 국가보훈처, 방송통신위원회	법제처, 방위사업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4) 국민만족도

① 개요

일반국민(11,000명) 및 정책수혜자(6,050명) 총 17,050명을 대상으로 국정과제(100개) 및 주요 정책과제(37개) 국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의 별도 평가부문으로 반영(10점)하였다.

② 대상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하였다.

③ 방법

항목별 만족도(적극성, 민주성, 대응성, 효과성), 체감만족도, 인지도, 만족/불만족 사유 등을 조사하고, 종합만족도를 산출하였다.

〈표 2-1-13〉 2017년도 국민만족도 부문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정책 만족도	민주성	• 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국민 의견 수렴 정도	5
	적극성	• 정책목표 달성에 대한 기관 노력도	
	대응성	•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상황변화 및 문제점에 대한 대응의 적절성	
	효과성	• 정책 추진으로 달성된 성과의 정도	
	체감만족도	• 국정과제에 대한 종합적인 만족도	
소통 만족도	정책소통 프로그램	• 정책소통 프로그램 인지도 및 접촉빈도	5
		• 정책소통 프로그램 적합성	
	정책소통 효과	• 정책소통 만족도 • 정책에 대한 수용도	

③ 결과

조사결과, 정책만족도는 4.63점(7점 만점)으로, ‘보통(4점) 이상’의 만족 수준이었다. 건강보험 부담, 예방접종 등 의료·복지정책과 주거 정책 등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반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예술인 복지 지원 등 중소기업·문화·교육 관련 정책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소통만족도는 60.7점(100점 만점)으로, ‘보통(50점) 이상’의 만족 수준이었다. 의료·안전 분야의 소통만족도가 평균대비(60.7점) 높은 반면, 남북관계·방위산업 분야는 해당 정책의 소통활동을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소통만족도가 낮은 편이었다.

조사대상별로 보면, 일반국민은 4.66점, 정책수요자는 4.34점으로 산출되어, 임기 초에는 정책 수요자보다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가 더 우수하게 도출되었다.

〈표 2-1-14〉 2017년도 국민만족도 부문 평가결과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우수	법무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소방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보통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 병무청, 문화재청, 특허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미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인사혁신처, 조달청, 방위사업청, 새만금개발청

(5) 기관공통사항

(가) 현안관리

① 개요

각 중앙행정기관이 대통령 지시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관련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기관 공통사항으로 현안관리 가감점 평가를 실시하였다.

② 대상

43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3개, 차관급 20개)을 대상으로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지시사항 중 기관별 추진계획이 수립된 지시사항 총 192건에 대한 이행상황을 평가하였다.

③ 방법

각 지시사항별로 평가지표에 따라 정성·정량평가를 하여 가감점을 부여, 기관별로 산술 평균 하였다. 구체적인 평가지표는 다음과 같다.

〈표 2-1-15〉 2017년도 현안관리 부문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3)
계획수립 적절성	• 지시취지 부합 여부, 내용 충실성 등	0~3
집행 이행도	• 추진계획에서 제시한 목표 달성여부	(-)2~0
시스템 활용도	• 추진계획 및 실적의 기한내 등록 여부 등	(-)1~0

④ 결과

각 중앙행정기관이 대통령 지시사항을 원활히 추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가습기 살균제 정부 책임 인정 및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 세월호 기간제 교사 신속 순직 인정 등을 이행하여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국정철학이 착근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방역 종합대책,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척결, 공관병 갑질 행태 근절방안 등 국민적 관심이 큰 현안을 범부처가 협업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고 평가받았다.

다만, 비혼모 출산 보호 대책 등 여러 기관이 관련된 일부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기관 간 협조가

부족하여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주관기관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종합적·체계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여 책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평가되었다.

〈표 2-1-16〉 2017년도 현안관리 부문 평가결과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우수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통계청, 경찰청, 산림청
보통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조달청, 병무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특허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해양경찰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미흡	통일부, 보건복지부	방위사업청, 소방청

(나) 갈등관리

① 개요

공공부문 갈등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갈등 관리실태 점검·평가를 통해 중앙행정 기관이 갈등을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갈등관리 평가가 실시되었다.

② 대상

43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3개, 차관급 20개)을 대상으로 정책 또는 국책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해소 노력을 평가하였다.

③ 방법

객관적·전문적 평가를 위해 ‘민관합동평가단’을 구성·운영하였다. 평가단은 기관 특성에 따라 장·차관급 4개 분과로 구성되어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2-1-17〉 2017년도 갈등관리 부문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지표	비중
갈등과제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갈등과제 해결을 위한 소통 노력 국정협의체를 활용한 갈등해결 노력 참여적 의사결정기법을 활용한 창의적인 노력 등 	40

평가항목	평가지표	비중
갈등관리 제도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실적 갈등영향분석서 작성실적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실적 	30
갈등관리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갈등완화·해소 정도 및 성과 	30

④ 결과

정부 출범 이후 각 중앙행정기관의 적극적인 갈등관리 노력으로 인해 집중관리 갈등과제 25개 중 16개 과제가 해소 또는 완화되는 성과가 있었다.

분류	과제명
해소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검토, 청탁금지법령 개정,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철회, 용산 장외경마장 이전, KTX 무안공항 경유 등 6개
진전	EEZ 바다모래 채취, 세월호 추모사업, 수능·자사고 교육현안 대응, 비정규직 고용환경 개선, 4대강 보 개방 등 10개

공론화(신고리), 협약체결(용산 장외경마장), 법원조정(제주 구상권) 등 시민참여 기반의 다양한 사회적 합의 모델을 적용한 점이 갈등해소 성과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아울러 갈등관리 관련 협의체 운영, 갈등영향분석 실시 등 기관별 갈등관리제도 운영실적도 대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정책수립 단계에서부터 갈등요인을 파악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을 강화하고, 지속되는 갈등사안에 대해서는 창의적인 대안 마련 등 각 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갈등관리 제도의 내실있는 운영과 갈등관리 노력 및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도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표 2-1-18〉 2017년도 갈등관리 부문 평가결과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우수	교육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달청, 경찰청, 농촌진흥청, 새만금개발청
보통	기획재정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관세청, 통계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문화재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해양경찰청
미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소방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다) 인권개선

① 개요

중앙행정기관의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한 수용도를 높이고, 자발적인 인권개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특정평가의 일환으로 인권개선 관련 평가가 실시되었다.

② 대상

정부업무평가 대상기관인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③ 방법

2017년 7월~12월 기간 중 각 기관의 인권위 권고 이행사항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기관별 기타 인권 개선노력도 함께 평가하였다.

〈표 2-1-19〉 2017년도 인권개선 부문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지표	비중
권고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고 이행계획 회신(의무기간 내 회신 여부) • 회신 의무기간(90일) 초과(1개월 당 감점) • 권고 이행의 충실도 • 권고 이행의 난이도 	70
기타 인권개선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대상기관이 제출한 인권개선 내용의 우수성 ※ 평가대상 기간 동안 권고를 받지 않은 기관의 경우 기타인권개선 노력을 만점(2점)으로 환산하여 평가 	30

④ 결과

평가실시 결과, 인권위 권고에 대한 회신의무 준수율과 수용률이 향상되었다.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 9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36개 인권위 권고사항에 대해 각 기관의 이행계획 회신율과 수용률은 100%였다. 이는 최근 5년간 피권고기관의 평균 회신율이 75%, 평균 수용률이 87%였던 것에 비해 크게 증가한 실적이었다.

그 밖에 기관 내 인권교육이 확대되고, 이행의무가 없는 ‘의견표명’ 사안에 대해서도 중앙행정기관들이 적극적으로 검토·수용한 점도 확인되었다.

다만, 인권위의 권고 취지에 맞게 실제 이행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관리가 필요하고,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인권 사각지대와 보완과제를 발굴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아울러, 기관 내 인권침해, 차별사건 예방·대응을 위해 인권존중 문화를 조성하려는 노력도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표 2-1-20〉 2017년도 인권개선 부문 평가결과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우수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인사혁신처, 병무청, 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통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소방청, 특허청, 새만금개발청, 해양경찰청
미흡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방위사업청, 산림청, 기상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라) 특정시책

① 개요

정부의 사회·경제적 배려 시책에 대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이행을 위해 장애인 고용,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중소기업 제품 구매, 기술개발 제품 구매 등 특정시책에 대한 평가가 시행되었다.

② 대상

정부업무평가 대상기관인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③ 방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규정된 법정 기준을 중심으로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애인 고용,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중소기업 제품 구매, 기술개발 제품 구매 실적 등을 평가하였다.

〈표 2-1-21〉 2017년도 특정시책 부문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장애인 고용(고용노동부)	• 법정 의무 고용률(3.2%) 기준 가감점	±0.6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보건복지부)	• 법정 의무 구매비율(1%) 기준 가감점	±0.6
중소기업 제품 구매(중소벤처기업부)	• 법정 의무 구매비율(50%) 기준 가감점	±0.6
기술개발 제품 구매(중소벤처기업부)	• 법정 의무 구매비율(10%) 기준 가감점	±0.2

④ 결과

전반적으로 관계기관 시책의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되었다.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액과 평균 구매율과 법정기준 달성 기관수, 중소기업제품 평균 구매율, 기술개발제품의 평균 구매율이 전년대비 증가하였다.

다만, 중증장애인생산품과 기술개발제품 구매의 경우, 전체적인 구매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은 법정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과 기술개발 제품의 전담기관 지정 확대 등을 통한 구매율 제고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5) 기관종합평가

① 개요

국정과제, 일자리 창출, 규제개혁, 정책소통, 국민만족도 등에 대한 평가결과를 기관별로 합산·발표하여 기관 차원의 국정성과 창출을 견인하고자 하였다. 국정과제(50점), 일자리 창출(20점), 규제개혁(10)점, 정책소통(10점), 국민만족도(10점)를 합산하였으며, 기관공통사항(±10점)은 가·감점으로 반영하였다.

② 결과

평가결과는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으로 나누어, 기관별 등급을 3단계(우수 30%, 보통 50%, 미흡 20%)로 부여하였다. 장관급 기관 중에서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가, 차관급 기관 중에서는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경찰청, 산림청, 특허청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정책 분야별로는 성장기반 구축, 일자리 창출, 생활체감형 정책 등에서 높은 성과를 낸 기관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반면 남북관계 등 외생적 요인으로 성과창출이 부진하거나, 사건·사고 대처의 미흡으로 국민 체감도가 낮은 기관들이 미흡한 평가를 받았다.

〈표 2-1-22〉 2017년도 기관종합평가 결과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우수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경찰청, 산림청, 특허청
보통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병무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기상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미흡	통일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민권익위원회	방위사업청, 소방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해양경찰청

2) 2018년

국정과제와 일자리창출 부문을 통합하였고, '정부혁신'을 별도 부문으로 신설하여 사회적 가치 확산, 참여와 협력 확대, 갈등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였다.

(1) 일자리·국정과제

① 개요

2017년도에 구분되었던 국정과제와 일자리 창출을 일자리·국정과제 부문으로 통합하였다.

② 대상

전년과 동일하게 43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3개, 차관급 20개)의 100대 국정과제 이행노력과 성과를 평가하였다. 주관 국정과제가 1개 이하이거나 일자리 과제의 추가 선정이 필요한 28개 기관은 주요정책 과제를 선정(62개)하여 국정과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하였다.

③ 방법

전년도 평가와 유사하게 진행되었다. 정부업무평가위원을 중심으로 민간전문가와 정책수요자가 참여하는 459명 규모의 '국정과제 평가지원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다만,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차인 만큼 전년에 비해 정책추진 노력보다 성과지표 달성도를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표 2-1-23〉 2018년도 일자리·국정과제 부문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정책추진 노력	• 과제 추진계획을 충실히 수립하고, 이에 따라 차질없이 이행했는지 여부	30
성과지표 달성도	• 사전에 설정된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 여부	40
정책효과	• 성과지표로 측정할 수 없는 정책의 체감성과를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 종합 평가	30

④ 성과지표 보완

2018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가시적인 정책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기존 성과지표를 검토·보완하였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성과지표 점검 TF’를 구성하고 TF 내 국정목표·전략별 10개 분과를 설치하여 각 기관이 제출한 성과지표(안)을 검토하였다. 이후 2018년 6월에 개최된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최종안을 확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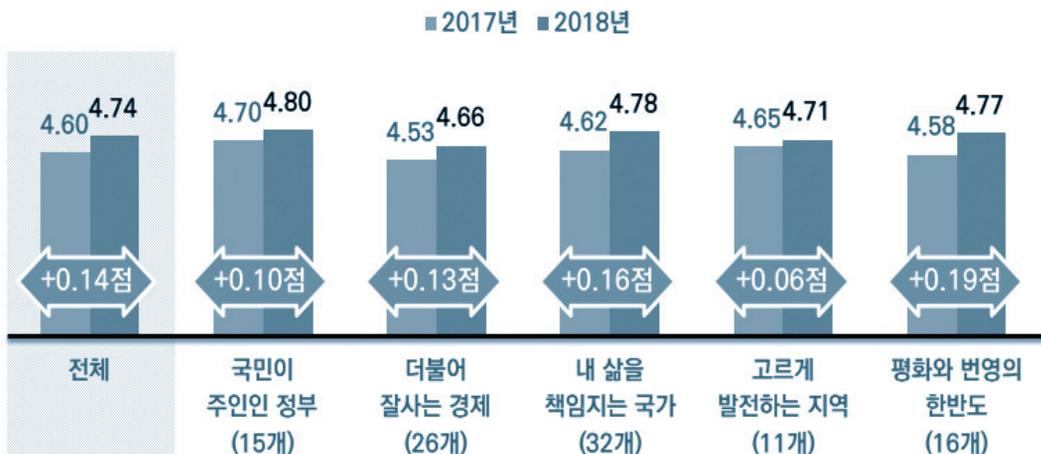
기존에는 국정과제 단위로 지표를 설정하였으나, 실천과제 단위로 세분화하여 보다 세밀한 관리가 이루어지게 하였으며, 정책체감도 향상을 위해 산출·결과 지표의 비중도 2017년도 47.3%에서 2018년도에는 85.8%로 대폭 확대되었다. 또한, 일자리 창출 여건 조성 강화를 위해 일자리 성과지표의 비중도 2017년도 65.6%에서 2018년도 71.6%로 확대되었다.

⑤ 국민만족도

2018년도에는 국민만족도를 별도 부문으로 평가하지 않고, 일자리·국정과제 평가 부문의 하위 항목으로 편성하여 조사결과를 반영하였다. 또한 일반국민의 관심이 적은 ‘적극성’, ‘민주성’, ‘대응성’ 등 ‘과정지표’는 조사항목에서 삭제하고, ‘정책필요성’, ‘정책내용의 적정성’ 등 ‘정책내용’ 관련 지표를 신설하였다.

국정과제(100개), 주요정책과제(62개)에 대한 일반국민, 정책수요자의 만족도를 조사하였으며, 인지도는 78.7% 수준, 전체 국정과제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4.74점으로 전년보다 0.14점 상승하였다.

〈표 2-1-24〉 2018년도 국민만족도 조사결과



⑥ 결과

2018년에 개최된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맞춤형 복지와 보육·교육의 공공성이 강화되고, 하도급·가맹 등 분야의 불공정관행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받았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등 사람중심 일자리 정책의 성과가 일부 가시화되고, 데이터·AI·수소경제 등 신산업 성장 기반이 구축된 것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피해자 중심의 과거사 진상규명,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답을 통해 국민통합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채용비리·생활적폐 등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한 점도 성과로 꼽혔다.

반면, 민간부문의 고용창출 부진, 소상공인 등의 애로사항 대응 미흡, 대입제도 개편 등 일부 정책추진 과정에서 혼선 발생한 점은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미세먼지와 생활방사능 등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지속된 것과 권력기관 개혁 등 주요 개혁입법이 지연된 점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2018년에도 전년도와 같이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에 대하여 각각 우수, 보통, 미흡기관 비중을 30%, 50%, 20%로 설정하고, 장관급 상위 6개 기관, 차관급 상위 6개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하였다. 장관급 기관 중에서는 통일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차관급 기관 중에서는 법제처, 조달청, 병무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표 2-1-25〉 2018년도 일자리·국정과제 부문 평가결과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우수	통일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조달청, 병무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보통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국세청, 관세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특허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미흡	교육부, 법무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통계청, 기상청

(2) 규제혁신

① 개요

2018년도 규제혁신 평가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생활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규제혁신 노력과 성과를 점검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특히 신산업 분야의 네거티브 규제전환 노력과 일자리 창출 규제개선 성과를 점검하여 주요 과제를 평가하는 한편, 지속 추진 중인 규제개혁신문고 건의 등을 포함한 현장·수요자 중심의 규제애로 개선과 규제혁신 만족도도 평가의 주요 항목에 포함되었다. 또한, 각 기관 및 공무원들이 규제혁신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적극행정 노력도를 가점 항목으로 도입하였다.

② 대상

규제혁신 평가는 정부업무평가 대상기관 중 기관별 규제정비계획상 정비과제가 2개 이하인 기관(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세청, 통계청, 방위사업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해양경찰청, 원자력안전위원회) 14개를 제외한 2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29개 기관의 1년간 규제혁신 실적과 성과를 장관급 기관(19개)과 차관급 기관(10개)으로 구분하였으며, 과제의 성격과 기관의 특성 등을 기준으로 하여 4개 분과(경제1·2, 사회1·2)로 나누어 평가를 진행하였다.

〈표 2-1-26〉 2018년도 규제혁신 평가 대상기관

구분	기관명
장관급 (19개)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가보훈처
차관급 (10개)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조달청, 병무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③ 방법

평가항목은 크게 규제정비 60%, 규제심사 20%, 체감도 20%로 구성하였으며, 규제정비 항목에 기존규제 정비, 신산업 관련 과제 정비, 일자리 창출 규제정비가 포함되었다. 규제심사 항목에는 절차 준수도 및 일몰규제 정비 실적 등이 포함되었고, 체감도 점검을 위해 규제개혁 만족도와 국민소통 실적에 대해서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또한, 적극행정 노력도와 규제혁신 교육이 우수한 경우 가점을 부여하였다.

규제개혁 추진에 현장·수요자의 입장을 반영하고, 평가의 전문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합동 규제혁신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였으며, 규제혁신 만족도는 리서치 기관을 활용하였다.

〈표 2-1-27〉 2018년도 규제혁신 부문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규제정비 (60)	기존규제 정비	• 규제정비 종합계획 과제 등 정비	10
		• 규제개혁신문고 건의 처리 실적	10
		• 현장 규제애로 개선 실적	5
	신산업 관련 과제 정비	• 네거티브 규제전환 및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실적	10
		• 신산업 규제애로 수용·이행 실적	10
일자리 창출 규제 정비	• 일자리 창출 규제개선 과제 수용 및 이행실적 등	15	
규제심사 (20)	규제심사절차 준수도	• 규제심사절차 준수 및 규제영향분석 등	15
	일몰규제 정비	• 재검토형 일몰규제 정비 및 일몰규제등록 실적	5
규제혁신 체감도 (20)	규제혁신 만족도	• 규제혁신 만족도 조사	10
	규제혁신 국민소통 실적	• 규제혁신 관련 언론소통·현장정보 등	10
기타 (+5)	가점	• 규제개혁 교육	+3
		• 적극행정 노력도	+2

④ 결과

규제혁신 부문에서는 신산업·신기술 육성의 적극지원을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 기업활동·민생 불편 부담 규제 적극 개선, 공무원 의식·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행정 추진 등이 주요 성과로 평가되었다.

선허용-후규제 방식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을 가속화하고,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새로 도입하였으며, 신산업 분야 핵심규제 개선을 위해 대통령 주재 회의를 개최하여 의료기기, 인터넷전문은행, 데이터 규제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창업·입지·진입 등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혁신하고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였으며, 동일한 규제라도 상대적으로 부담을 크게 느끼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규제차등화 제도를 도입하였다. 규제집행 현장 공무원의 행태 개선을 위해서는 적극행정 먼책 및 사전컨설팅 등 적극 행정 유도조치를 마련·시행하였다.

2018년도 기관별 평가결과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등 신산업 분야 규제혁파 등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규제개혁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평가되었다.

장관급 기관에서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등 신산업 관련 기반 조성(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등), 국민생활 밀접 규제혁파(행정안전부·환경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농림축산식품부)를 추진한 기관이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차관급 기관에서는 산림이용 규제 완화로 국민

불편해소와 기업활동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기관(산림청), 식품·의료기기 분야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추진으로 신기술의 신속한 시장출시에 기여한 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 전자상거래 물류허브 구축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관(관세청)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반면, 규제개선 건의과제 등에 대하여 소극적 자세를 보이거나, 기관의 자발적인 과제 발굴 노력이 저조한 기관은 낮은 평가를 받았다. 장관급 기관에서는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교육부가, 차관급 기관에서는 조달청, 소방청이 미흡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표 2-1-28〉 2018년도 규제혁신 부문 평가결과

등급	장관급 기관 (19개)	차관급 기관 (10개)
우수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림청, 관세청
보통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방송통신위원회	특허청, 문화재청, 경찰청, 농촌진흥청, 병무청
미흡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교육부	조달청, 소방청

(3) 정부혁신

① 개요

2018년도부터는 ‘정부혁신’을 별도 부문으로 신설하여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3.19, 정부혁신전략회의) 이행상황 등 기관별 혁신 추진실적을 평가하였다. 혁신 준비-실행-성과의 3단계로 구분하여 실행계획, 핵심과제, 우수사례 등에 대하여 전문가·국민 등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를 실시하였다.

특히, 균형인사, 인권개선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고, 정책과정에 대한 국민참여와 협업 지표를 구성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성과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② 대상

정부업무평가 대상기관인 4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③ 방법

학계·연구원·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정부혁신 평가단과 지표 담당 기관 평가단(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인권위 등)을 통해 서면평가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지표 당 복수의 평가위원을 배정하여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였고,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해 평가위원이 직접 집합점검을 추가로 실시하면서 서면평가의 한계를 보완하였다.

평가항목은 혁신준비 부문과 혁신실행 및 성과, 기관의 대표 혁신사례 부문으로 구성하고, 각 기관이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평가하였다. 기관의 대표 혁신사례 부문 중 국민체감도 지표는 국민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하였다.

〈표 2-1-29〉 2018년도 정부혁신 부문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혁신준비 (15)	사회적 가치를 위한 혁신 인프라	• 실행계획의 충실성	9
		• 혁신 추진 기반	6
혁신실행 및 성과 (75)	사회적 가치 중심 정부운영	•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균형인사, 인권개선 및 구매	11
		• 사회적 가치를 강화하는 정책 조정 노력	18
	참여와 협력	• 정책 모든 과정에 국민 참여 확대	13
		•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자원 개방	6
		• 협업·조정·갈등관리	10
	넓은 관행을 깨는 신뢰받는 정부	•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6
• 국민중심 행정혁신 추진		11	
대표사례(10)		• 기관대표 혁신사례	10

④ 결과

정부혁신 추진체계가 구축되고, 국민참여 예산제의 본격 시행·국민참여 법령심사제 활성화 등 행정 내부분야까지 국민 참여가 확대된 점은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공직의 여성 대표성 강화와 성희롱·성폭력 근절 노력, 사회적 약자 배려·인권 등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정부운영으로 국민의 정부신뢰도('17년 32위 → '18년 25위)가 상승하는 성과가 확인되었다.

다만, 정부혁신의 틀은 마련되었으나 국민이 체감할 만한 혁신성과 창출은 다소 미흡했다는 점과 함께, 모바일·온라인 중심 생활패턴 등 국민의 의식·행동방식 변화에 대응한 정부의 일하는 방식에 보다 더 많은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었다.

평가결과, 장관급 기관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이, 차관급 기관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통계청 등이 정부혁신 추진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30〉 2018년도 정부혁신 부문 평가결과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우수	외교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 병무청, 농촌진흥청
보통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인사혁신처, 법제처, 조달청, 경찰청, 문화재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해양경찰청
미흡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위사업청, 소방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

(4) 정책소통

① 개요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 제고 등을 위한 중앙행정기관의 소통 추진실적을 중점 평가하는 한편, 소통환경 변화에 따라 온라인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언론 등에서 제기한 이슈 대응 관련 질적 평가를 강화하였다. 평가점수는 특정평가에 10점으로 반영되었다.

② 대상

정부업무평가 대상기관인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하였다.

③ 방법

분야별 민간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 등으로 ‘민관합동 정책소통 평가지원단’을 구성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평가지표의 특성에 따라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병행 활용하였으며 월별, 분기별 등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연말 종합평가에 반영하였다.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는 다음과 같다.

〈표 2-1-31〉 2018년도 정책소통 부문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정책소통 활동	정책소통 기획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소통 계획 수립 • 정책소통 계획 이행도 	6
	기관 간 정책소통 협업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정책 사전협의 • 정부·공공기관 보유매체 협업 활동 	14
	정례브리핑 및 언론 반영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례브리핑 운영 • 일일보도 반영실적 • 언론 반영 사례 평가 	10
정책소통 성과	방송·신문 보도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신문·인터넷 보도결과 • 외신소통활동 결과 	10
	기관 정책소통 활동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장 정책소통 활동성과 • 정책소통 월별 우수사례 	15
	온라인 정책소통 활동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SNS 활동성과, 콘텐츠 및 우수사례 • 온라인 이슈 점검 성과, 정책브리핑 활용 • 기관 협업 성과 	45

④ 결과

핵심 국정 아젠다에 대한 범부처 협력 소통이 활성화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일자리, 포용국가, 남북관계, 혁신성장 등 핵심 국정아젠다 관련 주기적·상시적 소통협의체 운영을 통해 소통 메시지 조율 등 유기적 협력 소통이 강화되었다. 정책홍보전략회의와 대변인협의회를 매주 개최하고 온라인대변인협의회를 격주로 개최되었다.

아울러, 정책발표 사전협의는 2017년도 199건에서 2018년도 256건으로 전년보다 28% 증가하였다. 국정과제 인지도 조사결과, 남북정상회담은 92.6%, 최저임금 보장 및 노동시간 단축은 90.6%,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은 80.4%로 나타났다.

디지털소통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과 쌍방향 소통이 확대되었다. 13개 기관에서 디지털 소통 조직을 신설(8개 기관 공식 직제화 완료)하였고, 디지털소통팀장 회의 신설 등 상시적 협력홍보가 이루어졌다. 각 기관 대표 채널(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등) 활동 실적은 2018년 3월 기준 7천 8백만 건에서 2018년 11월 기준 1억 2천만 건으로 56.3% 증가하는 성과가 나타났다. 전 기관을 대상으로 ‘정부 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트위터 채널이 공식적으로 공개(12.20~) 되었다.

한편, 구체적 정책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 향상을 위한 정책수요자 맞춤형 소통 확대와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노동 문제 등 현안 이슈에 대한 사전 기획 홍보 및 즉각적·체계적 대응 강화의 필요성은 개선·보완사항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1-32〉 2018년도 정책소통 부문 평가결과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우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병무청, 경찰청, 산림청, 특허청
보통	기획재정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법제처,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방위사업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기상청, 새만금개발청
미흡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해양경찰청, 원자력안전위원회

(5) 소통만족도

① 개요

국정과제 및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소통 추진노력과 성과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소통만족도 평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여 민간 전문조사기관에 설문 조사를 의뢰·실시하였고, 평가점수는 정책소통(10점)과 독립적인 항목으로 특정평가에 5점으로 반영되었다.

② 대상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③ 방법

43개 정책과제(기관별 1건)에 대한 소통만족도를 조사하여 평가하였으며 설문조사는 객관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민간 전문조사기관에 위탁하였다.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는 다음과 같다.

〈표 2-1-33〉 2018년도 소통만족도 부문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지표	비중
정책소통 프로그램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인지도, 소통 메시지 수용도 • 행동변화 	30
정책소통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성 차원, 개방성 차원 • SNS 정책소통 만족도 	40
정책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지식도, 정책 수용 및 지지도 • 정부 신뢰도 	30

④ 결과

소통만족도 평균은 57.4점(100점 만점)으로 ‘보통(50점) 정도’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기상청의 지진으로부터 국민안전 확보 등 복지·안전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과제의 경우는 만족도 점수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방위사업청의 첨단 무기 개발 및 방위산업 육성, 조달청의 나라장터 벤처나라 등 일반 국민이 성과를 상대적으로 체감하기 어려운 과제는 소통만족도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성별·연령별 특성에 따라 소통만족도에 대한 편차가 발생했는데 여성은 문화재청의 문화유산 콘텐츠 활용 확대와 같은 문화 과제에 대한 소통노력, 남성은 소방청의 소방차 길 터주기와 같은 안전 과제의 소통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행정안전부의 행정서비스 혁신(정부24·문서24)과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와 같은 행정서비스·환경 관련 과제는 50~60대 연령층에서, 고용노동부의 일·생활의 균형 실현과 해양경찰청의 해양재난 대비·대응역량 강화 등 노동·해양재난 관련 과제는 20대에서 소통 노력을 높게 평가하였다.

한편,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도가 낮은 정책의 경우에는 정책의 실제적 효과 및 성과 중심의 콘텐츠를 통한 소통추진 전략 마련이 필요하며, 성별·연령별 관심 및 정보 접근성 등을 고려한 온·오프라인(유인물, 현수막, 신문·방송, SNS 등) 채널 활용과 입체적인 소통 강화 필요성이 개선·보완 필요사항으로 제시되었다.

기관별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1-34〉 2018년도 소통만족도 부문 평가결과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우수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보통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통계청, 병무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미흡	통일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조달청, 방위사업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

(6) 지시이행(가감점)

① 개요

각 중앙행정기관이 대통령 지시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관련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시이행에 대한 가감점 평가가 실시되었다.

② 대상

43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3개, 차관급 20개)을 대상으로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지시사항 중 각 기관에서 추진중이거나 2018년 종료된 지시사항 총 160건에 대한 이행사항을 평가하였다.

③ 방법

각 지시사항별로 가감점을 부여하여 기관별로 산술 평균하였다. 구체적인 평가지표는 다음과 같다.

〈표 2-1-35〉 2018년도 지시이행 부문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계획수립 적절성	• 지시취지 부합여부, 내용 충실성 등	±1
추진성과	• 추진계획의 실제 이행 여부 • 국민체감도 등 추진효과	±1.5
점검체계 운영	• 자체점검 추진실적	±0.5

④ 결과

전반적으로 각 중앙행정기관이 대통령 지시사항을 원활히 추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주요 국정과제와 관련된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보완방안들이 적기에 마련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고용·소득분배 지표 등의 부진에 따라 취약계층 일자리 안정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보완대책이 수립되었고,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단기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 안착 지원대책이 마련된 것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조선업 침체 등 지역경제 위기에 대응하여 군산 등 6개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한 점과 여름철 폭염에 대응하여 폭염대책 수립 등을 통해 전기요금 주택용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 점 등은 주요현안에 대한 지시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성과로 꼽혔다.

다만, 기관 간 협업 부족(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 계획 수립), 이해관계자 협의 지연(초등학교 정규수업시수 확대) 등으로 일부 지시사항의 이행이 지연되고, 정책환경 변화가 예견된 상황에도 뒤늦은 대응으로 국민불편을 초래한 부분(중국의 폐기물 수입 중단 예고에도 불구하고, 대책마련 지연)은 주관기관 중심으로 선제적인 대응과 신속하고 책임감 있는 지시사항 이행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었다.

〈표 2-1-36〉 2018년도 지시이행 부문 평가결과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우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처, 국세청, 조달청, 경찰청, 새만금개발청, 해양경찰청
보통	기획재정부, 교육부, 통일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소방청, 산림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미흡	국방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민권익위원회	통계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특허청

(7) 기관종합평가

① 개요

2018년도에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성과를 일자리·국정과제(65점), 규제혁신(1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10점), 소통만족도(5점) 등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이를 기관별로 합산·발표하여 기관 차원의 국정성과 창출을 독려하고자 하였다. 지시이행(±3점)은 가·감점으로 반영되었다.

② 결과

평가결과는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 두 범주로 나누어, 기관별 등급을 3단계(우수 30%, 보통 50%, 미흡 20%)로 부여하였다. 장관급 기관 중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가, 차관급 기관 중에서는 법제처, 조달청, 병무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주요 성과 내용으로는, 국민들의 생계비 부담 경감, 생활 인프라 개선 및 먹거리 안전강화 등 생활체감형 정책을 추진한 기관과 남북관계·4차 산업혁명 등 한반도 평화와 미래비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기관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혼선을 야기한 기관, 현안에 대한 적기 대응이 미흡했던 기관, 핵심입법이 지연된 기관, 정책에 대한 대국민 설명 노력이 부족했던 기관 등이 낮게 평가되었다.

〈표 2-1-37〉 2018년도 기관종합평가 결과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우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법제처, 조달청, 병무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보통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특허청, 기상청
미흡	교육부, 법무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통계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

3) 2019년

정부 3년차임을 감안하여, 각 부문별로 정책성과 창출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정책소통' 및 '소통만족도' 부문을 통합하여 소통 관련 평가체계를 일원화하였다.

(1) 일자리·국정과제

① 개요

2018년도와 같이 일자리·국정과제 부문은 65점 배점으로 평가가 실시되었다. 문재인 정부 3년 차임을 감안하여 성과지표 달성도가 60%로 비중이 확대되었다.

② 대상

43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3개, 차관급 20개)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포함한 100대 국정과제에 대한 이행노력과 성과를 평가하였다. 주관 국정과제가 1개 이하이거나 일자리 과제의 추가 선정이 필요한 28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주요정책과제(62개)를 선정하여 국정과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하였다.

③ 방법

전년도와 평가항목은 동일하게 구성하되, 성과창출 중심의 평가를 위해 항목별 배점을 조정하였다. 정책추진 노력의 비중은 대폭 줄이고(30% → 10%), 성과지표 달성도의 배점을 확대(40% → 60%)하였다. 정책효과는 전년도와 동일한 30%로 유지하였다. 정부업무평가위원을 중심으로 분야별 민간전문가와 정책수요자가 참여하는 450명 규모의 '일자리·국정과제 평가지원단'이 평가에 참여하였다.

〈표 2-1-38〉 2019년도 일자리·국정과제 부문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지표	비중
정책추진 노력	• 과제 추진계획을 충실히 수립하고, 이에 따라 차질없이 이행했는지 여부	10
성과지표 달성도	• 사전에 설정된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 여부	60
정책효과	• 성과지표로 측정할 수 없는 정책의 체감성과를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 종합 평가	30

④ 성과지표 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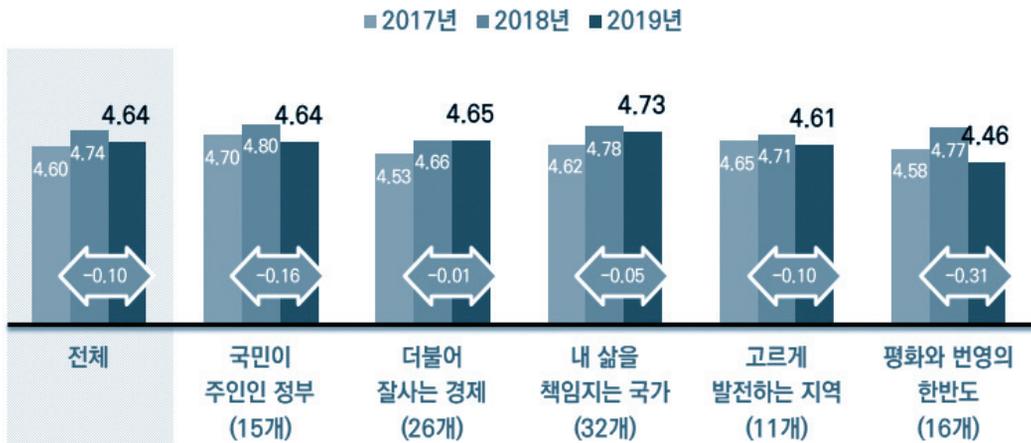
2019년도는 대표성을 강화하고 산출·결과 지표를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성과지표를 개선하였다. 정부업무평가위원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성과지표 점검 TF'를 구축하여 지표를 검토하였으며, 3월에 개최된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최종안을 확정하였다. 대표성 보완, 복합지표 개선, 목표치 상향 등 기존지표의 약 54%를 수정하였으며, 결과·산출 지표의 비중도 85.8%에서 86.1%로 소폭 확대하였다.

⑤ 만족도 조사 결과

2019년도 국민만족도 조사부터는 과거년도와 결과 간 비교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조사방법, 조사항목, 표본크기 등을 가능한 유지하였다.

국정과제(100개), 주요정책과제(62개)에 대한 일반국민, 정책수요자의 만족도를 조사하였으며, 인지도는 72.2% 수준, 전체 국정과제 만족도 평균은 4.64점으로 전년 대비 0.1점 하락하였다.

〈표 2-1-39〉 2019년도 국민만족도 조사결과



⑥ 결과

세계최초 5G 상용화, 신규 유니콘 기업 5개 탄생 등 신산업 육성과 함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력산업 활력을 이어가는 혁신성장 기반을 강화한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영세자영업 지원 강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및 국세의 지방세 전환(3.3조 원) 등 지방분권 추진, 「공수처 설치법」 제정, 검경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노력도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공유경제 등 혁신성장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노력은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과 함께 공정경제·자치분권 등 개혁입법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2019년도 평가에는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의 두 그룹으로 나누어 기관별 등급을 5단계(S·A 등급 30%, B등급 50%, C·D등급 20%)로 부여하였다. 등급은 우선 3단계(A 30%, B 50%, C 20%)로 배분한 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등 분야별 평가위원회에서 A그룹· C그룹 내 점수편차와 탁월한 성과 창출여부 등을 고려하여 S등급과 D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다만, 일자리·국정과제 부문에서는 S등급과 D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 장관급 기관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가 A등급을 받았고, 차관급 기관 중에서는 법제처, 조달청, 소방청, 농촌진흥청, 특허청, 해양경찰청이 A등급을 받았다.

〈표 2-1-40〉 2019년도 일자리·국정과제 부문 평가결과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S	-	-
A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법제처, 조달청, 소방청, 농촌진흥청, 특허청, 해양경찰청
B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국세청, 관세청, 병무청, 경찰청, 문화재청, 산림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C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청, 방위사업청, 원자력안전위원회
D	-	-

(2) 규제혁신

① 개요

2019년도 규제혁신 평가는 신산업·신기술을 활성화하고 민생불편·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규제혁신 노력과 성과를 점검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특히, 규제혁신 핵심분야인 신산업 분야에서 규제샌드박스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노력도 등으로 주요 과제를 평가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규제개혁신문고 건의 등을 포함한 현장·수요자 중심의 규제애로 개선과 규제혁신 만족도도 평가의 주요 항목에 포함되었다. 또한, 각 기관 및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규제혁신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존 가점이었던 적극행정 노력도에 대한 평가를 가·감점 평가로 확대하였다.

② 대상

규제혁신 평가는 정부업무평가 대상기관 중 기관별 규제정비 종합계획상 정비과제가 2개 이하인 기관(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세청, 통계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해양경찰청) 17개를 제외한 26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26개 기관을 장관급 기관(17개)과 차관급 기관(9개)으로 구분하였으며, 과제성격과 기관특성 등을 기준으로 하여 4개 분과(경제1·2, 사회1·2)로 나누어 지난 1년간의 규제혁신 실적과 성과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표 2-1-41〉 2019년도 규제혁신 평가 대상기관

구분	기관명
장관급 (17개)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차관급 (9개)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조달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③ 방법

평가항목은 규제정비 60%, 규제심사 20%, 규제혁신 체감도 20%로 구성하였다. 규제정비 항목에는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실적, 규제샌드박스 운영실적 등 신산업 관련 과제 정비와 일자리 창출 분야 규제정비, 민생분야 규제정비 등 기존 규제의 정비 항목이 포함되었다. 규제심사 항목에는 절차 준수도와 일몰규제 정비 및 규제등록 실적이 포함되었고, 규제혁신 체감도 항목에는 규제혁신 만족도와 국민소통 실적이 포함되었다. 또한, 적극행정 노력도와 규제혁신 교육에 대해서는 가·감점을 부여하였다.

규제혁신 추진에 현장·수요자의 입장을 반영하고, 평가의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관합동 규제혁신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였으며, 규제혁신 만족도 조사는 전문 리서치 기관을 활용하였다.

〈표 2-1-42〉 2019년도 규제혁신 부문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지표
규제정비 (60)	신산업 관련 과제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규제 샌드박스, 신산업 현장애로 개선 실적 기업 건의과제 개선 실적
	기존규제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제정비 종합계획 과제, 민생분야 규제 등 정비 일자리 창출 규제, 규제개혁신문고 건의 등 정비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도 운영
규제심사 (20)	규제심사 절차 준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제심사절차 준수 및 규제영향분석 등
	일몰규제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검토행 일몰규제 정비 및 등록 실적
규제혁신 체감도 (20)	규제혁신 소통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제혁신 관련 언론·현장소통 실적 등
	규제혁신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제혁신 만족도 조사
기타 (±3)	가감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 규제혁신 교육

④ 결과

2019년도 규제혁신 평가는 4차 산업혁명을 저해하는 규제를 혁신함으로써 신기술·신서비스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주요 성과로는 신산업 분야의 속도감 있는 발전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고 입법방식 유연화(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를 추진하는 한편, 현장의 규제애로를 발굴·개선하여 제도를 통한 규제체계 혁신 및 소통을 통한 과제개선을 병행한 점이 꼽혔다.

2019년 기관별 평가에서는 국민생활 밀접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신산업 분야 규제혁파 등을 중점 추진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평가되었다. 장관급 기관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운영 등 신산업 관련 기반 조성(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국민생활 밀접 규제혁파(환경부, 해양수산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농림축산식품부)를 추진한 기관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차관급 기관에서는 식품·의약품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한 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 수출통관 플랫폼 구축을 통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추진한 기관(관세청), 산림이용 규제 완화로 국민 불편해소 및 기업활동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산림청)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규제개선 건의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저조한 기관이 미흡한 기관으로 평가되었다. 장관급 기관으로는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가 미흡기관으로, 교육부는 매우 미흡한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차관급 기관으로는 경찰청과 농촌진흥청이 미흡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표 2-1-43〉 2019년도 규제혁신 부문 평가결과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S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식품의약품안전처
A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관세청, 산림청
B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소방청, 문화재청, 특허청
C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농촌진흥청
D	교육부	

(3) 정부혁신

① 개요

2019년도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 성과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개편하였다. 국민체감도 평가 비중을 확대('18년 5점 → '19년 10점)하고, 대국민 혁신성과 홍보 지표를 신설하였으

며, 투입 및 단순 실적 지표를 성과지표로 변경하거나 통폐합('18년 34개 지표 → '19년 26개 지표)하여 피평가기관의 평가부담을 완화하였다. 또한 기관의 정부혁신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관장의 혁신리더십 지표를 신설하였다.

② 대상

정부업무평가 대상기관인 4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③ 방법

평가는 학계·연구원·시민단체·컨설턴트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정부혁신 평가단과 지표 담당 기관 평가단(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통해 서면평가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평가지표에 적합한 전문성을 갖춘 평가위원을 선정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였으며, 평가결과가 우수한 12개 기관에 대해서는 직접 집합점검을 실시하였다.

평가항목은 혁신역량·실행, 혁신성과, 혁신성과홍보, 국민체감도 분야로 구성하고, 적극행정 부문을 가점으로 신설하였다. 국민체감도 부문은 120명 규모의 국민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외의 지표는 각 기관이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평가하였다.

〈표 2-1-44〉 2019년도 정부혁신 부문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 지표	배점
혁신역량·실행	• 기관장의 혁신 리더십, 혁신교육·학습활동 실적	10
혁신성과	• 기관대표 핵심사업 추진 실적 • 균형인사, 혁신지향 공공조달,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실적 • 정책과정 국민참여 확대, 공공자원 개방, 협업 실적 • 기관 신뢰도 및 청렴도, 성평등 기여도, 정부24 공공서비스 목록 현행화, 일하는 방식 혁신 실적	75
혁신성과홍보	• 혁신성과 홍보 실적	5
국민체감도	• 국민평가단 및 일반국민 혁신성과 체감도	10
적극행정	• 적극행정 추진 성과	+5

④ 결과

2019년도에는 사회적가치 및 참여·협력의 강조와 적극행정 추진 등에 따라 정부 신뢰도가 2년만에 10단계('17년 32위 → '19년 22위, OECD) 상승하였다. 또한,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생애

주기별(임신, 출산, 상속 등) 통합서비스 확대, 디지털 기반 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접근성 제고 등을 통해 국민 편의 증진에 힘쓴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환경·안전 등 다양한 정책분야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기관 간 협업, 민·관 협력을 통해 국민 체감형 성과가 창출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국민참여가 단순 의견수렴·모니터링에서 벗어나, 정책 결정과정에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개선방향이 제시되었다.

평가결과 장관급 기관에서는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등이, 차관급 기관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경찰청 등이 정부혁신 추진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45〉 2019년도 정부혁신 부문 평가결과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S	-	-
A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산림청
B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특허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C	통일부, 여성가족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위사업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
D	-	-

(4) 정책소통

① 개요

각 기관의 주요 아젠다에 대한 기관별 소통 역량 및 과정·효과 등을 소통활동·성과·체감도 등으로 구분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하였다. 정책소통의 기관 책임성 강화 및 정책 아젠다의 효과적 확산을 위해 기관장 소통, 온라인 대응과 외신소통 평가 확대 등 성과중심으로 평가하였으며 ‘정책소통’과 ‘소통만족도’ 부문을 통합하여 소통 관련 평가체계를 일원화하였다. 2019년도 평가점수는 특정평가에 15점으로 반영되었다.

② 대상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③ 방법

분야별 민간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 등으로 '민관합동 정책소통 평가지원단'을 구성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평가지표의 특성에 따라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병행하였으며 월별, 분기별 등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연말 종합평가에 반영하였다.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는 다음과 같다.

〈표 2-1-46〉 2019년도 정책소통 부문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지표	비중
정책소통 활동	정책소통 기획	주요정책 소통 계획 수립, 사전협의	30
	언론소통 활동	정례브리핑 활동, 일일보도 관리	
	온라인소통 활동	기관 SNS 운영, 온라인이슈 관리	
정책소통 성과	기관장 정책소통 성과	언론·국민소통 성과, 위기상황 이슈관리	50
	언론소통 성과	방송·신문·인터넷·외신 소통활동 성과	
	온라인 정책소통 성과	기관 SNS 활동 성과, 디지털 캠페인 효과	
	기관협업 성과	보유매체·디지털소통 협업 성과	
	정책소통 기획 성과	정책소통 분기별 우수사례	
정책소통 체감도	수용도	접촉도 / 관심도 / 필요도	20
	만족도	상호성 / 개방성 / SNS 소통만족도	
	지지도	정책 이해도 / 정책 전달 의도 / 기관 신뢰도	
	공감도	빅데이터 분석	

*가감점 : 쉽고 바른 보도자료 사례 평가(±2점)

④ 결과

평가 결과 기관장 언론홍보 및 현장소통을 통하여 국민 신뢰를 제고하고자 노력한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기관장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하여 정책에 대한 국민 이해 증진 및 소통 노력을 강화되었다. 기관장 누리소통망(SNS) 채널 계정 보유는 2018년도 16개(37%)에서 2019년도에는 39개(91%)로 전년 대비 54%p 증가했다. 기관장 현장소통 월평균 실적은 장관급 기관이 18.9회로 전년 15.8회 대비 19.6% 증가하였고, 차관급 기관은 7.9회로 전년의 5.7회 대비 38.5% 증가하였다.

범정부 현안에 대한 기관 간 협업 홍보도 활성화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일본수출규제, 아프리카돼지열병과 미세먼지 등 범정부적 현안에 대한 주기적·상시적 소통협의체 운영과 유기적 협력소통을 강화하였다. 정책홍보전략회의와 대변인협의회를 매주, 온라인대변인협의회를 격주로 개최하였으며, 정책발표 사전협의는 2018년도 273건에서 2019년도에는 330건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하였다.

아울러, 디지털소통 강화를 통해 국민참여 및 소통이 활성화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총 31개 기관에 디지털소통팀이 구성(2018년 13개, 2019년 18개)되어 정부 디지털소통 역량 강화와 소통 채널 다변화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 결과 31개 기관의 콘텐츠 반응(좋아요·댓글·공유 등)이 전년 대비 5억회 증가하였으며, 43개 기관의 SNS 채널 디지털 콘텐츠가 2018년도 8만 8천 개에서 2019년도 9만 4천 개로 6.7% 증가하는 성과가 나타났다.

다만, 단발성 협업 홍보가 아닌, 정책대상과 관련된 다수 기관의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속 홍보함으로써 국민 체감도를 보다 제고하고, 디지털소통팀도 모든 기관으로 확대하여 파급력 있는 핵심 콘텐츠 위주의 홍보를 강화할 필요성이 개선·보완사항으로 제시되었다.

기관별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1-47〉 2019년도 정책소통 부문 평가결과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S	-	-
A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병무청, 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B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해양경찰청, 원자력안전위원회
C	기획재정부,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소방청, 기상청, 새만금개발청
D	-	-

(5) 지시이행(가감점)

① 개요

각 중앙행정기관이 대통령 지시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관련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시이행에 대한 가감점 평가가 실시되었다.

② 대상

43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3개, 차관급 20개) 중 지시사항이 없는 5개 기관(병무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해양경찰청, 원자력안전위원회)을 제외한 38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지시사항 중 각 기관에서 추진 중이거나 2019년도에 종료된 지시사항 총 145건에 대한 이행사항을 평가하였다.

③ 방법

각 지시사항별로 가감점을 부여하여 기관별로 산술 평균하였다. 구체적인 평가지표는 다음과 같다.

〈표 2-1-48〉 2019년도 지시이행 부문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계획수립 적절성	• 지시취지 부합여부, 내용 충실성 등	±1
추진성과	• 추진계획의 실제 이행 여부 • 국민체감도 등 추진효과	±1.5
점검체계 운영	• 자체점검 추진실적	±0.5

④ 결과

대통령 주재 현장간담회 등을 계기로 제기된 지시사항의 이행을 통해 인공지능 국가전략 발표, 3대 신산업(시스템반도체·바이오·미래차) 발전전략 수립, 전부처 규제입증위원회 구축 등의 성과를 거두어, 경제활력 제고와 혁신성장 가속화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일본 수출 규제, 강원도 산불,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이 대통령 지시를 차질없이 이행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방산비리 근절 등을 위한 입법노력을 계속하고, 법 통과 이후에도 하위법령 정비 등의 후속조치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위기청소년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한 통합정보망 구축이 기관 간 협업 부족으로 지연되고, 2017년 3월에 스틸라데이지호가 침몰한 이후 사고원인 규명이 지연되고 있는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었다.

기관별 평가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2-1-49〉 2019년도 지시이행 부문 평가결과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우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관세청, 경찰청, 특허청, 산림청
보통	기획재정부, 통일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조달청, 소방청, 통계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기상청
미흡	교육부, 외교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위사업청

(6) 기관종합평가

① 개요

43개 중앙행정기관의 2019년도 업무성과를 일자리·국정과제(65점), 규제혁신(1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15점), 지시이행 가감점(±3점) 등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이를 기관별로 종합·발표하였다.

② 결과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 두 그룹으로 나누어 기관별 등급을 5단계(S·A등급 30%, B등급 50%, C·D등급 20%)로 부여하였다. 먼저 3등급(A등급 30%, B등급 50%, C등급 20%)으로 배분한 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등 분야별 평가위원회에서 A그룹·C그룹 내 점수편차와 탁월한 성과 창출여부 등을 고려, S/D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평가가 진행되었다.

장관급 기관 중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S등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가 A등급을 받았고, 차관급 기관에서는 법제처, 관세청, 조달청, 소방청, 농촌진흥청, 특허청이 A등급으로 평가받았다.

2019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 예방·차단 및 농가소득 안정(농림축산식품부), 미래성장동력 육성(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조달청), 서민생활 안정 및 가계부담 경감(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 국정과제 추진실적이 우수한 기관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평가 결과는 2019년도 평가에서 성과지표 달성도의 배점 비중을 높인 점(40%→60%)이 반영된 결과였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와 같이 평가 소부분에서 A등급을 받아 기관종합 S등급으로 선정되는 모범사례가 나왔다. 부문별로는 규제혁신 부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S등급, 교육부는 D등급으로 선정되었다.

〈표 2-1-50〉 2019년도 기관종합평가 결과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S	농림축산식품부	-
A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법제처, 관세청, 조달청, 소방청, 농촌진흥청, 특허청
B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병무청, 경찰청, 문화재청, 산림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해양경찰청
C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통계청, 방위사업청, 기상청, 원자력안전위원회
D	-	-

4)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 각 기관의 코로나19 대응과 Post-코로나 준비 노력이 중점 평가되었다. 또한, 각 기관이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량평가 비중을 축소하는 등 평가 부담을 완화하였다.

(1) 일자리·국정과제

① 개요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발생으로 행정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2019년 12월에 기 수립된 '2020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을 2020년 6월에 수정하여 각 기관의 코로나19 대응노력을 평가에 반영하였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량평가 비중을 줄이는 등 평가부담 경감 조치를 시행하였다.

② 대상

43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3개, 차관급 20개)을 대상으로 평가하였다. 주관 국정과제가 1개 이하이거나 일자리 과제 추가 선정이 필요한 28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주요 정책과제(62개)를 선정하여 국정과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하였다.

③ 방법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각 기관의 평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성평가만 실시하였다. 정책추진 노력(30%), 정책성과(60%), 국민만족도(10%)를 평가하고, 기관별 코로나19 대응 및 Post-코로나 대비 노력을 가점으로 최대 10점까지 반영하였다. 아울러,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일자리·국정과제 전문가 평가단'의 규모를 2019년도 450명에서 2020년도에는 100명 수준으로 규모를 대폭 축소하였다.

〈표 2-1-51〉 2020년도 일자리·국정과제 부문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이행 노력	• (투입노력) 각 기관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예산·인력 증가, 제도신설 등 투입한 노력 평가	15
	• (일하는 방식 개선) 각 기관이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존 관행을 뛰어넘는 적극적·혁신적 행정, 기관 간 협업·지원 등 전개 노력 평가	15
	• (기관장 노력 가점) 정책추진과정에서 기관장이 일상적 수준을 뛰어넘는 특별한 노력을 직접 투입하여 난제 해결, 집행기관 단축, 이견 조정 등 성과를 창출한 경우 가점 부여	최대 +6
정책성과	• (당초 의도한 성과) 과제별 정책목표·기대효과 달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50
	• (장기적 효과) 정책효과의 지속가능성, 향후 기대효과 등 정책의 장기적 효과의 크기 및 중요성 등 평가	10
국민만족도	• 과제별 정책성과 및 효과에 대한 만족도	10

④ 성과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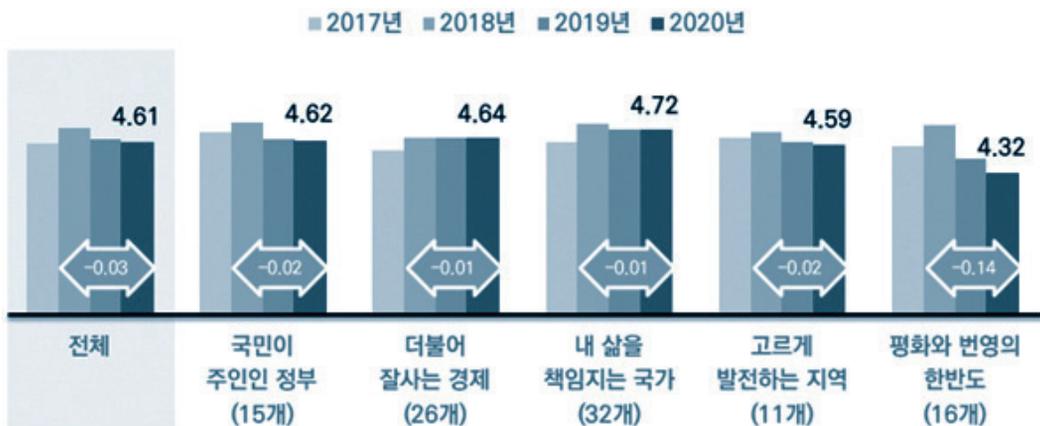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각 기관의 평가 부담 경감 차원에서 정량평가가 제외됨에 따라, 별도의 성과지표를 설정·운영하지 않았다.

⑤ 만족도 조사 결과

2020년도 국민만족도 조사도 과거년도와 결과 간 비교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조사방법, 조사항목, 표본크기 등을 가능한 유지하였다.

국정과제(100개), 주요정책과제(62개)에 대한 일반국민, 정책수요자의 만족도를 조사하였으며, 인지도는 83.6% 수준, 전체 국정과제 만족도 평균은 4.61점으로 전년대비 0.03점 하락하였다.

〈표 2-1-52〉 2020년도 국민만족도 조사결과



⑥ 결과

2020년도에는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각 기관이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점이 높게 평가되었다. K-방역을 통해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을 방지한 점,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한 점,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지원을 확대한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공정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을 제·개정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건전성 제고시킬 기반을 조성하고, 데이터 3법 개정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일원화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국방분야에서는 글로벌호크(고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배치 등으로 군의 핵심 전력이 강화된 것과, 단체 의료보험 도입과 병영 내 휴대전화 사용 전면 시행 등으로 장병 복무여건이 개선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20년도에는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 두 그룹으로 나누어 기관별 등급을 A등급(30%), B등급(50%), C등급(20%)으로 부여하였다. 장관급 기관에서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가 A등급을 받았고, 차관급 기관 중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조달청,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이 A등급을 받았다.

〈표 2-1-53〉 2020년도 일자리·국정과제 부문 평가결과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A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조달청,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B	교육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세청, 통계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특허청, 해양경찰청
C	통일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공정거래위원회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

(2) 규제혁신

① 개요

2020년도 규제혁신 평가는 규제샌드박스, 정부입증책임제, 적극행정 등 규제혁신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성과와 국민·기업의 체감도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신산업, 민생, 공직 분야별로 기관의 노력·성과를 평가하였으며, 특히 공직분야에서 기존 가점이었던 적극행정 노력도를 평가항목으로 반영함으로써 평가 비중을 확대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기관의 적극행정을 통한 신속대응과 규제혁신 노력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였다.

② 대상

규제혁신 평가는 정부업무평가 대상기관 중 기관별 규제정비 종합계획상 정비과제수, 기관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개(외교부, 통일부,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법제처, 통계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기관을 제외한 3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33개 기관을 장관급 기관(20개)과 차관급 기관(13개)으로 구분하였고, 성격·기관 특성 등을 기준으로 하여 4개 분과(경제1·2, 사회1·2)로 나누어 1년간의 규제혁신 실적과 성과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표 2-1-54〉 2020년도 규제혁신 평가 대상기관

구분	기관명
장관급 (20개)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차관급 (13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원자력안전위원회

③ 방법

평가항목은 크게 규제혁신성과 60%, 규제품질관리 20%, 규제혁신 소통 및 체감도 20%로 구성되었다. 규제혁신성과 항목에는 포괄적 네거티브 등 과제발굴 실적, 규제 샌드박스 운영실적 등 신산업 혁신성과와 민생분야 규제정비 실적이 포함되었다. 규제품질관리 항목에는 규제심사절차 준수 실적, 규제비용관리제 운영 성과 등이 포함되었고, 규제혁신 소통 및 체감도 항목에는 규제혁신 만족도와 국민소통 실적이 포함되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규제혁신 노력이 가점으로 반영되었다.

규제혁신 추진에 현장·수요자의 입장을 반영하였고, 평가의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관합동 규제혁신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였으며, 규제혁신 만족도 조사는 전문 리서치 기관을 활용하였다.

〈표 2-1-55〉 2020년도 규제혁신 부문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규제혁신 성과 (60)	신산업혁신	• 규제샌드박스 운영 성과	20
		•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등 신산업 규제정비 성과	
		• 신산업 현장애로 개선 성과	
		• 기업 건의과제 개선 성과	
	민생혁신	• 민생분야 규제정비 성과	20
		• 규제개혁신문고 건의 처리 성과	
공직혁신	•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 추진성과	20	
	• 정부 입증책임제도 운영성과		
규제품질 관리 (20)	신규 규제	• 규제심사절차 준수 실적	16
		• 규제심사 품질 향상 노력	
		• 규제영향분석 내용의 충실성	
		• 규제비용관리제 운영 성과	
		•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적용 성과	
	기존 규제	• 재검토행 일몰규제 정비 실적	4
규제혁신 소통 및 체감도 (20)	규제혁신 소통	• 국민소통 및 콘텐츠 제작·확산 실적	10
		• 기관장 등 국민소통 노력	
	규제혁신 만족도	• 규제혁신 만족도 조사	10
기타(+5)	가점	• 코로나19 대응 규제혁신 노력	+5

④ 결과

2020년도 규제혁신은 경제, 민생, 공직 3개 분야의 각 기관별 성과가 두드러진 한 해였다. 주요 성과로는 신산업 분야의 속도감 있는 발전을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하고 입법방식 유연화(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를 추진하는 한편, 신산업 기본계획 최초 수립 등 미래 유망 분야에 대한 선제적 규제혁신을 추진한 점을 들 수 있다.

2020년도 규제혁신의 또 다른 주요과제는 국민불편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을 해소하는 것이었다.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주민과 지역기업의 건의사항을 개선하였으며, 규제개혁 신문고 운영을 통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규제애로사항 300여 건을 해소하였다. 또한, 공유경제 활용, 중소기업 인증제도 개선 등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규제부담을 완화하였다.

이러한 규제혁신 추진을 위해, 2019년도에 마련한 적극행정 제도를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데 집중하였다. 적극행정은 사전컨설팅, 면책제도 등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일선 현장의 공무원들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또한 국무총리 현장대화, 목요대화, 민관 규제혁신정책협의회 개최 등 현장·학계·이해관계자와의 다양한 소통채널을 구축하여 국민·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하였다.

2020년도 기관별 평가에서는 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차에 맞는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고 적극행정을 통해 코로나19에 신속하게 대응했던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평가되었다.

장관급 기관에서는 규제샌드박스 운영 등 신산업 관련 기반 조성(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금융위원회), 코로나19 적극·신속 대응(보건복지부), 국민생활불편 해소(농림축산식품부)를 추진한 기관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차관급 기관에서는 코로나19 적극·신속 대응(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조달청), 국민생활 밀접분야 규제혁신(경찰청)을 추진한 기관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상대적으로 기관 공통과제에 대한 이행실적이 저조하고, 규제개혁 건의에 대한 수용률이 낮은 기관이 미흡한 기관으로 평가되었다. 장관급 기관으로는 법무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가, 차관급 기관으로는 문화재청,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미흡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표 2-1-56〉 2020년도 규제혁신 부문 평가결과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A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기업벤처부, 금융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조달청, 경찰청
B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소방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C	법무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재청, 원자력안전위원회

(3) 정부혁신

① 개요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대응성과를 관련 지표에서 비중있게 평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 성과 중심 평가를 강화하였다. 이를 위해 국민체감도 평가의 비중을 더욱 확대('19년 10점 → '20년 15점)하고, 단순 실적 지표를 줄여 성과지표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간소화('19년 세부평가 지표 53개 → '20년 33개)하였다. 또한 비대면 서비스, 스마트한 업무환경 등 포스트 코로나 대비 노력·성과를 지표에 반영하는 등 일하는 방식에서의 정부혁신 평가를 실시하였다.

② 대상

정부업무평가 대상기관인 4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③ 방법

학계·연구원·시민단체·컨설턴트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정부혁신 평가단과 지표 담당 기관 평가단(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등)을 통해 서면평가 중심으로 평가하였고, 정부혁신 평가단에서 지표담당 기관의 평가결과에 대한 메타평가를 실시하여 등급 배분 기준의 합리성, 평가과정의 관대화·가혹화 여부 등을 점검하였다.

평가항목은 혁신역량, 혁신성과, 국민체감도 분야로 구성되었다. 국민체감도 부문은 200명 규모의 국민평가단을 공개 모집으로 구성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하였고, 광화문 1번가를 통하여 일반 국민들이 직접 중앙행정기관의 정부혁신 성과를 온라인으로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2-1-57〉 2020년도 정부혁신 부문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 지표	배점
기관의 혁신역량(7)	• 기관장의 혁신 리더십, 혁신학습활동 실적	7
혁신성과(78)	• 균형인사, 혁신지향 공공조달,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실적	19
	• 정책과정 국민참여 확대, 공공자원 개방, 협업 실적	25
	• 기관 신뢰도 및 청렴도, 성평등 기여도, 정부24 공공서비스 목록 현행화, 일하는 방식 혁신 실적	28
	• 적극행정 추진 실적	6
국민체감도(15)	• 국민평가단 및 일반국민 혁신성과 체감도	15

④ 결과

전례없는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도 디지털 기반 스마트 업무환경을 구축하고, 단순·반복 업무 자동화 등 행정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OECD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종합 1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창출하였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전, 한국’ 사업 등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 해결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기관 간 협업 및 민·관 협력을 통해 국민 체감형 성과를 창출하였다.

다만, 국민이 선호하는 모바일 기반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고,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공공서비스 공급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평가결과 장관급 기관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차관급 기관에서는 경찰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정부혁신 추진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58〉 2020년도 정부혁신 부문 평가결과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A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산림청, 특허청
B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보보훈처,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법제처,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C	통일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방위사업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

(4) 정책소통

① 개요

코로나19 위기관리에 소통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대응성과를 평가에 반영하고, 지표 폐지 및 자료제출 축소로 피평가기관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언론보도 성과와 소통활동 우수사례 등 정성평가 시 코로나19 대응성과를 중점 고려하였으며 소통계획 수립 및 이행도, 정례브리핑, 정책기자단 활용 등의 평가지표는 폐지하고, 소통활동 우수사례 평가 자료제출을 분기에서 반기로, 기관장 언론 및 현장소통 성과는 월별에서 분기로, 디지털 활동 캠페인 성과는 반기에서 연말로 축소하여 피평가기관의 부담을 경감하였다.

② 대상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③ 방법

분야별 민간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 등으로 ‘민관합동 정책소통 평가단’이 구성되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평가지표의 특성에 따라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병행하였으며 분기와 반기별 등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연말 종합평가에 반영하였다.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는 다음과 같다.

〈표 2-1-59〉 2020년도 정책소통 부문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지표	비중
정책소통 활동	주요정책협의	협의회 참여도, 사전협의 참여도	16
	언론소통활동	일일보도관리	
정책소통 성과	언론소통성과	언론보도 및 소통활동 성과, 외신소통활동 성과	59
	온라인소통성과	기관 SNS 활동 성과, 디지털 활동성과, 온라인이슈관리	
	기관장소통성과	언론 및 현장소통 성과, 위기상황 이슈관리	
	보유매체 등 활용성과	보유매체 활용성과, KTV 활용성과	
정책소통 체감도	소통만족도	소통 만족도(여론조사)	25
	온라인체감도	빅데이터 분석	

④ 결과

코로나19 상황에 대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중앙방역대책본부 차원의 공식 브리핑을 연 536건 실시하는 등 투명하고 신속한 소통을 통해 국민들의 협조를 얻을 수 있었고, 각국으로부터도 모범적인 대응국가로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 및 경제지원 대책 등 범정부 현안에 대해 주기적·상시적 소통협의체 운영과 유기적 협력 소통 강화로 대응력을 제고하였다. 이로 인해 마스크 5부제, 생활 속 거리 두기 방역지침 등 K-방역에 대해 국내외 호평을 받았으며, 재난지원금·고용유지지원금 등 민생 대책 협업·홍보를 통하여 민생 대책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민간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한 국정과제 인지도 조사결과, 코로나19 방역대책은 99.7%, 경제지원 정책은 97.3%로 나타났다.

온라인 국민 참여 확대 및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소통도 강화되었다. 쌍방향 콘텐츠 활성화

화로 국민의 관심을 높였으며, 국민만족도 조사에 소통부분을 포함하여 조사함으로써 측정 과정과 응답 인원수를 확대하였다. 또한, 전년 대비 구독자는 유튜브 84.7%, 페이스북 8.5%, 블로그 28%, 트위터 5.8%, 인스타그램이 132.9% 증가하고, 조회수는 유튜브 37.1%, 페이스북 82.9%, 트위터가 44.7% 증가했다.

그러나 미디어 환경과 뉴스 소비 행태 변화에 따라 일일 정책이슈에 대한 선제적 조치 및 온·오프라인을 망라한 신속 대응과 코로나 이후 대비, 한국판 뉴딜, 탄소 중립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종합 홍보 기획, 정부 광고, SNS 채널 운영 등에서 소통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개선·보완사항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1-60〉 2020년도 정책소통 부문 평가결과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A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경찰청, 산림청
B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관세청, 통계청, 병무청, 소방청, 문화재청, 특허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해양경찰청, 원자력안전위원회
C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방위사업청, 농촌진흥청, 새만금개발청

(5) 기관종합평가

① 개요

43개 중앙행정기관의 2020년도 업무추진 성과를 일자리·국정과제(65점), 규제혁신(1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15점) 등 4개 부문으로 평가하고, 이를 기관별로 종합·발표하였다.

② 결과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 두 그룹으로 나누어 기관별 등급을 3단계(A등급 30%, B등급 50%, C등급 20%)로 부여하였다. 장관급 기관 중에서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가 A등급을 받았고, 차관급 기관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조달청,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이 A등급으로 평가받았다.

2020년도에는 중대본 등을 운영한 코로나19 방역 관련 기관(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식품의약품안전처)과 경제위기 대응 및 Post-코로나 대비 기관(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표 2-1-61〉 2020년도 기관종합평가 결과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A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조달청,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B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세청, 통계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특허청, 해양경찰청
C	통일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공정거래위원회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

2) 2021년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회복을 위한 기관별 성과를 평가에 비중있게 반영하였다. 또한 각 기관의 적극행정을 독려하기 위해 적극행정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대상기관도 질병관리청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신설로 기존 43개에서 45개로 증가하였다.

(1) 일자리·국정과제

① 개요

일자리·국정과제와 함께 코로나19 위기극복, 탄소중립, 한국판 뉴딜 등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각 기관별 대응 노력을 평가에 반영하였다.

② 대상

정부조직개편으로 질병관리청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이 45개(장관급 24개, 차관급 21개)로 증가하였다. 45개 중앙행정기관의 100대 국정과제에 대한 이행노력과 성과를 평가하였다. 주관 국정과제가 1개 이하이거나 일자리 과제 추가 선정이 필요한 28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주요정책과제(64개)를 선정하여 국정과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하였다.

〈표 2-1-62〉 2021년도 일자리·국정과제 평가대상기관

구 분	기 관 명 (직제순)
장관급 (24개)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차관급 (21개)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질병관리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해양경찰청, 원자력안전위원회

③ 방법

2021년도는 문재인 정부 5년차인 만큼 실질적 성과와 국민 체감도를 중점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평가항목 중 이행노력을 축소하고, 정책효과와 국민만족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국정현안 대응노력에 가점(5점)을 두어 코로나19 위기극복, 탄소 중립, 한국판 뉴딜 등 국정과제 이외의 현안에 대한 기관별 대응노력을 평가하였다.

분야별 민간전문가 100명으로 구성된 '일자리·국정과제 전문가 평가단'이 정책효과에 대한 정성평가를 실시하고, 일반국민 17,550명 대상으로 과제별 정책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국민만족도에 반영하였다.

〈표 2-1-63〉 2021년도 일자리·국정과제 부문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지표	비중
이행 노력	• (계획이행도) 연초 수립한 이행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했는지 평가	25
	• (성과창출 노력) '투입노력', '일하는 방식 개선', '기관장 노력', '갈등관리 노력' 등 국정성과 창출을 위해 기관이 추진한 노력 평가	
목표달성도	• (성과 목표 달성도) 사전에 설정된 성과지표의 연간 목표치를 달성했는지 평가	25
성과	• (당초 의도한 효과) 과제별 정책목표·기대효과 달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35
	• (장기적 효과) 정책효과의 지속가능성, 향후 기대효과 등 정책의 장기적 효과의 크기 및 중요성 등 평가	
국민 만족도	• 과제별 정책성과 및 효과에 대한 만족도	15

※ 국정현안 대응 가점(5점) : 기관의 국정현안과 관련된 선제적 조치, 위기 적시대응, 혁신적 정책시행, 기관 간 협업, 기관장 노력 등에 대해 평가

④ 성과지표

2021년도에는 문재인 정부의 5년차로 이미 완료된 실천과제 등을 고려하여, 실천과제와 연계한 지표 대신 국정과제별로 대표성 있는 지표를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3월부터 4월까지 약 2개월간 민간전문가와 공동으로 성과지표 검토 T/F를 운영하여, 기 완료과제 등 정량적 측정이 어려운 과제를 제외한 총 93개의 국정과제에 대해 419개의 성과지표, 62개의 주요정책과제에 대해 228개의 성과지표 선정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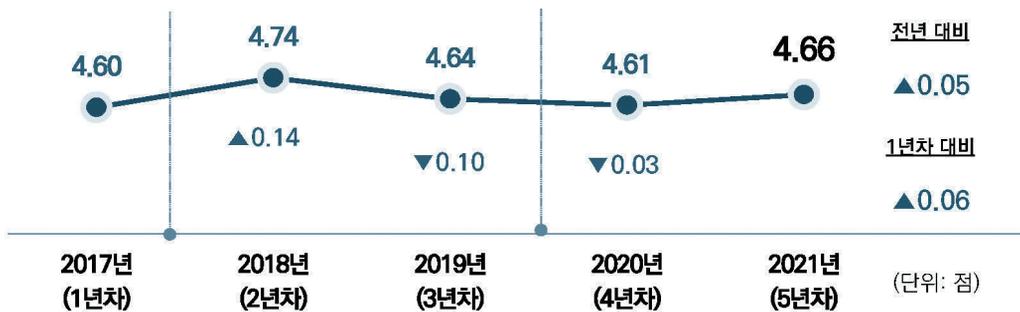
각 기관의 이행노력을 이끌어내는 것을 주안점으로 두고 산출지표를 33.4%에서 83.3%로 확대하여 기관의 국정과제 성과 창출을 견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시 적극성 등을 고려하여 지표의 적극성 평가를 별도로 하지 않고 각 지표의 3년간 실적을 참고하여 달성여부를 5단계로 평정하였다.

⑤ 만족도 조사 결과

2021년도 국민만족도 조사는 과거년도와 결과 간 비교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조사방법, 조사항목, 표본크기 등을 가능한 유지하였다.

국정과제(100개), 주요정책과제(64개)에 대한 일반국민, 정책수요자의 만족도를 조사하였으며, 전체 국정과제 만족도 평균은 4.66점으로 전년대비 0.05점 상승하였다.

〈표 2-1-64〉 2021년도 국민만족도 조사결과



⑥ 결과

2021년도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가운데, 정부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백신 확보와 신속한 접종 등을 통해 방역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손실보상 등 포용적 민생회복에 주력한 점이 높게 평가되었다.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역대 최고의 수출액을 달성하는 등 국제 경제질서의 변동 속에도 성공적으로 대응한 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한 점 등이 주요 성과로 꼽혔다.

다만, 앞으로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 및 일상회복과 함께, 물가상승·가계부채 등 경제 리스크에 대한 관리 강화, 국정과제의 성공적 마무리 등을 위해 계속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다.

2021년도에는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 두 그룹으로 나누어 기관별 등급을 A등급(30%), B등급(50%), C등급(20%)으로 부여하였다. 장관급 기관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가 A등급을 받았고, 차관급 기관 중에서는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산림청, 질병관리청, 해양경찰청이 A등급을 받았다.

〈표 2-1-65〉 2021년도 일자리·국정과제 부문 평가결과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A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산림청, 질병관리청, 해양경찰청
B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사혁신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소방청, 문화재청, 특허청, 기상청
C	통일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

(2) 규제혁신

① 개요

2021년도 규제혁신 평가는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한 기술발전과 사회변화에 발맞춘 각 중앙행정기관의 규제혁신 노력 및 성과를 점검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특히, 규제혁신 핵심분야인 신산업 분야에서 규제샌드박스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노력도 등 주요 과제를 평가하는 한편, 경제활력 제고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정비 노력·성과 및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소통·홍보 노력, 규제개혁 만족도에 대한 평가도 지속하였다. 또한, 규제일몰제, 규제비용관리제 등 규제품질 제고 노력도에 대한 평가를 확대하여 신설·강화·존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다.

② 대상

규제혁신 평가는 정부업무평가 대상기관 중 기관별 규제정비 종합계획상 정비과제수, 규제심사 건수, 기관의 업무 성격 등을 고려하여 10개(외교부, 통일부,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법제처, 통계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기관을 제외한 3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35개 기관을 장관급 기관(21개)과 차관급 기관(14개)로 구분하였으며, 2개 분과(장관급, 차관급)로 나누어 1년간의 규제혁신 실적과 성과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표 2-1-66〉 2021년도 규제혁신 평가대상기관

구 분	기 관 명
장관급 (21개)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차관급 (14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질병관리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원자력안전위원회

③ 방법

평가항목은 크게 규제혁신 노력·성과 60%, 규제혁신 제도운영 30%, 규제혁신 국민체감도 10%로 구성하였다. 규제혁신 노력·성과 항목에는 규제샌드박스 신청과제 수용실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실적 등 신산업 혁신성과와 민생분야 규제정비 성과 등이 포함되었다. 규제혁신 제도운영 항목에는 국민소통 노력과 규제챌린지 추진성과 및 규제비용관리제, 일몰규제 정비 등을 포함한 규제 전주기 관리 실적을 평가하였다.

규제혁신 추진에 현장·수요자의 입장을 반영하고, 평가의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관합동 규제혁신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였으며,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는 전문 리서치 기관을 활용하였다.

〈표 2-1-67〉 2021년도 규제혁신 부문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 지표
규제혁신 노력·성과 (60)	신산업 규제혁신 노력·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제샌드박스 신청 과제 수용 규제샌드박스 승인과제 사후관리 및 제도발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신산업 현장으로 건의 수용 그 밖의 신산업 규제혁신
	신산업 규제혁신 효과	기업·국민의 규제혁신 체감도,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
	민생 규제혁신 노력·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제신문고 건의 수용 지역민생규제 정비 기업 건의 수용
	민생 규제혁신 효과	규제정비계획, 국민불편부담 규제정비, 행정조사 정비 등의 성과 및 체감도 등

평가항목		평가 지표
규제혁신 제도 운영 (30)	국민소통 및 규제챌린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소통(홍보) 실적 및 노력도 • 규제챌린지(입증책임제 포함) 추진성과
	규제 전주기 관리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품질 강화 노력 및 성과 • 규제영향분석 충실성 및 소통 강화 • 규제사후정비 노력 및 성과
규제혁신 국민 체감도(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

④ 결과

2021년도 규제혁신의 중점과제는 새롭게 도입한 규제혁신 플랫폼을 내실화하고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었다. 주요 성과로는 규제샌드박스 신규승인 및 안전성 검증과제 제도화를 통해 신산업 육성에 기여하고 입법방식 유연화(네거티브 규제전환)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자율운항선박 로드맵, 자율주행차 로드맵 2.0 등 미래 유망 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한 점을 들 수 있다.

2021년도 규제혁신의 또다른 주요과제는 국민불편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을 해소하는 것이었다.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주민과 지역기업의 건의사항을 개선하였으며, 규제 개혁신문고 운영을 통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규제애로를 해소하였다. 또한, 공장입지 규제개선, 온라인 행정서비스 및 영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업지원 규제개선 등을 통해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기업의 규제부담을 완화하였다.

2021년도 기관별 평가에서는 규제샌드박스, 신산업 규제혁신 로드맵, 규제 챌린지 등 각 제도별 성과를 확대하고, 신산업 핵심규제 및 기업활동과 국민생활 전반의 불편·부담규제 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평가되었다.

장관급 기관에서는 규제샌드박스 운영, 로드맵 구축 등 신산업 관련 기반 조성(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신산업·민생 핵심분야 규제정비(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를 추진한 기관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차관급 기관에서는 신산업·민생 핵심분야 규제 정비(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샌드박스 성과창출 지원(조달청, 특허청), 로드맵 구축 등 신산업 관련 기반 조성(해양경찰청)을 추진한 기관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반면, 상대적으로 규제비용관리제 등 규제전주기 관리가 저조하고, 규제개혁에 대한 적극적 과제발굴 노력이 부족한 기관이 미흡한 기관으로 평가되었다. 장관급 기관으로는 법무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가, 차관급 기관으로는 소방청, 기상청,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미흡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표 2-1-68〉 2021년도 규제혁신 부문 평가결과

구분	장관급 기관(21개)	차관급 기관(14개)
우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달청, 특허청, 해양경찰청
보통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질병관리청
미흡	법무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소방청, 기상청, 원자력안전위원회

(3) 정부혁신

① 개요

2021년도는 본격적인 정부혁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정부혁신 성과 중심으로 평가를 전환하였다. 그간의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 전략(혁신적 포용행정,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유능한 정부) 중심에서 2021년도에는 보다 구체화된 주요 과제(참여와 협력, 국민체감 공공서비스, 일하는 방식 혁신)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재편하였다. 또한, 혁신성과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단순 정량지표를 축소하고 성과지표 중심으로 대폭 간소화(‘20년 28개 → ’21년 14개) 하였고, 일하는 방식 부문에서는 조직문화 혁신 성과지표를 신설하였다.

② 대상

신설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질병관리청을 포함하여 45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③ 방법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정부혁신 평가단과 지표 담당 기관 평가단(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조달청 등)을 통해 서면평가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평가항목은 혁신역량, 혁신성과, 국민체감도 분야로 구성하였다. 2021년도에는 그간의 정부혁신 성과가 축적됨에 따라, 기관이 자율적으로 선정한 다년도 기관별 대표 혁신 성과도 별도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표 2-1-69〉 2021년도 정부혁신 부문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 지표	비중
기관의 혁신역량	• 기관장의 혁신 리더십, 혁신학습활동 실적	10
혁신성과	• 균형인사, 혁신지향 공공조달,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실적	20
	• 정책과정 국민참여 확대, 공공자원 개방, 협업 실적	25
	• 기관 신뢰도 및 청렴도, 성평등 기여도, 정부24 공공서비스 목록 현행화, 일하는 방식 혁신 실적	20
	• 기관의 대표 혁신 누적 성과	10
국민체감도	• 국민평가단 및 일반국민 혁신성과 체감도	15

④ 결과

2021년도에는 국민비서 ‘구삐’ 등 디지털 기반 비대면 공공서비스 혁신을 가속화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정책과정에 국민참여를 확대한 성과가 있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를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복지멤버십’ 등 포용적 공공서비스가 확대된 성과도 있었다. 그리고, 조직문화를 자율적으로 개선하고 데이터기반 행정체계를 구축하는 등 일하는 방식이 개선되었다고 평가되었다.

다만, 국민이 직접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실질적 국민참여 프로세스를 확대하고 개방하는 공공데이터의 품질과 활용 수준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평가결과, 장관급 기관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등이, 차관급 기관에서는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산림청 등이 정부혁신 추진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2-1-70〉 2021년도 정부혁신 부문 평가결과

구분	장관급 기관(24)	차관급 기관(21)
A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청, 경찰청, 산림청, 기상청
B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제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병무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특허청, 질병관리청, 해양경찰청
C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통일부	방위사업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

※ 정부혁신 평가주관 기관(행정안전부)은 등급 산정에서 제외

(4) 정책소통

① 개요

코로나19 대응과 Post-코로나를 대비한 정책소통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로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 소통성과와 국민 체감도를 중점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주요정책 언론보도 및 성과, 누리소통망(SNS) 채널 운영 실행 성과, 국민기자단 활용성과 지표를 신설하였다. 아울러, 정책 현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기관협업 활성화 등 적극적인 소통 활동 강화를 위한 평가지표도 개선하였다. 일일 보도대응 및 온라인 현안대응 정량지표는 축소하고 일일 보도 대응 반영 사례 및 온라인 현안 신속대응, 기관협업 캠페인 활동실적 관련 지표를 신설하였다. 전년도와 같이 평가자료 제출 최소화로 평가에 따른 각 기관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② 대상

2020년도에 신설된 2개 기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질병관리청)을 추가하여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③ 방법

분야별 민간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 등으로 '민관합동 정책소통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평가지표의 특성에 따라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병행하였으며 분기와 반기별 등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연말 종합평가에 반영하였다.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는 다음과 같다.

〈표 2-1-71〉 2021년도 정책소통 부문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지표	비중
정책소통 활동	주요정책협의	협의회 참여도, 사전협의 참여도	14
	언론소통활동	일일보도대응	
정책소통 성과	언론소통성과	언론보도 및 소통활동 성과, 외신소통활동 성과	63
	온라인소통성과	누리소통망 활동성과, 디지털캠페인 성과, 온라인 현안대응	
	기관장소통성과	언론 및 현장소통 성과, 위기상황 이슈관리	
	보유매체 등 활용성과	보유매체·KTV 활용성과, 국민과 함께하는 소통성과	
체감도	소통만족도	소통만족도, 갈등 소통	23
	온라인체감도	빅데이터 분석	

④ 결과

코로나19 위기관리와 주요정책의 성과확산을 위하여 기관장 주도의 적극적인 대국민 소통과 범정부 현안에 대한 기관협업이 강화되었다고 평가되었다. 기관장 활동 월평균 실적은 장관급 기관 24.9회로 전년 대비 10.2% 증가하고 차관급 기관은 12.9회로 전년 대비 3.2%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다. 코로나19의 단계적 일상회복과 탄소중립 등 범정부 현안에 대한 주기적·상시적 소통협의체를 운영하고 유기적 협력 소통이 강화되었으며 주요 정책발표 사전협의 실적은 2020년도 212건에서 2021년도 281건으로 전년 대비 3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디지털소통 다각화로 국민참여 소통을 확대한 성과도 있었다. 국민 참여형 캠페인과 인플루언서와의 협업 강화로 긍정적인 반응을 확산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활용하여 국민소통을 확대하였다. 2020년도 대비 구독자가 유튜브 53.1%, 페이스북 12.3%, 인스타그램 54.2% 증가하였다.

그러나, 주요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증가와 외신홍보 여건의 다변화에 따라 기관별 핵심 성과 중심으로 외신홍보를 강화하고 사회 다변화에 따른 융복합 정책과제가 지속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정책소통 방식도 전략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기관별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1-72〉 2021년도 정책소통 부문 평가결과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A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산림청, 특허청, 질병관리청
B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소방청, 문화재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해양경찰청
C	통일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위사업청, 농촌진흥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

※ 정책소통 평가주관 기관(문화체육관광부)은 등급 산정에서 제외

(5) 적극행정

① 개요

2021년도에는 기관별 코로나19 대응노력과 성과, 중점과제 등 긴급하고 중요한 현안 대응과 관련된 사례를 중심으로 국민체감형 적극행정 추진상황을 평가하였다. 또한 기관 특성이 반영되도록 성과목표를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실질적 성과달성여부에 대한 지표를 정해 평가하였으며, 적극행정위원회·사전컨설팅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의 활용 및 우수공무원 선발,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였다. 이와 더불어 국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적극행정 체감도 역시 평가의 주안점이었다. 적극행정 체감도 평가배점은 전년도 20점에서 30점으로 조정하여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했던 것에서 공무원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였다.

② 대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③ 방법

평가지표 특성에 따라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병행하였다. 정량평가의 일부는 기관 자체적으로 설정한 목표 수준 달성 시 기본점수를 부여하고, 초과달성 시 달성 정도에 따라 상위점수를 부여하였다. 정성평가의 경우는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적극행정 및 정부 업무에 대한 이해와 평가 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가 등으로 '적극행정 종합평가단'을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적극행정 추진성과' 항목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별도 평가하여 그 점수를 합산하였으며, 적극행정 체감도에 대한 평가는 전문 리서치기관을 활용하였다.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2-1-73〉 2021년도 적극행정 부문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지표	비중
1. 적극행정 추진계획 수립	• 실행계획의 적정성, 제도개선 노력도	8
2.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	• 기관장 적극행정 이행노력도 • 적극행정 제도활용 실적(적극행정위원회, 사전컨설팅) •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부여 실적 • 교육 활성화 노력도 • 홍보 노력도	32
3. 적극행정 추진성과	• 중점과제 추진실적 제출 • 중점과제 적극행정 성과	30
4. 적극행정 체감도	• 국민 적극행정 체감도 • 공무원 적극행정 체감도	30
5. 기타(가점)	• 소극행정 자체적발·징계, 적극행정 경진대회 참여실적	각 +3

④ 결과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도입, 기관별 모니터링단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해 적극행정 추진과정 전반에 걸쳐 국민 참여가 확대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축적된 적극행정 추진 경험이 2050 탄소중립, 한국판 뉴딜 등 주요 국정현안에의 신속한 대응과 성과 창출로 확산되었으며, 적극행정이 필요한 도전적 과제를 기관 간 협업 및 민·관 협력으로 해결한 성과도 있었다.

이와 더불어 적극행정에 대한 국민체감도가 2019년도 61.6%, 2020년도 62.2%에 이어 2021년도에는 64.0%로 계속 상승하였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안전을 제외한 적극행정위원회 활용은 2019년도 42건, 2020년도 152건에 이어 2021년도 237건으로, 코로나19 이외의 사전컨설팅 처리 또한 2019년도 174건, 2020년도 151건에 이어 2021년도 219건이 이루어져 적극행정 제도 활용 또한 꾸준히 확대되었다. 우수공무원 선발 인원도 2019년도 294명, 2020년도 934명, 2021년도 1,700명,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 인원 또한 2019년도 85명, 2020년도 504명, 2021년도 1,149명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공무원의 적극행정 자발적 참여 유인이 증가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아직 적극행정에 대한 공무원의 두려움이 만연한 만큼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더 두텁게 하는 한편, 기관별로 처한 상황이나 특성에 맞게 일상 속 적극행정 실천 의지 제고를 위한 다양한 동기부여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국정현안 해결에 정부의 적극행정 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기관별 주요과제 추진과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개선해야 할 점도 지적되었다.

장관급 기관 중에서는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가 우수기관으로, 차관급 기관 중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병무청, 문화재청, 특허청, 질병관리청, 해양경찰청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주로 적극행정 추진성과 항목의 노력도와 목표달성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기관이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기관별 평가는 다음과 같다.

〈표 2-1-74〉 2021년도 적극행정 부문 평가결과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A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병무청, 문화재청, 특허청, 질병관리청, 해양경찰청
B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방위사업청, 소방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기상청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C	기획재정부, 통일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

(6) 기관종합평가

① 개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2021년도 업무성과를 일자리·국정과제(65점), 규제혁신(1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15점)과 적극행정 가점(3점)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이를 기관별로 종합·발표하였다.

② 결과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 두 그룹으로 나누어 기관별 등급을 3단계(A등급 30%, B등급 50%, C등급 20%)로 부여하였다. 장관급 기관 중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가 A등급을 받았고, 차관급 기관에서는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산림청, 질병관리청, 해양경찰청이 A등급으로 평가받았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19 대응, 탄소중립, 경제회복 기여 등 주요 국정 현안 대응에 노력한 기관이 대체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반면, 주요정책 성과에 대한 국민체감도가 낮거나, 규제개혁·정부혁신·정책소통 등 부문별 관리가 미흡하였던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표 2-1-75〉 2021년도 기관종합평가 결과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A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산림청, 질병관리청, 해양경찰청
B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사혁신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특허청, 기상청
C	통일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위사업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

2. 자체평가

가. 개요

자체평가는 중앙행정기관장이 스스로의 책임하에 소관 정책 및 사업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1) 개념

자체평가는 중앙행정기관장이 스스로의 책임하에 기관의 정책 및 사업 등을 평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자체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자율과 책임이라는 성과관리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이다.

2) 연도별 변화

자체평가는 주요정책, 재정사업, 행정관리역량 등 크게 3개 부문으로 나뉜다. 주요 정책 부문은 각 기관이 매년 수립하는 성과관리시행계획의 관리과제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이다. 재정사업 부문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재정사업에 관한 평가²⁾(이하 일반재정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R&D사업)에 관한 평가, 「재난안전사업법」에 따른 재난안전사업에 관한 평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사업평가로 다시 4개 부문으로 나뉘어 평가한다. 행정관리역량 부문은 기관의 정책과 서비스 수준에 영향을 주는 인사, 조직, 정보화 등 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주요 정책 부문은 1990년도부터 매년 실시하였으며, 재정사업과 행정관리역량 부문은 기획예산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 등에서 나뉘어 시행되다가 2006년도에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자체평가에 통합되었다. 2011년도에는 주요 정책과 재정사업을 통합하고, 행정관리역량 부문을 특정평가로 이관하였다가 2012년도에 다시 주요 정책, 재정사업, 행정관리역량 3개 부문으로 환원하였다.

2013년도, 2014년도에는 R&D사업 평가를 추가하여 주요 정책, 재정사업, R&D사업, 행정관리역량 4개 부문으로 나뉘어 평가하였다.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는 재정사업 관련 평가를 단일평가(통합 재정사업 평가)로 통합하였다가, 2018년도부터는 현재와 같이 주요정책, 재정사업, 행정관리역량 3개 부문으로 평가하되, 재정사업은 다시 일반재정, R&D, 재난안전, 균형발전 4개 부문으로 나뉘어 평가하고 있다.

2) 「국가재정법」에서는 “재정사업 자율평가”로 지칭

〈표 2-1-76〉 자체평가 부문 변동 현황

2017년		평가 시행 기관	2018년~2021년		평가 시행 기관	
부문	평가총괄 관련기관		부문	평가총괄 관련기관		
주요정책	국무조정실	중앙 행정 기관장 (자체 평가 위원회)	주요정책	국무조정실	중앙 행정 기관장 (자체 평가 위원회)	
통합 재정 사업	기획재정부		재정 사업	일반재정		기획재정부
				R&D		과기정통부
		재난안전		행정안전부		
		균형발전	균형발전위			
행정관리역량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행정관리역량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3) 평가결과 활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평가결과를 정책개선, 인사, 예산, 조직관리 등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또한, 각 중앙행정기관은 전년도 정책 및 사업 등에 대한 자체평가결과를 매년 3월 말까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자체평가 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결과 각 기관에서 실시한 자체평가의 결과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자체평가를 우수하게 운영한 기관에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자체평가가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4) 자체평가 추진 성과

자율과 책임이라는 성과관리 이념이 자체평가를 통해 구현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업무 특성에 맞는 평가지표와 방법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결과를 인사·보수와 연계하여 내부경쟁을 유도하는 등 자체평가를 통한 정부업무 성과제고를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각 기관의 평가를 담당하는 자체평가위원의 업무이해도를 높이고 평가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체평가위원회의 정책현장 방문 확대, 분과위원회 활성화 등의 노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자체평가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고 충실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기 및 연임

기준 마련, 직업군 구성의 다양화, 중복활동 기관 수 제한 등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의 적절성에 대한 관리 강화를 추진하였다. 자체평가 관대화 경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제별 상대등급화를 지속 추진하고 변별력 있는 평가지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정부 주요 정책의 성과제고를 위해 각 기관의 자체평가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진단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기관 간 우수사례 공유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자체평가 운영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나. 연도별 평가 내용 및 결과

1) 2017년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등을 성과관리 전략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기관별 목표와 정책수단을 설정하고, 추진실적을 중점 점검·평가하였다.

(1) 주요 정책 부문

① 개요

문재인 정부 출범에 따라 국정기조·국정과제와 자체평가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성과관리 시행계획상의 관리과제에 국정과제 등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고, 이를 자체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기관이 내실 있는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제도운영이 미흡한 기관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하고,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기관 내부 구성원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기관이 자체평가 결과를 확정하기 전 이의신청·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다.

② 내용

44개의 중앙행정기관이 자체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대상은 '성과관리시행계획상의 주요 정책과제'이다.

기관이 관대한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 목표치 적극성을 평가지표로 추가하였다. 평가결과 활용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성과제고·정책품질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미흡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미흡원인 분석과 이에 따른 정책대안을 제시하도록 하여 정책개선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각 평가제도 간 연계 강화를 위해 기관이 통합재정사업 평가 결과를 주요정책 추진상황 점검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③ 결과

각 기관의 자체평가에 따르면 비정규직 차별 해소 및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고용노동부),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우수과제로, 금융교육 강화(금융위원회), 외교·안보정책, 주요 외교 사안에 대한 연구 및 학술교류(외교부) 등이 미흡과제로 선정되었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자체평가의 객관성과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제도운영이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하고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2) 통합 재정사업 부문

① 개요

일반재정·R&D·지역사업 등 분야별 칸막이식으로 운영되던 재정사업 평가를 단일평가(통합 재정사업 평가)로 통합하였다. 이러한 통합을 바탕으로 사업 수행기관이 자율적으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메타(상위)평가 기관이 확인·점검한 결과를 재정운용에 활용하였다.

성과평가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평가지표 등 평가기준을 개선하여 운용하였다. 성과지표의 적정성은 성과계획서 작성 시 기획재정부에서 사전 검토를 거친 점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평가하되, 목표치 설정은 엄격히 평가하였다. 또한, 세부사업수와 무관하게 복수의 성과지표가 설정된 경우에도 부분점수를 부여하였고, 분기별 집행계획 준수에 대한 평가기준을 지침에 명시하는 한편,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실제 집행 실적을 평가하였다.

② 내용

예산, 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재정사업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선정한 후, 50개 기관에서 1,415개 사업(17년 예산기준 116.1조원)의 성과에 대해 자율적으로 평가하였다.

메타평가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발전위원회로 구성된 메타평가협의회에서 평가과정의 충실도, 평가 결과의 적정성, 지출구조 조정 계획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

였으며, 일반재정·R&D·지역발전의 분야별 평가를 종합하여 상·하위 10~20% 수준에서 메타(상위)평가 우수·미흡 기관을 선정하였다.

각 기관의 자체평가 수준이 계속 향상되어 기관의 자체평가 점수와 기획재정부 확인·점검 격차는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각 기관의 관대화 평가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기관내 사업에 대한 상대평가제도(‘우수’ 이상 사업비율 20% 이내, ‘미흡’ 이하 사업비율 10% 이상 의무화)와 감점제(기관 평가점수와 기획재정부 확인·점검 점수와의 차이가 20점 이상시 3점 감점)는 유지하였다.

③ 결과

2017년도 통합 재정사업평가 결과를 크게 자체평가 결과와 메타평가 결과로 나누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각 기관의 자체평가 결과, ‘우수’ 등급 238개(16.8%), ‘보통’ 등급 928개(65.5%), ‘미흡’ 등급 249개(17.6%) 사업을 선정하였다. 평가 결과 ‘미흡’ 또는 ‘보통’ 등급 사업을 중심으로 253개 사업에 대해서는 1조 1,940억원의 지출구조조정계획을 마련하였으며, ‘미흡’ 등급 사업 중 지출구조조정이 곤란한 66개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관리개선대책을 제시하였다.

한편 각 분야별 메타평가 평균점수는 모두 80점대 이상으로 ‘통합재정사업 평가지침’을 양호하게 준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메타평가 결과, 일반재정 분야에서 우수 기관 5개, 미흡 기관 3개를 선정하였으며, R&D와 지역사업 분야에서 우수 기관과 미흡 기관을 각 1개씩 선정하였다.

(3) 행정관리 역량 부문

① 개요

각 중앙행정기관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조직·인사·정보화 분야의 평가지표들로 구성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였다. ‘기관장의 관심도’, ‘평가체계 확산노력’, ‘전년도 평가결과 반영여부’ 항목은 외부 전문가가 평가하고, 그 외 항목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평가하였다.

② 내용

44개 중앙행정기관이 자체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기존 행정관리역량 평가지표가 조직, 인사, 정보화관리 등에 초점을 맞춘데 반해, 2017년에는 선택지표 항목을 도입하여 기관별 업무와 기능에

적합한 지표를 관리·평가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였다.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는 각 기관별 자체 평가제도의 ‘운영의 충실성’, ‘평가결과의 객관성’, ‘환류의 적절성’을 점검하여 우수·보통·미흡기관으로 등급화하였다.

③ 결과

운영실태 점검 결과, 자체평가 운영 수준을 나타내는 ‘운영의 충실성’ 및 ‘평가결과의 객관성’ 점수는 80.5점으로 전년도(75.1점)에 비해 높아졌으며, 44개 기관을 우수(8개), 보통(29개), 미흡기관(7개)으로 구분하였다. 각 기관이 제출한 조직·인사·정보화 분야별 우수사례 중 성과 연계성 및 지표 달성도 등을 분석하여 25건을 선정하였고, 각 기관에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자체 행정관리역량 강화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2) 2018년

통합재정사업 부문의 자체평가가 일반재정, R&D, 재난안전, 균형발전 등 4개 하위 부문으로 세분화되었다. 특히 일반재정부문은 자체평가 중심의 평가제도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기존 메타평가 방식은 폐지하였다.

(1) 주요 정책 부문

① 개요

평가대상과 방법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운영하였으나, 미흡과제의 원인에 대해 심층적 분석을 실시하고 환류과정을 점검하여 평가결과를 활용한 실질적 성과개선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다.

② 내용

44개의 중앙행정기관이 자체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대상은 ‘성과관리시행계획상의 주요 관리과제’였다.

전년도처럼 성과지표의 목표치 적극성을 평가지표에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도전적인 목표설정이 기관 내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미흡과제에 대해서는 미흡원인에 대해 다면적·심층적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정책개선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특히 환경적 요인 이

외에도 인력(업무량)·조직(구조) 등 다차원적인 원인분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침을 제시하고, 진단 결과를 통해 정책개선 전략뿐만 아니라 조직(개편계획)·인사(성과급·보상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하였다.

③ 결과

44개 중앙행정기관의 1,940개 관리과제에 대한 성과지표는 4,267개였고,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도는 평균 97.4%였다. 각 기관의 자체평가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 지원(행정안전부), 성폭력피해자 보호제도 개선(여성가족부) 등이 우수과제로, 지역사회 통일교육 체계화(통일부), 불공정약관시정(공정거래위원회) 등이 미흡과제로 평가되었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2018년도에도 자체평가의 객관성과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관세청, 통계청 등 제도운영이 우수한 12개 기관을 포상하였다. 또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제도운영 우수사례를 다른 기관에 전파하였다.

(2) 일반재정사업 부문

① 개요

기관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체평가 중심으로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메타평가 방식을 폐지하였다. 또한 기관단위의 자율적 환류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미흡사업에 대한 기계적·일률적인 지출구조조정 계획 수립을 폐지하고 사업부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출구조조정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평가결과 미흡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성과제고를 위한 환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② 내용

예산, 기금이 투입되는 전체 성과관리대상 재정사업에 대해 각 기관과 기획재정부가 협의하여 선정한 결과, 49개 기관에서 총 1,214개 사업('17년 예산기준 160.9조)이 선정되었으며, 해당 사업의 2017년도 실적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평가과정은 사업 수행부처에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소관 재정사업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하되, 자체평가지표는 사업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자체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도록 하였다.

자체평가 결과는 평가지표별 점수를 종합하여 3단계(우수/보통/미흡)로 등급화하고 '사업 수 기준'으로 상대평가 비율(우수 20% 이하, 보통 65% 내외, 미흡 15% 이상)에 따라 산출하였다.

③ 결과

기관 자체평가 결과 등급별 비율은 우수 18.3%(223개), 보통 65.6%(796개), 미흡 16.1%(195개)로 나타났으며, 전체 미흡사업 195개 중 40개 사업에 대해서는 지출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고, 나머지 155개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관리개선 계획을 수립하였다.

〈표 2-1-77〉 2018년도 재정사업 자율 평가결과

구분	합계	우수	보통	미흡
사업 수(개)	1,214	223 (18.3%)	796 (65.6%)	195 (16.1%)
예산('17년, 조원)	160.9	55.4 (34.4%)	87.8 (54.6%)	17.7 (11.0%)

지출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한 40개 사업의 경우 2018년도 예산액 17,213억원 대비 14.4% 수준인 2,473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성과관리개선 계획을 수립한 155개 사업에 대해서는 미흡사업의 사업구조 재설계, 매월 집행실적 관리, 집중 홍보, 지침 개정 등을 추진하였다.

(3) R&D사업 부문

① 개요

R&D특성 반영 및 연구몰입을 위한 R&D성과평가를 기본방향으로 하여 R&D사업의 고유특성을 고려한 질적 우수성 중심의 성과평가를 실시하였다. 또한, 기관의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수행 기간 중 1회만 중간평가를 받도록 추진하였다. 평가지표는 일반사업인 경우, '성과우수성', '성과분석' 중심으로, 시설장비인 경우에는 '계획', '관리' 중심으로 간소화하여 실효성이 높은 지표로 구성하였다. 연구자 중심의 평가체제를 현장에 착근하기 위해 책임평가위원회 실시정도에 따라 가·감점을 부여하고, 질적 성과 제고를 위해 과제단위에서 질적 지표 활용, 일자리 창출지원을 위해 일자리 지표 설정을 권고·유도하였으며, 그 비중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여 국정과제 이행을 촉진하였다.

② 내용

상위평가 대상사업은 17개 기관이 2017년도에 실시한 99개의 국가 R&D사업으로 하되, 인건비 등 경상적 행정경비, 출연(연) 지원금, 평가관리 및 정책연구 등 평가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하고 최근 3년간 연평균 30억원 이하 소액사업은 자체평가만 실시하였다.

〈표 2-1-78〉 2018년도 R&D사업 부문 평가대상

구분	기관수	사업수	예산규모
R&D사업	17개	99개	4조 3,347억원

2018년도에는 2017년도의 평가체계 대비 가감점 기준을 개선하여 일자리 지표 설정비중(1점 가점), 과제평가 표준지침 이행도(2점 가점 상향), 책임평가위원회 실시율(1점 가점)을 추가하였으며, 과거 평가결과 미반영에 대한 감점을 3점으로 확대하였다.

③ 결과

평가대상 국가연구개발(R&D)사업의 전체 평균점수는 76.0점으로 전년도(72.6점)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다. 등급별로는 우수 이상 27.3%, 보통 69.7%, 미흡 3%로 과거 2개년도('15년, '17년) 대비 우수 사업 비율이 13.5% 증가하였고, 미흡 사업비율은 8.9% 감소하였다. 평가부문별로는 일반사업에서는 각 지표별 만점을 100점으로 환산 시, 성과목표 달성도가 94.3점으로 가장 높았고, 종합적 성과분석 74.5점, 대표성과 72.1점, 종합적 연구성과 59.2점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장비사업은 각 지표별 만점을 100점으로 환산 시, 성과목표 달성도가 86.9점으로 가장 높았고, 사업관리2(모니터링 및 개선)는 77.8점, 사업관리1(시설·장비의 구축 및 등록)은 66.7점 순으로 나타났다. 평가결과는 해당 기관 및 R&D 예산 배분·조정 부서에 통보되어 2019년도 예산 편성 및 제도 개선 등에 활용되었다. '우수' 사업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예산을 증액하고, '미흡' 사업은 전년대비 10% 이상, '매우 미흡'의 경우에는 최소 전년대비 20% 이상 삭감되도록 예산과 연계하였다. 또한 평가결과 우수 사업의 연구자 및 연구지원자(행정원)에게는 훈·포장 등을 수여하였다.

(4) 균형발전 부문

① 개요

지원계정(기관직접편성) 사업 평가는 성과평가 강화를 위해 메타평가에서 직접평가로 전환하였고, 자율계정(지자체자율편성) 평가는 지역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상위평가에서 메타평가로 전환하고, 부적절 시·도에 대한 사업별 재평가(상위평가)는 폐지하였다. 다만, 시·군·구 자율편성사업평가는 기존의 직접평가 체제를 유지하였다.

② 내용

지원계정 사업에 대해 개별사업과 균형발전정책과의 부합성 여부 및 사업목표 달성도 측정 등 성과평가를 강화하였고, 사업내용 및 체계를 점검하여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등 사업체계 개편을 유도하는 구조점검을 실시하였다. 자율계정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평가 시 사전에 설정·점검한 포괄보조사업별 성과지표(공통, 핵심지표)를 적용하여 성과중심의 평가체계를 강화하였다.

③ 결과

총 76개 지원계정 사업 평가점수는 평균 75.9점이며, 평가등급 우수 이상이 28.9%(22개), 보통이 50.0%(38개), 미흡 이하가 21.1%(16개)로 나타났다. 자율계정 사업은 시도 자체평가에 대한 균형위의 상위평가에서 메타평가 체계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사업의 자체평가 결과는 그대로 수용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17개 시·도가 수행한 자체평가의 적절성을 점검하였다.

자체평가 결과 17개 시·도의 총 402개 사업 중 우수 15.7%(63개), 보통 62.9%(253개), 미흡 21.4%(86개)로 등급배분비율을 준수하였다. 17개 시·도의 메타평가 평균 점수는 80.6점으로, 시·도의 자체평가는 대체로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시·군·구의 자율편성사업은 총 475개 사업을 평가한 결과 평균점수는 71.2점, 5개 포괄보조사업별 평가점수는 일반농산어촌개발 81.0점,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70.9점, 특수상황지역개발 65.7점, 소하천정비 69.0점, 성장촉진지역개발 61.2점으로 나타났다.

(5) 재난안전사업 부문

① 개요

각 기관에서 자율평가를 실시하여 소관 사업에 대해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자율평가 결과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 메타평가를 진행하였다. 메타평가는 성과보고서 및 평가결과 제출기한,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상대평가 비율 준수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점수를 부여했다.

같은 성과보고서를 기반으로 행정안전부에서 피해유형별 종합평가를 실시하였고, 자체평가 및 행정안전부 평가 결과 모두 '우수' 또는 모두 '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에서 상·하위 10% 사업을 선정하였다.

② 내용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안전분야의 재정사업자율평가를 단독으로 추진한 첫해에는 23개 중앙행정기관이 평가를 받았다.

피평가기관에서는 사업관리의 적절성, 계획된 목표 달성 정도, 사업성과의 우수성, 가점 지표인 재난안전관리의 정책적 중요도 등 총 4개의 지표를 기관별 자체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104점 만점으로 평가하였다.

행정안전부에서는 14개반 42명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계획된 목표 달성 정도, 사업성과의 우수성, 재난안전관리의 정책적 중요도 등 총 3개의 지표에 대해 100점 만점으로 34개 피해유형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다.

자체평가에서는 기관 소관 재난안전 사업 수를 기준으로, 행정안전부 평가에서는 피해 유형 내 사업 수를 기준으로 우수(20% 이하), 보통(65% 내외), 미흡(15% 이상) 3단계로 등급을 도출하였다.

③ 결과

2018년도 23개 중앙행정기관의 280개(10.5조) 사업 평가결과, 자체평가에서는 우수 51개(18.2%), 보통 175개(62.5%), 미흡 45개(16.1%)로, 행정안전부 평가에서는 우수 52개(18.6%), 보통 167개(59.6%), 미흡 49개(17.5%)로 나타났다.

상대평가 등급 배분 시 자체평가에서 기관 소관사업 수를, 행정안전부 평가에서는 피해유형별 소관 사업 수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등급 비율이 다르게 도출되었다.

기관 자체평가 결과 크게 세 개의 분류체계로 보면 첫 번째 자연재난 분야는 우수 14개, 보통 38개, 미흡 6개로, 두 번째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분야에서는 우수 34개, 보통 107개, 미흡 30개로, 세 번째 재난안전일반 분야에서는 우수 3개, 보통 30개, 미흡 9개의 결과를 보였다.

행정안전부 평가 결과에서 첫 번째 자연재난 분야는 우수 10개, 보통 35개, 미흡 9개로, 두 번째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분야에서는 우수 34개, 보통 106개, 미흡 32개로 세 번째 재난안전일반 분야에서는 우수 8개, 보통 26개, 미흡 8개의 결과를 보였다.

해외재난, 승강기 사고, 수질오염, 유해화학물질 재난사고 등 소관 사업 수가 2개 이하인 9개 유형 12개 사업은 평가등급이 부여되지 않았다.

평가 결과는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에서 40점의 비율로 투자우선순위 등급(투자확대, 투자 유지, 투자 축소)선정에 반영되었다.

(6) 행정관리역량 부문

① 개요

각 중앙행정기관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조직·인사·정보화 분야 평가지표들로 구성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였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기관제출 자료를 토대로 확인하여 점검하고, 평가운영 및 환류 등 정성평가 항목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가 심사하여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하였다.

② 내용

44개 중앙행정기관이 자체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조직, 인사, 정보화관리 등에 기존 평가지표에 더하여 2018년도 평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주요 사회이슈, 과학적 조직관리를 위한 신규 지표를 추가하였다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는 각 기관의 자체평가 제도의 '평가운영', '평가결과', '평가환류'를 점검하여 우수·보통·미흡기관으로 등급화하였다.

③ 결과

운영실태 점검 평균점수는 72.6점으로, 2017년도(80.5점)보다 대폭 낮아졌는데, 이는 형식화·관대화된 점검을 실질화·객관화함에 따라 평균점수가 하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결과에 따라 44개 기관을 우수(8개), 보통(27개), 미흡기관(9개)으로 구분하였다. 각 기관이 제출한 조직·인사·정보화 분야별 우수사례 중 성과 연계성 및 지표 달성 정도 등을 분석하여 25건을 선정하였고, 각 기관에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행정관리역량 강화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3) 2019년

각 기관의 성과제고를 위해 전략목표 수준의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국정전략 및 국정과제와의 연계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자체평가 과정에서 정책수요자·전문가 등의 평가를 반영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였다.

(1) 주요 정책 부문

① 개요

거시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기관의 상위목표인 전략목표에 대해 성과분석을 하여 자체평가에 반영하도록 하였고, 성과목표 외에도 전략목표에 대한 성과지표의 적절성·성과달성도를 추가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기관의 충실한 평가제도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자체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에 현저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내용

44개의 중앙행정기관이 자체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대상은 ‘성과관리시행계획상의 관리과제’이다. 각 기관이 자체평가 과정에서 정책수요자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국민체감도 조사 등의 수단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정책 성과에 대해 국민체감도가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평가등급 기준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성과지표 선정과정에서 기관 내부의 토론·검토과정 및 자체평가위원과 외부 전문가 합동 T/F 구성·논의 등을 거쳤는지 여부를 평가지표로 설정하여 조직 내·외부의 의견을 균형 있게 성과관리 전반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③ 결과

44개 중앙행정기관의 1,860개 관리과제에 대한 자체평가에 따르면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기반 확충(농림축산식품부), 1회용품 플라스틱의 획기적 사용저감(환경부) 등이 우수과제로, 관광객 수요자 맞춤형 인프라 개선(문화체육관광부), 안전복지 중심의 어선현대화 기반 구축(해양수산부) 등이 미흡과제로 평가되었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2019년도에도 자체평가의 객관성과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제도운영이 우수한 12개 기관을 선정하였다. 또한 2018년도 운영실태 점검 시 미흡기관으로 컨설팅 대상이었던 8개 기관 중 6개 기관의 등급이 상승하여 중앙행정기관 전반의 성과관리 역량이 제고되었음을 확인하였다.

(2) 일반재정사업 부문

① 개요

2018년도부터 기획재정부의 메타평가가 폐지됨에 따라, 2019년도 재정사업자율평가는 2018년도와 동일하게 사업 수행부처가 소관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 미흡사업에 대해 지출구조조정 또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하였다.

② 내용

2019년도 재정사업자율평가 대상 사업은 예산, 기금이 투입되는 전체 성과관리대상 재정사업 중에서 각 기관이 평가의 실익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정하였으며, 50개 기관에서 총 1,214개 사업(18년 예산기준 139.3조)을 선정하여 해당 사업의 2018년도 실적에 대해 평가하였다. 평가과정은 사업 수행부처에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소관 재정사업에 대해 자체 평가를 실시하되, 자체평가지표는 사업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였다.

자체평가 결과는 평가지표별 점수를 종합하여 3단계(우수/보통/미흡)로 등급화하고 '사업 수준'으로 상대평가 비율(우수 20% 이하, 보통 65% 내외, 미흡 15% 이상)에 따라 산출하였다.

③ 결과

기관 자체평가 결과 등급별 비율은 우수 19.2%(223개), 보통 65.0%(789개), 미흡 15.8%(192개)로 나타났으며, 전체 미흡사업 192개 중 33개 사업에 대해서는 지출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고, 나머지 159개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관리개선 계획을 수립하였다.

〈표 2-1-79〉 2019년도 재정사업 자율 평가결과

구분	합계	우수	보통	미흡
사업 수(개)	1,214	223 (19.2%)	789 (65.0%)	192 (15.8%)
예산('18년, 조원)	139.3	32.3 (23.2%)	94.1 (67.5%)	12.9 (9.3%)

지출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한 33개 사업의 경우 2019년도 예산액 13,280억원 대비 10.3% 수준인 1,368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성과관리개선 계획을 수립한 155개 사업에 대해서는 환류계획

에 따라 집행절차 개선, 사업구조 및 추진방식 조정, 성과지표 개선 등 성과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3) R&D사업 부문

① 개요

기관의 기획·관리역량 향상과 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해 신규·계속사업은 사업관리와 성과창출에 중점을 두고 사업별 특성에 맞는 개선·권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도전적인 사업기획을 유도하기 위해 도전적 성과목표 설정사업은 추진과정의 노력도 고려하는 등 목표달성 여부의 부담을 완화하고, 연구성과의 우수성뿐 아니라 종합적 성과분석에서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검토·분석하여 정책수립에 활용하였다.

② 내용

상위평가 대상사업은 18개 기관이 2018년도에 실시한 94개 국가 R&D사업으로 하되, 인건비 등 경상적 행정경비, 출연(연) 지원금, 평가관리 및 정책연구 등 평가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하였고, 최근 3년간 연평균 30억원 이하 소액사업은 자체평가만 실시하였다.

〈표 2-1-80〉 2019년도 R&D사업 부문 평가대상

구분	기관수	사업수	예산규모
R&D사업	18개	94개	5조 6,305억원

2019년도는 성과의 질적 수준에 부합하는 평가결과 도출을 위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토록하고, 평가등급 구간을 조정하였다. 우수성, 핵심성 등 정성적인 평가의견에 대한 판단기준과 근거자료를 명확히 제시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평가결과 점수 상향화에 따른 등급 부여 대역을 조정(등급별 하한선 5~10점 상향) 하여 실질적 연구성과와 평가결과의 정합성을 제고하였다. 자체평가에 대한 체계적인 적절성 점검과 이슈 중심의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바탕으로 질적 우수성을 평가한 자체평가 결과를 정밀하게 점검하기 위한 적절성 점검 프로세스를 세분화하고 자체평가 전반이 아닌 문제 사업 중심의 확인·점검 실시를 통해 평가의 집중도를 제고하였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개선 의견을 제시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 체계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사업성과와 개선의견에 근거한 예산 연계를 추진하였다.

③ 결과

평가대상 국가 R&D사업의 전체 평균점수는 77.9점으로 전년도(76.0점)에 비해 1.9점 상승하였다. 등급별로는 우수 36.9%, 보통 53.6%, 미흡 7.1%, 매우 미흡 2.4%로 전년도('18년) 대비 우수 사업과 미흡 이하 사업 비율이 증가하였다.

평가부문별로 보면 일반사업은 각 지표별 만점을 100점으로 환산 시, 성과목표 달성도가 93.3점으로 가장 높았고, 대표성과 81.5점, 종합적 성과분석 71.5점, 종합적 연구성과 63.3점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장비사업은 각 지표별 만점을 100점으로 환산 시, 사업관리2(모니터링 및 개선)가 66.7점으로 가장 높았고, 성과목표 달성도가 64.3점, 사업관리1(시설·장비의 구축 및 등록)이 0점 순으로 나타났다.

평가결과는 예산조정 및 배분에 반영되어 기관 자체평가의 책임성 강화 및 상위평가 실효성 강화를 통해 차년도 예산 간 연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상위평가 결과 '우수' 이상, '미흡' 이하 등급 사업은 예산에 반영하고, 상위평가에서 2회 연속 '미흡' 이하 등급 받은 사업은 특정평가 후보로 선정하였으며, 3회 연속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사업은 폐지를 원칙으로 제시하였다. '미흡' 이하 사업은 기관 요청으로 실시하는 수정평가를 통해 등급 개선이 없을 경우에는 차기 평가 실시 전까지 예산 삭감을 원칙으로 하였다. 또한 평가결과 우수' 사업의 연구자 및 연구지원자(행정원)에게는 훈·포장 등을 수여하였다.

(4) 균형발전 부문

① 개요

지원계정사업 평가는 기관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고 법령절차 준수를 위해 직접평가에서 상위평가로 전환하였고, 자율계정사업 중 시·도 자율편성사업 평가는 기존의 메타평가를 유지하고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평가는 기존의 상위평가 체제를 유지하였다.

② 내용

평가부담 완화 및 평가환류 등의 실익을 고려하여 10억원 미만의 소액사업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시·도 자체평가 시 자체평가위원 구성에 지역혁신협의회 위원을 10% 이상 포함하도록 자체평가지침에 명시하였다.

③ 결과

총 13개 기관의 지원계정사업에 대한 상위평가 결과, 최종 평가등급은 우수 15개(22.4%), 보통 40개(59.7%), 미흡 12개(17.9%)로 나타났다. 자율계정 시·도 자율편성사업은 메타평가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시·도 자체평가결과 모든 시·도가 '예산규모' 기준에 따라 적절히 등급을 부여하여 총 373개 사업 중 우수 62개(17.3%), 보통 221개(66.3%), 미흡 90개(16.4%)로 등급 배분 비율(예산기준)을 준수하였다. 메타평가 평균 점수는 82.8점으로, 시·도의 자체평가가 대체로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은 총 465개 사업 평균점수 68.1점이며, 5개 포괄보조사업별 평가점수 평균은 일반농산어촌개발 74.9점,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68.8점, 특수상황지역개발 63.3점, 성장촉진지역개발 57.4점, 소하천정비 68.2점이었다.

(5) 재난안전사업 부문

① 개요

2019년도에는 평가체계와 방식을 크게 변경하였다. 2018년도에는 기관 자체평가에 이어 행정안전부의 메타평가까지 2차에 걸쳐 평가가 이뤄졌으나, 2019년도부터는 종합평가로 개편되었다. 이에 따라 기관 자체평가 점수 50%와 재난사고 유형별 평가 50%를 합산하여 사업별 최종등급을 부여하였다. 또한 신규로 사업 예산을 편성하여 평가단 규모를 확대하여 이전보다 깊이 있는 성과 분석이 가능해졌다.

② 내용

재난안전 분야의 재정사업을 추진하는 2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하였다.

각 피평가기관에서는 예산집행률, 사업목표내용 연계성, 외부 지적사항 반영, 제도 개선 등 환류, 계획된 목표 달성 정도와 사업성과의 우수성 등 총 5개 지표를 토대로 기관별 자체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50점 만점으로 평가하였다.

행정안전부에서는 22개반 66명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정책적 중요도, 성과목표지표의 적절성, 사업성과의 우수성 총 3개의 지표에 대해 50점 만점으로 27개 피해유형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다.

자체평가 점수와 행정안전부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피해유형별로 우수 20% 이하, 보통 70% 내외, 미흡 10% 이상으로 상대평가 등급을 도출하였다.

③ 결과

2019년도 25개 중앙행정기관의 318개 사업(11조) 평가결과, 우수 59개 사업(19.3%), 보통 200개 사업(65.6%), 미흡 46개 사업(15.1%)으로 나타났다.

재난안전사업 평가결과 크게 세 개의 분류체계로 보면 첫 번째 자연재난 분야는 우수 13개, 보통 46개, 미흡 10개 사업으로, 두 번째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분야에서는 우수 37개, 보통 123개, 미흡 29개 사업으로, 세 번째 재난안전일반 분야에서는 우수 9개, 보통 31개, 미흡 7개 사업의 결과를 보였다.

산사태, 황사, 조류, 대설한파 등 소관 사업 수가 2개 이하인 9개 유형 13개 사업은 평가등급이 부여되지 않았다.

평가 결과는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에서 30%의 비율로 투자우선순위 등급(투자확대, 투자 유지, 투자 축소)선정에 반영되었다.

(6) 행정관리역량 부문

① 개요

각 중앙행정기관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조직·인사·정보화 분야 평가지표들로 구성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였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분야별로 외부전문가와 실태점검반을 구성해 운영하였다. 한편, 기존 주요 세부지표가 4점 척도였던 것을 5점 척도로 변경하여 점검을 시행하였다.

② 내용

44개 중앙행정기관이 자체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기본 틀은 현행체계를 유지하되 기관의 자율성 강화, 정보화분야 중복 제거 등을 지표에 반영하였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각 기관의 자체평가 제도의 '평가운영', '평가결과', '평가환류'를 점검하여 우수·보통·미흡기관으로 등급화하였다.

③ 결과

운영실태 점검 평균점수는 78.2점으로, 전년도(70.6점) 대비 높아졌는데, 각 기관의 평가운영 내실화 및 환류 제고 노력 등으로 평균점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44개 기관을 우수(8개), 보통(30개), 미흡기관(6개)으로 구분하였다. 각 기관이 제출한 조직·인사·정보화 분야별 우수사례 중 성과 연계성 및 지표 달성 정도 등을 분석하여 25건을 선정하였고, 각 기관에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자체 행정관리역량 강화에 활용토록 하였다.

4) 2020년

자체평가와 국정운영 방향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정과제·범정부 주요정책과제를 평가과제에 포함하였다. 주요정책부문 평가 시 정책성과·효과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전환하고 상위목표(전략목표) 관리를 강화하였다.

(1) 주요 정책 부문

① 개요

국정과제·국정철학과 성과관리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정과제 관련 과제와 사회적 가치관련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경우에 가점을 부여하였다. 또한, 평가의 환류기능도 강화하였다. 대내적으로는 자체평가 결과를 개인의 성과급에 최소 30% 수준 반영할 것을 권고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상세본을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여 성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기관장의 성과관리 의지·기관의 성과제고 노력 등을 점검하여 성과관리·자체평가를 내실화하였다.

② 내용

44개의 중앙행정기관이 자체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대상은 '성과관리 시행계획상의 관리과제'이다.

기존에는 기관이 자율적으로 배점을 부여함에 따라 '정책성과·효과' 배점이 평균 50%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최소 60%로 상향하도록 권고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효과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전환하였다. 또한 관계기관의 협업노력에 대해 평가하도록 권고하여 유관기관 협업 및 정책효과의 시너지 창출을 유도하였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각 기관은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자체평가 시 전략목표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국무조정실은 전략목표 성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적절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모든 기관의 전략목표 성과분석서를 통합하여 정부업무평가포털에 공개함으로써 대국민 책임성을 강화하였다.

③ 결과

44개 중앙행정기관 2,091개 관리과제에 대해 각 기관이 자체평가한 결과, 고교학점제 도입기반 조성(교육부), UN참전국과 교류협력 강화(국가보훈처) 등이 매우 우수 과제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경쟁력 강화(문화재청), IoT가전·3D프린팅 등 전자산업 생태계조성(산업통상자원부) 등이 부진과제로 선정되었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2020년도에도 자체평가의 객관성과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교육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제도운영이 우수한 12개 기관을 선정하였다. 이들 우수기관에 대해 포상을 실시하여 성과관리·자체평가에 대한 기관의 관심도 증진과 동기부여를 강화하였다.

(2) 일반재정사업 부문

① 개요

2020년도 재정사업자율평가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사업 수행부처가 소관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 미흡사업에 대해 지출구조조정 또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② 내용

2020년도 재정사업자율평가 대상 사업은 50개 기관에서 총 1,214개 사업('19년 예산기준 144.7조)이 선정되었으며, 해당 사업의 2019년도 실적에 대해 평가하였다. 자체평가위원회를 통한 자체평가, 상대평가 등 평가과정은 전년도와 동일하였다.

③ 결과

기관 자체평가 결과 등급별 비율은 우수 19.3%(230개), 보통 64.8%(770개), 미흡 15.9%(189개)로 나타났으며, 전체 미흡사업 189개 중 28개 사업에 대해서는 지출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고, 나머지 161개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관리개선 계획을 수립하였다.

〈표 2-1-81〉 2020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구분	합계	우수	보통	미흡
사업 수(개)	1,189	230 (19.3%)	770 (64.8%)	189 (15.9%)
예산('19년, 조원)	144.7	40.2 (27.8%)	90.7 (62.7%)	13.8 (9.6%)

지출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한 28개 사업의 경우 2020년도 예산액 1.6조원 대비 12.2% 수준인 1,928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성과관리개선 계획을 수립한 161개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률 제고를 위한 집행 점진 강화, 사업구조 재설계 등 성과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3) R&D사업 부문

① 개요

2020년도에는 성과 우수성 중심의 평가, 구체적인 개선의견 및 예산배분 의견 제시를 기본방향으로 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였다. 집행 등 관리 중심의 평가를 지양하고 대표성과의 우수성, 사업의 효과성 등 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성과의 우수성을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또한, 단순 등급이 아닌 사업의 목표·성과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개선의견 및 예산배분 의견을 제시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체평가 지침을 보완하고 자체·상위평가위원회에 대한 교육 강화를 통해 자체평가와 상위평가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② 내용

상위평가 대상사업은 19개 기관이 2019년도에 실시한 71개의 국가 R&D사업으로 하되, 인건비 등 경상적 행정경비, 출연(연) 지원금, 평가관리 및 정책연구 등 평가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하고 최근 3년간 연평균 30억원 이하 소액사업은 자체평가만 실시하였다.

〈표 2-1-82〉 2020년도 R&D사업 평가대상

구분	기관수	사업수	예산규모
R&D사업	17개	71개	1조 8,871억원

2020년도에는 종합적 성과분석을 통해 내실 있는 효과성 분석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고, 세부 판단 기준 및 등급을 세분화 하였다. 성과분석 방법 및 성과분석 결과의 세부항목별 평가 기준을 구체화하고 세부 등급을 신설하여 평가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였다. 기관의 자체평가에 대한 체계적인 적절성 점검과 이슈 중심 확인·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적절성 점검 프로세스를 세분화하였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질적 우수성을 평가하고 자체평가 결과를 정밀하게 점검하였다. 자체평가 전반이 아닌 문제 사업 중심의 확인·점검 실시를 통해 평가의 집중도를 제고하였고,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개선 의견 제시를 통해 평가결과 환류 체계의 효과성도 제고하였다. 기관

의 사업관리 역량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개선의견을 제시하고, 예산 대비 목표로 한 성과 창출의 효율성 관점에서 사업성과에 근거하여 예산과 연계한 의견을 반영하도록 추진하였다.

③ 결과

평가대상 국가 R&D사업의 전체 평균점수는 77.4점으로 전년도(77.9점)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등급별로는 우수 31.8%, 보통 58.7%, 미흡 6.3%, 매우 미흡 3.2%로 전년도(19년) 대비 우수 사업 비율은 감소하고, 미흡 이하 사업 비율은 증가하였다.

평가부문별 일반사업은 각 지표별 만점을 100점으로 환산 시, 성과목표 달성도가 94.2점으로 가장 높고, 대표성과 77.2점, 종합적 성과분석 73.8점, 종합적 연구성과 61.3점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장비사업은 각 지표별 만점을 100점으로 환산 시, 성과목표 달성도가 93.5점으로 가장 높고, 사업관리 2(모니터링 및 개선) 73.3점, 사업관리 1(시설·장비의 구축 및 등록) 40.0점 순으로 나타났다.

평가결과를 차년도 예산 배분·조정에 반영하여 평가-예산의 실질적 연계를 도모하고 구체적인 개선의견을 제시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원칙적으로 상위평가 '우수' 이상 사업은 예산 증액, '미흡' 이하 사업은 예산을 삭감하고 예산 배분 의견을 함께 제시하여 평가결과를 반영하였다. 또한 평가결과 우수 사업의 연구자 및 연구지원자(행정원)에게는 훈·포장 등을 수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와 국가R&D성과평가정보 공개서비스에 공개하여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였다.

(4) 균형발전 부문

① 개요

지원계정사업 평가는 기관 자체평가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적절성을 평가하고, 부적절한 기관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사업별로 직접 재평가를 실시하였다. 자율계정 중 시·도 자율편성사업은 자체평가 결과를 균형위가 그대로 수용하되, 자체평가 과정·결과·환류 등을 점검하는 상위평가를 실시하였고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에 대해 균형위가 상위평가를 실시하였다.

② 내용

지원계정사업 평가는 평가대상에서 종료사업을 추가하고 20억원 미만 소액사업은 평가 대상

에서 제외하였고 자체평가 13개 항목에서 9개로, 상위평가 6개 항목에서 5개로 점검항목을 간소화하였다. 자율계정 상위평가 점검항목은 8개에서 6개로 간소화하였다.

③ 결과

지원계정 상위평가결과 사업수 기준 75개 사업 중 우수 20개 사업(28.6%), 보통 38개 사업(54.3%), 미흡 12개 사업(17.1%)으로 나타났다. 자율계정 시·도 자율편성사업의 상위평가 결과 평균점수는 86.5점으로, 시·도의 자체평가는 대체로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자체평가 결과 126개 사업(총 134개 중 계속 126개, 신규 8개) 중 우수 26개 사업(20.6%), 보통 80개 사업(63.5%), 미흡 20개 사업(15.9%)으로 등급배분 비율을 준수하여 평가하였다. 시·군·구 자율편성 사업은 4개 포괄보조사업별 평가점수 평균은 일반농산어촌개발 82.7점, 특수상황지역개발 75.4점,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69.2점, 성장촉진지역개발 68.7점으로 나타났다.

(5) 재난안전사업 부문

① 개요

2020년도에는 전년도에의 평가체제와 방법을 거의 동일하게 유지하고 사회적 가치실현 가점 추가 및 일부 지표 배점 변경 등 개선이 있었다. 예방 피해 저감 등 성과우수성과 정책적 중요도 및 목표달성도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기관 자체평가와 재난사고 유형별 평가를 종합하여 사업별 등급을 부여하였다.

② 내용

재난안전 분야의 재정사업을 추진하는 25개 중앙행정기관이 평가를 받았다.

각 피평가기관에서는 예산집행률, 사업목표내용의 연계성, 외부 지적사항 반영 및 제도 개선 등 환류, 계획된 목표 달성 정도, 사업성과의 우수성 등 총 5개의 지표를 기관별 자체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50점 만점으로 평가하였다.

행정안전부에서는 22개반 66명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재난안전관리 정책적 중요도, 성과목표 지표 적절성, 사업성과의 우수성 및 가점 지표인 사회적 가치 기여도 등 총 4개의 지표에 대해 53점 만점으로 26개 재난사고 유형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다.

자체평가 점수와 행정안전부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재난사고 유형별로 우수 20% 이하, 보통 70% 내외, 미흡 10% 이상으로 상대평가 등급을 도출하였다.

③ 결과

2020년도 25개 중앙행정기관의 295개 사업(10.2조)의 평가결과, 우수 55개(19.7%), 보통 181개(65.1%), 미흡 42개(15.1%) 사업으로 나타났다.

재난안전사업 평가결과 크게 세 개의 분류체계로 보면 첫 번째 자연재난 분야는 우수 12개, 보통 39개, 미흡 13개 사업, 두 번째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분야에서는 우수 35개, 보통 112개, 미흡 23개 사업, 세 번째 재난안전일반 분야에서는 우수 8개, 보통 30개, 미흡 6개 사업의 결과를 보였다.

해외재난, 전시재난테러, 자살, 물놀이사고 등 소관 사업 수가 2개 이하인 11개 유형 17개 사업은 평가등급이 부여되지 않았다.

평가 결과는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에서 30%의 비율로 투자우선순위 등급(투자확대, 투자 유지, 투자 축소)선정에 반영되었다.

(6) 행정관리역량 부문

① 개요

각 중앙행정기관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조직·인사·정보화 분야의 평가지표들로 구성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대상 기관의 의견수렴과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운영실태 점검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기관의 자율성 확대와 자체평가 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실태 점검지표를 최소화하였다.

② 내용

44개 중앙행정기관이 자체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기본 틀은 현행체계를 유지하되 기관의 사회적 가치 제고 노력과 기관의 자율성을 반영하였다.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는 각 기관별 자체평가제도의 '평가운영', '평가환류'를 점검하여 우수·보통·미흡기관으로 등급화하였다.

③ 결과

운영실태 점검 평균점수는 76.1*점으로, 전년도(74.1점) 대비 낮아졌으며, 44개 기관을 우수(8개), 보통(30개), 미흡기관(6개)으로 구분하였다. 각 기관이 제출한 조직·인사·정보화 분야별 우수사례 중 성과 연계성 및 지표 달성 정도 등을 분석하여 15건을 선정하였고, 각 기관에 우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자체 행정관리역량 강화에 활용토록 하였다.

* 2019년 78.2점이었으나 '평가결과' 지표의 삭제로 76.1점으로 보정

5) 2021년

한국형 뉴딜, 탄소중립 등 범정부 핵심 추진과제를 자체평가 과제에 포함하여 자체평가와 국정방향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였다. 자체평가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내실화하기 위해 민간 위원이 다수 기관에 중복 선임되거나, 장기간 연임을 제한하도록 권고하였다.

(1) 주요 정책 부문

① 개요

문재인 정부 임기 말 핵심과제에 대한 성과관리를 위해 한국형 뉴딜과제 등 범정부 핵심 정책을 각 기관의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자체평가하였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어, 자체평가위원회의 영상회의를 대면회의 개최 실적으로 인정하는 등 공백없는 평가를 유도하였다.

② 내용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질병관리청을 자체평가 대상기관에 포함하여 46개 중앙행정기관이 자체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대상은 '성과관리시행계획상의 관리과제'이다.

자체평가위원회 활동의 충실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에 자체평가위원이 2개 기관까지만 점입할 수 있도록 권고하던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연임 기준을 최대 3회로 명백히 하여 위원의 장기간 연임도 제한하였다.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수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자체평가시행 계획단계부터 평가제도 운영과 관련한 개선 건의사항을 수렴할 것을 권고하였다.

③ 결과

46개 중앙행정기관 1,938개 관리과제에 대해 각 기관이 자체평가한 결과 항공산업 코로나 위기 극복 및 재도약 지원(국토교통부), 청년농 농지지원 확대 및 농지제도 개편(농림축산식품부) 등이 매우 우수 과제로, 한국정책방송원 운영 등 정책소통 활성화(문화체육관광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보건복지부) 등이 부진과제로 선정되었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2021년도 자체평가의 객관성과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민권익위원회, 관세청, 경찰청, 병무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등 제도운영이 우수한 13개 기관을 선정하였다.

(2) 일반재정사업 부문

① 개요

각 기관에서 자율평가를 실시하여 소관 사업에 대해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 보통 및 미흡사업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확인·점검을 통해 자율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자체평가 시 평가지표는 사업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계획·관리·결과·환류 단계별 지표를 설정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상대평가 비율은 전체 평가대상 사업에 대해 '사업수' 및 '예산규모' 기준을 적용하였다. 우선, '우수(20% 이하)', '보통(70% 이하)', '미흡(10% 이상)'에서 '우수', '보통'은 '사업수', '미흡'은 '예산규모'를 기준으로 하되 사업수를 최대한 고려하도록 등급비율을 설정하여 평가를 진행하였다.

또한, 사업의 특성, 미흡원인에 따른 성과제고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 미흡사업에 대해 지출구조조정 계획과 성과관리개선 계획을 마련토록 하였다.

이러한 기관의 자율성 확대에 따른 책임성 제고를 위해 기관별 자체평가 결과를 열린재정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② 내용

예산, 기금이 투입되는 일반재정 사업을 각 기관과 기획재정부가 협의하여 선정한 결과, 51개 기관, 1,191개 사업(20년 예산기준 161조원)의 실적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평가과정은 사업 수행부처가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기획재정부가 확인·점검을 실시하였다. 사업 수행부처는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수행하였는데 계획, 관리, 결과·환류 단계의 평가지표별 점수를 종합하여 평가 대상 사업을 3단계(우수·보통·미흡)로 등급을 도출하였다.

기획재정부는 기관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였는데, 상대평가 준수 여부, 지출구조조정규모 달성도(총 평가대상사업의 1%), 지출구조조정의 적정성(의도적 평가결과 왜곡, 지출구조조정 부적정)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점검하였다.

③ 결과

자체평가 결과 사업수 기준으로 우수 18.3%(218개), 보통 66.7%(794개), 미흡 15.0%(179개)로 나타났으며 예산규모 기준으로 우수 24.1%(38.9조원), 보통 63.9%(103조원), 미흡 12%(19.4조원)로 나타났다. 평가결과 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 지출구조조정계획을 마련하되, 전체 평가대상사업(의무지출사업 등 제외) 예산의 1% 수준에서 지출구조조정계획을 수립하

도록 하며, 미흡사업만으로 구조조정 목표 달성이 어려운 경우 보통 또는 우수사업까지 포함하였다. 그 결과 지출구조조정계획을 수립한 45개 기관(새만금개발청, 헌법재판소, 소방청 등 상대평가 미 실시 6개 기관 제외)은 모두 지출구조조정 목표 비율인 1%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조정 대상 215개 사업은 2022년도 기관의 예산 요구 시 지출구조조정 계획을 마련하고 시행하였으며 미흡사업(179개) 중 완료사업을 제외한 178개 사업은 집행점검 강화, 사업구조 재설계 등 성과관리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3) R&D사업 부문

① 개요

2021년도에는 「제4차 성과평가 기본계획(‘21~’25)」이 수립되었으며, 자율과 책임의 평가를 통해 연구현장의 성과창출 역량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평가의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 정책-투자-평가 연계로의 환류 강화, 효과 중심으로 성과평가 고도화, 성과평가의 인프라 확충을 주요 추진전략으로 하여 제도개편을 실시하였다. 기존 성과목표·지표 점검을 개편하여 전략계획서 수립 및 점검 제도를 신설하여 사업의 목표 및 계획을 평가 기준으로 삼아 사업 기획 대비 현재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였다.

사업평가의 자체-상위평가 체계에서 자체평가 중심으로 전환하여 기관·전문기관 등 연구수행 주체의 자율성을 확대하였다. 또한, 평가결과 및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상위평가를 축소하여 점수와 등급을 조정하는 확인·점검을 폐지하였다. 등급체계를 기존 5단계에서 우수-보통-미흡의 3단계로 간소화하고 점수 기준을 조정하였다.

② 내용

상위평가 대상사업은 각 기관이 2020년도에 실시한 국가 R&D사업으로 17개 기관, 88개 사업을 선정·평가하되, 인건비 등 경상적 행정경비, 출연(연) 지원금, 평가관리 및 정책연구 등 평가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하고 최근 3년간 연평균 30억원 이하 소액사업은 자체평가만 실시하였다.

〈표 2-1-83〉 2021년도 R&D사업 평가대상

구분	기관수	사업수	예산규모
R&D사업	17개	88개	3조 5,170억원

2021년도는 상위평가 단계를 축소하여 기관의 평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였다. 「제4차 성과평가 기본계획(‘21~’25)」에 따라 자체평가 중심 사업 평가체계의 기반구축을 위해 점수·등급 조정은 실시하지 않았으나, 기관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적절성 점검 절차를 2회로 추진하였다. 1차 적절성 점검 결과 ‘부적절’ 사업은 각 기관에서 최종점수 및 등급을 재조정(재평가)하고, 2차 적절성 점검을 실시하여 최종 상위평가 결과(적절 또는 부적절)를 확정하였다. 효과적인 환류체계 구축을 통해 차년도 예산 연계를 지속 강화하여 최종 상위평가 결과, ‘미흡’ 등급을 받는 사업 뿐만 아니라 ‘부적절’ 판정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도 차년도 예산심의 시 삭감하도록 추진하였다.

자체평가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기존 5등급 절대 평가등급을 3등급(우수·보통·미흡)으로 간소화하고, 자체평가에 대한 관대화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수’ 등급 점수를 상향(80점 이상 →85점 이상)하여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③ 결과

평가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체 평균점수는 81.7점으로 전년도(77.4점)보다 4.3점 상승했고, 최종 ‘적절’ 판정을 받은 70개 사업의 평균점수도 81.7점으로 동일하였다. 등급별로는 우수 31.6%, 보통 57.0%, 부적절 11.4%로 최종 ‘부적절’ 판정을 받은 사업은 점수·등급을 인정하지 않았다.

평가부문별 일반사업은 상위평가 대상 75개 일반 유형 사업 중 최종 ‘적절’ 판정 받은 67개 사업의 평가지표별 만점을 100점으로 환산 시, 목표 달성도가 91.4점으로 가장 높았고, 종합적 성과분석 82.4점, 대표성과 80.1점, 종합적 연구성과 66.0점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장비사업은 상위평가 대상 4개 일반 유형 사업 중 최종 ‘적절’ 판정받은 3개 사업의 평가지표별 만점을 100점으로 환산 시, 목표 달성도가 75.1점으로 가장 높았고, 사업관리 2(모니터링 및 개선) 88.9점 및 사업관리1(시설·장비의 구축 및 등록) 88.9점 순으로 나타났다.

평가결과를 차년도 예산 배분·조정에 반영하여 평가-예산의 실질적 연계를 도모하고 구체적인 개선의견을 제시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자체평가 결과와 상위평가(적절성 점검) 결과를 함께 고려하여, ‘우수·적절’ 사업은 예산 증액, 자체평가 ‘미흡’이거나 상위평가 ‘부적절’ 사업은 예산 삭감하고 예산 배분 의견을 함께 제시하여 평가결과에 반영하였다. 평가결과 우수 사업의 연구자 및 연구지원자(행정원)에게는 훈·포장 등을 수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와 국가R&D성과평가정보 공개서비스에 공개하여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였다.

(4) 균형발전 부문

① 개요

지원계정사업 평가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기관에서 자체평가 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기관 자체평가에 대해 적절성을 평가하고 자체평가가 부적절한 기관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직접 사업별 재평가를 실시하는 상위평가 체제를 유지하였다. 자율계정사업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상위평가를 실시하였다.

② 내용

지원계정사업에 대한 점검항목은 기획부문 및 성과부문의 점검기준을 균형발전 중심으로 개선하였고 자율계정사업은 코로나19 관련 성과달성률을 조정하고 사회적 가치창출 적용항목을 구체화하였다.

③ 결과

지원계정 상위평가결과 총 91개 사업 중 계속사업(76개)에 대한 평가등급은 우수 17개(22.4%), 보통 48개(63.1%), 미흡 11개(14.5%) 사업으로 확정하였다. 자율계정 시도 자율편성사업의 상위평가 평균점수는 86.5점이었고 125개 계속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우수 23개(18%), 보통 80개(64%), 미흡 22개 사업(18%)으로 평가되었다.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은 일반농산어촌개발 78.7점,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73.7점, 성장촉진지역개발 68.1점, 특수상황지역개발 76.4점으로 전년대비 평균점수가 소폭 하락하였다.

(5) 재난안전사업 부문

① 개요

평가체계와 방법은 2020년도와 동일하게 운영하였다. 다만, 사회적 가치실현 가점은 대상·시설·지역 취약성 해소에 기여하는 경우로 평가 기준을 구체화하고 성과 우수성을 구성하는 항목에 혁신성을 도입하여 개선하였다.

자체평가와 행정안전부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재난사고 유형별로 상대평가를 실시했다.

② 내용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26개 중앙행정기관이 평가를 받았다.

각 피평가기관에서는 예산집행률, 사업목표내용의 연계성, 외부 지적사항 반영 및 제도 개선 등 환류, 계획된 목표 달성 정도, 사업성과의 우수성 등 총 5개의 지표를 기관별 자체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50점 만점으로 평가하였다.

행정안전부에서는 20개반 60명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재난안전관리 정책적 중요도, 성과목표 지표 적절성, 사업성과의 우수성 및 가점 지표인 사회적 가치 기여도 등 총 4개의 지표에 대해 53점 만점으로 37개 재난사고 유형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다.

자체평가 점수와 행정안전부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재난사고 유형별로 우수 20%, 보통 70%, 미흡 10%로 상대평가 등급을 도출하였다.

③ 결과

2021년도 26개 중앙행정기관의 257개 사업(11조)의 평가결과, 우수 48개(20%), 보통 169개(70%), 미흡 24개 사업(10%)으로 나타났다.

재난안전사업 평가결과 크게 세 개의 분류체계로 보면 첫 번째 자연재난 분야는 우수 9개, 보통 98개, 미흡 6개 사업, 두 번째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분야에서는 우수 29개, 보통 98개, 미흡 14개 사업, 세 번째 공통 분야에서는 우수 10개, 보통 39개, 미흡 4개 사업의 결과를 보였다.

승강기, 전기가스 사고, 등산레저, 산불 등 소관 사업 수가 2개 이하인 11개 유형 16개 사업은 평가등급이 부여되지 않았다.

평가 결과는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에서 30%의 비율로 투자우선순위 등급(투자확대, 투자 유지, 투자 축소)선정에 반영되었다.

(6) 행정관리역량 부문

① 개요

각 중앙행정기관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조직·인사·정보화 분야의 평가지표들로 구성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하였다.

② 내용

46개 중앙행정기관이 자체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과거 실적과의 비교나 추세 분석을 감안하여 전년도 점검지표를 유지하였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각 기관 자체평가제도의 ‘평가운영’, ‘평가환류’를 점검하여 우수·보통·미흡기관으로 등급화하였다.

③ 결과

운영실태 점검 평균점수는 71.7점으로, 전년도(76.1점) 대비 낮아졌으며, 46개 기관을 우수(13개), 보통(24개), 미흡기관(9개)으로 구분하였다. 각 기관이 제출한 조직·인사·정보화 분야별 우수사례 중 성과 연계성 및 지표 달성 정도 등을 분석하여 15건을 선정하였고, 각 기관에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자체 행정관리역량 강화에 활용토록 하였다.

3. 개별평가

가. 개요

1) 개념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중앙행정기관이 다른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평가는 통합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업무 특성·평가시기 등으로 인해 통합실시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개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특징

개별평가는 평가대상 업무를 주관하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평가로 평가시기, 평가방식, 지표체계, 환류방식 등이 모두 상이하다. 다만, 개별평가의 무분별한 남설을 방지하고, 유사·중복 평가로 인한 피평가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만 개별평가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주기적 개별평가 현황 점검, 평가 간 중복성 검토 등을 통해 개별평가를 지속적으로 정비·관리할 필요가 있다.

가. 연도별 내용

1) 2017년

2017년도 이전까지는 중앙기관 대상 개별평가에 대해서 사실상 관리되지 않았다. 2016년도 말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대상 개별평가를 전수조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개별평가 정비를 추진하였다. 추진 방향은 크게 다음 세가지였다. 첫째, 중앙기관 대상 개별평가와 지방자치단체 대상 개별평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그간 사실상 관리가 되지 않았던 중앙기관 대상 개별평가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 대상 개별평가와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하도록 하였다. 둘째, 개별평가의 현실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간 폐지와 통합에 집중했던 정비와 달리 비교적 개별평가를 넓게 인정하기로 하였다. 셋째, 폐지 통합 등 평가의 총량관리와 함께 평가지표 감축, 평가 주기 조정 등 평가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실질적인 평가 부담을 줄이고, 이를 위해 각 기관의 개별평가 수요 조사 시 평가 효율화 방안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등 기관의 자발적 노력을 유도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원칙하에 각 기관으로부터 개별평가 운영계획 수요를 제출받아 개별평가 현황을 파악한 결과, 21개 기관에서 89건의 개별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중 10건은 이미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상 이미 관리되고 있는 통합평가라는 이유로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79건을 검토한 결과, 31건을 통·폐합 등으로 정비하고, 38건은 지표 간소화 등 평가효율화를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총 48건의 개별평가만 유지하기로 하였다.

2) 2018년

2017년도에 전반적으로 정비한 결과를 토대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1건(공공갈등 관리실태 점검)을 특정평가로 통합하고, 1건(지방혁신평가)을 신설하였다. 이를 통해 총 48건의 개별평가만 유지하기로 하였다.(1건은 일몰)

3) 2019년

2018년도 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 대상 개별평가 46건을 점검하였다. 2018년도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개별평가 48건 중 1건(식생활 안전영향수준 평가)은 격년 주기 평가로 2020년도에 실시되지 않고, 1건(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이행결과 평가)은 합동평가로 이미 통합되었기 때문이다.

점검 결과,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평가(4건)를 1건으로 통합하였고, ‘농산시책추진 우수기관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로 통합토록 하였으며,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중앙합동점검’,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중앙합동점검’ 등 2건은 점검으로 전환토록 하였다. 이로써 2020년도에는 총 40건의 개별평가만 유지하기로 하였다.

4) 2020년

2020년도에는 별도의 점검을 하지 않고 개별평가 정비를 준비하였다. 중앙행정기관이 실제 운영하고 있으나 자발적으로 개별평가 운영계획 수요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유사 평가가 중복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등 피평가기관의 평가부담이 과도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 이에 개별평가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자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각종 평가·조사·점검제도를 보다 폭넓게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개별평가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착수하였다.

5) 2021년

2020년도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총 231개 개별평가 후보군을 검토한 결과, 총 28개 중앙행정기관의 총 87개 개별평가를 발굴하였다. 행정안전부(15개), 국토교통부(12개), 보건복지부(9개) 순으로 많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현황 파악과 함께, 개별평가의 유사·중복을 해소하고, 평가체계의 타당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심층분석을 진행하였다.

6) 2022년

개별평가에 대한 유사·중복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총 87개 개별평가 중 12개는 통·폐합, 나머지 54개의 평가에 대해서는 평가지표 간소화 등 개선의견을 권고하기로 하였다.

통·폐합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유사한 평가들이 다수 운영되고 있어 평가 실효성이 낮은 경우(중기 교통시설 투자계획 실적평가), 자체평가임에도 별도의 상위평가(직접평가)를 실시하여 불필요한 평가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 등은 평가를 폐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와 유사한 평가지표로 운영되고 있는 개별평가는 중복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로 통합토록 하고, 1개 기관에서 목적·대상·지표의 유사성이 높은 개별평가를 각각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평가로 통합·운영토록 하였다. 아울러, 법적 근거가 없고, 평가지표가 단순(예 : 예산집행실적)하여 점검·확인만으로 지표 측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점검으로 전환토록 하였다.

이와 함께 54개의 개별평가에 대해서는 평가지표를 간소화 하거나, 유사 지표를 공통지표로 개편하여 측정결과를 공동 활용토록 하는 등 총 95건의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이행하도록 하였으며, 나머지 21개 개별평가는 현행을 유지토록 하였다.

또한, 유사 개별평가 신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평가 신설 전 반드시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제도화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였다.

앞으로 2022년도 상반기에 구축될 개별평가 DB를 활용하여, 개별평가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및 후속조치 확인 등을 통해 개별평가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4. 정책분석

가. 개요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다수 기관 간 조정이 필요한 정책, 파급효과가 큰 정책 등에 대한 현장 중심의 분석·평가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1) 개념

정책분석이란 국무총리의 통합적 국정관리 관점에서 다수 기관 간 정책조정이 필요한 사안, 관련기관이 적지만 파급효과가 큰 문제, 민생 현안 등에 대한 현장 중심의 분석·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책 개선을 추진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이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 및 제20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특정평가의 한 유형으로, 정책문제에 대해 전문가 진단 및 현장 확인·조사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정책분석은 평가 주체 면에서 국무총리가 주관하므로, 중앙행정기관이 스스로 소관 정책을 평가하는 ‘자체평가’와 구분된다. 또한 평가 시기 면에서는 수시로 필요한 정책을 평가하게 되므로, 연중 계획된 절차에 따라 실시되는 ‘(협의의) 특정평가’와도 구분된다.

2) 경과

정책분석은 1998년도 ‘특정과제 평가’라는 명칭으로 처음 실시되었다. 이후 ‘특정시책 평가’, ‘수시현안 평가’, ‘정책현안과제 분석’, ‘심층분석·평가’ 등으로 변화해 오다가 2018년도부터 ‘정책분석’으로 정착·발전되고 있다.

이처럼 명칭은 다양하게 변화되어왔지만, 다수 기관과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한 현장 확인과 전문가 참여를 거쳐 사전적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는 기본방향은 동일하다.

최근에 코로나19·탄소중립 등 다수 기관이 공동으로 해결해야 하는 복잡하고 풀기 어려운 정책현안이 증가하고 있고, 연 1회 특정 시기에 시행되는 정규 평가로는 정책의 신속한 개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책분석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추세이다.

3) 결과 활용

정책분석 보고서에는 정책문제에 대한 심층분석을 토대로 한 개선방안이 제시된다. 개선방안은 관계기관과의 실무 협의를 거쳐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국무회의 등에서 확정되며, 언론브리핑이나 보도자료를 통해 외부에 공개된다.

개선방안이 확정·발표되면 소관 기관별로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되며 국무조정실은 이행현황을 반기별로 점검·확인하면서 추진실적이 미흡한 과제에 대해서는 소관 기관이 조속히 추진하도록 독려한다. 또한, 점검 결과는 성과관리·자체평가 실태점검과 연계하여 정책분석 결과의 적극적 활용과 개선방안의 이행력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4) 성과

정책분석은 우선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분석과제 발굴시 정책수요자 입장에서 시의성이나 국민적 관심도,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제를 선정하고, 분석 과정에서도 현장 조사와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철저히 현장 중심의 문제점 인식과 개선방안이 담긴 보고서를 다수 마련하였다.

각 기관의 정책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조기에 발굴하고 개선함으로써, 기존 정례 평가의 한계인 사후적 속성을 보완하였다. 시의성 있는 문제분석과 대안 제시를 통해 정책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효용은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선정과제의 추진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개선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분석 과정에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소통하였다.

정책분석 결과는 국무회의나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등을 통해 확정하고 개선방안 이행 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사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였다.

나. 연도별 정책분석 내용

1) 2017년

(1)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개선방안

① 추진배경

자동차, 가구 등에서 결함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소비자와 기업의 안전의식이 높아지면서 제품결함으로 위해가 발생할 우려만 있어도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리콜제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기업의 자발적인 리콜 의지가 부족하고 불충분한 정보제공, 복잡한 반품절차 등으로 리콜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정부는 소비자 친화적인 리콜로의 전환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② 문제점

첫째, 의약품·식품·건강식품을 제외한 품목에 대하여 위해성 등급을 분류하고 있지 않아 리콜 상황 발생시 등급별로 회수절차 마련, 전달매체 선정 등 차별화된 후속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어려웠다.

둘째, 제품마다 리콜정보의 제공 양식이 다르고 대부분 전문용어를 사용하여 소비자가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고 제공하는 정보도 위해원인만 표시하고 위해결과, 취약 대상자, 사건·사고 이력 등의 중요정보는 제공되지 않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정보에 한계가 있었다.

셋째, 의약품·식품을 제외하고 위해성 등급을 고려한 리콜정보 전달매체 선정 기준이 없었고, 리콜정보 사이트가 개별기관에서 품목별로 분산적으로 운영되어 소비자가 종합적으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넷째, 리콜제품의 유통차단을 위해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일부 온라인 쇼핑몰, 중·소 유통매장 등에는 적용되지 못했고, 소비자가 환불절차 및 규정에 대한 혼선으로 환불받지 못하는 등 반품절차가 불편하였다.

③ 개선방향

첫째, 제품결함의 위해원인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축산물, 화장품 등 모든 리콜대상 품목에 대하여 위해성 등급을 부여하고 관리하였으며, 리콜시 이를 활용하도록 하였다.

둘째, 리콜정보의 표준양식을 신설하고 제공하는 정보를 확대하였다. 소비자들이 신속하고 명확하게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가독성 높은 정보제공 양식을 개발하였고, 위해원인 외에도 위해결과, 취약대상자, 소비자 행동요령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조치하였다.

셋째, 중대한 제품결함의 경우에는 TV, 휴대폰 등 정보전달력이 강력한 매체를 활용하여 잠재적인 소비자까지 리콜정보를 알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하였고, 소비자 종합지원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리콜 정보의 접근성을 강화하였다.

넷째, 주로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운영되던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을 중소기업매장 등으로 확대하였고, 지역 대형 유통업체 등과 리콜 업무에 대한 협조를 강화하고 명확한 회수 규정을 마련하는 등 반품절차를 개선하였다.

(2) 디지털 성범죄(몰래카메라 등) 피해 방지 종합대책

① 추진배경

2012년도 이후 최근 4년간 불법영상 촬영 및 유포 등 몰래카메라 범죄가 급증하였고, 카메라 소형화·고성능화로 몰카 노출 위험 증가, 온라인 유포시 불특정 다수에게 급속한 확산 및 그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자의 심각한 인권 침해 등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몰래카메라 범죄 피해는 심각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공공장소·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몰카 예방과 처벌,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법령·제도는 미비하여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범정부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하였다.

② 문제점

첫째, 일반인이 인터넷·전자상가 등을 통해 변형·위장 카메라를 손쉽게 구입 가능하나 수입·판매와 관련된 규제가 없었다. 이로 인해 이력 관리가 불가능하고, 스마트폰 무음앱 등을 이용한 촬영음 무력화로 몰카 촬영사실 인지 및 적발·단속이 어려웠다. 또한, 온라인에 유포된 불법영상물을 신속히 검출·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제도적 방안이 없었고, 불법영상물을 신고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의 정보제공이 부족하여 피해자 및 일반인이 적극적으로 신고하기 어려웠다.

둘째, 성인지 감수성, 전문성이 낮은 수사관과의 접촉을 통해 2차 피해를 입고 신고를 포기하는 등 전문적인 수사기법·대응능력이 부족하였다. 피해 인지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수사를 위한 채증과정에서 피해자의 심리적·경제적 고통이 가중되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탈의실 등 몰카에 취약한 장소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지속적인 단속을 위한 몰카 탐지기 등 인프라가 미비하였다.

셋째, 몰카 촬영자 및 불법영상물 유포자에 대해 실질적인 처벌 수준이 경미하였고, 몰카 촬영물 2차 유포·확산, 보복성 영상물 유포 등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요건이 미비하였다. 또한, 피해 사실 신고부터 채증, 심리·법률 상담, 사후관리까지 피해자 입장에서의 체계적 지원이 없었고, 몰카 영상물을 단순 음란 동영상으로 보는 왜곡된 인식, 피해방지를 위한 홍보·교육 미흡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③ 개선방향

첫째, 변형카메라 수입·판매업 등록제(구매시 개인정보 제공, 양수·양도시 신고 등)를 도입하고 유통이력 추적을 위한 이력정보 시스템(DB)도 구축하기로 하였다. 고정형 및 이동형 영상기기에 의해 동의 절차 없이 수집·유통되는 개인영상에 대한 기기 소유자의 보호의무를 부과하고, 촬영 무음앱 다운로드시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앱 설명자료에 고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몰카 등 불법영상의 실시간 차단 기술을 개발하였고, 불법영상을 편집 또는 변형 유통·재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필터링 기술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둘째, 전문성 보강 및 신속한 수사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전담 수사팀을 운영하여 신고·수사체계를 일원화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진술상담은 가급적 여성수사관이 담당하고 피해영상의 채증 및 삭제 조치를 우선 시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숙박시설의 정기적 점검 및 직접 위반 시 폐쇄처분, 공중화장실 등에 몰카 등 기계장치 설치 금지 및 전문 탐지장비 추가 보급 등의 예방 조치를 하였다.

셋째, 영리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나 연인 간 등 복수 목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특정부위·행위가 촬영된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등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여성긴급전화(1366)를 디지털 성범죄 통합신고센터로 운영하고, 신고 즉시 피해자 종합서비스(경찰 신고에 필요한 채증 및 긴급 삭제 지원, 방송통신위원회와 연계 및 사후 모니

터링, 전문상담·의료비·보호시설입소 지원, 무료 법률서비스 등)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넷째,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 성폭력 예방교육시 디지털 성범죄 교육,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교육 등을 통해 디지털 성폭력 예방·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대책을 보완해 나가기로 하였다.

(3) 어린이집, 각 급 학교 내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

① 추진배경

어린이 연령층에서 선천적으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매일 주사를 맞아야 하는 소아당뇨 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특수교육대상자나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와 비교하여 소아당뇨 어린이는 교육 및 의료 지원에 있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소아당뇨 어린이 4명 중 3명이 학교에서 저혈당을 경험하고, 따돌림을 이유로 화장실에서 인슐린을 투약하는 등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보육·교육시설 내 소아당뇨 어린이가 안전하게 보호되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개선 대책 수립이 시급하였다.

② 문제점

첫째, 어린이집과 유치원 어린이에 대하여 소아당뇨를 앓고 있는지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고, 초·중·고의 경우 소아당뇨 정보는 조사하고 있으나 보고체계가 없어 체계적인 현황 파악이 어려웠다. 또한, 보건교사 등 보호인력이 부족하여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둘째, 인슐린 투여 등 소아당뇨에 대한 보건교사의 역할 규정이 불명확하고, 보육·교육시설 내 적절한 투약 공간 및 소아당뇨 관련 응급의약품 구비가 미흡하였다.

셋째, 채혈과 인슐린 주사가 편리한 고가의 혈당관리 의료기기(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가 높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었다. 또한 해외 의료기기를 구입하려 해도 복잡한 수입업 허가 및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넷째, 소아당뇨에 대한 정확한 정보 및 인식이 부족하고 막연한 두려움으로 인해 입학 거부, 따돌림 현상 등이 발생하고 있었다.

③ 개선방향

첫째, 소아당뇨 어린이의 재학현황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보호인력을 확충하였다. 매년 실시하

는 건강조사와 건강검진을 통해 소아당뇨 어린이 재학현황을 조사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 등은 재학현황을 제출받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또한, 간호사 등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조인력 배치를 확대하였다.

둘째, 어린이집, 각급 학교별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평시·응급시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 활동과 보호 시설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다. 투약공간의 안전성·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건실 운영을 내실화하였으며, 소아당뇨 어린이가 처방받은 응급의약품을 보건실에 보관할 수 있도록 보관지침을 마련하였다.

셋째, 연속혈당측정기 등 의료기기 및 소모성 재료를 국민건강보험 급여 지급대상으로 확대하였다. 아울러, 해외에서 상용화된 연속혈당측정기 등의 구입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자가 사용 의료기기 수입허가 면제범위를 확대하였다.

넷째, 소아당뇨 바르게 알기 교육·홍보 자료를 개발하고, 소아당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대국민 인식개선 및 교육·홍보를 강화하였다.

(4)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

① 추진배경

사행산업의 시장 규모가 20조 원을 초과하면서, 도박·중독자살·범죄 등 사회적 부작용이 확산되었다. 특히, 우리 국민의 도박중독 유병률은 5.1%로 타 OECD국가 대비 2~3배 높고, 저소득자·실직자 등 서민층이 도박중독에 더욱 취약함에 따라 사행산업 7개 분야(경마, 체육진흥투표권, 복권, 카지노, 경륜, 경정, 소싸움)의 규제 재설계 및 사행심리 확산 방지를 위한 건전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였다.

② 문제점

첫째, 정부의 감시·감독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도박 확산, 화상 경주 불법 중계, 복권판매량 증가 등으로 사행산업이 비대화 되고 있었으나 정부의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장외발매소 의존형 수익구조(68.15%)로 화상 경주 불법 중계, 구매상한 미준수, 불건전한 영업 환경, 지역주민 반발 등 사회적 부작용이 야기되었다.

둘째, 스포츠포토와 전자복권 등 온라인복권의 판매한도 과다, 전자복권의 신용카드·휴대전화 외상결제 허용, 청소년들의 불법 베팅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특히, 로또복권의 온라인 판매

허용(2018년 12월)으로 사행심 확산이 우려되었다.

셋째, 당초 의무형 전자카드제도(투표금액 강제 조절 기능)를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전자카드 이용에 따른 매출액 급감, 불법시장으로의 풍선효과 등의 사유로 2016년도에 자율형 전자카드제(카드·현금 선택형)로 변경 추진되어, 건전화 취지가 퇴색되었다.

넷째, 사행산업 억제를 위한 매출총량제(2008년~) 설정기준이 비합리적이고, 이를 위반한 사행산업 사업자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재가 미흡하였다.

③ 개선방향

첫째, 도박중독자 증가 등 사회적 부작용을 유발하는 상대보호구역내 9개 장외발매소 실태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신속한 이전·폐쇄 및 축소 조치를 추진하였다. 또한, 장외발매소 신설·이전시 지역사회와의 사전협의 등 신설·이전 기준을 마련하고 장외발매소 폐쇄 시에도 사후영향평가제를 도입하였다.

둘째, 온라인 베팅은 구입의 용이성으로 사행심이 확산될 우려가 있고 파급력이 크다는 문제 인식에 따라 온라인 베팅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사용자의 건전한 이용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이에 전자복권의 인터넷 결제수단 중 계좌이체를 제외한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등을 금지하고 체육진흥투표권(1일 60만원→30만원), 전자복권(1일 30만원→15만원)의 일일 및 회당 한도를 50% 하향 조정하였다. 또한, 로또복권 온라인 판매(2018년 12월~) 비중을 5% 이내, 1인당 1회 5천원 이하로 제한하고 로또복권 법인판매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하였다.

셋째, 도박중독 유병률 및 구매상한제 위반 감소 효과를 고려하여 전자카드제 활성화를 위해 전자카드 사용목표를 일괄 5%p 상향하고, 전자카드 인프라(발매기 설치, 전용존 등) 구축 시행 등 노력을 강화하였다.

넷째, 사행산업 시장상황, 도박 유병률,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반영하여 매출총량 GDP 추계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매출총량 설정기준을 순매출이 아닌 순매출액에서 매출총량 초과금액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다. 또한, 매출총량제 위반 시 벌칙 조항을 신설하여 총량제 관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권고사항 미준수 또는 법 위반 시 과징금부과 및 영업정지 요구 등의 권한을 법제화하기로 하였다.

다섯째, 소관 기관별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을 반기별로 실시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등 연계협력 방안을 마련하였다.

2) 2018년

(1) 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간자격제도 관리체계 개선방안

① 추진배경

취업난 속에서 취업·창업을 위해 민간자격에 대한 취득수요 및 등록규모가 지속 확대되었으나, 민간자격 운영과정에서 환불거부·계약불이행·광고기준 위반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계속되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우수 민간자격에 대해서 공인 및 최소한의 지도·감독 등의 조치를 해왔으나, 소비자 피해예방 및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민간자격 운영과정 전반의 관리체계를 대폭 정비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였다.

② 문제점

첫째, 민간자격은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할지에 대한 판단 없이 등록되어 있었고, 운영 실적이 없는 휴면자격도 등록을 유지하여 소비자에 혼란을 초래하였다. 또한, 자격 등록 시 자격관리자가 스스로 작성·제출한 자격관리·운영 규정과 다르게 운영하는 사례가 다수였고, 지도·감독시 점점 대상자 선별기준 없이 결과 처리도 관대하게 이루어지는 등 제도관리가 부실하였다.

둘째, 민간자격 관련 정보 부족, 자격취득 총비용이 불명확한 광고, 자격증 기재사항 임의 표기 등으로 인해 등록민간자격을 국가공인민간자격으로 오인하거나 분쟁발생시 해결이 곤란하는 등 자격취득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불편이 지속되었다.

셋째, 최근 수년간 공인민간자격 수는 100개 전후의 담보상태에 있었고, 드론·코딩·3D프린팅 등의 국가공인자격이 없어 신산업분야 인력양성을 선도하기 어려운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 또한, 자격관리자 대상 연수가 연 2회에 불과하고 이수 의무도 없어 대부분이 연수를 받지 않는 등 자격관리자의 역량강화 기회가 부족하였다.

③ 개선방향

첫째, 소비자 보호와 자격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휴면자격 퇴출을 위한 등록갱신제 도입 및 등록세 인상으로 무분별한 민간자격 등록을 방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자격 등록시 자격관리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검정방법, 검정기준 등을 지키도록 자격관리·운영규정 준

수의무를 강화하고 점검대상 선정방법, 시정조치 등에 관한 지도·감독 매뉴얼을 구체화하기로 하였다.

둘째, 자격증 취득과정에서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총비용에 반드시 표시하고 광고 시 표시내용에 국가공인민간자격과 등록민간자격을 구분하여 설명하도록 표시·광고의무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하여 불공정약관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분쟁 시 해결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셋째, 신산업분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드론, 코딩, 3D 프린팅 분야 등의 민간자격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하고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확대하였다. 자격관리자 대상 연수횟수를 연 3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신규 자격관리자의 경우 연수이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2)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

① 추진배경

최근 간호계 ‘태움’ 관습, 지도교수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학원생에 대한 갑질 행위 등 직장 괴롭힘 문제가 심화되고 있었다. 관련 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직장 괴롭힘 피해율은 EU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며, 직장 괴롭힘으로 인한 근무시간 손실비용은 연간 4조 7천억원으로 국가경제에 미치는 손실도 컸다. 또한 직장 괴롭힘에 따른 우울증, 자살 문제 등도 함께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위 실태조사 응답자의 85.4%가 국가 차원의 법령·규정 마련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한 점 등을 감안하여, 정부는 ‘공공분야 갑질근절 대책(18.7.5)’에 이어 생활적폐 청산을 위한 두 번째 대책으로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② 문제점

첫째, 직장 괴롭힘에 대한 개념이 불명확하였다. 피해자 이외의 직장동료 등 제3자는 신고를 할 수 없었으며, 도움을 요청할 국가기관 창구도 불명확했다.

둘째, 직장 괴롭힘 발생시 사용자에게 조사의무가 없었다.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 이외의 직장 괴롭힘에 대해서는 소관 기관의 감독, 조사 절차 및 권한도 제한되어 있었다.

셋째, 별도의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폭력·성폭행 등의 범죄와 달리, 일반적인 직장 괴롭힘은 이를 금지하는 법이 없어 ‘불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직장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도 미흡하였다.

넷째, 피해자에게 2차 피해(직장 내 왕따 등)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고, 전문 심리상담·치료를 위한 지원체계도 부족하였다. 피해자는 징계 등에 따른 취소소송과 같은 소송부담을 지고, 무고·역고소를 당할 위험도 있었다.

다섯째, 사용자에게 부여되는 예방의무 및 책임제도 등이 미흡하였으며,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징계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더라도 처벌할 근거가 없어 2차 피해 위험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다.

여섯째, 직장 괴롭힘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등 인프라가 부재하였다.

③ 개선방향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직장 괴롭힘 신고부터 가해자 처벌, 피해자 지원, 예방교육 등 전 과정에 걸친 6단계 21개 개선과제를 마련하였다. 또한 의료, 교육, 문화예술·체육 등 주요 분야에 대해서는 분야별 맞춤 대책을 추가하였다. 주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장 괴롭힘의 개념을 명문화하였으며, 직장동료 등 제3자도 직장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노동·문화예술·체육 등 분야별로 산재되어 있는 ‘신고센터’에 직장 괴롭힘 신고 업무를 추가하고, 이를 ‘범정부 갑질신고센터’(국민권익위원회)로 연계하는 등 국가기관에 대한 신고장구도 일원화하였다.

둘째, 「근로기준법」 개정 및 관계기관 합동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직장 괴롭힘 발생시 사용자에게 조사의무를 부과하였다. 또한 법령 위반행위가 인지·접수되는 경우 국가기관(고용노동부)에서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셋째, 「근로기준법」 및 「의료법」을 개정하여 직장 괴롭힘(인권침해) 금지의무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가해자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엄정 대응하기로 하였다.

넷째,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피해자에게 전문가 심리상담을 지원하며, 그동안 산업재해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던 ‘직장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부상·질병·우울증 등’에 대해서도 산재보상이 강화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하였다. 또한 기존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만 지원하였으나, 복직소송 및 보복소송 응소 시에도 법률상담과 소송지원을 확대 추진하기로 하였다.

다섯째, 그간 근로자에 한해 인정되던 사용자의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보험·대출·신용카드 모집인 등 9개 업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확대하였다. 직장 괴롭힘 발생시 사용자는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가해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

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용자에게 대해 형사처벌·과태료 등 처벌기준을 신설하였다. 또한 직장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여섯째, 직장 괴롭힘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의료·교육 등 분야별 TF를 구성하여 존중받는 일터 조성을 위한 노사정 선언을 추진하는 등 관련 인프라도 충실히 구축하고자 하였다.

3) 2020년

(1) 해외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① 추진배경

사스, 메르스 등 신종 인수공통감염병에 의한 상당한 인명피해 및 경제적 손실이 초래되고 있으나,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야생동물에 대한 관리가 주로 생태계 보전 위주로 이루어져 감염병 예방에 취약했다. 검역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국제적 검역권고기준, 선진국 야생동물 관리제도 등을 참고하여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② 문제점

첫째,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야생동물 중 약 37%만 수입허가 대상으로 되어있어 해외유입 야생동물에 대한 관리 및 현황 파악 등이 미흡하였고 수입허가 기관이 산재되어 관련 종합관리시스템을 비롯한 총괄적인 관리체계가 부재하였다.

둘째, 검역을 거치지 않고 양서류, 파충류 등의 야생동물이 유입되어, 유입 전·후로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검역 미시행 등의 문제가 나타났으며, 서류 검토 위주의 통관검사로 불법 유입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셋째, 동물원은 실제 동물관리 수준과 관계없이 형식적 등록기준만 충족되면 개원이 가능하여 인수공통 질병 예방에 취약하고, 그 외의 소규모 야생동물 전시, 판매시설에 대한 현황관리 및 위생·질병관리 기준 또한 없었다.

넷째, 야생동물 주무기관에서 질병관리 전문기관을 운영하지 않았고, 관련 기본계획 수립·운영 또한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 또한 개별기관이 관리하는 인수공통감염병의 범위가 상이하였고, 2011년도부터 운영된 ‘인수공통감염병대책위원회’의 실질적 성과가 부족하였다.

③ 개선방향

첫째, 해외유입 야생동물 종합추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입동물의 국내 유통정보를 DB화 하기로 하였다. 허가대상 외 야생동물에 대한 신고제를 신설하여 이를 관리대상으로 포함하고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수입허가 심사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심사의 전문성을 향상시켰다.

둘째, 양서류, 파충류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검역 근거를 마련하고, 인수공통감염병 등 야생동물 감염병 검역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야생동물 주요 수입 항만 및 공항을 지정하여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통관검사 인프라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셋째, 동물원 등 주요 전시동물에 대한 사육·질병관리 기준을 정비하고, 야생동물 전시·판매시설에 대한 별도의 위생·질병관리 기준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또한 질병 전파 및 생태계 교란 방지를 위해 판매·개인소유 제한 종 목록을 제정하고 야생동물의 식용·불법 판매에 대해 정기적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넷째, 야생동물 관리를 위한 야생동물 질병관리원을 개원하여 야생동물 질병관리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있다. 또한, 인수공통감염병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기관 간 시스템 연계를 추진하여 긴급 상황 발생시 대응력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2)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제도 효율화 방안

① 추진배경

2019년 5월 포스코·현대제철이 배기가스 무단배출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예고받게 되자, 영업정지로 인한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과 국민경제에 악영향이라는 언론 보도가 이슈화되었다. 이에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제도에 대한 도입현황을 분석하고, 대체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② 문제점

첫째, 간선급행버스 사업 등 공익성이 높아 사실상 영업정지가 불가능한 업종에 대해서도 대체과징금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영업정지 제도가 사문화되고 있었다.

둘째, 일부 법률에서는 과징금 상한액이 10년 이상 변경이 없거나 유사 법률에 비해 과징금 상한액이 현저하게 적어 제재의 실효성이 미흡했다.

셋째, 처분업종(사업자)의 매출액, 영업정지 기간 등과 관계없이 정액과징금을 부과거나 영

업과징금 분할납부가 불가하여 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등 세부 부과 기준의 정비가 요구되었다.

③ 개선방향

첫째, 대체과징금 도입 확대를 추진하였다. 영업정지로 국민 불편 또는 공익 저해가 우려되는 「간선급행버스법」, 「도시공원법」 등 9개 법률과 영업정지로 인한 사업자 부담이 큰 「목재이용법」, 「옥외광고물법」 등 32개 법률에서 대체과징금 제도를 신규도입하는 방향을 확정하였다. 「대기환경보전법」 등 3개 법률은 대체과징금 대상 사업자를 추가하는 등 도입대상을 확대하도록 하였다.

둘째, 대체과징금 상한액을 적정하게 상향하도록 개선을 추진하였다. 「주차장법」의 경우 1983년 도입시 설정한 과징금 상한액 3백만원을 물가상승과 사업자 매출규모 등을 고려하여 1천만원으로 조정하고, 「석유사업법」 상 상한액 20억원이나 「액화석유가스법」 상 상한액 20억원 등 유사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현행 「도시가스사업법」 상 상한액 3천만원을 20억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셋째, 대체과징금 부과기준과 징수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였다. 법률상 과징금 상한액과 시행령상 과징금 최고액이 상이한 경우를 조정하고,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영업정지 기간과 사업자 매출액을 고려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수상레저안전법」의 경우 기존 분할납부 금지규정을 삭제하여 납부대상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3) 미성년 연예인 등에 대한 권익보호 개선방안

① 추진배경

최근 영화 ‘기생충’의 오스카상 수상, ‘BTS’의 빌보드 차트 1위 등 한류열풍과 함께 미성년 연예인·연습생·지망생의 증가가 예상되는 한편, 미성년 연예인 등이 데뷔나 방송 출연을 빌미로 한 금품요구·성범죄 등 건전하지 못한 환경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지속되고 있었다.

연예계는 다른 분야보다 미성년자 유입이 많고, 피해가 발생해도 문제 제기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어 미성년 연예인 등에 대한 강도 있는 보호 방안 마련이 시급하였다.

이에 미성년 연예인이 자신의 꿈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적절한 시스템이 있는지 분석·평가하고 연예인 지망-진입-계약-데뷔 활동 등 단계별로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② 문제점

첫째, '대중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에서는 기획사 명칭·등록번호 등 형식적 정보만 공개하고 있고, 미등록 연예기획사에 대한 신고·단속이나 제재가 미흡하였다.

둘째, 주요 데뷔 경로인 오디션이 대부분 '알음알음' 진행되어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한 사기가 우려되고, 현행 표준계약서는 활용도가 낮은 데다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내용이 충분히 담겨있지 않았다.

셋째, 미성년 연예인은 장시간 노동, 야간 촬영이 자주 반복되어 수면권·휴식권·학습권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었다. 특히 연예인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인권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었다.

넷째,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심리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에 비해 지원 가능 규모가 적어 상담이 필요한 미성년 연예인 등이 적기에 상담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③ 개선방향

첫째, 등록 기획사의 기업명·등록번호 등 형식적인 정보만 공개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ent.kocca.kr)에 연예인 지망생이 기획사 선택에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하기로 하였다. 그간 실태 파악이 어려웠던 학원형 기획사를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앞으로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 미등록 기획사 단속방안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둘째, 연예계 협회·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기획사 오디션 정보를 공개·홍보하고 필수 공지사항과 오디션 장소·시간 선정 시 고려사항 등을 담은 오디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또한, 현행 표준계약서 활용 사례를 분석하여 대중문화예술인 인격권 보호, 성희롱 피해구제 등의 내용을 담은 표준계약서 개선안을 고안하였다.

셋째, 「대중문화산업법」에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미성년 연예인 휴식권·학습권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현장에 적용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미성년 연예인 보호조항(주당 근로시간 제한, 과도한 노출 및 선정적 표현 금지)은 있으나 위반 시 제재규정이 없었던 「대중문화산업법」을 개정하여 과태료 부과조항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성범죄·불공정 계약 등 미성년 연예인의 신고를 중요 신고 건으로 처리하도록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였다.

넷째, 미성년 연예인과 연습생이 심리·정서적 지원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 조기 사회활동에 따른 스트레스, 데뷔 포기 고민 등과 관련된 심리·진로상담 프로그램을 확대하였다. 또한 각종 박람회·설명회 등을 통해 관련 홍보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4) 해외직구물품 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① 추진배경

가격·품질을 중시하는 소비자의 인식변화, 인터넷 사용 확산 등으로 해외직구 규모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직구는 자가 사용이 목적이므로 간소화된 통관심사를 거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다수의 위해물품이 반입되는 등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었고, 특히 코로나19 이후 해외직구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안전 문제 및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도 높아지고 있었다. 이에 해외직구를 소비자 시각에서 분석,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안전한 해외직구 이용을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되었다.

② 문제점

첫째, 물품정보 수집 및 구매단계에서 식품 구매시 기관별(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등) 소관 업무에 따라 분야별로 정보가 제공되고 있어 소비자의 불편이 컸다. 또한 법적근거 미비로 위해물품 판매사이트 차단에 애로가 있었다. 국내 플랫폼에서는 자체 안전조치가 미비하였고, 입점한 해외사업자의 식품수입 신고제도 미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둘째, 통관신고·검사단계에서는 우편물품 통관 시 물품 세부정보가 부족하여 통관심사가 어려웠다. 식품의 경우 구매대행 방식과 직접배송 방식 간 통관금지성분이 불일치하여 통관심사에 애로가 있었다. 일부 해외직구 구매자는 면세제도를 악용해 연간 수백 건 이상을 구매하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셋째, 통관 후 유통관리단계에서는 식품, 전기·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 등에서 구매검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도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에 유입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었다.

넷째, 소비자 피해구제 단계에서는 구매대행업자 등에 대한 책임부여가 어렵고, 해외사업자에게 구매한 물품으로 피해 발생 시 국내법 적용 등이 어려워 해결에 애로가 나타나고 있었다.

③ 개선방향

첫째, 물품정보 수집·구매단계에서는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소비자 친화형 모바일 앱 개발과 국내 온라인 플랫폼을 연계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또한 「제품안전기본법」 등 관련법에 위해물품 판매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이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국내 플랫폼의 관리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둘째, 통관신고·검사 단계에서는 우편통관체계 보완 및 직구물품 X-ray 검사 강화 등 위해물품 반입 차단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 간 협업을 강화하였다. 구매대행과 직접배송 식품에 적용하는 통관금지 성분도 일원화하여 통관심사 기준을 합리화하였다. 또한 개인별 연간 구매 누적한도 마련을 검토하여 과세회피를 막고, 건전한 해외직구 이용을 도모하였다.

셋째, 통관 후 유통관리 단계에서는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구매검사를 확대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입 최소화를 위해 통일 제품에 국내 안전기준 조정여부도 검토하기로 하였다.

넷째, 소비자 피해구제 단계에서는 식품 구매대행업자 준수사항을 개정하여 구매대행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와 국제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 12개국과 체결한 외국과의 업무협약(MOU)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4) 2021년

(1) 해외 우리국민 환자 이송·보호체계 개선방안

① 추진배경

국민들이 해외 체류 과정에서 감염병이나 안전사고 등에 언제든지 노출될 위험이 있음에도 언어장벽과 의료정보 부족, 비용부담 등으로 현지에서 제대로 치료받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해외 현지의 높은 치료비와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수준 때문에 국내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아 국내로의 이송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외교부·보건복지부·소방청 등 관계기관이 협업하여 해외에서 사고를 당한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② 문제점

첫째, 해외환자 이송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이나 그동안 국내 거주 국민과의 형평성과 자기책임의 원칙 등으로 해외환자 이송·관리에 관한 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았다.

둘째, 공관별로 병원·이송업체·의료보장제도 등 제공하는 정보의 양과 질에 차이가 있었다. 현지 영사콜센터에서 통역 지원을 하고 있었지만, 의료통역과 같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었다.

셋째, 민간이송지원업체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자유업종으로 운영되고 있는 탓에 정부의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었고, 일부 업체의 경우 경험부족·의료장비 준비 소홀 등으로 환자 안전보장이 미흡한 상황이었다.

넷째, 국민들이 여행자보험에 가입해도 여행자보험 상품 약관의 보상요건이 엄격해서 대부분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다섯째, 공항 ↔ 병원 간 이송시 구급차 확보·계류장 진입 등에 상당 시간이 소요됐고, 중증 환자의 경우 전문의를 동반한 대형 특수구급차량을 통해 이송해야 하지만 에크모·인공호흡기 등 특수장비를 탑재한 대형 특수 구급차량의 확보가 어려웠다.

③ 개선방향

첫째, 외교부에서 해외환자 이송·보호 전반을 총괄하고 민간이송지원업체 관리(보건복지부), 재외국민 응급의료상담(소방청) 등 관계기관의 역할을 정립하여 해외에서 사고를 당한 국민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관리시스템을 개선하였다.

둘째, 홈페이지·책자 등을 발간하여 현지병원·이송업체 목록, 의료보장제도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하였다. 현지 의료인-우리 전문의-통역인력이 참여하는 24시간 응급의료 전화통역 서비스를 신설하여 우리국민에 대한 의료통역 지원을 강화하였다.

셋째, 민간이송지원업체가 최소한의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어 운영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한 후, 중장기적으로 역량 있는 업체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하였다.

넷째, '현지 14일 입원조건' 등 여행자보험의 불합리한 상품 약관을 수정하고 치료·이송비 보장한도를 상향하여 국민이 실질적인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현지 공공 구급차를 우리 국민 환자 이송에 활용하도록 해외 국가와 상호협약을 체결하고, 대형 특수 구급차를 인천공항 인근에 배치하는 등 중증 환자 신속 이송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2)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지식재산(IP) 가치평가 활성화 방안

① 추진배경

기업 활동시 지식재산(IP) 등 무형자산의 중요성이 커져감에 따라 정부는 기술IP금융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왔으나, 기술 간 융합을 통한 혁신 성장과 신속한 기술개발에 요구되는 기술이전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력과 창의성을 중심으로 신뢰할 수 있는 가치평가 제도를 정착시키고 기술·IP 이전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② 문제점

첫째, 현행 「감정평가법」이 가치평가 관련 일반법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별도로 발전해온 기술·IP 가치평가 제도와 충돌하였다. 실제 기술·IP 가치평가 시장에서는 감정평가사 외 다양한 기관을 인정하고 있으나, 「감정평가법」상 감정평가사 외 감정평가업 금지규정으로 인해 기술·IP 가치평가 제도에 대한 위법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둘째, 평가실적 기준이 부족한 기술·IP 가치평가기관에 대한 관리조치가 부족하였고, 민간 가치평가 자격제도는 자격발급 요건이 단기 교육훈련 이수에 그쳐 가치평가 전문인력 양성에 한계가 있었다.

셋째, 한류 콘텐츠 산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가치평가가 공공분야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콘텐츠 거래유통 지원을 위한 민간부문의 가치평가 관련 자격제도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은 운용되고 있지 않았다. 또한 미술품 거래에 대한 객관적 감정 평가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문제점도 존재하였다.

넷째, 가치평가 기관별 평가항목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신용대출, 공공조달 과정 등에서 특정 기관의 평가결과만을 인정하여 기업이 중복으로 가치평가를 수행하고 있었다. 또한 기술·IP 가치평가 DB가 소관 기관별로 산재되어 있어 자료 축적 및 활용도가 낮았다.

③ 개선방향

첫째, 특허청, 산업통상자원부는 각각 「발명진흥법」과 「기술이전법」을 개정하여 IP 가치평가 전문기관의 가치평가 활동을 장려하고 기술평가기관의 평가결과 활용 확대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둘째, 평가실적 등이 부족한 기관에 대한 제재조치를 통해 가치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고, 민간 자격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자격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실효성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셋째, 평가인력 증원 등을 통해 공공분야 가치평가 전문성을 강화하고, 민간자격 신설 지원 등 민간부문의 전문인력 양성과 가치평가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또한 X-ray 분석 등 과학적 분석기법의 활용을 확대하고 감정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감정·가치평가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넷째, 다양한 평가기관의 비교분석을 통해 평가모델을 발굴하고 동일 기술에 대한 기술 평가기관의 평가결과는 동일한 등급·가액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평가결과 상호대체 활용’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범부처 가치평가 DB를 연계하여 그 활용성을 높이고 있으며, 기술자산에 대하여 담보대출 등의 금융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3)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① 추진배경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유기 반려동물로 인한 공공 안전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동물보호센터의 열악한 시설 운영, 무분별한 안락사 등 유실·유기 동물에 대한 학대나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고, 남양주 50대 여성 개몰림 사망사고(21.5)와 같이 유기 반려동물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도 발생하여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였다.

② 문제점

첫째, 반려동물 등록률은 2020년도 기준 38.6%에 불과하여 반려동물 관리에 애로가 있었고, 유실·유기된 실외사육견이 사람과 가축에 위협을 가하기도 하였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포획·구조 전문성이 미흡하여 국민 안전에 위해가 초래될 우려가 있으며, 유기견 몰림 사고 발생시 피해보상도 곤란하였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위탁 동물보호센터는 시설이 열악하고 동물 학대나 보호견 개농장 판매 등 불법행위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해 오고 있었다.

넷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 중인 반려동물 정보관리시스템은 입력자에 따라 정보입력 내용이 상이하여 정확한 현황이나 통계 도출에 한계가 존재하였다.

③ 개선방향

첫째,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 이용시 미등록 동물에 대한 서비스 제한, 동물등록 의무지역 확대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2024년도까지 반려동물 등록률을 선진국 수준인 7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실외사육견(마당개)에 대해서는 2026년도까지 85% 이상 중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전국 단위의 중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둘째, 광역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전문 구조반을 구성·운영할 경우 사업비를 증액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반려동물 구조를 활성화 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는 시민 안전보험 보장항목에 '유기견 물림 사고'를 추가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함으로써 유기 반려동물로 인한 피해 보장을 확대하였다.

셋째, 전국 위탁 동물보호센터의 불법행위 발생 방지를 위해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 및 준수 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일제 점검을 추진하고, 향후 안락사 규정 위반 시 처벌조항 마련, 위탁 동물보호센터 지정 취소 사유 확대 등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및 제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민간 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도입하고 시설·운영기준을 마련하여 동물보호시설의 음성적·변칙적 운영을 차단해 나가기로 하였다.

넷째, 현행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상 입력 정보의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보호시설 동물의 개체관리카드가 실제 현황과 일치하도록 관리방식을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전입신고 시 소유자의 변경된 주소(주민등록정보)를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연계·반영하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외에 '정부24'에서도 소유자 등의 변경신고가 가능하도록하여 신속한 동물 등록 정보의 현행화를 통해 정확한 관리를 도모할 계획이다.

5) 2022년

(1) 생활폐기물 처리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① 추진배경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등 1회용품 사용량 증가 등으로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늘어나면서, 폐기물 처리단가는 급격하게 상승 중이다. 그러나 전체 폐기물 대비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이 저조하여, 생활폐기물 자원순환 전 단계를 대상으로 신기술을 도입하는 등 폐기물 처리 개선방안을 수립하였다.

② 문제점

첫째, 분리배출단계에서 리모델링으로 인해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5톤 이하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재활용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다. 또한 분리배출에 대한 경제적 유인이 부족하여 소비자의 자발적 협조에 의해 폐기물 분리배출이 이루어졌다.

둘째, 수거·선별 단계에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품목 중 재활용되지 않는 폐기물이 증가하고 있으나 재활용 분담금 및 부과금이 업체의 매출액 대비 낮은 수준이고, 폐기물 선별공장은 대부분 수작업에 의존하는 등 자동화율이 낮으며 관련 R&D 지원도 저조하였다.

셋째, 재활용 단계에서는 재생원료 수급 불안정 및 영세한 업사이클링산업 규모로 산업 활성화 기반이 부족하였고, 재활용 R&D는 업계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또한 커피찌꺼기가 분리수거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아 재활용이 저조했고, 재생원료 산업분류가 지역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어 일부 업체들이 정부 지원 등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③ 개선방향

첫째,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배출신고 의무화, 추적강화 등을 통해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공사장 생활폐기물 분류기준 조정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또한 재활용률이 저조한 1회용 포장재를 빈용기보증금 대상품목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분리배출에 대한 금전적 유인을 높이고, 보증금 차등설정 및 IoT 수거함 도입 등을 통해 회수체계를 다변화할 계획이다.

둘째, 기업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 분담금 차등화 등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EPR 대상기업과 품목의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선별기술 고도화를 위한 시범사업과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현대화·스마트 팩토리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셋째, 재생원료 수요업체별로 안정적 공급망 협력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고, 대·중소기업 공동 연구개발 분야 발굴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현장의 기술개발 수요에 기반한 수요매칭형 R&D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커피찌꺼기를 분리수거 대상 품목에 포함하여 이를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표준산업분류 용어 정비를 통해 리사이클링 원료생산업체의 제조업 등록 가능성을 열어 '그린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2절 지방자치단체 평가

1. 개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와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평가로 구분된다.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평가는 크게 합동평가와 개별평가로 나뉜다. 합동평가는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가위임사무, 국가주요시책 등을 평가한다. 개별평가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내용에 대해 평가한다.

가. 목 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를 평가하는 것은 해당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의 목적은 정책이 지역주민에게 미친 효과를 파악하고 이를 환류시킴으로써 정부 정책의 질을 제고함과 동시에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데 있다.

지방자치단체 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국가 주요시책 등의 추진성과를 분석·평가함으로써 국정의 통합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주요 업무를 스스로 평가하여 개선·보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적인 정책결정 지원과 지방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나. 종 류

지방자치단체 평가는 평가주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평가와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로 구분된다.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평가는 행정안전부 주관 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하는 합동평가와 업무의 특성·평가시기 불일치 등으로 합동평가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이 직접 실시하는 개별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기관의 정책 등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표 2-2-1〉 지방자치단체 대상 평가 종류

구분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평가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평가주체	관계 중앙행정기관 합동 (행정안전부 주관)	해당 중앙행정기관	각 지방자치단체
평가 대상기관	광역자치단체(시군구 실적 포함)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평가 대상업무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 등	합동평가와 동일. 단, 업무의 특성·평가시기 불일치 등으로 합동평가가 어려운 경우에 한함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수행하고 있는 사업 전반
평가방법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합동평가 실시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평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협의(평가대상·방법 등)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이 평가	지자체 스스로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및 '지자체 자체평가 운영지침(행정안전부)'에 따라 평가계획을 수립해 자체적으로 평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국고보조사업과 국가 주요시책 등을 대상으로 업무 추진내용과 집행성과 등을 점검·분석하고 평정하는 정책평가이다. 합동평가는 국정운영의 통합성과 효율성, 책임성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행정개혁 추진으로 경영 논리와 관리기법이 행정에 도입되고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자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성과평가, 권한위임에 따른 최소한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의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다.

2001년도부터 개별평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평가 부담이 가중되었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각종 개별평가를 통합한 합동평가 제도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법령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2001년도에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01.5.1. 시행)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고, 2006년도에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평가는 합동평가를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개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개선에도 평가대상이 상호 유사·중복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평가시기와 방법, 평가 결과 등은 모두 상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부담 가중은 물론,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갖추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8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지방자치단체 통합평가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 시범평가를 거쳐 2009년도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최초의 통합 합동평가를 실시하게 되었고, 이러한 기조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반면, 개별평가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평가대상 기관으로 하고, 평가 대상 업무는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등으로 합동평가와 동일하나 업무의 특성, 평가시기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별도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 개별평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예시)
 -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경우
 - 기초자치단체에 한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 전문적, 기술적 점검 등 평가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한편,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모두 해당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 등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한 사업 전반에 대하여 스스로 자체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자체평가의 대상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스스로 정할 수 있다.

다. 절차 및 방법

1)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평가

(1) 절차

① 합동평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국고보조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의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국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있어 합동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합동평가의 경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하여 합동평가의 대상, 시기, 방법 등이 포함된 '합동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평가를 실시한다.

- 합동평가 실시계획 포함 내용
 - 합동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에 관한 사항
 - 합동평가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 합동평가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합동평가 대상 선정 및 평가지표 설정에 관한 사항
 - 합동평가 결과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등

② 개별평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 제5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하여 업무의 특성, 평가시기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방법 등에 관하여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이를 평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예외적으로 개별평가를 인정하고 있다. 개별평가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 확정된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이 시행하게 된다.

(2) 방법

합동평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및 합동평가에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외부전문가 등으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 산하에 ‘합동평가단’과 ‘지표개발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18년도부터는 국정운영의 통합성 확보를 위해 국정과제 위주로 지표체계를 개편하였고, 당초 당해연도 상반기에 확정되었던 지표를 전년도에 조기 확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평가지표에 부합하는 성과창출 추진기간을 확보하였다.

〈표 2-2-2〉 합동평가 흐름도(2018년 이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합동평가 및 개별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제출하도록 하여 객관성, 공정성 검증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평가결과를 정책개선 및 중앙정부 예산지원 등과 연계하여 환류기능을 강화하고, 평가계획 수립 시 평가결과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및 평가 우수기관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구체적인 성과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2)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마련된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따라 평가의 기본방향, 평가대상 및 방법,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당해 기관의 정책 등을 평가한다.

■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계획 포함 내용

- 기관의 임무,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 자체평가 기본방향·대상·방법
- 자체평가 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

자체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체 위원 중 2/3 이상이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장관은 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기

반의 구축 및 자체평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자체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거나 행정서비스 개선에 활용하고 부진사업 등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정책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

라. 평가결과 활용

합동평가 결과는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에 통보하고, 언론 및 내고장알리미(지방행정종합정보 공개시스템, www.laiis.go.kr),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며, 합동평가 결과보고서 및 우수사례집을 발간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하고 있다. 종합적인 평가결과를 토대로 향후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다.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상황을 파악하여 관리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또한, 합동평가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재정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를 지원함으로써 국정 시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을 높이고 있다. 아울러, 합동평가를 위하여 노력한 지방자치단체의 유공자를 선정하여 포상하였다.

〈표 2-2-3〉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교부 내역('17~'21년)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지급액(억)	140	150	160	160	160

〈표 2-2-4〉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유공자 포상 현황

연도별	훈격별 규모					
	계	훈장	포장	대표	국표	장관표창
2021년	70	1	1	9	9	50
2020년	70	1	2	8	9	50
2019년	76	1	2	8	10	55
2018년	82	1	3	8	9	61
2017년	83	1	3	8	9	62

2011년도부터는 합동평가 결과가 부진한 시책 등에 대해 원인 분석과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다. 2021년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를 통해 신청한 15개 시·도에 대하여 21개 지표 135건의 행정컨설팅을 진행하였고, 지표별 지방자치단체 우수사례를 분석·진단하고 보완방안을 제시하였다.

〈표 2-2-5〉 연도별 컨설팅 실시내역('11~'20년)

연도	시·도	실시 시책(지표)
'11년	인천, 경북, 경기, 강원, 충남	복지기반 조성, 저출산·고령화대책 등 4시책
'12년	서울, 대구, 울산, 강원, 경남	기초생활 보장, 민원서비스 개선 등 1시책 3지표
'13년	서울, 부산, 광주, 대전, 경남	복지기반 조성, 자원봉사 활성화 등 2시책 3지표
'14년	경북, 대구, 경남, 광주, 전북, 강원	사회적기업 육성 등 12개 시책
'15년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지역복지기반 확충시책 등 29개 시책
'16년	서울,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지역인프라 강화 등 42개 시책
'17년	경북, 전남, 전북, 대전, 강원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등 7개 분야 11개 시책
'18년	서울, 대구,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남, 경북, 경남	정신건강증진 등 9개 분야 23개 지표
'19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저출산 대책 우수사례 등 9개 분야 32개 지표
'20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차년도 정성평가 지표 등에 대한 사전컨설팅 운영 *17개 시·도(시·군·구 포함) 166건
'21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차년도 정성평가 지표 등에 대한 사전컨설팅 운영 *15개 시·도 135건

지방자치단체 대상 개별평가에 대해서는 평가계획 수립 시 평가결과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환류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평가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재정인센티브를 부여하였고, 이와 별도로 후속 조치사항 등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성과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2. 평가 내용 및 추진성과

가. 연도별 평가 결과

1) 2017년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시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합동평가 지표의 최종 확정시기를 7월에서 9월로 변경하여 미래사회 선도지표,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반영하였다.

(1) 합동평가

① 평가결과

2017년(16년 실적)도 합동평가는 9개 분야(일반과제8, 중점과제1), 27개 시책, 68개 지표(173개 세부지표)에 대해 평가하였다. 각 분야별로 시부와 도부로 구분하여 등급화(가·나·다 등급)한 결과, “가” 등급을 가장 많이 받은 지역은 시부에서는 7개 분야에서 가 등급을 받은 ‘울산’, 도에서는 8개 분야에서 가 등급을 받은 ‘경기’였다.

9개 분야의 평균점수는 78.9점(시부 78.9점, 도부 78.8점)으로 지난해보다 1.2점 상승한 결과를 보였다. 지역개발(86.4점), 보건위생(82.9점) 분야가 상대적으로 우수하였고, 일반행정(75.4점), 사회복지(72.3점) 분야는 다소 미흡하였다.

국정 주요시책(3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행정서비스의 주민 체감도 조사 결과는 전년 대비 5.1점 하락한 51.5점으로 나타났으며, 고객 체감도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는 전남, 제주, 강원, 전북 등의 순이었다. 분야별 평가결과는 지역복지 기반확충 분야(54.7점)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난안전 및 대기질개선은 49.3점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낮은 체감도를 보였다.

② 평가지표 개발

2018년도(17년 실적) 합동평가 지표는 합동평가위원회 산하 지표개발추진단에서 11개 분야, 32개 시책, 72개 지표, 세부지표 212개를 개발하였다. 지표개발 시 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 대책, 축산 방역 강화, 제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사회 선도지표, 사회적 약자 보호, 생활안전 강화 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반영하였고 이를 위해 지표 최종 확정시기를 기존 7월에서 9월로 변경하였다. 그 결과, 2018년도(17년 실적) 세부지표는 전년도 173개 지표에서 212개로 약 22.5% 증가하였다.

(2) 개별평가

2017년도 이전까지 중앙행정기관 대상 개별평가는 사실상 관리되지 않았다. 2016년도 말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대상 개별평가를 전수조사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전반적인 개별평가 정비를 추진하였다.

각 기관으로부터 개별평가 운영계획 수요를 제출받아 개별평가 현황을 파악한 결과, 21개 기관에서 89건의 개별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중 10건은 이미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상 기 관리되고 있는 통합평가라는 이유로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79건을 검토한 결과, 31건을 통·폐합 등으로 정비하고, 38건은 지표 간소화 등 평가효율화를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총 48건의 개별평가만 유지하기로 하였다.

2) 2018년

합동평가에서 규제개혁과 일자리 창출 분야를 추가로 신설하여 국정과제와의 연계를 강화하였다. 또한, 국정과제를 포함한 미래사회 선도 및 국민체감형 지표를 반영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체감도를 조사하였다.

(1) 합동평가

① 평가결과

2018년도('17년 실적) 합동평가는 11개 분야, 32개 시책, 72개 지표, 212개 세부지표에 대해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는 11개 분야에 대해 각 분야별로 시·도로 나누어 추진성과를 평가해 등급화(가·나·다 등급) 하였다. 시부에서는 울산, 대구, 세종이, 도부에서는 충남, 충북, 경기, 제주가 국가의 주요시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11개 분야의 평균점수는 79.6점으로 전년도보다 상승하였으며, 분야별로는 지역개발(87.4점), 지역경제(86.2점)는 점수가 높은 반면, 환경산림(73.4점), 사회복지(74.2점)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11개 분야 중 4개 분야의 대표 시책에 대해 주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민만족도 조사 결과는 51.0점으로 전년 대비 0.5점 하락하였으며, 세종, 전남, 제주, 강원 등이 주민만족도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② 평가지표 개발

2019년도('18년 실적) 합동평가 지표개발은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3월에 지표를 조기 확정하였으며, 기존의 '분야 → 시책 → 지표 → 세부지표' 체계를 '국정목표 → 국정전략 → 국정과제 → 지표' 체계로 개편하였고 사회적 가치 실현지표를 중심으로 개발하였다. 그 결과 5대 국정목표, 17대 국정전략, 43대 국정과제, 156개 지표가 최종 확정되었으며 2018년도('17년 실적) 합동평가 세부지표 212개보다 약 26.4% 감소하여 지방자치단체 평가부담을 완화하였다. 또한 기존 지방자치단체 서열화 방식을 지표별 성과평가 방식으로 전환하여 절대평가 위주로 지표를 개발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여건인 점을 감안하여 노력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목표달성도의 목표치를 차등적으로 부여하였다.

그리고 당초 당해연도 상반기에 확정되었던 지표를 전년도에 조기 확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평가지표에 부합하는 성과창출 추진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2020년도('19년 실적) 합동평가 지표 개발을 2018년 12월에 완료하였다. 2020년도('19년 실적) 합동평가 지표개발은 100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122개 지표가 개발되었으며 이는 2019년도('18년 실적) 합동평가 지표 156개보다 21.8% 감소한 것으로 지방분권 실현 및 지방자치단체 평가 부담완화를 위한 것이었다. 특히 2017~2018년도에 발표된 각종 정부대책(저출산, 일자리, 공공분야 갑질 근절, 자살예방 대책 등)의 추동력 확보를 위한 지표들이 개발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합동평가 원칙 및 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관별 개별평가를 합동평가로 전환하거나 제외하였다.

(2) 개별평가

전년도의 정비 결과를 토대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공공갈등 관리실태 점검'을 특정평가로 통합하고, '지방혁신평가' 신설을 수용하였다. 이를 통해 총 48건의 개별평가만 유지하기로 하였다. (1건은 일몰)

3) 2019년

사회적 가치 실현 지표를 개발하여 중점적으로 평가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서열화 방식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개편하였다. 아울러, 국민평가단을 통해 우수사례를 선정하였다.

(1) 합동평가

① 평가결과

2019년도('18년 실적) 합동평가는 사회적가치 실현지표를 중심으로 5대 국정목표별로 155개 지표(1개 지표 평가 미실시)에 대해 평가하였다. 평가방법은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정량지표는 개별지표별 목표달성도를 평가하였으며, 정성지표는 시부와 도부를 구분하여 각 2건씩 우수사례를 선정(총 126건)하였다.

평가 결과, 시부 정량평가 목표달성도가 상위인 지방자치단체는 울산, 세종이었으며, 정성평가 우수사례가 많이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는 서울(14건), 대구(12건) 순이었다. 도부 목표달성도 상위 지방자치단체는 경기, 제주, 충남이었으며, 정성평가 우수사례가 많이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는 충남(15건), 전남(11건), 경북(10건) 순이었다.

합동평가단에서 선정한 정성지표 우수사례 중 국가안보분야와 부분지표를 제외한 104건을 대상으로 국민평가를 실시한 결과, 충남(2개), 대전·경기·제주의 사례가 국민공감 우수사례(총 5개)로 선정되었다.

② 평가지표 개발

2021년도('20년 실적) 합동평가 지표개발은 5대 국정목표별로 총 116개 지표가 9월에 최종 확정되었으며, 2020년도('19년 실적) 합동평가 지표 122개 대비 약 5% 감소하였다. 지표개발 시 시계열데이터 축적을 통한 평가결과의 정책환류기능 강화 및 기존 국가주요시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지표를 최소화하였고, 기 반영된 지표 유지를 원칙으로 하였다. 지표 확정시기를 앞당겨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주요시책 추진을 위해 예산을 쓸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였다.

(2) 개별평가

전년도 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 대상 개별평가 총 46건을 점검하였다. 2018년도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개별평가 48건 중 1건(식생활 안전영향수준 평가)은 격년 주기로 평가가 실시되지 않았고, 1건(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이행결과 평가)은 합동평가로 통합되었기 때문이다.

점검 결과,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평가(4건)를 1건으로 통합토록 하였고, '농산시책추진 우수기관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로 통합토록 하였으며,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중앙합동점검',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중앙합동점검' 등 2건은 점검으로 전환토록 하였다. 이로써 2020년도에는 총 40건의 개별평가만 유지하기로 하였다.

4) 2020년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정책 산출·결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또한, 국가의 주요정책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저출산 대책,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사회적 가치 실현지표를 중점적으로 평가하였다.

(1) 합동평가

① 평가결과

2020년도('19년 실적) 합동평가는 5대 국정목표별 122개 지표에 대해 평가하였다. 87개 정량 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는 시부 평균 81.7%, 도부 평균이 85.2%로 각각 전년 대비 11.7%p, 13.2%p 상승하였다. 시부 달성도 상위 지방자치단체는 세종, 울산, 대전이며, 도부 달성도 상위는 충남, 경남, 경기였다. 국정목표별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가 가장 높은 90.2%의 목표달성도를 보였으며,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가 가장 낮은 66.7%를 차지하였다.

35개 정성지표에 대한 평가 결과는 지표별로 시부와 도부를 구분하여 각 2건씩 총 140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였다. 시부에서 우수사례가 많이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는 대구(23건), 광주(13건), 서울(11건) 순이며, 도부에서는 경북(20건), 충남(19건), 경기(9건) 순이었다. 이 중 국민평가를 통해 경북 2건, 대구·충북·충남에서 각 1건으로 총 5건의 국민공감 우수사례를 선정하였다.

② 평가지표 조정 및 개발

2020년도에는 코로나19의 발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대응으로 정상적인 업무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어 2021년도('20년 실적) 합동평가 지표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졌다. 평가 지속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지표 원안을 유지하였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목표치를 수정하거나 평가유예를 하였다. 평가유예시 정성지표는 우수사례 발굴·선정을 하지 않았으나 정량 지표의 경우 실적관리를 위해 실적은 입력하되 평가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총 116개 지표의 전수 검토를 통해서 72개 지표는 원안을 유지하고 목표치 하향 및 산식 수정 32개, 평가유예 12개로 총 44개 지표에 대한 조정이 9월에 확정되었다. 평가유예된 12개 지표에 대해서는 대체 방안으로 분야 제한 없이 지방자치단체별 코로나19 대응 관련 우수사례에 대한 국민평가를 결정하였다.

2022년도('21년 실적)합동평가 지표개발은 5대 국정목표별로 총 116개 지표가 11월에 확정

되었으며 2021년도('20년 실적)합동평가 지표 116개와 지표 개수는 동일하였다. 지표개발 시 정부 후반기를 맞아 국정철학·국정과제의 정책목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주요시책의 성과 창출 및 점검을 고려하였으며,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에 따라 변화한 중앙행정기관의 정책목표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주요시책을 반영하였다.

(2) 개별평가

2020년도에는 별도의 점검을 하지 않고 개별평가 정비를 준비하였다. 중앙행정기관이 실제 운영하고 있으나 자발적으로 개별평가 운영계획 수요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유사 평가가 중복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등 피평가기관의 평가부담이 과도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 이에 개별평가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자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각종 평가·조사·점검제도를 보다 폭넓게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개별평가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착수하였다.

5) 2021년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서비스 중단, 방역 업무 과중 등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평가지표를 조정하였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우수사례를 국민평가단에서 별도로 평가하였다.

(1) 합동평가

① 평가결과

2021년도('20년 실적) 합동평가는 코로나19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총 44개 지표를 조정하여 5대 국정목표별로 104개 지표에 대해 평가하였다. 78개 정량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는 시부는 전년 대비 1.3%p 상승한 평균 83.0%였으며, 도부는 전년 대비 2.0%p 상승한 평균 87.2%였다. 시부 달성도 상위 지방자치단체는 세종(89.5%), 울산(88.0%), 대전(84.0%) 순이었으며, 도부는 경남(91.0%) 제주(90.8%), 강원·전북(88.5%) 순이었다.

26개 정성지표에 대한 평가 결과는 지표별로 시부, 도부를 구분하여 각 2건씩(부분지표 1개 각 1건) 총 102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였다. 시부에서 우수사례가 많이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는 대구(15건), 대전(10건), 울산(8건) 순이며, 도부에서는 경북(9건), 경기·전남(8건) 순이었다.

특히, 2021년도에는 전년과 다르게 시·도에서 제출한 코로나19 대응 우수사례 총 32건을 대상으로 국민평가단의 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총 15건의 코로나19 대응 우수사례가 선정되었다.

② 평가지표 조정 및 개발

2021년도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2022년도('21년 실적) 합동평가 지표에 대한 조정이 연초부터 진행되어 4월에 최종 확정되었다. 총 116개 지표 중 83개 지표는 유지하고 25개는 목표치를 하향하고, 8개지표는 평가를 유예하였다.

2023년도('22년 실적) 합동평가 지표개발은 5대 국정목표에 대해 총 112개 지표가 10월에 최종확정되었으며, 2022년도('21년 실적) 합동평가 지표 116개에 비해 약 3.4% 감소하였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를 맞아 그간 각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온 국정과제와 주요시책에 대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성과를 측정할 수 있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지원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였다. 또한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평가부담 완화를 고려하였다.

(2) 개별평가

2020년도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총 231개 개별평가 후보군을 검토하여, 총 28개 중앙행정기관의 총 87개 개별평가를 최종 발굴하였다. 행정안전부(15개), 국토교통부(12개), 보건복지부(9개) 순으로 많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현황 파악과 함께, 개별평가의 유사·중복을 해소하고, 평가체계의 타당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심층분석을 진행하였다.

6) 2022년

지방자치단체의 성과창출 의욕을 제고하고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전년도 대비 실적 상승도를 평가하여 인센티브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1) 합동평가

① 평가결과

2022년도('21년 실적) 합동평가는 5대 국정목표별 총 108개 지표에 대해 평가할 계획이다. 평가는 전년과 동일하게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구분하여 실시하며, 정량지표(87개)는 시·도별로 부여된 목표치의 달성 여부를 평가하고 정성지표(21개)에 대해서는 시·도별로 각 2건씩(부분 지표 1개 시부 1건 도부 2건) 총 83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할 계획이다.

국민평가는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각 시·도에서 정성지표 우수사례 중 2건을 선정·제출하였으며, 국민평가단이 총 34건 중 10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할 계획이다.

② 평가지표 조정 및 개발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해 2023년도('22년 실적) 합동평가 지표 중 보건분야 지표에 대한 지표조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2024년도('23년 실적) 합동평가 지표를 개발할 계획이다.

(2) 개별평가

개별평가 심층분석 결과를 토대로, 2022년도 상반기까지 총 87개 개별평가 중 21개 평가는 유지하고 12개 평가는 통·폐합하여, 54개 평가에 대해 평가지표 감축, 보완 등 제도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통·폐합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유사한 평가들이 다수 운영되고 있어 평가의 실효성이 낮은 경우(중기 교통시설 투자계획 실적평가), 자체평가임에도 별도의 상위평가(직접평가)를 실시하여 불필요한 평가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 등은 폐지토록 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와 유사한 평가지표로 운영되고 있는 개별평가는 중복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로 통합토록 하고, 1개 기관 내에서 목적·대상·지표의 유사성이 높은 개별평가를 여러개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도 하나의 평가로 통합·운영토록 하였다. 아울러, 법적 근거가 없고, 평가지표가 단순(예 : 예산집행실적)하여 점검·확인만으로 지표 측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점검으로 전환토록 하였다.

이와 함께 54개 개별평가는 평가지표를 간소화하거나, 유사 지표를 공통지표로 개편하여 측정 결과를 공동 활용토록 하는 등 총 95건의 개선의견을 반영·이행토록 하였다.

또한, 유사 개별평가 신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평가 신설 전 반드시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제도화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였다.

2022년도 상반기 중 구축될 개별평가 DB를 활용하여, 개별평가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후속 조치 확인 등 평가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나. 지방자치단체 평가 추진성과

1) 합동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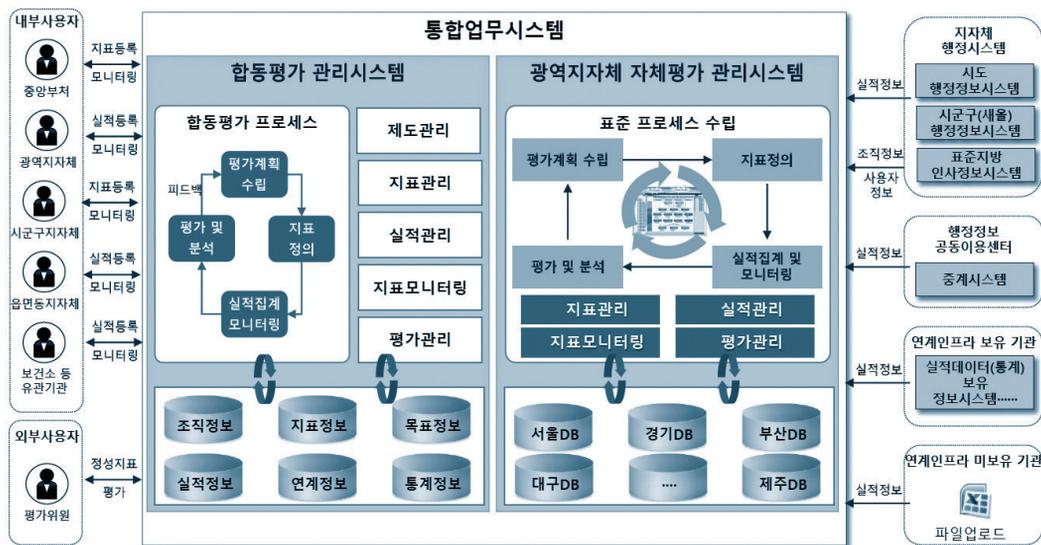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합동평가 실시로 중앙행정기관별·시책별로 다원화되어 있던 지방자치단체 평가를 통합하고 고도화된 평가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평가부

답을 완화하고 국정의 통합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아울러, 지표개발과 평가과정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강화하는 등 평가의 투명성·공정성·신뢰성을 강화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용성을 높였다. 구체적인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합동평가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성과 창출 유도를 위해 지표체계를 개편하였다. 기존의 '분야-시책-지표-세부지표' 체계에서 '국정목표-국정전략-국정과제-지표' 체계로 개편하여 국정과제와 지표 간 연계성을 강화하였다.

둘째, 평가업무 경감을 위해 온라인 합동평가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였다. 분산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시스템과 중앙합동평가시스템을 통합·구성하고 업무프로세스 재설계를 기반으로 한 전주기 프로세스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온라인 합동평가시스템에서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업무시스템과 합동평가시스템 간 연계 구축하여 평가 업무부담을 경감하였다.

〈표 2-2-6〉 온라인 합동평가시스템(VPS) 구성도



셋째, 2018년도('17년 실적) 합동평가까지 미루어졌던 상대평가를 통한 서열화 방식이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경쟁을 유도함에 따라, 평가방식을 개선하였다. 정량지표의 경우 사전에 목표치를 제시하고 목표치 달성여부를 평가하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정성지표의 경우 지표별 시·도부를 구분하여 각 2건씩 우수사례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다.

넷째, 국민의 관심도를 제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2019년도('18년 실적) 합동평가부터 국민평가단을 운영하였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평가에 대한 추가 부담 등을 고려하여 현재 평가 중인 2022년도('21년 실적) 합동평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정성지표 우수사례 중 각 2건씩 제출하여 국민평가 우수사례 10건을 별도로 선정할 계획이다.

다섯째, 평가 전 과정에 관련기관의 참여를 확대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평가지표 개발 단계에서부터 '지표개발추진단'을 중심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의 적극적인 협의과정을 통해 지표를 개발하고 있으며, 평가 운영과정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실적 열람 및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등 평가의 객관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 개별평가

2017년도에 전반적으로 정비한 이후 2019년도까지 개별평가 운영계획 수요를 각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관리해왔다. 그러나 실제 각 기관에서 개별평가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자발적으로 개별평가 운영계획 수요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유사 평가가 중복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등 피평가기관의 평가부담이 과도하다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었다. 이에, 2021년도에 개별평가 후보군을 선정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총 87개의 개별평가를 최종 발굴하였다.

전체 87개 개별평가를 대상으로 유사·중복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21개는 유지하고,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와 유사한 지표로 운영되는 평가나 1개 기관에서 운영하는 여러개의 유사한 평가 등은 통·폐합(12개), 나머지 54개 평가에 대해서는 평가지표 간소화 등 개선의견을 권고하기로 하였다.

또한, 유사 개별평가의 신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평가 신설 전에 반드시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제도화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였다.

제3절 공공기관 평가

1. 개요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는 개별 법률에 의한 평가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업무평가 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평가로 구분된다.

가. 개념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6개 법률에 의한 평가(개별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평가)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지정 공공기관 평가)로 구분된다.

개별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평가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한 공공기관의 평가로 간주되며, 지정 공공기관 평가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소관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한다. 공공기관의 평가는 공공기관의 특수성·전문성을 고려하고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외부 기관이 평가하여야 한다.

공공기관 평가를 실시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미리 평가계획 및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이를 검토한 후 개선방안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나. 대상

1) 개별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평가

개별 법률에서 규정한 평가대상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국가재정법」에 의한 기금운용,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연구회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제·인문사회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등 총 5개 분야 공공기관이다.

〈표 2-3-1〉 개별 법률에 의한 평가대상 공공기관(2021년 기준)

근거 법률	평가대상	대표적 유형	평가 주관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8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130개)	한국전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기획재정부 장관
국가재정법(제82조)	기금(68개)	고용보험기금, 공무원연금기금 등	기획재정부 장관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8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47개)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전기연구원 등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 및 국가 과학기술연구회 (자체평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상위평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8조)	경제·인문 사회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26개)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지방공기업법 (제78조)	지방공기업 (257개) ※ '22년 기준	도시철도공사, 도시개발공사, 관광공사, 상·하수도 등 8개 유형	행정안전부 장관 및 시·도지사

※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 평가는 지방이양 사무로 결정('12.5.16), 관련 법 개정('16.5.29)이 완료됨에 따라 2017년('16년 실적)부터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평가관리 대상에서 제외됨

2) 지정공공기관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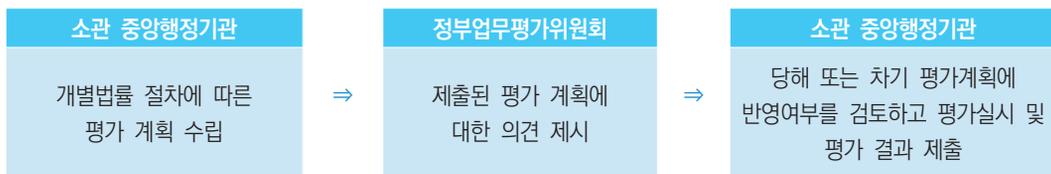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평가 대상은 개별 법률에 의한 평가대상이 아닌 공공기관 중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공공기관이다.

다. 절차

1) 개별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평가

공공기관 평가 실시기관은 개별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고,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제출된 평가계획에 대해 통합평가체계와의 부합 여부 등을 검토하여 의견제시를 한다. 평가 실시기관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검토의견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당해 또는 차기년도 평가계획에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공공기관 평가 실시기관은 개별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즉시 제출한다.

〈표 2-3-2〉 개별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평가 절차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평가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과의 계약에 따른 계약 이행 실적, 경영목표 수립에 따른 경영실적 등을 평가하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위원장 : 기획재정부 장관)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동법 제48조).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기관에 경영실적 평가를 의뢰할 수 있으며(동법 시행령 제27조), 경영실적평가의 효율적인 수행과 경영실적 평가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위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28조).

평가기준과 방법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며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경영실적 평가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편람을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작성한다(동법 시행령 제27조).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6월 20일까지 평가를 마치고, 그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및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2) 「국가재정법」에 의한 기금운용평가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전체 기금 중 3분의 1이상의 기금에 대하여 그 운용실태를 조사·평가하며, 3년마다 재정체계를 고려하여 전체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동법 제 82조). 평가 시에는 기금의 사업성과 및 여유자금 운용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동법 시행령 제 37조 제2항).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금운용실태의 조사·평가와 기금 제도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인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하여 기금 운용 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동법 제82조 제2항).

기획재정부 장관은 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및 국회에 제출한다.

(3)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 평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연구회(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시행한다(「과학기술기본법」 제 32조 제3항).

평가의 내용은 기관의 임무 및 장기 발전목표의 전략성, 연구 및 사업수행의 전문성, 기관 운영의 효율성, 연구 및 사업수행 결과의 우수성, 그 밖에 위원회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다만, 각 연구회 및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한다(「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소관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과 경영내용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동법 제28조). 연구회가 소관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과 경영내용을 평가할 때는 동법 제25조에 따른 기획평가위원회 또는 관련 분야를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20조). 소관 연구기관에 대한 연구 실적 및 경영평가의 내용은 연구회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연구회는 동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소관 연구기관의 평가 결과를 평가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21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그 소관 연구기관의 감독관청이 된다(동법 제29조 제1항). 연구회는 평가 결과를 감독관청의 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청의 장은 제출된 평가결과를 총괄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한다(동법 제28조).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평가기준에 따라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 실적과 경영내용을 평가한다.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평가위원회 또는 관련분야를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의 의견을 들어 평가절차에 따라 평가한다(동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4월 30일까지 의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평가결과를 국무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며, 국무총리는 평가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한다(동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6)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평가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경영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동법 제78조).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지방공기업평가원, 경영평가 전문기관, 회계법인 등을 경영평가기관으로 지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

경영평가 내용은 경영목표의 달성도,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하며(동법 제78조 제2항) 경영평가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다(동법 시행령 제68조).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영평가결과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공기업에 대하여는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사·공단의 기관장에게 해당 공기업 임원의 해임, 조직의 개편 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동법 제78조의2).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를 지체없이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2조 제6항).

라. 결과 활용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미흡기관에 대해 자문을 실시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차년도 평가계획 및 제도 운영 등에 반영하는 한편, 공공기관 및 기관장의 보수·인사·예산 등에도 연계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 평가결과에 대해 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평가담당자에 대해 평가 관련 교육도 시행한다.

1)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평가

종합 평가결과는 부문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S(탁월)',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아주미흡)'의 6등급으로 구분한다. 등급구간은 기관 경영실적 평가의 평균점수 및 표준편차 등을 활용하여 평가결과 확정시에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한다.

평가결과는 인사, 성과급 차등 지급, 예산환류 및 경영개선 등에 활용된다. 경영실적이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해당 기관장과 상임이사에 대하여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임·직원의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률은 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이 결정하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또한, 경영실적 우수기관은 포상하고, 차년도 예산편성시 경상경비 예산을 증액하여 반영하고 있으며,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경영 컨설팅을 하고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실적을 차년도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경영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2) 기금운용평가

기금운용평가 결과는 차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시 반영하고, 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기금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차년도 기금운용평가지침에 활용한다.

기금운용평가는 자산운용평가와 존치평가로 구분된다. 자산운용평가 결과는 차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수립 시 기금운영비를 증액·삭감하는 데 활용된다. 상하위 3분의 1 기금에 대해 기금운영비를 0.5%p 증액·삭감한다. 그리고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경우에는 자산운용평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존치평가 결과는 차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시 사업비 조정과 기금 정비에 활용한다. 또한 기금의 사업비 지출 규모에 비해 자산을 과다하게 보유한 경우,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여유자금을 예탁하도록 권고한다. 평가결과에 따른 이행실적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다음 평가 시에 이를 반영하여 평가한다.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결과는 차기 기관운영계획서 및 연구사업계획서 수립 시 반드시 반영하고, 평가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차기 기관평가에 반영한다. 기관평가 결과와 차기 계획 간 연계를 강화하여 연구기관의 발전전략 도출에 활용한다.

또한, 평가결과 기관의 고유임무로 적절치 않은 것으로 평가된 조직(센터, 연구그룹, 부서 등)은 임무 및 기능을 구조조정하거나 재설정 할 수 있고, 평가등급에 따라 기관의 주요사업비를 조정하여(미흡 이하 삭감, 우수 이상 증액 등) 평가결과와 예산을 연계시키고 있다. 특히, 기관운영 부문 평가의 경우 기관장과 기관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결과에 따라 기관장 성과연봉과 구성원들의 능력 성과급 지급에 차등을 두도록 하고 있다. 또한, 평가결과에 따른 성과우수 사례를 발굴·확산하고,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연구기관 및 공로자는 정부포상(기관, 개인)을 하여 성과 창출을 독려하고 있다.

4) 경제인문사회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 실시 전 평가기준과 계획에 대하여 연구기관 평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및 교육을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연구기관 설명회 및 포상식을 개최한다. 연구기관 평가결과 실적이 부진한 기관(매우 미흡 및 미흡 등급) 등에 대해서는 필요시 연구기관 발전지원사업을 실시하여 평가결과 개선 및 기관발전을 지원하고 있으며, 선정된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연구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연구회에 제출하고 차년도 평가에서 그 이행 여부를 평가하고 있으며, 평가위원으로부터 평가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차년도 평가계획 및 제도개선에 활용하고 있다.

평가결과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간의 자원배분이나 인센티브 부여(경상운영비 인센티브 차등 지급, 정부출연금 차등 지급, 기관장 성과연봉 차등 지급 및 해임 건의, 우수연구기관 및 우수연구자에 대한 포상) 등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평가등급을 활용하여 기관장의 성과연봉을 지급하고 있으며, 2회 이상 연속하여 '매우 미흡'을 받은 기관장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이 가능하다.

5)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지방공기업에 대한 평가등급(가~마, 5등급)이 결정되면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은 사장(이사장), 임원, 직원으로 구분하여 평가급이 차등 지급된다. 평가등급이 '라',

‘마’인 경우에 사장(이사장)과 임원은 다음 연도의 연봉이 동결되거나 5~10% 정도 삭감되는 등 연봉이 조정된다. 2022년도 기준 등급별 평가급 지급률 및 연봉 조정안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3-3〉 2022년도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평가급 지급률

(평가급=연봉(보수)월액×지급률)

평가등급	기관장	임원(급)	직원
가	400~301%	350~251%	200~180%
나	300~201%	250~181%	150~131%
다	200~100%	180~100%	100~80%
라	0%(익년도 연봉 동결)	0%(익년도 연봉 동결)	50~30%
마	0%(익년도 연봉 10~5% 삭감)	0%(익년도 연봉 10~5% 삭감)	0%

또한 평가결과 ‘나’ 등급 이상을 받은 지방공기업 및 소속 임직원 중에서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방공기업 발전유공자(기관)로 선정된 자에게는 표창이 수여된다.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 시스템(cleaneye.go.kr)을 통해 경영평가 결과와 우수사례를 공개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투명성을 제고한다.

한편, 평가결과가 미흡한 기관 중에서 3년 연속 적자이거나, 경영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는 지방공기업에 대하여는 경영진단을 실시한다. 그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사·공단의 기관장에게 해당 공기업 임원의 해임, 조직 개편, 사업 조정 등 필요한 조치사항을 통보하여 경영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2. 운영 실적 및 성과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회적 가치 중심의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평가로 전환하였다. 아울러,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평가를 연구사업 부문과 기관운영 부문으로 이원화하였다.

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평가

1) 총론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도록 사회적 가치 중심의 평가체계를 구

축하였다. 2017년 12월 경영평가제도 1차 개편을 통해 사회적 가치 구현 5대 지표를 신설하였고, 이후 배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2021년 8월 경영평가제도 2차 개편을 통해 기존 평가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여 상시적·전문적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과 공공기관이 공감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평가로 전환하였다.

2) 대상

평가는 매년 지정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2017년도에는 123개, 2018년도에는 128개, 2019년도에는 129개, 2020년도에는 131개 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였으며, 2021년도 평가는 130개 기관이 대상이었다.

3) 방법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매년 3월 20일까지 전년도의 경영실적을 기재한 보고서를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 장관은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매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평가의 전문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수·회계사 등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을 활용하여 실시된다. 평가단 구성시 참여기간, 이해관계, 경영평가 수용도 조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민간전문가 풀 및 주무기관 추천 전문가 등을 활용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평가절차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지표와 목표 설정 등 경영평가편람을 확정하고(전년도 말), 각 공공기관은 사업 및 경영을 실시하며(당해연도), 기획재정부가 경영평가단을 구성하여 각 기관의 경영관리와 주요사업의 실적 등을 평가(다음 해 3~6월)한 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4) 운영실적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총 5회로 매년 실시되었다. 매 회계연도 전까지 평가기준이 되는 경영실적 평가편람을 작성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하였으며, 매년 6월 20일까지 평가를 마치고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평가 결과를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5) 성과

경영평가는 공공기관 성과관리의 핵심제도로써, 자율과 책임의 원칙하에 사후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공공성 제고에 기여하였다. 또한 평가제도 개편을 통한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 신설 및 배점 확대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유도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중심의 평가체계를 구축하였다.

나. 기금운용평가

1) 총론

지난 5년간의 자산운용평가 권고사항에 따라 기금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온 결과, 자산운용 조직의 전문성은 보완되었고, 저금리 기조 하에서도 우수한 수익률을 달성함으로써, 국가 재정운용 효율화에 기여하였다.

지난 5년간의 존치평가에서 기금의 정비와 사업 구조조정,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등을 권고하였으나, 이해관계 조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권고사항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는 실정이다. 그러나 일부 기금은 여유자산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고, 일부 사업이 통폐합되는 등 전체 재정체계를 고려했을 때 국가 재정운용 효율화에 기여하였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기금평가 결과 활용의 실효성 제고 방안 모색, 평가결과 오류 검증 체계 구축 필요성 검토 등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후속조치는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다.

2) 대상

기금운용평가는 「국가재정법」 상 전체 기금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자산운용평가와 존치평가의 평가대상은 평가지침에 따라 매년 선정된다.

(1) 자산운용평가

자산운용평가는 「국가재정법」 상 매년 3분의 1 이상의 기금에 대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자산운용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관리하는 기금(경영평가 대상 기금)과 여유자금 규모가 1조원 이상인 기금은 매년 평가한다. 자산운용 실익이 적은 계정성 기금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그 외 기금은 격년으로 평가한다.

〈표 2-3-4〉 자산운용평가 대상기금

평가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대상 기금(개)	38	38	40	45

(2) 존치평가

존치평가는 「국가재정법」 상 3년마다 기금의 존치필요성 등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2004년도부터 2007년도, 2010년도, 2013년도까지는 3년마다 존치평가를 진행하였으나, 평가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하여 2015년도부터 3분의 1 이상 기금을 매년 평가하는 것으로 개선하였다.

〈표 2-3-5〉 존치평가 대상기금

평가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대상 기금(개)	21	34	23	24

3) 방법

자산운용평가는 기금의 자산운용 실태에 대하여 자산운용 조직체계·정책의 적정성(비계량)과 자산운용 성과인 수익률(계량)을 평가한다. 자산운용 조직체계에서는 자산운용 조직 구축과 인력의 전문성을 평가하고, 자산운용 정책에서는 기금 운용 목적이 달성 가능하도록 목표수익률, 자산배분계획 등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존치평가는 기금사업, 재원구조, 존치타당성을 평가한다. 기금사업에서는 기금 목적과의 부합성,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 등을 평가하고, 재원구조에서는 자체 수입 비중과 기금의 지출규모 대비 자산 규모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그리고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해서 기금 목적의 유효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기금존치의 타당성을 판단한다.

4) 운영실적

자산운용평가와 존치평가는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매년 실시되었다. 평가의 기준이 되는 기금존치 및 운영평가지침을 매 회계연도 전년 1월까지 확정하여 다음해 4월말까지 평가를 마치고 5월말까지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국회에 제출하여 평가결과를 확정·발표하였다.

5) 성과

(1) 자산운용평가

지속적인 자산운용평가를 통해, 기금의 자산운용 조직체계 및 정책은 크게 개선되었다. 금융성

기금 및 사회보험성 기금들은 주식·채권 등 증장기투자 및 대체투자를 확대하여 시장 대비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고, 여유자금 규모가 작고 자체적으로 전문 인력을 구축하기 어려운 중소형 사업성 기금은 연기금 투자플에 위탁해 자산운용 전문성을 보완하였다.

〈표 2-3-6〉 연기금 투자플 위탁 현황

연도	2016 회계연도	2017 회계연도	2018 회계연도	2019 회계연도	2020 회계연도
사업성 기금(50개) 중 90% 이상 예탁 기금 수(개)	32	30	38	29	29
연기금 투자플 총 예탁 규모(억원)	200,376	185,573	180,646	205,548	242,317

기금의 자산운용 전문성을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자산을 운용한 결과, 코로나19 위기 등으로 자산운용 여건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대비 우수한 수익률을 달성하였다.

〈표 2-3-7〉 자산운용 결과

연도	2016 회계연도	2017 회계연도	2018 회계연도	2019 회계연도	2020 회계연도
기금 평균 수익률(%)	1.66	2.30	1.23	3.02	2.83
국고채 3년 금리(%)	1.44	1.80	2.10	1.53	0.99
정기예금 1년 금리(%)	1.16	1.85	2.02	1.66	1.56

(2) 존치평가

지속적인 존치평가를 통해, 사업구조조정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위탁을 권고하였으나, 사업 구조조정은 이해 당사자 간 이해관계 조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2017년~2021년도 평가 결과에 따라 유사 중복 사업과 기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은 일부 통폐합되었고, 사업비 지출 규모에 비해 수입 규모가 과다한 기금은 부담금 인하, 공공자금관리 기금 위탁 등을 이행하였다.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1) 총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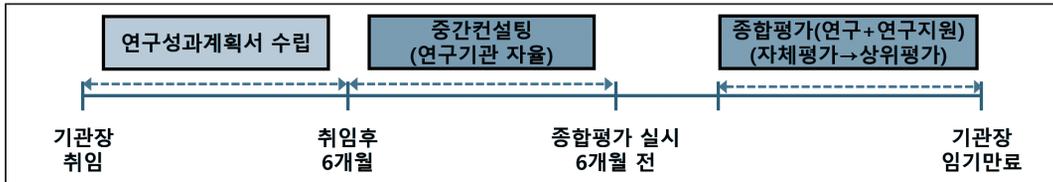
‘2019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19.6)’을 수립하여 ‘임무중심형 종합평가’에서

‘기관운영평가’와 ‘연구사업평가’로 평가가 이원화되며 평가체계에 큰 변화가 있었다. 이는 기존의 ‘임무중심형 종합평가’ 체계에 따른 기관장평가 방식이 임기 내 단기성과 중심으로 기관이 운영되고 중장기 원천연구가 저해된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연구회의 정책 제안과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의견을 반영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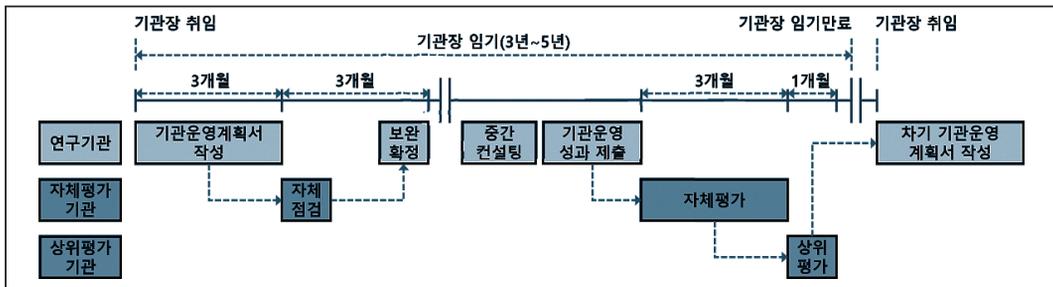
기관장 취임 후 수립한 기관운영계획서에 대한 달성 성과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기관운영평가(기관장평가)’와 기관장 임기와는 별도로 최대 6년간의 주요 전략·성과목표에 대한 우수성을 평가하는 ‘연구사업평가’로 분리함으로써 연구기관이 안정적으로 중장기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2-3-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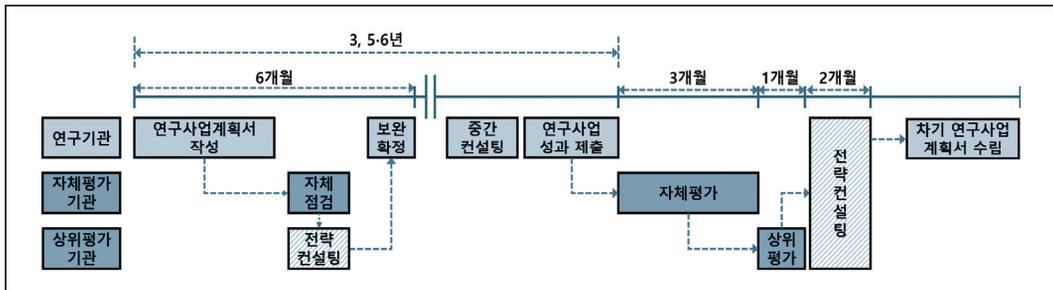
〈 임무중심형 종합평가 체계(2016년~2021년) 〉



〈 기관운영평가 체계(2020년~) 〉



〈 연구사업평가 체계(2022년~) 〉



2019년도 하반기 이후 기관장이 새로 취임한 기관부터 개편된 평가체계를 적용하기 시작하여 기존 ‘임무중심형 종합평가’와 ‘기관운영평가 및 연구사업평가’가 2021년도까지는 병존하는 상태로 제도가 운용되었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계획 및 결과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기관운영 및 연구사업평가 분리, 연구사업평가 주기 차별화, 질적평가 강화, 이원화된 평가체계의 본격 시행에 따른 준비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후속조치가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다.

2) 대상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평가 대상으로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의 25개 연구기관, 중앙행정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위사업청, 해양수산부) 소관 22개 연구기관 등 총 47개 연구기관이다.

3) 방법

‘임무중심형 종합평가’는 기관장이 새로 취임하고 6개월 이내에 ‘연구지원 부문’과 ‘연구 부문’을 종합하여 임기 기간에 대한 연구성과계획서를 수립하고, 달성 정도 및 성과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체계이다.

‘기관운영평가’는 기관장이 새로 취임하고 6개월 이내에 기관의 역할·책임을 다할 수 있는 효율적인 기관운영방안을 담은 ‘기관운영계획서’를 수립하고, 기관장 임기 중간에 ‘중간컨설팅’을 거쳐 기관장 임기 종료 전에 계획서의 달성 성과를 평가한다.

또한 ‘연구사업평가’는 기관장 임기와는 별도로 기관의 역할·책임 및 중장기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역사업별 전략 목표에 대한 성과를 평가한다. ‘연구사업평가’는 평가주기를 확대(3년→3·5·6년)하였는데,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 설립목적 또는 사업 성격이 연구개발인 44개 기관은 5·6년으로, 그 외 3개 기관은 3년(기관장 임기 연동)으로 평가주기를 차별화하였다.

‘임무중심형 종합평가’나 ‘기관운영평가 및 연구사업평가’ 모두 소관 중앙행정기관·연구회에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적절성을 점검하는 상위평가를 진행한다. 자체평가에서는 해당기관 연구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계획서에서 설정한 성과목표의 달성도와 창출된 성과의 질에 대해 정성평가한다. 상위평가에서는 중앙행정기관·연구회의 ‘자체평가 절차·체계의 적절성’ 및 연구기관의 ‘자체평가 운영·결과의 적절성’을 점검하여 평가결과를 확정한다.

4) 운영실적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는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총 6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2019년도의 제도개선에 따라 '임무중심형 종합평가'는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5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2021년도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마지막으로 종합평가 체계가 종료되었다. '기관운영평가'는 202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표 2-3-9〉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결과

〈 임무중심형 종합평가 실시결과 〉

연도	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중앙행정기관 소관 기관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7년	12	-	2	8	-	-	-	-	-	1	1	
'18년	12	-	1	4	-	-	-	2	4	1	-	
'19년	15	-	4	4	-	-	-	2	5	-	-	
'20년	16	-	7	4	1	-	-	1	3	-	-	
'21년	1	-	-	-	-	-	-	1	-	-	-	

※ 2019년 제도개선을 통해 '임무중심형 종합평가'에서 '기관운영평가'와 '연구사업평가'로 이원화되며 '임무중심형 종합평가'는 2021년을 마지막으로 종료

〈 기관운영평가 실시결과 〉

연도	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중앙행정기관 소관 기관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20년	2	-	-	-	-	-	-	-	2	-	-	
'21년	9	-	3	3	-	-	-	3	-	-		

5) 성과

문재인 정부에서 성과평가의 기본방향은 평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연구 현장의 성과 창출 역량을 제고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기관평가 체계를 '임무중심형 종합평가'에서 '기관운영평가(기관장평가)' 및 '연구사업평가'로 이원화하였다. 기관 자율적으로 '기관운영계획서 및 연구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평가시 계획서에 대한 달성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연구기관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성과의 질적 우수성 평가를 위해 연구사업 부문

에서 목표달성도에 대한 정량평가는 폐지하고 전문가의 정성평가로 전면 전환하였다. ‘기관운영 평가’의 경우에도 정량평가는 외부평가 결과를 활용하며 비중을 최소화(25%)하였다. 또한 ‘업무 중심형 종합평가’를 실시할 때 상위평가의 평가항목 중 ‘결과의 적절성’ 평가항목을 제외함으로써 상위평가를 간소화하고 중앙행정기관·연구회의 자체평가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라. 경제인문사회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1) 총론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소관 연구기관이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정책대안 개발 등 성과를 올리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그 기능수행 과정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 수월성 제고와 책무성을 확보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경제인문사회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계획 및 결과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평가편람 조기확정, 성과급 등 인센티브 부여방안 개선, 평가단 구성 방법 및 운영, 연구기관의 정부현안과제 지원기능 강화, 평가지표의 변별력 제고 등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후속 조치는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다.

2) 대상

경제인문사회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대상은 24개 소관 연구기관, 1개 부설기관 그리고 1개 대학원대학교 등 총 26개 기관이다. 리더십 및 책임경영은 26개 평가대상기관의 기관장을 대상으로 하며 재임 1년 미만의 기관장은 평가에서 제외된다.

3) 방법

매년도 연구기관 평가편람 및 평가추진계획에 따라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평가편람의 평가기준 및 양식에 맞춰 연구기관은 실적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평가위원이 평가한다. 실적보고서에 대한 서면 및 온라인 평가, 실사(집체)평가를 통한 연구기관 인터뷰와 실적보고서의 확인·검증 절차를 거친다.

평가는 크게 ‘연구과정관리’, ‘연구보고서 평가’, ‘국가정책 지원 성과 평가 및 경영내용 평가’, ‘리더십 및 책임경영 평가’ 등으로 시행된다. ‘연구보고서 평가’는 연구보고서 우수성 위원회를 구

성하여 연구보고서의 품질을 평가하고, 2012년도부터는 연구보고서의 연구윤리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별도로 평가하여 반영하고 있다. ‘국가정책 지원 성과’는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5개 분과로 구분해서 연구과제의 정책수립 기여도와 정책집행사업 기여도, 국정과제 및 긴급연구 기여도를 평가한다.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 평가’는 각각 평가지표별로 2~7인의 평가위원이 평가를 진행한다. ‘리더십 및 책임경영 평가’는 기관장에 대한 평가로 집체·실사평가로 시행하고 있다.

평가척도는 5등급 척도(S(1.0)~E(0.6))를 기본으로 하여 평가지표 및 요소의 특성에 따라 일부 3등급(준수, 일부준수, 미준수) 및 2등급(준수, 미준수) 척도를 활용하고 있다.

4) 운영실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는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매년 실시되었다. 크게 3단계로 진행하였는데 첫째, 평가연도 최소 1년 전에 평가기준(평가편람)을 확정하여 연구기관에 통보하고, 둘째, 평가편람 및 평가추진계획에 따라 평가단을 구성하여 26개 소관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국무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였다. 셋째,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연구기관 자체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실적이 부진한 기관에 대한 연구기관 발전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연구기관의 실적개선에 기여하였다.

5) 성과

연구기관 평가를 통해 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성과를 제고하고 경영개선 및 혁신에 기여하였다. 연구기관 경영개선 및 발전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평가와 연구기관의 발전을 연계하는 선순환적인 고리를 형성하였다. 또한 연구보고서의 품질 제고와 국가정책 지원뿐만 아니라 연구기관의 경영효율화 및 정부의 정책 이행에도 기여하였다.

마. 지방공기업

1) 총론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의 경영평가를 살펴보면, 우선 지방공기업 설립이 증가하면 평가 대상이 늘어났다(’18년 241개 → ’22년 257개). 또한, 지방공기업이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책임 경영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경영평가 지표를 지속가능경영, 경영성과, 사회

적 가치로 변경하였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지방공기업 평가계획 및 결과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공공기관 개혁내용의 평가 반영, 사회적 가치 및 재난·안전관련 평가지표 보완, 광역·기초 평가 일원화의 안정적 정착, 주민참여평가 확대, 평가 대상기관 수범사례 공유·확산, 평가결과를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등에 반영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후속조치가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다.

2) 대상

경영평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영기업 중 상·하수도와, 신설·청산명령을 받은 지방공사·공단을 제외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광역·기초 공사공단 및 광역 상·하수도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여 평가하였고, 기초 상·하수도는 시·도에서 주관하여 평가하였다. 2018년도부터 상·하수도의 경영평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매년평가에서 격년평가로 변경하였다.

2017년도 총 343개(행정안전부 주관 154개, 시·도 주관 189개), 2018년도 241개(행정안전부 주관 153개, 시·도 주관 하수도 88개), 2019년도 270개(행정안전부 주관 159개, 시·도 주관 상수도 111개), 2020년도 249개(행정안전부 주관 158개, 시·도 주관 하수도 91개), 2021년도에는 272개(행정안전부 주관 159개, 시·도 주관 상수도 113개) 기관을 평가하였는데, 해마다 지방공기업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평가대상은 매년 1~3개씩 증가해왔다.

3) 방법

경영평가는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지방공기업 특성에 따라 평가유형을 구분한 후, 각각의 유형별 평가에 적합한 경영평가단을 구성하여 매년 4~6월에 실시하였다.

평가지표는 '대분류-중분류-세부지표'의 3단계 체계로 구성되었다. 2017년도에 대분류 지표는 '계획-집행-성과도출'이라는 업무과정 및 정책준수를 포함하여 ① 리더십·전략, ② 경영시스템, ③ 경영성과, ④ 정책준수로 구분되었다. 중분류지표는 ① 리더십, ② 전략, ③ 경영효율화, ④ 주요 사업활동, ⑤ 주요 사업성과, ⑥ 경영효율성과, ⑦ 고객만족성과, ⑧ 공기업 정책준수라는 8개 지표로 구성되었다. 세부지표는 공통지표(리더십, 조직·인사·재무관리, 고객만족도 등), 공기업별 특성지표(주요사업, 경영효율성과 등), 정책준수지표(인건비 인상률, 경영공시 등)에 따라 35개 내외로 구성되었다.

2018년도에는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회적 가치평가(① 일자리

확대, ② 사회적 책임 등)를 도입하였고, 2020년도에는 지방공기업이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 경영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① 지속가능경영, ② 경영성과, ③ 사회적 가치로 대분류지표를 구분하였다. 중분류지표는 ① 리더십, ② 경영시스템, ③ 주요사업, ④ 경영효율성과, ⑤ 고객만족도, ⑥ 일자리 확대, ⑦ 사회적책임 등 7개 지표로 구성되었다. 세부지표는 공통 지표(리더십, 전략경영, 혁신성과, 조직·인사·재무관리 등), 지방공기업별 특성지표(주요사업, 경영효율성과 등), 정책준수지표(일자리 창출, 소통 및 참여, 윤리경영, 인권경영, 재난안전관리 등)에 따라 15개 내외로 구성되었다. 이들 지표는 해마다 지방공기업 등의 의견을 들어 수정·보완 또는 신설 등을 통해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정책환경 및 경영여건 변화를 반영하려 노력하였다.

평가유형은 특성에 따라 2017년도까지는 ① 상수도, ② 하수도, ③ 도시철도공사, ④ 도시개발공사, ⑤ 특정공사·공단, ⑥ 시설관리공단, ⑦ 환경시설공단의 7개 분야로 나누었으나, 2018년도에는 특정공사·공단에서 ⑧ 관광공사(7개)를 분리하여 8개 유형으로 평가하였다.

유형별 평가를 위해 교수,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연구위원 등 외부 전문가로 경영평가단을 구성하였다. 특히, 2018년도부터 행정안전부 평가에는 기관장 리더십 지표 평가시 주민참여 평가체계를 도입하여 확대·운영하였다.

〈표 2-3-10〉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평가유형(2022년 기준)

평가유형		구분기준
1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중 수도사업 또는 공업용수도사업을 경영하는 공기업
2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중 하수도사업을 경영하는 공기업
3	도시철도공사	지방공사 중 궤도사업을 경영하는 공기업
4	도시개발공사	지방공사 중 주택건설, 토지개발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업
5	특정공사·공단	다른 유형에 속하지 않는 공사·공단(농수산물공사, 에너지공사, 교통공사, 경륜공단, 기초 관광공사 등)
6	관광공사	광역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지방공사 중 관광진흥, 관광마케팅, 컨벤션센터를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공기업
7	시설관리 공사·공단	지방공단 중 주차장, 체육시설물 등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물 관리·운영 등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공기업 및 시설관리형 공사
8	환경시설 관리공사·공단	지방공사·공단 중 하수처리를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업

4) 운영실적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평가결과를 주체에 따라 살펴보면, 우선 행정안전부의 경우, 2017년도 154개 기관 평균점수 85.3점(전년 84.9점 대비 0.4점 ↑), 2018년도 158개 84.4점(전년 대비 0.9점 ↓), 2019년도 159개 84.9점(전년 대비 0.5점 ↑), 2020년도 158개 85.2점(전년 대비 0.3점 ↑), 2021년도 159개 86.1점(전년 대비 1.0점 ↑)으로 평균점수가 85점 전후로 5개 평가등급(가~마) 중 ‘다’ 등급 수준을 보였다.

시·도의 결과를 보면, 2017년도 상·하수도 189개 기관 평균점수 86.3점(전년 84.4점 대비 1.9점 ↓), 2018년도 하수도 88개 83.3점(전기 83.6대비 0.3점 ↓), 2019년도 상수도 111개 86.8점(전기 88.3대비 1.5점 ↓), 2020년도 하수도 91개 82.1점(전기 대비 1.2점 ↓), 2021년도 상수도 113개 83.3점(전기 대비 3.5점 ↓)으로 평균점수가 85점 전후로 5개 평가등급(가~마) 중 ‘다’ 등급 수준을 보였다.

〈표 2-3-11〉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 평가결과

평가연도	대상기관	합 계	평가지표별 평점				
			리더십/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정책준수	
2017년	154개	85.32	리더십/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정책준수	
			83.98	85.24	87.83	72.10	
2018년	158개	84.43	리더십/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사회적가치	정책준수
			84.13	83.32	87.46	85.46	52.51
2019년	159개	84.85	85.66	85.66	86.22	85.79	68.93
2020년	158개	85.16	지속가능경영		경영성과	사회적 가치	
			85.16		85.78	84.27	
2021년	159개	86.14	85.26		88.35	85.71	

5) 성과

평가점수가 산출되면 시·도의 평가대상을 포함하여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관별 평가등급(가~마)이 결정된다. 평가등급에 따라 기관장·임원·직원별로 평가급을 차등 지급하고, 하위등급의 기관장 및 임원은 익년도 연봉이 동결(‘라’ 등급)되거나, 삭감(‘마’ 등급, △5~10%)되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평가결과가 미흡한 기관 중에서 매년 6~8개 공기업에 대해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법인 전환, 사업축소·구조조정 등 경영개선을 이행토록 하였다. 그 밖에도 우수기관·개인에 대한 표창, 우수사례의 공유·확산 등을 통해 지방공기업이 혁신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경영혁신, 공공성 유도를 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주민서비스 제고에 기여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제3장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 실적

제1절 정부업무 성과관리 체계

1. 기본개념	188
2. 목적 및 기본원칙	189
3. 추진체계	191
4. 운영성과	194

제2절 정부업무 성과관리 연도별 주요내용

제1절 정부업무 성과관리 체계

1. 기본개념

성과관리는 성과평가의 상위개념이다. 기관이 임무 달성을 위해 '계획·집행·점검·평가·환류'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성과관리는 한 집단 및 개인의 성과를 관리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성과는 '결과' 중심의 성과를 말하며, 집단은 하나의 공동체로서 일반적으로 조직이라 할 수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부서, 부처/기관, 정부, 그리고 국가 등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관리라 함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인적자산', '일하는 방식', '제도' 등에 관한 관리를 포함하며, 기능적 차원에서 기획, 예산결정, 집행, 평가, 환류, PR(Public Relations) 등도 포함한다.

공공부문의 성과관리는 민간부문의 성과관리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공공성이라는 가치가 강조되고, 일하는 방식에서 민주성이 전제되며, 국민에 대한 책무성 강화를 위한 제반 절차가 요구되는 등 공공부문만의 특수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민간부문의 성과관리와 다소 차이가 있다.

성과관리를 성과평가와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과평가는 성과관리의 한 부분으로서 성과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또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측정/평가가 필요하고 이에 해당되는 것이 성과평가라 할 수 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는 성과관리를 “정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성과관리란 정부업무 추진의 효율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계획 - 집행·점검 - 평가 - 환류'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2. 목적 및 기본원칙

성과관리는 정책의 최종 고객인 국민의 만족도 제고가 목적이며, 통합 성과관리체계, 자율성과 책무성 확보, 효율적 성과관리, 환류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가. 목적

정부업무 성과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 확보를 통해 정책 등의 품질을 제고시킴으로써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 등의 최종 고객인 국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국민책무성 강화

정부업무 성과관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국민에 대한 책무성 강화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성과는 국민의 입장에서 규정되고 평가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국민을 위한 성과가 되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는 정책추진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한편, 정책추진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민의 평가를 받음으로써 국민에 대한 책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성과관리라고 할 수 있다.

(2) 미래지향적 관리

성과관리가 하나의 성공적인 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부 및 각 기관의 성과향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는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설정하여 제대로 실행해야 한다. 성과관리제도는 이러한 각 과정을 지원하는 관리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즉, 성과관리제도는 지속적인 성과향상을 위한 미래지향적 제도이다.

(3) 체계적 업무 개선

위에서 언급한 ‘미래지향적 관리’는 체계적인 업무개선이 계속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성과관리의 핵심은 성과가 높은 이유와 낮은 이유를 파악하여, 가장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내는 데 있다. 즉, 성과의 고저에 따른 상벌보다는 성과고저의 원인파악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지식이 축적될 때 장기적으로 조직역량은 향상되고 업무개선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4) 조직구성원 역량 강화

성과관리는 성과의 고저에 따라 조직구성원을 보상·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가 낮은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하여 향후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또는 보직을 조정하여 각 개인이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이러한 관리 철학은 장기적으로 조직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5)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형성

성과관리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성과중심의 조직문화가 장기적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이는 아직까지도 근절되지 않은 관행이라 할 수 있는 정실주의, 연공서열, 연고주의 등을 완화하고 조직관리의 핵심을 성과에 두는 것이다.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는 조직구성원의 사기를 양양하고 인사관리 및 보수체계를 합리화하며, 상관에 대한 충성을 국민에 대한 충성으로 변화시키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나. 기본원칙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르면 정부업무에 대한 성과관리는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첫째, ‘통합 성과관리 체계’의 구축(제1조)이다. 즉, 부분적·단편적 성과관리 방식을 개선하여 기관의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기관·부서·개인의 성과관리가 연계된 통합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최대한의 자율성 부여와 엄격한 책무성 확보(제4조)이다. 즉, 정책 등의 계획 수립과 집행에 대하여는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정부업무의 성과와 정책품질, 국민 만족도를 제고하는 것이다. 특히, 계획 수립 시 관련기관, 이해관계인 및 조직 구성원들과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설정에 관한 의견조율 등 충분한 합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셋째, 목표와 전략에 입각한 사업계획과 업무관리(제5조, 제6조)이다. 즉, 효율적 성과관리를 위해 임무에 대한 명확한 규명과 이에 근거한 구체적인 전략과 목표를 사전에 설정하여야 한다.

넷째, 평가결과를 정책개선 및 자원배분에 환류(제28조~제30조)해야 한다. 즉, 제시된 목표와 달성도에 대한 평가결과를 정책개선, 인사·조직·재정 등에 환류하는 등 성과와 보상 등을 구체적으로 연계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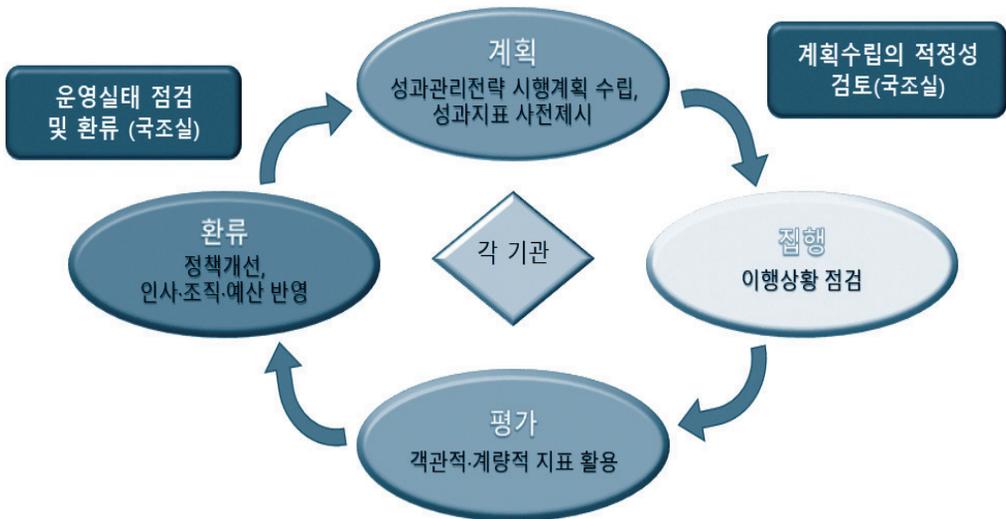
3. 추진체계

‘계획 수립 - 집행·점검 - 평가 - 환류’의 추진체계로 구성된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각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상황 점검결과와 자체 평가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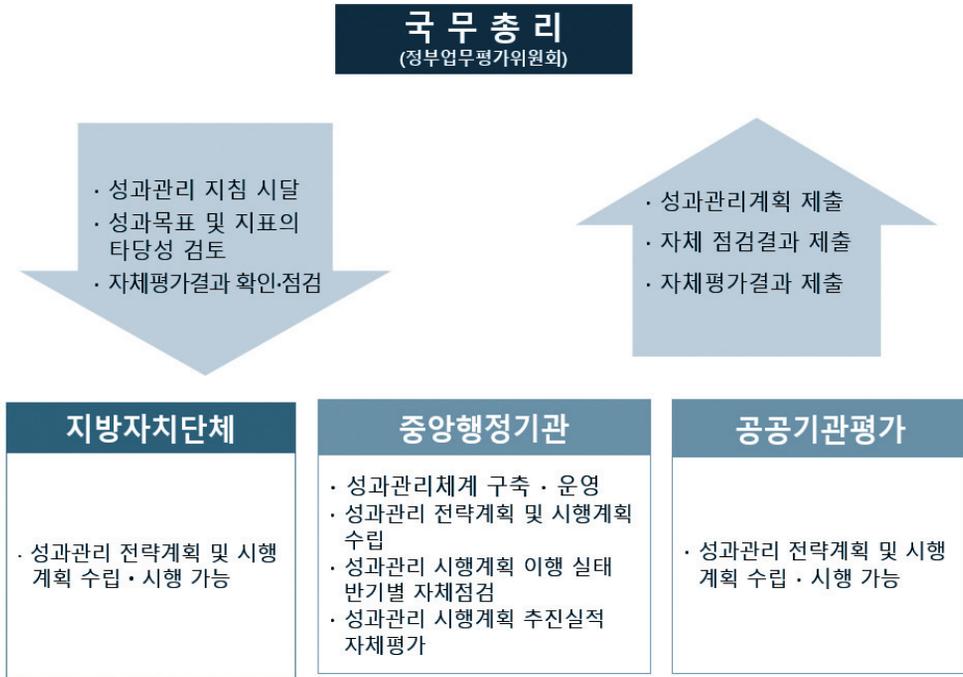
정부업무 성과관리는 ‘성과관리계획 수립 - 집행·점검 - 평가 - 환류’ 체계로 구성된다. 정부 각 기관은 기관의 임무와 목표, 구체적 실행수단을 포함한 성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목표와 지표를 사전에 제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추진한 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정책 과정에 환류하는 과정으로 성과관리를 구체화하여 운영한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거하여, 각 기관은 기관별 목표를 구체화하는 ‘성과관리 전략계획’과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정책집행을 통하여 사전에 계획된 정책목표를 실현하고 연말에는 제시된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였는지를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평가한다. 평가결과는 정책 개선, 예산, 조직, 인사, 보수 등에 환류하는 구조를 기본으로 한다.

〈표 3-1-1〉 정부업무 성과관리체계도



〈표 3-1-2〉 정부업무 성과관리 추진체계도



가. 계획 수립

중앙행정기관은 5년 단위의 ‘성과관리 전략계획’과 1년 단위의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성과관리 전략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기관을 포함한 당해 기관의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5년 단위의 중·장기계획으로써, 최초 수립 이후 최소 3년마다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성과관리 전략 계획에서는 기관의 임무·전략목표 등을 설정하고 동 계획과 관련이 있는 법령에 의한 중·장기 계획을 포함할 수 있으며, 「국가재정법」에 의한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성과관리 전략계획의 실행계획인 ‘성과관리 시행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성과관리 전략 계획’에 기초하여 당해 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으로써, 당 해 연도의 성과목표·관리과제·성과지표 및 재정부문의 과거 3년간 성과결과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목표체계와 성과지표의 적절성을 검토·조정하는 등 성과관리계획 수립을 지원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 계획 수립 시에 국정과제, 기관업무계획, 대통령 지시사항 등과 긴밀히 연계해야 하며, 계획 수립 후 이를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에 준하여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나. 집행·점검

중앙행정기관은 주어진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과제의 추진과정과 실적 등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국무조정실은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에 대한 운영실태의 확인·점검을 통해 정부 내 성과관리 발전을 지원·유도할 수 있다.

다. 평가

중앙행정기관은 매년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연말실적을 기준으로 다음해 1~3월 기간 중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성과관리시행계획상의 관리과제와 과제별 성과지표는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의 대상과제 및 성과지표로 활용된다.

국무총리는 정부 내에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시책, 다수기관 관련시책, 현안시책 등에 대하여 특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라. 평가결과의 환류

기관 차원에서는 정책개선 또는 예산편성에 반영하거나 조직관리에 활용하고, 개인 차원에서는 개인성과 및 인사와 연계하거나 성과급에 반영할 수 있다. 특히, 예산과의 연계 측면에서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10% 이상 예산을 삭감하거나 폐지하고, 성과가 미흡하지는 않으나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사업은 증액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4. 운영성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는 정부업무의 능률성·효과성·책임성 향상을 위해 각 기관으로 하여금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기획·평가·보고 등 기관 업무 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관리수단으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활용하고 있으며,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기관의 우선순위 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주기적으로 성과관리 시행계획상 관리과제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연간 추진실적에 대해 기관 스스로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평가결과에 따라 인사·예산·정책반영 등 환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자율적인 성과관리 역량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성과관리계획 수립 지침 제공 및 전문가에 의한 성과관리계획 검토 등을 통해 각 기관의 성과관리계획이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성과관리의 타당성 제고를 위해 관리과제 및 성과지표 등의 수정기회를 부여하고, 각 기관의 성과관리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정부기관의 성과관리 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성과관리 제도개선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제2절 정부업무 성과관리 연도별 주요내용

1.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17.5.9)에 따라 국정기조 및 정부 조직개편 사항 등을 중장기 전략목표와 성과목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전략계획(2017~2021)을 새롭게 수립하였다.

가. 전년 대비 주요 변경 사항

첫째, 문재인 정부의 조직개편(‘17.7)에 따라 대상기관이 조정되었다. 신설된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등을 포함시킴에 따라 성과관리·자체평가 대상은 44개 기관으로 확정되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조 및 조직개편 사항 등을 기관의 중장기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에 반영하기 위해 기관별 성과관리 전략계획을 수립하였다.

둘째, 성과관리 계획 목표체계의 논리적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하나의 성과목표가 다수의 이질적인 관리과제 또는 한 개의 관리과제로 구성되지 않도록 목표와 수단의 논리적 연계성을 고려하여 적정수의 관리과제를 설정하도록 하였다.

셋째, 성과목표별 성과지표를 관리과제의 성과지표와 중복되거나 관리과제의 복합지표로 구성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도록 하였다. 성과목표는 관리과제의 상위 개념이므로 성과지표의 성과목표도 보다 상위차원의 포괄적이고 대표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하도록 하였다.

넷째, 주요정책 부문 자체평가 시 성과지표의 목표치 적극성을 평가기준으로 반영토록 하였다. 자체평가의 관대화 방지를 위해 성과목표 달성도 평가시 난이도 등 성과지표의 목표치 적극성을 반영하여 각 기관이 자체평가를 추진하도록 하였다.

나. 성과관리계획 수립

국무조정실은 2017년 3월에 2017년도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을 시달하였으며, 각 기관은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성과관리계획(안)을 3월말까지 제출하였다. 국무조정실은 정부출범에 따라 6월에 2017년도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 추가지침’을 시달하고 기관별로 성과관리 계획 및 자체평가계획을 수정해서 8월말까지 제출하여, 9월에 확정되었다.

- 2017년 성과관리계획 수립 관련 주요일정
 - 2017년도 성과관리 운영지침 각 기관 시달 : 2017년 2월
 - 각 기관별 성과관리계획(안) 제출 : 2017년 3월 31일
 - 2017년도 성과관리 운영 추가지침 각 기관 시달 : 2017년 6월
 - 각 기관별 성과관리계획수정(안) 제출 : 2017년 8월

성과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기관에는 44개 중앙행정기관이 포함되었다. 성과관리계획에는 당해기관이 임무달성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전반적인 업무를 포괄하되, 평가 및 개인 성과관리와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 주요정책과제·재정성과·인사·조직·정보화 등 자체평가부문을 고려하여 작성하도록 하였다.

각 기관에서 수립한 성과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에서 목표체계의 타당성 등을 사전 검토하고, 기관에서는 국무조정실의 검토의견을 반영해서 성과관리계획(안)을 수정·보완하여 최종적으로 계획을 확정하였다.

44개 기관에서 195개의 전략목표, 591개의 성과목표, 1,997개의 관리과제, 4,241개의 성과지표를 확정하였고, 기관 평균 전략목표 4.4개, 성과목표 13.4개, 관리과제 45.4개, 성과지표 96.1개를 설정하였다. 성과관리계획상 국정과제 추진 관련 관리과제가 53%를 차지했다.

〈표 3-2-1〉 2017년도 성과관리계획 수립 현황

(단위 : 개)

구 분	기관 수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전 체	기관평균	전 체	기관평균	전 체	기관평균	전 체	기관평균
'17년	44	195	4.4	591	13.4	1,997	45.4	4,241	96.4
'16년	43	193	4.5	590	13.7	2,036	47.3	4,134	96.1

2016년도 성과관리계획과 비교하면 기관별 전략목표·성과목표의 수는 유사한 수준이나, 관리과제의 수는 다소 감소하였다. 전년 대비 관리과제의 성과지표 중 투입 및 과정 지표의 비중은 큰 변동이 없고, 산출지표는 다소 증가(3.7%), 결과지표는 다소 감소(△3.5%)하였다.

〈표 3-2-2〉 연도별 계획 현황 비교

(단위 : 개, 괄호안 : %)

구 분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소계	지표성격			
			투입	과정	산출	결과
'17년	810	4,241 (100%)	96 (2.3%)	397 (9.4%)	1,855 (43.7%)	1,893 (44.6%)
'16년	821	4,134 (100%)	88 (2.1%)	406 (9.8%)	1,652 (40.0%)	1,988 (48.1%)

다. 성과관리시행계획 이행상황 자체점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6조 제4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대한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2017년도 자체평가 대상 과제(주요정책·재정사업·R&D사업·행정관리역량)에 대해 관리과제별 계획대비 추진사항, 목표달성도 등 ‘2017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대한 상반기 이행상황 점검을 7월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독려하였다. 점검방법은 전자통합평가시스템(e-IPSES)을 활용하였다.

라. 성과관리 운영실태 점검

국무조정실은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 수준을 진단하고 정부 내 성과중심 문화 정착을 위해 2018년 2월에 44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도 성과관리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을 기관 실적자료를 토대로 서면으로 실시하였다. 점검항목은 계획의 적절성, 자체평가의 적절성, 환류의 적절성, 제도운영의 충실성 등 4개 분야 7개 항목을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점검항목 및 배점은 아래와 같다.

〈표 3-2-3〉 2017년도 성과관리 운영실태 점검항목 및 배점

점검항목	점검지표	배 점
성과관리 계획 수립의 적절성	■ 계획 및 지표의 적절성	20
	■ 계획 수립 노력도	10
상반기점검 및 자체평가의 적절성	■ 상반기 자체점검 및 연말 자체평가 결과분석의 적절성	15
	■ 자체평가 적절성 확보 노력	15
환류의 적절성	■ 환류의 적절성	15
제도운영의 충실성	■ 기관역량 제고 노력도	15
	■ 제도운영 우수사례	10

점검결과 각 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에 따라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에 대한 관심과 운영수준은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제인 정부 국정과제를 성과관리계획에 충실히 반영하고, 성과관리계획 이행상황 점검·평가 및 평가결과 환류 등 성과관리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기관별 성과관리 추진의지의 편차가 존재하고, 일부기관은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를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항목별로는 계획수립의 경우 국정과제 등을 반영하고, 사전검토도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점검·평가 항목에서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 의견수렴을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등 자체평가 역량이 강화되었다. 환류 등의 항목은 자체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성과급이 차등 지급되고, 반영비율도 전년대비 상향('16년 31.4% → '17년 37.9%)되었다. 기관장의 추진의지가 높을수록 성과관리를 충실히 운영하고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어 성과관리 제도 운영에 있어 기관장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결과는 2018년 2월에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되었고,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농촌진흥청 등 성과관리 운영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표창 수여 및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2. 2018년

기관 대표 성과지표를 개발토록하여 기관 전체의 업무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했다. 2018년도 운영실태 점검시에는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지원단을 구성하여 실태점검의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가. 전년 대비 주요 변경 사항

첫째, 기관 대표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관리했다. 기관에서 개별부서 사업단위 수준의 성과를 관리함에 따라 기관 차원의 종합적인 성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지표 선정 시 국민 의견수렴이 부족하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관 전체의 업무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관리하도록 했다.

둘째, 주요정책 부문 자체평가 결과 미흡과제에 대한 심층분석을 실시하도록 했다. 환류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제의 미흡원인에 대해 정책(환경) 외에도 인력(업무량)·조직(구조) 차원 등을 종합적으로 심층진단하고,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개선 전략 및 이를 실행할 조직과 인사관리방안을 마련토록 하였다.

셋째, 성과목표의 성과지표 달성도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강화했다. 성과목표 수준의 통합적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운영실태 점검시 성과목표의 성과지표 달성도를 점검토록 하였다.

넷째,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국무조정실에서 정부 국정목표와 기관 성과관리계획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목표체계 및 성과지표의 적절성 등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나. 성과관리계획 수립

2018년도 성과관리계획 수립지침은 2018년 4월에 시달되었으며, 각 기관은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성과관리계획안을 4월말까지 제출하였다. 국무조정실은 각 기관의 계획을 사전검토한 후 개선보완을 요청, 최종적으로 5월에 각 기관 성과관리 전략계획과 시행계획이 확정되었다.

- 2018년 성과관리계획 수립 관련 주요일정
 - 2018년도 성과관리 운영지침 각 기관 시달 : 2018년 4월 2일
 - 각 기관별 성과관리계획(안) 제출 : 2018년 4월 30일
 - 기관 제출 계획(안)에 대한 국무조정실 사전검토 : 2018년 5월
 - 국무조정실 검토결과 등을 반영하여 각 기관 계획 확정.제출 : 2018년 5월 18일

2018년도는 44개 중앙행정기관이 성과관리계획을 수립하였다. 성과관리계획 수립 결과 국정기조와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통합 성과관리 체계가 구축되었고, 다수의 기관에서 체계적인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 성과관리를 강화하였다. 전체 중앙행정기관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기관대표 지표를 185개 선정하였고, 기관 평균으로는 4.2개로 나타났다.

44개 기관에서 총 195개의 전략목표, 589개의 성과목표, 1,946개의 관리과제, 4,220개의 성과지표를 확정하였다. 기관 평균 전략목표 4.4개, 성과목표 13.4개, 관리과제 44.2개, 성과지표 95.9개를 설정하였다. 성과관리계획상 국정과제 추진 관련 관리과제가 56%를 차지했다.

〈표 3-2-4〉 2018년도 성과관리계획 수립 현황

(단위 : 개)

구 분	기관 수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전 체	기관평균	전 체	기관평균	전 체	기관평균	전 체	기관평균
'18년	44	195	4.4	589	13.4	1,946	44.2	4,220	95.9
'17년	44	195	4.4	591	13.4	1,997	45.4	4,241	96.4

2017년도 계획과 비교하면, 기관별 전략목표·성과목표는 전년대비 큰 변동은 없었다. 관리과제·성과지표는 미미한 수준으로 감소되었는데, 이는 유사과제 간 병합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전년대비 투입 및 과정지표의 비중이 큰 변동이 없었고, 산출지표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결과지표 비중은 45.6%로 전년대비 1% 상승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표 중심으로 개선되었다.

〈표 3-2-5〉 연도별 계획 현황 비교

(단위 : 개, %)

구 분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소계	지표성격			
			투입	과정	산출	결과
'18년	791	4,220	155 (3.7%)	357 (8.5%)	1,779 (42.2%)	1,929 (45.6%)
'17년	810	4,241 (100%)	96 (2.3%)	397 (9.4%)	1,855 (43.7%)	1,893 (44.6%)

다. 성과관리시행계획 이행상황 자체점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6조 제4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2018년도 자체평가 대상 과제(주요정책·재정사업·R&D사업·행정관리역량)에 대해 관리과제별 계획대비 추진사항, 목표달성도 등 '2018년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상반기 이행상황 점검을 7월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독려하였다. 점검방법은 전자통합평가시스템(e-IPSES)을 활용하였다.

라. 성과관리 운영실태 점검

국무조정실은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 수준을 진단하고 정부 내 성과중심 문화 정착을 위해 2019년 2월에서 3월까지 44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18년도 성과관리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은 기관 실적자료를 토대로 국무조정실 및 점검지원단(전문가 5명)이 주관하여 서면으로 이루어졌고, 각 기관별 자체평가위원 대상 설문조사가 시행되었다. 점검항목은 성과관리계획 수

립의 적절성, 상반기 점검 및 자체평가의 적절성, 환류의 적절성, 성과 제고노력 등 4개 분야 7개 항목을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점검항목 및 배점은 아래와 같다.

〈표 3-2-6〉 2018년도 성과관리 운영실태 점검항목 및 배점

점검항목	점검지표	배 점
성과관리 계획 수립의 적절성	▪ 계획 및 지표의 적절성	20
	▪ 계획 수립 노력도	10
상반기점검 및 자체평가의 적절성	▪ 상반기 자체점검 및 연말 자체평가 결과분석의 적절성	15
	▪ 자체평가 적절성 확보 노력	15
환류의 적절성	▪ 환류의 적절성	15
제도운영의 충실성	▪ 기관역량 제고 노력도	15
	▪ 제도운영 우수사례	10

점검결과, 우수 및 미흡기관의 고착화 경향이 나타나, 미흡기관에 대한 정밀진단 및 컨설팅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기관의 성과관리 운영수준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는 기관장의 관심도와 평가를 성과급 등에 반영하는 환류체계로 나타났다.

점검항목별로는 계획수립의 경우 성과관리 계획이 국정과제 및 관련 재정사업을 포괄하여 기관별 핵심 업무에 대한 성과관리 체계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성과지표 목표치를 소극적으로 설정하는 경향이 잔존하고 있었다. 점검 및 자체평가 항목에서는 기관별로 자체평가위원회 활동을 바탕으로 성과관리계획 추진상황 점검 및 자체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노력을 경주하고 있었으나, 자체평가 지표의 변별력이 부족한 기관이 다수 확인되었다. 또한 일부 기관은 부진·미흡과제에 대한 원인분석 및 조치계획의 구체성이 낮아 실효성 확보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류 항목에서는 전 기관이 자체평가 결과를 성과급 등에 반영하였고, 성과급 반영 비율이 높은 기관일수록 성과관리 운영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장의 관심도와 성과관리 역량강화는 기관별 편차가 가장 큰 항목이었다.

점검결과는 2019년 3월에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되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관세청, 통계청 등 성과관리 운영 우수기관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점검결과 우수사례는 벤치마킹 사례로서 타 기관에 전파하고, 미흡기관은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성과관리 정밀진단 및 보완 조치를 추진했다.

3. 2019년

기관별 상위목표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략목표별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였다. 또한, 성과관리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자체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도록 각 기관에 권장했다.

가. 전년 대비 주요 변경 사항

첫째, 기관별로 상위목표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하였다. 전략목표별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선정하여 관리하고, 이에 대한 성과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관의 전략목표별 정책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성과관리 과정에 ‘사회적 가치’ 반영을 확대했다. 이를 위해 사회적 가치 실현과 관련된 과제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성과지표를 제시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사회적 가치가 반영된 성과지표 활용시 자체평가에서 가점되도록 권장했다.

셋째, 성과지표 선정 시 자체평가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도록 자체평가위원과 외부 전문가 합동 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성과지표를 선정하도록 했다. 각 기관의 자체평가 지표에 성과지표 선정 시 조직 내에서 토론 및 검토여부를 반영하도록 했다.

나. 성과관리계획 수립

2019년도 성과관리계획 수립지침은 2019년 1월에 시달되었으며, 각 기관은 자체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성과관리계획 안을 3월말까지 제출하였다. 2019년도에는 처음으로 전략목표별 성과지표를 선정함으로써 상위목표와 하위 수단인 관리과제 간의 연계를 강화하였다. 또한 성과지표 선정 시 자체평가위원 및 외부 전문가 합동 TF 논의를 거치는 등 자체평가위원회의 기능을 실질화하였다.

- 2019년 성과관리계획 수립 관련 주요일정
 - 2019년도 성과관리 운영지침 각 기관 시달 : 2019년 1월
 - 각 기관별 성과관리계획 확정 및 제출 : 2019년 3월 31일

각 기관에서 자체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립한 성과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4개 기관에서 총 195개의 전략목표, 579개의 성과목표, 1,860개의 관리과제, 5,055개의 성과지표를 확정하였다. 기관 평균 전략목표 4.4개, 성과목표 13.2개, 관리과제 42.3개, 성과지표 91.2개를 설정하였다.

〈표 3-2-7〉 2019년도 성과관리계획 수립 현황

(단위 : 개)

구 분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전 체	기관평균	전 체	기관평균	전 체	기관평균	전 체	기관평균
'19년	195	4.4	579	13.2	1,860	42.3	4,013	91.2
'18년	195	4.4	589	13.4	1,946	44.2	4,220	95.9

2018년도 계획과 비교하면, 기관별 전략목표·성과목표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관리과제·성과지표의 수는 다소 감소하였다. 성과지표의 지표성격별 비중은 투입·과정지표 비중이 2.2%p 감소한 반면, 결과지표 비중은 4.2%p 상승하여, 국민체감 성과중심으로 지표가 개선됐다.

〈표 3-2-8〉 2019년도 성과관리계획 지표 현황

(단위 : 개, 괄호안 : %)

구 분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소계	투입	과정	산출	결과
'19년	(신규) 266	776	4,013	64 (1.6%)	336 (8.4%)	1,615 (40.2%)	1,998 (49.8%)
'18년	-	791	4,220	155 (3.7%)	357 (8.5%)	1,779 (42.2%)	1,929 (45.6%)

다. 성과관리시행계획 이행상황 자체점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6조 제4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2019년도 자체평가 대상 과제(주요정책·재정사업·R&D사업·행정관리역량)에 대해 관리과제별 계획대비 추진사항, 목표달성도 등 '2019년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상반기 이행상황 점검을 7월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독려하였다. 점검방법은 전자통합평가시스템(e-IPSES)을 활용하도록 하였다.

라. 성과관리 운영실태 점검

국무조정실은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 수준을 진단하고 정부 내 성과중심 문화 정착을 위해 2020년 2월에서 3월까지 44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19년도 성과관리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은 기관 실적자료를 토대로 국무조정실이 점검하고 전략목표 성과분석의 충실성, 제도운영 우수사례 등은 행정연구원에서 점검하였다. 각 기관별 자체평가위원 대상 설문조사도 병행되었다. 점검항목은 성과관리계획 수립의 적절성, 점검 및 평가의 적절성, 환류의 적절성, 성과 제고노력 등 4개 분야 9개 항목을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점검항목 및 배점은 아래와 같다.

〈표 3-2-9〉 2019년도 성과관리 운영실태 점검항목 및 배점

점검항목	점검지표	배 점
성과관리 계획 수립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 및 지표의 적절성 ■ 계획 수립 노력도 	15
		15
상반기점검 및 자체평가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반기 자체점검 및 연말 자체평가 결과분석의 적절성 ■ 자체평가 적절성 확보 노력 ■ 평가결과 분석의 적절성 	5
		17
		8
환류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류의 적절성 	15
제도운영의 충실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역량 제고 노력도 ■ 제도운영 우수사례 ■ 성과지표 달성도 제고 노력 	15
		5
		5

점검결과 2018년도 운영실태 미흡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8개 기관 중 6개 기관이 등급이 상승하는 등 전반적인 성과관리 역량이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간 편차가 가장 큰 요소는 기관장 관심도와 평가를 성과급 등에 환류하는 체계였다. 2019년도에 신규도입된 전략목표 성과분석 보고서의 작성항목에서는 기관의 성과분석 노하우 및 역량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항목별로는 계획수립의 경우 국정과제 등을 반영하여 기관 핵심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관리 체계가 정착된 것으로 나타났고, 모든 기관에서 성과관리 계획 수립시 자체평가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률이 60% 상당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되었다. 자체점검·평가항목의 경우 일부 기관에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조사하여 자체평가 점수에 직접 반영하는 등

적절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환류 항목은 모든 기관이 자체평가 결과를 성과급에 반영하고 있으나, 정책개선 활용은 구체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과 제고 노력 항목은 기관장이 적극 관여한 기관일수록 성과관리 운영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기관은 미흡과제 대상 성과관리 컨설팅과 성과관리 개선 연구용역 등을 통해 기관역량을 강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었다.

점검결과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3.27~3.31, 서면)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관세청, 통계청, 병무청 등 성과관리 우수기관이 선정되었다. 행정연구원의 협업을 통해 미흡기관 성과관리 실태 정밀진단 및 컨설팅을 시행하였다.

4. 2020년

기관별 상위목표(전략목표)의 관리를 강화하고, 자체평가 체계도 국민체감 효과와 관계 기관 간 협업노력을 중점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자체평가결과보고서 상세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각 기관의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가. 전년 대비 주요 변경 사항

첫째, 기관별 상위목표(전략목표)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다. 각 기관은 성과관리전략계획('20~'24년) 수립 시 전략목표 성과지표를 반영, 성과지표의 향후 5년 후 목표치 및 관리계획을 제시하도록 했다.

둘째, 자체평가 체계를 개선했다. 정책성과 및 효과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민체감효과 중심으로 평가가 실시되도록 기관별 정책성과·효과의 자체평가 배점기준을 최소 60%로 상향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자체평가 지표에 '관계기관 협업노력'에 대한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유관기관 협업 및 정책효과의 시너지 창출을 유도했다.

셋째, 성과관리 계획 수립시 국정과제·주요 업무계획·국정철학 등 당해연도에 중점 추진할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상세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대외적 책임성을 확보하였다.

넷째, 자체평가 결과의 성과급 반영을 강화했다. 성과관리 운영실태 점검결과 성과관리 운영수준과 평가결과의 성과급 반영 비율 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 성과급 산정시 자체평가 반영 비율을 최소 30% 수준으로 설정하도록 권고했다.

나. 성과관리계획 수립

2020년 성과관리계획 수립지침은 2020년 1월에 시달되었으며, 각 기관은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성과관리계획 안을 당초 3월말까지 제출토록 하였으나,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총력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5월말까지 제출토록 기한을 연장했다.

- 2020년 성과관리계획 수립 관련 주요일정
 - 2020년도 성과관리 운영지침 각 기관 시달 : 2020년 1월 10일
 - 각 기관별 성과관리계획 확정 및 제출 : 2020년 5월

2020년도 성과관리계획수립 대상 기관은 44개 중앙행정기관이었다. 성과관리계획에는 당해 기관이 임무달성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전반적인 업무를 포괄하여 작성하도록 하였다.

각 기관에서 자체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립한 성과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4개 기관에서 총 194개의 전략목표, 595개의 성과목표, 2,091개의 관리과제, 4,180개의 성과지표를 확정하였다. 기관 평균 전략목표 4.4개, 성과목표 13.5개, 관리과제 47.5개, 성과지표 95.0개를 설정하였다.

〈표 3-2-10〉 2020년도 성과관리계획 수립 현황

(단위 : 개)

구 분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전 체	기관평균	전 체	기관평균	전 체	기관평균	전 체	기관평균
'20년	194	4.4	595	13.5	2,091	47.5	4,180	95.0
'19년	195	4.4	579	13.2	1,860	42.3	4,013	91.2

2019년도 계획과 비교하면, 기관별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는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이고, 2020년도 신규사업 등을 반영하여 관리과제는 소폭 증가하였다. 성과지표는 다소 증가하였다. 전년 대비 관리과제 성과지표 4,180개 중 결과지표 2,089개(50.0%), 산출지표 1,788개(42.8%), 투입·과정지표 303개(7.2%)로 전년대비 투입·과정지표 비중은 2.8%p 감소한 반면, 산출·결과 지표 비중은 상승하여 국민제감 중심으로 성과지표가 계속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11〉 2020년도 성과관리계획 지표 현황

(단위 : 개, 괄호안 : %)

구 분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소계	투입·과정	산출	결과
'20년	267	753	4,180	303 (7.2%)	1,788 (42.8%)	2,089 (50.0%)
'19년	266	776	4,013	400 (10.0%)	1,615 (40.2%)	1,998 (49.8%)

다. 성과관리시행계획 이행상황 자체점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6조 제4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2020년도 자체평가 대상 과제(주요정책·재정사업·R&D사업·행정관리역량)에 대해 관리과제별 계획대비 추진사항, 목표달성도 등 ‘2020년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상반기 이행상황 점검을 7월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독려하였다. 점검방법은 전자통합평가시스템(e-IPSES)을 활용하도록 하였다.

라. 성과관리 운영실태 점검

국무조정실은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 수준을 진단하고 정부 내 성과중심 문화 정착을 위해 2021년 2월에서 3월까지 44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도 성과관리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은 기관 실적자료를 토대로 국무조정실이 점검하고 전략목표 성과분석의 충실성, 제도운영 우수사례 등은 행정연구원이 점검하였다. 각 기관별 자체평가위원 대상 설문조사도 병행되었다. 점검항목은 성과관리계획 수립의 적정성, 점검 및 평가의 적절성, 환류의 적절성, 성과 제고노력 등 4개 분야 9개 항목을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점검항목 및 배점은 아래와 같다.

〈표 3-2-12〉 2020년도 성과관리 운영실태 점검항목 및 배점

점검항목	점검지표	배 점
성과관리 계획 수립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 및 지표의 적절성 • 계획 수립 노력도 	15
		12
상반기점검 및 자체평가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반기 자체점검 및 연말 자체평가 결과분석의 적절성 • 자체평가 적절성 확보 노력 • 평가결과 분석의 적절성 • (가점) 자체평가 부문 간 연계노력 	5
		14
		6
		0.5
환류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류의 적절성 	15
제도운영의 충실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역량 제고 노력도 • 제도운영 우수사례 • 성과지표 달성도 제고 노력 	20
		5
		5
정책분석 활성화 노력 (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분석 활성화 노력 	3

점검결과 기관 간 편차가 가장 큰 요소는 기관장 노력도와 성과관리 역량강화 노력, 평가 환류 체계로 나타났다. 한편, 전략목표 성과분석 보고서의 경우 2019년도에 신규도입 된 점을 감안해 기관의 성과분석 노하우 및 역량 제고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20년도에 신규도입된 정책분석 활성화 노력 가점 항목에서는 21개 기관이 가점을 획득하여 기관의 정책분석 참여율을 제고하는 데 긍정적인 성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성과관리에 대한 기관의 관심도를 제고 하기 위한 인센티브 강화방안 중 하나로 우수기관 포상금 지급을 재개하기로 하였다.

점검항목별로는 계획수립의 경우 기관별로 국정과제, 기관 업무계획, 관련 재정사업 등을 포괄 하여 기관 핵심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관리 체계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평가의 적절성 항목에서는 전 기관에서 평가계획 수립 시 자체평가위원의 자문과 내부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수용성이 제고되었다. 또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30여개 기관이 자체평가 결과를 영상 또는 대면회의를 통해 심의하는 등 충실한 평가결과 도출을 위해 노력하였다. 환류의 적절성을 점검한 결과 모든 기관에서 자체평가 결과를 성과급에 반영하고 있었으며, 모든 기관에서 자체평가 및 점검 결과를 정책개선에 환류하였다. 다만, 장관급 기관의 경우 더욱 충실한 조치계획 마련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결과는 2021년 4월에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되었고, 교육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관세청, 통계청, 병무청, 농촌진흥청 등 12개 성과관리 우수기관에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미흡기관은 행정연구원을 통해 성과관리 실태 진단 및 컨설팅이 이루어졌다.

5. 2021년

기관의 핵심 업무가 전략목표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직 규모와 업무 범위 등을 고려하여 전략목표를 설정하도록 하였다

가. 전년대비 주요변경사항

첫째,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질병관리청을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대상기관에 포함하여 46개 중앙행정기관으로 조정되었다.

둘째,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수정 일정을 조정하였다. 기존에는 기관별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정이 9월에 이뤄짐에 따라 연말 자체평가를 고려하여 계획을 수정하는 문제 등이 발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계획 수정을 1개월 앞당겨 8월에 시행하였다. 기관별 조직 규모와 업무 범위 등을 고려하여 기관의 핵심 업무가 전략목표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침을 시달하였다.

셋째, 자체평가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내실화하였다. 자체평가위원회 민간위원의 기관 간 지나친 중복 선임 및 특정 기관의 장기간 연임을 제한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2개 기관까지 허용하고, 2년 임기를 기준으로 최대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자체평가 제도 운영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실시토록 하였다.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수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자체평가제도 운영과 관련한 개선 건의사항 등의 수렴을 권고하고, 운영실태 점검시 이를 확인했다.

다섯째,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운영 우수기관에 대해 포상을 실시하였다. 전년도에 포상을 실시하지 않아 기관의 관심도 및 동기부여가 약화된 점을 감안하여, 우수기관에 대해 포상을 재개했다.

나. 성과관리계획 수립

2021년도 성과관리계획 수립지침은 2021년 2월에 시달되었으며, 각 기관은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성과관리계획을 3월말까지 제출하였다.

- 2021년 성과관리계획 수립 관련 주요일정
 - 2021년도 성과관리 운영지침 각 기관 시달 : 2021년 2월
 - 각 기관별 성과관리계획 확정 및 제출 : 2021년 3월

2021년도 성과관리계획수립 대상 기관은 46개 중앙행정기관이었다. 성과관리계획에는 당해 기관이 임무달성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전반적인 업무를 포괄하여 작성하도록 하였다. 각 기관에서 자체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립한 성과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6개 기관에서 총 203개의 전략목표, 598개의 성과목표, 1,935개의 관리과제, 4,382개의 성과지표를 확정하였다. 기관 평균 전략목표 4.4개, 성과목표 13.0개, 관리과제 42.1개, 성과지표 95.3개를 설정하였다.

〈표 3-2-13〉 2021년도 성과관리계획 수립 현황

구 분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전 체	기관평균	전 체	기관평균	전 체	기관평균	전 체	기관평균
'21년	203	4.4	598	13.0	1,935	42.1	4,382	95.3
'20년	194	4.4	595	13.5	2,091	47.5	4,180	95.0

2020년도 계획과 비교하면, 기관별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는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이고, 관리과제는 소폭 감소하였으며, 성과지표는 다소 증가하였다. 전년 대비 관리과제 성과지표 4,382개 중 결과지표 2,219개(50.6%), 산출지표 1,821개(41.6%), 투입·과정지표 342개(7.8%)로 전년대비 투입·과정지표는 0.6%p 증가한 반면, 산출·결과 지표 비중은 1.2%p 감소하였다.

〈표 3-2-14〉 2021년도 성과관리계획 지표 현황

(단위 : 개, 괄호안 : %)

구 분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소계	투입·과정	산출	결과
'21년	207	778	4,382	342 (7.8%)	1,821 (41.6%)	2,219 (50.6%)
'20년	196	753	4,180	303 (7.2%)	1,788 (42.8%)	2,089 (50.0%)

다. 성과관리시행계획 이행상황 자체점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6조 제4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2021년도 자체평가 대상 과제(주요정책·재정사업·R&D사업·행정관리역량)에 대해 관리과제별 계획대비 추진사항, 목표달성도 등 '2021년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상반기 이행상황 점검을 7월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독려하였다. 점검방법은 전자통합평가시스템(e-IPSES)을 활용하도록 하였다.

라. 성과관리 운영실태 점검

국무조정실은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 수준을 진단하고 정부 내 성과중심 문화정책을 위해 2022년 2월에서 3월까지 46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 성과관리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은 기관 실적자료를 토대로 국무조정실이 점검하고 전략목표 성과분석의 충실성, 제도운영 우수사례 등은 행정연구원이 점검하였다. 각 기관별 자체평가위원 대상 설문조사도 병행되었다. 점검항목은 성과관리계획 수립의 적절성, 점검 및 평가의 적절성, 환류의 적절성, 성과 제고노력 등 4개 분야 9개 항목을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점검항목 및 배점은 아래와 같다.

〈표 3-2-15〉 2021년도 성과관리 운영실태 점검항목 및 배점

점검항목	점검지표	배 점
성과관리 계획 수립의 적절성	• 계획 및 지표의 적절성	15
	• 계획 수립 노력도	12
상반기점검 및 자체평가의 적절성	• 상반기 자체점검 및 연말 자체평가 결과분석의 적절성	5
	• 자체평가 적절성 확보 노력	14
	• 평가결과 분석의 적절성	6
	• (가점) 자체평가 부문 간 연계노력	0.5
환류의 적절성	• 환류의 적절성	18
제도운영의 충실성	• 기관역량 제고 노력도	20
	• 제도운영 우수사례	5
	• 성과지표 달성도 제고 노력	5
정책분석 활성화 노력(가점)	• 정책 분석 활성화 노력	3

점검결과, 기관 성과관리 목표체계(전략목표-성과목표-관리과제) 간 연계성과 체계성이 대부분의 기관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기관에서 성과관리 계획 수립 시 자체평가위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관 내부 조직원의 의견도 수렴하는 등 충실하게 사전검토를 이행하였다. 자체평가 운영과 관련해서는 정책에 대한 국민만족 수준을 조사하여 자체평가 점수에 직접 연계하는 등 정책수요자 체감도를 반영하도록 체계화하였다. 다만,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실태 점검 결과, 민간위원 구성시 대학교수·연구원의 비중이 80.8%를 차지하는 등 특정직업군에 편중되거나 장기 간 연임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류 항목에서는 자체평가 결과를 개인의 성과급에 평균 34.4% 반영하여, 권고기준 30%를 상회하고 있었다.

점검결과는 2022년 3월에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되었고, 산업통상자원부, 국민권익위원회, 국토교통부, 농촌진흥청, 특허청, 관세청 등 13개 성과관리 우수기관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되었다.

제4장

향후 발전방향

제1절 정부업무평가 발전방향

- | | |
|-------------------|-----|
| 1. 중앙행정기관 평가 발전방향 | 214 |
| 2. 지방자치단체 평가 발전방향 | 215 |
| 3. 공공기관 평가 발전방향 | 217 |

제2절 정부업무 성과관리 발전방향

제1절 정부업무평가 발전방향

1. 중앙행정기관 평가 발전방향

가. 중앙행정기관 특정평가 대상부문 전환

2013년도부터 특정평가는 국정과제 부문을 중심으로 실시되어왔다. 이는 각 기관의 국정과제 이행력을 제고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지만 일부 한계점도 있었다. 정부가 5년 동안 추진해야 할 전체 국정과제를 매년 평가함에 따라 각 기관이 추진한 국정과제 이외의 주요정책 성과는 평가에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또한, 정책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정과제의 탄력적인 조정·보완이 쉽지않아 이를 특정평가 국정과제 부문에 반영하기 어려운 점도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국정과제는 별도의 점검체계를 통해 지속관리하고, 중앙행정기관 평가는 매년 각 기관이 그해에 역점 추진하는 주요정책을 중심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

나. 개별평가 관리 강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은 평가대상기관의 과도한 평가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타 기관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평가를 통합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평가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평가남설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르면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임무 중 하나로 '새로운 평가제도의 도입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관련 기능을 강화하여 중앙행정기관이 평가제도를 신설할 경우 다른 평가제도와의 유사·중복 및 타당성 검토를 거치도록

협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미 시행 중인 개별 평가제도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유사·중복·타당성 검토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 정책분석 활성화

현재의 평가제도가 1년 주기로 구성되어 있어 정책현안 발생과 환경변화에 대해 적시성 있는 대응이 부족할 수 있다.

따라서, 잠재적·구조적 정책현안을 사전에 선정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분석 등을 활성화하여 평가의 사전예방적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라. 평가결과 환류 및 활용도 제고

국무총리의 통합적 국정관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평가 결과의 기관 환류 및 활용도를 제고하여 집행-평가-환류의 정책평가 기능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평가결과가 정책개선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분석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지적 사항의 개선·보완 여부에 대한 점검·평가를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평가결과와 평가대상기관의 인사·보수와의 연계가 강화되도록 성과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2. 지방자치단체 평가 발전방향

가. 합동평가

1) 평가지표 및 평가대상 규모의 적정화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관행적으로 평가하려는 시책에 대해서는 평가일몰제를 적용하고, 유사·중복지표는 통합하여 평가지표의 총량을 적정하게 유지해야 한다.(’22년의 경우 112개 지표로 평가)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고, 평가의 신뢰성·객관성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용성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 다만, 신규 행정수요 등 긴급히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해야 할 부문에 대한 시책은 새로 추가하여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각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는 평가

지방자치단체별 상이한 여건을 고려하여 노력과 성과를 공정하게 측정하기 위해 인구규모, 면적, 기초 지방자치단체 수, 재정자립도 등 지역환경에 맞는 지표를 설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수용도 및 정책추진 유인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3) 평가순기 설정의 적정화

2020년도('19년 실적) 합동평가부터 자리잡은 평가지표 개발(N-1년), 지방자치단체 성과창출(N년) 및 합동평가 실시(N+1년)를 통해 평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평가 부담을 줄이며,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노력을 집중시킬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4) 평가에 대한 환류기능 강화

2021년도('20년 실적) 합동평가부터 평가기간을 단축하여 평가결과를 조기 공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연도 업무추진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합동평가 결과종합보고서 및 정성지표 우수사례집을 발간할 뿐만 아니라 내고장알리미(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www.laiis.go.kr)를 통한 대국민 공개를 통해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맞춤형 행정컨설팅'을 통해 평가결과에 대한 정밀진단과 함께 처방 제시 등의 평가 환류기능을 더욱 보강할 필요가 있다.

5) 평가 관련 외부 전문가와의 협력 강화

평가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현재 각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합동평가단 및 지표개발추진단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에 더욱 노력하며, 평가 관련 전문가 pool을 활용하여 지표 개발 및 행정컨설팅 추진에 있어서도 전문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지표개발과 합동평가의 연계를 위해 합동평가단과 지표개발추진단 간의 교류 기회가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

나. 개별평가

중앙행정기관 대상 개별평가와 지방자치단체 대상 개별평가를 같이 관리할 필요가 있다. 2017년도와 2021년도 개별평가 정비시 중앙과 지방 대상 개별평가를 구분없이 함께 정비하였다. 앞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대상 개별평가에 대해서는 따로 구분하지 않고, 개별평가 DB 등을 통해 이력관리 및 정비 등을 동일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대상 개별평가는 적극적으로 합동평가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합동평가에서 개별평가의 지표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합동평가의 지표수를 적정 수준까지 확대하고, 평가 결과 환류를 위해 합동평가 순기를 단축하는 한편, 각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개별평가를 합동평가로 통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유사 개별평가의 신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평가 신설 전 반드시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제도화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업무특성 등으로 개별평가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지표 간소화 등 개별평가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3. 공공기관 평가 발전방향

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평가

1) 총론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1984년도 24개 정부투자기관 평가를 시작으로 38년의 평가제도 운영을 통해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계 구축에 기여하였다. 국민경제에서 공공기관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평가제도를 재검토하여 개편하였으며, 경영평가편람에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를 위한 구체적 이행사항을 반영하는 등 지속적인 개선을 모색하고자 한다.

2) 평가단 구성 및 운영

매년 새로 구성되는 대규모 평가단에서 평가지표·목표 설정, 실적평가 및 컨설팅 등 많은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경영평가단 구성을 보다 효율화할 필요가 있으며, 평가에 대한 직무상 중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평가과정 및 평가절차

평가과정 및 평가결과의 정확성과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체계적·전문적 검증을 강화하고, 지표 정비·간소화 등을 통하여 피평가기관의 평가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

4)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지표 설정시 기관의 핵심 임무와 평가지표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지표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그동안의 환경변화, 중장기 목표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지표구성의 적정성과 목표의 도전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평가결과 사후관리

경영평가 결과가 기관의 실질적인 경영개선 노력으로 연계되도록 기관별 경영실적 개선도 평가를 도입하고, 기관의 생애주기와 다양한 수요에 상응하는 맞춤형 경영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이를 원활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나. 기금운용평가

1) 총론

그간 기금운용평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기금의 자산운용 수준 제고,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기금의 재정운용이 효율화되었다. 향후 기금의 재정운용 효율화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평가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2) 평가단 구성 및 운영

금융·재정분야 등의 외부 민간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기금운용평가를 진행하고, 평가위원들의 전문성을 활용해 심도 있는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신규 평가위원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고자 한다.

3) 평가과정 및 평가절차

기금 담당자들이 작성한 실적보고서를 근거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나, 관련 내용이 미흡해 추가 제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평가자·피평가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일임으로, 피평가자를 대상으로 평가 실시 전에 실적보고서에 작성해야 하는 내용, 방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4)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지속적인 자산운용평가를 통해 기금의 자산운용 수준은 충분히 제고된 실정이다. 추가적인 자산운용 수익 창출을 위해서는 자산운용 정책과 수익률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여 수익률 부진의 원인 분석과 개선사항을 보다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존치평가 또한 지속적인 평가 결과, 기금사업 정비 등을 통해 사업 구조조정 필요성은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기금의 사업과 기금의 존치 타당성에 대한 평가보다는 기금이 불필요한 유형 자산을 축적하지 않도록 기금의 재원구조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5) 평가결과 사후관리

기금운영비 증액·삭감, 사업비 증액·삭감 등 금전적 조치를 통한 사후관리가 되고 있지만, 존치평가는 이해관계 조정 때문에 권고사항 이행이 어려운 점이 있다. 전기 평가에서 제기된 개선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는 사후관리 제도 개선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1) 총론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들의 연구성과 향상을 위해서 기관평가에 다양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사후관리 및 등급 부여보다는 기관운영계획서 및 연구사업계획서가 충실히 작성되도록 하는 기관 맞춤형 컨설팅 강화가 필요하다.

2) 평가단 구성 및 운영

평가단 구성에 있어서 기존 학계·연구계 전문가뿐만 아니라 산업계 현장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기관평가에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 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평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관평가 시 해당기관의 연구분야 관련 해외 석학·연구자가 평가자문 또는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여 동료평가(PeerReview)를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평가과정 및 평가절차

기관평가 체계가 기관운영 및 연구사업 부문으로 이원화됨에 따라 개편된 평가제도를 평가위원에게 설명하고 심층적·전문적 평가 추진을 위한 사전 전략회의 개최, 평가자문단 운영, 평가자료(보안사항 제외)의 충분한 제공 등이 필요하다.

4)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전문가 정성평가로 전면 개편됨에 따라 정성평가의 객관성 및 정확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연구기관의 임무와 역할, 전략·성과목표에 맞는 질적 성과지표와 정성평가 방법과 평가기준의 발굴·개발이 요청된다.

또한, 연구기관이 자체적으로 성과목표를 수립할 때 달성이 용이한 목표 설정을 지양하고, ‘해야 하는’ 연구 방향으로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계획서 수립 시 컨설팅을 강화하여야 한다.

5) 평가결과 사후관리

자체·상위평가 결과의견을 차기 기관운영계획서와 연구사업계획서 작성 시 반영토록 하고, 반영 여부를 점검하는 등 평가결과의 환류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라. 경제인문사회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1) 총론

연구기관들이 평가목적에 비추어 해당 기관의 현황과 문제점을 스스로 파악하도록 하고,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 및 연구회의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이 필요하다.

2) 평가단 구성 및 운영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평가위원을 선정하기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 인력풀의 확대 및 관리가 필요하다. 형식적인 재위촉률 유지를 지양하고, 실질적인 평가단 구성·운영을 통해 평가업

무의 일관성·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평가위원에 대한 사전교육 강화를 통해 평가의 공정성과 평가결과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3) 평가과정 및 평가절차

평가과정 및 절차에 대한 연구기관 사전공지를 통해 평가일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연구기관 평가담당자에 대한 사전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평가결과의 수용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평가과정이 운영되어야 하며, 온라인 평가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평가과정 및 절차의 효율화가 요청된다.

4)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과학기술과 경제사회·인문분야 간 융합이 중요한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국가·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연(연) 및 유관기관과의 지식·정보 공유와 협업을 유도하고, 종합적·융합적 연구촉진과 정책도출이 필요하다. 융·복합연구 활성화를 위한 평가항목(지표) 추가, 배점 및 질적평가 강화 등 평가체계 개편 검토가 필요하다.

5) 평가결과 사후관리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연구기관에 대한 결과설명회 및 성과발표회를 강화하고, 평가결과 부진 기관에 대해서는 연구기관 발전지원사업 실시 후 개선 등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마. 지방공기업

1) 총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그간 효율성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경영평가 체계를 탈피하고 일자리확대, 소통·참여, 지역상생발전, 윤리경영 등 사회적 책임 경영은 강화하되, 기업의 비효율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가능경영, 경영성과, 사회적 가치 분야가 균형있게 평가되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지역과 함께하는 지방공기업의 역할을 제고해온 만큼 앞으로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의 경영효율성과 지역사회 기여도를 함께 높여가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 강조되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원칙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체계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업 구조 강화 및 주민참여 평가참여 확대를 통해 민주적이고 투명한 경영평가 거버넌스를 확대·구축해 나가야 한다.

2)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수,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3년 연속 참여자 및 이해관계자를 배제하는 등 평가단 선정·운영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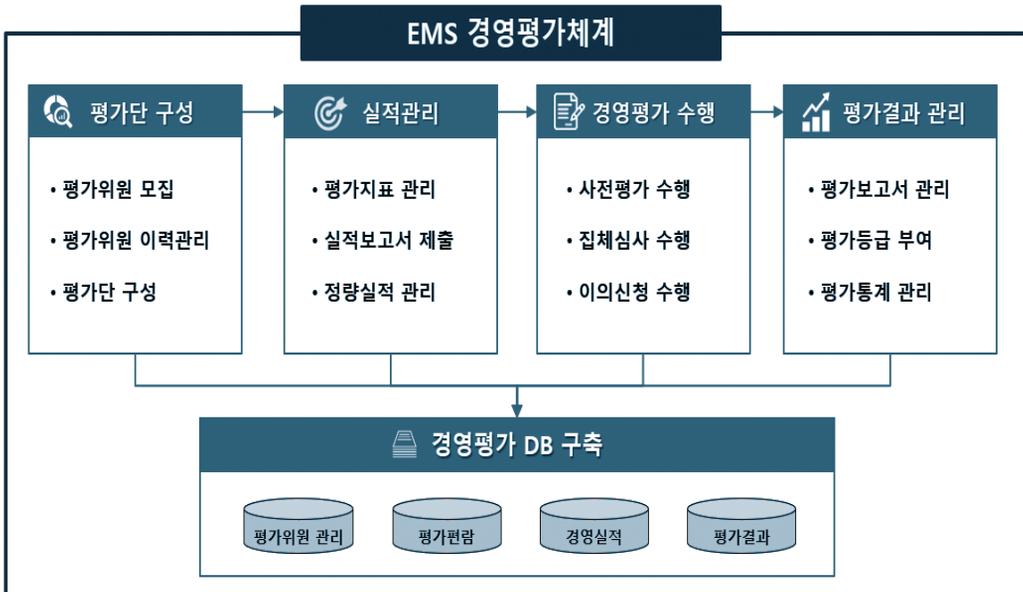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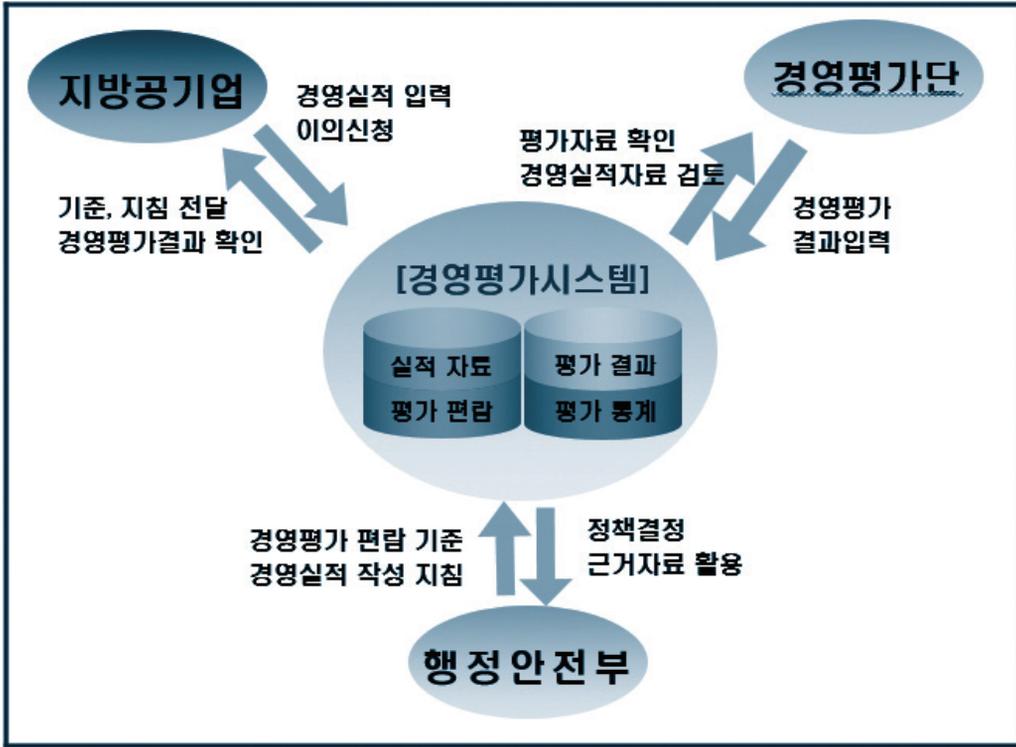
또한 평가유형별로 평가총괄 및 책임위원을 두어 책임성을 강화하고, 평가실시 전 청렴 및 평가편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평가방향·방법 등을 숙지시킴으로써 평가의 전문성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평가과정 및 평가절차

평가실시 전 평가지표 수정·보완, 평가계획 수립, 평가단 구성 및 교육, 현지평가 실시, 이의신청 확인·검토, 평가결과 확정 등의 절차는 유지하되, 각 과정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제기되는 문제점을 보완·시정하면서 효율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시스템(EMS, Evaluation Management System)을 구축·활용하여 평가의 정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경영평가단 구성, 실적 등록, 평가수행, 결과 검증, 평가DB 구축, 결과 공개까지 전 과정을 정보시스템으로 관리·운영하여 효율적인 경영평가를 추진하였는데, 이에 더해 사전평가, 집체심사, 이의신청 등 평가수행 과정을 표준화하여 체계적인 경영평가 운영기반을 마련하고, 평가정보를 상시로 공유하여 지방공기업의 적극적인 경영평가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표 4-1-1〉 지방공기업경영평가시스템(EMS) 경영평가체계 구성도



4)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평가 대상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관 방문평가를 지양하고 권역별·유형별 합동평가로 전환하여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요청된다.

또한, 사전심사 및 보완심사를 추가하여 심사절차는 간소화하되 내용은 경영실적 및 공공성이 균형을 이루어 평가할 수 있도록 했던 만큼, 앞으로도 지방공기업의 공공성 역할 강화를 위해 코로나19 극복 노력, 윤리·인권 경영, 재난·안전관리,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상생발전을 평가 항목에 포함하고 사회적 가치 지표를 더욱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서비스 제공에 더욱 기여하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5) 평가결과 사후관리

지역의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지방공기업 경영과 사회적 활동을 평가하기 위해 경영평가에 2018년도부터 주민참여단을 참여시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였고, 앞으로도 주민참여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항목별 스코어카드를 작성·공표하고, 고객만족도 반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객만족도 조사연도와 경영평가 대상 연도를 일치시키는 노력을 했던 만큼, 향후에도 평가결과를 국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하여 대국민서비스를 제고하고자 한다.

경영평가 결과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진단,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유형별·분야별 경영평가 우수사례 선정 및 우수기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평가결과의 환류에 대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제2절 정부업무 성과관리 발전방향

1) 기관별 상위목표(전략목표)에 대한 관리 강화

현재의 성과관리는 기관 내 개별 부서 사업단위에 대한 관리에 중점이 맞춰져 ‘관리과제’ 중심으로 성과관리 제도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적·단편적 성과관리로는 기관

전체 나아가 국정 전반의 능률성·효과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각 기관의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국정기조와 기관·부서·개인의 성과관리가 연계된 통합적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2020년도부터 성과관리계획상 가장 상위 목표인 ‘전략목표’에 대한 성과 지표 설정과 연말 자체평가 시 기관별로 전략목표 성과를 분석하고 대외공개토록 함으로써 기관 전체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나아가 개별기관 차원의 성과관리뿐만 아니라, 범정부 정책 및 국정과제에 대해서도 관련 기관이 공동의 성과관리계획과 목표를 공유하는 등 포괄적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주요정책 자체평가 결과 부진과제 관리 강화

자체평가 결과를 반영해 정책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환류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각 기관별로 주요정책 자체평가 시 7개 등급 상대평가(최하위 등급 5% 의무할당)를 시행하고 있다. 미흡과제(최하위 등급)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관리 중이나, 기관별 관심도에 따라 정책 개선 정도에 차이가 발생하여 범정부 성과 제고에 한계가 있다.

미흡과제 집중관리 추진을 위해서는 기관의 관심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이행하기 위한 기관별 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특히, 기관별로 연초부터 전년도 미흡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자체평가위원회를 통한 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무조정실도 각 기관이 관심을 가지고 개선할 수 있도록 운영실태 점검 등을 통해 각 기관을 지속적으로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3) 자체평가 운영의 내실화 필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자체평가위원회는 10인 ~ 30인 이내로 내부위원 1인 이상, 2년 임기의 외부위원 2/3 이상으로 구성된다. 그 외 사항은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결과, 민간위원 중 3개 이상의 다수 기관에서 활동하거나, 연임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2021년도 성과관리 운영실태 점검결과 자체평가 민간위원 중 대학교수·연구원 직업군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직업군을 다양화하고, 소관 기관의 업무 전문성 또는 성과관리 제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무조정실은 운영실태 점검 등을 통해 각 기관의 자체평가위원회가 기관이 스스로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부 록

부록 1-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228
부록 1-2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241
부록 2-1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017~2019)	248
부록 2-2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020~2022)	260
부록 2-3	2017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270
부록 2-4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297
부록 2-5	2019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329
부록 2-6	2020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수정)	368
부록 2-7	2021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378
부록 3-1	2021년도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	403
부록 3-2	2018년도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자체평가계획 수립 결과	452
부록 3-3	2019년도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자체평가계획 수립 결과	471
부록 3-4	2020년도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자체평가계획 수립 결과	480
부록 3-5	2021년도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자체평가계획 수립 결과	493

부록 4-1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504
부록 4-2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개최일지	506
부록 5-1	2017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526
부록 5-2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608
부록 5-3	2019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671
부록 5-4	2020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732
부록 5-5	2021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782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약칭: 정부업무평가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3. 29.>

1. “평가”라 함은 일정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정책·사업·업무 등(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정부업무평가”라 함은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법인 또는 단체(이하 “평가대상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정책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중앙행정기관(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보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나. 지방자치단체
 - 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 라. 공공기관
3. “자체평가”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특정평가”라 함은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재평가”라 함은 이미 실시된 평가의 결과·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그 평가를 실시한 기관 외의 기관이 다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6. “성과관리”라 함은 정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7.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나. 삭제 <2016.3.29>
 - 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단
 - 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
 - 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
 - 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 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제3조(통합적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구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근거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평가대상기관의 정책등에 대하여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평가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이 경우 통합실시되는 평가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업무의 특성·평가시기 등으로 인하여 평가의 통합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미리 협의하여 별도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성과관리의 원칙) ① 성과관리는 정책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② 성과관리는 정부업무의 성과·정책품질 및 국민의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제5조(성과관리전략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을 포함한 당해 기관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이하 “성과관리전략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이와 관련이 있는 다른 법령에 의한 중·장기계획을 포

함할 수 있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당해 기관의 임무·전략목표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최소한 3년마다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국가재정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4.>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에 기초하여 성과관리전략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성과관리시행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기초하여 당해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성과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성과관리시행계획에는 당해 기관의 임무·전략목표, 당해연도의 성과목표·성과지표 및 재정 부문에 관한 과거 3년간의 성과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객관적·정량적(定量的)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되, 객관적·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 ⑤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 실태 및 그 결과가 자체평가 및 특정평가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에 기초하여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장 정부업무평가제도

제7조(정부업무평가의 원칙) ① 정부업무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그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② 정부업무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③ 정부업무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정책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하여야 한다.

제8조(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무총리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업무의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한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이하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 최소한 3년마다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정부업무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정부업무평가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3. 정부업무평가와 관련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각종 평가제도와 평가방법 등의 실효성 확보에 관한 사항
5. 평가관련 인력의 전문성·독립성 확보에 관한 사항
6.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통합평가체계(이하 “전자통합평가체계”라 한다)의 구축·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평가관련 예산·조직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업무의 발전에 관한 주요 사항

③ 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전년도 평가결과를 고려하고 평가대상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3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의 정책등에 대한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의 기본방향
2. 당해연도의 정책등에 대한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3. 당해연도의 정책등에 대한 특정평가에 관한 사항
4. 당해연도의 정책등에 대한 공공기관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당해연도의 정책등에 관한 정부업무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국무총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 및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임무) ① 정부업무평가의 실시와 평가기반의 구축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국가 차원의 중장기 평가기반의 구축·운영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 및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정부업무평가의 기획·조정·총괄에 관한 사항
4. 정부업무평가제도와 관련된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5. 정부업무평가결과의 활용 및 평가제도간 연계방안에 관한 사항
6. 정부업무평가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7. 평가관련 기관 간 협조 및 평가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8. 특정평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9. 자체평가제도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10. 자체평가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11. 자체평가결과의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
12.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재평가에 관한 사항
13. 평가제도 운영실태의 점검에 관한 사항
14. 새로운 평가제도의 도입에 관한 사항
15.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로 규정된 사항
16. 그 밖에 위원장이 정부업무평가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3항제2호의 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 가. 평가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나. 1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 다. 그 밖에 평가 또는 행정에 관하여 가목 또는 나목의 자와 동등한 정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무조정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위원은 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 ⑧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⑨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중 자체평가 및 특정평가에 관한 안건을 미리 검토·조정하고 위원 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⑩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평가총괄관련기관) ①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의 부문별 총괄 관련 중앙행정기관(이하 “평가총괄관련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문별 자체평가결과의 확인·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총괄관련기관의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확인·점검에 민간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③ 평가총괄관련기관은 소관 부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평가제도의 운영·개선, 평가지침 및 평가지표의 작성
 2. 자체평가결과의 확인·점검, 재평가의 실시 여부
 3. 그 밖에 자체평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평가대상기관과의 협조) 국무총리는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 및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자료제공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전자통합평가체계의 구축 및 운영) ① 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통합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각 기관 및 단체가 이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전자통합평가체계는 평가과정, 평가결과 및 환류과정의 통합적인 정보관리 및 평가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국무총리는 전자통합평가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 ④ 전자통합평가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정부업무평가의 종류 및 절차

제14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등을 포함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계획의 수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기초하여 당해 정책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임무,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주요 정책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자체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5. 자체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6. 자체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자체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제16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의 절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연도의 주요 정책등에 대한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4월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에 자체평가계획의 보완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정책등의 추진실적을 기준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3월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자체평가결과에 대한 재평가)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결과를 확인·점검 후 평가의 객관성·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기초하여 소관 정책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제15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기반의 구축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19조(특정평가에 관한 사항) 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특정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 특정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특정평가의 대상에 관한 사항
3. 특정평가의 방법에 관한 사항
4. 특정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특정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제20조(특정평가의 절차) ① 국무총리는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관련 시책, 주요 현안시책, 혁신관

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부문에 대하여 특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특정평가를 시행하기 전에 평가방법·평가기준·평가지표 등을 마련하여 특정평가의 대상기관에 통지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국무총리는 특정평가를 위하여 특정평가의 대상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평가업무 수행자로 하여금 특정평가 대상기관을 방문하여 평가에 관한 자료를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 국무총리는 특정평가결과에 대하여 위원회가 의결한 때에는 이를 특정평가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특정평가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국가위임사무등에 대한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국고보조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의 주요시책 등(이하 이 조에서 “국가위임사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평가(이하 “합동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를 합동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합동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합동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하에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위임사무등에 대하여 업무의 특성·평가시기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이를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평가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국가위임사무등의 평가에 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①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이하 “공공기관평가”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특수성·전문성을 고려하고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외부의 기관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법률에 의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공공기관평가로 본다.
〈개정 2010. 1. 25., 2014. 5. 28., 2016. 3. 29.〉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2. 삭제 〈2016. 3. 29.〉
3. 「국가재정법」 제82조에 따른 평가
4.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 제3항에 따른 평가
5.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8.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상이 아닌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은 미리 그 평가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평가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평가를 실시한 기관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정부업무평가기반 구축의 지원

제23조(정부업무평가기반 구축의 지원) ① 정부는 평가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예산 등을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의 제도적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하여 평가방법과 평가지표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평가와 관련된 기관에 대한 지원방안 및 평가에 관한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4조(평가예산)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등의 평가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포함하여 예산

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정책등의 평가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평가비용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제25조(평가제도 운영실태의 확인·점검) 국무총리는 평가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도개선방안의 강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장 평가결과의 활용

제26조(평가결과의 공개) 국무총리·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전자통합평가체계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27조(평가결과의 보고) ① 국무총리는 매년 각종 평가결과보고서를 종합하여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거나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정책등에 대한 자체평가결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것을 말한다)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평가결과의 예산·인사 등에의 연계·반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조직·예산·인사 및 보수체계에 연계·반영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시 반영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평가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다음 연도 예산편성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29조(평가결과에 따른 자체 시정조치 및 감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의 결과에 따라 정책등에 문제점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정책등의 집행중단·축소 등 자체 시정조치를 하거나 이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사례로 인정되는 소속 부서·기관 또는 공무원에게 포상, 성과급 지급, 인사상 우대 등의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정부업무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1조(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대한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 중 규모 및 업무의 특성 등에 비추어 성과관리 및 평가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소속기관에 대하여는 스스로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그 밖의 행정기관의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평가대상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의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의 예에 따라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국무총리는 특정평가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무총리·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업무의 일부를 평가에 관한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0조 제3항·제10항, 제11조 제2항, 제14조 제2항, 제18조 제2항, 제20조 제3항 또는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관련 위원회의 위원과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확인·점검에 참여하는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및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는 그 평가업무에 관하여는 「형법」 제127조,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4>까지 생략

〈305〉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제1호, 제18조 제4항 및 제21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06〉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2. 3. 22.] [대통령령 제32545호, 2022. 3. 22.,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범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보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6. 7. 19.>

1. 대통령 소속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2. 국무총리 소속기관 :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제3조(공공기관에 속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법 제2조 제7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의 기관·법인 또는 단체(법 제2조 제7호가목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제외한다) 중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9조에 따른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6. 7. 19.]

제4조(통합 실시되는 평가의 범위) 법 제3조 제2항 후단에 따라 통합 실시되는 평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7. 3., 2009. 8. 21., 2016. 2. 3., 2016. 7. 19., 2018. 3. 30., 2020. 12. 8., 2022. 3. 22.>

1.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체 성과의 평가
2.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8조에 따른 교육인적자원개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3.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5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교육훈련에 대한 평가
4. 삭제 <2010. 5. 4.>
5.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제6항 및 제7조 제4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실적 분석 및 점검
6. 삭제 <2020. 12. 8.>
7. 「행정규제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규제개혁실태 등에 대한 평가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
9.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개방형직위의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평가
10.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2조에 따른 정부행정조직의 운영에 대한 분석·평가
- 10의2. 「국가재정법」 제85조의8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
11. 그 밖에 위원회가 평가의 통합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평가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평가

제5조(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의 평가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 법 제8조 제2항 제8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업무의 발전에 관한 주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부업무평가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평가의 연차적 통합 또는 연계방안에 관한 사항
2. 정부업무평가결과와 조직·예산·인사 및 보수체계 등과의 연계 방안에 관한 사항

제6조(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운영 등) ①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 1. 5.>

-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무총리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평가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인력 등 업무에 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8. 7. 3.>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08. 7. 3.>

제7조 삭제 <2008. 7. 3.>

제8조(평가총괄관련기관) 법 제1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의 부문별 총괄 관련 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8. 7. 3.,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주요정책부문 : 국무조정실
2. 재정사업부문 : 기획재정부
3. 조직·정보화부문: 행정안전부
4. 인사부문: 인사혁신처
5. 삭제 <2008. 7. 3.>

제9조(전자통합평가체계 관리·운영의 위탁에 따른 지원) 국무총리는 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전자통합평가체계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①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을 기초로 하여 자체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사업·업무 등(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을 스스로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정책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그 기관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필수적 정책등
 2. 그 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등
 3. 자체평가결과와 조직·예산·인사 및 보수체계 등과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등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하나의 정책등이 여러 부문에 중첩되는 경우에는 평가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느 하나의 부문으로 분류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11조(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자체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자체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 ③ 자체평가위원회의 위원은 평가 또는 소관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④ 자체평가위원회 위원(공무원인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6. 7. 19.>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6. 7. 19.>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16. 7. 19.>

제12조(자체평가의 절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능한 한 계량화된 평가지표에 의한 측정을 통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자체평가의 효율적 운영과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모든 중앙행정기관에 공통되는 평가방법·평가기준 및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제시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공통의 평가방법·평가기준 및 평가지표 외에 그 기관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등에 대하여 다른 평가 주관기관에 의한 평가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자체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재평가의 실시) 국무총리는 법 제17조에 따른 재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료를 요구하거나 평가업무 수행자로 하여금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에 관한 자료를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특정평가의 대상부문) 법 제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부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부문을 말한다.

1. 각 중앙행정기관이 공통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시책으로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문
2.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국가의 주요사업으로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부문
3. 기관 또는 정책등의 추진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부문
4. 그 밖에 특정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부문

제15조(특정평가의 절차 등) ① 국무총리는 특정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금 연구·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국무총리는 특정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전문가,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의 협조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가 특정평가에 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6조(국가의 주요시책 등) 법 제21조 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의 주요시책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말한다.

1. 국가적인 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시책
2.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시책

제17조(합동평가의 실시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위임사무등에 대하여 합동평가(이하 “합동평가”라 한다)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법 제21조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이하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합동평가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합동평가실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평가실시 3월 이전에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제1항에 따른 합동평가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합동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에 관한 사항
2. 합동평가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3. 합동평가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합동평가대상의 선정 및 평가지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5. 합동평가결과의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6. 관계중앙행정기관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합동평가와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의견 등

제18조(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의 민간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행정안전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또는 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
2. 합동평가에 참여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또는 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추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
- ④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위원(공무원인 위원을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 7. 19., 2017. 7. 26.>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⑥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6. 7. 19., 2017. 7. 26.>

제19조(중앙행정기관의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소관 공공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0조(수당 등) 평가 관련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그 밖에 이해관계인·참고인 및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 등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국무총리는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의 혁신관리에 대한 특정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라 혁신관리에 대한 특정평가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혁신관리에 대한 평가대상·평가방법·평가기준 및 평가지표 등(이하 이 조에서 “평가지표등”)이

라 한다)을 마련하여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혁신관리에 대한 평가지표등이 다른 특정평가 부문의 평가지표등과의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평가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해당전문연구기관의 운영 및 연구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32545호, 2022. 3. 22.>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의2. 「국가재정법」 제85조의8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재정사업 자율평가

⑤ 생략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
(2017~2019)

2017. 7. 4



국무조정실

1. 기본계획 개요

□ 의 의

-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중기목표와 기본정책방향으로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 수립
 - 최소 3년마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의결과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수정·보완
- 새정부 출범 등 정책환경 변화 및 정부업무평가 제도 운영여건을 고려하여 「17~19년 정부 업무평가 기본계획」 수립
 -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주요 내용

- 정부의 평가 기본방향 및 업무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 중앙행정기관 평가제도 운영 및 성과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 운영 및 성과관리 등에 관한 사항
- 공공기관 평가제도 운영 및 성과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정부업무평가 인프라 강화 등 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II. 목표체계 및 기본방향

1. 정부업무평가 목표체계



2. 정부업무평가 기본방향

□ 정부업무평가를 통한 국정성과 창출 견인

- 일자리 창출 등 국정운영 중점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평가로 국정성과 창출 견인
- 평가대상 과제에 대한 현장 의견수렴 등 과정관리 및 평가결과 환류 강화로 국민의 정책 체감도 제고
- 국정기조와 기관별 추진전략 및 성과목표를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자체평가의 내실화를 통해 성과 향상 지원

□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성과 제고

- 국가 주요시책을 지방자치단체 평가체계에 반영, 국정 운영성과를 일선현장까지 확산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개별평가 정비·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평가역량 강화를 통해 평가의 효율성 제고

□ 공공기관의 공공성 및 책임경영 강화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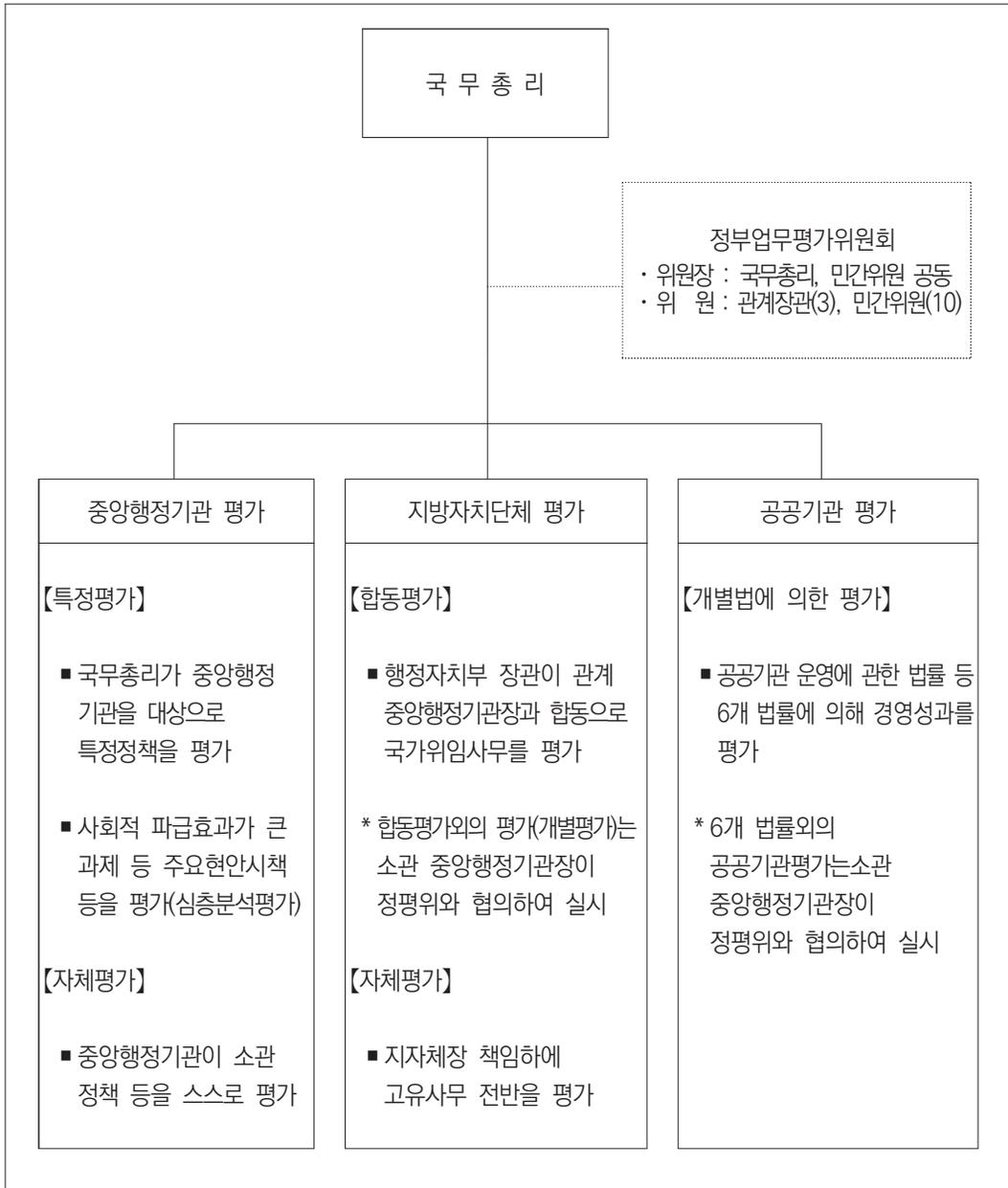
- 국민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평가를 통해 경영성과 제고 및 공공 서비스 질 향상 등 사회적 책임 강화
- 출연연구기관 특성을 고려한 평가지표 개선 등 맞춤형 평가

□ 효과적인 정부업무평가를 위한 인프라 강화

- 평가의 전문성·객관성을 확보하고 국민체감 중심의 평가지표 선정 등 평가의 과학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
- 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법령의 개선 추진

Ⅲ. 평가유형별 중점 추진내용

1. 정부업무평가 추진체계 및 평가유형



2. 평가유형별 중점 추진과제

중앙행정기관 평가

주요 내용

- ◇ 국정과제의 집중적 점검·평가로 국정성과 창출
- ◇ 평가결과 환류체계 내실화로 평가실효성 제고
- ◇ 심층분석 강화로 적기 정책개선
- ◇ 성과관리·자체평가 제도개선으로 자율평가 내실화

1 국정과제의 집중적 관리로 국정성과 창출

- 전체 국정과제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평가로 국정성과 창출 전인
 - 국정과제 이행을 체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와 정책수단을 설정하고 추진성과를 평가
- 국정과제 대상 분기별 점검 등 과정평가 기능을 강화, 추진과정상 장애요인 등을 선제적으로 확인, 문제해결
 - 점검결과는 주요 국정 회의체에 상정, 평가대상 과제에 대한 부처의 지속적 관심·추진력 확보
 - 미흡·개선필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 부처의 문제해결 역량 및 성과 향상 지원
- 국민의 정책 인지도 및 체감도 제고를 위해 국정과제 대상 만족도 조사결과를 평가에 반영, 국민의 체감성과 제고
 - 주요정책의 체감성과와 개선요구사항 등을 분석할 수 있도록 심층 인터뷰 실시 등 조사방법 정교화

② 평가결과 환류체계 정착을 통한 평가실효성 제고

- 평가결과가 정책개선의 핵심 토대가 되도록 환류체계 구성
 - 사업의 확대 필요성 등 구체적 의견을 제시하고, 부처 업무계획·예산에 반영하는 등 정책개선과 연계
 - 평가결과 지적 사항의 개선·보완 이행 여부 현장점검·평가
- 평가결과와 인사·보수의 연계가 강화되도록 성과관리·특정 평가 체계 보완

③ 심층분석 강화로 정책개선의 적기 추진

- 전문가·국민 등이 참여하는 과제선정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심층분석 대상과제를 체계적으로 발굴
 -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안을 대상으로 심층분석 실시
- 평가 시의성·전문성을 고려하여 신속한 대안 제시가 필요한 현안과제와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한 중·장기과제 병행 추진
- 심층분석 결과는 반기별 이행상황 점검 등 사후관리 강화

④ 성과관리·자체평가 제도개선으로 자율평가 내실화

- 성과관리·자체평가를 단기목표 달성 중심에서 벗어나 효과 중심의 품질평가로 전환하는 등 중장기적 목표관리 체계로 전환 추진
- 주요정책·재정사업·행정관리역량 평가 간 연계를 통한 평가 정합성 제고 및 평가부담 감소 추진
-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자체평가 운영 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미흡기관은 컨설팅 등을 통해 성과관리 역량 강화

지방자치단체 평가

주요 내용

- ◇ 국정과제 등 국가 주요시책 중심 합동평가 실시
-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활용도 제고
- ◇ 개별평가 정비·관리 강화로 자치단체 부담 완화
- ◇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운영 내실화

① 국정과제 등 국가 주요시책 중심 합동평가

- 새 정부 국정철학과 목표를 고려하여 집중적인 이행관리가 필요한 주요시책* 중심으로 평가 항목 선정
 - * 일자리, 4차 산업혁명, 저출산, 지방분권 등
- 중앙·지방 간 긴밀히 협력해야 할 사안에 대한 점검·평가 강화
- 전년도 평가결과 변별력이 크게 떨어지거나 평가 필요성 등이 낮은 과제는 제외
- 지방행정 수요 변화와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 등 사회 변화 양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 최신화 지속 추진
 - 평가지표 개발시 국민의 수요를 일선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치단체 및 전문가 참여를 통한 국민체감형 지표 적극 개발
- 행정 내외부 전문가에 의한 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최종수요자인 주민 등 고객에 의한 평가 확대

② 합동평가 결과 활용도 제고

- 평가결과에 따른 재정·인사·포상 등과의 연계 강화로 평가 실효성과 국정시책 이행력 확보
- 평가결과의 예산 반영 등 환류 강화를 위한 평가일정 단축 조정
- 각 시책별 우수사례는 발굴·확산하고, 미흡사항은 심층 분석을 통해 개선안 제시

③ 개별평가 정비·관리 강화로 자치단체 부담 완화

- 개별평가 신설에 대한 사전심사 체계를 강화하여 남설 억제
 -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제출
- 기존 개별평가는 중복평가 통합, 평가지표 감축·평가주기 조정 (매년→격년) 등 평가효율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비
- 개별평가 증가 억제를 위해 평가일몰제·총량관리제 도입방안을 검토, 존속 여부를 주기적으로 재검토

④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운영 내실화

-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진단·분석하고, 평가지표·평가기반 구축 등 지원 확대
- 각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관리 역량이 향상되도록 표준매뉴얼 제작, 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 지원 강화
- 자체평가 결과를 성과급·인사 등에 반영하여 조직 경쟁력을 강화토록 유도

공공기관 평가

주요 내용

- ◇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및 경영책임 강화
- ◇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성과 질적 향상 지원
- ◇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및 평가 실효성 제고

①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및 경영책임 강화

- 안전·인권·환경 등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평가를 강화

- 청년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사회적 약자 고용노력 등 일자리 질 개선 및 창출노력 지표 확대
- 평가 결과에 대한 체계적 환류로 공공기관 자율·책임 경영체제 확립 도모

②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성과 질적 향상 지원

- 단기성과·수익성 위주 사업 평가를 지양하고 연구성과의 질을 판단하는 질적 우수성 중심 평가 강화
- R&D 관련 지표 개선, 개별 연구기관별 맞춤형 평가지표 개발 등 4차 산업혁명 대비 출연(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발전 유도

③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유도 및 평가 실효성 제고

- 지방공기업 재무건전화와 연계된 성과 중심의 경영평가·진단을 통해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유도
- 지방 공기업 평가의 신뢰성·전문성을 제고하여 경영평가의 실효성 제고

IV. 정부업무평가 인프라 강화

주요 내용

- ◇ 정부업무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평가기본법 개정 추진
- ◇ 평가방법 과학성 및 평가설계 정합성 제고
- ◇ 평가의 독립성·전문성 강화로 평가결과 신뢰 제고
- ◇ 정부업무 평가결과 공개 및 활용 강화
- ◇ 전자통합평가시스템 고도화 및 평가 DB 구축

① 정부업무평가 제도·법령 개선 추진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정('06년) 이후 정책여건 변화 등을 고려, 평가제도 개선 및 법령정비 검토·추진
- 개별 평가제도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제도 남설 방지를 위한 사전심사 체계 제도화*
 - * 필요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을 개정하여, 개별평가 실시 관련 사항이 포함된 법령의 제·개정시 정부 업무평가위원회와 사전협의 의무화

② 평가방법 과학성 및 평가설계 정합성 제고

- 국민 체감중심의 산출·결과지표 확대, 평가지표의 대표성 강화, 정부업무평가에 적합한 통계 기법의 개발 등 평가의 과학성 제고
- 평가대상 및 평가목적 등에 부합하는 평가방법 개발·적용 등 평가설계 정합성 제고
 - 사전·사후 평가, 결과·과정평가 및 양적·질적 방법 등을 접목한 다양한 평가방식 적용

③ 평가의 독립성·전문성 강화로 신뢰 제고

- 각종 평가위원 위촉시 전문성·객관성 있는 인사의 참여기회가 확보되도록 사전검증 강화
- 각 기관 자체평가위원회, 부문별 평가지원단 등에 「청탁금지법」, 「표준윤리강령」 적용을 확대하여 독립성·공정성 제고
- 평가전문연구기관(한국행정연구원) 및 학계와의 협력·교류증진을 활성화하여 평가 전문성 강화
- 평가담당자에 대한 전문직위 부여를 통해 평가인력 전문성 확보

④ 정부업무평가 결과 공개 및 활용 강화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홈페이지를 활용, 각종 평가계획 및 결과 보고서, 국민만족도 조사결과 등을 대국민 공개
- 기관별 평정결과보다 과제별 평가결과 공개에 초점을 두고 추진

5 전자통합평가시스템 고도화 및 평가 DB 구축

- 전자통합평가시스템*을 정보통신 발전, 사용자 편의 등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고도화 추진
 - * e-IPSES : electric-Integrated Public Service Evaluation System
- 평가 전과정에 대한 통합지원으로 평가 효율성 제고 및 재정 절감
- 전자통합평가시스템에 평가 관련 각종 자료 DB 기능*을 구현하여 정보축적 및 활용도 제고
 - * 평가자료 전반을 DB화, 평가전문가 인력DB 구축, 통계·검색 기능 강화 등
- 평가 전 부문간 평가결과 등 정보 통합·연계

V. 향후 계획

-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을 토대로 「17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대상기관에 통보(7월)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는 「17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에 기초하여 「17년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7월~)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 (2020~2022)

2019. 12. 24



국무조정실

I. 기본계획 개요

1 수립배경

- 매 3년마다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중기목표와 기본정책방향을 정하는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 수립(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8조)
 - 정부 출범시 수립한 「'17~'19년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을 향후 정책환경 등을 고려하여 수정·보완 → 「'20~'22년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 수립
- ⇒ 매년 「연도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을 통해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

2 '17~'19년 기본계획 성과 평가

□ 성 과

- 국정과제 수행에 전체 중앙행정기관의 역량 집중 견인
 - * 중앙행정기관 기관종합 평가시 국정과제 부문을 65% 반영
- 지자체·공공기관 평가시 국정과제 및 국정철학과 연계 강화
 - * 국정과제 관련사항, 포용국가·사회적 가치 추진실적 평가 확대 등
- 기관장의 성과창출 노력 및 범부처 적극행정 추진 유도
 - * 부처평가에 기관장 활동성과 및 적극행정 추진실적 평가
- 평가과정에 국민·외부전문가 참여 확대
 - * 외부 평가단 구성, 평가지표 선정 및 정책효과 평가과정에 참여

□ 보완과제

- 부처 및 지자체 일선 공직자에 대한 견인효과 미흡
 - * 국정과제 평가결과의 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성과급 반영 저조

- 각종 평가제도간 연계미흡으로 일관성 부족
 - * 평가 관련 정보 개별관리,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간 일관성 검증 곤란
- ⇒ 부처 자체평가·지자체 평가·국정과제 제도개선시 반영

3 '20~'22년 정책추진 및 평가 여건

① 임기 후반기, 성과로 평가받을 시기

- 향후 3년은 현정부 임기 후반기로서 그간 추진해온 주요 국정시책을 마무리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여 국민들께 평가받는 시기
- ⇒ 기관장 책임하에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국정철학을 현장에 맞게 정책으로 구체화

② 사회구조적 변화 및 현안 대응

- 인구구조변화 및 4차산업혁명 등 사회·경제적 구조변화는 물론 총선·대선 등으로 사회갈등 현안도 분출될 가능성
- ⇒ 부처간 협업 강화를 통해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게 대응하고, 적극행정·규제개선을 통해 갈등을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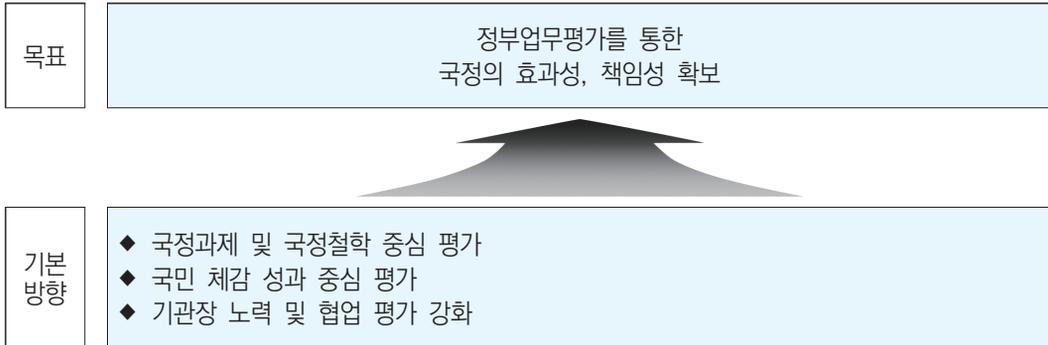
③ 신뢰를 바탕으로 정책 추진동력 확보

- 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제고하고, 유능하고 신뢰받는 정부 실현
- ⇒ 정부혁신을 지속 추진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

⇨ ▲기관장 책임하 성과창출 ▲협업 ▲적극행정 ▲규제혁신 ▲정부혁신 ▲국민소통 등에 대한 효과 중심 점검·평가를 통해 국정성과 창출 지원
 - 아울러, 평가제도의 과학화·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

II. '20~'22년 정부업무평가 목표 및 기본방향

1 목표 체계



부문별 중점 사항	중앙행정기관 평가	지방자치단체 평가	공공기관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과제 및 국정철학 중심 평가 ■ 국민 체감효과 중심 평가 ■ 기관장 노력 및 협업평가 강화 ■ 평가결과 대국민 공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 성과와 연계성 강화 ■ 중앙·지역 협업 및 주민참여 확대 ■ 평가지표 간소화 및 품질 개선 ■ 지자체 자체평가 운영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가치 및 혁신성장 중점 평가 ■ 국정과제 및 소관부처 정책과 연계 강화 ■ 서비스 수요자 및 일반국민 참여 확대 ■ 출연연의 국정기여도 평가 강화

평가제도·인프라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정부적 평가시스템 고도화 ■ 개별평가 정비 및 관리 강화 ■ 평가 및 인센티브 제도 개선 ■ 평가 전문기관 설치·운영

2 기본방향

① 국정철학 및 국정과제 중심 평가

- 중앙부처 평가시 일자리·국정과제 부문 강화된 평가비중 유지
 - * 일자리·국정과제 부문이 전체(100%)의 65%, 부처 자체평가 시 국정과제 관련업무 가점 부여
- 지자체 및 공공기관 평가시 국정철학, 국정과제와 연계 강화
 - * △지자체 합동평가시 국정과제, 국정철학 관련 항목 우선 선정
 - △공공기관 평가시 사회적 가치·공정 관련 항목 평가 비중 유지

②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중심 평가

- 평가항목 중 정책효과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정책수요자의 의견반영 기회 확대 등 현장 수용성 관점에서 평가
 - * 특정평가 각 부문별 정책효과 비중 강화
- 국정과제별 성과지표 선정 시 투입(예산, 인력 등)지표보다는 산출·결과 지표 확대
 - * 성과지표 점검을 통해 투입지표에 대해서는 패널티 부여

③ 기관장 활동 및 협업노력 평가 강화

-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정책수요자와 소통하고 성과를 점검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평가
 - * 일자리·국정과제 부문 평가항목에 '기관장 노력도'(10%) 신설 등
- 종합적 대응 및 정책효과 시너지 창출을 위한 부처간 협업노력 평가 강화
 - * △일자리·국정과제 부문에 협업평가 항목 신설
 - △규제혁신/정부혁신/정책소통 부문 협업평가항목 배점 강화

④ 평가 제도 및 인프라 개선

- 국정성과 연계를 위한 쉐정부적(국가-지자체-공공기관) 평가시스템 고도화
- 평가제도 분석·연구를 위한 평가 전문기관 설치·운영

Ⅲ. 평가 부문별 중점사항

1 중앙행정기관 평가

◇ 국정과제 성과창출을 위해 △기관장 노력 △적극행정 △부처간 협업노력에 대한 평가를 대폭 강화하고, 평가결과 공개 확대를 통해 책임성 제고

① 일자리·국정과제 및 국정철학 중심 평가

- 일자리·국정과제 부문 중심의 특정평가 체계를 유지하고, 공정·사회적 가치 등 국정철학 관련 평가항목 확대
- 부처 자체평가 시 국정과제와 연계성 및 평가결과의 성과급 반영 강화

② 국민 체감효과 중심 평가 강화

- 정책 추진 성과 및 국민 체감효과 평가 강화
 - * 정책효과 관련 평가지표 확대 및 정책효과 배점 비중 상향 조정
- 정책 평가과정에 국민과 정책수요자 참여 확대
 - * 평가단 조기구성 및 상시 의견수렴, 정책만족도 조사(1.7만명) 등

③ 기관장 노력 및 협업평가 강화

- 기관장의 현장소통 및 입법활동 등 성과창출 노력을 중점 평가
- 부처간 협업노력 강화를 위해 별도 평가항목 신설

④ 평가결과 대국민 공개 강화

- 국정과제 추진상황 및 평가결과 대국민 공개 확대
 - * 정평위 홈페이지에 부처별 추진성과, 부처별 자체평가 결과 등을 통합하여 게재

2 지방자치단체 평가

◇ 중앙부처와의 정책적 정합성 유지 및 협업 노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되, 평가지표 간소화로 지자체 부담 완화 및 평가과정에 주민 참여 등 소통 확대

1 국정 성과와의 연계성 강화

- 국정과제 및 국정철학 중심으로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을 선정, 지자체의 동참 지속 유도
- 투입형 실적·건수가 아니라 실질적 성과 위주로 평가지표 개선
 - * 부처 제시안에 대한 국정성과 차원의 실효성 검증 및 대안 마련 강화

2 중앙·지역 협업 및 지역 주민 참여 확대

- 중앙부처와의 협업노력 평가
 - * 중앙부처의 개별사업(40개)에 대한 지자체 평가시 지표에 반영
- 지자체 국민평가단에 지역주민 참여 규모 및 대표성 확대

3 평가지표 간소화 및 품질 개선

- 평가지표의 주기적 재검토 및 지표 수 간소화로 지자체 부담 완화
 - * 일몰제 도입, 존치여부 주기적 평가(지표 탈락, 재도입)
- 지표개발시 전문가 검증 강화 등 품질관리 강화
 - * 지표안 검증기간 확대, 지표안에 대한 자체검증 강화 등

4 지자체 자체평가 운영 내실화

- 평가위원 구성시 주민대표성 제고, 평가결과 지방의회 제출 등 자체평가에 대한 지역주민 자율 감시기능 강화
- 자체 평가결과의 개인 성과급 반영여부 등 점검 강화

3 공공기관 평가

◇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적 가치나 부처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출연연의 현안분석 및 문제해결 중심 연구 등 국정 기여도 평가 강화

1 사회적 가치 및 혁신성장 노력에 대하여 중점 평가

- 안전, 갑질·채용비리 근절 등 사회적 가치 항목 강화된 평가 배점 유지
 - * 공기업 평가('20년~) : 사회적 가치 24점
 - * 지방 공기업의 경우, 지역사회 활성화 및 주민 소통노력 평가 강화
- 기관 자체혁신 및 혁신성장 노력에 대한 평가 지속
 - * 공기업 평가('20년~) : 혁신노력 및 성과(3점), 혁신성장 가점(1~2점)

2 국정과제 평가 및 소관 부처 정책과 연계 강화

- 공공기관 성과지표 선정 시 관련 국정과제 성과지표와 동일지표 사용가능성 등 연계성 검토 강화
- 평가지표의 탄력적 선정 및 소관 부처의 의견반영 기회 확대
 - * 전년도 평가지표 선정 이후에도 연초 부처업무계획 등 수시 반영, 정부 정책과의 시차를 최소화

3 서비스 수요자 및 일반 국민의 평가 참여 확대

- 공공기관 평가시 서비스 수요자 및 일반국민의 참관기회 확대
 - * '18년 50개 기관 평가시 참여 → 전체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확대
- 지방공기업 평가시 주민참관단 구성 확대
 - * '19년 12개 기관 실시 → 도시개발, 광역환경 등 32개 기관으로 확대

4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국정 기여도 평가 강화

- (과기연) 연구과제 평가시 기관 고유 임무와 부합도 평가 강화
- (경사연) 국정현안 자문, 단기 정책분석 등 국정 지원노력 평가 강화

Ⅳ. 평가제도·인프라 개선

◇ 인센티브 및 공개 확대 등 환류 강화를 통해 평가의 건인효과를 제고하고, 각종 평가의 통합적 관리를 통해 성과 창출을 뒷받침

① 쉰정부적 평가시스템 고도화 및 대국민 공개시스템 개선

- 국정성과를 지방일선까지 연계하여 볼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 마련
 - * 국가, 공공기관, 지자체 평가간 평가지표 및 실적 연계 등
- 각종 정부평가결과 통합 공개를 위한 ‘정부업무평가 포털’ 개설

② 중앙부처·지자체 대상 개별평가 정비 및 관리 강화

- 개별 평가제도 신설 및 시행에 대한 정평위의 관리 강화
 - * 개별평가 제도 신설·변경 심사 강화, 연도별 평가 시행계획 정평위 검토 등
- 개별평가 운영실태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상위평가 실시
 - * 평가방법 및 평가대상 적절성 검토, 중복평가 통합, 정평위 심의 강화 등

③ 평가 및 인센티브 제도 개선

- 각종 평가간 연계방안, 평가 유형별 메타평가 방법, 평가결과와 성과급·예산·인사 등과 연계 강화방안* 등 개발
 - * 예) 기관 경상경비 배분시 평가결과 반영

④ 평가 제도·역할 체계 등 개선 (장기)

- 특정평가 제도 및 정평위, 국조실(평가실) 역할체계 개선방안 연구
- 각종 평가제도 통계관리, 중복사항 분석, 성과지표간 연계방안 등을 지원하는 정부업무평가 전문기관 설치·운영 검토
 - * 유사사례 : 지방공기업평가원, 공공기관평가센터 등
- 평가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및 민간평가단 전문성 제고
 - * 공무원교육원 ‘평가과정’ 신설, 전문직위 지정, 우수 평가단 재위촉 확대

V. 향후 계획

-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 통보 : '19.12월

- '20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립 : '19.12월
 - 평가 주관기관별로 '세부 시행계획' 수립 ('20.1월)
 - 「'20년 정부업무평가 세부시행계획」 확정 및 부처설명회('20.2월, 국조실)

- 자체평가계획 수립 및 추진 : ~'20.3월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20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에 기초하여 「'20년 자체평가 계획」 수립

2017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2017. 7. 4



국무조정실

1. 2017년도 정부업무평가 개요

1. 기본 방향

- ◆ 새 정부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추진과 성과 창출을 위한 평가체계 구축
- ◆ 현장중심의 과정 관리 및 평가결과 환류 강화

① 국정과제 중심으로 정부업무평가체계 구축

- 일자리 창출 등 당면현안과 관련된 국정과제 중심으로 평가대상과제 선정, 집중적인 점검·평가
- 지자체·공공기관 평가에 국가 주요시책을 반영, 국정운영 성과를 현장까지 확산
- 국정과제중 파급효과가 크고 성과창출이 필요한 과제를 집중 관리하여 조기성과 창출

② 기관별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책임성 제고

- 새 정부 국정기조와 각 기관 성과관리계획의 정합성 제고를 통해 국정운영 성과 도모
- 자체평가의 운영실태를 정밀진단·분석, 자체평가 운영 내실화

③ 현장중심의 평가체계 및 환류 강화

- 민간전문가·수요자 등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단을 운영, 평가과제의 문제점 적극발굴 및 장애 해소 지원
- 평가결과 후속조치사항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및 평가결과 환류 등 사후관리 강화

2. 평가 유형

① 중앙행정기관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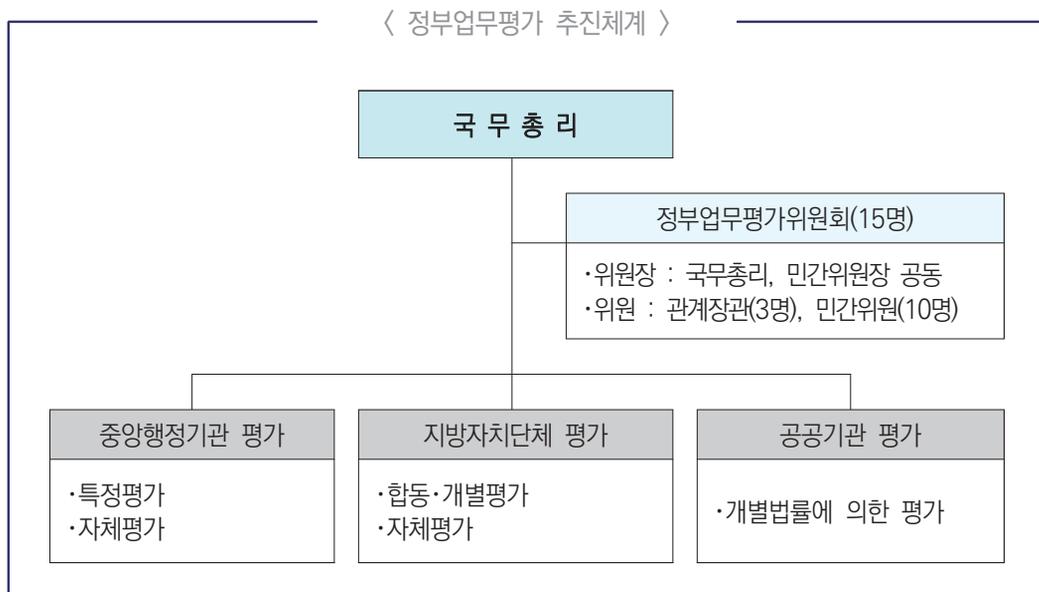
- (특정평가) 국무총리가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요 현안시책 등 평가
- (자체평가) 중앙행정기관이 주요정책, 통합재정사업(일반재정·정보화·R&D사업 등), 행정관리역량(조직·인사·정보화)을 자체적으로 평가

② 지방자치단체 평가

- 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합동·개별 평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③ 공공기관 평가

-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평가실시기관이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연구실적 등에 대하여 평가



II. 중앙행정기관 평가계획

1

특정 평가

(1) 개요

① 평가대상

- 기관 : 42개 중앙행정기관 (장관급 22개, 차관급 20개)
* 평가대상 기관은 향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변경 가능
- 기간 : '17.7.1 ~ 12.31

② 평가부문

- ◇ 새 정부 국정과제와 일자리 창출 노력에 최우선 비중
- ◇ 국민과의 정책소통, 국민들의 국정평가(국민만족도)도 중점 평가
- ◇ 현안관리·인권개선·갈등관리 등은 가감점 반영

- ① (국정과제) 국정과제 및 중앙행정기관별 핵심업무 평가를 통해 국정성과 창출 뒷받침
- ②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노력 및 성과 평가를 통해 공공·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지원
- ③ (규제개혁) 규제개혁 노력 및 성과 평가를 통해 경제활성화 및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
- ④ (정책소통) 국정과제 등 주요정책에 대한 국민소통 노력 및 성과 평가를 통해 국민의 정책성과 이해 및 체감 확산
- ⑤ (국민만족도) 국정과제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통해 국민체감 성과 제고
- ⑥ (기관공통사항) 현안관리·갈등관리·인권개선·특정시책 이행노력 및 성과를 평가하여 책임성 강화

〈 '16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

2016년 평가		2017년 평가
① 국정과제 50 · 핵심개혁과제(과제별 최대 ±2) · 협업(기관별 최대 ±1)	⇨	① 국정과제 50 · 혁신관리 및 협업(기관별 최대 ±2)
② 규제개혁 20		② 일자리 창출 20
③ 정책홍보 20		③ 규제개혁(일자리 규제개혁 포함) 10
④ 정상화과제 10		④ 정책소통 10
⑤ 기관공통사항 ±10 (정부3.0 ±5, 성과관리 ±3, 특정시책 ±2)		⑤ 국민만족도 10
		⑥ 기관공통사항 ±10 (현안관리 ±3, 갈등관리 ±3, 인권개선 ±2, 특정시책 ±2)

3] 평가방법

- 평가부문별로 주관기관에서 평가지원단(민간전문가, 정책수요자 등 참여)을 구성, 평가항목에 따라 정량적, 정성적 평가 병행
-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평가결과 심의·의결

4] 평가등급

- 평가부문별로 평가대상기관을 상대 등급화(3~5등급)
- 부문별 상대등급 범위 및 비율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추후 결정

5] 평가결과 활용

- 평가결과 국무회의 보고 또는 평가보고회 개최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제시된 개선·보완 필요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이행
 - 국무조정실은 후속조치계획 및 이행실적 점검 후 차년도 평가에 반영
-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포상금 지급, 업무유공자 포상 실시
 - 각 기관별로 성과급 등에 평가 결과를 반영

(2) 각 부문별 평가계획

1) 국정과제

① 평가방향

- 국정과제 및 중앙행정기관별 주요정책과제의 차질없는 이행과 조기 성과창출을 위해 과제 이행실적 분석·평가
 - (국정과제) 일자리 창출 등 성과창출이 필요하거나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
 - (주요정책과제)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각 기관에서 '17년 핵심업무로 추진해야 할 과제
 - * 국정과제가 1개 이하인 중앙행정기관만 선정

② 평가대상

- 42개 중앙행정기관 (장관급 22개, 차관급 20개)

③ 평가방향 및 평가항목

< 평가방향 >

- 과제 추진 첫 해이자 짧은 추진기간을 감안하여 정책추진 노력을 높은 비중으로 평가
- 정책성과는 사전에 설정한 성과지표 달성여부를 평가하되, 정책효과에 대한 체감도 평가(민간전문가 등 참여) 병행 실시

< 평가항목 >

평가항목	내용	비고
정책추진 노력	• 과제 추진계획을 충실히 수립하고, 이에 따라 차질없이 이행했는지 여부	정성/ 정량
성과지표 달성도	• 사전에 설정된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 여부	정성/ 정량
정책효과	• 성과지표로 측정할 수 없는 정책의 체감성과를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종합 평가	정성/ 정량

4] 평가방법

< 평가등급 >

- 과제별 각 100점 만점으로 평정 후, 기관별 과제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평가등급 부여

< 평가항목별 평정 방법 >

- (정책추진 노력) 과제 이행계획의 충실성 및 이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 완수 여부에 따라 평정
- (성과지표 달성도) 지표별 목표치 적극성 및 달성여부에 따라 평정

- 사전에 설정한 각 지표별 가중치에 따라 합산

- (정책효과) 성과지표만으로 측정할 수 없는 정책효과* 평가

* △성과지표 외 정책성과 △국민불편 해소 및 편익증진 정도 △향후 긍정적·부정적 효과발생 기대정도 등

- 평가의 전문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지원단(정부업무평가위원, 민간전문가 등)」을 구성하여 평가 실시

※ 일하는 방식 등의 혁신 및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부처간 협력 노력 및 성과를 평가, 가감점 (±2) 부여

2) 일자리 창출

1] 평가방향

- 「일자리 창출 로드맵」 이행을 위한 관련부처의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평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부처 역할 독려

2] 평가대상

- 42개 중앙행정기관 (장관급 22개, 차관급 20개)

③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내용	비고
정책형성	• 과제 목표의 적절성, 추진기반 확보 노력 등	정성/ 정량
정책집행	• 추진과정의 적절성,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성 등	정성/ 정량
정책성과	• 성과목표 달성도, 일자리 창출 효과 등	정성/ 정량

* 일자리 관련 실천과제가 없는 기관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 개선·인력양성 등 노력 정도 평가

④ 평가방법

- 각 기관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추진실적 및 성과를 종합 평가
- 「민관합동 일자리 과제 평가지원단」 구성·평가

3) 규제개혁 평가

① 평가방향

- 기업과 국민이 규제개혁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과정보다는 규제개혁 성과에 초점을 두고 평가

② 평가대상

- 27개 중앙행정기관

구 분	기 관 명
장관급 (18개)	기재부, 미래부, 교육부, 법무부, 행자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방통위, 공정위, 금융위, 안전처
차관급 (9개)	인사처, 보훈처, 식약처, 관세청, 경찰청, 문화재청, 산림청, 중기청, 특허청

* 부처 특성 및 법률 규제 수('17.5월말 기준 30개 미만) 고려 15개 부처 제외

③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내용	비고
규제개선	• 일자리 및 신산업 관련 규제개혁 등	정성/ 정량
규제심사	• 생명·안전 등 사회적 비용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규제비용관리제 적용 등	정성/ 정량
규제개혁 체감도	•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 등	정성/ 정량

④ 평가방법

- 기관의 규제개선 실적 및 성과에 대해 정량·정성 평가
- 「민관합동 규제개혁 평가지원단」 구성·평가

4) 정책소통 평가

① 평가방향

- 국민의 정책에 대한 이해 및 체감 확산을 위해 각 기관의 대국민소통 노력 및 성과 평가

② 평가대상

- 42개 중앙행정기관 (장관급 22개, 차관급 20개)

③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내용	비고
정책소통 활동	• 정책소통기획 실적 • 정책소통협업 실적 등	정성/ 정량
정책소통 성과	• 방송·신문 보도성과 • 온라인 정책소통활동 성과 등	정성/ 정량

4) 평가방법

- 각 기관의 정책 국민소통활동 및 성과에 대해 정량·정성평가
- 문체부 주관, 「민관합동 정책소통 평가지원단」 구성·평가

5) 국민만족도 조사

1) 평가방향

- 국정과제 등에 대한 일반국민·전문가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정부업무평가에 국민체감 평가 결과 직접 반영

2) 평가대상

- 42개 중앙행정기관 (장관급 22개, 차관급 20개)

3)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내용
항목 만족도	민주성	• 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국민 의견 수렴정도
	적극성	• 정책 목표달성에 대한 정부 노력도
	대응성	• 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상황변화 및 문제점에 대한 대응의 적절성
	효과성	• 정책 추진으로 달성된 성과 정도
체감만족도		• 국정과제에 대한 종합적인 만족도

4) 평가방법

- 평가의 전문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민간 전문 조사기관에 설문조사를 의뢰

6) 기관공통사항

< 현안관리 >

① 평가방향

- 각 중앙행정기관의 대통령 및 총리 지시사항 이행 및 관리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시사항 이행실태 점검·평가

② 평가대상

- 42개 중앙행정기관 (장관급 22개, 차관급 20개)

③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내용	비고
계획수립	• 지시사항에 대한 기관장 관심도, 이행계획 수립의 적절성, 계획수립 시한 준수여부 등	정성/ 정량
지시사항 관리	• 지시사항 관리실태 점검 결과, 처리기한 준수 여부 등	정성/ 정량
지시사항 이행실적	• 지시사항 이행 성과, 실적보고·처리결과 적기 시스템 등록 여부 등	정성/ 정량

④ 평가방법

- 각 기관 지시사항 관리 실태 및 성과에 대해 정량·정성 평가
- 대통령 지시사항 현장점검 결과를 평가와 연계

< 갈등관리 >

① 평가방향

- 정책 및 국책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 각 부처가 책임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한 갈등관리 노력과 성과를 평가

② 평가대상

- 42개 중앙행정기관 (장관급 22개, 차관급 20개)

③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내용	비고
갈등과제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갈등조정협의회 운영실적• 갈등영향분석서 작성 및 활용실적•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실적	정성/ 정량
갈등관리제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갈등현장 방문, 이해관계자와의 대화와 타협 등 소통 노력•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관계부처 회의 등 국정협의체를 활용한 갈등해결 노력• 기타 갈등해소를 위한 창의적인 노력	정성/ 정량
갈등관리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갈등 완화·해소 정도 및 성과	정성/ 정량

④ 평가방법

- 부처 실적자료를 토대로 1단계 서면평가를 진행, 2단계로 부처 설명회 등을 통해 심층대면 평가 실시
- 객관적·전문적 평가를 위해 「민관합동 갈등관리 평가단」을 구성·운영

< 인권개선 >

① 평가방향

- 중앙행정기관의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수용률 제고 등 인권 개선을 위한 이행노력 및 성과를 종합평가

② 평가대상

- 42개 중앙행정기관 (장관급 22개, 차관급 20개)

③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내용	비고
권고이행	• 기한내 권고사항 이행계획 회신 여부 및 권고 수용 정도	정성/ 정량
기타 인권개선 노력	•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 등	정성/ 정량

④ 평가방법

- 인권위의 정책사항 개선 또는 시정권고에 대한 각 기관의 추진노력, 이행실적 등을 정성·정량평가
- 인권위에서 각 기관 추진실적 확인·검증

< 특정시책 >

① 평가방향

- 장애인 고용 등 주요 시책의 이행률 제고를 위해 법정기준 중심으로 정량적으로 평가

② 평가대상

- 42개 중앙행정기관 (장관급 22개, 차관급 20개)

③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내용	비고
장애인 고용	• 법정 의무고용률(3.2%) 중심 가감점	정량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 법정 의무 구매비율(1%) 중심 가감점	정량
중소기업 제품 구매	• 법정 의무 구매비율(50%) 중심 가감점	정량
기술개발 제품 구매	• 법정 의무 구매비율(10%) 중심 가감점	정량

4 평가방법

- 법정기준 등 달성여부 중심으로 정량적 평가
- 각 평가항목별 시책 소관 기관*에서 추진실적 확인·검증
 - * 고용부(장애인 고용), 복지부(중증장애인 생산품), 중기청(중소기업제품, 기술개발 제품)

2

자체 평가

1 평가방향

- 새 정부 국정과제 등을 성과관리 전략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기관별 목표와 정책수단을 설정하고,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국정성과 창출 지원
- 평가결과를 정책·예산·조직·인사·보수 등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 제고

2 평가대상

- 기 관 : 43개 중앙행정기관 (장관급 23개, 차관급 20개)
- 기 간 : '17.1.1 ~ '17.12.31

3 평가부문

- ① 주요정책 : 「2017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관리과제 등
 -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수립하는 업무계획으로써 당해 연도 주요정책·사업 목표와 추진일정, 목표 달성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등 제시
- ② 통합재정사업 : 일반재정·정보화사업, R&D사업, 지역발전사업
- ③ 행정관리역량 : 중앙행정기관의 조직·인사·정보화 관리역량

4 평가방법

- 중앙행정기관별 「2017년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자체평가위원회가 평가지표에 따라 자체평가 실시
 - (주요정책) 기관별 업무특성에 부합되도록 자율적 평가지표 설정
 - (통합재정사업) 성과목표달성도, 성과우수성 등을 중심으로 공통 평가지표를 사용하되 분야별 특성화지표 추가
 - (행정관리역량) 행자부·인사처가 조직·인사·정보화 분야 공통 평가지표 개발·제시
 - * 선택지표 항목을 일부 편성하여 부처별 업무와 기능에 적합한 지표를 선택하여 관리·평가할 수 있도록 자율성 부여
- 평가결과 상대등급화
 - 평가결과를 정책개선·조직관리·개인평가 등에 연계하여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상대평가 방식 적용
 - * (주요정책) 평가결과의 수용도 제고를 위해 결과 확정 전 이의신청 절차 운영
- 평가총괄관련기관은 기관별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확인·점검 실시
 - (주요정책/행정관리역량) 자체평가 운영에 대한 확인·점검
 - (통합재정사업) 통합 재정사업평가 결과에 대한 메타평가 실시

5 평가결과 활용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 중앙행정기관장의 장은 평가결과를 조직·예산·인사 및 보수체계에 연계·반영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은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시 반영

Ⅲ. 지방자치단체 평가계획

1. 평가 개요

□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평가

- (합동평가)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평가
- (개별평가) 업무 특성·평가 시기 등으로 합동평가를 하기 곤란한 경우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협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개별적으로 평가

□ 지방자치단체 자체 평가

- 지자체 장은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

2.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평가

합동평가

① 평가방향

-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및 국정 주요시책 등 추진상황을 평가·환류함으로써 국정의 통합성, 효율성 제고 및 지자체의 책임성 확보
- 각종 평가를 통합·운영하여 중앙부처의 평가로 인한 지자체 업무부담을 완화

② 평가대상 및 평가시기

- 대상기관 : 17개 광역자치체 (시·군·구 실적 포함)
- 시 기 : '18.1 ~ 6월 ('17년도 실적 대상)
* '16년 실적 대상 평가('17.1 ~ 6월)

③ 평가방법

-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합동평가실시계획' 수립,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의결
-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단이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병행
 -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평가 및 현지검증 등 실시
 - * 타 지방자치단체 실적에 대한 상호열람 및 이의신청 병행

④ 평가결과 활용

- 행정자치부는 평가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하고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
 - * 市部와 道部를 구분하여 분야별·시책별 등급 공개
- 평가결과 우수 자치단체에 정부포상 및 재정인센티브 등 지원
- 우수사례 공유 확산 컨퍼런스 개최 및 우수사례집 발간
- 평가결과 부진시책에 대해 지자체별 맞춤형 컨설팅 실시
 - * 평가지표·세부 산식 설명, 실적 현황 및 문제점 등 여건 진단

개별평가

① 평가방향

- 업무특성·평가시기 등으로 합동평가가 곤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정 주요시책 등을 대상으로 개별평가 실시

② 평가대상 및 시기

-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광역 및 시·군·구)
- 시 기 : 수시

③ 평가방법

- 평가대상 업무를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장이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협의를 거쳐 ‘평가실시계획’ 수립
 - ※ 부처의 개별평가 실시계획에 대해 국무조정실이 타당성 검토 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일괄 제출
- 평가를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장은 평가실시계획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평가 후, 평가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

④ 평가결과 활용

- 중앙행정기관은 정책개선 방안 등 조치 필요사항을 마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우수기관에 인센티브 등 제공
- 중앙행정기관은 개별평가 결과가 실효성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환류실태에 대한 지속 점검·관리

3.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① 평가방향

- 지방자치단체장이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정책성과 창출 유도
- 중앙행정기관의 주요정책 추진노력과 성과가 지역차원에도 구현·공유되도록 노력

② 평가대상

- 기 관 : 지방자치단체 (광역·기초)
- 기 간 : '17.1.1 ~ 12.31

③ 평가방법

- 평가지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개발·활용하되, 과제별 평가결과의 변별력이 강화되도록 평가체계 마련
 - * 행정자치부장관은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평가기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지원
- 민간 2/3 이상이 참여하는 자체평가위원회가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를 병행

⑤ 평가결과 활용

- 평가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
- 평가결과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차년도 성과관리계획, 개인성과 등에 반영
-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평가 운영실태를 자체점검하여, 평가제도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18년도 자체평가 운영에 반영

IV. 공공기관 평가계획

1. 평가 개요

① 평가방향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및 경영책임 강화, 투명성 제고와 공공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경영실적 등을 평가

② 평가유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에 의해 604개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및 연구성과에 대해 평가

근거 법률	평가대상	평가기간	평가 주관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 및 준정부 기관(119개)	평가계획(전년 12월) → 평가시행(3~5월) → 평가결과(6월)	기획재정부장관
국가재정법	기금(67개)	평가계획(전년 12월) → 평가시행(3~4월) → 평가결과(5월)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기본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7개)	평가계획(전년 9월 ~ 당해연도 1월) → 평가시행(1~12월) → 평가결과(4~12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자체평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상위평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경제·인문사회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26개)	평가계획(전년 10월) → 평가시행(1~3월) → 평가결과(4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 (345개)	평가계획(2월) → 평가시행(4~6월) → 평가결과(7월)	행정자치부장관 및 시·도지사

2. 부문별 평가계획

1) 공공기관 평가

① 평가방향

- 전년도 경영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사·성과급 등에 반영,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계 확립 및 공공서비스 증진 등 유도

② 평가대상

- 119개 공기업·준정부기관(공기업 30개, 준정부기관 89개)
* 전년대비 준정부기관 3개 증가

③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지표	비고	배점
경영관리	• 경영전략 및 사회공헌, 업무효율, 조직·인적자원 및 성과 관리, 재무예산관리 및 성과,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정성/ 정량	50
주요사업	• 공공기관의 주요사업별 계획·활동·성과를 종합평가	정성/ 정량	50

④ 평가방법

- 매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편람에 따라 평가
- 평가의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교수·회계사 등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을 활용하여 실시

⑤ 평가결과 활용

- (성과급 지급)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2017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경영평가 성과급 차등 지급

- (인사 조치) 평가결과 D(미흡)등급인 기관의 장은 “경고” 조치하고, E(아주미흡) 등급인 기관의 장은 “해임” 권의
- (예산 조치) 경영평가 결과 ‘미흡(D)’ 등급 이하를 받은 기관에 대하여는 차년도 경상경비 조정 등 공공기관 예산 편성에 반영
- (경영 컨설팅) 경영실적 부진기관에 대해 맞춤형 경영컨설팅을 실시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평가

1] 평가방향

- 연구기관의 연구사업에 대한 평가 확대, 평가위원회의 다양성·독립성 강화로 국민중심의 평가 지향

2] 평가대상

- 47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부처·연구회	연구기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녹색기술센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천문연구원 등 25개 기관
미래부	한국과학기술원, 고등과학원, 나노종합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뇌연구원 등 17개 기관
해수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극지연구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원안위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3]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지표	비고	배점
경영부문	• 연구몰입환경, 기관운영, 성과확산 등의 영역	정성/ 정량	20
연구부문	• 자체 연구성과계획에 기반한 성과목표 단위	정성/ 정량	80

4] 평가방법

- 기관장 임기 초 기관 자율로 연구성과계획서를 수립하여 임기 말 종합평가 실시
- 소관 부처·연구회의 자체평가 → 미래부 상위평가
 - * 연구분야에 따라 다양한 전문가(산학연 등)로 평가위원회 구성

5] 평가결과 활용

- 평가결과는 각 부처·연구회에서 소관 공공기관 및 기관장의 성과연봉·예산·차기 성과계획서 등과 연계·반영

3) 경제인문사회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평가

1] 평가방향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성과와 책무성을 확보하고 발전방향 제시

2] 평가대상

- 23개 연구기관, 2개 부설기관, 1개 대학원

구분	경제정책 분야	자원인프라 분야	인적자원 분야	공공정책 분야
연구 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토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설 기관	KDI국제정책대학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육아정책연구소	

3]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지표	비고	배점
연구분야	• 연구보고서(360점), 국가정책지원성과(370점), 연구관리(40점)	정성/ 정량	770
경영분야	• 리더십·책임경영(50점), 조직·인적자원 관리(72점), 보수·예산관리(60점), 감사·평가결과 개선(13점), 사회적 배려(35점)	정성/ 정량	230

4] 평가방법

- 매년 연구기관 평가편람 및 추진계획에 의거하여 평가 시행, 서면 및 온라인 평가, 실사평가를 통한 인터뷰 등을 통해 확인·검증
- ‘총괄반’과 ‘2개 분야 전담분과’ 구성·운영(외부전문가·공무원 등)

5] 평가결과 활용

- (예산·인사) 정부출연금 차등 지급, 기관장 성과연봉 차등 지급 및 해임 건의, 우수연구기관 및 우수연구자 포상 등
- (정책 환류) 평가 지적사항에 대해 기관별 ‘자체개선계획’ 수립·제출, 평가결과 부진기관 대상 컨설팅 실시

4) 기금 평가

1] 평가방향

- (기금준치평가) 전체 재정체계를 고려하여 기금의 준치 여부를 평가하여 재정운용의 합목적성과 효율성 제고
- (자산운용평가) 기금 여유자산의 운용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② 평가대상

- (기금존치평가) 전력산업기반기금, 문화재보호기금 등 21개 기금
 - * (기존) 모든 기금을 3년마다 평가('04, '07, '10, '13년) → ('15, '16년) 전체기금의 1/2씩 평가 → ('17년부터) 매년 전체기금의 1/3씩 평가
- (자산운용평가) 고용보험기금, 국민주택기금 등 38개 기금
 - *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 기금(20개)과 여유자금 1조원 이상 기금(4개)은 매년 평가하고, 그 외 기금(14개)은 격년으로 평가

③ 평가항목

- (기금존치평가) 기금사업·재원구조의 적정성 및 기금존치의 타당성을 평가
- (자산운용평가) 기금 여유자산 운용실태를 비계량항목(50%)과 계량항목(50%)으로 구분하여 평가

④ 평가방법

-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30명 내외 외부 전문가로 구성
 - *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정부출연연구기관 박사, 5년 이상 경력의 공인회계사·변호사 등(국가재정법 제8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⑤ 평가결과 활용

- (존치평가) 평가단의 개선 권고사항 이행실적 점검(반기별)
- (자산운용평가) 상·하위 각 1/3기금의 운영비를 각각 0.5%p 증감 등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추진

5) 지방공기업 평가

1 평가방향

- 지방공기업의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 및 진단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경영개선을 도모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주민서비스 제고에 기여

2 평가대상

- 평가대상 : 상·하수도, 지방공사·공단
 - '17년 345개 기관(상수도 115, 하수도 89, 공사 58, 공단 83)
 - 광역공기업 : 61개(상수도 8, 하수도 7, 공사 34, 공단 12)
 - 기초공기업 : 284개(상수도 107, 하수도 82, 공사 24, 공단 71)
 - * 평가 제외 : 신설 공기업 및 청산대상 공기업 등

3 평가항목

대분류(4)	중분류(8)	세부지표(32~38)	상수도	하수도	도시 철도	도시 개발	특정 공사	시설 공단	환경 공단
	총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리더십/ 전략	리더십	소 계	8	8	11	11	11	11	11
		경영층 리더십	2	2	3	3	3	3	3
		고객서비스 및 윤리경영	4	4	-	-	-	-	-
		고객 및 주민참여	-	-	2	2	2	2	2
	윤리경영	-	-	3	3	3	3	3	
전 략	비전·미션 및 경영계획	2	2	3	3	3	3	3	
경 영 시스템	경영효율화	소 계	32	32	30	30	30	30	30
		조직관리	2	2	3	3	3	4	4
		인사관리	4	4	3	3	4	4	4
		노사관리	-	-	5	3	4	4	4
	재무관리	5	5	4	6	4	3	3	
주요사업활동	주요사업활동	21	21	15	15	15	15	15	
경영성과	정책준수	소 계	55	55	49	49	49	49	49
		주요사업성과	19	19	17	13	14	17	24
		경영효율성과	21	21	22	26	25	17	15
		고객만족성과	15	15	10	10	10	15	10
정책준수	공기업정책준수	5	5	10	10	10	10	10	

4 평가방법

- 평가유형별 경영평가단(교수, 공인회계사, 전문연구기관 연구위원 등)을 5~10명 구성하여 평가

5 평가결과 활용

- 평가급 차등지급, 경영진단 실시, 우수기관 표창 등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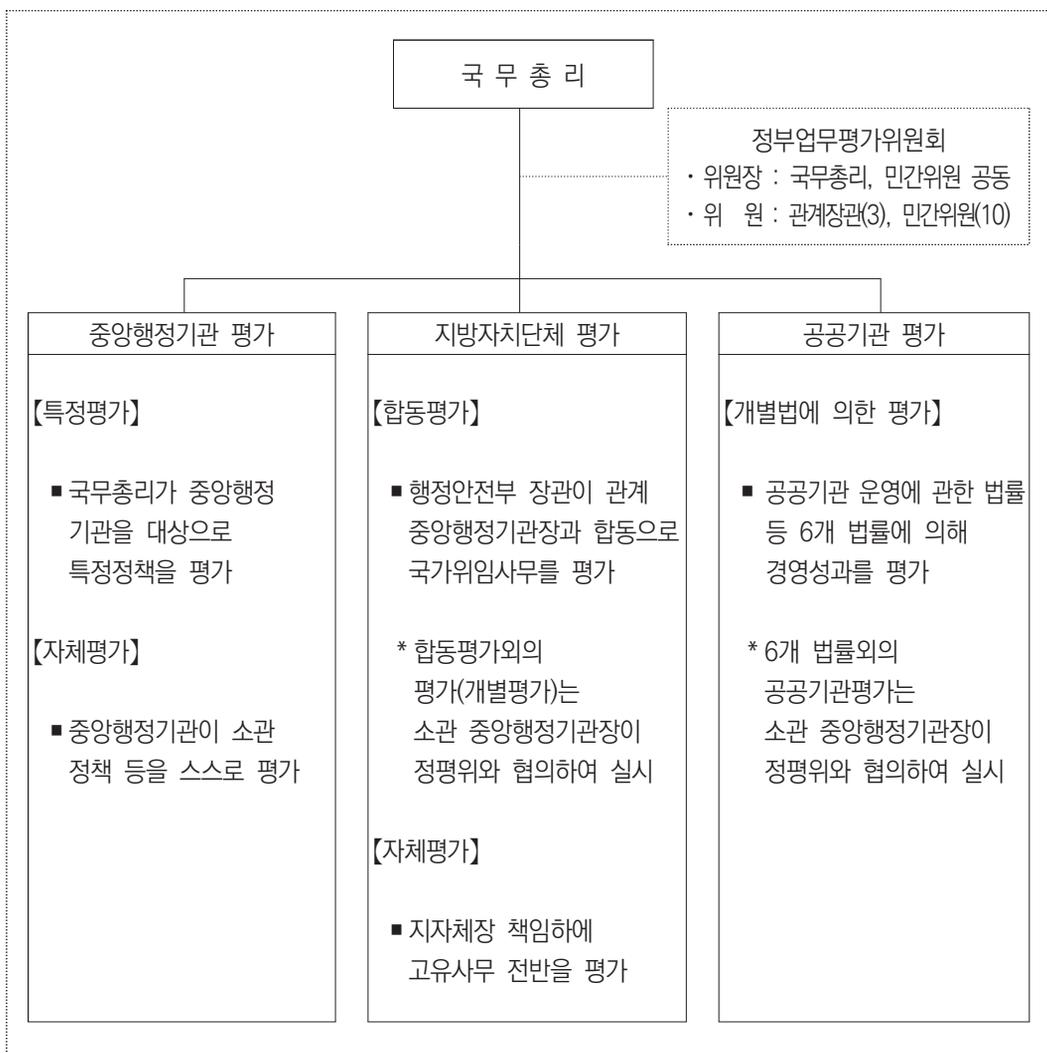
2018. 4.



국무조정실

I.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 개요

1. 정부업무평가 체계



2. '18년도 평가 개요

1 역점 추진 방향

- ① 100대 국정과제(일자리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정책노력도·달성도·정책효과 등 정책역량을 엄정 평가
- ② 정부혁신·규제혁신·국민소통 등 부처별 혁신·소통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
- ③ 평가시 외생요인에 대한 고려 등 평가과정·방식을 보다 합리화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수용성 제고

2 주요 개편·추진 사항

1 중앙행정기관 평가 (특정평가)

- ① 정책역량 평가 / 혁신·소통역량 평가 간 균형 견지
 - 정책역량 평가 2/3와 혁신·소통역량 평가 1/3로 구성
 - * △ 100대 국정과제(일자리과제) 중심 정책역량 평가 : 65점
 - △ 부처별 정부혁신·규제혁신·국민소통 역량 평가 : 35점
- ② 국정과제 부문과 일자리 창출 부문 통합
 - 구분되었던 국정과제 부문과 일자리 창출 부문을 통합하되, 일자리 과제에 대한 평가 비중을 유지
 - * 청년일자리대책(3.15 발표) 등 신규·주요 일자리 정책 내용 반영
 - ** 「일자리 정부」에 걸맞게 통합부문을 「일자리·국정과제 부문」으로 명명
 - 평가요소(노력도·목표달성도·정책효과) 중 목표달성도와 정책효과를 상대적으로 중점 평가, 국민 체감도 제고
 - * 기존에 평가요소들을 4:3:3 비중으로 평가하던 것을 3:4:3으로 조정

③ 부처의 혁신·소통역량 효과적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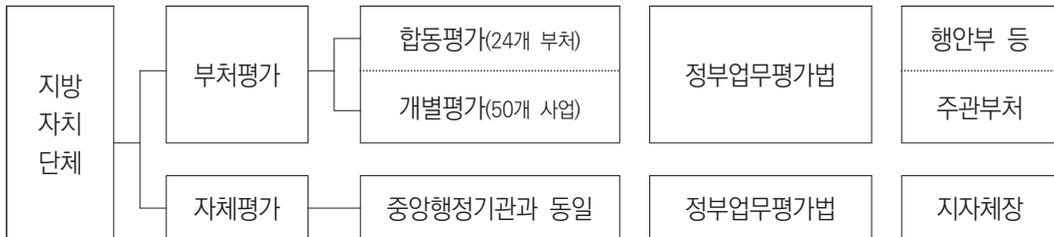
- '정부혁신'을 별도 부문으로 신설,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3.19) 이행상황 등 부처별 혁신 추진실적 평가
 - * 특히 사회적 가치 구현, 참여협력, 신뢰받는 정부 구현(성폭력, 채용비리 근절 등), 협업·조정·갈등관리를 중점평가
- 규제혁신 및 정책소통 부문은 그대로 유지하여 적정하게 평가

④ 외생요인 반영 등 평가의 수용성과 합리성 제고

- 대외여건 등으로 불가피하게 목표 달성이 부진한 경우 외생요인을 합리적으로 고려, 평가결과의 공정성과 수용도 강화
- 민간전문가·정책수요자 등으로 구성된 정책평가지원단(500여명)을 조기에 출범*, 정책효과를 내실있게 평가
 - * '17년 평가시 11월에 출범 → '18년에는 상반기 중 출범 및 정책정보 수시제공

2 지방자치단체 평가

- 정부 국정목표 및 관련 국정전략·국정과제에 맞추어 24개 기관, 150여개 항목·지표를 체계적으로 설정·평가
- 금년은 지방선거가 있는 해인만큼 선거결과와 상관없이 지자체 정책·사업의 일관성·연속성 여부 중점 점검·평가
- 지자체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각 부처가 실시하는 평가를 통합·운영*
 - * 행안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18년도 합동평가 실시계획」 수립 (~18.7월)



③ 공공기관 평가

- 공공기관의 경영책임 강화, 투명성 제고와 공공서비스 증진을 위해 경영실적 등을 평가
- '사회적 가치' 지표 신설·반영 등으로 평가를 통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구현 노력을 조속히 착근

공공 기관	공기업(35개) 준정부기관(88개)	공공기관운영법	기재부
	기금(준치평가 34개, 자산운용평가 46개)	국가재정법	기재부
	과학기술분야연구기관(46개)	과학기술기본법 등	과기연 등
	경제·인문사회분야 연구기관(26개)	정부출연기관법	경인사연
	지방공기업(343개)	지방공기업법	행안부

II. 중앙행정기관 평가계획

1. 특정평가

가. 특정평가 개요

□ 평가 방향

- 정부 출범 2년, 국민 눈높이에서 객관적·공정하게 평가
- 국정과제와 일자리 과제 통합하여 평가
- '정부혁신'을 별도 부문으로 신설하는 등 신규 평가수요 반영

□ 평가 대상

- 대상기관 : 43개 중앙행정기관 (장관급 23개, 차관급 20개)

구분	기관명
장관급 (23개)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보건처, 방통위, 공정위, 금융위, 권익위
차관급 (20개)	인사처, 법제처,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방사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진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행복청, 새만금청, 해경청, 원안위

- 대상기간 : '18.1.1 ~ '18.12.31

□ 평가 부문

- ① (일자리·국정과제) 일자리를 포함한 100대 국정과제 및 중앙행정기관별 주요 업무 추진 노력·결과 평가

- ② (규제혁신) 4차 산업혁명 대응·국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실적 평가
 - ③ (정부혁신) 사회적 가치 활성화, 신뢰받는 정부 구현, 참여와 협력 확대를 위한 정부혁신 추진실적 평가
 - ④ (정책소통) 국정과제 등 주요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 제고등을 위한 소통 실적 평가
 - ⑤ (소통만족도) 정부의 소통 노력·결과에 대한 국민체감도 평가
- ※ (가감점-지시이행)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노력·성과를 평가, 책임성 강화

《 '17년도 평가 대비 주요 개편사항 》

2017년		2018년		
1. 국정과제	50	정책 역량 (65) 혁신 (소통) 역량 (35) 기타	1-① 일자리·국정과제 ¹⁾	60
2. 일자리 창출	20		1-② 정책만족도	5
3. 규제개혁	10		2. 규제혁신	10
4. 정책소통	10		3. 정부혁신	10
5. 국민만족도 - 정책만족도 5, 소통만족도 5	10		4. 정책소통	10
6. 기관공통사항 - 현안관리 ±3, 갈등관리 ±3, 인권개선 ±2, 특정시책 ±2	±10		5. 소통만족도 * 정책만족도(5)는 국정과제 부문으로 이동	5
		가감점	▲ 지시이행 가감	±3

1)「 일자리 과제는 별도로 관리하여 전년도에 준하는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함

□ 평가 방법

- 민간전문가·정책수요자 등으로 구성된 정책평가지원단(500여명)을 조기에 출범*, 정책효과를 내실있게 평가
 - * '17년 평가시 11월에 출범 → '18년에는 상반기 중 출범 및 정책정보 수시제공
- 국무총리 소속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평가결과* 심의·의결
 - * 기관종합·평가부문별로 평가대상기관을 상대 등급화(3~5등급)

□ 평가결과 활용

- 평가결과 국무회의 보고 또는 평가보고회 개최
- 중앙행정기관장은 평가결과 제시된 개선·보완 필요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이행
 - 국조실은 후속조치계획 및 이행실적 점검 후 차년도 평가에 반영
-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포상금 지급, 업무유공자 포상 실시
 - 각 기관별로 성과급 등에 평가 결과를 반영

나. 각 부문별 평가계획

1 일자리·국정과제 부문

□ 부문 개요

- 43개 중앙행정기관별 국정과제 또는 주요정책과제의 이행실적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객관적으로 분석·평가
 - (국정과제) 일자리 창출 등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 (주요정책과제)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각 기관에서 '18년 핵심업무로 추진해야 할 과제*
 - * 국정과제가 1개 이하인 21개 중앙행정기관 대상으로 과제를 선정
-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청년 일자리 대책」 등 주요 일자리 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

□ 평가 대상

- 대상기관 : 43개 중앙행정기관 (장관급 23개, 차관급 20개)
- 대상기간 : '18.1.1 ~ '18.12.31

□ 평가 방향 및 항목

《 평가 방향 》

- 정부 출범 2년차, 투입지표(정책추진노력) 대비 결과지표(성과지표 달성도) 비중 상향 조정*
 - * 정책추진노력(40 → 30%), 성과지표 달성도(30 → 40%)

《 평가 항목 》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정	비중
정책추진 노력	• 과제 추진계획을 충실히 수립하고, 이에 따라 차질없이 이행했는지 여부	정성/ 정량	30%
성과지표 달성도	• 사전에 설정된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 여부	정성/ 정량	40%
정책효과	• 성과지표로 측정할 수 없는 정책의 체감성과를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 종합 평가	정성/ 정량	30%
가 점	• 입법 추진노력 및 성과(법제처)	최대 1점	

□ 평가 방법

《 평가등급 》

- 과제별 각 100점 만점으로 평정 후, 기관별 과제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평가등급 부여

《 평가항목별 평정 방법 》

- (정책추진 노력) 과제 이행계획의 충실성 및 이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 완수 여부에 따라 평정
- (성과지표 달성도) 지표별 목표치 적극성 및 달성여부에 따라 평정
 - 사전에 설정한 각 지표별 가중치에 따라 합산
- (정책효과) 성과지표만으로 측정할 수 없는 정책효과* 평가
 - * △ 성과지표 외 정책성과 △ 국민불편 해소 및 편익증진 정도 △ 향후 긍정적·부정적 효과발생 기대정도 등
 - 평가의 전문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정부업무평가위원,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평가지원단」을 구성, 평가 실시

- 부처의 적극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외 여건 등 외생적 요인으로 목표달성이 부진한 경우 일부 범위 내에서 조정점 부여

※ 국정과제 성과에 대해서 국민만족도 조사(전문리서치 기관 활용) 실시

2 규제혁신 부문

□ 부문 개요

- 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9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규제혁신 추진실적 평가

* 「2018년 규제정비종합계획」 상 과제 수가 2개 이하인 14개 부처는 제외

구분	기관명
장관급 (19개)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방통위, 보훈처, 공정위, 금융위
차관급 (10개)	식약처, 관세청, 조달청, 병무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진청, 산림청, 특허청

□ 평가 항목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정	비중
규제 정비	기존규제 정비	· '18년 규제정비종합계획 과제 등 정비 · 규제신문고 및 현장건의 정비 실적	정량/ 정성	60%
	신산업 관련 과제 정비	· 신산업 규제 현장애로 수용·이행 실적 · 네거티브 규제전환 및 규제샌드박스 도입 관련 실적 등		
	일자리 창출 규제 정비	· 일자리 창출 관련 과제 정비 실적 등		
규제 심사	규제심사절차 준수도	· 규제심사절차 준수 및 영향분석 등	정량/ 정성	20%
	일몰규제 정비	· 재검토행 일몰규제 정비실적	정량	
규제 혁신 체감도	규제혁신 만족도	· 규제혁신 만족도 조사	정성	20%
	규제혁신 국민소통 실적	· 규제혁신 관련 현장방문·간담회 등 현장행보 실적	정량/ 정성	

* '17년도 대비 규제개선 추진노력(25→20%), 규제혁신체감도(15→20%)로 조정

□ 평가 방법

- 각 기관의 규제혁신 실적 및 성과에 대해 정량·정성 평가
 - 국조실 주관 「민관합동 규제혁신 평가지원단」 구성·운영
- 규제영향분석, 규제혁신 만족도는 외부 전문기관(KDI·행정연구원, 전문 리서치기관)을 통해 평가

3 정부혁신 부문

□ 부문 개요

-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18.3.19)의 이행력 담보 및 공공부문 확산 도모를 위하여 중앙행정 기관별 정부혁신 추진실적 평가
- 혁신 준비·실행·성과 3단계로 구분하여 실행계획, 핵심과제, 우수사례 등에 대하여 전문가·국민 등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 실시

□ 평가 항목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정	비중
혁신준비	• 실행계획의 충실성	정량/ 정성	15%
	• 혁신 추진 기반		
혁신실행 및 성과	•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기반 구축 - 인권개선, 특정시책	정량/ 정성	75%
	• 사회적 가치 관점에서의 정책 전환		
	• 정책 모든 과정에 국민 참여 확대		
	•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자원 개방		
	• 협업·조정·갈등관리		
	•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 성희롱·성평등 대책		
	• 국민중심 행정혁신 추진		
대표 사례	• 기관 대표 혁신사례(국민평가)	정성	10%

* 평가항목 및 지표 등은 부처 협의 중으로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평가 방법

- 행안부 주관 「정부혁신평가단」을 구성, 정량·정성 평가
- 기존 ‘기관공통사항’ 내 일부부문(특정시책 등)은 해당 주관기관이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부 혁신 평가에 반영

4 정책소통 부문

□ 부문 개요

-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 제고 등을 위한 중앙행정기관의 소통 추진실적 평가
- 소통환경 변화에 따라 온라인 평가비중을 확대하고, 언론 등에서 제기한 이슈 대응 관련 질적 평가 강화

□ 평가 항목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정	비중
정책 소통 활동	정책소통 기획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소통 계획 수립 • 정책소통 계획 이행도 	정성/정량	30%
	기관 간 정책소통 협업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정책 사전협의 • 정부·공공기관 보유매체 협업 활동 		
	정례브리핑 및 언론 반영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례브리핑 운영 • 일일보도 반영실적 • 언론 반영 사례 평가 		
정책 소통 성과	방송·신문 보도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신문·인터넷 보도결과 • 외신소통활동 결과 	정성/정량	70%
	기관 정책소통 활동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장 정책소통 활동성과 • 정책소통 월별 우수사례 		
	온라인 정책소통 활동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SNS 활동성과 • 콘텐츠 및 우수사례 • 온라인 이슈 점검 성과 • 정책브리핑 활용 소통 • 부처 협업 성과 		

□ 평가 방법

- 각 기관별 국민소통 활동 및 성과에 대해 정량·정성 평가
 - 문체부 주관 「민관합동 정책소통 평가지원단」 구성·운영
- 평가지표에 따라 월별·분기별 등 주기적으로 실시한 평가결과를 연말 종합평가(18.12월말 기준)에 반영

5 소통만족도 부문

□ 부문 개요

- 국정과제 등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대국민 소통 노력 등에 대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실시
- 금년부터 국민체감 소통평가(만족도)를 정부업무평가에 독립적인 항목으로 직접 반영

□ 평가 항목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정	비중
정책소통 프로그램 효과	• 프로그램 인지도 • 프로그램 소통메시지 수용도 • 프로그램 행동변화	정량/ 정성	30%
정책소통 효과	• 국민소통만족도 상호성 차원 • 국민소통만족도 개방성 차원 • SNS 정책소통 만족도	정량/ 정성	40%
정책 효과	• 정책 지식도 • 정책수용 및 지지도 • 정부신뢰도	정량/ 정성	30%

□ 평가 방법

- 각 부처의 소통프로그램과 정책 수용도·만족도에 대해 수요자인 국민입장에서 정량·정성 평가
- 문체부 주관 ‘정책 소통만족도’ 평가 실시
 - 전문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민간전문기관에 설문조사 의뢰

6 지시이행 부문

□ 부문 개요

- 대통령 지시사항 소관 기관별 추진계획 이행 여부 중심의 정량평가 외 추진성과, 협업, 기관별 자체 관리노력 등을 포괄하여 종합평가

□ 평가 항목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정	비중
과제별 이행 노력도	계획수립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시사항 이행방안(추진계획) 충실도 • 이행방안 추진기간의 적극성·신속성 	정성	33%
	추진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계획의 실제 이행 여부(이행도) • 국민체감도 등 추진효과 	정량/ 정성	50%
부처별 점검체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기별 자체점검 충실 실시 여부 	정량	17%

□ 평가 방법

- 국조실 '국정관리시스템' 상 실적·데이터 등 활용하여 평가
- 소관 지시사항의 과제별 이행 노력도 점수(±2.5) 평균*과 점검체계 운영 평가결과(±0.5)를 합산하여 가감점 부여
 - * A기관 소관 지시사항이 n개인 경우 : (각 과제별 이행노력도 합계) ÷ n
- 「국정과제 평가지원단」을 활용, 과제별 추진효과(국민체감도) 측정

2. 자체평가

□ 평가 개요

- 중앙행정기관별로 정책목표와 수단을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
- 자체평가 결과를 정책·예산·조직·인사·보수 등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 제고

□ 평가 방향

- 자체평가 관대화 방지를 위해 △ 기관의 정책목표(성과목표)와 성과지표 간 연계성 강화 △ 성과지표를 도전적으로 수립하도록 독려
 - * 국조실 주관 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시 '성과관리 계획 수립의 적절성(30점)' 항목 배점 상향 추진
- 자체평가 결과 미흡과제에 대해 기관별 '심층분석'을 실시, 실효적 환류제도 운영

□ 평가 대상

- 대상기관 : 44개 중앙행정기관 (장관급 24개, 차관급 20개)
- 대상기간 : '18.1.1 ~ '18.12.31

□ 평가 부문

- ① 주요정책 : 「2018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의 관리과제
 -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수립하는 업무계획으로서 당해 연도 주요정책·사업 목표와 추진일정, 목표달성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등 제시
- ② 재정사업 : 일반재정사업, R&D사업, 재난안전사업, 균형발전사업
- ③ 행정관리역량 : 중앙행정기관의 조직·인사·정보화 관리역량

□ 평가 방법

- 중앙행정기관별 「2018년도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고 각 기관별 「자체평가위원회」가 평가 지표에 따라 부문별 자체평가 실시
 - (주요정책) 기관별 업무특성에 부합되도록 자율적 평가지표 설정
 - (재정사업) 일반재정·R&D·균형발전사업은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재난안전사업은 행안부에서 평가지표 개발·제시
 - (행정관리역량) 행안부·인사처가 조직·인사·정보화 분야 평가지표를 개발·제시
- 부문별 평가결과를 정책개선·조직관리·개인평가 등에 연계하여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상대 평가 방식(등급제) 적용*
 - * 재정사업 부문 중 R&D 평가는 정확한 성과목표 달성수준 진단을 위해 절대평가
- 기관별 자체평가 결과에 대해 부문총괄 기관 등에서 확인·점검
 - (주요정책) 국조실에서 확인·점검
 - (재정사업) 사업 주관부처*에서 확인·점검
 - * △ 일반재정(기재부) △ R&D(과기정통부) △ 재난안전(행안부) △ 균형발전(지역위)
 - (행정관리역량) 행안부·인사처에서 확인·점검

□ 평가결과 활용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조직·예산·인사 및 보수체계에 연계·반영하고, 기재부 장관은 평가결과를 차년도 예산편성시 반영

Ⅲ. 지방자치단체 평가계획

1. 지방자치단체 평가 개요

□ 평가 방향

- 국가위임사무·국고보조사업 등에 대한 평가로 국정의 통합성, 효율성 제고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확보
 - ※ 금년은 지방선거가 있는 해('18.6월)로서, 선거결과와 관계없이 정책·사업 추진의 일관성·연속성 및 정책성과 등을 비중 있게 점검·평가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각종 평가를 통합·운영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 평가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부담 경감

□ 평가 유형

- ①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평가 : 합동평가·개별평가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평가

1 합동평가

□ 평가 개요

-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행안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지방자치단체를 평가

□ 평가 대상

- 대상기관 :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시·군·구 실적 포함)
- 대상기간 : '18.1.1 ~ '18.12.31*
 - * '18년도 실적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운영규정」 규정에 따라 '19.6월까지 평가하여 그 결과를 종합

□ 평가 항목

- 문재인 정부 국정목표 및 관련 국정전략·국정과제 등을 토대로 기존의 합동평가 항목과 평가 지표 체계화
- 24개 기관의 156개 항목·지표에 대해 평가 실시

기 관 명 (평가항목수)					
경찰청(1)	고용부(10)	공정위(2)	교육부(2)	국토부(1)	기재부(1)
농식품부(20)	농진청(3)	문체부(6)	문화재청(1)	법제처(1)	보훈처(2)
복지부(27)	산림청(10)	식약처(3)	여가부(15)	조달청(1)	중기부(7)
통계청(2)	통일부(1)	행안부(28)	환경부(9)	기 타(4)	

□ 평가 방법

- 행안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18년도 합동평가 실시계획」을 수립 (~'18.7월)
 - * 국무총리 소속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합동평가 실시계획」 의결
- 행안부 주관,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단」이 정량·정성평가 병행
 -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평가·현지검증 실시
 - * 타 지방자치단체 실적에 대한 상호열람 및 이의신청 병행

□ 평가결과 활용

- 행안부는 평가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하고,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을 통해 광역 지방자치단체별 합동평가 결과 공개
 - * 지표단위로 연중 성과관리 및 평가결과 공개

- 평가결과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정부포상·재정인센티브 등 지원
- 평가결과 부진시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별 맞춤형 컨설팅 실시
 - * 평가지표·세부 산식 설명, 실적 현황 및 문제점 등 여건 진단

2 개별평가

□ 평가 개요

- 업무특성·평가시기 등으로 '합동평가'가 곤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정 주요 시책 등을 대상으로 개별 평가 실시

□ 평가 대상

-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광역 및 시·군·구)
- 대상기간 : '18.1.1 ~ '18.12.31
- 중앙행정기관별 개별평가 실시내역 : 붙임2
 - ※ 향후 주관기관, 개별평가 실시내역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평가 방법

- 평가대상 업무를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장이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협의를 거쳐 각 사업별 「평가실시계획」 수립
 - * 중앙행정기관의 사업별 「평가실시계획」에 대해 국조실에서 타당성 검토 후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일괄 제출 ('18.4월)
- 중앙행정기관장은 해당 사업에 대한 「평가실시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후 평가, 그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

□ 평가결과 활용

- 중앙행정기관은 정책개선 방안 등 조치 필요사항을 마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우수기관에 인센티브 등 제공
- 중앙행정기관은 개별평가 결과가 실효성을 갖도록 환류실태를 지속 점검·관리

3.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 평가 개요

- 지방자치단체장이 소관 정책·사업 등을 스스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정책성과 창출 유도

□ 평가 대상

-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광역 및 시·군·구)
- 대상기간 : '18.1.1 ~ '18.12.31

□ 평가 방법

-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
 - 민간 2/3 이상이 참여하는 자체평가위원회가 정량·정성 평가
- 평가지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개발·활용하되, 과제별 평가결과의 변별력이 강화되도록 평가체계 마련
 - * 행안부 장관은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평가기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지원

□ 평가결과 활용

- 자체평가 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
- 평가결과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차년도 성과관리계획, 개인성과 등에 반영
-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평가 운영실태를 자체점검 하여, 평가제도 개선필요 사항을 도출하고 '19년도 자체평가 운영에 반영

IV. 공공기관 평가계획

1. 공공기관 평가 개요

□ 평가 방향

- 공공기관의 경영책임 강화, 투명성 제고와 공공서비스 증진을 위해 경영실적 등을 평가
- '사회적 가치' 지표 신설·반영 등으로 평가를 통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구현 노력을 조속히 착근

□ 평가 유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하위법령 등을 근거로 5대 공공기관 유형별로 평가
- 총 516개 공공기관의 '17년도 경영실적 및 연구성과에 대해 정량·정성 평가 실시

평가대상	주관기관	근거법률	평가일정
공기업 및 준정부 기관 (123개)	기재부 장관	공공기관운영법	• 평가계획('18.2)
			• 평가시행('18.3~5)
			• 평가결과('18.6)
기금 (67개)	기재부 장관	국가재정법	• 평가계획('18.2)
			• 평가시행('18.3~4)
			• 평가결과('18.5)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46개)	과기연 등 (자체평가)	과학기술기본법	• 평가계획('17.9~12)
	과기정통부 장관 (상위평가)	과기출연기관법	• 자체평가('18.1~3, 5~7, 9~11)
			• 상위평가('18.4, 8, 12)
			• 평가결과('19.1)
경제·인문사회분야 연구기관 (26개)	경인사연	정부출연기관법	• 평가계획('17.11)
			• 평가시행('18.1~3)
			• 평가결과('18.4)
지방공기업 (241개)	행안부 장관· 시·도지사	지방공기업법	• 평가계획('18.2)
			• 평가시행('18.4~6)
			• 평가결과('18.7)

* '18년도 실적·성과에 대한 평가는 위 [표]와 유사한 일정으로 '19년도에 실시

2. 공공기관 유형별 평가계획

1 공기업·준정부기관

□ 평가 개요

- 전년도 경영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사·성과급 등에 반영,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계 확립 및 공공서비스 증진 등 유도

□ 평가 대상

- 123개* 공기업·준정부기관 (공기업 35개, 준정부기관 88개)
* 전년대비 공기업 증5, 준정부기관 감1 등 4개 기관 증가

□ 평가 항목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정	비중
경영관리	• 경영전략·사회공헌, 업무효율,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재무예산관리, 보수·복리후생관리 등 14개	정성/ 정량	50%
주요사업	• 기관별 핵심 고유사업 5개 내외	정성/ 정량	50%

□ 평가 방법

- 매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편람에 따라 평가
- 기재부 주관, 평가의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교수·회계사 등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을 활용하여 실시

□ 평가결과 활용

- (성과급 지급)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 (인사 조치) 평가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기관 기관장 등에 대해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해임 건의 가능
- (예산 조치) 평가결과 '미흡(D)' 등급 이하를 받은 기관에 대하여는 차년도 경상경비 조정 등 공공기관 예산 편성에 반영
- (경영 컨설팅) 경영실적 부진기관 대상 맞춤형 경영컨설팅 실시

2 기 금

□ 평가 개요

- ① (기금존치평가) 전체 재정체계를 고려하여 기금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여 재정운용의 합목적성과 효율성 제고
- ② (자산운용평가) 기금 여유자산의 운용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 평가 대상

- ① (기금존치평가) 농지관리기금, 복권기금 등 34개 기금
 - * (기준) 모든 기금을 3년마다 평가('04·'07·'10·'13년) → ('15~'16년) 전체기금의 1/2씩 평가 → ('17년부터) 매년 전체기금의 1/3씩 평가
 - ** 매년 20여개 기금이 대상이지만 '18년의 경우 '부담금평가'와 평가중복을 해소하기 위해 평가 대상기금을 일치시키면서 평가기금 수 일시적 증가
 - ② (자산운용평가) 고용보험기금, 주택도시기금 등 46개 기금
 - * 전체 67개 중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 기금(20개)과 여유자금 1조원 이상 기금(4개)은 매년 평가, 그 외 기금(43개)은 격년으로 평가('18년의 경우 43개 중 22개에 대해 실시)
- ※ 기금존치·자산운용 평가대상 기금 목록 : 붙임3

□ 평가 항목

- ① (기금존치평가) 기금사업·재원구조 적정성 및 기금존치의 타당성
- ② (자산운용평가) 기금 여유자산 운용실태를 비계량항목(50%)과 계량항목(50%)으로 구분하여 평가

□ 평가 방법

- 기재부 주관, 35명 외부 민간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평가
*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정부출연연구기관 박사, 5년 이상 경력의 공인회계사·변호사 등(「국가재정법」 제8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 평가결과 활용

- ① (기금존치평가) 평가단의 개선 권고사항 이행실적 점검(반기별)
- ② (자산운용평가) 상·하위 각 1/3기금의 운영비를 각각 0.5%p 증감 등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추진

3 과학기술 연구기관

□ 평가 개요

- 연구의 질적 성과 및 사회·경제적 기여도, 중장기 파급효과 중심의 평가 강화를 통해 우수성과 창출 및 연구역량 강화 유도

□ 평가 대상

- 46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부처·연구회	연구기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과학기술연구원, 녹색기술센터, 생명공학연구원, 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천문연구원 등 25개 기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원, 고등과학원, 나노종합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뇌연구원 등 16개 기관
해수부	해양과학기술원, 극지연구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원안위	원자력통제기술원

□ 평가 항목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정	비중
경영부문	• 연구환경조성, 기관운영, 성과 활용·확산 등	정성/ 정량	20%
연구부문	• 자체 연구성과계획에 기반한 성과목표 단위	정성/ 정량	80%

□ 평가 방법

- 기관장 임기 초 기관 자율로 연구성과계획서를 수립하여 임기 말 종합평가 실시
- 소관 부처·연구회 자체평가 → 과기정통부 상위평가
 - * 연구분야에 따라 다양한 전문가(산학연 등)로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결과 활용

- 평가결과는 각 부처·연구회에서 소관 공공기관 및 기관장의 성과연봉, 예산, 차기 성과계획서 등과 연계·반영

4 경제·인문사회 연구기관

□ 평가 개요

- 연구기관 목적에 부합하는 정책대안 개발과 기초·정책 지식 생산 등 국책연구기관의 책무성 확보 및 발전방안 제시

□ 평가 대상

- 23개 연구기관, 2개 부설기관, 1개 대학원

구분	경제정책 분야	자원인프라 분야	인적자원 분야	공공정책 분야
연구 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국토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교통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육개발원 교육과정평가원 노동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여성정책연구원 직업능력개발원 청소년정책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법제연구원 행정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부설 기관	KDI국제정책대학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육아정책연구소	

□ 평가 항목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정	비중
경영부문	• 리더십·책임경영, 스마트경영, 공공성·책임성	정성/ 정량	20%
연구부문	• 정책연구기획, 정책연구실적, 정책성과, 성과확산	정성/ 정량	80%

□ 평가 방법

- 매년 연구기관 평가편람 및 추진계획에 의거하여 평가 시행, 서면 및 온라인 평가, 실사평가 (인터뷰) 등을 통해 확인·검증
- '총괄반'과 '전담분과' 구성·운영 (외부전문가·공무원 등)

□ 평가결과 활용

- (예산·인사) 정부출연금 차등 지급, 기관장 성과연봉 차등 지급, 우수연구기관 및 우수연구자 포상 등
- (정책 환류) 평가 지적사항에 대해 기관별 '자체개선계획' 수립·시행, 평가결과 부진기관 대상 컨설팅 실시

5 지방공기업

□ 평가 개요

- 경영실적에 대한 공정한 평가 및 진단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경영개선을 도모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서비스 수준 제고

□ 평가 대상

- 241개* 지방공사·공단 및 직영기업 (공사 59, 공단 87, 하수도 95**)

* (유형) 도시철도, 광역도시개발, 기초도시개발, 광역특정, 기초특정, 관광공사, 시설공단, 환경공단, 상·하수도 등

** 상·하수도는 격년제 평가 도입으로 '18년('17년 실적)은 하수도 평가

□ 평가 항목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정	비중
리더십 /전략	리더십	• 경영층의 리더십	정량/ 정성	5% (4%)
	전략	• 미션·비전 및 경영계획		
경영 시스템	경영효율화	• 조직·인사·재무관리	정량/ 정성	10% (24%)
	주요사업활동	• 주요사업활동		
경영 성과	주요사업	• 주요사업	정량/ 정성	45% (49%)
	경영효율성과	• 경영수지 관련 지표		
	고객만족성과	• 고객만족도		
사회적 가치	일자리 확대	•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정량/ 정성	35% (18%)
	사회적 책임	• 고객 및 주민참여, 윤리경영, 노사상생, 재난·안전관리, 지역사회공헌활동, 사회적 약자배려, 친환경 경영		
정책 준수	• 공기업정책준수		정량/ 정성	5% (5%)

* 비중의 괄호()는 상·하수도 평가의 경우

□ 평가 방법

- 평가대상 유형별로 6~13명의 「경영평가단」(교수, 공인회계사, 전문연구기관 연구위원, 지역 주민, 지방공기업 업무담당자 등)을 구성·평가

□ 평가결과 활용

- 평가급 차등지급, 경영진단 실시, 우수기관 표창 등

붙임 1

정부업무평가 체계도

평가대상	평가유형	평가부문	근거법률	평가주관																								
중앙 행정 기관	특정평가 (43개)	일자리·국정과제(65점) 규제혁신(1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10점) 소통만족도(5점) 지시이행(±3점)	정부업무평가법	국조실 등																								
	자체평가 (44개) * 43+국조실	<table border="1"> <tr> <td colspan="2">주요정책(성과관리)</td> </tr> <tr> <td rowspan="4">재정 사업</td> <td>일반재정사업</td> </tr> <tr> <td>R&D평가</td> </tr> <tr> <td>재난안전</td> </tr> <tr> <td>균형발전</td> </tr> <tr> <td rowspan="3">행정 관리 역량</td> <td>조직</td> </tr> <tr> <td>인사</td> </tr> <tr> <td>정보화</td> </tr> </table>	주요정책(성과관리)		재정 사업	일반재정사업	R&D평가	재난안전	균형발전	행정 관리 역량	조직	인사	정보화	<table border="1"> <tr> <td>정부업무평가법</td> </tr> <tr> <td>국가재정법</td> </tr> <tr> <td>연구성과평가법</td> </tr> <tr> <td>재난안전법</td> </tr> <tr> <td>국가균형발전법</td> </tr> <tr> <td>정부업무평가법</td> </tr> </table>	정부업무평가법	국가재정법	연구성과평가법	재난안전법	국가균형발전법	정부업무평가법	<table border="1"> <tr> <td>국조실</td> </tr> <tr> <td>기재부</td> </tr> <tr> <td>과기정통부</td> </tr> <tr> <td>행안부</td> </tr> <tr> <td>지역위</td> </tr> <tr> <td>행안부</td> </tr> <tr> <td>인사처</td> </tr> <tr> <td>행안부</td> </tr> </table>	국조실	기재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지역위	행안부	인사처
주요정책(성과관리)																												
재정 사업	일반재정사업																											
	R&D평가																											
	재난안전																											
	균형발전																											
행정 관리 역량	조직																											
	인사																											
	정보화																											
정부업무평가법																												
국가재정법																												
연구성과평가법																												
재난안전법																												
국가균형발전법																												
정부업무평가법																												
국조실																												
기재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지역위																												
행안부																												
인사처																												
행안부																												
지방 자치 단체	부처평가	합동평가(24개 부처) 개별평가(50개 사업)	정부업무평가법	행안부 등 주관부처																								
	자체평가	중앙행정기관과 동일	정부업무평가법	지자체장																								
공공 기관	공기업(35개) 준정부기관(88개)		공공기관운영법	기재부																								
	기금(준치평가 34개, 자산운용평가 46개)		국가재정법	기재부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46개)	과기연 소관(25개) 과기정통부 산하(16개) 해수부 산하(3개) 원안위 산하(1개) 방사청 산하(1개)	과학기술기본법 과기출연기관법	과기연 과기정통부 해수부 원안위 방사청																								
	경제·인문사회분야 연구기관(26개)		정부출연기관법	경인사연																								
	지방공기업(343개)		지방공기업법	행안부																								

붙임 2

중앙행정기관별 개별평가 실시내역

연번	평가명	소관부처
1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실적 평가	고용부
2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평가	고용부
3	공공갈등 관리실태 점검	국조실
4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	국토부
5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국토부
6	혁신도시 정주여건 및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사업 평가	국토부
7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조사 평가	국토부
8	도시시설물 정비사업 평가	국토부
9	부패방지 시책평가	권익위
10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권익위
11	농산시책추진 우수기관평가	농식품부
12	지역전략작목산학연협력 광역화사업	농진청
13	농업인대학 우수 운영기관	농진청
14	강소농·경영지원 분야 평가	농진청
15	농촌진흥사업 우수기관 선정	농진청
16	우수농업기술센터 평가	농진청
17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랩 평가	문체부
18	전국 도서관 운영 평가	문체부
19	지식재산 기본계획 시행계획 추진상황 평가 등	과기정통부
20	드림스타트 사업운영 점검 *18년 재검토	복지부
21	지역복지사업평가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	복지부
22	17년 노인일자리 성과진단 (시장형·인력파견형 사업단)	복지부
23	17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평가	복지부
24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시도 성과평가	복지부
25	자살예방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복지부
26	지자체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행결과 평가	산업부
27	지방투자촉진사업 우수지자체 평가	산업부
28	지역산업진흥계획 평가	산업부
29	식품안전 및 식중독예방관리 우수기관 평가	식약처
30	식생활 안전 영양수준 평가	식약처
31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여가부

연번	평 가 명	소관부처
32	성희롱방지조치 점검	여가부
33	성폭력예방교육 점검	여가부
34	성매매예방교육 점검	여가부
35	가정폭력예방교육 점검	여가부
36	물품관리상황의 평가	조달청
37	우수 해수욕장 선정평가	해수부
38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중앙합동점검	행안부
39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재난관리 평가	행안부
40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중앙합동점검	행안부
41	국민행복 소방정책 종합평가	행안부
42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및 재정분석	행안부
43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행안부
44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평가	행안부
45	정부3.0 평가 * '18년 이후 평가여부 개별 협의	행안부
46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	행안부
47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행안부
48	기록관리 평가	행안부
4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실태 평가	환경부
50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환경부
51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이행결과 평가	환경부
52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 실태평가	환경부

① (기금존치평가) 농지관리기금, 복권기금 등 34개 기금*

* 매년 전체기금의 1/3씩 평가

농지관리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축산발전기금,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농어업재해보험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외국환평형기금, 국유재산관리기금 , 복권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원자력기금(원자력연구개발계정, 원자력안전규계정), 과학기술진흥기금, 국제교류기금, 국제질병퇴치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고용보험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사학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국민연금기금, 응급의료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무역보험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

* 볼드는 '기금존치평가' 및 '자산운용평가'를 중복하는 기금

② (자산운용평가) 고용보험기금, 주택도시기금 등 46개 기금

○ 국민연금은 별도 평가지침으로 평가 실시

구분		기금명
매년 평가 (24개)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20개)	국유재산관리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언론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무역보험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국민연금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여유자금 규모 1조원 이상(4개)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주택도시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8년 22개**		국민건강증진기금, 국제교류기금, 군인복지기금, 군인연금기금, 금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남북협력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범죄자피해보호기금, 보훈기금, 사학진흥기금,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양성평등기금,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응급의료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청소년육성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평가대상 기금(46개)		-

* 볼드는 '기금존치평가' 및 '자산운용평가'를 중복하는 기금

** 전체 67개 기금 중 매년 평가하는 24개를 제외한 43개는 격년제로 평가

2019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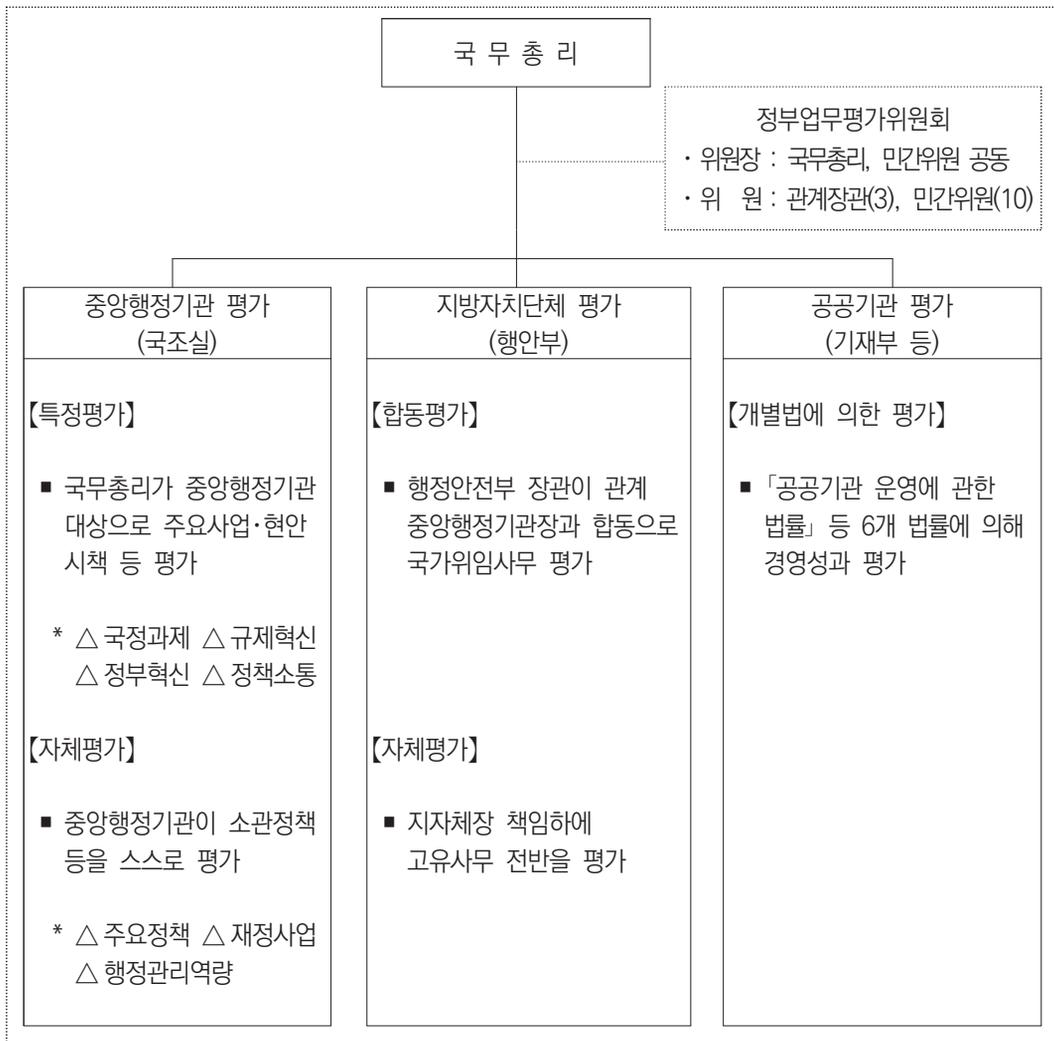
2018. 12.



국무조정실

I. 2019년도 정부업무평가 기본방향

1. 정부업무평가 체계



2. '19년도 평가 개요

1 역점 추진 방향

- ❖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 관련 주요 정책 반영·평가
 - 혁신적 포용국가 등 관련 정책 및 과제 중점추진 지원
- ❖ 문재인 정부 3년차, 성과·국민체감 중심 평가
 - 각 부문별 성과 평가 강화, 국민·고객 등 수요자 만족도 평가
- ❖ 평가결과 공개범위 확대 등으로 정책추진 이행력 제고
 - 평가등급 세분화, 공개내용 확대, 기관장 성과창출 노력 평가 강화

2 주요 추진 사항

① 중앙행정기관 평가

※ 43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해 국조실(평가단) 등이 평가

- ① 포용국가 비전 등을 평가에 반영
 - 혁신적 포용국가 등 관련 정책·과제를 쏠부문의 세부 평가항목*으로 신설
 - * △ 국정과제 : 포용국가 관련 국정과제(실천과제) 중점추진·추가
 - △ 규제혁신 : (혁신) 신산업 규제정비 + (포용) 일자리·민생 규제정비 등 항목 재구성
 - △ 정부혁신 : '포용행정' 및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등 평가항목 신설
 - △ 정책소통 : 국정비전 반영 주요 정책과제의 소통 기획 평가
 - 부처별 “자체평가” 성과목표 및 과제에도 반영*
 - * 부처별 성과관리계획 수립시 포용국가 관련 과제 등 반영토록 지침에 규정·조치

② 정부 출범 3년차, 성과창출 중심으로 평가

- 「국정과제」 부문은 '목표 달성도' 비중*을 60% 수준으로 대폭 상향
 - * 국정과제 평가항목 간 비중 [정책추진 노력: 목표(지표) 달성: 기타 정책효과]
('17) 40% : 30% : 30% → ('18) 30% : 40% : 30% → ('19) 10% : 60% : 30%
- 금년 내 성과 가시화 필요과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월별 집중 점검*
 - * 「관계부처 합동 점검 T/F」(BH·국조실·법제처·문체부 등)를 구성하여 '현장점검 → 종합점검 → 후속조치 점검'의 3단계 점검·환류체계 구축, 별도 평가
-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부문도 성과 중심으로 평가항목 조정*
 - * △ 규제혁신 : '신산업 규제정비' 비중 확대(20 → 25%), '규제 샌드박스 도입실적' 신설
 - △ 정부혁신 : 혁신성과(75%) > 성과홍보·체감도(15%) > 혁신역량·실행(10%)
 - △ 정책소통 : 소통성과(50%) > 소통활동(30%) > 소통체감(20%)

③ 기관장의 성과창출 노력에 대한 평가 강화

- 「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등 부문에서 기관장의 정책성과 창출 노력*을 비중 있게 평가
 - * △ 국정과제 : '19년도 업무보고시 대국민 약속사항 이행 여부 평가
 - △ 규제혁신 : 신산업 관련 규제정비 및 현장소통 관련 기관장의 노력 평가
 - △ 정부혁신 : '기관장의 혁신 리더십' 신설
 - △ 정책소통 : '기관장 정책소통 성과' 비중 상향 및 전문평가단 정성평가 도입

④ 평가결과 공개 확대 및 평가 실효성 확보

- 기관종합 평가 및 부문별 평가 결과에서 평가등급 세분화
 - * 현행 : 우수·보통·미흡(3등급) → 개편 : 매우 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 미흡(5등급)
- “자체평가” 결과를 개인성과급에 반영 강화

《 '19년도 중앙행정기관 평가 중점 추진사항 》

구분	평가수요 반영	성과중심 평가	기관장 노력 평가	국민체감도 제고	
특 정 평 가	국 정 과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既수립 국정과제 중점 추진 • 국정과제(실천과제) 조정·보완 시 과제신설·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 달성' 배점 상황(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효과'에서 '대국민 약속사항' 이행 여부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효과'(30%) 및 '과제 만족도'(5%) 평가 실시
	규 제 혁 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항목 재구성 * (혁신) 신산업 규제정비 * (포용) 일자리·민생불편 규제정비(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산업 규제정비' 배점 상황 (20→25%) • 평가항목에 '규제 샌드박스 도입 실적'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장의 규제혁신노력 평가 * 신산업 관련과제 정비노력 * 현장소통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혁신 만족도' 평가 실시 • 평가항목 중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 배점 확대
	정 부 혁 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항목 재구성 * (현행) 사회적 가치 → (개편) 포용적 행정 • 평가항목에 '공공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성과' 배점 비중 강화 * 혁신성과(75%) > 홍보·체감(15%) > 역량·실행(10%) 順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장 혁신 리더십'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항목 재구성 * (현행) 혁신 대표사례 → (개편) 체감도 평가 • '혁신성과 공유·확산 노력' 신설
	정 책 소 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정책과제 소통 기획' 평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통성과' 배점 비중 강화 * 소통성과(50%) > 소통활동(30%) > 소통체감(20%) 順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장 정책소통 성과' 배점 상황 * 정책소통 평가지원단 통해 정성평가(위기 이슈 관리 등) 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소통 체감도 평가방식 다양화 * (현행) 민간 여론조사 ↓ (추가) 민간 여론조사 + 빅데이터 분석 '보도 호응도' 평가
	자 체 평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처 「성과관리 계획」에 포용국가 등 관련 정책·과제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처 「성과관리 계획」에 국정과제 등 관련 과제 가중치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처 「성과관리 계획」 상 전략목표 수준 성과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참여 등 통한 기관 대표지표 설정 * 여론조사 등 반영

부
록

② 지방자치단체 평가

※ 광역·기초 지자체 대상 각 부처 평가를 행안부가 통합 실시

-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 등의 지자체 착근·확산을 위해 신규 평가계획 수립시 관련 과제·지표 등 반영
- 100대 국정과제 중심으로 지표개발* 및 평가항목을 구성, 지역 차원에서도 국정성과가 구현 되도록 지원

* 사회적 가치 실현, 사회혁신, 혁신성장, 4차 산업혁명 관련 미래사회 선도지표 등

지방 자치 단체	부처평가	합동평가(19개 부처) 개별평가(51개 사업)	정부업무평가법	행안부 등 주관부처
	자체평가	중앙행정기관과 동일	정부업무평가법	지자체장

③ 공공기관 평가

※ 공공기관(기금포함) 대상 기재부 등이 평가 실시

- 사회적 가치, 채용비리 근절 등 주요 정책방향을 경영평가에 반영
 - * 공기업·준정부기관 대상 경영관리 평가항목에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 반영·평가
- 공공기관별 특수성과 전문성 고려*한 객관적·공정한 평가 실시
 - * △대상기관별 평가 주기 △전문가 평가단 구성·운영 방식 등 다양화

공공 기관	공기업(35개) 준정부기관(93개)	공공기관운영법	기재부
	기금(준치평가 23개, 자산운용평가 40개)	국가재정법	기재부
	과학기술분야연구기관(46개)	과학기술기본법 등	과기연 등
	경제·인문사회분야 연구기관(26개)	정부출연기관법	경인사연
	지방공기업(270개)	지방공기업법	행안부

Ⅱ. 중앙행정기관 평가계획

1. 특정평가

가. 특정평가 개요

□ 평가 방향

- 정부 3년차임을 감안, 각 부문별로 결과·성과 중심 평가항목 강화
- 포용국가, 생활적폐 청산, 생활 SOC 등 관련 과제를 평가대상에 추가
- 「정책소통」 및 「소통만족도」 부문은 통합·평가

□ 평가 대상

- 대상기관 : 43개 중앙행정기관 (장관급 23개, 차관급 20개)

구분	기관명
장관급 (23개)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보훈처, 방통위, 공정위, 금융위, 권익위
차관급 (20개)	인사처, 법제처,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방사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진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행복청, 새만금청, 해경청, 원안위

- 대상기간 : '19. 1. 1. ~ '19. 12. 31.

□ 평가 부문

- ① (국정과제) 일자리를 포함한 100대 국정과제 및 중앙행정기관별 주요 정책 추진성과 평가
- ② (규제혁신)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신산업분야 규제개선, 적극행정 활성화 등 규제혁신 추진 실적 평가

- ③ (정부혁신) 사회적 가치 실현, 신뢰받는 정부 구현, 국민참여 확대 등 정부혁신 추진실적 평가
 - ④ (정책소통) 국정과제 등 주요정책에 대한 국민 이해도 제고를 위한 부처별 실적·성과 및 장차관 홍보노력 등 평가
- ※ (가감점)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

《 '18년도 대비 평가부문 개편사항 》

'18년도 평가			'19년도 평가(안)	
① 일자리·국정과제	65	⇒	① 일자리·국정과제	65
② 규제혁신	10		② 규제혁신	10
③ 정부혁신	10		③ 정부혁신	10
④ 정책소통	10		④ 정책소통 (소통만족도 포함)	15
⑤ 소통만족도	5		가감 (지시사항 이행)	±3
가감 (지시사항 이행)	±3			

* 「정책소통」·「소통만족도」 부문을 통합하여 정책소통 활동 - 성과 - 체감(만족도)의 일원화된 평가체계 마련

□ 평가 방법

- 평가부문별로 평가주관기관이 평가지원단을 구성, 시행계획 상 평가항목에 따라 정량적·정성적 평가 병행
- 국무총리 소속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평가결과 심의·의결
 - 각 부처의 평가부문별 결과를 합산하여 기관 종합평가 결과 산출
 - * 기관종합 및 평가부문별 5등급으로 구분 (매우 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 미흡)

□ 평가결과 활용

- 평가결과 국무회의 보고 또는 평가보고회 개최
- 중앙행정기관장은 평가결과 제시된 개선·보완 필요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이행
 - 국조실은 조치계획 및 이행실적 점검
-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포상금 지급, 업무유공자 포상 실시
 - 각 기관별로 성과급 등에 평가 결과를 반영

나. 각 부문별 평가계획

1 국정과제 부문

□ 부문 개요

- 43개 중앙행정기관별 100대 국정과제 또는 주요정책과제의 이행실적을 국민 눈높이에서 객관적으로 분석·평가
 - (국정과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 (주요정책과제)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각 기관에서 '19년에 핵심업무로 추진해야 할 과제*
- * 국정과제가 1개 이하인 21개 중앙행정기관 대상으로 과제를 선정

□ 평가 대상

- 대상기관 : 43개 중앙행정기관 (장관급 23개, 차관급 20개)
- 대상기간 : '19. 1. 1. ~ '19. 12. 31.

□ 평가 방향 및 항목

《 평가 방향 》

- 성과창출 관련 평가항목(목표 달성)의 배점 비중 상향 조정*
 - * 정책추진 노력 : 목표(지표) 달성 : 정책효과 = ('18) 3 : 4 : 3 → ('19) 1 : 6 : 3
- 기관장의 정책추진·성과창출 노력을 평가에 반영(정책효과 평가항목 내)하고, 기타 유사 사항 통합·재조정*
 - * △ 부작용 개선·외부지적 개선 → 정책추진에 따른 부작용·사각지대 해소
 - △ 국민불편 해소·지표외 정책성과·향후 기대효과 → 성과 및 향후 기대효과

《 평가 항목 》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정	비중
정책추진 노력	• 과제 이행계획을 충실히 수립하고, 이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했는지 여부	정성/ 정량	10%
목표(지표) 달성	• 사전에 설정된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 여부	정성/ 정량	60%
정책효과	• 이행계획 / 성과지표에 나타나지 않은 정책성과 * 업무보고시 대국민 약속사항 이행 여부 등 포함	정성/ 정량	30%

□ 평가 방법

《 평가등급 》

- 국정과제별 각 100점 만점으로 평정 후, 기관별 과제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평가등급 부여

《 평가항목별 평정 방법 》

- (정책추진 노력) 과제별 이행계획 대비 추진사항 완수 여부 평정
 - (목표달성) 지표별 목표치 적극성 및 달성 여부 평정
 - 사전에 설정한 각 지표별 가중치에 따라 합산
 - (정책효과) 정책추진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 개선 등 및 평가지표만으로 측정할 수 없는 정책효과 평가
 - 정부업무평가위원 및 정책수요자·민간전문가 등으로 「국정과제 평가지원단」을 구성*,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효과를 내실있게 평가
 - * '18년 6월 출범(약 500여명) → '19년 3월 출범 및 평가대상 정보 수시제공
 - 부처의 적극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외 여건 등 외생적 요인으로 목표달성이 부진한 경우 일부 범위 내에서 조정점 부여
- ※ 국정과제 성과에 대해서 전문리서치 기관 활용 국민만족도 조사 실시

2 규제혁신 부문

□ 부문 개요

- 신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민생불편 및 부담 해소를 위한 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
 - * 「2019년 규제정비종합계획」 상 과제 수가 2개 이하인 부처는 평가 제외

□ 평가 중점

- 신산업 규제정비 비중 확대, 규제 샌드박스 도입 사례 적극 발굴 등 규제혁신의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한 평가 실시
-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 개선을 위한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 가감점 확대, 평가항목·지표 간 중복 방지 등 평가 내실화

□ 평가 항목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정	비중
규제 정비	혁신	신산업 관련 규제 정비	정량/ 정성	60%
	포용	일자리 및 민생불편 규제 정비		
규제 심사	규제심사절차 준수도		정량/ 정성	20%
	일몰규제 정비		정량	
규제 혁신 체감도	규제혁신 만족도		정성	20%
	규제혁신 국민소통 실적		정량/ 정성	

* (가감) △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 △ 규제혁신 교육 등

□ 평가 방법

- 각 기관의 규제혁신 실적 및 성과에 대해 정량·정성 평가
 - 국조실 주관, 민관합동 「규제혁신 평가단」 구성·운영
- 규제영향분석, 규제혁신 만족도는 외부 전문기관(KDI·행정연구원, 전문 리서치기관)을 통해 평가

3 정부혁신 부문

□ 부문 개요

- 정부혁신의 추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체감의 성과 창출을 위해 43개 중앙행정기관별 정부혁신 추진 실적 및 성과를 평가

□ 평가 중점

- 정부 3년차에 걸맞게 혁신적 포용국가를 뒷받침하는 정부혁신, 국민체감의 정부혁신을 추진하고, 혁신성과에 대해 중점 평가 추진
-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의 3대 전략별 혁신성과에 대한 평가 방향은 유지하되, 혁신성과 홍보, 국민체감도 평가 등 국민평가 강화

□ 평가 항목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정	비중
혁신역량·실행		• 기관장의 혁신 리더십, 교육·학습, 실행계획의 충실성	정량/ 정성	10%
혁신 성과	핵심사업	• 기관대표 혁신사업의 성과	정량/ 정성	75%
	포용적 행정 (사회적 가치)	•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 공공구매조달, 균형인사, 안전 등		
	참여와 협력	• 국민 참여 확대 • 정보공개, 데이터 등 개방 • 협업·조정·갈등관리		
	신뢰받는 정부	• 기관별 신뢰도·청렴도 등 • 현장행정 활성화, 디지털 혁신, 창의행정 등		
혁신성과 홍보		• 혁신성과의 홍보노력	정량/ 정성	5%
체감도 평가		• 국민평가단 체감도 평가	정성	10%

□ 평가 방법

- 행안부 주관 「정부혁신 평가단」을 구성, 정량·정성 평가
- 일부 과제*는 주관기관이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혁신평가에 반영
 - * 공공구매조달, 균형인사, 협업·갈등관리 등

4 정책소통 부문

□ 부문 개요

- 각 부처의 주요 아젠다에 대한 기관별 소통 역량 및 과정·효과 등을 소통 활동 - 성과 - 체감도 등으로 구분,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

□ 평가 중점

- 정책소통의 부처 책임성 강화 및 정책 아젠다의 효과적 확산을 위해 △기관장 소통 △온라인 대응 △외신소통 평가 확대 등 성과중심 평가
- 「정책소통」 및 「소통만족도」 부문을 통합, 소통관련 평가체계 일원화

□ 평가 항목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정	비중
정책 소통 활동	정책소통 기획	• 주요정책 소통 계획 수립, 사전협의	정성/ 정량	30%
	언론소통 활동	• 정례브리핑 활동, 일일보도 관리		
	온라인소통 활동	• 기관 SNS 운영, 온라인이슈 관리		
정책 소통 성과	기관장 정책소통 성과	• 언론·국민소통 성과, 위기상황 이슈관리	정성/ 정량	50%
	언론소통 성과	• 방송·신문·인터넷·외신 소통활동 성과		
	온라인 정책소통 성과	• 기관 SNS 활동 성과, 디지털 캠페인 효과		
	부처협업 성과	• 보유매체·디지털소통 협업 성과		
	정책소통 기획 성과	• 정책소통 분기별 우수사례		
정책 소통 체감도	수용도	• 인지도 / 메시지 반응 / 행동변화	정성/ 정량	20%
	만족도	• 상호성 및 개방성/ SNS 소통 만족도		
	지지도	• 정책 이해도 / 정책 수용도 / 정부 신뢰도		
	공감도	• 기사 호응도		

□ 평가 방법

- 각 기관별 국민소통 활동 및 성과에 대해 정량·정성 평가
 - 문체부 주관 「민관합동 정책소통 평가지원단」 구성·운영
- 월별·분기별 주기적 평가결과 연말 종합평가(19.12월말 기준)에 반영

5 지시이행 부문(가감)

□ 부문 개요

- 대통령 지시사항 소관 기관별 추진계획 이행 여부 중심의 정량평가 외 추진성과, 협업, 기관별 자체 관리노력 등을 포괄하여 종합평가

□ 부문 중점

- 추진일정 준수 등 형식적 측면보다 실질적 체감성과 중심 평가 실시
- 중요 지시사항은 관계기관 합동 회의·현장점검 병행 등 관리 강화
 - * 안전 등 국민생활 관련 지시사항은 대책 실행에 대한 부처·지자체 합동 현장 이행실태 점검 후 종료 처리

□ 평가 항목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정	비중
과제별 이행 노력도	계획수립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시사항 이행방안(추진계획) 충실도 이행방안 추진기간의 적극성·신속성 	정성	33%
	추진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계획의 실제 이행 여부(이행도) 국민체감도 등 추진효과 	정량/정성	50%
부처별 점검체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기별 자체점검 충실 실시 여부 	정량	17%

□ 평가 방법

- 국조실 '국정관리시스템' 상 실적·데이터 등 활용하여 평가
- 소관 지시사항의 과제별 이행 노력도 점수(±2.5) 평균*과 점검체계 운영 평가결과(±0.5)를 합산하여 가감점 부여
 - * A기관 소관 지시사항이 n개인 경우 : (각 과제별 이행노력도 합계) ÷ n
- 「국정과제 평가지원단」을 활용, 과제별 추진효과(국민체감도) 측정

2. 자체평가

□ 평가 개요

- 중앙행정기관별로 정책목표와 수단을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그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
- 자체평가 결과를 정책·예산·조직·인사·보수 등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 제고

□ 평가 방향

- 자체평가를 통한 성과 제고를 위해 △ 전략목표 수준의 성과지표 제시 △ 국정전략 및 국정과제와 연계성 강화
 - * 목표 수립체계 : 전략목표 - 성과목표 - 관리과제 順
- 자체평가 과정에서 정책수요자·전문가 등의 평가를 반영,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 제고

□ 평가 대상

- 대상기관 : 44개 중앙행정기관 (장관급 24개, 차관급 20개)
- 대상기간 : '19. 1. 1. ~ '19. 12. 31.

□ 평가 부문

- ① 주요정책 : 기관별 「2019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 관리과제**
 -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수립하는 업무계획으로서 당해 연도 주요정책·사업 목표와 추진일정, 목표 달성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등 제시
 - ** 당해연도 관리과제에 각 기관별 소관 국정과제가 포함·반영되도록 설정
- ② 재정사업 : 일반재정사업, R&D사업, 재난안전사업, 균형발전사업
- ③ 행정관리역량 : 중앙행정기관의 조직·인사·정보화 관리역량

□ 평가 방법

- 중앙행정기관별 「2019년도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고, 각 기관별 「자체평가위원회」가 평가 지표에 따라 부문별 자체평가 실시
 - (주요정책) 기관별 업무특성에 부합되도록 자율적 평가지표* 설정
 - * 전략목표 성과지표 설정시 △ 국민참여(여론조사 등) △ 국민 관심사항 반영하는 지표 선정
 - (재정사업) 일반재정·R&D·균형발전사업은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재난 안전사업은 행안부에서 평가지표 개발·제시
 - (행정관리역량) 행안부·인사처 등이 조직·인사·정보화 분야 평가지표 개발·제시
- 부문별 평가결과를 정책개선·조직관리·개인평가 등에 연계하여 활용도 높일 수 있도록 상대 평가 방식(등급제) 적용*
 - * 재정사업 부문 중 R&D 평가는 정확한 성과목표 달성수준 진단을 위해 절대평가
- 기관별 자체평가 결과에 대해 부문총괄 기관 등에서 확인·점검
 - (주요정책) 국조실에서 확인·점검
 - (재정사업) 사업 주관부처*에서 확인·점검
 - * △ 일반재정(기재부) △ R&D(과기정통부) △ 재난안전(행안부) △ 균형발전(균형위)
 - (행정관리역량) 행안부·인사처에서 확인·점검

□ 평가결과 활용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조직·예산·인사 및 보수체계에 연계·반영*하고, 기재부 장관은 평가결과를 차년도 예산편성시 반영
 - *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 미흡과제 대상 정책개선 △ 개인성과급 연계 등 환류 조치

Ⅲ. 지방자치단체 평가계획

1. 지방자치단체 평가 개요

□ 평가 방향

- 정부 국정비전에 부합하고, 국민 체감효과가 큰 주요시책을 평가, 지역 차원에서도 국정성과가 구현되도록 지원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각종 평가를 통합·운영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 평가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부담 경감

□ 평가 유형

- ①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평가 : 합동평가·개별평가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평가

1 합동평가

□ 평가 개요

-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행안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지방자치단체를 평가

□ 평가 대상

- 대상기관 :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시·군·구 실적 포함)
- 대상기간 : '19. 1. 1. ~ '19. 12. 31.
- ※ '18년도 실적('18.1월~'18.12월)은 국무총리 소속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심의·의결한 「'19년('18년도 실적) 합동평가 실시계획」에 따라 '19.6월까지 실시

□ 평가 항목

- 문재인 정부 국정목표 및 관련 국정전략·국정과제 등을 토대로 기존의 합동평가 항목과 평가 지표 체계화*
 - * ('18) 156개 평가 지표 → ('19) 122개 평가 지표 (국정목표·전략 - 국정과제 - 지표 체계)
- 19개 기관의 122개 항목·지표에 대해 평가 실시 (정량 87, 정성 35)

기 관 명 (평가항목수)					
고용부(5)	공정위(1)	교육부(1)	농식품부(12)	농진청(1)	문체부(8)
문화재청(1)	법제처(1)	병무청(1)	보훈처(2)	복지부(24)	산림청(7)
식약처(3)	여가부(12)	중기부(5)	통계청(3)	행안부(24)	환경부(8)
기 타(3)					

□ 평가 방법

- (정량·정성평가) 시·도에서 입력·제출한 실적자료 평가
 - 정량평가 : 개별지표별 목표달성도 평가(절대평가)
 - 정성평가 : 정성지표별 우수사례 선정(상대평가)*
 - * '19년도 실적은 '20년도 실적과 통합하여 '20년(하반기)에 평가 실시

□ 평가결과 활용

- 행안부는 평가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하고,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을 통해 광역 지방자치단체별 합동평가 결과 공개
- 평가결과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인센티브 지급, 유공자 포상

- 평가결과 부진시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별 맞춤형 컨설팅 실시
 - * 평가지표·세부 산식 설명, 실적 현황 및 문제점 등 여건 진단
- ※ 「'20년 합동평가 실시계획」 수립시 '포용국가' 관련 사항 반영

2 개별평가

□ 평가 개요

- 업무특성·평가시기 등으로 '합동평가'가 곤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정 주요 시책 등을 대상으로 개별 평가 실시*
 - * 부처별 개별평가 지표(51개)는 중복평가 방지 위해 합동평가에서 제외

□ 평가 대상

-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광역 및 시·군·구)
- 대상기간 : '19. 1. 1. ~ '19. 12. 31.
- 중앙행정기관별 개별평가 실시내역 : 붙임2
- ※ 향후 주관기관, 개별평가 실시내역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평가 방법

- 평가대상 업무를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장이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협의를 거쳐 각 사업별 「평가 실시계획」 수립
 - * 중앙행정기관의 사업별 「평가 실시계획」에 대해 국조실에서 타당성 검토 후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일괄 제출('19.1분기)
- 중앙행정기관장은 해당 사업에 대한 「평가 실시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후 평가, 그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

□ 평가결과 활용

- 중앙행정기관은 정책개선 방안 등 조치 필요사항을 마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우수기관에 인센티브 등 제공
- 중앙행정기관은 개별평가 결과가 실효성을 갖도록 환류실태를 지속 점검·관리

3.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 평가 개요

- 지방자치단체장이 소관 정책·사업 등을 스스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정책성과 창출 유도

□ 평가 대상

-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광역 및 시·군·구)
- 대상기간 : '19. 1. 1. ~ '19. 12. 31.

□ 평가 방법

-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
 - 민간 2/3 이상이 참여하는 자체평가위원회가 정량·정성 평가
- 평가지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개발·활용하되, 과제별 평가결과의 변별력이 강화되도록 평가체계 마련
 - * 행안부 장관은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평가기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지원

□ 평가결과 활용

- 자체평가 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
- 평가결과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차년도 성과관리계획, 개인성과 등에 반영
-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평가 운영실태를 자체점검 하여 평가제도 개선필요 사항을 도출하고 '20년도 자체평가 운영에 반영

IV. 공공기관 평가계획

1. 공공기관 평가 개요

□ 평가 방향

- 공공기관의 경영책임 강화, 투명성 제고와 공공서비스 증진을 위해 경영실적 등을 평가
- '사회적 가치' 지표 신설·반영 등으로 평가를 통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구현 노력을 조속히 착근

□ 평가 유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하위법령 등을 근거로 5대 공공기관 유형별로 평가
 - 총 537개 공공기관의 '18년도 경영실적 및 연구성과에 대해 정량·정성 평가 실시

평가대상	주관기관	근거법률	평가일정
공기업 및 준정부 기관 (128개)	기재부 장관	공공기관운영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계획('19.1) • 평가시행('19.3~5) • 평가결과('19.6)
기금 (67개)	기재부 장관	국가재정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계획('19.1) • 평가시행('19.2~4) • 평가결과('19.5)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46개)	과기연 등 (자체평가)	과학기술기본법· 과기출연기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계획('19.1) • 자체평가('19.1~3, 5~7, 9~11)
	과기정통부 장관 (상위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위평가('19.4, 8, 12) • 평가결과('20.1)
경제·인문사회분야 연구기관 (26개)	경인사연	정부출연기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계획('18.11) • 평가시행('19.1~3) • 평가결과('19.4)
지방공기업 (270개)	행안부 장관· 시·도지사	지방공기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계획('19.1) • 평가시행('19.4~6) • 평가결과('19.7)

※ '19년도 실적·성과에 대한 평가는 위 [표]와 유사한 일정으로 '20년도에 실시

2. 공공기관 유형별 평가계획

1 공기업·준정부기관

□ 평가 개요

- 전년도('18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사·성과급 등에 반영,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계 확립 및 공공서비스 증진 등 유도

□ 평가 대상

- 128개* 공기업·준정부기관 (공기업 35개, 준정부기관 93개)
* 전년대비 총 5개 기관 증가(준정부기관 5)

□ 평가 항목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정	비중*
경영관리	• 사회적 가치 구현, 경영전략 및 리더십, 조직·인사·재무관리, 혁신과 소통 등 17개	정성/ 정량	공기업 55% 준정부 45%
주요사업	• 기관별 핵심 고유사업 5개 내외	정성/ 정량	공기업 45% 준정부 55%

* 기관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금번 평가부터 공기업/준정부 비중 차별화

□ 평가 방법

- 매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전년도 경영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따라 평가
- 기재부 주관, 평가의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교수·회계사 등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을 활용하여 실시

□ 평가결과 활용

- (성과급 지급)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 (인사 조치) 평가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기관 기관장 등에 대해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해임 진의 가능
- (예산 조치) 평가결과 ‘미흡(D)’ 등급 이하를 받은 기관에 대하여는 차년도 경상경비 조정 등 공공기관 예산 편성에 반영
- (경영 컨설팅) 경영실적 부진기관 대상 맞춤형 경영컨설팅 실시

2 기 금

□ 평가 개요

- ① (기금존치평가) 전체 재정체계를 고려하여 기금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여 재정운용의 합목적성과 효율성 제고
- ② (자산운용평가) 기금 여유자산의 운용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 평가 대상

- ① (기금존치평가) 기술보증기금, 수산발전기금 등 23개 기금
 - * (기존) 모든 기금을 3년마다 평가('04·'07·'10·'13년) → ('15~'16년) 전체기금의 1/2씩 평가 → ('17년부터) 매년 전체기금의 1/3씩 평가
 - ② (자산운용평가) 고용보험기금, 주택도시기금 등 40개 기금
 - * 전체 67개 기금 중 △(매년평가) 경영평가 대상 20개, 여유자금 1조원 이상 4개
 - △(격년평가) 그 외 43개('19년의 경우 43개 중 16개 실시)
- ※ 기금존치·자산운용 평가대상 기금 목록 : 붙임3

□ 평가 항목

- ① (기금존치평가) 기금사업·재원구조 적정성 및 기금존치의 타당성
- ② (자산운용평가) 기금 여유자산 운용실태를 비계량항목(50%)과 계량항목(50%)으로 구분하여 평가

□ 평가 방법

- 기재부 주관, 35명 외부 민간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평가
*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정부출연연 박사, 5년 이상 경력의 공인회계사·변호사 등(「국가재정법」 제8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 평가결과 활용

- ① (기금존치평가) 평가단의 개선 권고사항 이행실적 점검
- ② (자산운용평가) 상·하위 각 1/3기금의 운영비를 각각 0.5%p 증감 등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추진

3 과학기술 연구기관

□ 평가 개요

- 연구목표 도전성, 연구성과 질적 우수성과 사회·경제적 영향력에 대한 평가 강화를 통해 연구역량 강화 및 혁신적 성과 창출 유도

□ 평가 대상

- 46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부처·연구회	연구기관
국가과학기술 연구회	과학기술연구원, 생명공학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원자력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항공우주연구원 등 25개 기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원, 고등과학원, 나노종합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등 16개 기관
해수부	해양과학기술원, 극지연구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원안위	원자력통제기술원

□ 평가 항목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정	비중
경영부문	• 연구환경 조성, 기관운영, 성과 활용·확산 등	정성/ 정량	20%
연구부문	• 목표의 도전성, 성과의 질적 우수성, 결과의 영향력 등	정성/ 정량	80%

□ 평가 방법

- 기관장 임기 초 기관 자율로 '연구성과계획서'를 수립, 임기 말 성과에 대해 종합평가(경영부문 +연구부문) 실시
- 소관 부처·연구회 자체평가 → 과기정통부 상위평가
* 연구분야에 따라 다양한 전문가(산학연 등)로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결과 활용

- 기관 출연금 및 기관장 성과연봉 차등 지급, 성과 우수자 포상
- 평가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이행, 차기 '성과계획서'에 연계·반영

4 경제·인문사회 연구기관

□ 평가 개요

- 연구기관 목적에 부합하는 정책대안 개발과 기초·정책 지식 생산 등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기능 향상 및 발전방안 제시

□ 평가 대상

- 23개 연구기관, 2개 부설기관, 1개 대학원

구분	경제산업통상	국토환경	복지노동여성	미래준비	공공정책
연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산업연구원 • 한국개발연구원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연구원 • 에너지경제연구원 • 한국교통연구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노동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연구원 • 한국법제연구원 • 한국행정연구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설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DI국제정책대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정책연구소 		

□ 평가 항목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정	비중
연구부문	• 정책연구 기획, 정책연구 실적, 정책 성과	정성/정량	80%
경영부문	• 리더십 및 책임경영, 예산 운용 및 사회적 가치	정성/정량	20%

□ 평가 방법

- 매년 연구기관 평가편람 및 추진계획에 의거하여 평가 시행, 온라인 평가, 실사(집체)평가(인터뷰) 등을 통해 확인·검증
- '총괄반'과 '전문가 평가단' 구성·운영 (외부전문가·공무원 등)

□ 평가결과 활용

- (예산·인사) 정부출연금 차등 지급, 기관장 성과연봉 차등 지급, 우수연구기관 및 우수연구자 포상 등
- (정책 환류) '자체개선계획' 수립 및 평가결과 환류, 우수사례 공유·확산 및 부진기관 발전지원 사업 실시

5 지방공기업

□ 평가 개요

- 경영실적에 대한 공정한 평가 및 진단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경영개선을 도모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서비스 수준 제고

□ 평가 대상

- 270개* 지방공사·공단 및 직영기업 (공사 60, 공단 91, 상수도 119**)
 - * (유형) 도시철도, 광역도시개발, 기초도시개발, 광역특정, 기초특정, 관광공사, 시설공단, 환경공단, 상·하수도 등
 - ** 상·하수도는 격년제 평가 도입으로 '19년('18년 실적)은 상수도 평가

□ 평가 항목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정	비중
리더십 /전략	리더십	• 경영층의 리더십	정량/ 정성	4% (4%)
	전략	• 미션·비전 및 경영계획		
경영 시스템	경영효율화	• 조직·인사·재무관리	정량/ 정성	9% (24%)
	주요사업활동	• 주요사업활동		
경영 성과	주요사업	• 주요사업	정량/ 정성	45% (49%)
	경영효율성과	• 경영수지 관련 지표		
	고객만족성과	• 고객만족도		
사회적 가치	일자리 확대	•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정량/ 정성	35% (18%)
	사회적 책임	• 고객 및 주민참여, 윤리경영, 노사상생, 재난·안전관리, 지역사회공헌활동, 사회적 약자배려, 친환경 경영		
정책 준수	• 공기업정책준수		정량/ 정성	7% (5%)

* 비중의 괄호()는 상·하수도 평가의 경우

□ 평가 방법

- 평가대상 유형별로 6~13명의 「경영평가단」(교수, 공인회계사, 노무·환경·안전 등 전문가, 전문연구기관 연구위원 등)을 구성·평가

□ 평가결과 활용

- 평가급 차등지급, 경영진단 실시, 우수기관 표창 등

붙임 1

정부업무평가 체계도

평가대상	평가유형	평가부문	근거법률	평가주관													
중앙 행정 기관	특정평가 (43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자리·국정과제(65점) 규제혁신(1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15점) 지시이행(±3점) 	정부업무평가법	국조실 등													
	자체평가 (44개) * 43+국조실	<table border="1"> <tr> <td rowspan="3">재정 사업</td> <td>주요정책(성과관리)</td> <td>일반재정사업</td> </tr> <tr> <td>R&D평가</td> <td>재난안전</td> </tr> <tr> <td>균형발전</td> <td></td> </tr> <tr> <td rowspan="3">행정 관리 역량</td> <td>조직</td> <td>인사</td> </tr> <tr> <td>정보화</td> <td></td> </tr> <tr> <td></td> <td></td> </tr> </table>	재정 사업	주요정책(성과관리)	일반재정사업	R&D평가	재난안전	균형발전		행정 관리 역량	조직	인사	정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업무평가법 국가재정법 연구성과평가법 재난안전법 국가균형발전법 정부업무평가법
재정 사업	주요정책(성과관리)	일반재정사업															
	R&D평가	재난안전															
	균형발전																
행정 관리 역량	조직	인사															
	정보화																
지방 자치 단체	부처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동평가(19개 부처) 개별평가(51개 사업) 	정부업무평가법	행안부 등 주관부처													
	자체평가	중앙행정기관과 동일	정부업무평가법	지자체장													
공공 기관	공기업(35개) 준정부기관(93개)		공공기관운영법	기재부													
	기금(존치평가 23개, 자산운용평가 40개)		국가재정법	기재부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46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기연 소관(25개) 과기정통부 산하(16개) 해수부 산하(3개) 원안위 산하(1개) 방사청 산하(1개) 	과학기술기본법 과기출연기관법	과기연 과기정통부 해수부 원안위 방사청													
	경제·인문사회분야 연구기관(26개)		정부출연기관법	경인사연													
	지방공기업(270개)		지방공기업법	행안부													

□ 지표체계 : 5대 국정목표 122개 지표

신규지표

연번	국정목표	지표명	소관부처
1	국민이 주인인 정부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우수사례(정성평가)	행안부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제4차 산업혁명 대응 우수사례(정성평가)	행안부
3	국민이 주인인 정부	공공저작물 개방 및 활용 우수사례(정성평가)	문체부
4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시도 지방기록자치 실현을 위한 우수사례(정성평가)	행안부
5	국민이 주인인 정부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행안부
6	국민이 주인인 정부	쉽고 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향상률	문체부
7	국민이 주인인 정부	보훈정신 확산 우수사례(정성평가)	보훈처
8	국민이 주인인 정부	국가유공자 특별채용률	보훈처
9	더불어 잘사는 경제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율	고용부
10	더불어 잘사는 경제	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수행성과(자치단체 자체사업)	고용부
11	더불어 잘사는 경제	공공취업지원기관의 취업자 수 달성률	고용부
12	더불어 잘사는 경제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확대율	복지부
13	더불어 잘사는 경제	경력단절여성 취업자 수 목표달성률	여가부
14	더불어 잘사는 경제	지역물가 안정관리	행안부
15	더불어 잘사는 경제	특수거래분야(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법집행 실적	공정위

연번	국정목표	지표명	소관부처
16	더불어 잘사는 경제	사회적 경제 우선구매율	행안부
17	더불어 잘사는 경제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우수사례(정성평가)	중기부
18	더불어 잘사는 경제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법제처
19	더불어 잘사는 경제	중앙부처 건의과제 규제 발굴, 개선 실적	행안부
20	더불어 잘사는 경제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실적	행안부
21	더불어 잘사는 경제	지자체 자율적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투자 우수사례 (정성평가)	행안부
22	더불어 잘사는 경제	중기부(옴부즈만) 지방 규제애로 발굴·개선 실적 (지방규제 신고센터)	중기부
23	더불어 잘사는 경제	기술기반 창업 실적	중기부
24	더불어 잘사는 경제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리 및 효율화 실적	중기부
25	더불어 잘사는 경제	신기술제품 우선구매율	중기부
26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의료급여 부담이득금 징수율	복지부
27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지자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확인조사 기간 내 처리율	복지부
28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보호결정 수급률	복지부
29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 실적	복지부
30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자활근로 참여자 탈수급 및 취·창업률 (자활참여자 성공률)	복지부
31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사회복무요원 수요확대 실적	병무청
32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노인 돌봄서비스 제공률	복지부
3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지역사회 치매관리율	복지부
3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노인일자리 목표달성률	복지부

연번	국정목표	지표명	소관부처
35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방문건강관리사업 신규등록가구 적정관리	복지부
36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우수사례(정성평가)	복지부
37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우수사례(정성평가)	복지부
38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비만 개선율	복지부
39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실적	복지부
40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만65세 어르신 폐렴구균 접종률	복지부
41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잠복결핵감염자 치료 실시율	복지부
42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결핵신환자 치료 성공률	복지부
4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저출산 대책 우수사례(정성평가)	복지부
4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율	여가부
45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요보호아동 보호내실화율	복지부
46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율	복지부
47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복지부
48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공동육아나눔터 설치목표 달성률	여가부
49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노력도	여가부
50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우수사례(정성평가)	여가부
51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및 활동 활성화 우수사례(정성평가)	여가부
52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지방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율	행안부
5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교통사고 발생률 감소율	행안부

연번	국정목표	지표명	소관부처
5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민방위경보 운영관리 개선	행안부
55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확보율	행안부
56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 우수사례(정성평가)	행안부
57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입국자 추적조사 완료율	복지부
58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역학조사의 완성도	복지부
59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극한기온(폭염·한파) 건강피해 대응 실적	복지부
60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식중독 발생 관리율	식약처
61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수혜 달성률(100인 미만 시설)	식약처
62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위반율	환경부
6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지역사회 위해의료제품 품질감시 강화 우수사례(정성평가)	식약처
6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친환경자동차 확산	환경부
65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 우수사례(정성평가)	환경부
66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주민 1인당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및 수거 증가량	환경부
67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의 적극성 및 달성률	환경부
68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탄소포인트제 참여가구수 증가율	환경부
69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하여 광역지자체가 노력한 우수사례(정성평가)	환경부
70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1회용품 사용감축 우수사례(정성평가)	환경부
71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업 사망사고 수 재해 감소율	고용부
72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 사고사망자 수 감소율	고용부

연번	국정목표	지표명	소관부처
7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취약, 위기가족 지원을	여가부
7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다문화가족 합리적 지원방안 마련 노력도(정성평가)	여가부
75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장애인공무원 신규채용 실적	행안부
76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 달성률	행안부
77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시.도) 위원회의 위촉직 여성참여율	여가부
78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율	여가부
79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우수사례(정성평가)	여가부
80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아동, 청소년 폭력예방 지원노력 우수사례(정성평가)	여가부
81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실적 달성률	문화재청
82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문화누리카드사업 예산 집행률	문체부
8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간 상호협력망 구축률	문체부
8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문화가 있는 날 우수사례(정성지표)	문체부
85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스포츠강좌 이용권 집행률	문체부
86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 체육프로그램 개설 수	문체부
87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 우수사례(정성평가)	문체부
88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마을자치·공동체 활성화 우수사례 (정성평가)	행안부
89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보조금 부적정수급 근절 및 환수노력(정성평가)	행안부
90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지방예산낭비 방지 및 절감 우수사례(정성평가)	행안부
91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도로명 안내표지 방식으로 도로표지판 정비율	행안부

연번	국정목표	지표명	소관부처
92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도로명판 확충	행안부
93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상세주소 부여실적	행안부
9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지역통계 확충 실적	통계청
9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지역통계 활용 우수사례(정성평가)	통계청
96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대학 및 지자체 연계 및 협력 우수사례(정성평가)	교육부
97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산사태 예방·대응 체계 구축률 (시부: 공통평가, 도부: 부분평가)	산림청
98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육성 달성률	산림청
99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임도시설 실적률(도부: 공통평가)	산림청
100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산불방지 성과 달성률	산림청
101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산림병해충 방제 성과 달성률	산림청
102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소외계층 산림복지 바우처 확대 (시부: 부분평가, 도부: 공통평가)	산림청
103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빈집정비 실적(시부: 부분평가, 도부: 공통평가)	농림부
10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목재이용 우수사례(정성평가)	산림청
10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우수사례(정성평가) (시부: 부분평가, 도부: 공통평가)	농림부
106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귀농귀촌 정책 우수사례(정성평가)	농림부
107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농산물 직거래실적 증가율	농림부
108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목표 달성률 (시부: 부분평가, 도부: 공통평가)	농림부
109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미래농업 소득사업 확산 우수사례(정성평가)	농진청
110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GAP 인증농가 확대율	농림부

연번	국정목표	지표명	소관부처
111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반려동물 등록률	농림부
112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우제류 주요 가축전염병(5종) 발생 건수	농림부
113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소, 돼지 구제역 예방접종 항체양성률 (시부: 부분평가, 도부: 공통평가)	농림부
11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닭, 오리 가축전염병 발생률 (시부: 부분평가, 도부: 공통평가)	농림부
11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검역병해충 예찰 및 방제 성과	농림부
116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농업계와 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한 성과창출 우수사례 (정성평가)	농림부
117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총무계획 실효성 확보(정성평가)	행안부
118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지방자치단체 비상대비훈련 우수사례(정성평가)	행안부
119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관리적 정보보안 역량 개선율	국정원
120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사이버위기대응 역량 개선율	국정원
121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기술적 정보보안 역량 개선율	국정원
122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노력도(정성평가)	통일부

붙임 3

중앙행정기관별 개별평가 실시내역

연번	평가명	소관부처
1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실적 평가	고용부
2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평가	고용부
3	건축행정 건설화 평가	국토부
4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국토부
5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조사 평가	국토부
6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평가	국토부
7	지식재산 기본계획 시행계획 추진상황 평가 등	과기정통부
8	부패방지 시책평가	권익위
9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권익위
10	농산시책추진 우수기관평가	농식품부
11	지역전략작목산학연협력 광역화사업	농진청
12	농업인대학 우수 운영기관	농진청
13	강소농·경영지원 분야 평가	농진청
14	농촌진흥사업 우수기관 선정	농진청
15	우수농업기술센터 평가	농진청
16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랩 평가	문체부
17	전국 도서관 운영 평가	문체부
18	드림스타트 사업운영 점검	복지부
19	지역복지사업평가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	복지부
20	17년 노인일자리 성과진단 (시장형·인력파견형 사업단)	복지부
21	17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평가	복지부
22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시도 성과평가	복지부
23	자살예방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복지부
24	지자체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행결과 평가	산업부
25	지방투자촉진사업 우수지자체 평가	산업부
26	식품안전 및 식중독예방관리 우수기관 평가	식약처

연번	평 가 명	소관부처
27	식생활 안전 영양수준 평가	식약처
28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여가부
29	성희롱방지조치 점검	여가부
30	성폭력예방교육 점검	여가부
31	성매매예방교육 점검	여가부
32	가정폭력예방교육 점검	여가부
33	물품관리상황의 평가	조달청
34	우수 해수욕장 선정평가	해수부
35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중앙합동점검	행안부
36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재난관리 평가	행안부
37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중앙합동점검	행안부
38	국민행복 소방정책 종합평가	행안부
39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및 재정분석	행안부
40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행안부
41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평가	행안부
42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	행안부
43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행안부
44	기록관리 평가	행안부
45	지방혁신평가	행안부
4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실태 평가	환경부
47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환경부
48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이행결과 평가	환경부
49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 실태평가	환경부

① (기금존치평가) 기술보증기금, 수산발전기금 등 23개 기금

* 매년 전체기금의 1/3씩 평가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주택도시기금, 수산발전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군인연금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금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② (자산운용평가) 고용보험기금, 주택도시기금 등 40개 기금*

* 매년 평가하는 공공기관경영평가 대상 기금(20개), 여유자금 1조원 이상 기금(4개)과 격년으로 평가하는 기금(16개)

- 국민연금은 별도 평가지침으로 평가 실시 ('16회계연도 개정)

구분		기금명
매년 평가 (24개)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 (20개)	국유재산관리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언론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무역보험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국민연금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여유자금 규모 1조원 이상(4개)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주택도시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격년 평가 (16개)		복권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원자력기금(연구개발계정), 원자력기금(안전규제계정), 관광진흥개발기금, 농지관리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어업재해보험기금,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축산발전기금, 수산발전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문화재보호기금,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전년도 평가 기금(21개)		-
평가 제외 (6개)	계정성 기금(4개)	공공자금관리기금, 외국환평형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신설 기금*(2개)	국제질병퇴치기금,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 신설 기금은 3년간 평가 유예

2020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수정)

2020. 6. 30



국무조정실

I. 추진배경

□ 2020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을 既수립('19.12.24) 하였으나,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 발생

○ 이에 기존 정책의 추진방향, 우선순위 등이 수정됨에 따라 이에 연동한 정부업무평가계획도 수정이 필요

* VIP, “지금은 메르스, 사스와는 비교가 안 되는 비상 경제시국...정부는 전례 없는 대책을 최선을 다해 만들어내야 할 것” (3.13, 경제·금융 상황 특별 점검회의)

* 총리, “필요하다면 부처별 既수립된 금년도 업무계획도 재검토, 수정·보완하여 추진” (3.21, 비상국무위원 워크숍)

〈 기존 2020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기본 개요 〉

▶ (중앙행정기관) 국정과제 성과창출을 위해 △기관장 노력 △적극행정 △부처간 협업노력에 대한 평가를 대폭 강화하고, 평가결과 공개 확대

▶ (지방자치단체) : 중앙부처와의 정책적 연계성을 강화하고, 평가지표 간소화를 통해 지자체 부담을 완화하되, 지자체 평가에 주민 참여 및 소통을 확대

▶ (공공기관)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창출 및 부처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출연연의 현안분석 및 문제 해결 중심 연구 등 국정 기여도를 평가

□ 특히, 각 부처의 코로나19 위기극복 노력과 성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 전환이 필요하고,

○ 아울러 부처가 코로나19 방역·경제 살리기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평가로 인한 부담을 경감시켜 줄 필요도 동시에 발생

⇒ 코로나19 대응노력을 평가에 반영 및 부처 평가부담 경감을 위해, 既 수립한 '20년도 정부업무평가의 틀과 제도를 대폭 개편

II. 주요 추진방향

① 코로나19 대응 노력을 중점 평가

- 각 부처의 코로나19 대응 및 Post-코로나 준비 노력에 대하여 중점 평가하고, 주요 대응과제에 대해서는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 추진
 - * 부처별 대응 노력을 별도 평가하여 가점 부여하고, 코로나19 관련 평가지표 도입 및 대응 성과 우대 등
-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선제적 조치와 기관장 노력, 부처간 협업 등을 중점 반영

② 평가 부담 경감

-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임을 감안하여, 부처의 평가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평가항목·방식·절차 등 개선
 - ① (지표 축소) 핵심지표 중심으로 평가지표 대폭 간소화, 부수적이거나 추동 목적의 지표는 폐지
 - * 세부 평가지표('19년→'20년) : △일자리·국정과제(정성평가만 실시) △규제혁신(40→28) △정부혁신(53→33) △정책소통(30→22)
 - ② (방식 전환) 정량평가 비중 축소, 정성평가 비중 확대
 - * 일자리·국정과제 부문의 경우 모든 평가항목에 대해 정성평가만 실시
 - ③ (절차 간소화) 증빙자료 제출 및 이행점검 축소, 평가시기 조정 등

③ 평가 쏠 부문으로 확산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대상 평가계획도 주관기관 중심으로 중앙행정기관에 준해 수정 추진

참 고

'20년도 중앙행정기관 평가체계 개선(안)

부문	기존 평가계획	개선 평가계획(안)	평가 부담완화	
일자리·국정과제	【5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행노력 (정량) ■ 목표(지표)달성 (정량) ■ 정책효과 (정성) 	【6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행노력(30%, 정성) ■ 정책성과(60%, 정성) ■ 국민만족도(10%, 정성) ■ 【신설】 별도평가, 가점(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성평가만 실시 • 약 900개 정량 평가지표 미선정 • 실적 설명회 : 2회→1회 • 기존 가점항목 폐지 	
	코로나 대응			
	정책 만족도	【5점】 부처 소관 국정과제 전체에 대한 국민 만족도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과제 국민만족도 항목 평가 시 통합 반영 	
	협업	【5점】 국정과제 중 협업 필요 과제 추진노력 및 성과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과제 이행노력 항목 평가 시 통합 반영 	
	일자리 기관공통	【5점】 기관별 일자리 창출 및 여건 개선 노력도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지 	-
	중점 추진과제	【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지 	-
	입법 성과	【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지 	-
규제혁신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혁신 성과(65%) ■ 규제혁신체감도(20%) ■ 규제정비활동(15%)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혁신 성과(60%) ■ 규제품질 관리(20%) ■ 규제혁신 소통 및 체감도(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지표 축소(40→28) • 코로나19 관련 적극행정 대응 우수사례, 입증책임 전환 등 평가지표 도입 • 지표삭제(일자리 저해 규제정비, 규제혁신 교육 등) • 입증책임제 등 실적점검 일정 조정(매월→매분기) 	
정부혁신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의 혁신역량(10%) ■ 혁신성과(75%) ■ 국민체감도(15%)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의 혁신역량(7%) ■ 혁신성과(78%) ■ 국민체감도(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지표 축소(53→33) • 코로나19 대응 성과 우대 • 대면평가 축소 • 자료제출 최소화 (분기별→연말) 	
정책소통	【1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소통활동(20%) ■ 정책소통성과(55%) ■ 정책소통체감도(25%) 	【1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소통활동(16%) ■ 정책소통성과(59%) ■ 정책소통체감도(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지표 축소(30→22) • 단순 정량 지표 폐지 • 코로나19 위기상황 소통 활동 및 성과 반영 • 자료제출 최소화 및 간소화(월별→분기별) 	
지시사항	【±3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지 	-	

Ⅲ. 2020년도 중앙행정기관 평가계획

1. 평가 개요

□ 평가 목적

- 국무총리가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부문별 평가를 통해 국정 통합 관리 및 국정성과 제고

□ 평가 대상 : 43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3개, 차관급 20개)

□ 평가 부문

-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4개 부문 평가

부 문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배 점	65	10	10	15

□ 평가 방법

- 전문가평가단을 통해 과제별 정성 및 정량평가
 - * 국정과제 평가는 평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정성평가만 시행
 - 부문별 주관기관이 평가, 각 평가부문별 결과를 합산하여 기관 종합평가 결과 산출 → 「정부 업무평가위원회」 심의·의결
 - * 각 평가부문별로 국민체감도 조사 및 정책수요자에 의한 정책효과 평가 실시
-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온라인 평가 적극 활용

□ 평가결과 활용

- 중앙행정기관장은 평가결과 개선·보완 필요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이행 → 국무조정실은 부처별 이행상황 점검

- 기관 평가등급 공표 (기관종합 및 부문별 5등급 구분 (S·A·B·C·D))
- 우수기관 포상금 지급 및 업무유공자 포상 실시
 - 특히, 전년과 달리, 종합 우수기관 외에 부문별 우수기관에 대해서도 포상

2. 부문별 평가계획

1 일자리·국정과제 부문

□ 주요 개편사항

- 국정과제 평가 시, 부처별 코로나 대응 노력·성과를 중점 반영
 - * △국정과제 조정·보완을 통해 국정과제에 코로나19로 인한 외부환경 변화 최대한 반영
△각 부처의 코로나 대응노력을 별도 평가, 부처별 가점 부여
- 정량평가 미실시, 각종 가점 평가항목 폐지, 실적 설명 및 점검 간소화 등 부처의 평가 부담 대폭 경감
 - * △부처 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 정량평가(계획이행률, 성과지표 달성도) 미실시
△부처 실적설명회 및 평가 관련 양식 간소화
△평가항목을 국정과제 및 코로나 대응성과로 개편(중점추진과제, 입법성과 등 폐지)

□ 평가 항목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정	비중
일자리· 국정 과제	이행노력	• 정책추진과정에서의 기관장 노력, 인력·예산 등 투입, 적극행정·협업 등 일하는 방식 개선 등	정성	30%
	정책성과	• 수치화된 계량성과 및 비계량적 정책성과 등	정성	60%
	국민만족도	• 과제별 정책성과 및 효과에 대한 만족도	정성	10%
코로나 대응		•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성과 일체	정성	+10

□ 평가 방법

- 일자리·국정과제별 평정을 통해 기관별 과제 평균점수를 산출 후, 코로나 대응성과에 따라 가산점 부여(최대 10점)
-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하여 과제별 정성평가 실시
 - * 정책분야별 정부업무평가위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

2 규제혁신 부문

□ 주요 개편사항

-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국민체감 확대를 위해 ‘적극행정’과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등 코로나19 대응 관련 평가 반영
 - * △적극행정 : 적극행정을 통한 코로나19 대응 우수사례 평가지표 도입
 -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 코로나19 위기 대응·지원 과제 정비 성과 평가반영
 - △코로나19 대응 규제혁신 노력도 가점지표(+5) 신설
- 부처부담 경감 및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평가항목 간소화 및 실적점검 완화
 - * △실적점검 일정 조정(입증책임제, 홍보실적 등) △중복지표 삭제(일자리 창출 규제정비) △정량지표 평가 유예(샌드박스 수용률, 포괄적 네거티브 과제 등 이행실적 등) △코로나 대응 부처 답변 지연에 따른 감점 지표 적용 완화(기업건의, 규제신문고)

□ 평가 항목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정	비중
규제혁신 성과	• 신산업 혁신 성과 * 규제 샌드박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등	정성/ 정량	60%
	• 민생혁신 성과 * 민생분야 규제정비, 규제개혁신문고 등		
	• 공직자 혁신 성과 * 적극행정, 정부 입증책임제 등		
규제품질관리	• 신규 규제 품질관리 * 규제영향분석, 규제비용관리제 등	정성/ 정량	20%
	• 기존 규제 품질관리 * 일몰규제 정비		
규제혁신 소통 및 체감도	• 규제혁신 국민소통	정성/ 정량	20%
	• 규제혁신 만족도 조사		
코로나 대응	• 코로나19 대응 규제혁신 노력도	정성	+5

□ 평가 방법

- 민관합동 규제혁신 평가단*을 구성하여 정량·정성 평가 병행
 - *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민간전문가, 규제조정실 실·국장급 등 참여
- 규제영향분석, 규제혁신 만족도 등은 외부전문기관(규제 관련 연구기관 및 리서치기관)을 통해 평가

3 정부혁신 부문

□ 주요 개편사항

- 기존 지표 평가 시 코로나19 대응성과를 우대*하여 평가하고, 비대면(untact) 서비스 등 포스트 코로나 대비 노력·성과에 대한 평가 강화**
 - * 혁신지향 공공조달, 공공데이터 연계·공유, 적극행정 등 4개 지표
 - ** 국민참여, 디지털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디지털 기반 업무방식 혁신 등 3개 지표
- 부처부담 경감을 위해 주요 혁신과제 성과에 대한 평가횟수를 축소*하고, 평가지표 간소화 및 투입형 정량지표 삭제·최소화**
 - * 주요 혁신과제 분기별 성과점검·평가에서 연말(1회) 평가로 변경
 - ** 실행계획의 충실성, 혁신 교육실적, 혁신성과 홍보 등 지표 삭제

□ 평가 항목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정	비중
기관의 혁신역량	• 기관장의 혁신리더십, 혁신 학습활동	정성	7%
혁신 성과	혁신적 포용행정 • 혁신지향 공공조달 • 사회적가치 제고 정책성과 또는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성과 • 균형인사(여성, 장애인, 청년)	정량/정성	78%
	참여와 협력 • 국민참여 및 협업 성과 • 공공데이터 개방·연계·보호 • 갈등관리		
	신뢰받는 유능한 정부 • 국민 체감 공공서비스 혁신성과 • 공직내 일하는 방식 혁신성과 • 공정행정 및 청렴도		
	적극행정 • 적극행정 추진성과		
	국민체감도 • 국민평가단·일반국민 체감도 평가		
		정성	15%

□ 평가 방법

- 행안부 주관 「정부혁신 평가단」을 구성, 정량·정성 평가
- 국민체감도 평가 시 다양한 평가방식 도입 확대
 - * 국민평가단 현장 전자투표, 대국민 온라인 선호도 투표 등

4 정책소통 부문

□ 주요 개편사항

- 코로나19 대응 소통 활동 및 성과를 평가지표에 반영 확대
 - * 언론보도 성과, 소통활동 우수사례 평가 시 코로나19 대응 성과 중점 고려
 - * 기관 SNS 활동성과 정성평가 시 코로나19 관련 방역, 경제지원 및 코로나19에 대응한 디지털 콘텐츠 평가 강화
- 부처가 코로나19 대응 등 위기관리에 소통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평가 지표를 축소하고, 부처의 평가자료 제출부담 경감
 - * (지표 폐지) 소통계획수립 및 이행도, 정례브리핑, 기관 SNS 운영, 부처협업 캠페인 디지털 콘텐츠 실적, 정책기자단 활용, 쉽고 바른 공공언어쓰기 전문 용어 표준화관련 등
 - * (자료제출) △소통활동 우수사례 : 4회 → 2회 △기관장 언론 및 현장소통 성과 : 월별(12회) → 분기(4회) △디지털활동(캠페인) 성과 : 반기(2회) → 연말(1회)

□ 평가 항목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정	비중
정책소통 활동	주요정책 협의	• 협의회 참여도, 사전협의 참여도	정량/ 정성	16%
	언론 소통 활동	• 일일보도관리		
정책소통 성과	언론소통성과	• 언론보도 및 소통활동 성과, 외신소통활동 성과	정량/ 정성	59%
	온라인소통성과	• 기관SNS활동성과, 디지털활동성과, 온라인이슈관리		
	기관장소통성과	• 언론 및 현장소통 성과, 위기상황 이슈관리		
	보유매체 등 활용성과	• 보유매체 활용성과, KTV 활용 성과		
정책소통 체감도	소통 만족도	• 소통 만족도 (여론조사)	정량/ 정성	25%
	온라인 체감도	• 빅데이터 분석		

□ 평가 방법

- 각 기관별 국민소통 활동 및 성과에 대해 정량·정성 평가
 - * 문체부 주관 「민관합동 정책소통 평가단」 구성·운영, 소통 만족도 조사는 국조실 주관 외부 전문기관(전문 리서치 기관)을 통해 평가
- 분기·반기별 등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연말 종합평가에 반영

2021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2021. 2. 23



국무조정실

I. '21년 정부업무평가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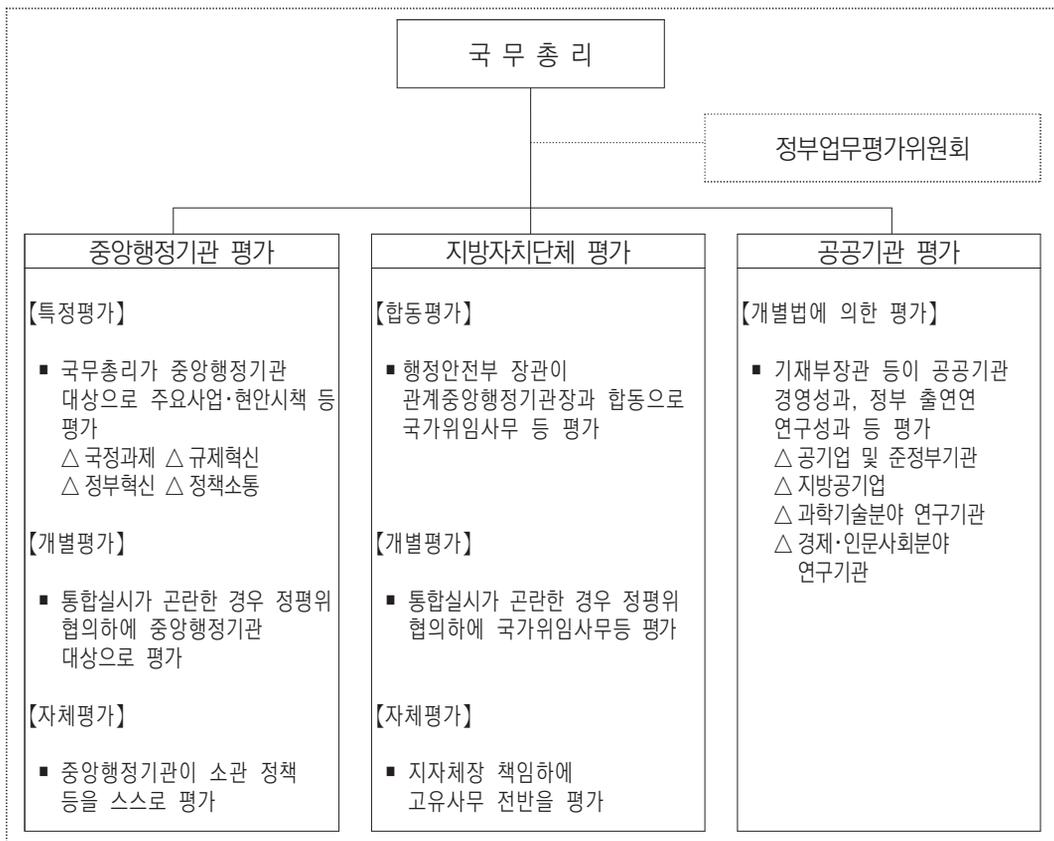
□ 수립 배경

-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대상 각종 정책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정평법 제8조)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심의·의결 ('21.2.19)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8조 ③ 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전년도 평가결과를 고려하고 평가대상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3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정부업무평가 체계



II. 주요 평가방향

- ①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회복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에 비중있게 반영
 - '20년에 이어 코로나로 인한 충격 대응 노력 및 성과를 평가에 반영
 - * 주요 평가 부문별 평가항목에 반영, 특히 일자리·국정과제는 코로나 대응 특별한 노력과 성과를 가점으로 반영

- ② 적극행정에 대한 평가 강화
 - 중앙행정기관 평가에서 적극행정 평가 비중을 확대
 - * 규제혁신·정부혁신 부문에 분산되어 있던 적극행정 평가를 통합·보강하고, 배점 비중 확대
 - 지자체, 공공기관 평가에도 적극행정 평가 항목 신설 및 인센티브 강화

- ③ 성과 우수기관 뿐만 아니라 '전년 대비 도약기관' 포상
 - 중앙행정기관 : 기관 포상금 및 유공자 포상에 반영
 - 지방자치단체 : 전년 대비 성과 개선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지급

- ④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국정지원 역할 강화
 - 국정철학과 지자체·공공기관의 업무수행간 연계 강화
 - *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 및 공공기관 평가지표에 사회적 가치·공정성 등을 반영
 -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적시성 있는 현안연구를 통해 국정 뒷받침
 - * 코로나19, 한국판 뉴딜 등 국가의 긴급현안 해결을 위한 연구 실적을 평가

- ⑤ 문재인 정부 5년의 성과를 감안하여 평가
 - 중앙행정기관 평가시 2021년 당해연도 성과와 함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추진해 온 그간의 정책성과도 평가에 반영

Ⅲ. 중앙행정기관 평가

1. 특정평가

가. 특정평가 개요

□ 기본 방향

- 45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4개, 차관급 21개)을 대상으로 국무총리가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부문별 평가를 통해 국정 통합 관리 및 국정성과 제고
- 코로나19 대응 노력 및 성과를 평가에 반영하고,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평가대상기관의 평가부담 완화
- 규제혁신·정부혁신 부문에 분산되어 있던 적극행정 평가방식을 통합하고, 평가 비중을 확대

□ 평가 부문 및 평가 방법

- (평가부문)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및 기관종합

구분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총 100점	65점	10점	10점	15점

* 기관종합 결과 산출시 적극행정 평가결과(3점)를 합산

- (평가방법) 부문별 주관기관이 평가, 각 평가부문별 결과를 합산하여 기관 종합평가 결과 산출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심의·의결
- * 각 평가부문별로 국민체감도 조사 및 전문가 평가단에 의한 정책효과 평가 실시

□ 평가결과 활용

- 중앙행정기관장은 평가결과 개선·보완 필요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이행 → 국무조정실은 부처별 이행상황 점검

- 기관 평가등급* 공표, 우수기관 포상금 지급, 업무유공자 포상 실시
 - * 기관종합 및 평가부문별 5등급 구분(S·A·B·C·D)
 - ※ 평가결과 우수기관과 함께 점수가 크게 상승한 '도약기관'에도 포상 실시

〈참고〉 '21년도 특정평가 주요 변경사항

부문	2020년 시행계획	2021년 시행계획
일자리·국정과제	【6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행노력(30%) ■ 정책성과(60%) <li style="text-align: center;">- ■ 국민만족도(10%) 	【6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행노력(25%) ■ 목표 달성도(25%) ■ 정책효과(35%) ■ 국민만족도(15%)
규제혁신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혁신 소통 및 체감도(20%) ■ 규제품질 관리(20%) ■ 규제혁신 성과(60%)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분야 규제혁신 노력·성과(70%) ■ 규제혁신 플랫폼 안착(30%)
정부혁신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의 혁신역량(7%) ■ 혁신성과(78%) ■ 국민체감도(15%)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의 혁신역량(10%) ■ 혁신성과(75%) ■ 국민체감도(15%)
정책소통	【1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소통활동(16%) ■ 정책소통성과(59%) ■ 정책소통체감도(25%) 	【1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소통활동(14%) ■ 정책소통성과(63%) ■ 정책소통체감도(23%)

나. 부문별 평가계획

1 일자리·국정과제 부문 (65)

□ 평가 방향

-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실질적 성과 및 국민체감도 중점 평가
-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평가부담 완화(지표 간소화 등)
- 문재인 정부 5년차 성과 창출 및 종합적인 평가를 위해 단년도 성과와 함께 그간 추진해온 성과도 고려하여 평가

□ 평가 항목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정	비중	
이행노력	• 과제 이행을 위한 투입노력, 절차·시한 준수 등 - 기관장 노력, 분기 점검결과, 입법노력, 갈등관리 등	정량/ 정성	25%	
성과	목표 달성도	• 사전에 설정된 연간 목표치 달성여부 - 성과지표로 표시된 목표치 또는 완수해야 할 세부목표 달성 여부 등	정량/ 정성	25%
	정책 효과	• 국민에게 체감되는 실질적 효과 • '21년 정책효과뿐만 아니라 5년치 효과 종합 평가	정성	35%
	국민 만족도	• 부처 소관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과제 전체에 대한 국민만족도 조사 (전문리서치 기관 조사)	정성	15%

※ 기관 가점(5점) : 국정현안 대응(코로나 대응 관련 특별한 노력과 성과, 평가대상 국정과제 이외의 영역에서 부처의 정책 성과 등)

□ 평가 방법

- 국정과제별 평정 후, 기관별 과제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평가등급 부여
- 과제별 정책효과 및 만족도에 대해 「전문가 평가단」과 일반 국민이 평가

2 규제혁신 부문 (10)

□ 평가 방향

- 규제샌드박스 등 한국형(K) 규제혁신 플랫폼 안착과 신산업·민생 분야 핵심과제 규제혁신 성과 평가
- 규제혁신을 위한 부처의 노력* 및 성과, 국민·기업의 체감**을 종합평가
 - * 부처별 규제혁신 여건 고려를 위해 전년대비 노력·개선도를 평가에 추가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규제 차원의 노력도 반영
 - ** 국민 체감 및 과제 난이도 반영 등을 위해 정성평가 비중 확대
- 평가지표 간소화 및 단순 정량지표 축소를 통해 피평가기관 평가부담완화

□ 평가 항목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정	비중
핵심분야 규제혁신 노력·성과	• 신산업분야 규제혁신 노력·성과	정성/ 정량	70%
	• 신산업분야 규제혁신 효과		
	• 민생분야 규제혁신 노력·성과		
	• 민생분야 규제혁신 효과		
	• 신산업·민생 국민체감도		
규제혁신 플랫폼 구축	• 국민소통 및 규제철폐	30%	
	• 규제 전주기 관리체계		

□ 평가 방법

- 평가지표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량·정성 평가
- 정성지표 평가를 위해 민관합동규제혁신평가단* 구성·운영 및 외부전문기관을 통한 규제개혁 만족도조사 실시
 - * 규제 관련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전문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규제조정실 등

3 정부혁신 부문 (10)

□ 평가 방향

- 정부혁신을 통한 코로나19 대응 노력·성과를 평가에 반영하고, 그간의 정부혁신 성과까지 평가하여 단년도·누적 평가 병행
 - * 코로나19 대응 혁신성과 및 기관대표 혁신 누적성과 지표 신설
- 단순 정량지표를 축소하여 부처부담을 경감하고, 정부혁신 추진계획에 집중하여 성과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평가지표 간소화
 - * 정보공개, 정부24 공공서비스 목록 현행화, 갈등관리 지표 등 삭제

□ 평가 항목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정	비중
기관의 혁신역량		• 기관장의 혁신리더십, 혁신 학습활동	정성	10%
혁신 성과	대표 혁신성과	• 기관대표 혁신 누적성과	정량/ 정성	75%
	참여와 협력	• 국민참여 성과 • 부처 간 협업		
	국민체감 공공서비스	• 디지털 기반 서비스 혁신 • 포용적 서비스 확대		
	일하는 방식 혁신	• 데이터 기반 업무효율화 • 조직문화 혁신		
국민체감도		• 국민평가단·국민 체감도 평가	정성	15%

※ 코로나19 대응 혁신성과(가점 0.5점)

□ 평가 방법

- 행안부 정부혁신 ‘전문가 평가단’ 및 과제 주관부처 평가단이 정량·정성 평가
- 공개모집을 통해 ‘국민평가단’을 구성하여 혁신성과 국민체감도 평가 실시

4 정책소통 부문 (15)

□ 평가 방향

- 코로나19 대응과 코로나 이후 대비,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 소통 성과와 국민 체감도 중점 평가
 - * △주요정책 언론 보도 및 성과 △누리소통망(SNS) 채널 운영 실행 성과 및 국민 기자단 활용성과 등 지표 신설
 - * 자료 제출 최소화 등 평가 부담 완화, 전년도 수준 유지
- 정책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부처협업 활성화 등 적극적인 소통 활동 강화를 위한 평가 지표 개선
 - * 온라인이슈 신속 대응 정량 및 일일보도관리 현안대응 정성 지표 신설
 - * 부처협업 캠페인 활동 정량 지표 신설

□ 평가 항목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정	비중
정책소통 활동	주요정책협의	• 협의회 참여도, 사전협의 참여도	정량/ 정성	14%
	언론소통활동	• 일일 보도대응		
정책소통 성과	언론소통성과	• 언론보도 및 소통활동 성과, 외신소통활동 성과	정량/ 정성	63%
	온라인소통성과	• SNS활동성과, 디지털캠페인성과, 온라인이슈관리		
	기관장소통성과	• 언론 및 현장소통 성과, 위기상황 이슈관리		
	보유매체 등 활용성과	• 보유매체·KTV 활용 성과, 국민과 함께하는 소통성과		
체감도	소통만족도	• 국민만족도(소통만족도 포함)	정량/ 정성	23%
	온라인체감도	•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사례		

□ 평가 방법

- 각 기관별 국민소통 활동 및 성과에 대해 정량·정성 평가
 - * 문체부 주관 「민관합동 정책소통 평가단」 구성·운영, 소통 만족도 조사는 국조실 주관 외부 전문기관(전문 리서치 기관)을 통해 평가
- 분기·반기별 등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연말 종합평가에 반영

2. 개별평가

□ 평가 방향

-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평가는 원칙적으로「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해 통합하여 실시
 - 업무의 특성·평가시기 등으로 인해 통합실시가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개별평가 실시
- 기관별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와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기관에 의한 과도한 중복평가 지양
 - ※ 기관별 중앙행정기관 대상 각종 평가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유사·중복 평가 통합·체계화 추진(국조실)

□ 평가 주체

- 평가 대상 업무를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 평가 대상

- 다수의 타 중앙행정기관 등이 수행하는 사업·정책 등

□ 평가 방법

- 평가주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협의를 거쳐 평가실시계획 수립
- 평가실시계획을 평가대상기관에 통보하고 평가 시행, 그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

□ 평가결과 활용

- 평가주관기관은 정책개선 방안 등 조치 필요사항을 마련하여 평가대상기관에 통보하고 인센티브 부여 등 환류
- 개별평가가 당초 취지와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지속 점검·개선

3. 자체평가

□ 평가 방향

- 46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5개, 차관급 21개)을 대상으로 기관장 책임 하에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조직·예산·인사·보수 등에 반영하여 국정운영의 성과 및 책임성 제고
 - * '20년 신설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질병관리청 추가
- 자체평가와 국정방향과의 연계성 강화
 - 국정과제·범정부 핵심 추진과제(예:한국형 뉴딜과제, 탄소중립 과제 등)를 자체평가 과제에 포함
- 주요정책 부문 평가 시 정책성과 및 효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상위목표(전략목표)에 대한 관리도 강화

□ 평가항목

부 문	평가 대상	총괄기관
주요정책	○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관리과제	국조실
재정 사업	일반 재정 ○ 예산, 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성과관리대상 재정사업 * R&D, 재난안전, 균형발전 사업은 제외	기재부
	R&D ○ 전체 정부연구개발 사업 중 3년 평가주기가 도래한 사업	과기정통부
	재난 안전 ○ 재난안전사업	행안부
	균형 발전 ○ 균형발전세부사업	균형위
행정관리역량	○ 조직·인사·정보화 분야 행정관리역량	행안부 인사처

□ 평가 방법

- (평가주체) 중앙행정기관별로 '21년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각 기관별 자체평가위원회가 자체평가 실시
- (평가지표)
 - 주요정책부문 :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 기관 자율적으로 설정하되,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통일적 기준*을 제시
 - * 성과달성도·정책효과성 60% 수준에서 배점
 - 재정사업부문 : 각 부문별로* 평가 총괄기관에서 평가지표 제시
 - * △(부문) 일반재정·R&D·재난안전·균형발전사업 △(주관부처) 기재부·과기부·행안부·균형위
 - 행정관리역량부문 : 평가 총괄기관(행안부, 인사처)에서 평가지표 제시
- (평가방식) 평가 관대화 방지를 위해 상대평가(등급제) 적용
- (실태점검) 기관별 자체평가 결과에 대해 부문별 평가 총괄기관에서 점검

□ 평가결과 공개

- (전략목표 성과) 전 기관 보고서를 통합하여 정부업무평가 포털 (www.evaluation.co.kr) 일괄 게시
 - * 전략목표 성과지표에 대해 기관별로 '성과분석 보고서' 작성
- (자체평가 결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 평가결과 활용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정책개선·조직관리·예산편성 등에 활용하고, 개인 성과급·인사와 연계·반영

4. 정책 현안과제 분석·평가

□ 평가 개요

- 국무총리의 국정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정책 및 사회적 현안 등을 분석·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 법적근거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조,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 평가 대상

- 국무조정실에서 다수부처 관련 사항, 일부부처 소관이지만 파급효과가 큰 사안, 민생 관련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정책을 대상과제로 선정(수시)

* 다수부처 예시 :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제도 효율화 방안('20.7월, 13개 부처)

* 일부부처 예시 : 미성년 연예인 등에 대한 권익보호 개선방안('20.9월, 3개 부처)

□ 평가 방법

- 선정한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현장점검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개선·보완 방안 마련

* 필요시 정부업무평가위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점검·분석팀 구성

- 과제 발굴 및 분석 과정에서의 부처간 협업노력*과 분석을 통해 도출된 개선방안에 대한 이행 노력을 점검

* 부처에서 평가대상 과제를 제안하거나 개선방안 도출에 적극 참여하는 경우 등

□ 평가결과 활용

- 개선방안을 현안조정회의,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등을 통해 확정하고, 주기적인 이행실태 점검 등 후속조치를 체계적으로 관리

- '21년 성과관리·자체평가 실태점검과 연계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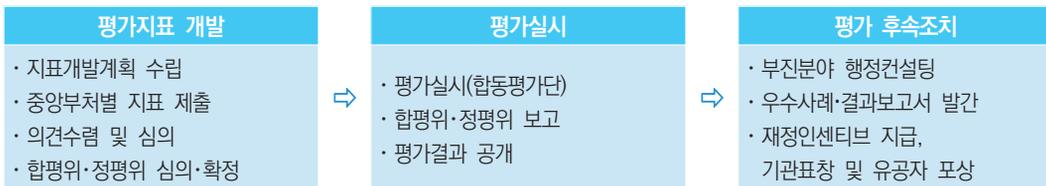
IV. 지방자치단체 평가

1.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평가

1 합동평가

□ 평가 개요

- (평가목적) 국정 주요시책 등의 지자체 추진상황을 평가·환류함으로써 국정의 통합성, 효율성, 책임성 확보
- (평가대상) 17개 시·도(시·군·구 실적 포함) ※ 市部와 道部를 구분하여 평가
- (평가체계) 3년 주기로 지표개발 및 평가 시행



□ 평가 방향

< 기본방향 >

- 정부 국정목표에 부합하는 국가 주요시책 중심으로 평가 항목 구성
 -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실현, 사회적가치 구현, 사회혁신 등 현 정부 국정철학을 반영한 국가 주요시책 중심으로 평가항목 선정
- 자치분권 강화에 따른 분권형 평가체계 구축 및 국민 눈높이 평가 추진
 - 합동평가 각 단계별 지자체 참여범위 확대 및 평가결과의 공개 강화, 국민평가단을 구성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평가 추진

〈 '21년 중점 평가방향 〉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지자체 평가체계 구축
 - 코로나19 유관 지표의 수정·유예 등 지자체 평가부담 완화방안과 코로나 대응 관련 국민체감 성과 평가를 조화롭게 추진
- 지자체 성과창출 의욕 제고 및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 전년도 대비 실적 상승도를 평가하여 인센티브(특교세 및 포상) 제공 등

□ 평가 항목

- 25개 중앙부처 소관 116개 평가지표(정량 94개, 정성 22개) 개발
 - (계속/신규) 계속지표 94개(81.0%), 신규지표 22개(19.0%)
 - (정량/정성) 정량지표 94개(81.0%), 정성지표 22개(19.0%)
 - (부처별) 행안부23개, 복지부 14개, 여가부 11개, 농림부 9개 등

《 5대 국정목표별 평가지표 수 》

(단위 : 개)

총계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16	7 (6.0%)	15 (12.9%)	59 (50.9%)	29 (25.0%)	6 (5.2%)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평가지표의 수정 또는 유예 등 조정 추진

□ 평가 방법

- 수행주체 :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 산하 합동평가단
- 정량지표 평가 : 지표별로 시·도별 목표달성도 평가(절대평가)
- 정성지표 평가 : 지표별로 시·도를 구분하여 우수사례 선정(상대평가)
- 국민평가단 평가 : 코로나19 대응 우수사례 선정(상대평가)

□ 평가결과 활용

- 시부와 도부를 구분하여 평가결과 우수 광역지자체 공개
- 합동평가 결과에 따른 맞춤형 행정컨설팅 실시
- 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분석보고서 및 우수사례집 발간
- 평가결과에 따른 재정인센티브(특별교부세) 지급 및 유공자 포상
- 각 부처의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 정책환류 실태 점검

2 개별평가

□ 평가 방향

- 지자체에 대한 평가를 통합·체계화하고 평가를 받는 지자체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합동평가에 통합 및 간소화
 - 업무특성·평가시기 등 별도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개별평가 실시
- ※ 기관별 지자체 대상 각종 평가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유사·중복 평가 통합·체계화 추진(국조실)

□ 평가 주체

- 평가대상 업무를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 평가 대상

-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국고보조사업 그밖에 국가의 주요시책* 등
 -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시행령 제16조) 1. 국가적인 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시책
 - 2.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시책

□ 평가 방법

- 평가주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협의를 거쳐 평가실시계획 수립
- 평가실시계획을 평가대상기관에 통보하고 평가 시행, 그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

□ 평가결과 활용

- 평가주관기관은 정책개선 방안 등 조치 필요사항을 마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인센티브 부여 등 환류
- 평가가 당초 취지와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지속 점검·개선

2. 자체평가

□ 평가 방향

- 지방자치단체장(광역 및 시·군·구)이 소관 고유사무(전략사업 등) 등을 스스로 평가하고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

□ 평가 항목

- 소속기관을 포함한 지자체의 소관정책 등
 - * 구체적인 평가항목은 지자체장이 결정

□ 평가 방법

-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
 - 민간위원 2/3 이상이 참여하는 자체평가위원회가 정량·정성 평가

- 평가지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개발·활용하되, 과제별 평가결과의 변별력이 강화되도록 평가체계 마련
 - *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별 자체평가 운영현황 조사·분석, 자체평가 운영매뉴얼 보급, 컨설팅 제공 등 지자체 자체평가 지속 지원

□ 평가결과 활용

- 자체평가 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
- 평가결과는 각 지자체에서 차년도 성과관리계획, 예산·인사 등에 반영
-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평가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평가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하고 차년도 자체평가 운영에 반영

V. 공공기관 평가

1. 공공기관 평가 개요

□ 평가 방향

- 공공기관의 경영책임 강화, 투명성 제고와 공공서비스 증진을 위해 경영실적 등을 평가
- 각 부문별로 '사회적 가치' 지표 신설·반영 등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

□ 평가 유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4대 공공기관 유형별로 평가
 - 총 446개 공공기관의 '21년도 경영실적 및 연구성과에 대해 정량·정성 평가 실시

평가대상	주관기관	근거법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132개)	기재부 장관	공공기관운영법
지방공기업 (241개)	행안부 장관· 시·도지사	지방공기업법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47개)	과기연 등 (주관기관평가)	과학기술기본법· 과기출연기관법
	과기정통부 장관 (상위평가)	
경제·인문사회분야 연구기관 (26개)	경인사연	정부출연기관법

□ 평가결과 활용

- (인센티브) 기관장 성과연봉* 및 기관운영예산 차등지급(출연연), 포상 등
 - *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우 직원에게도 성과급 차등지급 적용
- (인사) 경영실적 부진 기관장 해임 건의(공기업) 등
- (환류 및 컨설팅) 우수사례 공유·확산, 부진기관 대상 컨설팅 등

2. 공공기관 유형별 평가계획

1 공기업·준정부기관

□ 평가 방향

- 코로나19로 인한 공공기관의 실적 변동 보정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대응 노력과 성과 평가 강화(가점 부여)
- 공공기관 안전관리, 갑질·채용비리 근절 등 사회적 가치 및 공공기관 혁신노력에 대한 평가 기조 지속

□ 평가 항목

평가항목	공기업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6)	1. 경영전략 및 리더십(6)	1. 경영전략 및 리더십(6)
	2. 사회적 가치 구현(24)	2. 사회적 가치 구현(22)	2. 사회적 가치 구현(22)
	3. 업무효율(5)		
	4. 조직·인사·재무관리(7)	3. 조직·인사·재무관리(4)	3. 조직·인사·재무관리(9)
	5. 보수 및 복리후생비(8.5)	4. 보수 및 복리후생비(8.5)	4. 보수 및 복리후생비(8.5)
	6. 혁신과 소통(4.5)	5. 혁신과 소통(4.5)	5. 혁신과 소통(4.5)
	경영관리 소계: 총 55점	경영관리 소계: 총 45점	경영관리 소계: 총 50점
주요사업	주요사업 계획·활동·성과를 종합평가(45)	주요사업 계획·활동·성과를 종합평가(55)	주요사업 계획·활동·성과를 종합평가(50)
	주요사업 소계: 총 45점	주요사업 소계: 총 55점	주요사업 소계: 총 50점

※ 혁신성장 가점(공기업 2점, 준정부기관 1점) 지표 포함

□ 평가 방법

- 매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전년도 경영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따라 평가
- 기재부 주관, 평가의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교수·회계사 등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이 수행
- 평가결과는 성과급 등에 반영,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제 확립 및 공공서비스 개선 유도

2 지방공기업

□ 평가 방향

- 지방공기업이 사회적 책임 경영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경영, 경영성과, 사회적 가치 분야를 균형 있게 평가
- 지방공기업의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 실적*, 적극행정 실천을 통한 對주민 서비스 제고 실적** 등 평가항목 신설·반영

* 코로나19 대응노력(가점항목) : ①코로나19 대응체계, ②소상공인 등 피해회복 지원, ③지역 소비·투자 확대, ④지역사회 책임성 제고, ⑤기타 사회 기여 및 혁신 등

** 적극행정 실천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및 실행 등(우수사례 별도 선정)

□ 평가 항목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정	비중
지속가능경영	리더십	• 경영층의 리더십, 전략경영, 혁신성과	정량/ 정성	25%
	경영시스템	• 조직·인사관리, 재무관리		
경영성과	주요사업	• 주요사업 활동 및 성과 등 유형별 상이	정량/ 정성	40%
	경영효율성과	• 경영성과 및 효율성의 조화 등 유형별 상이		
	고객만족도	• 고객만족도조사 등 고객평가 개선 성과		
사회적 가치	일자리확대	•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정량/ 정성	35%
	사회적책임	• 소통·참여, 인권·윤리, 재난·안전, 지역상생발전		
가점	코로나19 대응	• 대응체계 구축, 소상공인등 지원, 소비·투자 확대 등	정성	3%
	적극행정 실천	• 적극행정 거버넌스 구축, 실천사례		2%

□ 평가 방법

- 평가의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교수·회계사, 연구원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을 활용하여 실시

* 지역주민과 소통 및 경영평가 관심도 제고를 위해 주민참여단 확대·운영 ('21년 6개 유형, 47개 기관, 94명 참여 → '22년 참여인원 대폭 확대)

3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 평가 방향

- 기관운영 평가 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코로나-19에 대한 조치와 기관장 노력을 평가에 반영
 - 코로나-19 대응 업무혁신, 경제·R&D 지원, 비대면 서비스 등 코로나 대비 기관운영 상 노력 성과를 우대·반영하여 기관운영평가 실시
- (기관운영평가) 연구기관이 기관장의 경영철학에 따라 역할·책임을 성공적 목표로 세운 기관 운영계획서에 대한 성과 우수성 평가 실시
 - ※ (대상) 기관장 임기 주기 평가로 총 47개 기관 중 '21년 9개 기관대상 평가 실시 예정
- (연구사업평가) 기관의 역할·책임 및 중장기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내역사업별 전략목표에 대한 성과 우수성 평가
 - ※ 3·5·6년 주기 평가로 '23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대상 첫 평가 실시 예정, 지금까지는 종합평가 형태로 연구사업 평가 시행

□ 평가 항목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 정	비 중
주관 기관 평가 (부처 및 연구회)	공통 영역	• 기관이 받은 외부평가항목*을 선정 후 정량적으로 환산하여 평가 * 연구보안평가, 경영공시평가, 청렴도평가 등	정량	30%
	자율 영역	• 기관운영에 대한 성과목표단위 과정의 적절성, 성과의 질적우수성 등 평가	정성	50%
	현안대응 영역	• 정책·기술환경 변화 등에 대한 대응노력·성과 평가	정성	20%

↓ ↑

상위 평가 (과기부)	자체평가 절차·체계	• 자체평가계획 수립의 적절성, 위원구성·절차의 적절성, 평가결과 이행체계의 적절성 점검	정성 (메타 평가)	-
	자체평가 운영·결과	• 자체평가 결과의 적절성, 기관발전방향제시의 충실성, 자체평가 운영의 적절성 점검		

□ 평가 방법

- (평가체계) 기관운영 및 연구사업 계획서 수립(연구기관) → 중간컨설팅(연구기관 자율) → 주관기관평가(부처·연구회) → 상위평가(과기정통부)
 - ※ 연구기관별 특성 및 연구분야 등에 따라 산학연 관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 구성
- (결과환류) 출연기관 예산, 인센티브 및 우수성과 포상 등 연계

4 경제·인문사회분야 연구기관

□ 평가 방향

- 국책연구기관 목적에 부합하는 정책대안 개발 및 기초·정책지식 생산을 위해 26개 기관*별 연구 및 경영성과를 평가
 - * 24개 연구기관, 1개 부설기관, 1개 대학원으로 구성
- (국가정책 기여도)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충격에 대응한 연구기관의 대응 및 정책 기여도 평가 강화
 - * 코로나19, 한국판 뉴딜 등 국가의 긴급현안 해결을 위한 연구기관의 대응 노력과 실적 평가 ('20년도 평가부터 국정과제 및 긴급연구 기여도 평가지표 신설, 적용중)
- (예산 및 경영관리) 사회적 가치 및 내·외부 감사 결과 지속적 미이행 사항에 대한 평가 강화
 - * 청년인턴 채용계획 대비 달성도 평가 배점 확대(5점 → 7점)
 - * 녹색제품 의무 구매 실적 평가 신설(1점)
 - *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과 실적 평가 신설(4점)
 - * 내·외부 감사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평가 배점 확대(10점 → 15점)

□ 평가 항목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정	비중
연구분야 (800점)	• 연구과정 관리 (200점)	정성/정량	20%
	• 연구보고서 우수성 (250점)	정성	25%
	• 국가정책 기여도 (350점)	정성	35%
경영분야 (200점)	• 리더십 및 책임경영 (75점)	정성/정량	7.5%
	• 예산 및 경영관리 (125점)	정성/정량	12.5%

□ 평가 방법

- 평가단 총괄반(단장 포함 총 16인)과 연구·경영 분야 평가단(관련 전문가 등 포함), 평가지원반으로 구성·운영
- 연구기관이 제출한 실적보고서에 대한 서면평가 및 실사평가 실시

대상	평가유형	평가부문	근거법률	평가주관
중앙 행정 기관	특정평가 (45개)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정부업무평가법	국조실 등
	자체평가 (46개) * 45+국조실	주요정책(성과관리) 재정사업 행정관리 역량	정부업무평가법 국가재정법 연구성과평가법 재난안전법 국가균형발전법 정부업무평가법	국조실 기재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균형위 행안부 인사처 행안부
		개별평가	개별근거법률	주관부처
	합동평가	25개 기관, 116개 지표	정부업무평가법	행안부 등
지방 자치 단체	자체평가	중앙행정기관과 동일	정부업무평가법	지자체장
	개별평가	개별근거법률	주관부처	
	공기업(36개) 준정부기관(96개)	공공기관운영법	기재부	
공공 기관	기금(준치평가 24개, 자산운용평가 45개)	국가재정법	기재부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47개)	과기연 소관(25개) 과기정통부 산하(16개) 해수부 산하(3개) 원안위 산하(2개) 방사청 산하(1개)	과학기술기본법 과기출연기관법	과기연 과기정통부 해수부 원안위 방사청
	경제·인문사회분야 연구기관(26개)	정부출연기관법	경인사연	
	지방공기업(241개)	지방공기업법	행안부	

2021년도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

2021. 2.



국무조정실

1. 성과관리의 의의

□ 성과관리의 개념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조 제6호)

- '성과관리'란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

□ 정부업무 성과관리의 원칙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4조)

-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
- 성과관리는 정부업무의 성과·정책품질 및 국민의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실시

□ 정부업무 성과관리체계

- 정부업무 성과관리를 위해 '06년 이후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하 '기본법')에 의한 통합적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운영
 - 중앙행정기관은 '성과관리 전략계획(5년 단위)' 및 '성과관리 시행계획, 자체평가 계획(1년 단위)'을 수립
 - 계획에 따라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조직·예산·인사·보수 등에 반영

정부업무 성과관리 추진체계

국무총리
(정부업무평가위원회)

- 성과관리 지침 시달
- 성과목표 및 지표의 타당성 검토
- 자체평가결과 확인·점검

- 성과관리계획 제출
- 자체 점검결과 제출
- 자체평가결과 제출

지방자치단체

-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시행 계획 수립·시행 가능

중앙행정기관

- 성과관리체계 구축·운영
-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성과관리 시행계획 이행 실태 반기별 자체점검
- 성과관리 시행계획 추진실적 자체평가

공공기관평가

-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시행 계획 수립·시행 가능

2. 성과관리 주요 내용

① 계획 수립

- 중앙행정기관은 5년 단위의 '성과관리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기관의 임무와 비전, 전략목표와 5년 단위 성과목표를 제시

※ 성과관리 전략계획의 개념

- 성과관리 전략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기관을 포함한 당해 기관의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5년 단위의 중·장기계획
- 기관의 임무·전략목표 등을 설정하고 동 계획과 관련이 있는 법령에 의한 중·장기 계획의 포함이 가능하며, 「국가재정법」에 의한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반영
- 최초 수립 이후 최소 3년 마다 수정·보완(기본법 제5조 제2항)

- 매년 성과관리 전략계획의 실행계획인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연도의 성과목표와 이의 달성을 위한 정책(사업)과 성과지표를 제시

※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개념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성과관리 전략계획'에 기초하여 당해 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
- 당해 연도의 성과목표·관리과제·성과지표 및 재정부문의 과거 3년간('17~'19) 성과결과 등을 포함

- 국무총리 소속 정부업무평가위원회(국무총리·민간 공동위원장)는 중앙행정기관의 목표체계와 성과지표의 적절성을 검토·조정하는 등 계획 수립을 지원
- 성과관리계획과 국정과제, 부처업무계획, 한국형 뉴딜 과제·탄소중립 과제 등 정부 핵심과제와의 연계를 강화

2 집행·점검

- 중앙행정기관은 주어진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과제의 추진과정과 실적 등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

3 평가(자체평가 등)

- 중앙행정기관은 매년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연말실적을 기준으로 다음해 1월 자체평가 실시
 - 성과관리시행계획의 관리과제와 과제별 성과지표는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의 대상과제 및 성과지표로 활용

4 운영실태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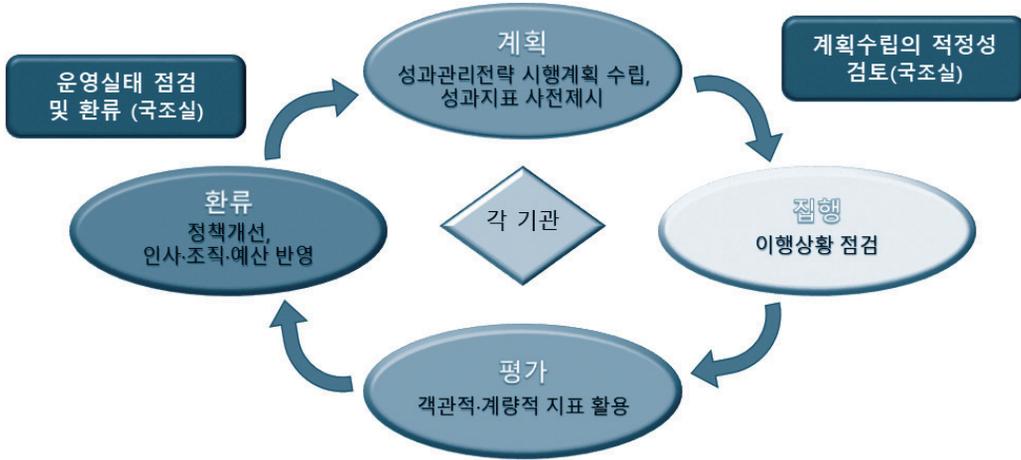
- 국무조정실은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자체평가 운영에 대한 점검을 통해 정부 내 성과관리 발전 지원·유도

5 평가결과의 환류

- 기관 차원에서는 정책개선 또는 예산편성에 반영하거나 조직 관리에 활용

- 개인차원에서는 개인성과 및 인사와 연계하고, 성과급 지급에 반영

〈 성과관리·자체평가 세부 운영 체계 〉



II

2020년도 대비 2021년도 주요 변경사항

□ 성과관리 대상기관 조정

- '20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질병관리청 신설
- 신설된 2개 기관을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대상기관에 포함
* 총 대상기관 수 : 44개 → 46개

□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정 일정 조정

- 부처별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정이 9월에 이루어짐에 따라 연말 자체평가를 고려하여 계획을 수정하는 문제 등 발생
- 성과관리·자체평가가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정 일정을 기존보다 1개월 앞당겨 시행(9월 → 8월)
* 시행계획 수립(3월) 시 예측할 수 없었던 정책추진 환경변화 등을 반영 수정 허용

□ 현 정부 핵심과제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

- 현 정부 임기 마지막 해를 맞아 국정과제와 함께 임기 말 핵심과제에 대한 성과관리가 중요
-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 시 정부 핵심 추진과제*(예: 한국형 뉴딜 과제, 탄소중립 과제 등)를 관리과제에 반드시 포함, 추후 운영실태 점검 시 확인

□ 기관 규모, 업무 범위 등을 고려한 전략목표 설정

- 일부 부처의 경우, 조직 규모, 업무 범위 등에 비해 전략목표 수를 적게 설정하여 부처의 핵심 업무가 전략목표에서 누락
 - * 예) A 부처 : 실장급 6개, 국장급 31개, 110과 → 전략목표 3개
 - B 부처 : 실장급 8개, 국장급 26개, 81과 → 전략목표 8개
- 기관의 핵심 업무가 전략목표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직 규모, 업무범위 등을 고려*하여 전략목표 설정 권고
 - * 유사업무 3~5개 국별 전략목표 설정

□ 자체평가위원회 인적 구성 내실화

- 자체평가위원회 민간위원 중 3개 부처 이상의 자체평가위원을 겸하는 경우도 존재
- 자체평가위원회 활동의 충실성 제고 등을 위해 민간 위원들의 부처 간 지나친 중복 선임 및 특정 부처의 장기간 연임을 제한*
 - * 기존 지침에서는 3개 부처 이상 자체평가위원인 경우 선임 자제 권고
 - (중복 선임) 원칙적으로 2개 부처까지 허용, 다만 불가피한 경우(임기 일시적 중복 등) 3개 부처까지 허용
 - (연임) 2년 임기 기준, 3회까지 허용(최대 6년)
 - * 다만, 위원장으로 선임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4회 이상 연임 허용

□ 자체평가 제도 운영 관련 의견수렴 실시

-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조직 구성원 수용도 제고를 위하여, 계획수립 시 자체평가제도 운영과 관련한 개선 건의사항 등 수렴 권고
- 성과관리·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 시 '시행계획 수립의 사전검토 등 충실성' 항목에서 제도 운영과 관련한 의견수렴 여부 확인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영상회의 인정

-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대면회의 개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고려, 자체평가위원회 관련 영상회의 개최 시 대면회의 실적으로 인정

* 서면회의는 대면회의로 불인정

□ 성과관리·자체평가 운영 우수기관 포상

- 성과관리·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결과에 대한 포상 미실시로, 구성원 관심도 및 동기부여 약화
- '20년도 성과관리·자체평가 운영 우수기관에 대해 예산 범위 내 일정 규모의 포상을 다시 실시하고, 추후 포상 규모 확대 검토 예정

III

성과관리계획 수립

1. 계획수립 기본방향

□ '통합 성과관리 체계'의 구축 (기본법 제1조)

- 부분적·단편적 성과관리 방식을 개선하여 기관의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국정기조와 기관·부서·개인의 성과관리가 연계된 통합 성과관리체계 구축

□ 최대한의 자율성 부여와 엄격한 책무성 확보 (기본법 제4조)

- 정책 등의 계획 수립과 집행에 대하여는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정부업무의 성과와 정책품질, 국민 만족도를 제고
- * 특히, 계획 수립 시 관계기관, 이해관계인 및 조직 구성원들과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설정에 관한 의견조율 등 충분한 합의를 거쳐 수립

□ 목표와 전략에 입각한 사업계획과 업무관리 (기본법 제5조, 제6조)

- 임무·전략목표·성과목표·관리과제의 일관성 있는 성과관리를 위해 임무에 대한 명확한 규명과 이에 근거한 구체적인 전략 및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수단 강구

* 기존 조직구조(실·국·과)에 맞춘 상향식 성과관리계획 수립(전략목표·성과목표·관리과제) 지양

□ 평가결과를 정책개선 및 자원배분에 환류 (기본법 제28조~제30조)

- 제시된 목표와 달성도에 대한 평가결과를 정책개선, 인사·조직·재정 등에 환류하는 등 성과와 보상 등을 구체적으로 연계

2. 계획수립 대상기관

□ 정부업무평가 대상이 되는 46개 중앙행정기관

〈 성과관리계획 수립 대상기관 〉

구 분	기 관 명	계
장관급 기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방송통신위원회, 공정 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무조정실	25개
차관급 기관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질병관리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해양경찰청, 원자력안전위원회	21개

* 검찰청은 법무부에 포함하여 작성

3. 계획수립 범위

-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성과관리 시행계획’은 당해 기관이 임무 달성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전반적인 업무를 포괄하여 작성

〈 계획 수립 범위 〉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정책수단을 망라하는 것으로 계획기간 내에 해당 기관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과제를 대상으로 함
 - 인건비·기본경비 등을 통해 수행되는 정책·제도·규제 등 정책관련 업무도 포함

4. 성과관리 전략계획 작성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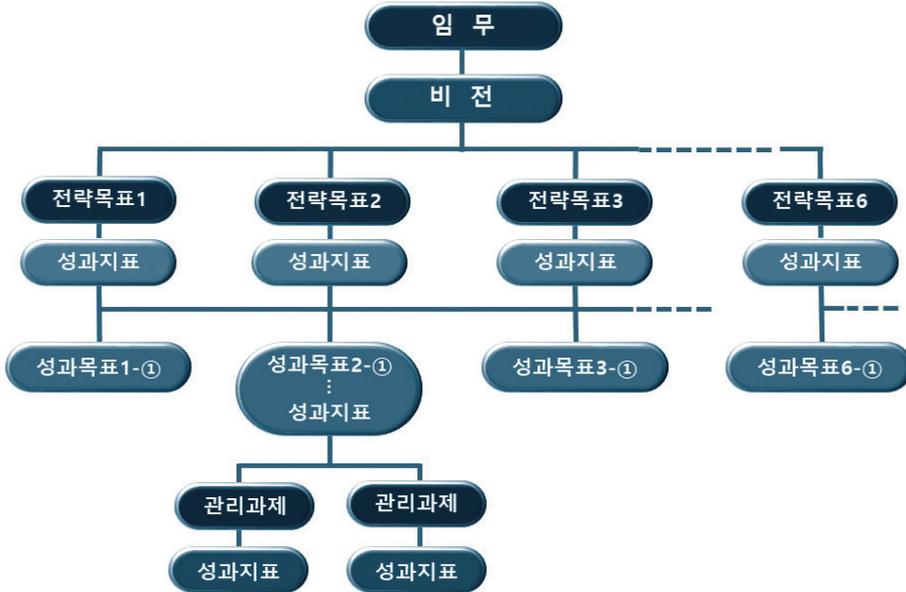
1 기본방향

- ◇ 기관 임무와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의 명확한 제시
- ◇ 계획수립 과정에서 타 기관 및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협의
- ◇ 환경적 요인에 대한 폭넓은 사전 분석 실시

- ‘성과관리 전략계획’ 수립 과정은 조직 구성원간 목표를 공유하고 사업추진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며, 조직 활동의 목표와 기본방향을 상시 점검하는 연속 과정임을 인식
 - 조직원에게 일방적으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과 이해 관계자 간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하는 포괄적 과정으로 추진
- ‘성과관리 전략계획’의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전체적인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임무와 전략목표간의 연계를 고려
- ‘성과관리 전략계획’의 중·장기적 전망의 구체화를 위해 기관의 임무와 장기목표 및 외부 환경요인에 대해 충분히 분석

② 목표 수립체계 및 방법

- 해당 기관의 중·장기적 전략목표와 중·장기 성과목표를 제시하며 각각의 요소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체계화



* 인사·조직 분야 및 성과관리 역량 강화 등 기관 관리역량과 관련한 전략목표, 성과목표 설정 여부는 기관 업무 특성에 따라 자율 결정

(1) 임무와 비전

- 임무는 해당 기관의 존재이유(목적)와 주요기능을 의미
 - 해당 기관의 설립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규정, 관계법령에 구체적으로 제시된 역할 등에 근거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지향적'인 내용으로 설정
 - 설정된 임무는 기관의 모든 업무를 포괄하는 것이어야 하며, 타 기관과의 불필요한 중복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함
 - 표현은 구체적이어야 하며, 목표 지향적이어야 함

[사례] (경찰청)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진압하며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한다.”
- 비전은 장기적인 목표와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조직의 정책 추진방향 설정과 구성원에 대한 동기부여 기능을 수행

- 비전 설정은 조직의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에 기초하여 이해하기 쉽고 종합적이며 고무적인 표현으로 함

* 단순한 전략의 나열이나 상상에 의한 비전 수립은 삼가도록 주의

(2) 전략목표

- 전략목표는 국정지표, 국정전략, 기관의 임무와 비전 등을 감안하여 해당기관이 중점을 두고 지향하거나 추진해야 할 내용으로 제시
 - 전략목표는 기관의 임무와 논리적 연계성을 가져야 하며, 성과관리 전략계획에 이러한 연계성을 명확히 기술하여야 함
- 전략목표는 성과관리 전략계획의 계획기간(향후 5년) 동안 성과의 개선수준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해야 함
 - 전략목표는 일반적이거나 추상적 표현이 아닌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며, 표현방식은 국민이 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있도록 표어 형태로 작성
 - [사례]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한다.”
 - [사례] “식·의약 위해 사전예방 및 열린 소통으로 국민의 안심까지 확보한다.”
 - * 전략목표를 임무 수준으로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설정할 경우 향후 정책성과 예측 또는 성과목표 설정이 곤란
 - [사례] “미래지향적 ○○역량을 강화한다”(×), “선진 ○○체계를 구축한다.”(×)
- 전략목표 수립 시 국가 장기계획 또는 이와 관련이 있는 법령에 의한 중·장기 계획의 내용을 포함 (기본법 제5조 제1항)
 -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해당 기관이 소관 분야별로 수립한 중·장기 계획의 주요내용을 활용
 - [사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5년 주기)
 - [사례]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사회보장 기본계획’ (5년 주기)
- 전략목표 수립 시 「국가재정법」 제7조에 의한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인 ‘국가재정 운용계획’의 관련 내용을 반영 (기본법 제5조 제3항)
 - ‘국가재정 운용계획’ 내용 중 ‘재정운용방향’과 ‘분야별 투자방향’의 내용 등을 반영

- 전략목표는 기관내의 실·국·본부 등 조직체계에 따라 설정할 필요는 없으며, 2개 이상의 부서에 의해 수행되더라도 공통된 목적을 가지는 정책은 동일한 전략목표로 통합
 - 기관의 핵심 업무가 전략목표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직 규모, 업무범위 등을 고려*하여 전략 목표 설정 권고
 - * 유사업무 3~5개 국별 전략목표 설정 권장

(3) 성과목표

- 성과목표는 전략목표를 구체화하는 하위목표로서 전략목표 실현을 위해 계획기간 내에 달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설정
 - 국정과제, 부처업무계획, 저출산대책·한국형 뉴딜 등 범정부 핵심 과제에서 해당 기관이 중점을 두고 중·장기적으로 지향하거나 추진해야 할 내용을 성과목표로 포함
 - 전략목표별로 설정하는 성과목표의 수는 제한이 없으며, 전반적인 업무를 고려하여 설정
 - 다만, 특정 전략목표에 지나치게 많은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균형을 상실하지 않도록 주의
- 성과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계획 연도와 목표 수준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 정책방향 파악이 용이하도록 할 것
 - 성과목표별로 대표성 있는 결과지표 위주의 성과지표와 연차별 목표 수준을 제시
- 성과목표도 전략목표와 동일하게 계획기간(향후 5년) 동안 성과의 개선수준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해야 함
 - 일반적이거나 추상적 표현이 아닌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며, 표현방식은 표어 형태로 작성

(4) 성과지표

- (전략목표별 성과지표) 전략목표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5년 후 목표치 및 관리계획 제시
 - * 법 §5② : 성과관리전략계획은 최소 3년마다 수정·보완, 기존 계획은 '20년에 수립
- 전략목표의 성과를 통합적 시각에서 파악할 수 있고, 지엽적이지 않으며 국민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지표로 선정

- 중장기적인 지표 관리를 위해 지표 연속성 유지 원칙, 다만 개선이 필요한 일부 지표*는 수정
- * △'20년 전략목표 성과지표 검토 시 정평위 개선권고를 미반영한 경우 △기준 지표의 대표성·국민체감도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경우 등
- 결과중심의 파급효과를 측정할 수 있고 계량화가 가능한 지표로 선정하되, 통계 출처 및 생산시기 등을 명확히 적시
- 성과목표 성과지표 및 관리과제 성과지표와 중복되거나 관리과제의 복합지표로 구성하는 것은 지양

〈 전략목표 성과지표 설정 기준 〉

<p>① 핵심 결과상태 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목표에 담긴 핵심 내용을 성과지표로 제시 ○ 전략목표가 추구하는 결과상태를 대표·반영하는 성과지표로 설정 * 외생요인이 작용하더라도 정책 방향성을 대표할 수 있다면 성과지표로 설정 <p>② 중장기 성과관리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년도 개선이 어렵더라도 중장기 성과 견인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지표 개발 * 당해연도 내 통계 생산이 되지 않더라도 1~2년 내 산출 가능하다면 사용 가능 <p>③ 국민 체감도 제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이 체감하고 이해하기 쉬운 성과지표 설정 ○ 정부 내부적인 활동이나 수행상태를 제시하는 성과지표는 지양 <p>④ 신뢰성 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뢰도·만족도 등 주관적 인식조사보다는 객관적인 통계치 사용 * 국제평가지수, e 나라지표, 국가승인통계 등 적극 활용 ○ 하위 지표를 나열하는 형태의 복합지표는 지양 * 복합지표를 구성하는 지표간 단위가 상이하고, 어떤 요인에 의해 성과가 변동되었는지 쉽게 알기 곤란
--

-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성과지표와 구별되는 대표성 있는 성과지표를 제시
- 관리과제 성과지표와 중복되거나 관리과제의 복합지표로 구성하는 것은 지양하되, 통계 출처 및 생산시기 등을 명확히 적시

③ 계획 작성 방법

(1) 성과관리 전략계획 작성 모델

- 다음의 체계를 참고하여 목표와 추진계획 등을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기술

〈 성과관리 전략계획 작성 모델 〉

I. 그간의 정책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

- 그간의 정책추진 기초 및 추진성과, 향후 정책 추진방향 제시

※ 기관 상위 차원의 전반적·추세적 성과 확인·분석 내용을 반드시 포함

II. 일반현황 및 전략계획 개요

- 기관의 일반현황 (조직·인원·재정 등)
- 전략계획 개요
- 목표체계도 (임무·비전 설명 및 체계 도식화)

III. 세부 추진계획

-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 전략목표별 성과지표 및 5년 후 목표치 제시
 - 하위 성과목표 제시(성과목표 성과지표 포함)
 - 추진계획 및 실행수단
 - 외부 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참고자료 및 관련 정보의 근거

* 전체적인 작성체계는 유지하되, 기관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신축적으로 조정 가능

(2) 항목별 작성요령 (세부 작성요령은 【붙임1】 양식 참조)

I. 그간의 정책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

○ 그간의 정책성과

- 장기적 관점에서 현재까지의 정책기조 및 정책추진 성과에 대한 종합평가와 이에 근거한 현 시점에서의 진단 수준 제시

※ 기관 상위 차원의 전반적·추세적 성과 확인·분석 내용을 반드시 포함

- *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중 대표성이 있는 주요 성과지표를 적극 활용하여 분석하고, 관련통계 및 그래프 등을 제시하여 구체성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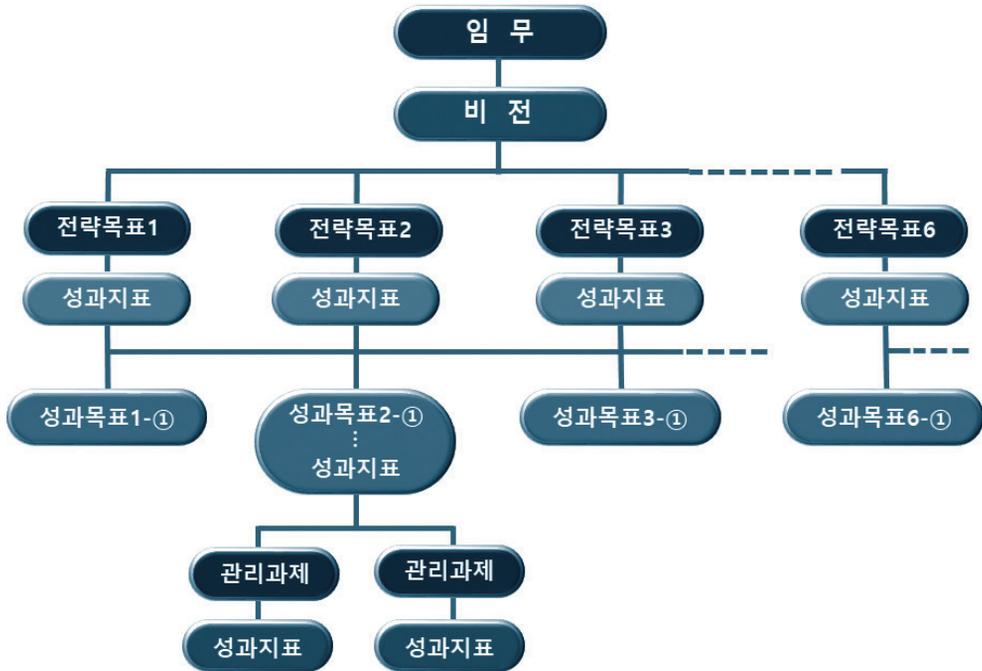
- 향후 정책추진 방향
 - 앞으로 해당 기관이 추진할 장기적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전략목표 설정의 근거로 활용
 - 목표설정의 근거 및 기준을 제시하는 방향 설정 부분이므로 전략 목표를 요약하거나 동일하게 기술하지 않도록 주의
- II. 일반현황 및 전략계획 개요
 - 기관의 일반현황
 - 기관 현황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를 위해 조직 및 인원(조직도, 조직·직급별 인원), 주요 항목별 재정규모 등을 제시
 - 전략계획 개요
 - 전략계획서 작성 시 주안점을 두고 고려했던 요소와 국민들이 주목해서 보아야 할 새로운 내용 및 그 배경에 대해 기술
 - 목표체계
 - 해당 기관이 추진해야 할 기본적인 고유 임무와 비전에 대해 상세하게 서술하고 이에 근거하여 수립된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의 구성체계를 도식화하여 제시
- III. 세부 추진계획
 - 각각의 전략목표별로 해당 전략목표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와 목표치, 하위 성과목표(성과목표 성과지표 포함)를 제시하고, 전략목표와 성과목표와의 연관관계, 구체적인 추진계획 등을 제시
 - 성과목표별 추진계획 및 세부 실행수단, 기술, 각종 자원(자원·인력·정보)등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 과정과 수단 제시
 - * 임무, 전략목표, 성과목표 간의 논리적 연계성과 정책 추진을 통해 목표가 달성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
 - 전략목표 추진과 관련한 외부 환경요인 및 이해관계자 분석, 참고자료 및 관련 정보 제시

5. 성과관리 시행계획 작성방법

1 기본방향

- ◇ 성과관리 전략계획에 기초한 당해 연도 성과목표의 명확한 정의
- ◇ 목표달성을 위한 방법 및 제약조건에 대한 엄격한 분석
- ◇ 성과목표 설정 시 이해관계인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 등
- ◇ 성과의 측정을 위한 객관적인 성과지표 제시
- ◇ 성과목표·관리과제 설정 시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 반영

② 목표수립 체계 및 방법



* 인사·조직 분야 및 성과관리 역량 강화 등 기관 관리역량과 관련된 성과목표와 관리과제 설정 여부는 기관 업무 특성에 따라 자율 결정

(1) 임무·비전·전략목표

-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의 임무·비전·전략목표는 '성과관리 전략계획' 상의 임무·비전·전략목표를 인용하여 동일하게 작성

(2) 성과목표

- 해당 연도의 성과목표로서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어야 함
 - 전략목표-성과목표-관리과제 간의 연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며, 최종적인 효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결과 지향적으로 설정
 - 관리과제보다 상위 수준에서 통합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관리과제의 결과를 대표하는 수준으로 설정

- 국정과제, 부처업무계획, 저출산대책·한국형 뉴딜 등 범정부 핵심 과제에서 해당 기관이 중점을 두고 당해 연도에 추진해야 할 내용을 반드시 포함
- 성과목표 범위를 과·팀 등 조직체계에 따라 설정할 필요는 없으며 다수의 과·팀에 의해 수행되는 사항이라도 공통된 목적을 가질 경우는 통합
- 전략목표별로 설정하는 성과목표의 수는 제한이 없으며, 업무 전반을 고려하여 설정
 - 다만, 특정 전략목표에 지나치게 많은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균형을 상실하지 않도록 주의
[사례] 000부의 경우, 7개 전략목표에 54개의 성과목표를 제시하면서, 그 중 1개의 전략목표에 17개의 성과목표를 제시하여 목표체계가 균형 상실
- 성과목표는 당해 연도 동안 성과의 개선 수준을 성과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함
 - 성과목표는 일반적·추상적 표현이 아닌 구체적 내용으로 작성하며 표현방식은 표어 형태로 수립
 - * ‘성과관리 전략계획’의 성과목표와 ‘성과관리 시행계획’상의 성과목표는 동일해도 무방

(3) 관리과제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개별 정책 또는 사업 단위를 의미하며, 예산·비예산 정책(사업)을 포괄
 - 관리과제는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성과관리가 필요한 정책·사업을 대상으로 선정

* 사업예산 없이 인건비, 기본경비 등을 통해 수행되는 정책·제도·규제 등도 관리과제로 선정하여 관리할 것 [사례]

- 성과목표 : 공공기관 자율·책임경영 강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선도
- 관리과제 : ①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 및 공정 채용시스템 확립 ② 공공기관 보수체계 합리화 ③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관리 ④ 국민 소통·참여·개방 확대

- 하나의 성과목표가 다수의 이질적인 관리과제 또는 한 개의 관리과제로 구성되지 않도록 목표·수단의 논리적 연계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관리과제를 설정

[사례] 성과목표(세계 기상업무 발전에 기여하는 국제협력 추진)에 1개 관리과제(국제협력 효과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 국제활동 증진)로 구성

- 국정과제 등 주요 국정기조, 정부 핵심과제에서 해당 성과목표와 연계하여 추진해야 할 내용을 관리과제로 반드시 포함
 - * 국정과제, 부처업무계획, 한국형뉴딜·탄소중립사회 등 범정부 핵심과제
- 관리과제는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포함하여야 함

(4) 성과지표

- 전략목표별 성과지표,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 성과관리 전략계획 시 설정한 전략목표·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활용
-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부처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정하되,
 - 재정사업과 관련된 성과지표를 포함하여 재정사업 평가와의 연계 강화(성과계획서와 공통 지표 사용)
 -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과제는 가급적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성과지표 제시

※ '공통지표'는 성과관리 시행계획과 성과계획서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성과지표를 의미(이하 같음)

□ 사회적 가치란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

사회적 가치	주요 의미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행복추구권, 평등권, 알권리, 직업의 자유, 안정적 주거생활 보장 등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 보장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 생활환경의 유지	시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 적극적 조치 필요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의복지의 제공	인간다운 생활의 기본조건으로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를 국가에 요구하고 국가는 이를 제공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할 수 있는 권리보장, 노동3권, 안정적인 근로조건 유지, 고용안정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여성, 노인, 청소년, 신체장애자, 기타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 정책 추진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협력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필요한 규제·조정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민간·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비정규직 축소 등 좋은 일자리 확대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자치와 분권의 원칙을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 보장하는 지방자치 실현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육성,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부작용 해소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사회적 존재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인권, 노동권, 환경, 소비자 보호, 지역사회 공헌, 좋은 지배구조 형성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민주적 의사결정과 시민 참여를 통한 국민주권 국가 실현을 위한 정부 운영방식 개선, 참여 기제 확보, 참여 수준 심화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	경제적 양극화 등으로 파괴된 사회 공동체 회복 추구, 시민사회 등 제3섹터의 지원 및 육성

* 출처 : 정부혁신 추진계획(행안부, '18.3)

③ 계획 작성 방법

(1) 성과관리 시행계획 작성 모델

- 해당 연도의 성과목표와 이의 달성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를 최대한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기술

〈 성과관리 시행계획 작성 모델 〉

I. 2021년도 정책 추진방향

- 그간의 정책성과 및 당해 연도 정책 추진방향

II.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 기관의 일반 현황 (조직·인원·재정 등)
- 시행계획 개요
 - 전략계획과의 연관성, 목표체계도,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현황

III. 세부 추진계획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관리과제 및 성과지표 제시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 계획
 - 관리과제의 내용·파급효과·연차별 추진계획 등

IV. 환류 등 관련계획

-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결과의 환류
- 기관 전반의 변화관리계획
- 현장의견의 정책반영계획

(2) 항목별 작성 요령 (세부 작성요령은 【붙임1】 양식 참조)

I. 2021년도 정책 추진방향

- 그간의 정책성과 및 당해 연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방향 제시
 - 당해 연도에 해당 기관이 중점 추진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연간 '성과목표' 설정의 근거

II.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 기관의 일반현황
 - 조직 및 인원, 주요기능, 예산규모 현황을 종합적으로 정리
- 시행계획의 개요
 - 시행계획의 근거가 되는 '성과관리 전략계획'의 핵심사항을 요약하고 전략계획과의 연관성을 기술
 - * 성과관리 전략계획에서 제시한 임무 및 비전, 전략목표가 당해 연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제시
 - 시행계획 수립시 가장 중점을 두었던 분야, 국민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 주요 정책환경 변화 및 동향 등 시행계획 수립 기본방향과 특성 등을 제시
 - 당해 연도에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 등의 목표 체계도를 제시하고, 목표와 관리과제 현황 기술

III. 세부 추진계획

①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성과목표를 기준으로 관리과제별 사업목적 및 주요내용, 기대효과, 정책·사업 수혜자 및 이해관계자, 관련 재정사업 내역 등을 제시
- 각 과제가 해당 목표 달성에 연계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투입되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고려한 계획 및 수단을 제시
 - * 성과관리 시행계획상 관리과제와 연관성이 있는 성과계획서상 재정사업(관리과제)을 모두 포함할 것(성과계획서상 관리과제 코드 기입)

② 성과지표의 제시

- 제시된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별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제시하고 이의 검증방법 등을 기술
 - *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설정 여부는 부처별 업무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재정사업과 관련된 성과지표를 포함하여 재정사업 평가와의 연계 강화(성과계획서와 공통지표 사용)

③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등

- 성과목표 달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을 제시

IV. 환류 등 관련계획

- 성과관리 시행계획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결과의 환류체계, 기관 전반의 변화관리 계획, 현장의견의 정책반영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이행상황 점검은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별 추진정도, 성과달성 정도 등을 점검하는 체계 및 방법 등을 기술 (기본법 제6조 제4항)
 - 평가결과의 환류체계에는 평가결과를 조직·인사·예산 및 성과급에 반영하고 문제 정책을 개선하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 주요 점검 및 평가 일정, 각 기관 성과관리체계 구성 및 운영방법을 상세하게 설명
 - * 「정부 조직관리지침」(조직),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 「예산편성지침」(예산), 「공무원 보수등의 업무지침」(성과급) 등을 참고하여, 정부업무평가결과를 어느 정도의 비율로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제시
 - * 인사·성과급의 경우 직급별 반영비율과 반영방법을 상세히 제시
 - 기관 전반의 변화관리에는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변화관리방안(예산절감·업무 프로세스·조직문화·성과측정 체계 개선 등)을 제시
 - * 각 기관의 성과측정 체계 개선을 위한 성과지표 개발 노력, 통계인프라 확충 노력, 성과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에 관한 연간 추진계획을 제시
 - 현장의견의 정책반영계획에는 정책수요자·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한 기관차원의 현장의견 수렴방안을 제시
 - * △부처별 '21년도 관리 대상과제 △과제별 의견수렴 방법 △의견수렴 결과 관리 △전담부서 및 담당자 지정 등 관리체계 △의견수렴 운영상황 주기적 점검 △관련교육 등 역량강화 방안 등 포함

4 성과지표 설정 방법

(1) 기본원칙

- 성과지표는 정책이나 사업의 목표 달성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객관적·정량적으로 설정하되, 객관적·정량적 설정이 곤란한 경우는 최대한 이를 담보할 수 있는 형태로 설정
(「정부업무평가기본법」§6②)

(2) 성과지표 설정 시 고려사항

① 정책 대표성

- 성과지표는 해당 성과목표·관리과제의 핵심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예시①), 지표 개발 용이성만을 고려하여 지엽적인 내용으로 설정하지 않도록 주의(예시②)

*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선진국·타 기관 사례 등에 대한 벤치마킹과 전문 연구기관 활용 등 기관별 지표개발 노력 필요

[예시]

성과목표	성과지표	비 고
①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강화와 민·관·산·학·연 협력을 통해 기술개발 환경을 조성한다	· R&D 수행과제의 사업화 성공률	· 단순 R&D 지원 뿐만 아니라 수행과제가 실제 사업화에 성공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②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학습자 중심의 평생 직업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고졸 희망시대를 실현한다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취업률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취업률은 평생직업교육 체계 구축 내용을 대표하지 못함

② 목표치 수준의 적절성

- 목표치는 과거 3년간의 추세치 및 전년도 성과에 근거하여 적극적 업무 수행 관점에서 도전적으로 설정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근거와 논리를 통해 목표치를 설정하였는지 명확히 제시

[예시]

성과목표	성과지표	비 고
국제적 안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교류·협력을 전략적으로 강화·발전시킨다	· 양자·다자 국제협력 및 국제평화활동 추진실적	· 성과목표 목표치를 매년 동일하게 100%로 설정(개선상황 확인 한계)

※ 목표치 설정 시 고려사항

- 부처는 목표치 달성 가능성을 고려하여 일부 도전적 목표치 제시 보다 관대한 목표치 설정 경향을 보이고 있음
 - * ('20년 국조실 점검결과) 성과목표 성과지표 중 도전적 목표치 설정 비율 70%
- 부처는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 시 목표치를 도전적으로 설정하고 부처 자체평가 시 성과목표치의 적극성 여부를 지표에 반영
- 국조실은 부처가 제출한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검토하여 목표치의 적극성이 부족한 경우 보완토록 하고, 성과관리 실태점검 시 목표치 도전적 설정여부 중점 점검예정

③ 목표와 결과간 인과성

-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요인의 통제가 가능하고,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기관의 직접적인 노력과 역량이 포함된 지표 설정
 - * 환율·유가 등 기관의 노력여부와 관계가 없는 변수들을 최소화하고, 단순한 예산투입과 참여건수와 같은 지표의 사용 지양

[예시]

성과목표	성과지표	비 고
적극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무원 선발 및 균형인재채용을 확대한다	·공무원 선발실적 (최종선발인원/ 선발예정인원*100)	·5·7·9급 공채 및 경력채용 등 선발 시, 과락 등 채용 목표인원 미달 가능성이 거의 없어 실제 해당 기관의 노력과는 인과성이 떨어짐

④ 성과지표의 명확성 및 구체성

- 성과목표 또는 사업의 핵심적인 내용을 대상으로 명확하고 구체적인 성과지표 개발
 - * 조직 구성원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제시

[예시]

성과목표	성과지표	비 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거점도시 조성	·문화기반 조성 실적	·'문화기반 조성 실적'이라는 모호한 지표를 설정하여 목표 달성 수준을 측정하기 곤란

⑤ 측정가능성

- 성과지표의 측정방법 및 근거 등은 공식적인 자료를 활용하며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는 등 성과측정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예시]

성과지표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비 고
복권 구매 서비스 만족도	·전문조사기관 위탁조사	·자료수집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자료의 신뢰성 부족

- IMD*·WEF**·UN 등의 ‘국제평가지수’를 성과지표에 반영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

* IMD 국제경쟁력 평가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에서 실시하는 국제경쟁력 평가로 1989년부터 매년 실시 중

** WEF 국제경쟁력 평가 : 국제경제포럼(WEF)에서 실시하는 국제경쟁력 평가로 1979년부터 매년 실시 중

⑥ 기한성

- 사업 종료 후 산출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아 해당 연도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여야 함

- 장기적인 사업목표인 경우도 연간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일정기간 동안의 성과를 점검하도록 해야 함

- 당해 연도에 사업은 종료되었으나 평가시점에서 산출 또는 측정 가능한 결과를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

- 당해 연도에 수행한 과정과 내용을 왜곡 없이 서술하고 결과로 제시할 내용과 일정에 대한 계획을 자세하게 기술

[예시]

성과목표	성과지표	비 고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의 신속한 제공	·결과 공표시기 단축 (6~13개월)	·해당 기관의 노력을 통해 관련 절차 개선과 차질 없는 추진으로 결과 공표시기의 단축이 확실시되나, 총조사 종료시점이 다음해 11월이어서 결과 공표시기 단축 확인은 다음해에나 가능하여 목표달성도 평가 불가

⑦ 비교가능성

- 예산편성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과거의 성과 및 유사사업의 성과와 비교 가능하도록 설정
[예시] 국유지 전수 조사율, 평균 지진 통보 소요시간, 5대 범죄 발생대비 검거율, 기업 호감도 지수 등

(3) 성과지표 개발 절차

① 임무·비전·전략목표·성과목표 확인

- 지표 개발에 앞서 기관의 임무와 비전, 전략목표, 성과목표의 주요 내용 확인

② 성과지표의 수집

- 기존 지표와 해외 또는 타 기관 선진지표를 수집하여 성과지표 풀(pool) 형성

③ 후보 성과지표 개발

- 현재 활용되고 있는 지표가 적절하지 않거나 선진사례를 통해 지표수집이 어려운 경우, 전략목표와 성과목표에 따른 적절한 지표를 새롭게 개발
- 새로 개발된 지표들 중 전략목표와 성과목표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지표를 대상으로 목록 작성

④ 1차 성과지표 선정

- 성과지표가 지나치게 세분화된 경우 대표성이 있는 소수의 성과지표로 통합
- 우수한 평가를 받기 위해 달성이 용이한 지표를 사용하였는지 점검
- 수시 측정이 가능하고 자료 활용이 용이한 지표를 선택
- 성과지표는 조직 내에서 토론 및 검토 등을 통해 선정

⑤ 성과지표 조정 및 확정

- 성과지표 간 중복 또는 상충여부를 검토·조정하며 성과지표 달성을 위한 활동이 부서 간 연계를 통해 추진되는 경우 성과에 대한 책임 범위를 결정
- 성과지표가 확정되면 확정된 성과지표에 대한 관리방안을 반드시 수립
- 성과지표 관련 자료의 생성과 관리절차를 구체화하고, 외부 환경변화 및 조직변화에 따른 성과지표의 변경·수정 등 지속적 관리방안을 명확화
- 성과지표는 자체평가위원회와 외부 전문가 합동 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확정

⑥ 성과지표의 상세화

- 구체적인 측정방법 및 평가기준에 의한 상세화
- 계산식 표현을 통한 상세화

* 성과지표의 구체적 개발방안은「성과지표 개발·관리 매뉴얼」(’15.3, 국무조정실) 참고

5 성과지표 관리

- 주관부처 별로 이행상황에 대해 반기별로 자체점검 실시
(성과관리 시행계획 이행상황 자체점검 시 포함하여 점검)
 -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 추진과정상 문제점 발굴 및 개선·보완사항 등 강구
- 전략목표 성과지표의 경우 성과분석을 통해 중장기적·거시적 성과관리 추진
- 국조실은 전략목표 성과지표 점검을 통해 부처의 전체적이고 중장기적 정책성과를 확인하고 정책방향을 조율
 - 국민들이 전략목표 성과지표를 통해 부처의 성과를 쉽게 알 수 있어 각 행정기관의 해당 활동에 대한 책임성·효과성 제고

« 참고자료 »

성과지표의 유형

□ 정량적 측정 여부에 따른 분류

- 정량적 측정 여부에 따라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로 구분

구분	정량지표 (계량지표)	정성지표 (비계량지표)
정의	구체화된 양적 수치로 측정 가능	양적 수치로 측정 불가능
특성	평가자의 주관에 개입될 수 없음 반복측정시 동일한 결과 도출	평가자의 주관 개입 가능성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량농지조성면적 - 해외건설 수주액 - 관광수입액 증가율 - 인구10만 명당 5대범죄 발생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인 만족도 - 주요 국정과제 대국민 인지도 -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정도 - 제도개선 과제 이행도

□ 성과정보의 성격이나 내용에 따른 분류

- 지표를 통해 측정하고 제시되는 성과정보의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 투입지표, 과정지표, 산출지표, 결과지표로 구분

구분	개념	특성
투입지표	·예산·인력 등 투입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예시) 직업훈련교육 예산 집행율	·예산집행과 사업 진행과정 상의 문제점을 발견하는데 도움
과정지표	·사업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출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예시) 직업훈련 교육별 진도율	·사업 진도 등 사업추진 정도를 중간 점검하는데 도움
산출지표	·사업완료 후 나타나는 1차적 산출물을 나타내는 지표 (예시) 직업훈련 교육 수료자 수	·투입에 비례하여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였는가를 평가하는데 도움
결과지표	·1차적 산출물을 통해 나타나는 궁극적인 사업의 효과, 정책이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 (예시) 직업훈련 수료 후 소득증가율	·사업이 의도한 최종목표의 달성정도에 따른 영향과 효과를 측정하는데 도움

6.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성과관리계획 확정 및 제출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1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확정
- 확정된 '21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은 전자통합평가시스템(e-IPSES)에 등록('21.3.31 까지)

□ 성과관리 시행계획 심의

- 국무조정실은 정부의 국정목표와 부처 성과관리계획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목표체계 및 성과 지표의 적절성 등 계획의 타당성 검토
-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시행계획 검토결과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심의·의결 후 보완요청

□ 성과관리계획 수정·보완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수정·보완하여 제출(e-IPSES 등록)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

※ 성과관리 시행계획 작성·제출 시 유의사항

- hwp파일을 활용하여 작성하고 목차 등에 '하이퍼링크(hyperlink)' 기능 포함
- 전자통합평가시스템상의 '성과관리시스템'에 입력
- 최종인쇄물을 국회에 제출

IV

성과관리 시행계획 이행상황 자체점검

□ 추진배경

- 중앙행정기관장은 ‘성과관리 시행계획’ 이행상황에 대한 반기별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함(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6조 제4항)
 - 성과관리 시행계획이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 추진과정상 문제점 발굴 및 개선·보완방안 강구 등 점검 필요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21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 관리과제
- 점검내용
 -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대비 추진실적('21.6.30, 12.31기준)
 - 부진사유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 개선·보완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계획도 강구, 재정사업평가에서 제시된 미흡사업의 개선사항 조치내용 반영
- 점검절차 : 자체점검 결과 자체평가위원회 보고 후 e-IPSES 등록
- 점검기한 : '21.7월말까지(상반기), '22.1월말(하반기)
 - * 하반기 자체점검은 자체평가로 같음
- 점검방법 : 붙임 서식에 따라 각 부처(청)별 자체점검
 - * 작성서식 : 【붙임3】 2021년도 상반기 성과관리 시행계획 이행상황 점검결과
 - 전자통합평가시스템(e-IPSES)의 ‘성과관리-자체점검’ 메뉴에 자체점검 결과 등록
 - * 부진과제 대상으로 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

□ 추진일정

- 상반기 성과관리 시행계획 이행상황 점검결과 e-IPSES 등록 : ~ 7.31

1. 추진배경 및 추진방향

① 추진배경

- '21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 시 예측할 수 없었던 국제환경 변화 등 정책추진 환경변화 등을 반영, 부처별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수정·보완함으로써 정책추진의 타당성 제고 필요

② 추진방향

-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 운영의 자율성과 타당성간 균형 확보
 - 정평위에서 수정대상 및 요건 등 일반적 기준 제시
 - 중앙행정기관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별도로 부처 자체기준을 마련한 후,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정
-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수정범위는 최소화
 - 정책환경 변화의 예측 불가능성, 정책환경 변화로 인한 영향과 수정 내용간 직접적인 인과 관계를 엄격히 판단
 - 단순히 목표달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경우는 수정에서 제외
- 계획 수정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부처의 수정(안)에 대해 필요시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의견 제시
 - 중앙행정기관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수정·반영

2. 수정대상 및 기준

1] 관리과제

- '21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상 평가대상 과제로서 계획 수립 당시 예측하지 못한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라 관리과제의 추가·삭제·조정이 필요한 경우
 - 증대하지 않은 사유로 관리과제의 조정 없이 내용 및 추진계획만 변경, 달성이 용이한 과제로의 변경, 정책 변화 없이 관리과제 단순통합 또는 단순 과제명 변경 등은 수정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관리과제를 추가·조정하는 경우, 추가·조정되는 관리과제는 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관리과제 설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수정 인정 사례>

- 김해신공항 사업에 대한 부울경의 총리실 검증 요구('19.4월)로 김해신공항 적정성을 총리실에서 검증하기로 합의('19.6월) → 추진계획 변경
 - * (당초) 김해신공항 설계 착수 → (변경) 김해신공항 적정성 검증 착수
- 국조실의 부처간 업무 재배정('19.8월)에 따라 수소버스 충전소 구축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 → 추진계획에서 수소버스 관련 내용 삭제

☞ <수정 불인정 사례>

- 단순 과제명 변경
 - * (당초) 학교내 성평등 문화 확산 → (변경) 학교내 양성평등 문화 확산
- 기관 내부사정으로 관리과제 계획 변경
 - * 자체운영위원회에서 단독주택 설계공모방식을 변경기로 결정함에 따라 추진계획 변경

2] 관리과제 성과지표

- 관리과제가 변경(추가·삭제·조정)됨에 따라 성과지표의 변경(목표치 변경 포함)이 필요한 경우

- 계획 수립 당시 예측하지 못한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라 당초 설정한 성과지표의 변경(목표치 변경 포함)이 필요한 경우
 - 단순히 목표 달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표치 하향조정, 측정산식 변경 등은 수정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21년도 신규 설정 성과지표의 정책대표성 및 객관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
 - '21년도 상반기 성과관리 시행계획 이행상황 자체점검 결과 제시된 성과지표 개선의견을 검토·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 기관 자체적으로 정책대표성을 갖춘 정량·결과지표 위주의 성과지표를 추가·대체하고자 하는 경우 등
 - 연내 성과측정이 불가능한 지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
-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 당시 미확정 통계자료의 확정 반영, 명백한 계산착오 등 단순오류로 인해 정정이 필요한 경우
- '21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와 공통지표(목표치 포함)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성과지표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된 경우에 한해 수정 가능
- 성과지표를 추가·조정하는 경우에는 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성과지표 설정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수정 인정 사례>

- (정책환경 변화) 전파산업 성장기반 공사부지에서 문화재(조선총독부 인쇄소 관련) 발견(19.8월)에 따라 정밀 발굴조사 예정으로 공사지연이 불가피
 - * 성과지표 목표치 하향 : 전파산업 성장기반 조성 달성률 100% → 40%
- (목표치 상향) 어려운 법령용어 차단실적 목표치 390건→500건
국가법령정보센터 일일 페이지뷰수 985만→1,000만
- (성과지표의 합리적 개선) 투입지표를 결과지표로 대체
 - * 최저임금 제도개선 실적 → 상용직 임금상승률 대비 임시·일용직 임금 상승률
 - * 탄력근로제 제도개선 실적 → 노동생산성 지수

☞ <수정 불인정 사례>

- 통상적인 정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유로 목표치 하향 조정
 - * 안보위해사범 검거 실적점수 : (당초) 109.5점 → (수정요구) 80.7점
 - * 서비스 대상자 출국소요시간 단축율 : (당초) 30% → (수정요구) 15%

- 합리적 개선 여부 불분명
 - * 페이스북 이용자 감소 추세를 이유로 성과지표를 '○○부 페이스북 운영 실적'→ '○○부 블로그 방문자수'로 변경 요청

3 기타

-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 이후 내부 조직 개편으로 관리과제 수준 이상의 성과관리 체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수정 가능

정책환경 변화의 예시

① 국제환경 및 대북관계 변화

- 국제기구의 사업 폐지 및 추진일정 연기 등 국제기구와 관련된 사업의 예측하지 못한 변화
- 국제적 재해발생에 따른 관련 정책의 변화
- 남·북 관계 경색 등 한반도 정세의 급격한 변화
- 대북 관련 국제기구의 입장 변경 등
- 해외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예상하지 못한 국제행사 취소·연기 등

② 자연재해 발생

- 통상적인 통계수치를 벗어나거나 일기예보로 예측할 수 없는 폭설, 집중호우, 태풍 등에 의한 자연재해
 - * 예측 불가능성 판단기준은 최근 30년간 통계자료로 예측이 가능하지 않은 정도의 예외적인 재해(태풍이나 호우, 폭설) 등을 의미

③ 정책방향 전환

- 지시사항(VIP, 총리) 이행 및 이에 준하는 사회적 합의도출을 바탕으로 기존 정책방향을 전환하게 됨에 따라 관리과제 등을 변경하는 경우
 - * 단순히 기관 내 방침이 변경되었던 사유만으로는 변경 수용곤란

④ 기타 행정환경 변화

- 시민단체, 이해관계자 등이 심각한 사회적·정치적 문제를 야기할 정도로 참여하게 대립하여 부처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 다른 행정기관에 의해 결정되는 변수로 인하여 정책추진이 심히 곤란한 경우
- 국내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예상하지 못한 국내행사 취소, 사업 변경 등
- 기구 축소 및 변경으로 정책추진이 심히 곤란한 경우
- 조직개편, 업무분장 변경 등으로 관리과제 수정이 필요한 경우 등

3. 추진 일정

- 부처별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정(안)을 마련한 후 자체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출 (부처 → 국무조정실) : '21. 8월말
-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정(안) 검토결과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보고 : '21. 9월중
-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정결과 전자통합평가시스템(e-IPSES) 입력 (부처) : '21. 9월말
- 성과관리 수정계획을 토대로 자체평가 실시 : '22. 2. 3 까지

☞ 본 지침상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정계획에 변동이 있을 경우 전자통합평가시스템(e-IPSES) 등을 통해 별도 공지 예정

1. 추진 개요

① 추진목적

- 중앙행정기관장 책임 하에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정책·예산·조직·인사에 반영하여 국정운영의 효율성 및 책임성 제고

② 평가 대상기관

- 정부업무평가 대상이 되는 46개 중앙행정기관

구 분	기 관 명	계
장관급 기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무조정실	25개
차관급 기관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질병관리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해양경찰청, 원자력안전위원회	21개

* 검찰청은 법무부에 포함하여 작성

③ 평가부문(대상) 및 평가총괄기관

부 분	평 가 대 상 과 제	평가 총괄기관
주요정책	○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관리과제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수립하는 업무계획으로서 당해연도 소관 기관의 주요 정책·사업의 목표와 추진일정, 목표 달성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포함	국조실
재정 사업	○ 예산, 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성과관리대상 재정사업 * R&D, 재난안전, 균형발전 사업은 제외	기재부

부 문		평 가 대 상 과 제	평가 총괄기관
	R&D	○ 전체 정부연구개발 사업 중 3년 평가주기가 도래한 사업 * 최근 3년간 연평균 예산 30억원 이하 사업은 자체평가만 실시(상위평가 제외)	과기 정통부
	재난 안전	○ 재난안전사업	행안부
	균형 발전	○ 균형발전세부사업	지역위
행정관리역량		○ 조직·인사·정보화 분야 행정관리역량	행안부 인사처

4 평가대상기간

- '21. 1. 1 ~ '21. 12. 31

2. 부문별 시행계획

1 주요정책 부문

1 전년대비 변경 사항

- 자체평가위원회 인적 구성 내실화
 - 민간 위원의 부처 간 지나친 중복 선임 및 특정 부처에서의 장기간 연임을 제한
 - (중복 선임) 원칙적으로 2개 부처까지 허용, 다만 불가피한 경우(임기 일시적 중복 등) 3개 부처까지 허용
 - (연임) 2년 임기 기준, 3회까지 허용(최대 6년)
 - * 다만,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4회 이상 연임 허용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영상회의 인정
 - 대면회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고려, 자체평가위원회 또는 외부전문가와의 합동TF 등 관련 영상회의 개최 시 대면회의 실적으로 인정
- 자체평가 제도 운영 관련 의견수렴 실시
 -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 시 조직구성원 의견수렴 과정에서 자체평가제도 운영과 관련한 내용도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수렴 권고
 - 성과관리·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 시 '시행계획 수립의 사전검토 등 충실성' 항목에서 제도 운영 관련 의견수렴 여부 확인

2 평가 대상

- '21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관리과제
 -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수립하는 업무계획으로 당해 연도의 주요정책, 사업 목표와 추진일정, 목표 달성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포함

3 평가방법

- 평가결과의 상대등급화
 - 평가결과를 개인성과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대평가 7개 등급기준을 적용하되, 등급명은 자율적으로 설정 가능
 - * 전체과제에 대한 일괄적인 등급부여가 곤란할 경우, 업무성격이 상이한 그룹별로 구분하여 상대등급 적용 가능
 - 기관 성과에 대한 국민체감도가 낮을 경우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상대평가 등급기준'에 대한 탄력적 적용*이 가능
 - * (예시) 1~2등급('매우 우수'~'우수') 제외하고, 제외된 등급에 적용된 평가비율은 차하위 등급에 누적 반영

〈표-1〉 평가등급 분포 기준

순위 누적 %*	등급(등급명)	예시(총20개 관리과제)
~ 상위 5% 이내	1등급(매우 우수)	1위
5% 초과 ~ 20% 이내	2등급(우수)	2, 3, 4위
20% 초과 ~ 35% 이내	3등급(다소 우수)	5, 6, 7위
35% 초과 ~ 65% 이내	4등급(보통)	8, 9, 10, 11, 12, 13위
65% 초과 ~ 80% 이내	5등급(다소 미흡)	14, 15, 16위
80% 초과 ~ 95% 이내	6등급(미흡)	17, 18, 19위
95% 초과 ~	7등급(부진)	20위

* 순위 누적(%)= (순위/총 과제수)×100%. 단, 동 순위일 경우 하위 순위를 적용

* 최상위 1등급과 최하위 7등급은 순위 누적 기준선을 준수하되, 총 관리과제수가 20개 미만인 경우에는 1~7등급 각 1개 과제 선정

* 2~6 등급은 등급 기준선을 각 5% 범위 이내에서 조정 가능

○ 평가대상 과제별로 서술적 분석 실시

- 결과보고서에 과제의 효과 진단, 성과부진 원인 및 대안 제시 등 질적 측면에 대해 정성적 평가 병행

- 과제의 분석결과 및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제시된 개선의견 등의 후속조치 관리 철저

* (예시) 전년도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 마련 및 이행 여부, 개선효과 발생 등을 가감점 형식으로 반영

④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 평가항목 설정 시 '성과달성도·정책효과성' 관련 항목의 배점을 최소 60%로 설정(권고사항), 그 외 항목은 자율적 운영

- 평가항목의 하위 평가지표, 평가지표별 배점, 측정방법 등은 각 부처의 특성에 맞게 개발·적용

- 평가지표 개발 시 자체평가위원 및 외부컨설팅 적극 활용

* 외부 평가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자체평가 지표의 성격·활용도·변별력 등을 분석하여 평가지표 개선 시 활용

- 평가지표 설정 시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포함
 - * 국조실 주관으로 자체평가 실태점검 시 목표치 적극적 설정여부 점검예정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중심의 대표성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평가지표에 포함
 - * 국정과제, 부처업무계획, 저출산대책 등 범정부 주요대책에서 제시된 중요과제가 성과지표에 반영하였는지 확인
- 국정과제 관련 관리과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성과지표는 자체평가 시 가점형태*로 운영 권장
 - * 또는 성과지표 적절성 평가 시 사회적 가치 반영을 평가기준에 포함
-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 협업 관련 평가지표 설정(권고사항)
 - 정책수립-집행-평가-환류 등 정책추진 단계별 현장의견 수렴(현장방문·간담회 등) 및 반영 노력을 평가하는 평가지표 설정
- 평가결과의 변별력 확보를 위한 측정방법 수립
 - 자체평가의 관대화를 방지하고 과제별 점수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지표 측정방식의 강제배분 등 가능
 - * (예시) 100점으로 환산한 과제별 점수의 표준편차가 10점 이상인 평가 지표의 비율 60%이상 확보
 - 과제수행 난이도·중요성·자원투입량 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과제별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 가능
 - * (예시) 업무성격 그룹별 특성지표 적용, 공통 평가지표(‘업무의 난이도’ 등) 별도 적용, 상반기는 ‘정책형성’·하반기는 ‘정책성과’ 중심으로 평가시기에 따라 평가지표 적용 등 다양한 방안 가능

5 평가결과 공개 및 활용

- 부처별 평가결과 공개 및 국회 소관 상임위 보고
 - 부처별 전략목표 성과분석보고서를 국조실에서 통합하여 정부업무평가 포털에 게시
 - 자체평가 결과 ‘상세본’을 부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기본법 26조 및 27조)

- 자체평가결과 확정일(정평위 의결)로부터 한 달 이내 국회 소관 상임위 및 부처 홈페이지 등에 공개
- 평가결과 조직·예산·인사 및 보수체계 연계 강화
 - 자체평가 결과의 개인 성과급 반영비율을 최소 30%로 설정 권고
 - * 관리과제에 대한 책임성이 높은 과장급 이상을 중심으로 반영비율 상향
 - 그 외 우수부서 또는 공무원 포상,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통해 평가결과의 환류를 강화
 - * 평가결과가 인사·성과급 등에 적극 환류 될 수 있도록 기관별 환류 강화 방안을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 시 기술
- 자체평가 결과 미흡과제에 대해 부처별 ‘심층분석’ 실시, 환류제도의 실효적 운영을 도모
 - * 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 시 미흡과제에 대한 ‘심층분석의 충실성’을 ‘환류의 적절성’ 지표에 가점 형태로 반영
 - 과제의 미흡원인에 대해 정책(환경) 외에도 인력(업무량)·조직(구조) 차원 등 종합적으로 심층진단* 유도
 - * 분석범위 및 방법은 부처 자율운영, 담당자 및 구성원 참여(인터뷰 등)
 -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개선 및 조직·인력 개편, 인사운영 등 조직·인사 운영에 반영

6]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구성 고려사항
 - 자체평가위원회의 부처 업무 이해도 제고 등을 위해 내부위원 1인 이상 위촉
 - 다양한 위원 참여를 위해 위원 임기 및 연임 기준을 마련하되, 위원회 활동의 충실성을 높이기 위해 3개 기관 이상에 대한 중복 선임* 및 4회 이상 연임(2년 임기 기준, 최대 6년)**은 제한
 - * 임기 일시적 중복 등 불가피한 경우는 3개 기관 중복 선임 가능
 - **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는 경우는 4회 이상 연임 가능
 -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특정 직업군이 60%를 넘지 않도록 구성. 다만, 부처의 업무 특성상 특정 직업군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내에서 조정 가능
 - * 성과관리 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 시 조정필요성 및 사유 제시

- 자체평가 수용성 제고 및 평가제도 간 연계
 - 각 부처는 자체평가 결과 확정 전 이의사항 검토·해소 절차*를 마련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여 자체평가의 수용성을 제고
 - * (예시) 평가내용 개별 공개 → 이의신청 접수 → 이의신청 적합성 검토 → 검토 결과 통보 및 최종결과 확정
 - 또한, 성과관리·자체평가 계획 수립 시 자체평가제도 운영과 관련한 조직구성원 의견수렴을 통하여 보완 필요사항 발굴 및 개선

7 행정사항

- '자체평가계획 수립 양식 및 지침'(붙임2)에 따라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 자체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출
 - * '21년도 자체평가계획 국무조정실 제출기한 : ~'21. 3. 31
- 부처가 수립한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22.1월), 자체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결과 제출
 - 부처 자체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최종 확정('22.2~3월)
 - * 주요정책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양식(붙임2)에 따라 작성
 - * '21년도 주요정책 자체평가결과 국무조정실 제출기한 : ~'22.2.3

2

재정사업 부문

< 일반재정사업 >

1 평가대상

- 예산, 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성과관리대상 재정사업
 - 다만, 평가중복 최소화를 위해 ①R&D, ②재난안전, ③균형발전 및 ④복권기금 사업으로 소관 평가기관*의 평가대상 사업은 제외
 - * R&D(과기정통부), 재난안전(행안부), 균형발전(균형위), 복권기금사업평가(복권위)

② 평가방법

- (평가절차) 사업부처에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소관 재정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 기재부가 미흡사업 위주의 확인·점검
- (평가지표) 사업 내용적정성(10), 집행률(30), 성과목표달성도(40), 성과우수성(10), 환류(10) 가감점(항목별 5)
- (평가등급) 평가결과는 평가지표별 점수를 종합하여 3단계*로 등급화
 - * 예산규모 기준 부처: 우수 20% 이하, 보통 70% 내외, 미흡 10% 이상
 - 사업수 기준 부처: 우수 20% 이하, 보통 65% 내외, 미흡 15% 이상

③ 평가결과의 활용

- 평가결과 미흡사업에 대해 지출구조조정 계획과 성과관리개선계획 마련
 - 예산 요구시 지출구조조정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요구
 - 지출구조조정과 별도로 성과관리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미흡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

④ 추진 일정

- 각 부처 자체평가(1월~3월) → 기재부 확인·점검(4월) → 평가결과 예산실 통보 및 평가결과 대외공개(5월중)

< R&D 평가 >

① 평가대상

- 전체 정부R&D 사업 중 평가주기가 도래한 사업
 - * 최근 3년간 연평균 예산 30억원 이하 사업은 자체평가만 실시(상위평가 제외)

② 평가방법

- (평가절차) 사업부처에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적절성 점검(상위평가)

- (평가지표) 과기정통부에서 성과목표 달성도, 성과의 우수성 등 2개 부문 3개 평가지표를 개발·제시
- (평가등급) 항목별 점수를 종합한 뒤 3등급으로 구분

등급	우수	보통	미흡
점수	85점 이상	85점 미만 ~ 70점 이상	70점 미만

③ 평가결과의 활용

- 부처 자체평가 책임성 강화 및 상위평가 실효성 강화를 위해 평가결과와 차년도 예산 간 연계*를 지속 추진
- * 상위평가 결과 '우수' 등급 사업은 예산 증액, '보통' 등급 사업은 예산 유지, '미흡' 등급 사업은 예산 감액 하되, 결과에 상관없이 '부적절' 사업은 예산 감액

자체평가 최종등급	상위평가 결과	예산연계
우수	적절	증액
	부적절	감액
보통	적절	유지
	부적절	감액
미흡	적절	감액
	부적절	감액

④ 추진 일정

- 각 부처 자체평가(1~3월) → 평가결과 과기정통부에 제출(3월말) → 상위평가 실시(4~5월 말)
→ 평가결과 부처 통보(6월) → 대외공개(9월)

< 재난안전사업 >

① 평가대상

- 원칙적으로 모든 재난안전사업이 평가대상이나, 평가가 중복되는 R&D사업 및 평가실익이 적은 예비비 등 제외

② 평가방법

- (평가절차) 자체평가(부처) → 재난사고유형별 평가(행안부) → 결과 종합(행안부) → 의견제시(부처) → 평가결과 확정(행안부)
 - (평가지표) 행안부에서 재난안전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 개발·제시
 - (평가등급) 자체평가 결과와 피해유형별 평가 결과를 종합, 상대평가로 사업별 우수, 보통, 미흡 3단계 등급* 부여
- * 상대평가 비율은 기재부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의 등급 기준을 준용

③ 평가결과의 활용

- (예산 연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및 기재부 예산 편성 연계
- (결과 활용) 미흡사업 개선대책 수립, 인센티브 제공(재난관리평가 반영, 정부포상 추진), 안전정책조정회의 안건 상정, 언론보도 등 홍보

④ 추진 일정

- (자체평가) 각 부처 자체평가 착수(1월) → 성과보고서 제출(2월) → 자체평가 결과 제출(3월)
- (재난사고유형별 평가) 각 부처 성과보고서 제출(2월) → 평가단 구성(2월) → 재난사고유형별 상대평가(2~3월)
- (결과 종합) 자체평가·재난사고유형별 평가 결과 종합·검토(3월) → 종합심사(3월) → 평가결과 부처 통보(4월) → 평가결과 기재부 송부 및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반영(5월)

< 균형발전사업 >

① 평가대상

- 부처의 균형발전사업 중 법정경비, 인건비·운영비성 경비, 20억원 미만의 소액사업 등을 제외한 세부사업 대상 평가

② 평가방법

- (평가절차)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평가(부처)→ 상위평가*(균형위) → 이의신청(부처)
→ 최종결과 통보(균형위)
 - * 부처 자체평가에 대해 균형위가 적절성 점검을 실시하고, 부적절 부처에 대해서는 균형위가 사업별로 재평가 실시
- (평가지표) 개별사업의 ‘균형발전기여 등 사회적가치 창출’을 포함한 사업 기획·집행·성과 전주기 평가지표 설정(자체평가)
 - 평가지표(사업 기획·집행·성과)는 균형위에서 제시하고, 사업성과 측정을 위한 성과지표는 부처 자율적으로 설정(균형위 점검)
- (평가등급) 평가지표별 점수를 종합하여 3단계*로 등급화
 - * 예산규모 기준(상대평가) : 우수 20% 이하, 보통 65% 내외, 미흡 15% 이상
 - ** 단, 사업수 10개 미만인 부처는 ‘사업수’기준을 적용하고 3개 미만인 부처는 상대평가 미실시

③ 평가결과의 활용

- 평가결과는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 제시 등에 활용
 - 우수사업 적극 발굴·홍보, 사업담당자 포상 추진

④ 추진 일정

- 각 부처 자체평가(1~2월) → 자체평가 보고서 균형위에 제출(2월말) → 균형위 종합평가(3~4월) → 사업별 평가결과 확정·통보 및 대통령 보고(4~5월)

3 행정관리역량 부문

① 평가 대상

- 중앙행정기관의 정책과 서비스 수준에 영향을 주는 조직·인사·정보화 등 행정관리역량

② 평가방법

- 조직·인사·정보화 분야별 평가지표 및 측정기준을 적용하여 중앙행정기관의 행정관리역량을 평가

③ 평가 결과의 활용

- 조직·인사·정보화 분야별 우수사례는 부처 간에 공유하여 벤치마킹 대상으로 활용
 - 종합 우수부처 인센티브(정부포상 등) 부여 등을 통해 평가결과의 환류를 강화
- 평가결과 미흡 분야에 대해 각 부처별 개선방안 강구
 - 미흡한 부처는 운영실태를 심층 점검 후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④ 추진 일정

- 자체평가 실시(1월) → 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2월)→ 점검결과 정평위 보고(3월)

3.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자체평가 계획 수립 및 제출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1년도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
 - * 자체평가계획 수립 양식(붙임2)에 따라 작성
- 수립된 '21년도 자체평가 계획은 국무조정실에 제출('21.3.31)

□ 자체평가 실시

-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21년도 자체평가를 실시('22.1월)
- 자체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1년도 자체평가 결과를 확정하여 국무조정실 제출('22.2.3)
 - *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양식'에 따라 작성(상세·요약본)

□ 자체평가 결과 최종 확정 및 공개

- 정평위('22.2~3월)의 심의·의결을 거쳐 자체평가 결과 최종 확정
- 확정된 '21년도 자체평가 결과는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

2018년도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자체평가계획 수립 결과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

I. 추진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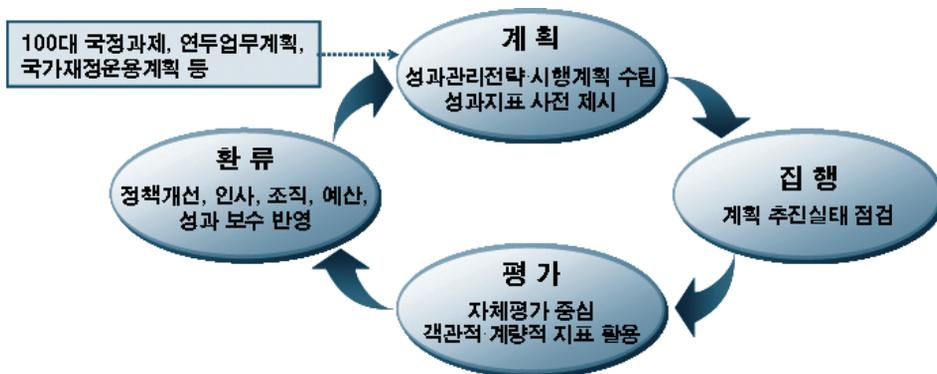
1. 성과관리·자체평가 개요

□ 정부는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 향상을 위해 통합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운영(정부업무평가기본법)

- * 성과관리 :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
- * 자체평가 : 중앙행정기관 책임 하에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정책·예산·조직·인사 등에 반영하는 일련의 활동

-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006년부터 5년 단위 '성과관리 전략계획'과 매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성과관리 시행계획 이행상황 및 추진성과를 자체평가계획에 수립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개선 및 예산, 조직, 인사, 보수 등에 환류
 - *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관리과제와 성과지표를 대상으로 자체평가 실시
- 국무조정실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자체평가계획 적정성 검토 및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환류

〈 정부업무 성과관리 체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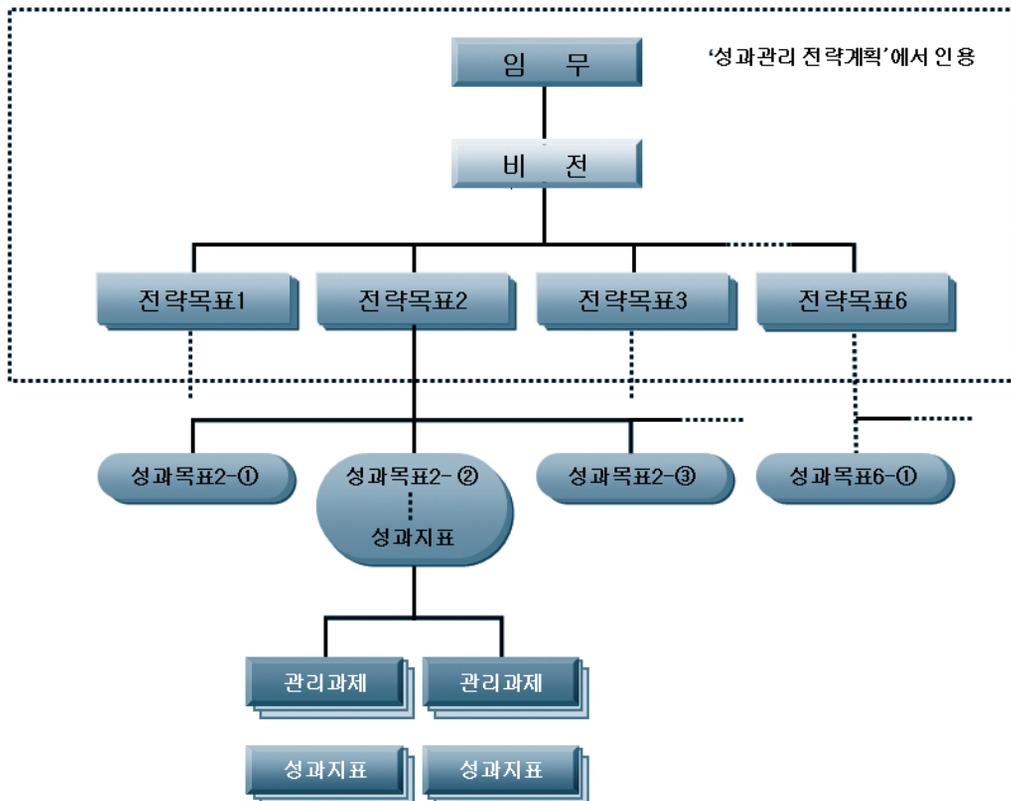


2.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계획 구성 체계

□ 성과관리시행계획

- 전략목표에서 제시한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제시
- 당해 연도 성과목표와 이의 달성을 위해 해당기관이 추진하고자 하는 다양한 정책과제(관리과제) 제시
- 관리과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제시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개선 및 차년도 조직·인력 개편, 인사 운영 등 조직·인사 운영에 반영

〈 목표수립 체계도 〉



□ 자체평가계획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자체평가 대상,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평가방법, 평가결과 공개 및 활용

〈 자체평가부문 및 대상과제별 총괄기관〉

부 문		평 가 대 상 과 제	평가 총괄기관
주요정책		○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관리과제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수립하는 업무계획으로서 당해연도 소관 기관의 주요 정책·사업의 목표와 추진일정, 목표 달성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포함	국조실
재정 사업	일반 재정	○ 예산, 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성과관리대상 재정사업 * R&D, 재난안전, 균형발전 사업은 제외	기재부
	R&D	○ 전체 정부연구개발 사업 중 3년 평가주기가 도래한 사업 * 최근 3년간 연평균 예산 30억원 이하 사업은 자체평가만 실시 (상위평가 제외)	과기정통부
	재난 안전	○ 재난안전사업	행안부
	균형 발전	○ 균형발전세부사업	균형발전 위원회
행정관리역량		○ 조직·인사·정보화 분야 행정관리역량	행안부 인사처

II. 2018년도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계획 수립

1. 계획 수립의 기본방향

□ 성과관리시행계획

- 기관의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국정기조와 기관, 부서, 개인의 성과관리가 연계된 통합 성과 관리체계 구축

- 계획 수립과 집행에 대하여는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실시
- 기관 운영성과를 대표하고 기관의 정책 운영방향을 유도할 수 있는 포괄적·종합적 성과지표를 개발·관리
- 제시된 목표와 달성도에 대한 평가결과를 정책개선, 인사·조직·재정 등에 환류하는 등 성과와 보상 등을 구체적으로 연계

□ 자체평가계획

- (평가 대상)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관리과제
- (위원 구성)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평가 지표) 각 기관 업무특성에 따라 자율 설정하되,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 설정의 적극성을 확인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포함
- (결과 환류) 평가결과 조직·예산·인사 및 보수체계 연계 강화, 미흡과제에 대해 '심층분석' 실시 등 실효적 환류제도 운영

2. 추진 경과

□ 「2018년도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 시달 : '18. 4월

□ 부처별 성과관리시행계획 및 자체평가계획 수립 : '18. 4월

* 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인 '성과관리 전략계획'은 '17년에 기 수립

Ⅲ. 성과관리시행계획 및 자체평가계획 수립 결과

1. 성과관리시행계획

① 계획수립 결과 요약

- 성과관리계획 수립대상 44개 기관에서 총 195개 전략목표, 589개 성과목표, 1,946개 관리과제 제시
 - 기관 평균 전략목표 4.4개, 성과목표 13.4개, 관리과제 44.2개 설정
 - 계획 규모는 장관급 기관이 차관급에 비해 1.3~1.9배 정도 큰 수준

〈 성과관리계획 수립결과 〉

(단위 : 개)

기관별 평균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부 단위	5.0	16.3	56.8
청 단위	3.8	9.9	29.2
전 체	4.4	13.4	44.2

* (부 단위) 관리과제 최대 : 행안부 117개, 최소 : 권익위 18개

* (청 단위) 관리과제 최대 : 식약처 60개, 최소 : 원안위 18개

□ '17년 계획 대비 전략목표와 성과목표 수는 유사한 수준

- '17년에 5년 단위의 '성과관리 전략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18년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는 전년대비 큰 변동이 없음
- 당해 연도의 관리과제 및 성과지표는 미미한 수준으로 감소되었으며, 이는 유사과제 간 병합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 연도별 계획 현황 〉

(단위 : 개)

구 분	부처 수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전 체	기관평균	전 체	기관평균	전 체	기관평균	전 체	기관평균
'18년	44	195	4.4	589	13.4	1,946	44.2	4,220	95.9
'17년	44	195	4.4	591	13.4	1,997	45.4	4,241	96.4

□ 성과지표는 총 5,011개로 성과목표 성과지표가 791개, 관리과제 성과지표는 4,220개

- (기관별 평균) 성과목표 성과지표 18.0개, 관리과제 성과지표 95.9개
- (지표 성격별) 관리과제 성과지표 중 결과지표 45.6%, 산출지표 42.2%, 투입 및 과정지표가 12.2%
 - 전년대비 투입 및 과정 지표의 비중은 큰 변동이 없음
 - * 투입지표 : ('17) 2.3 → ('18) 3.7% / 과정지표 : ('17) 9.4% → ('18) 8.5%
 - 산출지표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결과지표는 전년대비 1% 상승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중심으로 개선
 - * 결과지표 : ('17) 44.6 → ('18) 45.6% / 산출지표 : ('17) 43.7% → ('18) 42.2%

〈 연도별 성과지표 현황 〉

(단위 : 개, %)

구 분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소계	지표성격			
			투입	과정	산출	결과
'18년	791	4,220	155 (3.7%)	357 (8.5%)	1,779 (42.2%)	1,929 (45.6%)
'17년	810	4,241 (100%)	96 (2.3%)	397 (9.4%)	1,855 (43.7%)	1,893 (44.6%)

② 계획수립 내용 검토

□ 통합 성과관리 체계 구축

- 전체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계획 분석결과, 국정과제 등 국정기조와 연계된 관리과제가 56% 차지하는 등 통합 성과관리체계 구축
 - * '17년 국정과제 연계비율은 53% 수준
- 전체 44개 기관 중 29개(65.9%) 기관이 국정과제 반영률 40%를 상회하고, 70% 이상 기관도 14개 기관에 이르는 등 국정과제와의 연계성 향상('17년 11개 → '18년 14개 기관)

〈 '18년 성과관리계획상 국정과제 관련 관리과제 현황 〉

구분	20% 미만	20~40% 미만	40~70% 미만	70% 이상
부처명	농진청, 병무청, 새만금청, 통계청, 특허청, 행복청	금융위, 권익위, 법무부, 방사청, 법제처, 소방청, 식약처, 원안위, 해경청	교육부, 국방부, 국토부, 기재부, 방통위, 외교부, 해수부, 행안부, 환경부, 경찰청, 공정위, 국세청, 기상청, 문화재청, 인사처	고용부, 과기정통부, 국조실, 농식품부, 문체부, 보훈처, 복지부, 산업부, 여가부, 중기부, 통일부, 관세청, 산림청, 조달청
개수	6	9	15	14

□ 현장의견 수렴 체계화를 통한 정책 성과관리 강화

- 다수의 기관*에서 성과관리계획에 정책의 기획-집행-환류 쉼단계에서 정책수요자 및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반영
 - * 44개 기관 중 36개 기관(81.8%)

◆ 농식품부

- FIRST 현장농정 추진사항 평가를 통해 현장만족도를 점검하고, 정책반영 우수사례는 전 직원이 공유
- 과·정책단위 '현장방문의 날' 운영하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추진에 반영
- 생생현장중계실(대국민 의견수렴 창구)을 운영, 국민이 정책전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농진청

- 정책이해 관계자의 현장 의견 반영을 위한 전략협의회 등 다양한 제도를 계획 운영
- * 대국민 농업 기술수요조사 실시 및 과제기획 반영, 지역과의 협업조직 운영으로 수요자 참여도 제고, 이해관계자 소통활성화 행사(전국 지방농촌진흥기관장 워크숍 등)를 통한 의견 수렴 등 실시

□ 성과관리시행계획상 목표체계의 논리적 연계성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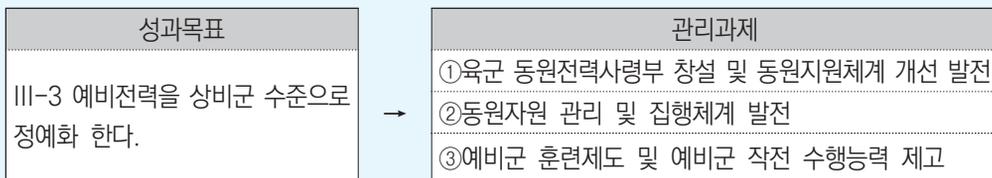
- 대부분 기관*은 목표·수단의 논리적 연계성을 고려하여 성과 목표 당 적정 수의 관리과제를 설정하는 등 개선하였으나, 일부 기관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

* 44개 기관 중 39개 기관(8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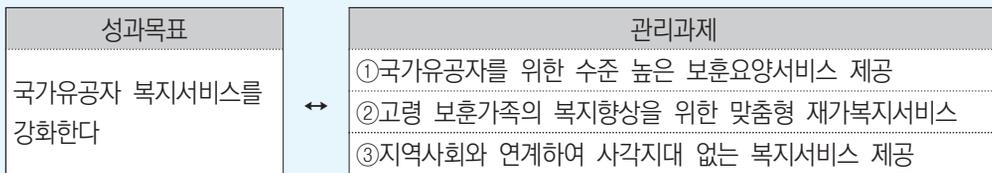
〈 주요 사례 〉

〈 개선 사례 〉

- ▶ (국방부) 성과목표와 관리과제간 논리적으로 연계성 있는 내용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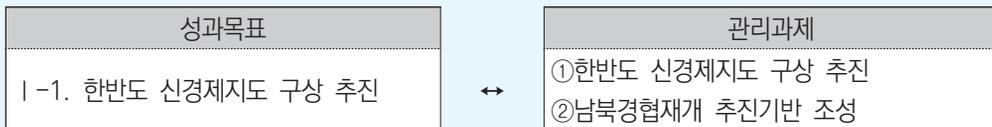


- ▶ (보훈처) 성과목표와 논리적으로 연계성이 높은 관리과제 선정



〈 미흡 사례 〉

- ▶ (통일부) 성과목표와 관리과제간 연계성 및 상·하관계가 모호하게 구성



- ▶ (금융위) 성과지표와 관리과제 간 논리적 연계성 부족



* (사유) 관리과제 II-3-② '자동차보험 소비자 권익 강화'는 보험업 경쟁력 강화보다는 소비자 보호 관련 성과목표인 III-2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와 연계성이 더 높음

□ 성과지표 개선

- 다수의 기관*이 성과지표 설정 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중심의 대표성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토록 개선하였으나, 일부 미흡

* 44개 기관 중 38개 기관(86.4%)

〈 주요 사례 〉

〈 우수 사례 〉

- ▶ (고용부)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는 결과 중심의 대표성 있는 정량지표로 설정
 - * (예시) (전략목표)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한다’ (성과목표) ① 청년을 위한 좋은 일자리 확대 ② 여성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 ③ 신중년·장애인의 일자리 기회 확대 ⇒ (성과지표) ① 청년고용률 ② 여성고용률 ③-1 장년 고용률 ③-2 의무고용사업체 장애인 고용률

〈 미흡 사례 〉

- ▶ (국방부) 과정지표 또는 유사내용의 복합지표로 선정
 - (예시) 성과목표 IV-3 ‘전력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한다’의 경우 성과지표를 ‘국유재산 활용계획 수립률’로 선정하였으나, 측정산식을 토양오염 조사방안 영역실시(50%)+해강안 철책 철거 설계 영역 결과보고서 발간(50%)로 구성

- 다수의 기관*이 성과목표 성과지표를 관리과제 성과지표와 중복되거나 관리과제의 복합지표로 구성하지 않도록 개선하였으나, 일부 미흡

* 44개 기관 중 39개 기관(88.6%)

〈 주요 사례 〉

〈 우수 사례 〉

- ▶ (국세청) 성과목표별 성과지표를 관리과제 성과지표 보다 상위 차원으로 설정

	구 분	성과지표
성과 목표	1-2. 빈틈없는 세수관리로 세수 확보를 극대화 한다.	소득세, 법인세 신고검증 처리율
관리 과제	① 과세인프라 확충으로 세원 투명성 제고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증가율,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참여 비율
	②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BEPS)에 대한 전략적 대응	OECD 다면평가,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실적, 다국적기업 소득이전(BEPS)에 대한 대응 노력도
	③ 과학세정 구현을 위한 빅데이터 도입	빅데이터 도입 상세계획 완성도, 빅데이터 조기 성공사례 확보 노력도

〈 미흡 사례 〉

- ▶ (행안부) 성과목표 성과지표가 관리과제 성과지표와 중복
(예시)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자 수, 범정부 재난안전 정책 조정 등 19개

□ 기관대표 성과지표 선정

- 전체 중앙행정기관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기관대표 지표를 185개 선정
 - 기관 평균 기관대표 성과지표는 4.2개
 - 장관급 기관(평균 4.6개)이 차관급(평균 3.8개)에 비해 1.2배 정도 많은 수준
- 기관대표 성과지표 선정 시 일부 기관은 국민이 참여토록 하여 국민의 관심사항을 대표할 수 있는 지표로 선정

◆ 국방부

- 기관대표 성과지표 4개 중 2개(50%)에 대국민 설문조사 반영
* (대표지표) '우리군의 대비태세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등 4개

◆ 권익위

- '국민생각함'(권익위원회 홈페이지)을 통해 국민참여형으로 기관대표 성과지표 선정('18.4.24~27)
* (대표지표)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권익행정 만족도' 등 3개

◆ 소방청

-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소방청 공식 페이스북을 활용하여 지표 선정
* (대표지표) '소방력 강화를 위한 현장인력 확충, 119 구급대응 인프라 구축' 등 3개

- 일부 기관은 기관대표 성과지표를 성과관리계획 상의 전략목표 수준으로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성과목표와 연계

◆ 과기정통부

- 전략목표 달성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관대표 성과지표 및 산출근거를 설정

〈예시〉 기관대표 지표와 산출근거

기관대표 성과지표	산출 근거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목표 달성률	①ICT신산업 규제개선 목표 달성률
	② IoT 서비스 이용수 달성률
	③빅데이터 산업 매출규모 달성률
	④ICT융합서비스 발굴·적용 목표 달성률
	⑤SW 핵심인재 양성 인력 목표 달성률
	⑥정보보호 지수

◆ 국토부

- 국토교통 분야의 다양성을 감안하여 전략목표의 핵심 업무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기관대표 성과지표로 선정

핵심 업무	기관대표 성과지표
지역균형발전 등 국토관리	혁신도시 지역인재채용률·입주기업수 및 도시재생뉴딜 신규 지정수
서민주거 복지 실현	공공임대주택 공급 수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 제공	대중교통 분담율 및 고속철도·항공 일일 이용객수, 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수 및 철도·항공 사고율
미래 신산업 육성	스마트시티 테스트베드 확산수,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 개방·확산, 드론 기체신고 대수
국토교통산업 상생·성장기반 마련	해외건설 수주액

→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미흡사례를 부처에 통보, 재검토하도록 조치 예정

2. 자체평가계획

① 계획수립 결과 요약

- 자체평가계획 수립대상 44개 기관에서 총 943명의 외부위원을 선임하여 기관별 평균 21.4명 수준
 - 외부위원과는 별개로, 자체평가위원회의 정책 이해도 제고 등을 위해 모든 기관에서 내부위원 위촉
-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 적극성'을 모든 평가지표에 반영한 기관은 39개 기관(88.6%)이며, 평균 배점은 19.3점 수준
 - 정책과정의 현장의견 수렴을 평가지표에 반영한 기관은 43개 기관(97.7%)이며, 평균 배점은 9.4점 수준
- 주요정책 부문 평가결과를 정책 개선 및 차년도 조직·인력 개편, 인사 운영 등 조직·인사 운영에 반영

② 계획수립 내용 검토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 다수의 기관이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각 분야의 대표성 있는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나, 일부 기관의 경우 특정 직업군에 편중
 - * 특정 직업군(교수)이 60%를 초과하는 기관 수 : '17년 11개(25%) → '18년 12개(27%)

외교부(76%), 방사청(75%), 통일부(72%), 교육부(66%), 공정위·국조실(65%), 과기정통부·권익위·기재부(64%), 환경부(63%), 보훈처(61%), 국방부(60%)

- 한 명의 자체평가위원이 여러 부처에서 위촉되는 경우 발생
 - * 3개 이상을 담당하는 위원 : 8명(총 정원 : 943명)/ '17년 7명(총 정원 : 939명)

□ 평가지표

- 대부분 기관에서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 적극성'을 평가지표에 반영
 - *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 적극성' 반영 기관 : 39개(88.6%)
 - *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 적극성' 평가지표 배점 : 평균 19.3점
- 거의 모든 기관에서 정책과정의 현장의견 수렴을 평가지표에 반영
 - * '정책과정의 현장의견 수렴' 반영기관 : 43개(97.7%)
 - * '정책과정의 현장의견 수렴' 평가지표 배점 : 평균 9.4점

□ 평가결과 환류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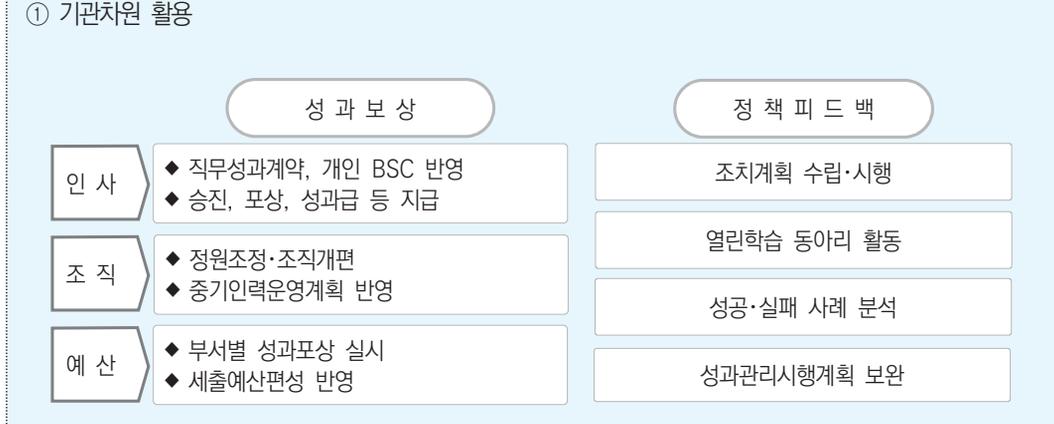
- 대부분의 기관에서 정책 개선 및 차년도 예산 반영 및 조직·인사 운영 등에 반영할 계획이나, 구체성 부분에서 미흡

〈 주요 사례 〉

〈 우수 사례 〉

- ▶ (국세청) 기관 및 개인차원의 평가결과 활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설정

① 기관차원 활용



② 개인차원 활용

- 자체평가 결과를 성과계약에 가중치 30%로 설정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연봉 등급결정에 반영
- 정부업무평가와 직무성과계약 및 성과관리시스템(BSC)간 연계 강화
- 전보·승진 등 인사관리에도 성과계약 및 개인성과평가 결과반영
- 유공 공무원에 대한 포상 실시

< 미흡 사례 >

- ▶ (기재부) 기관 및 개인차원 활용계획이 선언적 수준으로 구체성이 부족

(예시) 실·국별로 자체평가 결과 및 평가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시행, 국장급 이하 전 직원에 대한 개인성과급 지급시 평가결과 활용

□ 자체평가 결과 이의신청·확인절차 운영

- 거의 모든 기관*에서 자체평가 결과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이의사항 검토·해소절차 마련

* 이의신청 절차 반영기관 : 43개(97.7%)/ 미반영기관(1) : 법제처

→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적정성, 환류과정의 구체화, 자체평가위원 중복선임 문제에 대하여 부처에서 통보, 재검토하도록 조치 예정

IV. 향후 일정

- 성과관리·자체평가계획 미흡사례 부처 통보('18. 5월)
- 부처별 성과관리계획 등 보완 및 소관 상임위 제출('18. 5월)
- 부처별 자체평가 실시('19. 1월)
 - 각 부처는 '18년도 추진실적을 기준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9.1월말까지 국무조정실에 제출
- 성과관리·자체평가 실태점검 실시('19. 2월)
 - 평가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점검, 제도개선 방안 강구 등 조치

참고1

'18년도 정부업무평가 체계도

평가대상	평가유형	평가부문	근거법률	평가주관																											
중앙 행정 기관	특정평가 (43개)	일자리·국정과제(65점) 규제혁신(1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10점) 소통만족도(5점) 지시이행(±3점)	정부업무평가법	국조실 등																											
	자체평가 (44개) * 43+국조실	<table border="1"> <tr> <td rowspan="3">재정 사업</td> <td>주요정책(성과관리)</td> <td rowspan="3">국가재정법</td> <td rowspan="3">국조실 기재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지역위</td> </tr> <tr> <td>일반재정사업</td> <td rowspan="2">R&D평가</td> </tr> <tr> <td>재난안전 균형발전</td> </tr> <tr> <td rowspan="3">행정 관리 역량</td> <td>조직</td> <td rowspan="3">정부업무평가법</td> <td rowspan="3">행안부 인사처 행안부</td> </tr> <tr> <td>인사</td> </tr> <tr> <td>정보화</td> </tr> </table>	재정 사업	주요정책(성과관리)	국가재정법	국조실 기재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지역위	일반재정사업	R&D평가	재난안전 균형발전	행정 관리 역량	조직	정부업무평가법	행안부 인사처 행안부	인사	정보화	<table border="1"> <tr> <td>정부업무평가법</td> <td>국조실</td> </tr> <tr> <td>국가재정법</td> <td>기재부</td> </tr> <tr> <td>연구성과평가법</td> <td>과기정통부</td> </tr> <tr> <td>재난안전법</td> <td>행안부</td> </tr> <tr> <td>국가균형발전법</td> <td>지역위</td> </tr> <tr> <td>정부업무평가법</td> <td>행안부</td> </tr> <tr> <td>정부업무평가법</td> <td>인사처</td> </tr> <tr> <td>정부업무평가법</td> <td>행안부</td> </tr> </table>	정부업무평가법	국조실	국가재정법	기재부	연구성과평가법	과기정통부	재난안전법	행안부	국가균형발전법	지역위	정부업무평가법	행안부	정부업무평가법	인사처	정부업무평가법
재정 사업	주요정책(성과관리)	국가재정법		국조실 기재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지역위																											
	일반재정사업						R&D평가																								
	재난안전 균형발전																														
행정 관리 역량	조직	정부업무평가법	행안부 인사처 행안부																												
	인사																														
	정보화																														
정부업무평가법	국조실																														
국가재정법	기재부																														
연구성과평가법	과기정통부																														
재난안전법	행안부																														
국가균형발전법	지역위																														
정부업무평가법	행안부																														
정부업무평가법	인사처																														
정부업무평가법	행안부																														
지방 자치 단체	부처평가	합동평가(24개 부처) 개별평가(50개 사업)	정부업무평가법	행안부 등 주관부처																											
	자체평가	중앙행정기관과 동일	정부업무평가법	지자체장																											
공공 기관	공기업(35개) 준정부기관(88개)		공공기관운영법	기재부																											
	기금(존치평가 34개, 자산운용평가 46개)		국가재정법	기재부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46개)	<table border="1"> <tr> <td rowspan="4">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46개)</td> <td>과기연 소관(25개)</td> <td rowspan="4">과학기술기본법 과기출연기관법</td> <td rowspan="4">과기연 과기정통부 해수부 원안위 방사청</td> </tr> <tr> <td>과기정통부 산하(16개)</td> </tr> <tr> <td>해수부 산하(3개)</td> </tr> <tr> <td>원안위 산하(1개) 방사청 산하(1개)</td> </tr> </table>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46개)	과기연 소관(25개)	과학기술기본법 과기출연기관법	과기연 과기정통부 해수부 원안위 방사청	과기정통부 산하(16개)	해수부 산하(3개)	원안위 산하(1개) 방사청 산하(1개)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46개)	과기연 소관(25개)		과학기술기본법 과기출연기관법			과기연 과기정통부 해수부 원안위 방사청																								
		과기정통부 산하(16개)																													
해수부 산하(3개)																															
원안위 산하(1개) 방사청 산하(1개)																															
경제·인문사회분야 연구기관(26개)		정부출연기관법	경인사연																												
지방공기업(343개)		지방공기업법	행안부																												

I. 2018년도 정책 추진방향

- 그간의 정책성과 및 당해 연도 정책 추진방향

II.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 기관의 일반 현황 (조직·인원·재정 등)
- 시행계획 개요
 - 전략계획과의 연관성, 목표체계도,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현황

III. 세부 추진계획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관리과제 및 성과지표 제시
 -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 계획
 - 관리과제의 내용·파급효과·연차별 추진계획 등

IV. 환류 등 관련계획

-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결과의 환류
 -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별 추진정도, 성과달성 정도 등을 점검하고, 평가결과를 조직·인사·예산 및 성과급에 반영하고, 문제 정책개선 등을 제시
- 기관 전반의 변화관리계획
 -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예산절감, 업무 프로세스, 조직문화, 성과측정 체계 개선 등 변화관리방안 제시
- 현장의견의 정책반영계획
 - 정책수요자·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한 기관차원의 현장의견 수렴 방안을 제시

I. 2018년도 자체평가 기본방향

- 추진방향 및 수립 경과

II. 자체평가위원회 및 평가담당조직의 구성·운영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소속·직위·분야·경력 등)
-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 위원회 운영방안(운영세칙, 의사결정 방법, 전체위원회, 소위원회 등)
- 평가지원팀의 구성 및 운영
 - 평가지원팀별 임무 및 역할, 운영방식 등

III. 세부 추진계획

- 각 부처 업무특성에 따라 평가지표 자율 설정
 - 평가지표 설정 시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포함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중심의 대표성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평가지표에 포함

IV. 환류 등 관련계획

- 평가결과 조직·예산·인사 및 보수체계 연계 강화
 - 우수부서 또는 공무원 포상, 성과급 지급 및 인사 상 우대조치 등을 통해 평가결과의 환류를 강화
- 자체평가 결과 미흡과제에 대해 부처별 '심층분석' 실시, 실효적 환류제도 운영 필요
 - 과제의 미흡원인에 대해 정책 외에도 인력·조직 차원 등 종합적으로 심층진단 유도
 -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개선 및 조직·인력 개편, 인사운영 등 조직·인사 운영에 반영

2019년도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자체평가계획 수립 결과

2019. 4. 19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

I.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제도 개요

- ◇ 정부업무의 성과, 정책품질, 국민만족도 제고 위해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제도 도입
(’06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정)

□ (계획수립) 중앙행정기관별 5년 단위 「성과관리 전략계획」수립, 미션·비전·중장기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설정

- 성과관리 전략계획 실행 위해 매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수립, 당해연도 성과목표·관리과제 및 성과지표 제시

성과관리계획

- △ 미션·비전-전략목표-성과목표-관리과제-성과지표 설정
-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 기관 전반의 변화관리, 현장의견의 정책반영 계획 등 전략적 수단 제시

□ (점검·평가) 성과관리 시행계획 이행상황 점검 및 추진성과 평가

-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이행상황 반기 점검
- 관리과제별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연간 추진실적에 대한 자체평가 통해 성과 확인

자체평가계획

-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운영계획, 평가대상, 평가지표, 평가방법 제시
- △ 평가결과 공개 및 활용계획 제시

□ (환류)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정책과정에 환류

- 평가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고 인터넷 공개
- 평가결과를 정책, 예산, 조직, 인사, 보수 등에 환류

〈 성과관리·자체평가 업무흐름도 〉

성과관리·자체평가 계획 수립	성과목표·관리과제(정책·사업), 성과지표와 평가대상·평가지표·평가방법 등 제시 (3월)
집행·점검	계획 추진 및 추진상황 자체점검 (7월)
자체평가	성과지표 달성 여부 및 정책효과 평가 (차년도 1월)
환류	정책·사업 개선 및 성과급·인사에 반영 (차년도 2월)
운영실태 점검	성과관리·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 (차년도 3월)

II. 2019년도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계획 수립 결과

1. 추진경과

- 국조실, 「19년도 정부업무성과관리 운영지침」 마련·부처 통보('19.1월)
- 부처별 자체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성과관리 시행계획 및 자체평가계획 수립 ('19.3월)

2. 성과관리 시행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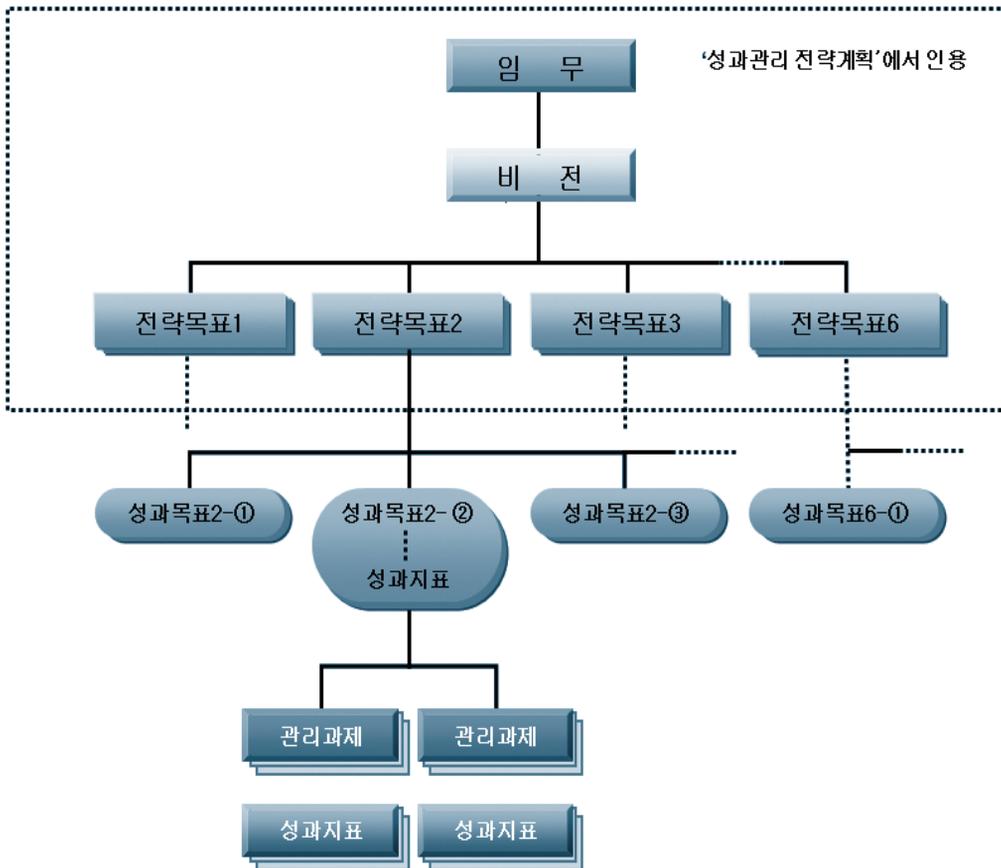
〈 가. 기본방향 〉

- 국정기조 - 기관 - 부서 - 개인의 성과관리 연계성 제고
 - 성과관리계획에 국정과제, 부처업무계획 등 범정부 주요대책 반영
 - 특히 올해 처음으로 전략목표별 성과지표*를 선정함으로써 상위목표와 하위 수단인 관리과제 간의 연계 강화
 - * 연말에 전략목표 성과지표별 성과분석 보고서를 작성, 기관의 전략목표별 정책성과를 확인토록 하여 책임성을 제고
- 제시된 목표와 달성도에 대한 평가결과를 정책 개선, 인사·조직·예산 등에 환류하는 등 성과와 보상을 구체적으로 연계
- 성과지표 선정 시 자체평가위원 및 외부 전문가 합동 TF 논의를 거치는 등 자체평가위원회 기능 실질화

〈 나. 수립결과 〉

- 44개 부처에서 총 195개 전략목표, 579개 성과목표, 1,860개 관리과제 제시
 - 부처 평균 전략목표 4.4개, 성과목표 13.2개, 관리과제 44.3개

〈성과관리 시행계획 구성 체계〉



- '18년 대비 전략목표와 성과목표 수는 유사한 수준
 - '17년에 5년 단위의 '성과관리 전략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19년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는 전년 대비 큰 변동이 없음

○ 관리과제는 소폭 감소하였으며 이는 유사과제 병합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 관리과제 수 ('18)1,946 → ('19)1,860 / 성과지표 수 ('18)4,220 → ('19)4,013

〈 연도별 목표 및 과제 현황 〉

(단위 : 개)

구 분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전 체	기관평균	전 체	기관평균	전 체	기관평균	전 체	기관평균
'19년	195	4.4	579	13.2	1,860	42.3	4,013	91.2
'18년	195	4.4	589	13.4	1,946	44.2	4,220	95.9

□ 성과지표는 총 5,055개로 올해 처음 도입한 전략목표 성과지표 266개, 성과목표 성과지표 776개, 관리과제 성과지표 4,013개

○ 부처 평균 전략목표 성과지표 6개, 성과목표 성과지표 17.6개, 관리과제 성과지표 91.2개

○ 관리과제 성과지표 4,013개 중 결과지표 1,998개(49.8%), 산출지표 1,615개(40.2%), 투입·과정지표 400개(10.0%)

- 전년대비 투입·과정지표 비중은 2.2%p 감소한 반면, 결과지표 비중은 4.2%p 상승하여, 국민 체감 성과중심으로 지표 개선

* 투입·과정지표 비중 ('18)12.2%→('19)10.0% / 결과지표 비중 ('18)45.6%→('19)49.8%

〈 연도별 성과지표 현황 〉

(단위 : 개)

구 분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소계	투입	과정	산출	결과
'19년	(신규) 266	776	4,013	64 (1.6%)	336 (8.4%)	1,615 (40.2%)	1,998 (49.8%)
'18년	-	791	4,220	155 (3.7%)	357 (8.5%)	1,779 (42.2%)	1,929 (45.6%)

□ 부처별로 성과목표 달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환경·갈등요인을 분석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등 갈등 관리계획 수립

○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변화관리 계획으로 예산 절감, 업무 프로세스·조직문화·성과측정체계 개선방안 제시

* 예 : 칸막이 허무는 협업행정, 매뉴얼 등록 등 일하는 방식 체계화, IT 기술을 활용한 업무효율 향상, 조직 내 소통문화 확산 등

○ 정책수요자·이해관계자 등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간담회, 현장방문, 여론조사, 정책 모니터링단 운영 등 구체적 방안 제시

3. 자체평가계획

< 가. 기본방향 >

□ 각 부처는 평가지표를 자율 설정하며 대체로 ①계획수립의 적절성, ②집행의 적절성, ③성과 달성도, ④환류 노력에 대한 평가로 구성

□ 국민체감도 조사 등을 통해 정책수요자의 의사를 평가결과에 반영하고 사회적 가치* 반영도 확대

* 사회적 가치 예시 : 인권보호, 보건복지 제공, 사회통합, 근로조건 향상 등

< 나. 수립결과 >

□ (자체평가위원회) 44개 기관에서 총 1,015명의 평가위원 선임

○ 외부위원 922명(90.8%), 내부위원 93명 위촉(9.2%)

* 기관 평균 자체평가위원 23명, 외부위원 21명, 내부위원 2명

□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 성과관리 시행계획상의 관리과제를 평가

- 44개 부처의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에 대한 평균 배점은 17.9점, '성과지표 달성도'에 대한 평균 배점은 19.7점
- '정책과정의 현장의견 수렴'을 평가지표에 반영한 부처는 37개(84.0%)이며, 평균 배점은 9.0점
- 전년도 평가 및 상반기 점검결과를 정책개선에 반영하는 '정책 환류'를 평가지표에 반영한 기관은 26개(59%)이며, 평균 배점은 7.9점
- '사회적 가치*와 관련한 성과지표'를 선정한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부처는 20개(45.5%)이며, 평균 1점 정도의 가점 부여
- 5개 부처*는 '관리과제가 상위목표 달성에 기여한 정도' 또는 '전략목표 성과지표의 적절성'을 평가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점검

* 환경부, 법제처, 산림청, 식약처, 해경청

□ (결과환류)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 성과급 지급 등 인센티브 부여, 미흡과제는 심층분석 실시 등 정책개선 반영

Ⅲ. 향후 일정

- 부처별 성과관리계획 소관 상임위 제출 ('19.4월)

- 전략목표 성과지표 적절성 검토 (~5.17)
 - 「전략목표 성과지표 검토 TF」구성·운영 (전문가 15인 참여)
 - 참여 전문가별 지표의 적절성 검토
 - 3개 분과로 구분(분과별 5인), 위원별 3개 부처 전담
 - 지표의 ①정책대표성 ②통제가능성 ③결과지향성 ④자료의 신뢰성 검토, 부적합 지표에 대해서는 대안지표 제시
 - 분과별 지표검토 회의 개최 (5.7~5.10)
 - 검토결과 정리 및 정평위 보고 (5.17)
 - 검토결과 부처 통보, 시행계획 보완 (5~6월)

- 부처별 자체평가 실시 ('20.1월)
 - 각 부처는 '19년도 추진실적을 기준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 1월 말까지 정평위에 제출

- 성과관리·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 실시 (국조실, '20.2월)
 - 각 부처의 성과관리·자체평가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제도개선 방안 강구 등 조치

2020년도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자체평가계획 수립 결과

2020. 6. 30.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

□ 개요

◇ 정부업무의 능률성·효과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44개 중앙행정기관은 성과관리·자체평가를 실시, 국무조정실 등은 이를 점검·지원

- (성과관리) 부처의 임무, 중·장기 및 연도별 목표,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정평법 제2조)
- (자체평가) 기관장 책임 하에 소관 정책을 스스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정책·예산·인사 등에 반영하여 책임성 제고(정평법 제14조)

부문	평가대상 과제	총괄기관	근거법률	결과 활용
주요정책	성과관리계획 (관리과제)	국조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개인성과급 및 성과연봉에 반영
재정사업	일반재정, R&D, 재난안전, 균형발전	기재부	국가재정법 등	차년도 예산안에 반영
행정관리역량	조직·인사·정보화	행안부, 인사처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조직·인사·정보화 제도 개선

□ 성과관리·자체평가 내용(주요정책 부문)

〈 각 부처 〉

- (계획 수립) 각 부처는 5년 단위 「성과관리 전략계획」 수립, 미션·비전·중장기 전략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
 - 성과관리 전략계획 실행을 위해 매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 당해연도 성과목표·관리 과제 및 성과지표 제시
 - 성과관리 계획에 국정과제, 부처 업무계획 등 범정부 주요대책 반영

- (점검·평가) 성과관리 시행계획 이행상황 자체점검 및 연간 성과 자체평가
 - 평가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소관 정책 등을 평가(정평법 제14조)
- (환류·공개) 평가결과를 정책개선·인사 및 개인 성과급에 반영
 - 평가결과 국회 상임위 보고 및 각 부처 홈페이지·정평위 포털에 공개

〈 국조실(정부업무평가위원회) 〉

- (제도운영 지원) 성과관리·자체평가 제도 전반에 대한 운영·지원
 -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운영 방법·절차 등에 관한 세부지침 시달
 - 각 부처의 성과관리·자체평가 계획에 대한 검토 및 보완 실시
- (운영실태 점검) 부처별 평가제도 운영의 객관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국조실 주관으로 운영 실태 점검 실시(정평법 제25조, 익년 2월)
 - 부처의 성과제고 노력, 성과관리·자체평가 운영체계 등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방안 도출 및 미흡기관 컨설팅 실시(한국행정연구원 합동)

〈 성과관리·자체평가 업무흐름도 〉

성과관리·자체평가 계획 수립	성과목표·관리과제(정책·사업), 성과지표와 평가지표·평가방법 등 제시 (3~5월)
집행·점검	계획에 따른 정책추진 및 추진상황 자체점검 (7월)
자체평가	성과지표 달성 여부 및 정책효과 자체평가 (익년 1월)
운영실태 점검	성과관리·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 (익년 2월)
환류	정책 개선 및 인사·성과급에 반영 (익년 2~3월)

1 개요

□ 추진경과

- 「2020년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 마련·부처 통보(국조실, '20.1월)
- 부처별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성과관리전략계획('20~'25년)」, 「'20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20년 자체평가 계획」 수립·제출('20.5월)
 - * 성과관리전략계획은 既수립한 「성과관리전략계획('17~'22년)」을 수정·보완
 - ※ 코로나19 관련 정부 총력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계획수립 시기를 조정(3월→5월)
- 부처가 제출한 '성과관리 전략계획', '성과관리 시행계획' 중 전략목표 성과지표의 적절성 중심으로 국조실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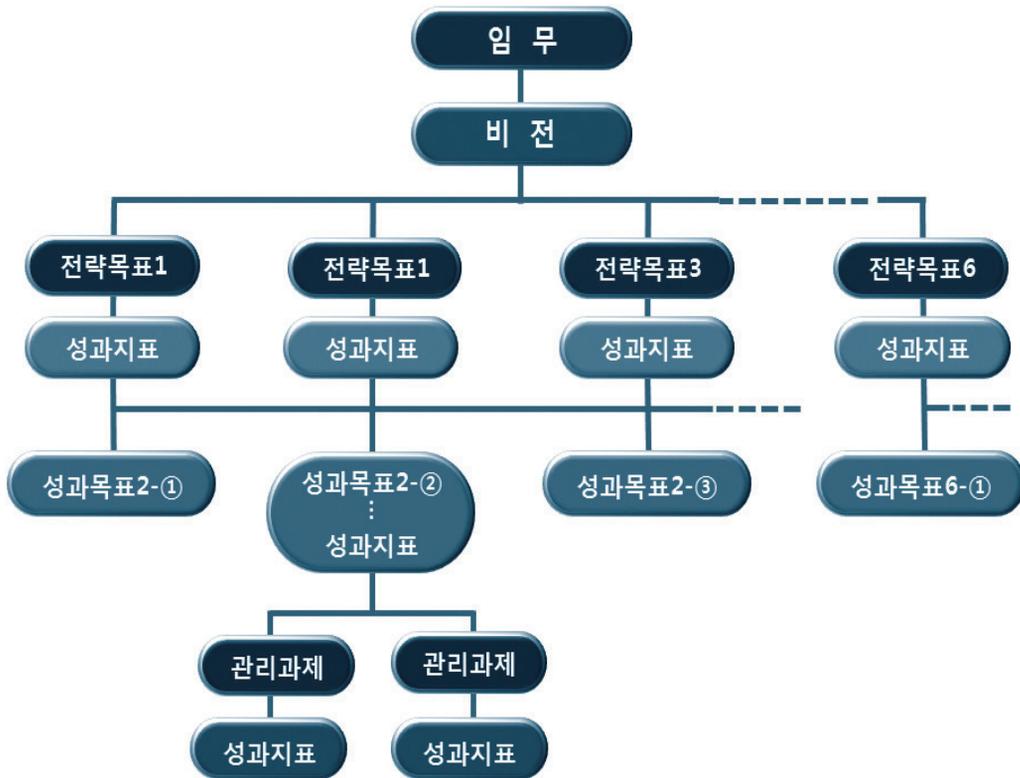
□ 기본방향

- 국정기조 - 기관 - 부서 - 개인의 성과관리 연계성 제고
 - 성과관리계획에 국정과제, 부처업무계획 등 범정부 주요대책 반영
- 기관별 상위목표(전략목표)에 대한 관리 강화
 - 각 부처는 성과관리전략계획('20~'24년)에 '전략목표 성과지표' 반영, 성과지표의 향후 5년 후 목표치 및 관리계획 제시
 - * 연말에 전략목표 성과지표별 성과분석 보고서 작성 및 대외공개를 통해 기관의 전략목표별 정책성과를 확인하고 책임성 제고
- 제시된 목표와 달성도에 대한 평가결과를 정책개선, 성과급·인사·예산 등에 환류하는 등 성과와 보상을 구체적으로 연계

2 주요 내용

- 44개 부처에서 총 188개 전략목표, 595개 성과목표, 2,091개 관리과제 제시
 - 부처 평균 전략목표 4.2개, 성과목표 13.5개, 관리과제 47.5개
 - '17년에 5년 단위의 '성과관리 전략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19년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

〈 성과관리 시행계획 구성 체계 〉



- '20년 신규사업 등을 반영하여 관리과제는 소폭 증가(평균 42.3개→47.5개)

〈 연도별 목표 및 과제 현황 〉

(단위 : 개)

구 분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전 체	기관평균	전 체	기관평균	전 체	기관평균	전 체	기관평균
'20년	188	4.2	595	13.5	2,091	47.5	4,180	95.0
'19년	195	4.4	579	13.2	1,860	42.3	4,013	91.2

□ 성과지표는 총 5,200개로 전략목표 성과지표 267개, 성과목표 성과지표 753개, 관리과제 성과지표 4,180개

- 부처 평균 전략목표 성과지표 6개, 성과목표 성과지표 17.1개, 관리과제 성과지표 95개
- 관리과제 성과지표 4,180개 중 결과지표 2,089개(50.0%), 산출지표 1,788개(42.8%), 투입·과정지표 303개(7.2%)

- 전년대비 투입·과정지표 비중은 2.8%p 감소한 반면, 산출·결과 지표 비중이 상승하여 국민 체감 중심으로 성과지표 지속 개선중

* 투입·과정 지표 지속 감소 : ('18년) 12.2% → ('19년) 10.0% → ('20년) 7.2%

〈 연도별 성과지표 현황 〉

(단위 : 개)

구 분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소계	투입·과정	산출	결과
'20년	267	753	4,180	303 (7.2%)	1,788 (42.8%)	2,089 (50.0%)
'19년	266	776	4,013	400 (10.0%)	1,615 (40.2%)	1,998 (49.8%)

□ 부처별로 성과목표 달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환경·갈등요인을 분석하고 이해 관계자와의 소통 등 갈등 관리계획 수립

-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변화관리 계획으로 예산 절감, 업무 프로세스·조직문화·성과측정체계 개선방안 제시
- 정책수요자·이해관계자 등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간담회, 현장방문, 여론조사, 정책 모니터링단 운영 등 구체적 방안 제시

III

전략목표 성과지표 수정(안) 검토결과

1

전략목표 성과지표 현황

- (도입배경) 부처별 상위목표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각 부처의 최상위 목표인 전략목표에 대한 성과지표 선정 및 관리 실시('19년~)
 - 전략목표 성과지표는 기관의 임무와 비전, 국정전략 등을 감안하여 해당기관이 중점을 두고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할 내용으로 제시

- ('19년 추진경과) 부처가 제출한 전략목표 성과지표(안)(44개 부처, 255개)에 대해 전문가 TF(15인) 검토·부처협의 실시('19.4.19~6.11)
 - 「중앙행정기관 전략목표 성과지표 검토결과」 정평위 보고 및 최종 확정('19.6.14) : 44개 부처 266개 지표

〈 전략목표 성과지표 주요 사례 〉

전략목표	성과지표
(기재부) 경제활성화 및 경제성장기반 마련	실질GDP 성장률
(고용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안전망 강화	고용률
(해경청) 세계 최고의 구조안전 역량으로 안전한 바다 창조	해양사고 1시간 이내 현장 도착률
(복지부) 저출산 극복과 활력있는 노후생활 보장	합계출산율, 노인빈곤율
(권익위) 반부패·청렴시스템의 질적 고도화로 부패관행 근절	부패인식지수

2

추진경과

□ (기본방향) 전략목표 성과지표는 중·장기적 관리를 위해 전문가TF 검토·정평위 보고 등을 통해 최종 확정된 바, 지표 연속성 유지 원칙

- 다만, 지표의 명백한 질적 개선이 인정되는 경우, 기타 직제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표 변경 제한적 허용

□ (추진경과) 부처 수정(안) 접수결과, 30개 부처에서 77개 지표 수정 요청(5.31)

- 부처협의를 통해 1차 수정 부적합 지표(32개)에 대한 원안유지 협의(6.1~6.5)
- 2차 검토대상(45개 지표)를 대상으로 전문가 검토회의(성과관리정책관 주재, 행정연 등 외부 전문가 참여, 6.18) 개최, 수정(안) 적절성 및 대안지표 검토

[수정안 검토기준]

- ▲ (핵심 결과상태 반영) 전략목표에 담긴 핵심내용·결과상태를 대표하는 지표
* 외생요인이 작용하더라도 정책 방향성을 대표할 수 있다면 성과지표로 선정
- ▲ (중장기 성과관리) 단년도 개선이 어렵더라도 중장기 성과견인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지표
- ▲ (국민체감도) 국민이 체감하고 이해하기 쉬운 지표, 정부 내부적인 활동이나 수행상태를 제시하는 지표는 지양
- ▲ (신뢰성) 객관적인 통계치 적극 활용(국제평가지수, e-나라지표, 국가승인통계 등), 하위 지표를 나열하는 복합지표는 지양

- 국조실 주관 이견 검토회의를 통해 '20년 수정 적합 지표 최종 확정(6.18)

3

검토결과

◆ 부처가 제시한 수정지표 77개 중 26건은 지표의 질적 개선 등으로 수정안 수용, 51건은 부적합으로 기존 지표 유지 조치

□ (수정안 수용) 지표 개선이 인정되는 26건에 대하여 수정안 수용

① 대표성·국민체감도 등에서 질적 개선 → 부처 수정안 수용(18건)

부처	기존 지표	수정요청(안)
법무부	<p>인권 관련 정책의견 수렴 및 제시 건수</p> <p>* (측정산식) 시민사회 참여 간담회수+관계부처 회의 참석횟수+국제인권회의 참석횟수+인권정책 의견제시 횟수 등</p>	<p>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수용률</p> <p>* (측정산식) 법무부 수용 건수/인권위 권고 건수</p>
	<p>○ (전략목표) 인권의 가치를 중시하고 약자를 보호한다</p> <p>○ (검토의견) 단순 투입·과정지표를 전략목표를 대표하고 결과상태 반영하는 지표로 개선</p>	

부처	기존 지표	수정요청(안)
중기부	스마트공장 보급 기업수	<p>중소기업 기술능력 수준</p> <p>* (측정산식) 세계최고 수준을 100으로 설정하고, 핵심산업 8대 분야별(전기전자 등) 기술수준 조사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p>
	<p>○ (전략목표) 중소기업 기술 역량 강화와 스마트 제조화로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한다.</p> <p>○ (검토의견) 기존 지표는 투입지표·대표성 부족 → 전략목표의 결과상태를 반영하고 세계 주요국과의 기술격차를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 통계치 활용</p>	

② 부처 수정(안)이 복합지표·내부 과정지표 등으로 타당성 부족

→ 부처협의를 통해 대표성 있고, 결과지향적인 대안지표 개발(5건)

부처	부처 수정요청(안)	대안지표
소방청	<p>화재예방대응 정책효과</p> <p>* (측정산식) (10만명당 화재사망자 목표 달성률 × 0.2) + (인명구조실적 달성률 × 0.4) + (화재 재산피해 경감 달성률 × 0.4)</p>	<p>① 10만명당 화재사망자수 감소 ② 재산피해 경감액</p> <p>* (측정산식) ① 10만명당 화재사망자 수= 화재사망자×10만명÷인구수 ② 화재피해 경감 총액 / 전체 화재발생건수</p>
	<p>○ (전략목표) 선제적 재난 예방·대응정책 추진으로 국민 안전을 보호한다 ○ (검토의견) 수정안이 복합지표로 국민체감도 부족하고 매년 목표실정에 따라 결과값 변동하는 문제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지표 2개로 분리</p>	
고용부	<p>경사노위 본위원회 의결 안건수</p>	<p>노동관계법 위반사항 개선율*</p> <p>* (측정산식) 사업장감독 법위반 개선 사업장수/사업장 감독 법위반 사업장 수</p>
	<p>○ (전략목표)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차별없는 일터 조성으로 노동자 권익을 보호한다 ○ (검토의견) 수정안이 정부 내부 과정지표·투입지표 → 근로감독 과정에서 발생한 법 위반에 대한 개선 결과상태 반영가능한 지표로 변경</p>	

③ 신규 전략목표에 대한 성과지표 도입(3건)

부처	전략목표	성과지표
국토부	누구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건설현장 사고사망자수
권익위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여 국민 권익을 보호한다	국민고충 해결율

□ (수정안 불수용) 수정(안)이 기존 지표보다 대표성·포괄성·국민체감도 등의 측면에서 미흡한 등 질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51건

☞ 부처협의를 통해 기존 지표 유지 조치

부처	기존 지표	수정요청(안)
복지부	합계출산율	전년 대비 출생아수 감소세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목표) 저출산 극복과 활력있는 노후생활 보장 ○ (요청사유) 저출산 정책의 추진방향을 기존의 '출산장려'에서 모든 세대 '삶의 질 향상'으로 전환함에 따라 출산장려에 포커스를 맞춘 지표 변경 요청 ○ (검토의견) 개선 지표 역시 출생아수 관리에 초점, 국민체감의 관점에서 합계출산율 지표 유지 	
과기부	가계통신비	네트워크 안전관리 이행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목표) 건강한 방송통신 생태계 구축으로 경쟁활성화 및 이용자 후생 증대 촉진 ○ (요청사유) 네트워크정책실의 업무(정보보호, 네트워크, 통신, 방송, 전파) 등 포괄하는 지표로 변경 필요 ○ (검토의견) 네트워크 안전관리 이행률(=현장점검건수/중요통신시설 점검대상건수×100)이 전략목표에 대한 대표성·결과지향성 가진다고 보기 어려움 	
문화재청	공능 관람객수	문화재 일자리 취업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목표) 국민이 체감하는 문화재 환경 조성으로 문화포용국가를 실현한다. ○ (요청사유) 코로나19, 경기침체 등 극복을 위한 일자리 취업자수 확대의 중요성 강조 ○ (검토의견) 기존지표가 문화재청이 추구해야할 핵심 지표에 가까움 	

4 전략목표 성과지표 활용 방안

- (중장기 정책방향 제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인 결과 상태, 기관이 역점을 둘 노력의 지향점 제시
- (성과관리) 지표의 변화추이를 모니터링 및 분석하고, 성과제고를 위한 정책수단을 조정하는 등 기관 성과관리에 활용
- (대국민 책임) 각 부처는 매년 '성과지표별 성과분석 보고서'를 작성·공개(정부업무포털, 부처 홈페이지) 하여 대국민 책임성 제고
 - 지표 추이에 대한 객관적 결과, 국민생활에 미친 영향, 긍정적·부정적 영향요인, 조정·보완 되어야 할 정책내용과 방향 제시

□ 기본방향

- 민간위원 중심의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 체감에 부합하는 평가 추진
- 각 부처는 평가지표를 자율 설정하며 대체로 ①계획수립의 적절성, ②집행의 적절성, ③성과 달성도, ④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로 구성

□ 수립결과

- (자체평가위원회) 44개 기관에서 총 1,077명의 자체평가위원을 선임, 기관별 평균 25명으로 구성(외부위원 23명, 내부위원 2명)
 - 민간위원의 직업별 구성비율은 대학교수가 51.9%로 가장 높은 비율 차지, 이후 연구원(25.5%), 경제계(5.7%), 시민단체(4.4%) 순
- (평가지표) 부처별 특성 및 강조사항을 반영하여 자율 설정하되, 올해는 정부 3년차임을 감안 '정책 성과·효과' 관련 배점* 전반적 확대
 - * 자체평가 지표 중 정책성과·효과 관련 배점 : ('19년) 평균 50.1점 → ('20년) 평균 55.8점
 - 특히, 국민체감도와 부합하는 평가를 위해 일부 부처(10개)에서는 국민·정책 대상이 직접 평가에 참여
 - * (예) 문화재청 : 국민평가단(110명)의 평가결과를 자체평가 점수에 직접 반영 (15점/100점 만점)
 - 국정과제, 전략목표 직결 과제, 사회적 가치 관련 과제 등 국민 관심도 높은 주요업무에 대한 가점부여
- (평가결과 환류) 평가결과를 정책개선 및 조직·인사·예산 등에 반영하고, 개인 성과급과 연계하여 성과달성의 유인·보상 체계 확립
 - ※ 내년부터는 부처별 자체평가위원 중복 선임 자제 강화(운영실태 점검 시 확인) → 자평위 활동의 충실성 제고 및 자체평가 내실화 추진

〈 각 부처 〉

- 성과관리계획(전략계획·시행계획) 국회 소관 상임위 제출(7월)
- '20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이행상황 상반기 자체점검(각 부처, ~7.31)
- 자체평가 실시('21.1월)
 - '20년 추진실적 대상 평가실시 및 평가결과 정평위 제출(~'21.1월말)

〈 국조실(정부업무평가위원회) 〉

- '20년 성과관리·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 계획 수립(7월)
- '21년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 수립('21.1월)
 - '21년 성과관리·자체평가 중점 추진방향 설정
- 성과관리·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국조실, '21.2월)

2021년도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자체평가계획 수립 결과

2021. 4.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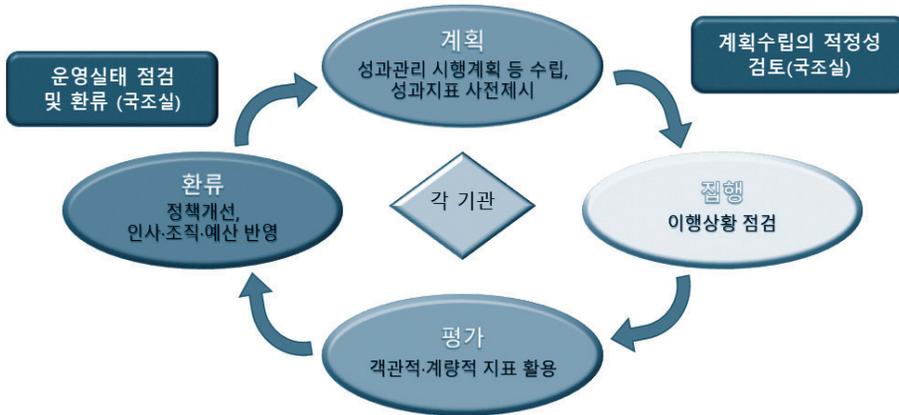
I

성과관리·자체평가 제도 개요

□ 개요

- (성과관리) 부처의 임무, 중·장기 및 연도별 목표,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정평법 제2조)
- (자체평가) 기관장 책임 하에 소관 정책을 스스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정책·예산·인사 등에 반영하여 책임성 제고(정평법 제14조)

〈 성과관리·자체평가 체계 〉



◇ 정부업무의 효율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46개 중앙행정기관은 성과관리 시행계획 등 수립 후 성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 결과를 인사 등에 반영
 ⇒ 국조실은 운영실태 점검 및 지침 시달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지원

□ 성과관리·자체평가 대상 기관(총 46개, 개보위·질병청 신규 추가)

구 분	기 관 명	계
장관급 기관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보건처, 방통위, 공정위, 권익위, 금융위, 개보위, 국조실	25개
차관급 기관	인사처, 법제처, 식약처, 원안위,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방사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진청, 산림청, 특허청, 질병청, 기상청, 행복청, 새만금청, 해경청	21개

1 개요

□ 추진경과

- 「2021년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 마련·부처 통보(국조실, '21.2월)
- 부처별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성과관리전략계획('21~'25년)」, 「'21년 성과관리시행계획」, 「'21년 자체평가 계획」 수립·제출(~'21.4.2)
 - * 성과관리전략계획은 既수립한 「성과관리전략계획('20~'25년)」에 대해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
- '성과관리 전략계획'에 대해서는 전략목표 성과지표의 적절성 중심으로 국조실 및 전문가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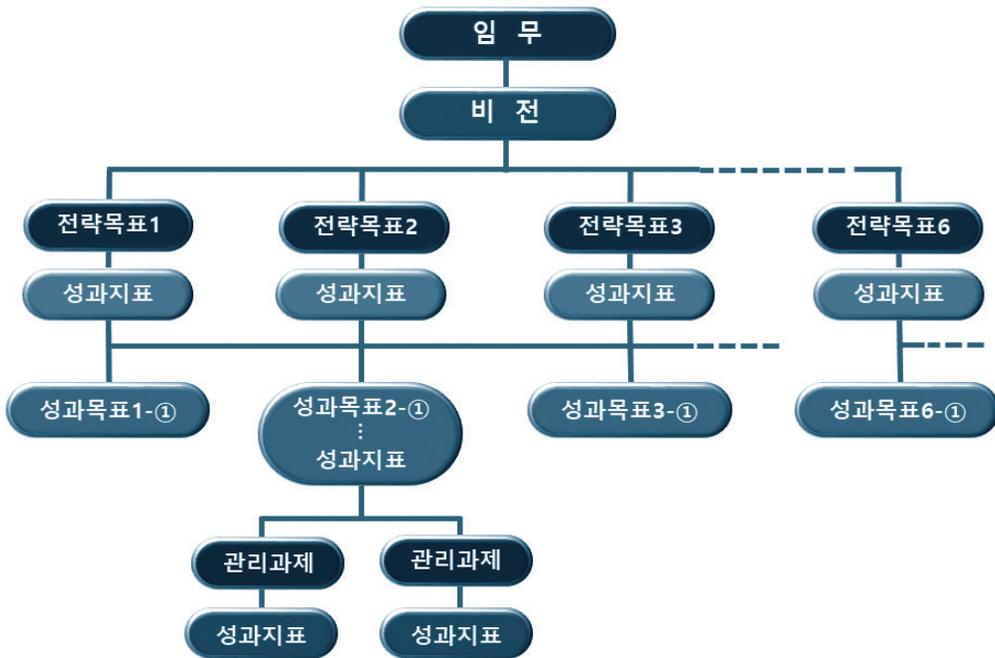
□ 기본방향

- 현 정부 임기 마지막 해를 맞아 국정과제와 함께 임기 말 핵심과제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 필요
 -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정부 핵심 추진과제(코로나 대응, 한국형 뉴딜 과제, 탄소중립 과제 등) 등 범정부 주요대책 반영
- 기관의 핵심 업무가 전략목표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직 규모, 업무범위 등을 고려하여 전략 목표 설정 권고
 - * 유사업무 3~5개 국별 전략목표 설정
- 목표에 대한 이행실적 평가결과를 정책개선, 성과급·인사 등에 환류하는 등 성과관리 제도와 실제 정책효과 및 보상과의 구체적 연계 도모

2 주요 내용

□ 46개 부처에서 총 203개 전략목표, 598개 성과목표, 1,935개 관리과제 제시, 부처 평균으로는 전략목표 4.4개, 성과목표 13개, 관리과제 42.1개

〈 성과관리 시행계획 구성 체계 〉



○ 개보위·질병청 신설, 운영지침의 업무범위 등을 고려한 전략목표 설정 권고 반영* 등으로 전략목표 9개 증가

* 예) 기재부 전략목표 3개 → 5개로 2개 추가 신설(공평하고 원칙을 갖춘 세제 등)

○ 개보위·질병청을 제외한 기존부처의 성과목표와 관리과제는 종료사업, 코로나19에 따른 대외사업 축소 등을 반영하여 감소

* △기존부처 성과목표 : 평균 13.5개 → 13.2개 △관리과제 : 평균 47.5개 → 42.6개

〈 연도별 목표 및 과제 현황 〉

(단위 : 개)

구 분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전 체	기관평균	전 체	기관평균	전 체	기관평균	전 체	기관평균
'21년	203	4.4	598	13.0	1,935	42.1	4,382	95.3
'20년	194	4.4	595	13.5	2,091	47.5	4,180	95.0
'19년	195	4.4	579	13.2	1,860	42.3	4,013	91.2

□ 성과지표는 총 5,365개로 전략목표 성과지표 207개, 성과목표 성과지표 778개, 관리과제 성과지표 4,382개

* 부처 평균 전략목표 성과지표 4.5개, 성과목표 성과지표 16.9개, 관리과제 성과지표 95.3개

- 전략목표와 성과목표 증가에 따라 각 지표 역시 증가하였으며,
 - 특히, 관리과제 성과지표는 관리과제 감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다양한 대안지표 마련 필요성 등으로 200개 이상 증가
 - 지표 성격에 따른 분류는 관리과제 성과지표 4,382개 중 결과지표가 2,219개(50.6%), 산출 지표 1,821개(41.6%), 투입·과정지표는 342개(7.8%)
 - 산출·결과 지표의 비중은 전년 수준으로(작년 대비 0.6%p 하락) 국민체감 향상을 위한 성과지표 개선 노력 지속 필요
- * 산출·결과 지표 비율 추이 : ('18년) 87.8% → ('19년) 90.0% → ('20년) 92.8% → ('21년) 92.2%

〈 연도별 성과지표 현황 〉

(단위 : 개)

구 분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소계	투입·과정	산출	결과
'21년	207	778	4,382	342 (7.8%)	1,821 (41.6%)	2,219 (50.6%)
'20년	196	753	4,180	303 (7.2%)	1,788 (42.8%)	2,089 (50.0%)
'19년	196	776	4,013	400 (10.0%)	1,615 (40.2%)	1,998 (49.8%)

- 부처별로 성과목표 달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환경·갈등요인을 분석하고 이해 관계자와의 소통 강화 등 갈등 관리계획 수립
 - 전략목표 달성을 위하여, 업무 프로세스·조직문화·성과측정체계 개선방안 제시, 예산 절감 등 변화관리 계획 수립
 - 정책수요자·이해관계자 등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간담회, 현장방문, 여론조사, 정책 모니터링단 운영 등 구체적 방안 제시

Ⅲ

전략목표 성과지표 검토결과

1

전략목표 성과지표 개요

- (도입배경) 부처별 상위목표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각 부처의 최상위 목표인 전략목표에 대한 성과지표 선정 및 관리 실시('19년~)
 - 전략목표 성과지표는 기관의 임무와 비전, 국정전략 등을 감안하여 해당기관이 중점을 두고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할 내용으로 제시
- (기본방향) 전략목표 성과지표는 중·장기적 관리를 위해 전문가 검토·정평위 보고 등을 통해 최종 확정된 바, 지표 연속성 유지 원칙
 - 다만, 지표의 질적 개선이 인정되는 경우, 기타 직제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지표 변경 제한적 허용
- (검토기준) △핵심 결과상태 반영 △중장기 성과관리 △국민체감도 △신뢰성을 중심으로, 부처안의 적절성 검토

- ▲ (핵심 결과상태 반영) 전략목표에 담긴 핵심내용·결과상태를 대표하는 지표
 - * 외생요인이 작용하더라도 정책 방향성을 대표할 수 있다면 성과지표로 선정
- ▲ (중장기 성과관리) 단년도 개선이 어렵더라도 중장기 성과견인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지표
- ▲ (국민체감도) 국민이 체감하고 이해하기 쉬운 지표, 정부 내부적인 활동이나 수행상태를 제시하는 지표는 지양
- ▲ (신뢰성) 객관적인 통계치 적극 활용(국제평가지수, e-나라지표, 국가승인통계 등), 하위 지표를 나열하는 복합지표는 지양

2 검토결과

□ (추진경과) 부처안 접수결과, 13개 부처에서 17개 지표 수정 요청, 개보위·질병청은 성과관리 전략계획 최초 수립에 따라 7개 지표 신설 요청(4.2)

- 부처 제출 수정안 및 신설지표의 적절성에 대한 전문가* 서면 검토(4.9~4.13)
 - * 행정학 교수,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원 등 총 5명 참여
- 전문가 검토결과 부처 통보 및 추가 부처 협의* 실시
 - * 기재부, 외교부, 행안부, 개보위, 문화재청, 질병청, 해경청 등(4.13~4.14)

◆ 부처가 제시한 지표안 총 24건 중 17건은 지표의 질적 개선 등으로 부처안 수용, 7건은 부적합으로 기존 지표 유지 등 조치

□ (부처안 수용) 지표 개선이 인정되는 등 새로운 성과지표로서 적절한 17건에 대하여 부처안 수용

① 대표성·국민체감도 등에서 질적 개선 → 부처 수정안 수용(9건)

부처	기존 지표('20)	'21년 부처 요청안 수용
과기부	IMD 과학경쟁력 순위 * (측정산식) 과학인프라 세부지표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COST II) * (측정산식) OECD 35개국 중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 순위(KIST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목표)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여 국가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한다 ○ (검토의견) 과학기술혁신 역량에 보다 특화된 COST II 지표가 대표성이 높음 	

부처	기존 지표('20)	'21년 부처 요청안 수용
농진청	농촌생활만족도 * (측정산식) 국가승인통계에서 산출	농촌생활종합만족도 * (측정산식) 국가승인통계에서 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목표)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업기술 확산으로 농업·농촌의 가치를 제고한다. ○ (검토의견) 국가승인통계 조사항목 통폐합에 따른 통계 변경에 따른 것으로 지표 개선에 해당 	
해수부	남극내륙 진출루트 개척률 * (측정산식) 남극 내륙 진출 루트 개척 정도	극지 및 대양탐사 진척도 * (측정산식) 실제 조사 정점 수/ 전체 조사 목표 정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목표) 해양 주권을 수호하고 해양경제영토 확장을 위해 해양수산자원을 확보한다. ○ (검토의견) 수정지표가 기존지표를 포괄하면서도 해양영토 확장에 더욱 대표성이 높음 	

② 전략목표에 적절한 신규 성과지표 도입 → 부처안 수용(6건)

부처	전략목표	성과지표('21년 신규)
기재부	재정 인프라 혁신	재정준칙 준수 지수
산업부	표준·인증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 사회와 안전하고 풍요로운 국민의 삶을 지원한다.	국제표준화 활동 순위
질병청	만성질환으로 인한 질병부담을 감소시킨다	주요 만성질환 표준화사망률

③ 부처안이 복합지표·내부 과정지표 등으로 타당성 부족

→ 부처협의를 통한 결과지향적 대안지표 개발 등 부처안 수정(2건)

부처	기존 지표('20)	'21년 부처 요청안	최종 선정지표
해경청	외국어선 불법조업률 * (측정산식) (나포척수 / 검문검색척수) × 100	불법조업 외국어선 퇴거율 * (측정산식) (퇴거척수 / 최근 3년 평균 퇴거척수) × 100	불법조업 외국어선 퇴거율 * (측정산식) (퇴거척수 / 해양 경계 침범 불법조업 외국어선 척수) ×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목표) 전략적 경비로 주권을 수호하고 해양권익을 확대 ○ (검토의견) 수정지표의 사용 필요성은 인정되나 수정안의 산식 분모는 적절한 퇴거율 측정이 어려움 → 기관의 퇴거 노력이 반영될 수 있는 산식으로 변경 		
개보위	신규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령 등 제도 개선 추진율 * (측정산식)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 개선 건수 / 목표 건수 × 100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령 등 제도 개선 달성률 * (측정산식) 좌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목표)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토대로 신뢰하는 데이터 활용을 선도한다. ○ (검토의견) 산식은 실제 개선건수를 측정하나 지표명은 추진율이라 표현하여 과정지표 성격 → 지표명을 실질에 부합하도록 개정 		

□ (부처안 불수용) 수정 지표가 기존 지표보다 대표성·포괄성·국민체감도 등의 측면에서 미흡한 경우 등 부처안 부적절

→ 부처협의를 통해 기존 지표 유지 조치(7건)

부처	기존 지표('20)	'21년 부처 요청안
문화재청	유네스코 유산 등재 누적수	문화유산 ODA 수원국 기술역량 평가 향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목표) 문화유산 세계화로 문화국가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한다 ○ (요청사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할 때 유네스코 등재 관련 현실적 절차 수행이 곤란 ○ (검토의견) 문화유산 ODA는 전략목표를 고려할 때 기존지표에 비해 대표성, 포괄성이 떨어짐 	
행안부	지자체 자체수입 규모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목표) 적극적 지방재정 운용으로 지역경제 성장을 추진한다. ○ (요청사유) 해당지표는 조세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는 수치로 자주재원 확충 효과를 전부 나타내기 어려움 ○ (검토의견) 수정지표는 과정지표이면서 정성지표, 복합지표로 성과지표에 부적절 	

□ 기본방향

- 민간위원 중심의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 체감에 부합하는 평가 추진
- 각 부처는 업무와 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지표를 자율 설정
 - 대체적으로 ①계획수립의 적절성, ②집행의 적절성, ③성과 달성도, ④정책효과 ⑤소통 및 환류 체계에 대한 평가 등으로 구성

□ 수립결과

- (자체평가위원회) 46개 기관에서 총 1,095명의 자체평가위원을 선임, 기관별 평균 24명으로 구성(외부위원 22명, 내부위원 2명)
 - 민간위원의 직업별 구성비율은 대학교수가 54.8%로 가장 높은 비율 차지, 이후 연구원(25.6%), 법조인(3.7%), 시민단체(2.9%) 순 (기타 13%)
 - ※ 올해부터는 부처별 자체평가위원 관리 강화(3기관 이상 중복 선임, 4회 이상 연임 금지)
 - 자평위 활동의 충실성 제고 및 자체평가 내실화 추진
- (평가지표) 정부 임기 마지막 해임을 고려, 운영지침 권고에 따라 다수 부처가 '정책 성과·효과' 관련 배점 비중을 60% 이상으로 설정
 - 권익위, 기상청 등 15개 부처는 정책성과·효과 및 환류 체계 관련 배점 확대(1~10점) 또는 가산점 신설
 - 과기부, 국세청, 경찰청 등 일부 부처는 적극행정, 사회적 가치 실현, 정부핵심 과제(탄소 중립 등) 달성 노력 가점 신설로 성과제고 추진동력 부여
- (평가결과 환류) 평가결과를 정책개선 및 조직·인사·예산 등에 반영하고, 개인 성과급과 연계하여 성과달성의 유인·보상 체계 확립

- 부처별 성과관리 시행계획 국회 소관 상임위 제출(각 부처, 정평위 의결 후)
- '21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이행상황 상반기 점검(각 부처, '21.7월)
 - 각 부처는 시행계획 이행상황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21.7월 말까지 국조실에 제출
- 성과관리·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계획 수립(국조실, '21.7월)
-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정(각 부처 및 국조실, '21.9월)
 - 각 부처는 시행계획 수정안을 '21.8월 말까지 국조실에 제출하고, 국조실은 수정안의 적절성을 검토
- 부처별 자체평가 실시(각 부처, '21.11월~'22.1월)
 - 각 부처는 '21년 추진실적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2.1월 말까지 국조실에 제출
- 성과관리·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국조실, '22.2월)
- 운영실태 우수기관에 대해 포상금 지급(정평위 보고, '22.3월)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가. 제6기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

성명	소속	직위	임기	
이해영(위원장)	영남대 행정학과	교수	2016.12.26	2018. 4. 2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2016.12.26	2018. 4. 2
나태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2016.12.26	2018. 4. 2
문애리	덕성여대 약학대학	교수	2016.12.26	2018. 4. 2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2016. 4. 6	2018. 4. 2
오영균	수원대 행정학과	교수	2016.12.26	2018. 4. 2
육동한	강원발전연구원	원장	2016. 6.16	2018. 4. 2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2016.12.26	2018. 4. 2
이상엽	한국과기원 생명화학공학과	교수	2016.12.26	2018. 4. 2
정진화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2016.12.26	2018. 4. 2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2016.12.26	2018. 4. 2

나. 제7기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

성명	소속	직위	임기	
남궁근(위원장)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2018. 4. 2	2020. 4. 1
임선숙	법무법인 이우스	변호사	2018. 4. 2	2020. 4. 1
이규태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2018. 4. 2	2019. 6.20
박창균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2019. 8. 2	2021. 8. 1
안창림	이화여대 물리학과	교수	2018. 4. 2	2020. 4. 1

성명	소속	직위	임기	
송다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018. 4. 2	2020. 4. 1
강인순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	2018. 6. 8	2020. 6. 7
조경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2018. 4. 2	2020. 4. 1
김의준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2018. 4. 2	2020. 4. 1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18. 4. 2	2020. 4. 1
윤지원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	2018. 4. 2	2020. 4. 1
조 성	충남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	연구원	2019. 2.11	2021. 2.10
김창영	한국안전인증원	이사장	2018. 4. 2	2018.11.27

다. 제8기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

성명	소속	직위	위촉일
남궁근(위원장)	서울과학기술대	명예석좌교수	2020. 6. 1
김효신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1.10. 1
유성민	경기대 경영학부	교수	2021.10. 1
이원용	연세대 화학과	교수	2020. 6. 1
이명환	IBS 컨설팅	대표이사	2020. 8.28
조 성	충남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	연구원	2021. 2.11
신현옥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	원장	2020. 6. 1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2020. 6. 1
김용원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	2020. 6. 1
윤지원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	2020. 6. 1
최아진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2020. 6. 1

* 조만형(동신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2020.6.1. ~ 2021.6.4.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개최일지

가. 2017년 ~ 2022년간 회의개최 실적

구분	본회의		
	합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7년	9	8	1
2018년	14	14	-
2019년	14	11	3
2020년	12	10	2
2021년	12	12	-
2022년	2	2	-

나. 위원회 개최 상세내역(2017.5.1 ~ 2022.2.28)

○ 회의 개최일 : 2017. 5. 19(금), (출 석 : $\sqrt{\quad}$, 서 면 : $\underline{\quad}$)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총 8명 참석 이해영(위원장), 나태준(민간), 석재은(민간), 오영균(민간), 육동한(민간), 이상엽(민간), 하혜수(민간), 국조실 평가실장(정부)
회의 안건	① '17년('16년 실적) 경제·인문사회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평가결과 ② '17년('16년 회계연도) 통합 재정사업 평가 결과(안)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의결 및 접수

○ 회의 개최일 : 2017. 6. 16(금) (출 석 : $\sqrt{\quad}$, 서 면 : $\underline{\quad}$)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총 8명 참석 이해영(위원장), 나태준(민간), 문애리(민간), 석재은(민간), 오영균(민간), 육동한(민간), 하혜수(민간), 국조실 평가실장(정부)
회의 안건	① 2017년-2019년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안) ② 2017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안) ③ 2017년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 추가 지침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의결

○ 회의 개최일 : 2017. 7. 21(금) (출 석 : $\sqrt{\quad}$, 서 면 : $\underline{\quad}$)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총 10명 참석 이해영(위원장), 김재천(민간), 나태준(민간), 문애리(민간), 석재은(민간), 육동한(민간), 윤희숙(민간), 이상엽(민간), 정진화(민간), 하혜수(민간)
회의 안건	① '17년 기금평가 결과 ② '17년('16년 실적)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③ '17년('16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④ 국정과제 성과지표 수립 일정 보고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접수

○ 회의 개최일 : 2017. 8. 18(금) (출 석 : $\sqrt{\quad}$, 서 면 : $\underline{\quad}$)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총 8명 참석 이해영(위원장), 김재천(민간), 문애리(민간), 오영균(민간), 윤희숙(민간), 이상엽(민간), 정진화(민간), 국조실 평가실장(정부)
회의 안건	① '17년 국정과제·주요정책과제 성과지표(안) ② '17년 국정과제 평가지원단 구성·운영 계획(안)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접수

○ 회의 개최일 : 2017. 9. 7(금) (출 석 : $\sqrt{\quad}$, 서 면 : $\underline{\quad}$)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총 9명 참석 이해영(위원장), 김재천(민간), 나태준(민간), 문애리(민간), 오영균(민간), 육동한(민간), 정진화(민간), 국조실 평가실장(정부), 행안부 기조실장(정부)
회의 안건	① '17년(16년 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② 정책기획위원회 설치·운영방안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접수

○ 회의 개최일 : 2017. 9. 22(금) (출 석 : $\sqrt{\quad}$, 서 면 : $\underline{\quad}$)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총 8명 참석 이해영(위원장), 김재천(민간), 나태준(민간), 문애리(민간), 윤희숙(민간), 이상엽(민간), 하혜수(민간), 국조실 평가실장(정부)
회의 안건	① '18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시계획(안) ② '17년 특정평가 세부 시행계획(안)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의결 및 접수

○ 회의 개최일 : 2017. 11. 6(월) (출 석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서면
회의 안건	① '17년 국정과제 평가지원단 구성결과 및 향후 일정(안)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접수

○ 회의 개최일 : 2017. 11. 17(금) (출 석 : √ , 서 면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총 12명 참석 이해영(위원장), 나태준(민간), 문애리(민간), 석재은(민간), 오영균(민간), 육동한(민간), 윤희숙(민간), 이상엽(민간), 하혜수(민간), 국조실 평가실장(정부), 기재부 기초실장(정부), 행안부 기초실장(정부)
회의 안건	① '17년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계획 및 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계획(안) ② '17년 일자리창출 평가지원단 구성·운영 계획(안)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의결 및 접수

○ 회의 개최일 : 2017. 12. 15(금) (출 석 : √ , 서 면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총 13명 참석 이해영(위원장), 김재천(민간), 나태준(민간), 문애리(민간), 석재은(민간), 오영균(민간), 육동한(민간), 이상엽(민간), 정진화(민간), 하혜수(민간), 국조실 평가실장(정부), 기재부 기초실장(정부), 행안부 기초실장(정부)
회의 안건	① '17년 자체평가(행정관리역량 부문) 운영실태 점검계획(안) ② '17년 정부업무평가 추진현황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접수

○ 회의 개최일 : 2018. 1. 15(금) (출석 : √ , 서면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총 9명 참석 이해영(위원장), 김재천(민간), 문애리(민간), 석재은(민간), 오영균(민간), 육동한(민간), 윤희숙(민간), 하혜수(민간), 국조실 평가실장(정부)
회의 안건	① '17년 정부업무평가 국정과제 부문 평가결과(안) ② '17년 정부업무평가 일자리 창출 부문 평가결과(안)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접수

○ 회의 개최일 : 2018. 1. 19(금) (출석 : $\sqrt{\quad}$, 서면 : $\underline{\quad}$)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총 9명 참석 이해영(위원장), 나태준(민간), 석재은(민간), 오영균(민간), 육동한(민간), 이상엽(민간), 정진화(민간), 하혜수(민간), 국조실 평가실장(정부)
회의 안건	① '17년 정부업무평가 국정과제·일자리 창출 부문 평가결과(안) ② '17년 정부업무평가 기관공통사항 부문 평가결과(안) ③ '17년 정부업무평가 정책소통 부문 평가결과(안) ④ '17년 정부업무평가 규제개혁 부문 평가결과(안) ⑤ '17년 정부업무평가 국민만족도 부문 평가결과(안) ⑥ '17년 정부업무평가 결과(안)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의결 및 접수

○ 회의 개최일 : 2018. 2. 26(금) (출석 : $\sqrt{\quad}$, 서면 : $\underline{\quad}$)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총 10명 참석 이해영(위원장), 김재천(민간), 나태준(민간), 문애리(민간), 석재은(민간), 오영균(민간), 윤희숙(민간), 이상엽(민간), 하혜수(민간), 국조실 평가실장(정부)
회의 안건	① 2018년도('17년 실적)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 결과(안) ② 2018년도('17년 실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평가계획 ③ 2017년도 과학기술분야 출연 연구기관 평가결과 및 2018년도 상위평가 추진계획(안) ④ 2018년도 기금운용 평가계획(안) ⑤ 2018년도('17년 실적)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계획(안)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의결 및 접수

○ 회의 개최일 : 2018. 3. 23(금) (출석 : $\sqrt{\quad}$, 서면 : $\underline{\quad}$)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총 11명 참석 이해영(위원장), 김재천(민간), 나태준(민간), 석재은(민간), 오영균(민간), 육동한(민간), 윤희숙(민간), 이상엽(민간), 정진화(민간), 하혜수(민간), 국조실 평가실장(정부)
회의 안건	① '19년('18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안) ② '18년('17년 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실시계획(안) ③ '17년 중앙행정기관 행정관리역량 부문 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결과(안) ④ '17년 중앙행정기관 주요정책부문 자체평가 결과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의결 및 접수

○ 회의 개최일 : 2018. 4. 2(월) (출 석 : √, 서 면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총 12명 참석 남궁근(위원장), 임선숙(민간), 이규태(민간), 안창림(민간), 송다영(민간), 김창영(민간), 조경호(민간), 김의준(민간), 이정철(민간), 윤지원(민간), 국조실 국무1차장(정부), 행안부 기초실장(정부)
회의 안건	① '18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안) ② '18년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안)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의결

○ 회의 개최일 : 2018. 4 20(금) (출 석 : √, 서 면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총 10명 참석 남궁근(위원장), 임선숙(민간), 송다영(민간), 김창영(민간), 조경호(민간), 김의준(민간), 이정철(민간), 윤지원(민간), 국조실 평가실장(정부), 기재부 기초실장(정부)
회의 안건	① 2018년 재정사업평가 계획(안) ② 2018년도 개별평가 실시계획(안) 검토보고 ③ 2018년도 정부혁신 평가방안(안) ④ 2018년 일자리·국정과제 평가준비 현황 ⑤ 2018년 국정과제 평가지원단 구성·운영 계획(안)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의결 및 접수

○ 회의 개최일 : 2018. 5 18(금) (출 석 : √, 서 면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총 10명 참석 남궁근(위원장), 임선숙(민간), 이규태(민간), 안창림(민간), 송다영(민간), 김창영(민간), 조경호(민간), 김의준(민간), 윤지원(민간), 국조실 평가실장(정부)
회의 안건	① 2018년 중앙행정기관 행정관리역량부문 자체평가 계획(안) ② 2018년도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자체평가계획 수립결과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의결 및 접수

○ 회의 개최일 : 2018. 5. 29(화) (출 석 : √, 서 면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총 9명 참석 남궁근(위원장), 이규태(민간), 안창림(민간), 김창영(민간), 조경호(민간), 이정철(민간), 국조실 평가실장(정부), 기재부 기초실장(정부), 행안부 기초실장(정부)
회의 안건	① 2018년 중앙행정기관 행정관리역량 부문 자체평가 계획(안) ② 2018년 정부혁신 평가 세부시행계획(안) ③ 2018년 일자리·국정과제 평가 세부시행계획(안) ④ 2018년 규제혁신 평가 세부시행계획(안) ⑤ 2018년 정책소통 평가 세부시행계획(안) ⑥ 2018년 소통만족도 평가 세부시행계획(안) ⑦ 2018년 지시이행 평가 세부시행계획(안)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의결 및 접수

○ 회의 개최일 : 2018. 6. 15(금) (출 석 : √, 서 면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총 12명 참석 남궁근(위원장), 임선숙(민간), 이규태(민간), 안창림(민간), 송다영(민간), 조경호(민간), 김의준(민간), 이정철(민간), 윤지원(민간), 강인순(민간), 국조실 평가실장(정부), 기재부 기초실장(정부)
회의 안건	① 2017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평가결과 ② 2018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보고(안) ③ 2019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시계획(안) ④ 2018년 일자리·국정과제 및 주요정책과제 성과지표(안) ⑤ 2018년 국정과제 평가지원단 구성결과 및 향후일정(안)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의결 및 접수

○ 회의 개최일 : 2018. 7. 20(금) (출 석 : √, 서 면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총 10명 참석 남궁근(위원장), 이규태(민간), 안창림(민간), 송다영(민간), 김창영(민간), 김의준(민간), 이정철(민간), 윤지원(민간), 강인순(민간), 국조실 평가실장(정부)
회의 안건	① 2017회계연도 기금평가 결과 ② 2018년도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계획(안)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의결 및 접수

○ 회의 개최일 : 2018. 9. 14(금) (출 석 : √, 서 면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총 8명 참석 남궁근(위원장), 안창림(민간), 송다영(민간), 김창영(민간), 조경호(민간), 김의준(민간), 강인순(민간), 국조실 평가실장(정부)
회의 안건	① 2018년(2017년실적)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② 2018년(2017년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접수

○ 회의 개최일 : 2018. 10. 19(금) (출 석 : √, 서 면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총 9명 참석 남궁근(위원장), 이규태(민간), 안창림(민간), 김창영(민간), 조경호(민간), 김의준(민간), 이정철(민간), 강인순(민간), 국조실 평가실장(정부)
회의 안건	① 2018년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 행정관리역량 부문 운영실태 점검계획(안) ② 2018년도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정(안) 검토결과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의결 및 접수

○ 회의 개최일 : 2018. 11. 16(금) (출 석 : √, 서 면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총 8명 참석 남궁근(위원장), 이규태(민간), 송다영(민간), 김의준(민간), 윤지원(민간), 강인순(민간), 국조실 평가실장(정부), 기재부 기조실장(정부)
회의 안건	① 일자리·국정과제 평가지원단 부처실적설명회 계획(안)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접수

○ 회의 개최일 : 2018. 12. 21(금) (출 석 : √, 서 면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총 10명 참석 남궁근(위원장), 임선숙(민간), 이규태(민간), 안창림(민간), 송다영(민간), 조경호(민간), 김의준(민간), 이정철(민간), 윤지원(민간), 국조실 평가실장(정부)
회의 안건	①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안) ② 2018년 실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평가계획 ③ 2019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안)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의결 및 접수

○ 회의 개최일 : 2019. 1. 18(금) (출석 : $\sqrt{\quad}$, 서면 : $\underline{\quad}$)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총 11명 참석 남궁근(위원장), 임선숙(민간), 이규태(민간), 안창림(민간), 송다영(민간), 조경호(민간), 김의준(민간), 이정철(민간), 윤지원(민간), 강인순(민간), 국조실 평가실장(정부)
회의 안건	① '19년 정부업무평가 성과관리 운영지침(안) ② '18년도 정부업무평가 일자리·국정과제 부문 평가결과(안) ③ '18년도 정부업무평가 규제혁신 부문 평가결과(안) ④ '18년도 정부업무평가 정부혁신 부문 평가결과(안) ⑤ '18년도 정부업무평가 정책소통 부문 평가결과(안) ⑥ '18년도 정부업무평가 소통만족도 부문 평가결과(안) ⑦ '18년도 정부업무평가 지시이행 부문 평가결과(안) ⑧ '18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안)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의결 및 접수

○ 회의 개최일 : 2019. 2. 15(금) (출석 : $\sqrt{\quad}$, 서면 : $\underline{\quad}$)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총 9명 참석 남궁근(위원장), 안창림(민간), 송다영(민간), 조경호(민간), 윤지원(민간), 강인순(민간), 조성(민간), 국조실 평가실장(정부), 행안부 기초실장(정부)
회의 안건	① 2019년(2018년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실시계획 ②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18년 평가결과 및 '19년 상위평가 추진계획(안) ③ 2019년 기금평가계획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접수

○ 회의 개최일 : 2019. 3. 15(금) (출석 : $\sqrt{\quad}$, 서면 : $\underline{\quad}$)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총 11명 참석 남궁근(위원장), 임선숙(민간), 안창림(민간), 송다영(민간), 조경호(민간), 김의준(민간), 윤지원(민간), 강인순(민간), 조성(민간), 국조실 평가실장(정부), 기재부 기초실장(정부)
회의 안건	① 2018년 실적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계획(안) ② 2018년 실적 중앙행정기관 행정관리역량 부문 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결과(안) ③ 2018년 실적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결과(안) ④ 2019년도 특정평가 세부지침 ⑤ 2019년도 중점추진과제 추진 및 관리계획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의결 및 접수

○ 회의 개최일 : 2019. 3. 29(금) (출석 : , 서면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서면
회의 안건	① 2019년도 일자리·국정과제 성과지표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접수

○ 회의 개최일 : 2019. 4. 19(금) (출석 : , 서면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총 11명 참석 남궁근(위원장), 임선숙(민간), 이규태(민간), 안창림(민간), 송다영(민간), 이정철(민간), 강인순(민간), 조성(민간), 국조실 평가실장(정부), 기재부 기초실장(정부), 행안부 기초실장(정부)
회의 안건	① 2019년도 일자리·국정과제 평가지원단 구성·운영 계획(안) ② 2019년도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자체평가계획 수립 결과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접수

○ 회의 개최일 : 2019. 5. 17(금) (출석 : , 서면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총 8명 참석 남궁근(위원장), 안창림(민간), 조경호(민간), 김의준(민간), 이정철(민간), 윤지원(민간), 강인순(민간), 국조실 평가실장(정부)
회의 안건	① 경제·인문사회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018년도 평가결과 및 2019년도 평가계획 ② 2019년도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행정관리역량 부문) 계획(안)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의결 및 접수

○ 회의 개최일 : 2019. 6. 14(금) (출석 : , 서면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총 9명 참석 남궁근(위원장), 이규태(민간), 안창림(민간), 조경호(민간), 김의준(민간), 윤지원(민간), 강인순(민간), 조성(민간), 국조실 평가실장(정부)
회의 안건	① 중앙행정기관 「19년도 성과관리계획」 상 전략목표 성과지표 검토 결과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접수

○ 회의 개최일 : 2019. 7. 19(금) (출석 : $\sqrt{\quad}$, 서면 : $\underline{\quad}$)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총 8명 참석 남궁근(위원장), 송다영(민간), 조경호(민간), 윤지원(민간), 강인순(민간), 조성(민간), 국조실 평가실장(정부), 기재부 정책기획관(정부)
회의 안건	① 2019년 일자리·국정과제 평가지원단 구성(안) ② 정책효과 평가 개선방안 ③ 중앙행정기관의 지자체 대상 개별평가 계획('19년실적) 검토 ④ 2019년도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계획 ⑤ 2018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⑥ 2019년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행정관리역량 부문) 운영실태 점검계획 ⑦ 2018년 기금평가 결과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의결 및 접수

○ 회의 개최일 : 2019. 8. 26(월) (출석 : $\sqrt{\quad}$, 서면 : $\underline{\quad}$)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총 8명 참석 남궁근(위원장), 조경호(민간), 이정철(민간), 윤지원(민간), 강인순(민간), 조성(민간), 박창균(민간), 국조실 평가실장(정부)
회의 안건	① 금년도 국정과제 평가 준비상황 점검 ② 2019년('18년 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접수

○ 회의 개최일 : 2019. 9. 20(금) (출석 : $\sqrt{\quad}$, 서면 : $\underline{\quad}$)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총 11명 참석 남궁근(위원장), 안창림(민간), 송다영(민간), 조경호(민간), 김의준(민간), 이정철(민간), 윤지원(민간), 강인순(민간), 조성(민간), 박창균(민간), 국조실 평가실장(정부)
회의 안건	①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② 2020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시계획 ③ 2020년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개발 결과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의결 및 접수

부
록

○ 회의 개최일 : 2019. 9. 26(목) (출석 : , 서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서면
회의 안건	① 2019년도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종합평가 계획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접수

○ 회의 개최일 : 2019. 10. 28(월) (출석 : , 서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서면
회의 안건	① 2019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정 검토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접수

○ 회의 개최일 : 2019. 11. 15(금) (출석 : √ , 서면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총 11명 참석 남궁근(위원장), 임선숙(민간), 안창림(민간), 송다영(민간), 조경호(민간), 이정철(민간), 윤지원(민간), 강인순(민간), 조성(민간), 박창균(민간), 국조실 평가실장(정부), 기재부 정책기획관(정부)
회의 안건	① 2020~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안) 의견 조회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접수

○ 회의 개최일 : 2019. 12. 20(금) (출석 : √ , 서면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총 11명 참석 남궁근(위원장), 임선숙(민간), 안창림(민간), 송다영(민간), 조경호(민간), 김의준(민간), 이정철(민간), 강인순(민간), 조성(민간), 박창균(민간), 국조실 평가실장(정부)
회의 안건	① 2020~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안) ② 2020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안)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의결

○ 회의 개최일 : 2020. 1. 10(금) (출석 : √ , 서면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총 11명 참석 남궁근(위원장), 임선숙(민간), 안창림(민간), 송다영(민간), 조경호(민간), 김의준(민간), 이정철(민간), 윤지원(민간), 강인순(민간), 박창균(민간), 국조실 평가실장(정부)
회의 안건	① 2019년도 정부업무평가 일자리·국정과제 부문 평가결과(안) ② 2019년도 정부업무평가 규제혁신 부문 평가결과(안) ③ 2019년도 정부업무평가 정부혁신 부문 평가결과(안) ④ 2019년도 정부업무평가 정책소통 부문 평가결과(안) ⑤ 2019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안) ⑥ 2020년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의결 및 접수

○ 회의 개최일 : 2020. 2. 21(금) (출석 : √ , 서면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총 11명 참석 남궁근(위원장), 송다영(민간), 조경호(민간), 김의준(민간), 이정철(민간), 윤지원(민간), 강인순(민간), 조성(민간), 박창균(민간), 국조실 평가실장(정부), 기재부 정책기획관(정부)
회의 안건	① 2020년(2019년 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실시계획 ②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2019년 평가결과 및 2020년 상위평가 추진계획 ③ 2020년 기금평가계획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접수

○ 회의 개최일 : 2020. 3. 27(금) (출석 : , 서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서면
회의 안건	①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계획 ②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결과 ③ 중앙행정기관 행정관리역량 부문 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결과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의결 및 접수

○ 회의 개최일 : 2020. 6. 5(금) (출석 : √ , 서면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총 13명 참석 남궁근(위원장), 김용원(민간), 신현옥(민간), 윤태범(민간), 이원용(민간), 조만형(민간), 최아진(민간), 윤지원(민간), 박창균(민간), 조성(민간), 강인순(민간), 국조실 평가실장(정부), 기재부 정책기획관(정부)
회의 안건	① 2020년도 중앙행정기관 대상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 ②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도입확대 및 실효성 제고 방안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접수

○ 회의 개최일 : 2020. 6. 19(금) (출석 : √ , 서면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총 10명 참석 남궁근(위원장), 김용원(민간), 신현옥(민간), 윤태범(민간), 이원용(민간), 조만형(민간), 윤지원(민간), 조성(민간), 국조실 평가실장(정부), 기재부 정책기획관(정부)
회의 안건	① 2020년도 중앙행정기관 대상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 ② 2020년도 특정평가 세부지침(안) ③ 경제·인문사회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019년도 평가결과 및 2020년도 평가계획(안)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의결 및 접수

○ 회의 개최일 : 2020. 6. 30(화) (출석 : √ , 서면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총 13명 참석 남궁근(위원장), 김용원(민간), 신현옥(민간), 윤태범(민간), 이원용(민간), 조만형(민간), 최아진(민간), 윤지원(민간), 박창균(민간), 조성(민간), 국조실 평가실장(정부), 기재부 정책기획관(정부), 행안부 정책기획관(정부)
회의 안건	① 2020년(19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② 2020년도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자체평가 계획수립 결과 ③ 2019 회계연도 재정사업 평가 결과 ④ 2020년도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행정관리역량 부문) 계획(안)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의결 및 접수

○ 회의 개최일 : 2020. 7. 17(금) (출석 : √ , 서면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총 13명 참석 남궁근(위원장), 김용원(민간), 신현옥(민간), 윤태범(민간), 이원용(민간), 조만형(민간), 최아진(민간), 윤지원(민간), 박창균(민간), 조성(민간), 국조실 평가실장(정부), 기재부 기획조정실장(정부), 행안부 정책기획관(정부)
회의 안건	① 2020년 기금평가결과 ② 미성년자 등 연에게 진입·활동 관련 권익보호 개선 분석계획(안) ③ 2020년 주요정책과제 선정 및 상반기 점검 결과 ④ 2020년 일자리·국정과제 전문가 평가단 구성·운영 계획(안)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접수

○ 회의 개최일 : 2020. 9. 3(목) (출석 : , 서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서면
회의 안건	① 2021년('20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수정(안) ② 해외직구물품 안전관리·유통체계 분석계획(안)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의결 및 접수

○ 회의 개최일 : 2020. 9. 18(금) (출석 : √ , 서면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총 11명 참석 남궁근(위원장), 조만형(민간), 박창균(민간), 이명환(민간), 조성(민간), 신현옥(민간), 윤태범(민간), 김용원(민간), 윤지원(민간), 최아진(민간), 국조실 평가실장(정부)
회의 안건	① 2020년도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주요정책 부문) 운영실태 점검계획(안) ② 2020년도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행정관리역량 부문) 운영실태 점검계획(안) ③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④ 미성년 연예인 등에 대한 권익보호 개선방안 결과 ⑤ 4차 산업혁명 시대 감정·가치평가 운영실태 분석계획(안) ⑥ 2020년도 일자리·국정과제 평가 세부운영 계획(안)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의결 및 접수

○ 회의 개최일 : 2020. 10. 16(금) (출석 : √ , 서면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총 11명 참석 남궁근(위원장), 박창균(민간), 이원용(민간), 이명환(민간), 조성(민간), 신현욱(민간), 윤태범(민간), 김용원(민간), 윤지원(민간), 최아진(민간), 국조실 평가실장(정부)
회의 안건	① 2020년도 일자리·국정과제 전문가 평가단 구성(안) ② 2020년도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정(안) 검토결과 ③ 2021년(2020년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실시계획(안) ④ 2022년(2021년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개발 결과(안) ⑤ 2020년(2019년도 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의결 및 접수

○ 회의 개최일 : 2020. 11. 20(금) (출석 : √ , 서면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총 12명 참석 남궁근(위원장), 조만형(민간), 이원용(민간), 이명환(민간), 조성(민간), 윤태범(민간), 김용원(민간), 윤지원(민간), 최아진(민간), 국조실 평가실장(정부), 기재부 기획조정실장(정부),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정부)
회의 안건	① 해외직구 물품 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② 4차 산업혁명 시대 감정·가치평가 제도 개선방향 ③ 해외 우리국민 환자 보호 강화방안 분석계획(안) ④ 2020년도 일자리·국정과제 평가단 평가위원 교체(안) ⑤ 2020년도 일자리·국정과제 부문 평가점수 산정 체계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접수

○ 회의 개최일 : 2020. 12. 18(금) (출석 : √ , 서면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총 11명 참석 남궁근(위원장), 조만형(민간), 박창균(민간), 이원용(민간), 이명환(민간), 조성(민간), 신현욱(민간), 윤태범(민간), 김용원(민간), 윤지원(민간), 국조실 평가실장(정부)
회의 안건	① 「2020년도 정부업무평가」 향후 일정(안) ② 2020년도 일자리·국정과제 비대면 평정회의 세부운영 방안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접수

○ 회의 개최일 : 2021. 1. 22(금) (출석 : √ , 서면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총 12명 참석 남궁근(위원장), 조만형(민간), 박창균(민간), 이원용(민간), 이명환(민간), 조성(민간), 신현옥(민간), 윤태범(민간), 김용원(민간), 윤지원(민간), 최아진(민간), 국조실 평가실장(정부)
회의 안건	① 2020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안)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의결

○ 회의 개최일 : 2021. 2. 19(금) (출석 : √ , 서면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총 13명 참석 남궁근(위원장), 조만형(민간), 박창균(민간), 이원용(민간), 이명환(민간), 조성(민간), 신현옥(민간), 윤태범(민간), 윤지원(민간), 최아진(민간), 국조실 평가실장(정부), 기재부 정책기획관(정부), 행안부 정책기획관(정부)
회의 안건	① 2021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안) ② 2021년도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안) ③ 2020년도 정부업무평가 포상금 집행결과 ④ 2020년도 일자리·국정과제 평가 과제별 보고서 ⑤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2020년 평가결과 및 2021년 기관평가 추진계획(안)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의결 및 접수

○ 회의 개최일 : 2021. 3. 5(금) (출석 : √ , 서면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총 13명 참석 남궁근(위원장), 조만형(민간), 박창균(민간), 이원용(민간), 이명환(민간), 조성(민간), 신현옥(민간), 김용원(민간), 윤지원(민간), 최아진(민간), 국조실 평가실장(정부), 기재부 기획조정실장(정부), 행안부 정책기획관(정부)
회의 안건	① 2021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실시계획(안) ②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관련 분석계획(안) ③ 2021년도 특정평가(일자리·국정과제 부문) 세부지침(안)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접수

○ 회의 개최일 : 2021. 3. 19(금) (출석 : √ , 서면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총 10명 참석 남궁근(위원장), 조만형(민간), 이원용(민간), 조성(민간), 신현옥(민간), 윤태범(민간), 김용원(민간), 최아진(민간), 국조실 평가실장(정부), 기재부 정책기획관(정부)
회의 안건	① 2022년(2021년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조정 계획(안) ② 2021년(2020년도 실적)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계획(안) ③ 2021년(2020년도 실적) 기금평가 계획(안) ④ 2021년도 일자리·국정과제 평가 주요정책과제 선정(안) ⑤ 2021년도 특정평가 세부지침(안)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의결 및 접수

○ 회의 개최일 : 2021. 4. 2(금) (출석 : √ , 서면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총 13명 참석 남궁근(위원장), 박창균(민간), 이원용(민간), 이명환(민간), 조성(민간), 신현옥(민간), 윤태범(민간), 김용원(민간), 윤지원(민간), 최아진(민간), 국조실 평가실장(정부), 기재부 기획조정실장(정부), 행안부 정책기획관(정부)
회의 안건	① 2020년도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자체평가 '주요정책부문' 운영실태 점검 결과 ② 2020년도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자체평가 '행정관리역량부문' 운영실태 점검 결과 ③ 해외 우리국민 환자 보호체계 개선방안 ④ 2021년도 일자리·국정과제 평가 성과지표 선정(안)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의결 및 접수

○ 회의 개최일 : 2021. 4. 16(금) (출석 : √ , 서면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총 11명 참석 남궁근(위원장), 조만형(민간), 이원용(민간), 이명환(민간), 신현옥(민간), 김용원(민간), 윤지원(민간), 최아진(민간), 국조실 평가실장(정부), 기재부 정책기획관(정부), 행안부 정책기획관(정부)
회의 안건	① 2021년도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자체평가 계획수립 결과 ② 2021년('20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의결 및 접수

○ 회의 개최일 : 2021. 5. 21(금) (출석 : √ , 서면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총 9명 참석 남궁근(위원장), 이원용(민간), 이명환(민간), 신현욱(민간), 조성(민간), 김용원(민간), 최아진(민간), 국조실 평가실장(정부), 기재부 기초실장(정부)
회의 안건	① 경제·인문사회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020년 평가결과 ② 개별평가제도 관리·점검계획 ③ 2021년도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자체평가(행정관리역량 부문)계획(안)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의결 및 접수

○ 회의 개최일 : 2021. 6. 18(금) (출석 : √ , 서면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총 9명 참석 남궁근(위원장), 박창균(민간), 이원용(민간), 신현욱(민간), 윤태범(민간), 김용원(민간), 최아진(민간), 국조실 평가실장(정부), 기재부 기초실장(정부)
회의 안건	① 경제·인문사회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021년도 평가계획(안) ②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안) ③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후 처리실태 분석계획(안)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접수

○ 회의 개최일 : 2021. 7. 16(금) (출석 : √ , 서면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총 12명 참석 남궁근(위원장), 박창균(민간), 이원용(민간), 이명환(민간), 조성(민간), 김용원(민간), 윤태범(민간), 윤지원(민간), 최아진(민간), 국조실 평가실장(정부), 기재부 정책기획관(정부), 행안부 정책기획관(정부)
회의 안건	① 2021년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자체평가(주요정책 부문) 운영실태 점검계획(안) ② 2021년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자체평가(행정관리역량 부문) 운영실태 점검계획(안) ③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실태 분석계획(안) ④ 2021년(2020년도 실적) 기금평가 결과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의결 및 접수

부
록

○ 회의 개최일 : 2021. 8. 20(금) (출석 : √ , 서면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총 9명 참석 남궁근(위원장), 김용원(민간), 신현옥(민간), 이원용(민간), 최아진(민간), 윤지원(민간), 조성(민간), 국조실 평가실장(정부), 기재부 정책기획관(정부)
회의 안건	① 관리대상 개별평가 선정(안) ②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지식재산(IP) 가치평가 활성화 방안 ③ 2021년도 일자리·국정과제 평가 운영 계획(안)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접수

○ 회의 개최일 : 2021. 9. 24(금) (출석 : √ , 서면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총 12명 참석 남궁근(위원장), 김용원(민간), 신현옥(민간), 윤태범(민간), 이원용(민간), 최아진(민간), 윤지원(민간), 조성(민간), 이명환(민간), 국조실 평가실장(정부), 기재부 정책기획관(정부), 행자부 기초실장(정부)
회의 안건	① 2021년(2020년도 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② 2021년(2020년도 실적)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평가제도 개편방안 ③ 2021년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정안 검토 결과 ④ 취약계층 돌봄 관련 국정과제 현장점검 결과 ⑤ 2021년도 일자리·국정과제 전문가 평가단 구성·운영 계획(안)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접수

○ 회의 개최일 : 2021. 10. 15(금) (출석 : √ , 서면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총 14명 참석 남궁근(위원장), 김용원(민간), 신현옥(민간), 윤태범(민간), 이원용(민간), 김효신(민간), 최아진(민간), 윤지원(민간), 유성민(민간), 조성(민간), 이명환(민간), 국조실 평가실장(정부), 기재부 정책기획관(정부), 행자부 정책기획관(정부)
회의 안건	① 2022년(2021년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시계획(안) ② 2023년(2022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개발 결과 ③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④ 국정과제 현장점검 결과 4-1) 미래차 관련 국정과제 현장점검 결과 4-2) 전통시장 분야 국정과제 현장점검 결과 4-3) 수입식품 안전관리실태 점검 결과 ⑤ 2021년 일자리·국정과제 전문가 평가단 구성(안)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이결 및 접수

○ 회의 개최일 : 2022. 1. 21(금) (출석 : √ , 서면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총 11명 참석 남궁근(위원장), 김용원(민간), 신현욱(민간), 이원용(민간), 김호신(민간), 최아진(민간), 윤지원(민간), 유성민(민간), 조성(민간), 이명환(민간), 국조실 평가실장(정부)
회의 안건	① 2021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안) ② 생활폐기물 처리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의결 및 접수

○ 회의 개최일 : 2022. 2. 18(금) (출석 : √ , 서면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총 10명 참석 남궁근(위원장), 김용원(민간), 신현욱(민간), 이원용(민간), 김호신(민간), 최아진(민간), 윤지원(민간), 유성민(민간), 조성(민간), 국조실 평가실장(정부)
회의 안건	① 2021년도 정부업무평가 포상금 집행결과 ② 2021년도 일자리·국정과제 평가 과제별 보고서 ③ 2022년(2021년도 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실시계획(안) ④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2021년도 평가결과 및 2022년 기관평가 추진계획(안)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의결 및 접수

2017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2018. 1.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국무조정실

I. 평가 개요

I. 2017년 평가 개요

1 평가대상

- 기관 : 43개 중앙행정기관 (장관급 23개, 차관급 20개)
- 기간 : '17.5.10 ~ 12.31

2 평가부문

- ◇ 새 정부 출범 첫 해 국정과제와 일자리 창출 노력에 최우선 비중
- ◇ 국민과의 정책소통, 국민들의 국정평가(국민만족도)도 중점 평가
- ◇ 현안관리·인권개선·갈등관리 등은 가감점 반영

- ① (국정과제) 국정과제 및 기관별 핵심업무 평가를 통해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
- ②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노력 및 성과 평가를 통해 공공·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지원
- ③ (규제개혁) 규제개혁 노력 및 성과 평가를 통해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
- ④ (정책소통) 국정과제 등 주요정책에 대한 국민소통 노력 및 성과 평가를 통해 국민의 정책성과 이해 및 체감 확산
- ⑤ (국민만족도) 국정과제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통해 국민체감 성과 제고
- ⑥ (기관공통사항) 현안관리·갈등관리·인권개선·특정시책 이행노력 및 성과를 평가하여 주요시책에 대한 정부 추진노력 견인

〈 '16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

2016년 평가		2017년 평가	
① 국정과제 · 핵심개혁과제(과제별 최대 ±2) · 협 업(기관별 최대 ±1)	50	① 국정과제 · 혁신관리 및 협업(기관별 최대 ±2)	50
② 규제개혁	20	② 일자리 창출	20
③ 정책홍보	20	③ 규제개혁	10
④ 정상화과제	10	④ 정책소통	10
⑤ 기관공통사항 (정부3.0 ±5, 성과관리 ±3, 특정시책 ±2)	±10	⑤ 국민만족도	10
		⑥ 기관공통사항 (현안관리 ±3, 갈등관리 ±3, 인권개선 ±2, 특정시책 ±2)	±10

3 평가방법

- 정량평가(부문별 주관기관)와 정성평가(민간평가지원단)를 병행하여 평가의 객관성·전문성·공정성 제고
 - 부문별 주관기관은 추진계획 이행정도, 성과지표 달성도 등에 대해 정량평가
 - 부문별 평가지원단은 국정과제 관련 위원·전문가·정책수요자 등으로 구성, 질적인 측면에서의 정책효과를 정성평가
- 평가부문별 기관점수를 합산하여 기관종합 평가
-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평가결과 심의·의결

4 평가결과 제시

- 평가결과는 장관급과 차관급 기관으로 구분하여 기관별 등급 부여 (우수, 보통, 미흡)
-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보완사항 제시

II. 부문별 평가결과

1. 국정과제 평가

1 평가 개요

□ 평가목적

- 100대 국정과제 전반을 객관적·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성공적인 국정수행을 뒷받침

□ 평가대상

- 43개 중앙행정기관(직제순)

구분	기 관 명
장관급 (23개)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차관급 (20개)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해양경찰청, 원자력안전위원회

□ 평가방법

- 정부업무평가위원을 중심으로 「국정과제 평가지원단」 구성(437명)
 - 분야별 민간 전문가 및 정책수요자 참여, 10개 분과로 구성
- 분과별로 평가지표에 따라 정량·정성평가 병행 실시

- 주관 국정과제가 1개 이하인 기관(21개)은 국정과제 관련 주요정책을 선정(37개 과제), 국정과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

□ 평가지표(50점)

- 정책추진 노력(40%), 성과지표달성도(30%), 정책효과(30%)를 평가

평가항목	평가지표
정책추진 노력	• 과제 추진계획을 충실히 수립하고, 이에 따라 차질 없이 이행했는지 여부
성과지표 달성도	• 사전에 제시된 성과지표 목표치를 달성하였는지 여부
정책효과	• 성과지표로 측정할 수 없는 정책성과를 종합적으로 판단

2

평가 등급

* 각 등급 내 기관명은 직제순으로 표기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우수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산림청, 특허청, 새만금개발청
보통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세청, 병무청, 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미흡	통일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민권익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위사업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3

총 평

□ 대내외 정책 추진 여건

- 저성장·경제적 불확실성 심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내외 환경 변화와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
- 시장주의 확산·공공성 약화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 확대, 청년실업,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 지속
- 북 핵·미사일 도발 및 사드배치에 따른 주변국과의 갈등 등으로 한반도·동북아 긴장 고조

⇒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 새 정부가 출범, 국정 조기 안정화와 새로운 국가정책방향 정립이라는 이중적 요구에 직면

□ 중점 추진사항 및 주요 성과

- 국정과제의 체계적 이행과 성과창출을 위한 정책추진 기반 구축
 - 국정과제 추진체계 구축, 일자리·경제·복지 등 분야별 정책 로드맵 발표 등 100대 과제별 추진기반 확립
- 적폐청산, 반부패 개혁 추진 및 국민참여 확대를 통한 국정운영의 민중성·투명성 제고
 - 적폐청산을 위한 철저한 진상조사, 반부패정책협의회 등 범정부 반부패 추진체계 구축, 권력기관 개혁 논의 본격화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참여형 정책결정 모델 제시
- ‘사람중심 경제’ 구현을 위해 정책기조를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으로 전환
 - 일자리 추경,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등 일자리중심 정책 추진, 최저임금 인상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한 일자리 질 개선
 -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등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가맹·하도급분야 불공정행위 근절 등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추진
-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복지·교육·보육·안전·환경 등 국가 책임성·공공성 강화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치매 국가책임제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등 사회·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위한 포용적 복지체계 구축
 - 서민·청년 주거지원 확대, 교육·보육환경 개선 등 인구절벽 해소와 민생안정 및 국민안전을 위한 국가의 책임·역할 강화
- 4대 지방자치권 보장 등을 통한 강력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추진
 - 자치분권 로드맵(안) 등 분권형 국가 이행전략 수립, 도시재생뉴딜 등 지역 균형발전·성장기반 마련
-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기반 구축 및 주변 4국과의 관계 복원
 -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고,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 강화
 - 정상외교를 통한 주변 4국과의 관계 복원 및 신북방정책·신남방정책 등 외교관계 다변화·다원화

□ 미흡한 점

- 공수처 설치, 과거사문제 해결, 부패방지 추진기반 강화 등 개혁과제 이행을 위한 주요입법 일부 지연
- 국민소득, 경제성장률 등 거시 경제지표 호전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가계부채 부담 증가 등 내수·고용 시장에서의 체감경기 회복은 부진
- 산업재해, 화재·해상사고 등으로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사고예방·현장대응체계 및 생활 속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 저하
-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핵·미사일 위협 현실화에 따라 한반도 안보 불안정성 지속

▶ '18년에는 개혁과제 이행 완수 및 민생과제 본격 추진으로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 창출에 주력

4

국정목표별 평가결과

(1) 국민이 주인인 정부

- ◇ 적폐청산, 반부패 개혁, 권력기관 개혁 등 개혁과제 추진을 통해 정부 신뢰 회복 및 국정운영의 민주성·투명성 제고
- ◇ 공수처 설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반부패 총괄기구 기능 보강, 과거사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주요 입법 일부 지연

주요 정책성과

□ 적폐청산과 반부패 개혁 추진

-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 부처별 적폐청산TF 활동 및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등을 통한 정부 신뢰 회복 노력
 -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구성·운영
-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 출범,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등 반부패개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 * 공익신고 대상 확대(건강·안전·환경 등 5대 분야 →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기간 연장(3개월→1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 과거사 진실규명 및 피해자와의 소통을 통한 국민화합의 기반 마련
 - *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출범, 일제강제동원 희생자·유족 및 제주 4.3 유족 간담회, 일제강제동원 희생자 전국합동위령제 개최 등
- 방송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등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제고 노력 지속
 - * 방송·미디어·법률·경영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 19인으로 구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제작·편성 자율성 제고에 대한 개선방안 논의

□ 국민참여 확대를 통한 정부 혁신으로 국민통합의 전기 마련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사회혁신 민관협의회* 발족, 국민참여예산 도입 등 국민참여 및 소통 확대
 - * 사회혁신과 관련한 민관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제도개선사항 발굴
-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확대*, 공무수행중 사망한 비정규직 순직 인정 방안 마련 등 공직 내 차별 해소 등을 통한 사회통합 촉진
 - * 독립유공자 후손(손·자녀) 신규지원, 국가유공자 보상금 인상 등 지원범위 확대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기관 혁신* 노력 지속
 - * 블라인드 채용 전면 도입,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사회적 가치 평가 강화 등

□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추진

- (검찰) 공수처 신설 논의를 본격화하고, 인권감독관 신설, 변론기일제 시범실시, 무죄사건 판결확정 전 평정제도 도입 등 내부 통제 강화
- (경찰)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추진 및 경찰권 행사 기본원칙 발표(경찰개혁위) 등 공권력 남용에 대한 통제 강화
-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대외안보정보원 명칭변경 등 조직쇄신안 마련
 - ※ 국가정보원·검찰·경찰 등 주요 권력기관 개혁 방향 발표('18.1.14)

□ 인권존중사회 구현 노력

- 별건조사 금지, 반인권적 범죄피해자 국가배상 소멸시효 배제 등 인권정책 개선방향 제시(법무·검찰개혁위)
- 경찰 관련 인권위 권고 불수용 사안에 대한 전향적 수용* 결정,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및 영상 녹화 확대 등 수사과정 인권 보호 강화 추진
 - * 장비(물대포·차벽)사용 자제권고 등 '01~'16년까지 불수용 108건 중 86건
- 인권개선 노력을 정부업무평가에 반영, 인권위 권고에 대한 회신의무 준수율·수용률 향상* 등 기관 차원의 관심도 제고
 - * 9개 기관의 36개 권고 이행계획 회신율·수용률 100%(7~12월)

문 제 점

□ 검찰·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추진의 가시적 성과 부족

- 법무·검찰개혁위, 경찰개혁위를 통해 각종 권고안이 발표되었으나,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법」 제정** 등 실질적 제도 개선 추진 지연
 - *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수사구조개혁' 권고안을 발표(12월)하였으나, 검·경간 논의는 아직 본격화 되지 않은 상황
 - ** 공수처 설치의 경우 신설 필요성, 권한·범위 등에 대해 이견
-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확산의 경우 경찰개혁위원회 검토·논의 기한 연장 등으로 「자치경찰법」 제정안 마련 지연

□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추진 기반 마련 지연 및 공감 형성 부족

- 광주민주화 운동 진상규명위 설치 및 진실화해위 활동 재개 등을 위한 「5.18 특별법」, 「과거사 정리기본법」 제·개정 지연*
 - * 제·개정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진실화해위원회의 업무범위, 진실규명 범위 등 이견으로 처리 지연
- 제주 4.3사건에 대한 국민 인지도·관심도가 상대적으로 저조*
 - * 사건별 인지도 : 5·18 광주민주화운동(99%), 노근리 사건(75.7%), 4·3 사건(68.1%)
(제주 4.3 평화재단 조사결과, 11월)

□ 부패방지 관련 일부 과제 지연 및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신뢰 저하

- 권익위 혁신방안은 발표(12월) 하였으나, 반부패 총괄기구로서의 기능 보강*을 위한 「부패방지 권익위법」 마련 등 지연
 - * 부패신고 시 피신고자에 대한 권익위의 조사기능 보완, 국민감사 청구대상 확대 등 일부 쟁점에 대한 이견
- 사회 유력인사들의 부정청탁에 의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가 드러나면서 공공기관의 채용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 불신 초래

개선 · 보완 방향

- ◇ 적폐청산과 개혁과제 추진 성과 가시화를 위해 부처간 협업 및 대국회 협력 강화
- ◇ 권력형 비리 예방, 공공기관 채용비리 척결 등 반부패 개혁 확산으로 정부 신뢰도 제고

□ 적폐 청산 및 권력기관 개혁 지속 추진, 제도개선 성과 도출

- 적폐청산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 소통을 바탕으로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를 확보하고 제도개선 성과 제시
 - * ①민주적 기본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거나 규모가 큰 불법을 바로 잡고,
②국민불편·손해를 초래하거나, 미래발전의 잠재력을 잠식하는 정책·제도·관행 개선
- 검·경 개혁 등 주요 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 필요한 입법조치 등을 신속히 이행

□ 과거사 문제해결을 위한 추진체계 확립 및 국민 공감대 확산 노력

- 「5.18 특별법», 「과거사정리기본법」 등 국회 통과 노력을 강화하고 법 통과 즉시 후속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 철저
 - * 5.18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과거사통합재단 설립 준비 등
- 제주 4.3사건 70주년을 계기로 화해와 상생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지원 강화

□ 범국가적 반부패개혁 노력 강화로 국가청렴도 제고

- 독립적 반부패 총괄기구 기능 보강, 공수처 설치 등 관련 입법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반부패 개혁 추진체계 확립
-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집중관리를 통해 채용절차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2) 더불어 잘사는 경제

- ◇ 일자리·소득 주도,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통한 사람중심 경제로 경제정책 방향 전환 노력
- ◇ 가계 부채 등 민생불안 요인 지속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구체적 성과 부족

주요 정책성과

□ 일자리 중심 국정 운영체계 구축

- 일자리 위원회 설치,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마련 등 범정부적인 일자리 정책 추진체계 마련
 - * 일자리 인프라 구축, 공공·민간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일자리 추경, 공공부문 일자리 로드맵* 등을 통해 공공부문이 모범고용주 역할 선도
 - * 현장민생공무원 17.4만명,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명 등 '22년까지 81만개 일자리 창출

□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및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추진

- 법정최고금리 인하*,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등 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
 - * 대부업법: ('16.3) 27.9% → ('18.2) 24%, 이자제한법: ('14.7) 25% → ('18.2) 24%
- 서민·중산층·자영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및 교통·통신비 부담 경감**
 - * 근로장려금 인상(77~230→ 85~250만원),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10%→ 12%)
 - ** 광역버스 노선 증설(5개), 저소득층 휴대폰 기본요금 인하(11천원) 등
- 신용카드 수수료 우대 영세가맹점 범위 확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 추진

□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추진

- 가맹·유통·하도급 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및 중소기업 기술 유용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 전속거래 강요 금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활성화, 신고포상금 지급 범위 확대 등
- 대기업집단 공시의무 대상 확대(자산총액 5조 이상) 등 대기업 경영투명성 제고 노력

□ 4차 산업혁명 대응체계 구축 및 에너지 전환정책 본격화

-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 및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마련, 기초연구 예산 대폭 확대* 추진 등 미래 대응 노력 강화
 - * 연구자중심 기초연구 예산 : ('16) 1.1조원, ('17) 1.26조원 → ('22) 2.52조원
- 단계적 원전 감축 및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 신산업 육성 등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정책 전환
 - * 재생에너지 3020계획 :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16) 6.95% → '30년까지 20% 이상

□ 중소기업 지원체계 정비 및 창업·벤처기업 성장 기반 강화

-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중소기업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
 - * 과기정통부, 산업부 등 각 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15개)을 중기부로 이관
- 정책금융 연대보증 면제 확대* 등 창업·벤처기업 성장 지원
 - * 연대보증 면제대상 확대(평가 우수기업 등 → 7년 미만 기업), '18.3월 전면폐지

□ 수출·경제성장률 등 거시경제의 안정적 성장 실현

-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 수출실적 달성
 - * 수출실적 : ('16) 4,954억 달러 → ('17) 5,739억 달러, 전년대비 15.8% 증가
- 추경 등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3%대의 안정적 경제성장 및 국민소득 3만불 진입 가시화
 - * 경제성장률 : ('16) 2.8% → ('17) 3.1%

문 제 점

□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지연

- 영세상인을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권고기간 만료시기가 '1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래
 - * 적합업종 권고 만료품목(73개) : ('18) 47, ('19) 17, ('20) 2, ('21) 4, ('22~'23) 3
- 서민 생계업종 및 상가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률안* 제·개정 지연
 - * 「생계형적합업종지정예관한법률」, 「상권내몰림방지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 가계부채 관련 민생 불안요인 지속

- 가계부채가 1,400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향후 부동산 가격 상승** 및 시중금리 인상 본격화시 서민 가계부담 증가 우려
 - * 가계부채(조원) : ('15) 1,203 → ('16) 1,343 → ('17.9월말) 1,419
 - ** '17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전년 동기대비) : 서울 4.7%, 경기 1.7%, 인천 1.5%

□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품목 경쟁력 및 R&D 사업화 미흡

- 차세대 디스플레이·리튬 2차 전지 외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품목의 수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저조
 - * 세계시장 점유율('16) : 차세대 디스플레이(19.5%), 리튬 2차전지(12.6%) 외 지능형로봇·항공우주산업·첨단의료기기 등은 5% 미만
- R&D 사업 기술개발 성공률은 높은 수준이나 사업화 성공률은 대체로 낮은 수준

□ 신기술·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의 체감 성과 부족

-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적극적 규제혁신 노력에도 입법 등 제도화 미흡으로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현장 체감도는 낮은 상황
 - * 개인정보 보호 규제, 기존 이해집단의 반발 등으로 빅데이터·ICT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시장 출시 애로

개선 · 보완 방향

- ◇ 서민 생계업종 보호 및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등 민생안정을 위한 입법 및 제도개선 노력 지속 추진
- ◇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핵심사업의 가시적 성과 창출 지원 및 과감한 규제혁신 등을 통해 혁신성장 기반 강화

□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상가임차권 보호, 복합쇼핑몰 규제 등 소상공인 보호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관련 법안 조기입법 추진

□ 가계부채 리스크에 철저 대비

- 新 DTI, DSR의 차질 없는 시행 및 지속적인 부동산투기 억제 대책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위험을 지속적으로 관리
- 중·저신용자의 고금리 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서민금융 지원방식 개선 및 중금리 대출 확대

□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변화에 선제적 대응 강화

- 에너지 신산업 등 핵심 선도사업의 가시적 성과 창출 노력 및 우수 기술인력 양성, 창업 활성화 지원 등 혁신인프라 강화
- 수요 기반형 R&D 지원 확대 및 사업화에 따른 리스크 경감방안 마련 등을 통해 R&D 사업화 성공률 제고

□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의 과감한 규제혁신 추진

- 규제 샌드박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통해 드론, 자율주행차 등 핵심 선도 분야에서의 혁신적 기업 활동 촉진
- 시장 기득권층의 저항 문제와 관련, 국민전체의 이익을 기준으로 사회적 공론화 과정 등을 적극 활용하여 해소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 ◇ 사회보장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포용적 복지국가 기반 조성
- ◇ 저출산 위기 심화, 대형인명사고 발생, 먹거리 불안 등으로 일부 국민생활 밀접과제 체감도 저하

주요 정책성과

□ 국민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전 생애에 걸친 사회보장 강화

-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등 노인·중증 장애인 등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계층 보호 강화
 - * 수급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17.11), 주거급여('18)
- 아동수당 도입('18.9월) 방안 마련, 청년구직촉진수당 신설('17년 11.3만명), 기초연금 수급자 확대*로 '잘 키우고, 잘 모시는' 행복복지 실현
 - * 기초연금 수급자 수 : '16년 458.1만명 → '17년 486만명(6.1% 증가)

□ 보편적 의료보장을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및 '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70% 수준으로 확대
- 시군구별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1:1 맞춤형 관리, 중증치매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10%까지 인하 등 치매 국가책임제 실시

□ 집값 안정 기반을 구축하고 서민 주거안정 강화

- 다주택자 규제·단기투기 수요 억제 등 집값 급등에 대한 정책대응(8.2),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 기반 마련
-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지원* 확대, 청년·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과 고령자·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 * (청년) 세어형 임대주택, (신혼부부) 특화형 임대주택 20만호, (고령자) 복지서비스 연계 임대주택 5만호 등

□ 노동시장 차별 해소를 위한 여건 조성

- 비정규직 감축 로드맵 마련,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격차 해소 추진, 노사자율원칙에 따른 인사·보수체계 보장* 등 노동기본권 신장
 - * 2대 지침(공정인사 지침, 취업규칙 지침) 및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조치 폐기
- 장관급 여성 비율 역대 최초로 30% 달성, 군 최초 여성 장군 3명 동시 진급(12월) 등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확대

□ 전 국민이 함께하는 동계올림픽 준비

- 경강선 KTX 개통, 숙박 요금 안정화*, 관광 연계** 등으로 모든 국민이 부담 없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준비
 - * 숙박예약 콜센터(1330번)운영, '올림픽착한숙박업소' 인터넷 홍보, 지도점검 등
 - ** 시티투어, 축제(평창송어축제, 대관령눈꽃축제 등), K-FOOD PLAZA운영 등

□ 교육의 공적책무성 강화 및 민주성 회복

- 모든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대학 입학금 단계적 폐지, 저소득층 대상 유치원·대학 입학기회 확대 등 교육의 공공성 강화
- 국립대 총장 임용제도 운영 개선* 및 사학비리 근절제도 확충**,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등으로 교육현장의 민주성 회복
 - * 총장 간선제-재정지원사업 연계 폐지 등 국립대학 총장 임용제도 개선방안 발표
 - ** 사학혁신추진단 구성·운영, 국민제안센터 운영, 회계감리 강화 등

□ 재난·안전 대응체제 구축 및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노력

- 소방·해경청 독립, 소방인력·장비 확충 등 재난대응체제 개편 및 안전약자별 맞춤형 대책* 등을 통해 안전에 대한 국가책임체제 강화
 - * 장애인 안전관리 종합대책(9월), 보행안전 종합대책(9월), 외국인·다문화가족 안전관리 대책(12월) 등
- 포항 지진피해지역의 신속한 재건을 위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 추진
- 조류 인플루엔자(AI) 방역 종합대책 발표, 예방중심 방역체계로의 전환 및 초동조치 강화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차단에 총력 대응

문 제 점

□ 그간의 저출산 대책의 실효성 부족, 저출산 문제 지속 심화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17년 출생아수 역대 최저** 등 인구절벽 위기 심화

* '17년 36만명대 예상('16년 40.6만명 대비 11%대 감소)

□ 사고예방·현장대응체계 및 생활 속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 저하

- 화재·낙식배 사고 현장대응 미흡 등으로 인명피해 확대,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대책 발표* 후에도 유사사고 지속 재발

* 관계부처 합동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8월), 타워크레인 중대재해예방대책(11월)

- 살충제 계란 사태·생리대 유해성 논란 등에 대한 대응 미흡으로 먹거리 및 인체접촉제품 화학물질에 대한 국민 불안 가중

□ 감염사고 등으로 보건의료시스템에 대한 신뢰 저하

- 중증질환 의료전문기관인 이대목동병원에서 감염으로 인한 신생아 사망사고 발생 등으로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불안 초래

- 권역외상센터의 고정비용 과다로 제대로 운영하기 힘든 구조이며, 이송체계 미비로 환자발생 시 센터 이송률 저조(6.7%)

□ 교육·사회현안 관련 현장소통 및 부처간 협업 부족

- 일부 교육현안 과제 추진 과정에서 정책수요자, 관계부처와의 소통·협업 부족으로 정책 발표 후 반복되거나 혼선·갈등 야기*

* 수능 개편 1년 유예, 누리과정 방과 후 영어교육 금지 철회,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 입시 동시 실시 관련 갈등 등

- 학교 밖 위기 청소년에 대한 관계부처간 정보 연계 부족 등으로 관리 사각지대 발생,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등 사회문제로 확산

개선·보완 방향

- ◇ 저출산 극복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 강화 및 각종 재난·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맞춤형 대책 마련
- ◇ 대입제도 개편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대해 대국민 소통과 부처간 협업 강화를 통해 혼선·갈등 예방

□ 저출산 극복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

- 개편된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를 중심으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16-'20) 재구조화 등을 차질 없이 추진, 정책 실효성 제고

* 부위원장 신설, 위촉직위원 확대(10명→17명), 위원회 직속 사무처 신설 등

□ 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 맞춤형 대책 마련

- 재난 유형별·현장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 수립 및 부실점검 근절 등 현장에서의 안전 대책 준수를 위한 강력한 이행수단 마련
- 축산업 선진화, 인증제도 개선 등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 등을 통한 농축수산물 전반의 안전관리 강화

□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보건의료시스템 구축

- 의료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감염 감시대응체계 강화, 의료기관 평가제도 개선, 인력·시설기준 개선 등 종합대책 수립
- 환자 이송체계 개선, 지원 확대 등 중증외상진료체계 개선대책 수립*을 통해 국민들이 외상으로부터 생명을 구하는 의료체계 구축

* 외상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확대, 소방헬기 등 연계 운영, 수가체계 개선 등

□ 교육·사회 현안 해결을 위한 부처간 협업 및 현장 소통 강화

- 주요 교육현안 관련 부처간 협력 및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사전 의견수렴 절차 마련 등 충분한 소통을 통한 합의 도출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제도 전반을 재점검, 관계 부처간 정보 및 정책연계 확대 등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 ◇ 연방제에 준하는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도시재생뉴딜 등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성장 기반 강화
- ◇ 지방분권 강화 등 논의를 주도할 추진체계 확립이 일부 지연되었고, 행복도시·혁신도시 등의 지역성장 거점 기능은 아직 부족한 상황

주요 정책성과

□ 중앙정부 권한 지방이양, 지방재정 자립을 통한 자치분권 추진

-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간담회를 통해 중앙-지방간 수평적 국정운영 파트너십 구축, 자치분권 로드맵(안)*을 통한 자치분권의 청사진 제시
 - * △중앙권한 지방이양 △재정분권 △자치역량 제고 등 5대 전략·30개 핵심과제 선정
- 지방재정제도 개선 방안*, 재정분권 기본방향** 발표 및 범정부 재정분권 TF 구성·운영 등 재정분권 논의 본격화
 - * 지방의회·지자체 예산편성 자율권 확대, 중앙 투자심사 대상 사업범위 완화 등
 - ** 국세·지방세 비율(현행 8:2)을 7:3을 거쳐 6:4로 개편, 지방교부세율 상향 등

□ 지자체 행정·재정운용 자율성 및 주민참여 확대

-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자체 조직 자율성 확대 방안* 마련
 - * 지자체별 자율적 정원관리 및 모든 지자체 과(課) 단위 이하 기구설치 자율화 등
- 지자체 예산편성 자율권 확대, 중앙투자심사 대상 사업범위 완화 등 지방재정제도 개선
- 온라인 주민조례개폐청구 시스템 구축 등* 주민 참여 민주주의 확대 기반 마련
 - * 주민 조례개폐청구시 현장서명 외에 공인전자서명을 통해 참여

□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성장기반 마련

-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발전계획 수립 의무화,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22년까지 30%) 등 혁신 도시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 도시재생뉴딜 추진방안 발표 및 시범사업 대상 선정(68개소) 등 지역공동체 주도의 도시재생* 추진
 - * 기존의 대규모 철거·정비 사업에서 소규모 생활밀착형 시설·환경 개선으로 도시재생 패러다임 전환(노후 주거지 정비, 구도심 활력 거점 조성 등)
- 행안부·과기정통부 추가이전 결정*, 서울-세종 고속도로 조기 건설 및 공공성 강화** 등 행정 중심복합도시 기능 보강
 - * 「행복도시법」 개정 및 '18년 청사 신축 소요예산 반영
 - ** 사업방식 전환(민자→도공), 사업기간 1년 6개월 단축('24.6월 개통) 및 통행료 부담 경감
-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주변 산단, 대학 등 기존 인프라를 연계한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추진
-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정 등 한국 해운 재건 프로그램* 추진 및 항만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역 핵심 산업 재건 지원
 - * 해운 전담 지원기관(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한국해운연합 결성·운영 등
 - ** 해양산업클러스터(부산항, 광양항) 지정, 노후항만 재개발('17년 465만m²) 등

□ 지속가능한 농산어촌을 위한 경제·사회적 격차 해소 노력 지속

- 선제적 농산물 수급 안정대책* 추진, 재해보험제도 개선 및 직불금 단가인상** 등 농어업인 소득안전망 확충
 - *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 마련(9월), 수확기 쌀 가격 전년 대비 19.7% 상승
 - ** 발고정: ('12~'16)40 → ('17)45만원/ha, 수산: ('16)50 → ('17)55만원/ha 등
- 100원 택시 등 교통취약지역의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민 이동권 보장 등 농산어촌 생활여건 개선
 - * 농촌형 교통모델사업(100원 택시 등) '18년부터 82개 전체 군 지역으로 확대
- 새만금개발공사 신설 결정, 공공주도 매립 전환 및 물류교통망 조기 구축 추진 등 새만금 사업 가속화 기반 마련

문 제 점

□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구체적 실현방안 마련 지연

- 중앙-지방간 협력, 입법·행정·재정·복지 분야별 추진방안 등 주요 의사결정을 위한 지방자치 발전위원회 위원 구성 지연
-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공식 출범('18.1.23)

□ 예산에 대한 주민 통제 강화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미흡

- 지자체 주민참여예산 반영비율 저조, 일부 지자체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미구성* 등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한 관심 부족
- * 총 243개 지자체 중 44개 미구성(18%)

□ 행복도시 자족기능 부족 및 혁신도시의 지역성장거점 기능 미흡

- 대부분의 정부기관 이전 완료 등 세종시가 빠르게 정착되고 있으나, 기업 유치를 통한 민간 일자리 마련 등 도시 자족기능 확충 미흡
- 혁신도시 기반 조성은 마무리 단계*이나, 산·학·연 연계를 통한 지역 특화 발전 등 균형발전 거점으로서의 실질적 역할 부족
- * 이전대상 공공기관 153개 기관 중 147개(96.1%, 4만9천명) 기관 이전 완료

□ 지역산업발전의 핵심거점인 산업단지 활력 저하

- 기반시설 노후화, 문화·복지·편의시설 부족, 우수 인재의 산단 내 취업 기피 등으로 노후 산업단지 경쟁력 저하
- * 착공후 20년이 지난 국가·일반 산업단지 : ('17) 144개소 → ('22) 172개소

□ 도시재생 뉴딜 사업 시행에 따른 부동산 시장 과열 등 부작용 우려

- 투기 수요로 인한 주택 매매 가격 상승 등 부동산 시장의 과열 및 임대료 상승에 따른 지역 영세상인과 주민의 내몰림 현상 발생 우려

개선 · 보완 방향

- ◇ 재정분권 등 자치단체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확정, 자치분권의 실질적인 진전 계기 마련
- ◇ 혁신도시 등이 실질적인 지역 성장의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역별 혁신성장 선도기반 확충 등 도약의 기반 강화

□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기 확립

- 자치분권 로드맵 등 구체적 실행방안을 조속히 확정, 지방분권형 개헌방향 제시 및 제도화 기반 마련
-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기반이 되는 '자치재정'의 실현을 위해 재정분권 및 재정균형 추진방안 등 세부방안 논의 가속화 필요

□ 지방분권시대에 대비한 지자체 역량 강화

- 자치권 확대에 따른 지자체 조직역량 강화 등 사전대응 방안 마련
- 세종시·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 강화
-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우수사례 분석 및 확산,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제공 등 지자체와 주민의 참여 확대 방안 마련

□ 지역 균형발전 사업 내실화

- 「국가균형발전법」의 조속한 개정 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거버넌스 재정립 및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
- 행복도시·혁신도시 인프라 확대, 국가혁신클러스터 활성화,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등 지역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실효적 대책 추진
-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역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부작용을 예방하고, 성공모델 발굴·확산

(5)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 ◇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노력 지속
 - 한·중 관계 개선 등 한반도 주변 4국과의 관계 복원을 통해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협력토대 내실화
- ◇ 국제사회의 제재·압박에도 북 핵·미사일 위협이 빠르게 고도화·현실화되면서, 한반도 안보 위협요인 상존

주요 정책성과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 6자회담 참가국(미·일·중·러) 등 핵심 관련국들과의 긴밀한 북핵외교 전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 강화
 - * 강도 높은 안보리 결의(2356호, 2371호, 2375호, 2397호) 만장일치 채택 등
- 대통령 베를린구상, 유엔총회 연설 등을 통해 남북관계 비전 제시,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 확산

□ 주변국과의 외교관계 정상화 및 외교지평 확장

- 활발한 정상외교를 통해 한반도 주변 4국과의 외교관계 복원
 - 대통령 국민방증을 통해 경제분야 교류·협력 재개·복원, 한반도 평화를 위한 4대 원칙* 합의 등 한중 관계 정상화를 위한 기틀 마련
 - * 한반도 내 전쟁 불가, 한반도 비핵화, 대화·협상 통한 평화적 해결, 남북관계 개선
-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 등 외교의 다변화·다원화로 외교의 지평을 유라시아와 아세안까지 확대
 - * 한·러 정상회담(9월), 제3차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9월) 등 유라시아 협력 강화
 - ** 대통령 동남아 순방(11월, 베트남·인도네시아·필리핀) 계기, 신남방정책 발표

□ 북 위협 대응능력 제고 및 국방개혁을 통한 책임국방 구현

-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한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재확인* 및 전자권 조기전환 추진**
 - * 탄도미사일 탑재중량 제한 해제 합의(11월), 美 첨단 군사자산 획득 합의 등(9월)
 - ** '18년까지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과 전환계획 공동 마련 합의(한미안보협의회 등, 10월)
- 북 핵·미사일위협에 대응한 국방예산 확대*, 한국형 3축체계 조기 구축 추진 및 국방부 대북 정책관실 신설 등 북핵·WMD 전담조직 강화**
 - * 3축 체계 전력화 예산 5,509억 증액(14.5%) 등 '18년 국방예산 전년대비 7% 증액('09년 이후 최대폭)
- 국방부 문민화, '22년까지 병력 50만명으로 단계적 감축, 병복무기간 단축(21→18개월) 등 국방개혁 추진
- 군 의문사 진상규명*, 병 봉급 인상**, 공무상 부상 직업군인 민간 병원 치료비 지원 확대 등 장병인권 및 복무여건 개선
 - * 군의문사 사건 재심사 및 순직 결정(5건)
 - ** '22년까지 단계적 인상계획 수립, '18년 병 봉급 전년대비 88% 인상

□ 남북 간 화해협력과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 노력 지속

- 대통령 8.15 경축사 등을 통해 평화와 대화의 일관된 대북 메시지를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대화 제의, 북한의 호응 유도
 - ※ 남북연락채널 복원('18.1.3), 남북고위급회담(1.9), 남북고위급회담실무회담(1.17), 평창올림픽 북한 참가 최종승인(IOC, 1.20)
- 국제사회 대북제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 민간교류를 허용, 남·북관계 경색국면에서도 교류 노력 지속*
 - * 무주 세계태권도 대회(6월),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12월, 중국) 등
- 국제기구(UNICEF, WFP)의 대북 모자보건·영양지원 사업에 800만달러 공여 방침 결정
- 개성공단·남북경협기업 지원대책 마련*, 정부의 책임성 제고 및 민간의 남북경협 동력 유지
 - * 개성공단 기업 660억원 규모 추가지원 등

문 제 점

□ 북핵문제 등으로 인한 한반도 안보 위협 증대

- 6차 핵실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확고한 대북 억제력 확보 시급
- 사이버 공격이 국방분야와 정부기관 뿐 아니라 금융기관, IT기업 등 국민의 일상으로 확산됨에 따라, 사이버안보에 대한 우려 증가

□ 남북관계 경색 장기화 및 불확실성 상존

- 지속적 대화 제의 등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측의 불응으로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현안 해결에 한계
-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이후 남북관계에 불확실성 지속

□ 통일에 대한 국민 인식 저하

- 다양한 통일교육 사업에도 불구하고 통일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 인식이 지속적으로 하락*, 통일에 대한 인식개선 미흡
* 통일필요성 대한 긍정적 인식('17년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통일연구원) : ('14) 69.3 → ('16) 62.1 → ('17) 57.8% (20대 28.8%)
- 특히, 20대 젊은 층의 경우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따른 부정적 인식 증가 등으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저조

□ 한·일 관계 불확실성 내재

-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역사문제로 한·일 관계 갈등 지속

□ 국방획득체계에 대한 국민신뢰 저하

- 방산비리 처벌·제재 강화 및 예방시스템 구축에도 불구하고, 무기체계 품질 결함 논란* 등으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 개선에 한계
* 수리온 헬기 결함 논란, K9 자주포 화재사고(장병 3명 사망) 등

개선 · 보완 방향

- ◇ 국제사회와의 공조 강화 등 한반도 비핵화 노력을 지속하고, 북 도발 억제를 위한 우리 군의 방위력 강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
- ◇ 대통령 방중 후속조치의 차질 없는 이행, 한·일간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등을 통해 주변국과 협력 강화

□ 북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 대응역량 강화

-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6자회담 참가국(미·일·중·러)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 노력 지속
-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후속조치, 첨단 군사자산 획득 개발 노력을 가속화 하고,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에 역량 집중
- 사이버 공격에 대응한 인력 양성, 교육, 기술개발 및 범정부적 협력을 통한 사이버 위협 대응 능력 강화

□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 및 통일 공감대 확산 노력

-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마련된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유지·발전, 이산가족문제 해결 등을 위한 다각적 노력 전개
- 통일에 대한 국민인식 저하 원인 분석 및 미래세대 중심의 통일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내실화

□ 한·중 정상회담 성과 구체화 및 한·일 관계 개선 노력 지속

- 한·중 경제협력 사업 재개 등 실질협력 분야 합의사항들의 차질 없는 이행 및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 조기 도출
- 진실과 원칙에 입각한 과거사 문제 해결 노력 지속 및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한 소통과 협력 확대

□ 방위사업 비리 척결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민신뢰 회복

- 부정·비리의 근원적 차단 및 방위사업의 투명성·전문성을 제고하고, 국방 R&D 역량 강화 등 국방획득체계 전반의 개선 대책 마련

2. 일자리 창출 평가

1 평가 개요

□ 평가목적

- 중앙행정기관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질 개선 등 일자리 정책 추진 노력을 분석·평가,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을 지원

□ 평가대상

- 43개 중앙행정기관(직제순)
 - 일자리 관련성, 기관규모 등을 고려하여 3개 그룹으로 구분

구분		기 관 명
장관급 (23개)	일자리창출 중점(13개)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인프라·여건개선 중점(10개)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환경부, 국가보훈처,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차관급 (20개)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해양경찰청, 원자력안전위원회

□ 평가방법

- 평가의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일자리 창출 평가지원단」 구성
 - * 정부업무평가위원, 일자리위원회 추천 민간전문가 등 참여
- 평가지표에 따라 정량·정성평가 병행 실시
- 평가 대상기관 분류에 따라 그룹 내 상대평가

□ 평가지표

- 기관별로 일자리과제*(70), 공통지표(30), 우수사례(가점 5)를 평가

* 전체 일자리과제는 69개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일자리과제 (70)	정책이행(30)	추진계획 이행도
	목표달성(20)	성과지표 달성도
	정책효과(20)	성과지표 외 성과 및 경제·사회적 기대효과
공통지표 (30)	일자리창출 및 질 개선(20)	근무실태 개선(초과근무 단축, 연가활성화)
		일자리 나누기(총액인건비제도 활용 신규채용)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력
	일자리정책 이행노력(10)	전담조직 운영 및 협업
		일자리 정책·성과 홍보
가점(5)	부처 자율 제출 우수사례	

2 평가 등급

* 각 등급 내 기관명은 직제순으로 표기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일자리창출 중점	인프라·여건 개선 중점	
우수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보통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환경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국세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해양경찰청
미흡	해양수산부	외교부	소방청, 원자력안전위원회

□ 주요 성과

- 지속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사람중심 경제」로의 전환에 맞춰, 일자리창출 등 일자리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을 본격 추진
- (인프라) 중앙부처·지자체별 일자리 추진체계 구성, 일자리 관련 정책과 제도를 재설계 하는 등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체계 확립
- (공공일자리) 현장민생공무원 1만여명 충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고 민간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 수행
 -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천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계획을 마련하고 6만9천여명의 전환을 결정, 공공부문이 모범적인 고용문화 확산을 선도
- (민간일자리) ICT 융합산업·5G 등 4차 산업혁명 대비 신성장동력 육성, 벤처펀드 확대·사내벤처 촉진 등 혁신형 창업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민간부문의 미래 지속가능 일자리 창출을 위한 토대 마련
- (맞춤형일자리)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가족친화기업인증 등 청년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여건을 대폭 개선하고 신중년, 노인 등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늘려 사회안전망을 강화

□ 미흡한 점

- (민간확산) 공무원 확충 등 공공부문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했으나, 민간부문으로 파급·일자리창출 확산은 부족
 - 기업의 고용심리 저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수익성·투자 격차 등은 중소기업 등 민간부문 일자리창출을 위축시킬 우려
- (사회적 갈등)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시장 차별해소를 위한 사안들에 대하여 이해관계자간 이견 표출 및 갈등 발생
- (청년실업) 청년구직촉진수당 지급 등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력중이나 청년실업 해소는 여전히 더딘 상황

4 분야별 평가결과

(1) 일자리 인프라 구축

- ◇ 일자리 전담조직 구성, 재정·세제·금융 등 지원정책 개편을 통해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을 위한 추동력 확보
- ◇ 근로시간 단축, 적극적 창업 지원 등 양질의 일자리창출 기반 공고화를 위한 노력 강화 필요

주요 정책성과

□ 전담조직, 법령·통계지원 등 일자리 중심의 국정추진체계 확립

- 모든 중앙행정기관·지자체별 일자리 정책 전담조직 마련, 시군구 일자리 책임관 지정 및 협의체 운영 등 일자리 추진체계 구축·가동
- 일자리창출 법령안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사전입안지원 및 사전심사를 실시하여 평균 심사기간 단축
 -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6건, 평균 심사기간 2일로 전체 법령안 심사기간 11일 대비 82% 단축
-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 일자리 행정통계·동향통계*를 신규 개발하는 등 일자리 정책의 효과적 수립·추진을 위해 관련 통계 전면 보강
 - * 기업 규모별로 통계 세분화, 세부 산업별 일자리 변동을 월·분기별 제공

□ 재정·세제·금융제도 등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

- 일자리 사업에 대한 재정 확대*로 일자리창출 적극 뒷받침, 고용효과를 반영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을 통해 지자체의 일자리 확충 노력 강화 유도
 - * ('17) 11.1조 → ('18) 12.4조 (11.8% ↑, 실업소득유지지원액 제외)
 - ** △신규 투자사업 심사 시 고용효과 활용, △보통교부세 '일자리 확충노력' 신설 등

- 고용증대세제 신설*, 정규직 전환 세제지원 확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정기세무조사 선정 제외 대상 확대*** 등 고용친화적 조세제도 개편·운영
 - *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연간 300~1,100만원 공제(대기업 1년, 중소·중견기업 2년)
 - ** 중소기업 1인당 700만원 → 1,000만원, 중견기업 1인당 500만원 → 700만원
 - *** 법인 → 개인사업자까지 확대, 제외 건수 증가 : ('16) 9,294건 → ('17) 17,200건
- 창업기업 법인대표자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18년부터 완전 폐지해 실패부담완화 및 창업활성화
 - * ('16) 창업 5년 이내 기업 → ('17.8) 창업 7년 이내 기업
- 대기업의 기술유용·부당 단가인하 금지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생력 제고 및 고용 확대 유도 추진
 - * 기술유용 행위 근절대책('17.9),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17.12)

문 제 점

□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 지연

- 기업의 자발적 근무시간 단축은 한계가 있어 제도를 마련(근로기준법 개정) 중에 있으나, 휴일 중복 할증* 등 일부 쟁점 이견으로 추진 지연
 - * 휴일근무는 휴일·연장근로로 통상임금의 200% 지급 ↔ 150% 지급

□ 창업기업 법인대표 연대보증 전면 폐지에 대비 필요

- 연대보증 전면 폐지 시행 시 대출채권 부실화에 대한 우려로 금융기관의 창업기업에 대한 소극적 대출 등 자금공급 위축 가능

개선 · 보완 방향

- 근로여건 개선 정책의 추동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국회, 노동계 등과 소통·협의를 강화하여 근로시간 단축 법안을 조속히 처리
-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신용경색 등 부작용을 사전 예방, 창업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증심사 보완 등 연착륙 방안 마련

(2)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 ◇ 국가·지방 공무원 총원, 공공기관 증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 등 일자리창출 선도역할 수행
- ◇ 정규직 전환에 따라 발생된 勞勞갈등 해소,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에 따른 공공·민간부문간 갈등의 예방 및 원만한 조정 필요

주요 정책성과

- 생활안전·복지·교육분야 등 부족한 공무원 총원·재배치
 - 현장공무원 17.4만명 총원계획을 수립하고 '17년 추경으로 경찰·소방 등 민생공무원 10,090명을 총원*, 대국민 현장서비스 역량 보강
 - * 국가직 5,575명 : 경찰 1,104, 군부사관 652, 교원 3,000, 생활안전 등 819
 - 지방직 4,515명 : 소방 1,500, 사회복지 1,500, 생활안전 등 1,515
 - 행정수요가 감소되는 분야의 정원을 필수수요 부족 및 현장서비스 부문으로 재배치*하여 공무원 인력 효율화와 행정서비스 질 제고 추진
 - * 정부조직관리지침 수정 : 부처별 정원 5%를 향후 5년간 재배치 정원으로 산정
 - 총액인건비제도를 개선, 일자리나누기 동참 촉진 및 민간 확산 유도
 - * 초과근무 감축, 연가사용 활성화 등을 통해 비용을 절감, 절감액을 총원에 활용

□ 공공기관 인력 확충 및 채용방식 개혁

- 공공서비스 제고를 위한 보건복지·안전분야 등 인력 2,454명 추가 증원* 포함, 공공기관 22,000여명 신규채용으로 일자리창출 선도
 - * 국가 공공기관 증원(명) : ('17 당초) 6,000 → ('17 수정) 8,454
- 출신지·가족·학력·외모 등이 아닌 실력으로 평가받는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채용기반 마련
 - *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17.7)에 따라 쏠 공공기관 제도 도입 완료

□ 국민 수요에 대응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 수요가 많고 시급한 보육·요양 등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1.1만개를 창출하여 생애주기별 서비스 확대 및 국민의 접근성 향상
 - * ('17) 보조·대체교사, 노인돌봄, 장애인활동지원, 방문건강관리 등
- 여성의 양육부담 경감과 경제활동 지원, 취약계층 급식시설 안전관리 등을 위한 사회서비스 시설 확충 지속
 - * 국공립 어린이집(개소) : ('16) 201 → ('17) 373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개소) : ('16) 207 → ('17) 215

□ 노동시장 차별 해소를 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마련, 특별 실태조사 실시 등 사회 양극화를 초래하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본격 착수
 - * 상시·지속적 업무(연중 9개월, 향후 2년 이상 지속 예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파견·용역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 원칙(고령, 전문직무 등 예외사유 제외)
- 연차별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17년 69,251명(잠정전환인원 93.4%)에 대한 정규직 전환 결정을 완료**하여 민간부문으로의 확산 추진
 - * 총 20.5만명 : 상시·지속 비정규직(31.6) - 전환예외(14.1) + 추가전환여지(3)
 - ** '17년 잠정전환인원 74,114명 대비 기간제는 78.4%(40,057명/51,061명), 파견용역은 126.6%(29,194명/23,053명) 수준

문 제 점

□ 정규직 전환에 따른 勞勞 갈등 발생

- 비용부담에 따른 기존 정규직원 처우악화와 입직경로 불공정성에 대한 불만 등으로 비정규직·정규직 간 갈등 발생

□ 사회서비스 시설 확충에 따른 민간영역 축소 우려

-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 민간어린이집 관련 단체가 반발

*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관리동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추진

개선 · 보완 방향

□ 勞勞간 소통의 장 마련, 당위성 홍보, 현장컨설팅 등을 통한 勞勞갈등 적극 해소 및 성과창출로 민간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확산 촉진

□ 국공립어린이집 등 보육, 요양, 보건 의료 사회서비스 시설 확충과 관련, 민간부문과의 갈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사전협의·조정 등 강화

(3) 미래 지속가능한 민간 일자리 창출

- ◇ 4차산업혁명 선제적 대응을 위한 ICT융복합신산업 육성, 혁신창업생태계 조성 및 지역혁신성장거점 육성 등 민간 일자리창출 기반 확대
- ◇ 대기업-중소기업간 격차 등 민간부문 일자리창출 저해요인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가능 일자리를 위한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촉진 필요

주요 정책성과

□ 4차 산업혁명 대비 신산업 기반 일자리창출 촉진

- IoT·빅데이터·클라우드 등 융합신산업, 드론, 전기·자율주행차,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형' 新직업 창출* 가속화
 - * 고용창출 효과(천명) : ICT융합신산업(15.6), 전기차(1), 재생에너지(5.6) 등
- 5G 네트워크 세계최초 시범망 구축(평창), 10기가 인터넷 활성화 방안 마련 등 통신 분야 융합서비스 일자리창출 기반 구축
 - * 5G 상용화에 따라 '22년까지 5.6만명 신규 고용창출 전망

□ 일자리창출을 위한 혁신창업생태계 조성

- 창업투자회사 설립요건 완화*, 벤처펀드** 조성 및 크라우드 펀딩 투자한도 확대, 엔젤투자 소득공제율 확대 등 창업활성화 촉진
 - * 창업투자회사 설립 시 납입자본금 변경(50 → 20억원)
 - ** 신규 벤처펀드(조원) : ('16) 3.2 → ('17) 4.4
- 사내벤처 분사창업 촉진, 창업부담 완화* 및 창업-성장-재도전 단계별 중소기업(1.9만개) 지원 등 창업·중소기업을 일자리 주역으로 육성
 - * 재도전성공패키지 확대 운영, 재창업 R&D 지원, 재기지원 전용펀드 조성 등

□ 지역 혁신성장 거점 육성을 통한 지역 일자리창출

- 혁신도시*·산업단지 중심 국가혁신 클러스터, 투자 선도지구**, 농업 6차산업화지구 등을 지역의 신성장 동력 거점으로 육성
 - * 혁신도시 1단계 완료(10개),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18년 18%→'22년 30%)
 - ** '17년 신규 5개 지구 선정(향후 5년간 1.5조 투자로 2.1만개 일자리 창출 예상)
-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일자리 창출 추진
 - * 기술개발 및 사업화분야 1,270명 고용 창출, ** '17년 시범사업 68곳 선정

□ 노동자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 인상 추진

- 8년 만에 최저임금위원회 전체위원 참여·의결로 '18년 최저임금을 시급 7,530원으로 결정*, 양극화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 1만원 실현기반 마련
 - * '17년 최저임금 시급 6,470원에 비해 1,060원(16.4%) 인상으로 역대최고 인상수준
-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을 위해 중소기업·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및 부담완화 방안** 추진
 - * 30인 미만 사업주 지원, 월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
 - **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확대,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완화, 부가가치세 등 세부담 완화 등

문 제 점

□ 민간부문 일자리창출 여건 위축 우려

- 중소기업 고용심리 위축*, 대-중소기업간·정규-비정규직간 격차 등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등 민간의 일자리창출 저해요인 지속
 - * '17.4~'18.1분기 전체 사업체 채용계획인원은 30.3만명으로 전년동기비 1천명 감소(이중 300인 미만 사업체 채용계획인원은 1.6% 감소)
 - ** 임금격차('16년 대기업 정규직 대비) : 대기업 비정규직 62.7%, 중소기업 정규직 52.7%, 중소기업 비정규직 37.4% 수준

□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노력 강화 필요

- 좋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상생의 협력적 노사관계가 필수적으로 이를 위한 정책적 노력들을 추진 중이나, 근로시간 단축, 임금체계 개편, 기업내 원·하청관계 개선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은 상황

개선 · 보완 방향

- 일자리분야 확장적 재정 강화, 대중소기업상생협력(협력이익배분제 등) 생태계 조성 등 민간 일자리창출 여력 확대방안을 지속 모색·추진
- 협력적 노사관계를 조기 구축, 노동기본권 신장, 노동시장 차별시정 등 고용안정성 확보와 노동생산성 제고로 미래지속가능 일자리창출기반 강화

(4) 맞춤형 일자리 지원

- ◇ 청년, 여성, 신중년 등 대상별 맞춤형 지원으로 채용에 있어서 평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여건 확대 및 노동시장 역동성 강화
- ◇ 에코붐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이 '21년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구직여건 악화에 적극 대비 필요

주요 정책성과

- 청년일자리 확충을 위한 지원 확대
 - 중소기업 대상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 청년의 구직 기회 확대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함께 추진
 - * 중소기업이 청년 3명 정규직 채용시 한 명분 임금을 3년간 한시적 지원
(3차례 공모를 통해 2,036개 중소기업에 3,438명 지원 대상 선정)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청년 대상 매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등 구직활동 적극 지원
 - * '17.12월 기준 신청자 113,561명, 총 363억 지원
 - 취업맞춤특기병제도* 활성화로 병역의무대상 청년의 직업능력 향상 및 미래 취업 기회 확대
 - * 고졸이하 병역의무자 대상 : 입영 전 기술훈련 → 기술특기병으로 군 복무 → 전역 후 취업 등 사회진출 지원 (모집인원(명) : ('16) 1,300 → ('17) 1,800)

□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강화

-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경력단절 예방캠페인 실시, 지자체 조례 제·개정** 등 여성의 경력 개발·유지를 위한 사회적 동참 확산 추진
 - * 가족친화인증기업 수(개) : ('16) 1,828 → ('17) 2,802
 - ** 예시 : 인천광역시 여성의 경력유지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 맞춤형 취·창업 등 지원강화로 경력단절여성 규모 감소*, 여성 고용률 상승세** 지속 등의 성과 가시화
 - * 경력단절여성 규모(만명) : ('16) 191 → ('17) 181
 - ** 여성(30대여성) 고용률(%) : ('16) 56.2(58.3) → ('17) 56.9(59.6)
- 육아휴직 후 첫 3개월 수당 상향*,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강화** 추진 등을 통해 남성의 육아 휴직을 활성화
 - * (기존) 월봉급액 40%(상한 100만원) → (개선) 월봉급액 80%(상한 150만원)
 - ** 둘째 자녀부터 상한액 150 → 200만원으로 인상('18.7월부터 첫째도 200만원까지 인상)

□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신중년 및 노인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 중장년층이 은퇴 후 희망하는 생애경로별 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 맞춤형 생애경력설계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창업·재취업 가능성 제고
 - *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17.8)
 - **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대상 확대 : ('16) 재직자 → ('17) 재직자 + 구직자
생애경력설계 참여자(명) : ('16) 12,576 → ('17) 23,009 (전년대비 83.0% ↑)
- 공익활동 등 노인 일자리를 확대해 일자리 참여 희망 노인들의 수요충족률을 제고*하고 활동 수당 인상**
 - * 노인 일자리 수(만개) : ('16) 41.9 → ('17) 46.7, 수요충족률(%) : ('16) 34.0 → ('17) 36.3
 - ** 공익활동 수당(만원) : ('16) 20 → ('17) 22 → ('17 추경) 27

문 제 점

□ 청년층의 실업문제 지속 우려

- 신규채용 위축, 경력직 선호 등으로 높은 수준의 청년 실업률 지속, '17년부터 '21년까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20대 후반인구 증가(약 39만명)로 취업애로 심화 예상

* 청년실업률(%) : ('15) 9.2 → ('16) 9.8 → ('17) 9.9

□ 고학력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한계

- 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재취업 여성 증가 등 정책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재취업 대상이 주로 저임금·영세기업에 집중

*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 수(만명) : ('16) 15.4 → ('17) 17.1 (전년대비 11%↑)

새일센터 알선취업 중 67.3%가 50인 미만 기업에 취업('17년 72,034건 중 69,776건 분석)

개선 · 보완 방향

□ 청년고용 실태와 문제점 및 현재의 대응방안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을 통해 체감도 높은 청년일자리 종합대책 강구

* 청년고용정책인지조사('17.11) 결과, 일자리 질 개선, 양 확대, 정규직화 순으로 의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 등 경력단절예방시책 강화와 함께 4차 산업혁명 분야 등과 연계하여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에게 맞는 고부가가치 직종에 대한 훈련 등 취업지원 확대

3. 규제개혁 평가

1 평가 개요

□ 평가목적

- 중앙행정기관의 규제개혁 노력과 성과를 점검·평가하여 4차 산업혁명 기반 마련·민생안정 강화 및 국민 체감도 제고

□ 평가대상

- 29개 중앙행정기관(직제순)

구분	경제부처(15개)	사회부처(14개)
장관급 기관 (19개)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차관급 기관 (10개)	관세청, 조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병무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 부처별 규제정비계획 상 정비과제 3개 이하인 부처 14개 기관 제외

□ 평가방법

- 평가의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해「민관합동 규제개혁 평가지원단*」구성·운영(총 27명)
 - *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규제 관련 민간전문가 등
- 과제 성격·부처특성을 기준으로 5개 분과(경제1·2, 사회1·2, 일자리 창출 규제개선)로 나누어 평가
- 평가지표에 따라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병행

□ 평가지표

- 규제개선(60%), 규제심사(25%), 체감도(15%)를 평가

평가항목		평가지표	비고
규제개선(60)	규제개선과제 정비 성과	• 규제개혁과제 정비 실적	정량/정성
		• 규제개혁신문고 건의 처리 실적	정량
		• 지방규제 정비	정량/정성
		• 현장 규제애로 개선 실적	정량
	신산업 관련 과제 정비	• 신산업 규제애로 건의 수용·이행 실적	정량
		• 네거티브 규제전환 노력도	정성
일자리 창출 규제개선 성과	• 규제개선 성과 및 제도보완·개선계획	정량/정성	
규제심사(25)	규제심사절차 준수도	• 규제심사절차 준수 및 영향분석 등	정량/정성
	일몰규제 정비 및 규제등록 실적	• 일몰규제 정비 및 규제등록 실적	정량
체감도(15)	규제개혁 만족도	•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	정성
	규제개혁 국민소통 실적	• 규제개혁 관련 언론소통·현장행보 등	정량/정성
기타(+3)	가점	• 규제개혁 교육 참여도 및 활성화 노력	정량

2 평가 등급

* 각 등급 내 기관명은 직제순으로 표기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우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림청, 특허청
보통	기획재정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조달청, 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미흡	교육부, 여성가족부, 금융위원회	병무청, 소방청

3 총 평

□ 주요 성과

- 신산업 분야 규제혁파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기여
 - * TF 구성('17.7),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발굴 가이드라인 배포('17.10) → 자동차 분류 체계 유연화 등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대상 과제 38건 개선안 마련('17.12)
 - *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운영을 통해 신산업 분야 현장의 규제애로 발굴·혁파 → 간담회·현장방문 등 현장소통(32회)을 통해 과제 발굴,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 허용 등 89건 해소
-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여 민생안정 및 중소기업 부담 경감
 - * (행정조사) 행정조사 전체(608건)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17.5~8)을 거쳐 총 175건 정비 → 행정조사 혁신방안 보고 추진
 - * (지역규제) 지자체 건의, 부처 검토 및 조정 등을 거쳐 47건 정비 → 지역발전·주민편의를 위한 규제혁파 추진
 - * (경쟁제한 규제) 과제 발굴, 소관부처 검토 및 조정 등을 거쳐 경쟁제한 규제 25건 개선 → 경쟁제한 규제혁파 추진
- 현장·생활 밀접 규제 혁파를 통해 현장체감도 제고
 - *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국무총리 주재로 2회에 걸쳐 개최
△중소·벤처기업 현장애로 혁파방안 및 41건의 애로 해소 발표(1차)
△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 및 23건의 애로 해소 발표(2차)
 - * (현장 규제애로)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애로 청취를 위한 규제개선 간담회 29회 개최 → 발굴과제에 대한 부처 검토 및 협의를 거쳐 103건 과제 개선(5월~12월)
 - * (규제개혁신문고) 온라인을 통해 수요자가 직접 규제애로를 건의할 수 있는 규제개혁신문고 운영 → 접근성 향상 및 신속한 대응으로 체감도 제고에 기여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신산업 분야 및 규제개혁 제도 관련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한 국회 협력 강화
 - * (신산업) 정보통신융합법(국회 계류 중) 외 산업융합촉진법 등 3개 법안 준비 중 (규제개혁 제도) 규제 차등화 적용 등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추진(국회 제출, 12월)
- 규제개선 체감도 제고 및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하여 현장소통·국민 공모 등 적극적 과제 발굴 및 범부처적인 해결 노력 경주

4 분야별 평가결과

(1) 신산업 분야 규제혁파

주요 정책성과

- 미래 신산업 대비 규제체계 전환 및 현장애로 해소 노력 추진을 통해 신제품·신서비스의 신속한 시장출시 등 신산업 분야 활성화 촉진
 - 기존의 네거티브 개념(원칙허용-예외금지)을 확장하여 우선허용-사후규제 중심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추진
 - * TF 구성('17.7월)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발굴 가이드라인 마련('17.10월) →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대상 과제 38건 개선안 마련('17.12월)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사례 〉

▶ 자동차 분류체계 유연화(국토부)

기존 자동차 종류를 구조, 크기, 배기량 등에 따라 제한적 열거

개선 혁신카테고리 도입하여 차종 구분 유연화

○ 민간전문가로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운영, 신산업 분야 현장의 규제애로 발굴·혁파 추진**

* 5개 분과(무인이동체, ICT융합,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소재, 신서비스), 120명

** 간담회, 현장방문 등 현장소통(32회)을 통해 과제발굴, 89건 해소

〈 신산업 분야 현장애로 해소 사례 〉

▶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허용(농식품부)

기존 '15년 12월 31일 이전에 허가 건축물에만 태양광발전 설치 허용

개선 준공시기에 관계없이 적법한 건축물에 태양광발전 허용

문 제 점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에 대한 관련 단체 및 기관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반발 등으로 적극적·자발적 과제 발굴노력 미흡

개선·보완 방향

- 과제 발굴 영역 확대*를 통해 민간부문으로 효과 확산 촉진 필요

* (부처·지자체) 법령 → (공공기관) 규정·지침

(2) 국민불편·민생부담 야기 규제혁파

주요 정책성과

-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 혁파를 통해 국민 편익 증진과 중소기업 부담 경감
 - 국민과 중소기업의 대표적인 불편·부담 사항으로 인식되는 행정조사를 행정조사기본법 제정('07) 이후 처음으로 전수 점검·정비
 - * 175건 정비 : 조사 폐지(5건), 실시주기 완화 등 조사방식 개선(170건)

〈 행정조사 정비 사례 〉

- ▶ 건설산업정보 종합 관리를 위한 자료 제출 항목 간소화(국토부)

기존 건설업자는 공사계약 체결 시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140개 항목 기재

개선 중복·불필요한 항목을 제외하여 기재항목을 87개로 축소

- 불합리한 지역규제를 혁파하여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법령·절차 등을 지역 요구와 현실에 맞게 개선

* 47건 개선 : 낙후지역 재생(23건), 지역경제 활성화(14건), 주민불편 해소(10건)

〈 지역규제 혁파 사례 〉

- ▶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폐교재산 활용 기숙사 설치 허용(해수부)

기존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기숙사 입지 불가능

개선 폐교재산을 활용한 기숙사의 경우 입지 허용

-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 편익을 저해하는 경쟁제한규제를 발굴·혁파

* 25건 개선 : 먹거리·생필품 분야(10건), 레저 분야(5건), 기타(10건)

〈 소비자 편익 저해 규제 혁파 사례 〉

- ▶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가능구역 확대(국토부·국방부)

* 현행 29개 비행가능구역에서 김제·고령 추가(총 31개로 확대)

문 제 점

- 여전히 보건·복지 등 분야에서 국민들이 생활속 불편사항 지속 제기

개선 · 보완 방향

- 개선요구·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대한 국민 공모·건의를 통해 과제 발굴·개선 추진

(3) 현장·수요자 중심 규제혁파

주요 정책성과

□ 현장·수요자 밀착형 규제 혁파를 통한 현장체감도 제고

-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개최를 통해 현장중심 규제개혁을 선도(국무총리 주재, 2회)
 - * △중소·벤처기업 현장어로 혁파방안 및 41건의 애로 해소 발표(1차),
△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 및 23건의 애로 해소 발표(2차)
- 지자체·협회·기업 등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애로 혁파
 - * 현장 규제애로 청취를 위한 규제개선 간담회 29회 개최 → 발굴과제에 대한 부처 검토 및 협의를 거쳐 103건 과제 개선

〈 현장 규제애로 혁파 사례 〉

- ▶ 연구소기업 자본금 규모별 설립주체의 최소지분율 완화(과기정통부)
 - 기존 연구소기업 설립주체의 자본금 지분율 요건이 일률적으로 20% 규정
 - 개선 연구소기업 설립주체의 자본금 지분율 요건을 규모에 따라 차별화(10%, 15%, 20%)

- 온라인 규제애로 처리시스템인 규제개혁신문고 운영을 통해 수요자 중심 규제혁파 추진
 - * '17년 1,987건 규제애로 사항 검토·처리

〈 규제개혁신문고 혁파 사례 〉

- ▶ 식품표시제도 규제운영 합리화(식약처 등 8개 부처)
 - 기존 상품포장에 의무화된 식품표시규제를 8개 부처, 15개 법령에서 각각 규정
 - 개선 시행시기 통일, 표시규제 정보의 통합제공 등 상품포장 변경 최소화

문 제 점

- 현장과의 소통을 통한 규제혁파 노력 강화 필요

개선 · 보완 방향

- 협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건의사항을 상시 접수하면서 직접 현장방문 등을 통한 과제 발굴 병행 추진

4. 정책소통 평가

1 평가 개요

□ 평가목적

-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에 대한 각 부처의 정책소통 추진노력과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새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이해를 높이고 정책성과에 대한 체감도 확산

□ 평가대상

- 43개 중앙행정기관

□ 평가방법

- 평가지표의 특성에 따라 정량·정성 평가 병행
-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정성평가의 경우 민관합동 「정책소통 평가지원단」 구성*, 평가실시

* 3개 그룹 각 7명(민간전문가 5, 문체부 국민소통실 2) 총 21명

□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정책소통 활동 (31점)	• 정책소통 기획 실적	7점
	• 기관 간 정책소통 협업 실적	16점
	• 정례브리핑 및 언론 반영 실적	8점
정책소통 성과 (69점)	• 방송·신문 보도성과 * 외신 반영 실적	13점 (±2점)
	• 기관 정책소통 활동성과	16점
	• 온라인 정책소통 활동성과 * 온라인 홍보체계 강화 노력	40점 (+1점)
	기관의 쉽고 바른 보도자료 사례 평가	±2점

* 100점 만점 평가 후 10점으로 환산

2 평가 등급

* 각 등급 내 기관명은 직제 순으로 표기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우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경찰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보통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국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문화재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미흡	통일부, 법무부, 국가보훈처, 방송통신위원회	법제처, 방위사업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 주요 성과

- 새 정부 국정기조와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이해 제고
 - 일자리정책·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등 국정과제,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계부채 등 정책현안, 평창 동계올림픽 붐업 등 범부처 협력 홍보 추진
 - 정책홍보전략회의(차관급) 신설로 정책과 홍보를 연계한 효율적 협업체계 구축
 - '광화문 1번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등 국민 목소리를 듣는 새로운 정책소통방식 제시
- 온라인 소통 강화를 통해 대국민 직접소통·쌍방향 소통 확대
 - SNS 온라인 중계, 정책질의·제안 관련 의견수렴 및 참여형 이벤트 등
 - * 주거복지 정책을 제안한 국민 50명과 국토부 장관과의 토크 콘서트 및 온라인 생중계 등
 - 온라인 콘텐츠 품질 제고를 위해 콘텐츠 통합시스템 「정부 SNS Live」 구축·운영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정책 수요자 맞춤형 콘텐츠 제작 및 매체전략 수립 필요
 - 청년·주부·자영업자 등에 특화된 매체·콘텐츠 활용으로 체감도 제고
 - * (예) 청년층에는 웹툰·웹드라마, 장년층에는 버스·옥외광고 활용 등
- 위기관리 소통노력 강화 필요
 - 국내외 위기관리 우수사례 발굴, 교육 프로그램 개발, 위기관리 소통 매뉴얼 개발 등
- SNS 등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온라인 정책소통 전문성 제고 필요
 - 맞춤형 온라인 전문교육 강화, 온라인 소통 위상 제고 등 추진

4 분야별 평가결과

(1) 정책소통 활동

주요 정책성과

□ 새 정부 출범 계기 국정기조 및 국정과제에 대한 적극적 소통 추진

- 새 정부 출범 100일 계기, 국정비전을 통한 국민 대통합 캠페인 추진* 및 새 정부 초기 대표 소통플랫폼 ‘광화문 1번가’ 소통** (5~7월)
 - * “내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은 나라”(9~10월) / “국민 대통령 시대” 광고 등(7~9월)
 - ** 열린포럼, 국민마이크, 찾아가는 광화문 1번가 등
- 새 정부 비전 및 국정과제 관련, 기획영상·카드뉴스 등 비주얼 콘텐츠 제작·확산*으로 국민 공감대 형성
 - * “정책으로 꽃길 걷기”(뮤직비디오), “내가 꿈꾸는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영상광고) 등

□ 범정부 협력소통 시스템 강화

- 정책홍보전략회의 신설로 정책과 홍보 연계 강화
 - 각 부처 차관이 참석하는 정책홍보전략회의(국조실장 주재, 매주)를 통해 정책홍보 일정 조율 및 효과적인 홍보 방안 수립
- 대변인협의회를 통해 국정과제 등 홍보계획 논의 및 홍보 협력 강화
- 정부 부처 및 산하·공공기관 보유 613개 매체*를 활용하여 콘텐츠 확산
 - * 영상물 492종, 간행물 121종 등 613개 매체
-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대회 붐 조성을 위해 범정부 총력 홍보* 추진
 - * (전 부처) 각 부처·공공기관 보유 매체, 기관 홈페이지·블로그 배너 활용 등 (과기부, 해외문화홍보원) 평창 ICT 동계올림픽 외신홍보 협력(17개국 18개 매체)

문 제 점

- 국민의 정책소통 참여 확대에도, 수요자별 고려는 다소 부족
 - 정책 수요자의 특성을 반영한 콘텐츠 제작 및 참여방안 다각화를 통해 국민 정책 체감도 제고 필요
- 정책 오보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미흡
 - 오보 및 왜곡보도에 대해 해명자료 배포 등으로 대응하고 있으나(총 1,536건), 기사에 해명이 반영된 사례는 447건(29.1%)에 불과
- 북핵 등 대내외적 위험요인에 대한 위기관리 소통 강화 필요
 - 북핵 위기·사드갈등 등에 따른 안보 불안감, 지진·화재·AI 등 국민생활 위험요인의 증가에 따른 위기관리 소통 필요성 급증

개선 · 보완 방향

- 정책 수요자를 고려한 다각적인 소통참여 확대
 -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맞춤형 콘텐츠 제작, 정책소통 과정(제작·확산·환류)에 국민참여 방안 강구(청년크리에이터 활성화, 국민 모니터링단 신설 등)
 - 1인 미디어 등 다각적인 민간채널 협업 노력,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국민소통포럼’ 등 신설 추진
- 정책 오보 발생 시 충실한 설명 등 대응 노력 강화
 - 오보 발생 시 해당 언론사 대상 적극적 설명, 해명자료 배포 및 브리핑 실시

□ 위기관리 소통 노력 강화

- 국내외 위기관리 사례 소개 등 위기관리 교육프로그램 개발·지원
- 컨설팅, 메시지 개발, 사전발표 협의 등 범부처 현안·위기관리 소통 지원 추진

(2) 정책소통 성과

주요 정책성과

□ 기관장 소통 강화 및 주요정책에 대한 전략적 소통 추진

- 기관장 방송출연·현장설명회 등 언론·현장소통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 강화
- 매월 중점 소통과제 선정, 소통방식 다변화 등 전략적 홍보* 추진
* (과기부) 대통령 주재 '4차산업혁명위원회 1차 회의' 홍보 시 타깃별(국민+오피니언 리더) 홍보 전략을 차별화하고, 온라인 생중계 등 직접소통 추진

□ 온라인 콘텐츠 품질 제고를 위한 부처간 협업 시스템 구축

- 전 부처 SNS 채널에 게재되는 콘텐츠의 실시간 수집·열람이 가능한 콘텐츠 통합시스템 「정부 SNS Live」구축*(17.9월)
* 각 부처에서 운영중인 블로그·페이스북·트위터·유튜브·카카오톡·인스타그램 등 6개 채널 198개 대상

□ 새로운 온라인 소통기법 및 O2O 연계 방식(Online to Offline) 등 활용 소통 추진

- 라이브 방송, 웹 예능* 등 뉴미디어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 제작
* (고용부) 리얼 체험 버라이어티 웹 예능 '어느날 갑자기' 네이버티비 등 게재(94만명 조회)
- 온라인 영향력이 큰 1인 창작자와의 협업*으로 공감대 형성
* (해수부)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위해 71세의 최고령 디지털 인플루언서인 박막례 할머니와 협업, 전 세대를 아우르는 효과(20만명 조회)

- 토크콘서트, 팸투어 등과 연계된 O2O 방식* 콘텐츠·이벤트 활성화

* (국토부) 온라인을 통해 주거복지 정책을 제언한 국민 50명을 초대, 장관과의 대화(토크콘서트)를 온라인 생중계

문 제 점

□ 모바일 트렌드에 부합하는 사용자 친화적 소통 노력 부족

- 모바일 중심으로 온라인 이용 패턴이 변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노력 필요

* PC·TV·모바일 중 모바일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비율은 53.5% 수준('15년),
온라인 사용 시 모바일만 사용하는 비율은 '13년 3.6% → '17년 19%

□ 외신 소통의 중요성 증대에 따른 체계적 대응역량 강화 필요

- 안보·경제 뿐만 아니라 사회 등 기타 분야에서도 외신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인터넷 매체 등 외신 채널도 다양화되고 있으나 체계적 대응에 한계*

* 외신대변인 있는 6개 부처(기재·외교·통일·국방·산업부·금융위) 대상으로 외신대변인협의회를 운영중이나, 외신대변인이 없는 부처는 체계적 대응에 한계

개선 · 보완 방향

□ 모바일 환경을 고려한 콘텐츠 제작 및 확산 강화

- 온라인 환경변화에 따른 사용자 친화적 콘텐츠 제작 활성화 필요
- 교육 및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온라인 소통역량 제고

□ 외신 관련 소통체계 정비 및 채널 다각화

- 외신대변인이 있는 부처 외에 사회 부처 등을 포함하여 외신대변인협의회 확대 운영 추진
- 기존 외신매체를 포함하여 인터넷 등 다양화된 외신채널 대상으로 홍보 강화 등 소통채널 다각화 추진

5. 국민만족도 평가

1 평가 개요

□ 평가목적

- 국민이 체감하는 국정성과 창출을 위해 정책과제와 소통노력 등에 대한 국민만족도 조사를 실시
 - (정책 만족도) 국정과제(100개) 및 주요정책과제별(37개) 정책추진 성과·노력 등에 대해 국민 체감도 평가
 - (소통 만족도) 부처별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 소통 추진노력 및 효과성 등에 대해 국민만족도 평가

□ 평가대상

- 43개 중앙행정기관

□ 평가방법

- 평가의 전문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민간 전문 조사기관에 설문조사 의뢰
 - (정책 만족도) 전국 20세 이상 성인 총 17,050명* 대상 조사(17.11.2~30, 닐슨코리아)
 - * 일반국민 11,000명, 정책수요자 6,050명
 - (소통 만족도) 전국 20세 이상 성인 총 1,200명 대상 조사(17.11.6~24, 월드리서치)
- 과제별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부처별 점수 부여

□ 평가지표(10점)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정책 만족도	민주성	• 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국민 의견 수렴 정도	5
	적극성	• 정책목표 달성에 대한 기관 노력도	
	대응성	•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상황변화 및 문제점에 대한 대응의 적절성	
	효과성	• 정책 추진으로 달성된 성과의 정도	
	체감만족도	• 국정과제에 대한 종합적인 만족도	
소통 만족도	정책소통 프로그램	• 정책소통 프로그램 인지도 및 접촉빈도	5
		• 정책소통 프로그램 적합성	
	정책소통 효과	• 정책소통 만족도	
		• 정책에 대한 수용도	

2

평가 등급

* 각 등급 내 기관명은 직제순으로 표기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우수	법무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소방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보통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 병무청, 문화재청, 특허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미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인사혁신처, 조달청, 방위사업청, 새만금개발청

3 총 평

□ 조사 결과

- 정책만족도는 4.63점(7점 만점)으로, '보통(4점) 이상'의 만족 수준
 - 의료·복지·주거 정책 등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반면, 중소기업·문화·교육 관련 정책의 만족도는 낮은편
 - ※ 높은과제 :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및 예방접종 무료 지원(5.28)
건강하고 품위있는 노후생활 보장(5.18)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5.02)
 - 낮은과제 : 예술인 창작 지원 및 복지 강화(4.11)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축소 등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4.20)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4.26)
- 소통만족도는 60.7점(100점 만점)으로, '보통(50점) 이상'의 만족 수준
 - 의료·안전 분야 소통만족도가 평균대비(60.7점) 높은 반면, 남북관계·방위산업 분야의 소통만족도는 낮은편*
 - * 해당정책의 정책소통 활동에 대해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고 평가
 - ※ 높은과제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66.96), 지진 대응체계 강화(65.91)
 - 낮은과제 :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56.55), 방위산업 육성(56.92)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만족도가 낮은 분야의 정책에 대해서는 현장 소통강화 및 맞춤형 정책 추진 등을 통한 불만족 해소 노력 필요
- 국민들이 정책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정책소통 노력 지속 필요

4 분야별 평가결과

(1) 정책 만족도

□ 장관급 23개 기관의 정책만족도 평균은 4.62점(7점 만점)으로, '보통(4점 이상)'의 만족 수준

- 의료·복지·주거·보훈* 분야의 정책 추진 노력에 대해 긍정적 평가
*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및 예방접종 무료 지원(복지부, 5.28)', '공공임대 등 주거복지 확대(국토부, 5.02)', '국가유공자 보상·예우 강화(보훈처, 4.76)' 과제 등
- 예술인 복지·중소기업 지원·대입제도* 등의 정책추진 성과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수준
* '예술인 창작 지원 및 복지 강화(문체부, 4.11)',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중기부, 4.20)', '교과과정 개편 및 대입전형 개선 등 공교육 혁신(교육부, 4.26)' 과제 등

□ 차관급 20개 기관의 정책만족도 평균은 4.65점(7점 만점)으로, '보통(4점 이상)'의 만족 수준

- 산림휴양·민생치안·지진 예방* 등 현장중심의 정책 추진 노력에 대해 높은 평가
* '산림교육·산림휴양(산림청, 4.88)', '민생치안 범죄 경감 및 사회적 약자보호(경찰청, 4.84)', '기상·지진 재해예방 지원정보 개선(기상청, 4.83)' 과제 등
- 공무원 인사관리·방위산업·특허 및 상표 관리* 등의 정책 추진성과에 대해 낮은 평가
* '고공단 및 공무원 징계제도 개선(인사처, 4.40)',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등 방위력 지원(방사청, 4.48)',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서비스 제공(특허청, 4.50)' 과제 등

(2) 소통 만족도

□ 장관급 23개 기관의 소통만족도 평균은 61.38점(100점 만점)으로, '보통(50점 이상)'의 만족 수준

- 건강보험 정책·검찰개혁·유아 공교육 강화* 등의 소통노력 수준을 높게 평가
* '건강보험 보장 강화(복지부, 66.96)', '검찰개혁(법무부, 65.27)',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교육부, 64.78)' 과제 등
- 남북관계·사이버 폭력 예방·서민금융 지원* 분야 등의 정책 소통 노력은 낮게 평가
*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통일부, 56.55)',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방통위, 57.63)' '서민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금융위, 58.19)' 과제 등

□ 차관급 20개 기관의 소통만족도 평균은 59.98점(100점 만점)으로, '보통(50점 이상)'의 만족 수준

- 지진 대응체계 강화·민생치안·불법 외국어선 근절* 분야의 정책정보 유용성을 높게 평가
* '지진·지진해일 감시 및 대응체계 강화(기상청, 65.91)',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경찰청, 65.11)', '해양주권 수호(해경청, 61.69)' 과제 등
- 공무원 인사·공공조달 제도·행정신고제 개선 노력* 등에 대한 정책 소통효과는 낮게 평가
* '국민참여형 인사시스템 국민추천제(인사처, 55.97)', '신고제 합리화(법제처, 56.41)', '창업·벤처기업 온라인몰 벤처나라(조달청, 56.52)' 과제 등

6. 기관공통사항 평가

1 현안관리

가. 평가 개요

□ 평가목적

- 각 부처의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상황 및 성과를 평가, 환류하여 지시사항의 차질 없는 이행 및 성과 제고

□ 평가대상

- (대상 지시사항) 새정부 출범 이후 시달된 대통령 지시사항 중 부처별 추진계획 수립이 완료된 지시사항(부처별 기준 192건)
- (대상 기관) 43개 중앙행정기관

□ 평가방법

- 지시사항별로 ± 3 점 가감점 부여하여 부처별 산술 평균

□ 평가지표 (± 3 점)

평가항목	평가지표	방법	배점(± 3)
계획수립 적절성	• 지시취지 부합 여부, 내용 충실성 등	정성	0~3
집행 이행도	• 추진계획에서 제시한 목표 달성여부	정량 정성	(-)2~0
시스템 활용도	• 추진계획 및 실적의 기한내 등록 여부 등	정량	(-)1~0

나. 평가 등급

* 각 등급 내 기관명은 직제순으로 표기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우수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통계청, 경찰청, 산림청
보통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조달청, 병무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특허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해양경찰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미흡	통일부, 보건복지부	방위사업청, 소방청

다. 총 평

□ 주요 성과

- 대통령 지시사항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국정운영 성과 제고
 -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지향하는 새로운 국정철학을 공직사회에 조기 정착
 - * △가습기 살균제 정부 책임 인정 및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 △세월호 기간제 교사 신속 순직 인정 등
 - 국민 안전* 및 주요 현안**에 대한 범부처 차원 신속·적극적 대응
 - * AI 방역 종합대책,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 마련 등
 - **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척결, 공관병 갑질 행태 근절 등
- 지시사항 관리체계 개선으로 각 부처의 이행력 제고
 - ‘17년 정부업무평가에 신규 반영* 및 소통형 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지시사항 이행에 대한 관심도·적극성 제고
 - * 43개 중앙행정기관 대상으로 계획수립 적절성, 계획 이행도 등 평가
 - ** 지시사항 별 추진계획 및 이행현황을 모든 관계자가 수시로 확인·점검 가능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각 부처의 지시사항 이행관리 강화
 - 대통령 지시사항의 원활한 이행과 실질적 성과 구현을 위해, 국정과제 수준의 철저한 관심과 관리노력 기울일 필요
- 여러 부처가 관련된 지시사항에 대한 부처간 협업 강화
 - 주관부처가 중심이 되어 범부처 시각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지시사항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책임감 있게 추진할 필요

라. 분야별 평가결과

(1) 국정운영 투명성·책임성 제고

주요 정책성과

□ 새정부 출범 초기 새로운 국정철학*의 조기 정착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책임성 제고에 기여

* (국가비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 (국정목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등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로 갈등사안에 대한 국민참여형 해결방안* 제시

* 시민참여단 471명, 숙의를 통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등을 對정부 권고

○ 가습기 살균제 정부 책임 인정* 및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

* 대통령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정부책임 인정하고 사과 표시(8월)

** 폐손상 외 태아피해, 천식까지 피해인정기준 확대로 정부지원 대상(1·2단계) 피해자 415명 인정, 3·4단계 피해자 및 부도기업 피해자를 위한 특별구제계정 마련 등

○ 세월호 기간제 교사에 대하여 신속하게 순직 인정 절차*를 완료

* 국조실, 교육부, 인사처, 보건처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공무원연금법 등 신속 개정 → 세월호 침몰 사고 시점부터 소급하여 연금 지급중('17.9~)

문 제 점

□ 국정운영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공무원중 사망 비정규직 근로자의 순직 인정 등을 위한 공무원재해보상법 제정안 조속한 국회 통과 필요

개선 · 보완 방향

- 공무원재해보상법 등 지시사항 이행 법안의 국회 통과노력 강화 및 법안 통과 지연에 따른 보완대책 마련 검토

(2) 국민 안전의 보장

주요 정책성과

- 국민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정관리 구현
 - 「AI 방역 종합대책*」을 마련(9.7)하여 AI 발생 이전 평시에 방역을 강화하는 예방 중심의 근본적 방역 체계로 전환
 - * △상시 예방 체계 조기 구축, △질병에 강한 기금 산업으로 구조 혁신, △과학기술로 위험 관리 강화, △지자체와 농업인의 자율·책임 방역 지원
 -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7.28) 추진으로 교통사고 예방 강화
 - * △운전자 근로여건 개선(광역버스 휴식시간 확대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 확대(자동비상제동장치 등),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운수업체 실태점검 등)
 - 관계부처 합동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9.26)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건강권을 보장
 - * △대규모 배출원(석탄발전소 등) 집중 저감, △주변국(중국 등)과 환경협력 강화, △민감계층 집중보호, △과학적 연구기반 강화로 '22년까지 30% 감축

문 제 점

- ‘국가위기관리 및 재난재해관리 체계 전반 재검토’ 지시에도 불구하고, 대응 미흡 및 거듭된 사고* 발생

* 영흥도 뉘싯배 사고, 용인·평택 타워크레인 붕괴, 제천 화재 사고 등

개선 · 보완 방향

- 중대 사건·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및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현장에서의 실행력 제고* 등을 통해 ‘국민 안심사회’ 구축

*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 간담회 및 현장점검 등 추진

(3) 주요 현안의 신속·적극 대응

주요 정책성과

- 국민적 현안에 대해 쏠부처 차원의 점검 및 대응조치 추진
 -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대응조치로 공정사회·공정경쟁 기반을 확립
 - * 330개 공공기관 전수조사 진행(10.16~12월末), 채용비리신고센터 설치·운영
 - 「공관병 갑질사건」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눈높이를 감안, 쏠부처 실태조사를 통해 ‘갑질’의 근본적 차단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 * 공관병(210명), 골프·테니스병(56명), 운전의경(361명) 폐지 등

□ 장기 미해결 과제에 가시적 조치 창출

- 법무부 탈 검찰화 및 검찰개혁*의 신속한 착수 및 이행
 - * 법무부 검사 단수직위 42개에 일반 공무원도 보임 가능하도록 직제 개정, 검사장급 현원 조정(48석→43석) 및 정원 감축(49석→48석)

문 제 점

□ 일부 다부처 공통 지시사항에 대한 부처간 유기적 연계 부족으로 지시사항의 신속·원활한 이행 및 지시이행 성과 제고에 한계

- ▶ 「비혼모를 포함한 다양한 출산에 대한 보호대책」 수립과정에서 부처간·부처내 긴밀한 협업 부족으로 종합적 시각 없이 지엽적인(인공임신중절 예방) 계획 마련

개선 · 보완 방향

□ 비혼모 지시사항에 대한 범부처 시각에서의 종합적·체계적인 이행방안 마련과 함께 주관부처의 책임감 있는 이행 필요

2 갈등관리

가. 평가 개요

□ 평가목적

- 공공갈등 관리실태 점검·평가를 통해 부처의 갈등관리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독려하고 실질적 갈등해결과 예방을 도모

□ 평가대상

- 43개 중앙행정기관

□ 평가방법

- 민관합동평가단 구성·평가
 - 부처 특성에 따라 장·차관급 4개 분과(경제1·2, 사회1·2)로 구성

□ 평가지표 (±3점)

평가항목	평가지표
갈등과제 관리 (40%)	• 갈등과제 해결을 위한 소통 노력
	• 국정협의를 통해 활용한 갈등해결 노력
	• 참여적 의사결정기법을 활용한 창의적인 노력 등
갈등관리 제도운영 (30%)	•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실적
	• 갈등영향분석서 작성실적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실적
갈등관리 성과 (30%)	• 갈등완화·해소 정도 및 성과

나. 평가 등급

* 각 등급 내 기관명은 직제 순으로 표기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우수	교육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달청, 경찰청, 농촌진흥청, 새만금개발청
보통	기획재정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관세청, 통계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문화재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해양경찰청
미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소방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다. 총 평

□ 주요 성과

- (과제관리) 새 정부 출범이후 각 부처의 적극적인 갈등관리 노력으로 집중관리 25개 갈등과제 중 16개 과제 해소·진전

※ 집중관리 과제 외 부처관리 과제도 진전된 성과 도출
(종교인 과세, 화학물질 등록대상 확대, 통일문화센터 건립 등)

(해소)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검토, 청탁금지법령 개정,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철회, 용산 장외 경마장 이전, KTX 무안공항 경유 등 6개

(진전) EEZ 바다모래 채취, 세월호 추모사업, 수능·자사고 교육현안 대응, 비정규직 고용환경 개선, 4대강 보 개방 등 10개

- 공론화(신고리), 협약체결(용산 장외경마장), 법원조정(제주 구상권) 등 시민참여 기반의 다양한 사회적 합의 모델 적용으로 갈등해소

- 국정협의회 논의*, 장차관급 현장방문** 등 갈등해소 계기 마련

* △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19회 △ 갈등관리정책협의회 등 국정협의회 54회

** △ 종교인 과세(기재부, 9회) △ 세월호(해수부, 6회) △ 교육현안(교육부, 5회) 등 80회

- (제도운영) 갈등관리 관련 협의회 운영, 갈등영향분석 실시 등 갈등해소를 위한 부처별 갈등관리제도 운영실적 대폭 증가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 ('16년) 15개 부처 → ('17년) 41개 부처

* 갈등조정협의회(집중관리 과제 기준) : ('16년) 45.7%(16개/35개) → ('17년) 84%(21개/25개)

* 갈등영향분석(집중관리 과제 기준) : ('16년) 57.1%(20개/35개) → ('17년) 88%(22개/25개)

※ 갈등관리를 정부업무평가에 신규 반영함으로써 그 동안 미진했던 각 부처의 갈등관리 노력과 성과를 제고하는 효과 거양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과제관리) 정책수립 단계부터 갈등요인 파악 등 선제적 대응 강화, 지속되는 갈등사안에 대해서는 창의적 대안 마련 등 갈등해소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 필요

- (제도운영)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영향분석의 내실화·활용성 제고, 갈등관리 노력·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필요

라. 분야별 평가결과

(1) 갈등과제 관리

주요 정책성과

□ 다양한 사회적 합의모델 적용으로 정책결정의 수용성 제고

- 신고리 5·6호기(공론화) : 공론화위원회를 구성('17.7)하고 일반 시민의 참여와 숙의에 기반한 공론조사('17.8~10)를 실시하여 에너지 분야의 첨예한 갈등을 원만히 해소
- 용산 장외경마장(협약체결) : 반대단체 포함 이해관계자 협의체(지역상생협의회, '17.3~9)를 구성,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하여 용산 장외경마장 이전 협약 체결('17.8)
-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법원조정) : 민·군 상생 및 화합지원을 위한 발전자문위원 위촉('17.7), 현장방문('17.8, 차관) 등을 통해 갈등을 완화하고 법원 직권조정안 수용('17.12)

□ 국정협의를 적극 활용하여 갈등사안 집중 논의·조정

-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비정규직 고용환경 개선 등 노동 현안(고용부) △수능·자사고 등 교육 현안(교육부) △EEZ 바다모래 채취(국토부·해수부) 등 갈등현안 19차례 논의

□ 장·차관급 현장방문(80회) 등 갈등해소를 위한 현장소통 대폭 강화

- 종교인과세(경제부총리, 9회) : 대한불교 조계종('17.8), 천주교 주교회의('17.8), 기독교 총연합회('17.9), 유교('17.10) 등 7대 종교계(9개 종단) 지도자 예방
- 교육현안(사회부총리, 5회) : 권역별 학부모 경청투어('17.7, 수능개편), 한국우진학교 방문('17.9, 특수학교 설립), 한서고 방문('17.11, 고교학점제) 등

문 제 점

- 갈등 예방보다는 갈등현안 발생 이후 대응에 집중하는 경향
- 첨예한 이견대립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갈등현안에 대한 대안검토 등 적극적인 해소 노력 다소 부족

개선·보완 방향

- 정책 수립단계부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갈등요인을 사전에 파악하는 선제적 대응 노력 강화
- 지속되고 있는 갈등사안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한 창의적 대안 마련 및 현장소통 강화 등 보다 적극적인 갈등관리 추진

(2) 갈등관리 제도운영

주요 정책성과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16년) 15개 부처 → ('17년) 41개 부처

* 부처별 갈등과제 관리, 갈등관리 제도운영 등 총괄 역할 수행

- (우수사례 : 국토부) 전체회의와 분야별위원회(국토, 교통)로 이원화하여 운영, 갈등 영향분석서 작성 및 갈등조정협의회 설치 심의 등 체계적 운용

□ (갈등조정협의회*) ('16년) 45.7%(16개/35개) → ('17년) 84%(21개/25개)

* 민간 이해관계자 포함, 갈등 사안 논의·조정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집중관리 과제 기준)

- (우수사례 :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의무화 관련 갈등조정협의회는 대한약사회 등 9개 전문단체가 참여, 7개 그룹 17회 협의를 통해 갈등예방

□ (갈등영향분석*) ('16년) 57.1%(20개/35개) → ('17년) 88%(22개/25개)

* 갈등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갈등요인(대상, 주제 등) 사전 분석자료(집중관리 과제 기준)

- (우수사례 : 국방부) 군공항 이전 관련 전체 사업에 대한 갈등영향분석 뿐만 아니라 대구·수원 등 대상지역별 갈등영향분석서 작성·활용

문 제 점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부처별 설치는 대폭 증가 하였으나, 연간 1~2회 개최 및 서면 회의로 대체 등 일부 부처 형식적 운영

□ (갈등영향분석) 일부부처는 갈등영향분석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정책수립 시 의견 수렴 결과 등으로 대체

□ (인센티브) 갈등관리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으로 추동력 저하

개선·보완 방향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부처별 갈등과제 선정 및 갈등관리 방안 모색 등 운영 활성화를 통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 강화

□ (갈등영향분석) 갈등관리 전문가 자문, 담당자 교육 등 영향분석에 대한 이해도 및 활용성 제고

□ (인센티브) 성과급, 인사고과 반영 등 갈등관리 동기부여 방안 마련

3

인권개선

가. 평가 개요

□ 평가목적

- 중앙행정기관의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한 수용도를 높이고, 인권개선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

□ 평가대상

- 43개 중앙행정기관

□ 평가방법

- '17.7.~12월 기간 중 인권위가 통지한 권고의 이행 여부
- 평가대상 기관의 기타 인권개선 노력
 - ※ 기타 인권개선 노력은 '17.1~7월 기간의 실적도 포함하여 평가

□ 평가지표 (±2점)

평가항목	평가지표
권고이행 (70%)	• 권고 이행계획 회신(의무기간 내 회신 여부)
	• 회신 의무기간(90일) 초과(1개월 당 감점)
	• 권고 이행의 충실도
	• 권고 이행의 난이도
기타 인권개선 노력 (30%)	• 평가 대상기관이 제출한 인권개선 내용의 우수성 ※ 평가대상 기간 동안 권고를 받지 않은 기관의 경우 기타인권개선 노력을 만점(2점)으로 환산하여 평가

나. 평가 등급

* 각 등급 내 기관명은 직제 순으로 표기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우수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인사혁신처, 병무청, 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통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소방청, 특허청, 새만금개발청, 해양경찰청
미흡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방위사업청, 산림청, 기상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다. 총 평

□ 주요 성과

- (권고이행) 인권위 권고에 대한 회신의무 준수율·수용률 향상 및 기관 차원의 관심 확대
 - 9개 기관의 36개 권고(17.7~12) 이행계획 회신율·수용률 100%
 - * 최근 5년간 피권고기관 회신율 평균 75%, 수용률 평균 87%
 - 인권위 권고에 대하여 최대한 수용을 위해 권고 불수용 재검토, 대안·보완조치 사안 논의 등 적극 검토
- (기타 인권개선 노력) 인권 보호 상황의 점검, 인권 교육 확대 등 인권 인식 확대 기반 마련
 - 기관 주요사업의 목적으로 '인권보호·향상' 추가, 기관내 인권교육 확대 등 인권인식 확대 노력
 - 이행의무가 없는 '의견표명' 사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수용
 - * 외국인보호시설의 외부 교통권 보장 의견표명 수용(법무부), 군부대 피해 발생 공상재심사 의견표명 수용(국방부) 등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권고 취지에 맞게 실제 이행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관리 필요
- 기관의 다양한 업무 분야에서 인권 사각지대 및 보완과제 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 기관 내 인권침해, 차별사건 예방·대응을 위해 인권존중 문화 조성 및 제도 개선 필요

라. 분야별 평가결과

(1) 권고 이행

주요 정책성과

□ 권고이행계획 회신 의무 준수율·수용률 향상

- 9개 기관, 36개 권고(17.7~12) 이행계획의 의무기간 내 회신율·수용률 100% (1개 권고 일부 수용 포함)로 권고 수용 확대*

* 최근 5년간 피권고기관 회신율 평균 75%, 수용률 평균 87%(진정 90%, 정책 84%)

□ 인권위 권고에 대한 관심 확대

- 권고 불수용에 대한 재검토, 대안·보완조치 사항 논의* 등 인권위 권고에 대한 기관 차원의 적극적인 검토

* 권고에 대한 일부 (불)수용 검토시 정책조정실무회의(차관주재) 절차 진행(고용부) 등

- 인권보호 문제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등 자발적 개선 노력

* 기관 소관 업무에서 인권관련 전문가 및 단체 등 의견 수렴·협의 실시(국토부) 등

문 제 점

□ 권고의 수용과 실제 이행과의 괴리

- 권고 내용이나 이행 절차 등이 복잡할 경우, 향후 실제 이행과정에서 권고의 수용 취지와는 다르게 집행되거나 이행이 지연*

* 장애인 이동권 보장 관련 권고 이행계획 회신 후, 실행이 1년 지연 등

개선·보완 방향

□ 권고이행 결과에 대한 자발적인 점검 유도

- 권고의 취지 맞게 실제 이행이 이뤄졌는지 관리·점검할 수 있도록 기관별 점검체계 마련

(2) 기타 인권개선 노력

주요 정책성과

□ 기관 차원의 인권 사안 점검 및 인식 확대

- 사회적 약자, 소수자 대상 업무 점검·확인*으로 기관 업무의 인권 현황 점검
 - * 외국인·이주민 선원의 인권침해 취약부문 발굴·대처 노력(해수부) 등
- 기관내 인권교육을 확대하고, 주요 사업목적에 '인권보호·향상'을 추가하는 등 인권 인식확대* 노력
 - * 정보접근성 향상 정책에 장애인·노인의 접근권을 기본적 권리로 포함(과기정통부), 군 특성에 맞는 인권교육 정기적 실시(국방부) 등

□ 주요 인권 의제에 대한 관심 확대

- 이행의무가 없는 '의견표명' 사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수용*
 - * 외국인보호시설의 외부 교통권 보장 수용(법무부), 군부대 피해와 발생 공상재심사 수용(국방부) 등
 - 문화권 등 주요 인권주제에 대한 보완 과제 발굴 및 국가인권기본계획 반영*·추진
 -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문화권 보장 노력 부각(문체부) 등
- ※ 인권 개선 노력 우수사례(농진청)
- 농가 경영개선 사업,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등 기관 사업에 성평등 인식 확산·실현을 위해 성별영향 평가 분석 적극 실시·홍보

문 제 점

□ 소관 업무에서 인권관련 보완과제 발굴 노력 부족

- 수사·고용 등 특정 영역에만 인권침해가 존재한다는 인식으로, 그 외의 업무영역에서는 인권 관련 개선과제 발굴에 낮은 관심*

* 반부패 교육 외에 다양한 인권분야에 대한 관심 미흡 등

□ 기관 내 주요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대처 미흡

- 성희롱 등 기관 내외 반복 제기되는 인권침해 해결 요구에 대해, 구체적 직무교육·제도 개선 등의 적극적 대응 부족*

* 기관 구성원 간 갑질·성희롱에 대해 의무교육 외에 대처 실적 부족, 행정집행과정에서 반복된 인권침해 문제 제기에 대한 대처 미흡 등

개선·보완 방향

□ 기관 업무에서 인권관련 개선사안의 발굴·점검 노력 제고

- 소관 사업의 개인 권리보호 인식 검토, 취약계층 접근성 점검 등 넓은 시각에서 인권관련 개선과제의 적극적 발굴 노력 필요

□ 인권존중 문화 조성 및 제도 개선 필요

- 인권침해·차별의 예방을 위해 기관 내 인권 사각지대 점검·관리, 인권교육 구체화·내실화 등 적극적인 노력 필요

4

특정시책

가. 평가 개요

□ (평가목적) 정부기관의 국가배려시책 등에 대한 객관적 이행실적 평가를 통해 각 기관의 준수율 제고

□ (평가대상) 43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3개, 차관급 20개)

□ (평가방법) 법정 기준*을 중심으로 부처별 실적 정량적·객관적 평가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평가지표 (±2점)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장애인 고용(고용부)	• 법정 의무 고용률(3.2%) 기준 가감점	±0.6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복지부)	• 법정 의무 구매비율(1%) 기준 가감점	±0.6
중소기업 제품 구매(중기부)	• 법정 의무 구매비율(50%) 기준 가감점	±0.6
기술개발 제품 구매(중기부)	• 법정 의무 구매비율(10%) 기준 가감점	±0.2

나. 평가 등급

* 각 등급 내 기관명은 직제순으로 표기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우수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인사혁신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보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청, 병무청, 경찰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미흡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소방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해양경찰청

다. 총 평

□ 주요 성과

- (장애인 고용) 전년대비 상향된 '17년 장애인 의무고용률 (3.0%→3.2%)을 초과하여, 장애인 고용률 상승*
 - * 장애인 고용률 : ('15) 3.36% → ('16) 3.82% → ('17) 3.83%

-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전체기관의 총 우선 구매액 및 평균 구매율*이 전년대비 상승하고, 법정기준 달성 기관수도 증가**
 - * 총 우선구매액(평균 구매율) : ('16) 846억원(1.34%) → ('17) 883억원(1.49%)
 - ** 법정기준 달성기관 : ('16) 31개(72.1%) → ('17) 32개(74.4%)

- (중소기업·기술개발 제품구매) 중소기업제품 평균 구매율*이 전년대비 증가하고, 기술개발제품의 평균 구매율**도 전년대비 증가
 - * 중소기업제품 평균 구매율 : ('16) 66.5% → ('17) 71.2%
 - ** 기술개발제품 평균 구매율 : ('16) 13.4% → ('17) 16.8%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기술개발제품 구매의 경우, 전체 기관의 구매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법정기준 미달성 기관도 일부 존재
 - *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법정 1%) : 11개 기관 미달 (25.6%)
 - ** 기술개발제품 구매(법정 10%) : 10개 기관 미달 (23.3%)

⇒ 공공기관의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복지부) 및 기술개발 제품 전담기관 지정 확대(중기부) 등을 통한 구매율 제고 노력 필요

4. 분야별 평가결과

(1) 장애인 고용 (법정 고용률 3.2% 이상)

주요 정책성과

□ '17년 장애인 의무고용률(3.2%)을 초과하여, 장애인 고용률 상승*

* 장애인 고용률 : ('15) 3.36% → ('16) 3.82% → ('17) 3.83%

• 장애인 고용률 상위 기관(4% 이상) : 새만금개발청(5.51%), 조달청(5.40%), 법무부(5.21%), 보훈처(5.20%) 등 13개 기관

※ 실적개선기관 : 국세청(전년대비 1.57%p ↑), 법제처(전년대비 0.71%p ↑)

문 제 점

□ 의무 고용률 미달기관*이 일부 존재하고, 중증 장애인 고용비율**은 전체 장애인 대비 낮은 수준

* 교육부(2.06%), 국방부(2.67%), 방사청(2.48%), 행복청(2.70%) 등 8개 기관

** 고용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비율은 15.96%(775명 / 4,855명)

개선 · 보완 방향

□ 국세청 등 실적개선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기관별 직무분석, 장애인 적합 직무 발굴, 자격요건 완화, 고용환경 개선 등 채용 확대방안 강구(고용부)

○ 특히, 중증장애인에 대한 직무 발굴 등 고용 확대 노력 강화

(2)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법정구매비율 1% 이상)

주요 정책성과

- 대상기관의 총 우선구매액 및 평균 우선구매율* 모두 전년대비 상승하고, 법정기준 달성 기관수도 증가**

* 총 우선구매액(평균 구매율) : ('16) 846억원(1.34%) → ('17) 883억원(1.49%)

** 법정비율 달성기관 : ('16) 31개(72.1%) → ('17) 32개(74.4%)

- 법정구매율 초과기관 : 새만금청(6.72%), 여가부(3.57%) 등 32개
- ※ 실적개선기관 : 교육부(0.97→1.20%), 국방부(0.91→1.13%), 고용노동부(0.93→1.80%) 등 6개 기관*
- * 법정비율 미달('16년)에서 초과('17년)로 전환

문 제 점

- 법정 의무구매비율 미달성 기관*이 상당수 존재하고, 일부 기관은 전년 대비 실적 감소**

* 평가대상 43개 기관 중 11개 기관 미달성 (25.6%)

** 법제처(△1.52%), 원자력위원회(△0.96%) 등 21개 기관 실적 감소

개선·보완 방향

- 공공기관의 구매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구매물품 및 서비스 품목 다변화 등 구매율 제고 노력 지속(복지부)

*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공개 등 제도개선 추진(복지부, 관련개정안 복지위 의결, '17.12월)

(3) 중소기업 제품 구매 (법정 구매비율 50% 이상)

주요 정책성과

□ 중소기업 제품의 평균 구매율(71.2%)이 법정비율(50%)을 크게 상회하고, 대부분 기관이 구매율 목표치*를 달성

- 총 43개 기관 중 39개 기관(90.7%)이 법정비율 달성
 - ※ 외교부 등 2개 기관은 기관 특성상 사전 협의된 별도 목표비율 달성
- 일부 부처*는 기관 성과지표 반영, 정기 점검, 영상회의 등 구매 관리를 통해 높은 구매율 달성
 - * 농진청(91.8%), 행복청(91.5%) 등 6개 기관이 85% 이상 달성

- (농진청) 매년초 연간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수립, 본청·소속기관의 실적을 매월 점검하여 부진 기관 관리, 담당자 화상 업무연찬 회의 등을 통한 높은 구매율(91.8%) 달성
- (행복청) 부서평가 반영을 통한 중기제품 구매율 제고, 공사 발주 증가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 상승(91.5%)

문 제 점

□ 정부기관의 평균 구매율은 법정비율을 상회하고 있지만, 공공기관(775개) 평균 구매율(73.7%)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소 낮은 수준

개선·보완 방향

□ 구매목표 및 실적 공개 등 적극적 제도 운영*, 공공구매제도 상시 모니터링, 구매실적 수시 관리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구매율 제고(중기부)

* 중기제품 구매목표 및 제도 위반내역 국회보고 등 제도 운영

(4) 기술개발제품 구매 (법정 구매비율 10% 이상)

주요 정책성과

□ 기술개발 제품의 평균 구매율(16.8%)이 법정비율(10%)을 상회하고, 법정 구매율 초과기관 수도 증가 (31개 → 33개)

* 기술개발제품 구매액(구매율) : ('16) 5,470억원(13.4%) → ('17) 6,686억원(16.8%)

○ 적극적 성과관리를 한 기관들의 경우 높은 실적 달성*

- 주기적으로 기술개발제품을 소속 및 산하기관에 안내, 기관의 구매목표비율 설정, 구매 교육 등 실시

* 교육부(40.8%), 조달청(38.1%), 문화재청(37.4%) 등 12개 기관이 20% 이상 실적치 달성

- (교육부) 인증신제품(NEP)을 산하기관에 안내하고, 구매 품목 중 인증 신제품이 있는 경우 20% 이상 구매하도록 독려하고, 회계담당자 연수 등의 노력을 통해 40.8% 실적 달성
- (국세청) 소속기관에 매월 기술개발제품, 중소기업제품 등 법정의무구매제도 교육 강화, 매월 실적 취합을 통한 실적 관리 등 적극적 성과관리를 통해 33.76% 실적 달성

문 제 점

□ 평균 구매율은 상승(13.4%→16.8%) 했으나, 법정구매율 미 충족(10개) 및 전년 대비 실적 감소 기관(20개) 다수 존재

개선·보완 방향

□ 기술개발제품 전담기관 지정 확대를 통한 구매 활성화 추진 등을 통해 구매율 제고 (중기부)

Ⅲ. 기관별 종합 평가

Ⅲ. 기관별 종합 평가

1 평가 개요

- (평가목적) 국정과제, 일자리 창출, 규제개혁, 정책소통, 국민만족도 등에 대한 평가 결과를 기관별로 합산·발표하여 기관 차원의 국정성과 제고 독려
- (평가방법) 국정과제(50점), 일자리 창출(20점), 규제개혁(10점), 정책소통(10점), 국민만족도(10점) 점수를 합산
 - 현안관리(±3점), 갈등관리(±3점), 인권개선(±2점), 특정시책(±2점)은 가감점으로 반영

2 평가 등급

* 각 등급 내 기관명은 직제순으로 표기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우수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경찰청, 산림청, 특허청
보통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병무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기상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미흡	통일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민권익위원회	방위사업청, 소방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해양경찰청

IV. 후속조치 계획

IV. 후속조치 계획

① 평가결과 환류 및 개선조치

- 국정과제, 일자리 창출, 규제개혁, 정책소통 등 평가부문의 개선 필요사항을 각 부처에 통보, 개선계획 수립토록 조치
 - 평가주관기관에서 이행상황 점검
- 이행상황 점검결과는 '18년 평가시 반영

② 평가결과 우수기관 및 유공자 포상

-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포상금 지급
- 성과창출에 기여한 공무원 등에 대한 훈·포장 수여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2019. 1. 22.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국무조정실

I. 평가 개요

① 평가대상

- 기관 : 43개 중앙행정기관 (장관급 23개, 차관급 20개)
- 기간 : '18. 1. 1. ~ 12. 31.

② 평가부문

- ❖ 정부 출범 2년, 국민 눈높이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
- ❖ 국정과제와 일자리과제를 통합하여 평가
- ❖ '정부혁신'을 별도 부문으로 신설

- ① (일자리·국정과제) 일자리를 포함한 100대 국정과제 및 중앙행정기관별 주요 업무 추진 노력·결과 평가
- ② (규제혁신)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국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실적 평가
- ③ (정부혁신) 사회적 가치 확산, 신뢰받는 정부 구현, 참여와 협력 확대를 위한 정부혁신 추진 실적 평가
- ④ (정책소통) 국정과제 등 주요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기관별 소통 실적 평가
- ⑤ (소통만족도) 정부의 소통 노력·결과에 대한 국민체감도 평가
- ⑥ (가감 - 지시이행)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노력 및 성과를 평가, 책임성 강화

《 '17년도 평가 대비 주요 개편사항 》

'17년		'18년	
1. 국정과제	50	정책역량 (65)	일자리·국정과제 1-① 일자리·국정과제 60 1-② 정책만족도 5
2. 일자리 창출	20	혁신역량 (소통) (35)	2. 규제혁신 10 3. 정부혁신 10
3. 규제개혁	10		4. 정책소통 10 5. 소통만족도 5 * 정책만족도(5)는 국정과제 부문으로 이동
4. 정책소통	10	국민소통	▲ 지시이행 가감 ±3
5. 국민만족도 - 정책만족도 5, 소통만족도 5	10		
6. 기관공통사항 - 현안관리 ±3, 갈등관리 ±3, 인권개선 ±2, 특정시책 ±2	±10	기타	가감점

3 평가방법

- 정량평가(부문별 주관기관)와 정성평가(민간평가지원단)를 병행하여 평가의 객관성·전문성·공정성 제고
 - 부문별 주관기관은 추진계획 이행정도, 성과지표 달성도 등에 대해 정량평가
 - 부문별 평가지원단은 국정과제 관련 위원·전문가·정책수요자 등으로 구성, 질적인 측면에서의 정책효과를 정성평가
- 평가부문별 기관점수를 합산하여 기관종합 평가
-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평가결과 심의·의결

4 평가결과 제시

- 평가결과는 장관급과 차관급 기관으로 구분하여 기관별 등급 부여 (우수, 보통, 미흡)
-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보완사항 제시

II. 부문별 평가결과

1. 일자리·국정과제

1 평가 개요

□ 평가목적

- 43개 중앙행정기관별 국정과제 이행실적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객관적으로 분석·평가
 - * 국정과제가 1개 이하이거나 일자리 과제 추가 선정이 필요한 28개 중앙행정기관 대상으로 주요정책과제(62개) 선정, 국정과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

□ 평가대상

- 43개 중앙행정기관

구분	기 관 명 (직제순)
장관급 (23개)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보훈처, 방통위, 공정위, 금융위, 권익위
차관급 (20개)	인사처, 법제처,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방사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진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행복청, 새만금청, 해경청, 원안위

□ 평가방법

- 정부업무평가위원을 중심으로 ‘국정과제 평가지원단’ 구성 (459명)
 - 분야별 민간 전문가 및 정책수요자 참여, 10개 분과로 구성
- 분과별로 평가지표에 따라 정량·정성평가 병행 실시

□ 평가지표

- 정책추진 노력(30%), 성과지표달성도(40%), 정책효과(30%)를 평가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정책추진 노력	• 과제 추진계획을 충실히 수립하고, 이에 따라 차질없이 이행했는지 여부	30
성과지표 달성도	• 사전에 설정된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 여부	40
정책효과	• 성과지표로 측정할 수 없는 정책의 체감성과를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 종합 평가	30

2

평가 등급

* 각 등급 내 기관명은 직제순으로 표기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우수	통일부, 농식품부, 복지부, 국토부, 보건처, 공정위	법제처, 조달청, 병무청, 농진청, 산림청, 해경청
보통	기재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산업부, 여가부, 해수부, 중기부, 방통위, 금융위, 권익위	인사처, 국세청, 관세청, 방사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특허청, 행복청, 새만금청
미흡	교육부, 법무부, 환경부, 고용부	식약처, 원안위, 통계청, 기상청

3 총 평

정책 추진여건('18년)

- (경제) 저성장·주력산업 부진, 대·중소기업간 격차 등 경제의 지속가능성 저하와 4차 산업혁명 도래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
- (사회) 저출산·고령화,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등 구조적 문제에 더하여 젠더갈등·세대갈등 심화 등의 문제 대두
- (국제) 미·중 무역갈등 심화, 미국 금리인상, 신흥국과 격차 축소 등 대외여건 불확실성 증가

주요 실적

- 전쟁위험 해소 및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기반 마련
 -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 재개,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평화·번영 시대 개막, 중재외교로 한반도 문제해결 주도
 - ▶ 남북정상간 핫라인 연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등 상시 소통체계 구축
 - ▶ 판문점선언 이행 9.19 군사분야 합의, 남북간 적대행위 중지, JSA 비무장화, DMZ 지뢰제거·감시초소 시범철수, 공동 유해발굴 등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 이행
 - ▶ 남북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 2018 아시아경기대회 공동참가 등 경제·사회분야 협력 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
 - ▶ 북미 협상 중재를 통해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 성사
- 포용적 복지 확대 및 보육·교육의 국가책임 강화
 - 아동수당 지급, 어르신기초연금·장애인연금 인상 등 맞춤형 복지 확대
 - 상복부초음파·뇌혈관 MRI 건강보험 적용, 치매국가책임제 본격 시행
 -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청년·신혼부부 등에 공공임대주택 17만호 공급 등 생애단계별·맞춤형 주거복지 강화
 -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확충, 초등돌봄 확대 등 보육·교육 부담 경감

- 일자리·사람 중심의 경제정책 본격 추진
 - 민생현장 및 사회서비스 분야 등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최저임금 인상·일자리안정자금·근로장려금 지원으로 근로소득 증대
 - 정규직 전환·상용근로자 증가 등 일자리 질 제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생활 균형 도모
 - 규제 샌드박스 도입, 데이터·AI·수소경제 투자 확대, 역대 최대 벤처투자 등을 통한 미래 신산업 기반 마련
 - 전속고발제 폐지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마련,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 카드수수료 인하,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 생계형 적합업종제도 도입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담경감 및 보호
 - 수출 6천억달러·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 경제강국 3050 클럽(인구 5천만 이상,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에 세계 7번째 진입
- 지역의 균형발전 기반마련과 농어촌 경제의 활력회복
 - 지역산업 위기지역 지원, 도시재생 뉴딜·생활SOC 등 지역 성장기반 강화
 - 시도지사 간담회 개최(‘제2국무회의’), 국가기능 지방이양, 지방재정 확충, 주민참여 확대 추진
 - 농어업 취업자 6.2만명 증가, 쌀값 회복·직불금 인상 등 농어가 소득 증대
- 미래지향적 사회통합기반 마련 및 적폐 청산
 - 과거사 진상규명,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보답을 통한 국민통합 증진
 -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등 투명한 사회 추진

보완 필요 사항

-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현장애로에 대한 대응 다소 미흡
- 일자리 창출 성과 미흡 및 상생적 노사관계 형성 미흡
- 미세먼지·생활방사능 등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 적극 해소 필요
- 권력기관 개혁, 과거사 정리, 자치분권 실현 등 주요 개혁입법 지연

4 국정목표별 평가결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 ❖ 남북관계의 전면적 개선, 군사적 긴장 완화,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 ❖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여정에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
- ❖ 굳건한 안보로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뒷받침

주요 실적

□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그간 전면 단절되었던 남북대화 재개

-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여 개회식 공동입장,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참가, 북한 응원단 파견 등 성사
- 올림픽 계기 특사단 교환으로 정상회담 개최 합의 등 평화의 초석 마련

□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대결의 역사를 평화·협력 시대로 전환

- 11년 만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남북관계 복원 및 정상화를 넘어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도약
- ① ‘판문점선언’(4.27)에서 남북관계의 전면적 개선,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전쟁위험 해소,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합의
 - * 적대행위 중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이산가족 상봉 및 교류협력 활성화 등
- ② 2차회담(5.26) 시 판문점 선언의 조속한 이행, 북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여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6.12) 여건 조성
- ③ ‘평양공동선언’(9.19)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 및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 방안에 합의
 - * △실질적 전쟁위험 제거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개최 등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 △금강산 상설면회소 개소 등 이산가족 문제 해결 △교류협력 증대 △동창리 엔진시험장 폐기 등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진전

- 판문점선언 이행 군사분야 합의*(9.19)를 통해 군사적 대결을 종식, 전쟁 없는 한반도 실현 등 평화가 일상화되도록 노력

* 적대행위 전면 중지, 비무장지대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지대화 등

□ 남북공동선언을 충실히 이행하여 교류협력, 평화·번영 가속화

- 남북 정상간 핫라인 연결(4.20), 동·서해 군 통신선 복원(7.16, 8.15),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9.14)로 365일 24시간 소통시대 개막
- (군사분야) 육해공 모든 공간에서 적대행위 중지(11.1), JSA 비무장화, DMZ 지뢰제거·감시 초소(GP) 시범철수, 화살머리고지 일대 공동 유해발굴 등으로 군사적 긴장 완화, 우발적 충돌위험 감소
- (경제분야)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12.26), 양묘장 현대화 및 산림병해충 공동대응, 한강하구 공동이용, 사상 첫 항공분야 회담을 통한 항공로 연결 논의(11.16) 등 공동번영 토대 마련
- (사회분야) 2018 아시아경기대회, 국제경기대회(농구·탁구·사격 등) 공동참가, 예술단 상호 방문공연, 만월대 공동발굴 재개, 유점사 복원 논의 등 남북간 동질성 회복 계기 확대
 - 2020 하계올림픽 공동참가, 2032 올림픽 공동개최 추진 등 합의
- (인도분야) 2년 10개월 만에 이산가족 상봉행사* 재개(8.20~26), 말라리아·결핵 등 전염병 공동대처 추진
 - * 170가족 833명 상봉, 상봉시간 확대 등 상봉방식 개선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 확보

- 세 차례 한미정상회담, 특사단 파견 등을 통해 북미간 비핵화 협상의 고비마다 적극 중재하여 비핵화 논의가 지속되도록 지원
- 중·일·러 등 주요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촉구
 - * 정상회담 횟수 : 한·중(1회), 한·일(3회), 한·러(2회), 한·일·중(1회)

- 유엔총회(9.23~26)·G20 정상회의(11.30~12.1) 등을 계기로 한반도 정책을 적극 설명하여 국제사회의 공개지지* 확보

* 4.27 남북정상회담 109개국, 9월 평양정상회담 70개국 공개지지 표명

□ 한반도 평화정착을 뒷받침하는 강한 안보·책임국방 구현

- 정예화 된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국방개혁 2.0’ 마련, 군 구조·국방운영·병영문화·방위사업 등 국방 전 분야 체질 개선 추진
 - 북핵·WMD 위협 대응 핵심 전력 적기 구축*, 상비 병력 감축·병 복무기간 단축, 군 첨단화 등 국방인력 구조개편** 추진
 - * 3,000톤급 잠수함(도산안창호함) 진수, 장거리공대지유도탄 추가 확보 등
 - ** 병력감축 : (‘18) 62만명 → (‘22) 50만명 / 병 복무기간 단축 : (‘18) 21개월 → (‘22) 18개월
 - 방위사업 투명성 강화*, 군 인권 보장을 위해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위원회’ 발족(‘18.9월) 등 추진
 - * 방위사업 중개업 등록대상 확대, 퇴직공직자 사적 접촉시 신고 의무화 등
-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작권 조기 전환 여건 조성
 - 전작권 전환 이후 주한미군 및 유엔사 유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연합방위지침’ 및 각종 전략문서*에 한미 간 합의(10.31)
 - *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수정 1호, 미래지휘구조 기록 각서 등
 -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한국군 핵심군사능력, 북핵·미사일 대응능력 확보를 차질 없이 추진 (‘18.6~10월, 한·미 공동점검)

□ 주변국과의 협력 기반 강화 및 외교지평 확장

- 한미 FTA 개정·철강관세 면제 등 한미간 호혜적 무역 기반 마련, 한중 사드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봉합하고 교류협력 정상화* 노력
 - * 한중 정상회담(11.17), '17년 대비 對 중국 수출 19.9% 증가, 중국관광객 9.4% 증가
- 일본과의 과거사는 정의의 원칙하에 다루되 미래지향적 협력은 지속, 러시아와 남북러 3각협력(철도·가스·전력), 9개 다리 사업* 등 협력 확대
 - * 9개 다리 : 조선, 향만, 북극항로, 가스, 철도, 전력, 일자리, 농업, 수산분야 협력사업

- 인도·아세안 국민 방문을 계기로 신남방 정책 본격화*,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교류 확대로 신북방 정책의 기반 조성

* (인도·아세안 실적) '17년 대비 교역 7.6% 증가, 방문객 1천만명 돌파

보완 필요 사항

□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추동력 유지 필요

- 북한 비핵화 조치* 이행 등을 위한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여부·시기 등 대외여건이 불확실
 - * 유관국 전문가 참관 하에 동창리 엔진시험장, 미사일 발사대 영구 폐기 등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지속 견인하기 위해 남북간 합의를 제도화*하고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 필요
 - *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9.11 국회제출) 국회 계류 중

□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보 노력 필요

- 남북관계 진전 성과에 비해 안보공백 우려, 속도조절론 등 각종 이슈에 대한 대국민 설명은 상대적으로 미흡
- 대북정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

□ 국방중기계획 등 수립 지연 및 대체복무 관련 갈등해소 미흡

- 한반도 전쟁위험 해소 등 급격한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20~'24 국방중기계획 마련 지연 및 전작권 전환 검증 계획 미확정
-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의 적정성,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헌법불합치 판결('18.6월) 등을 계기로 대체복무에 대한 다양한 이견 존재

□ 주변 4국과의 불확실성 상존, 신남방·신북방정책 성과 가시화 필요

-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미국의 對러 제재,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 중국의 환경문제와 불법 조업 등 주변 4국과의 관계에 갈등요인 내재
- 신남방정책은 베트남에 집중되고*, 신북방정책은 에너지·인프라 등 분야별 협력사업 구체화 부족

* 베트남 교역(아세안 중 비중) : ('16) 451억불 (37.9%) → ('17) 639억불 (42.8%)

개선·보완 방향

□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경주

- 남북공동선언과 협력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남북 간 신뢰 증진
- 남북관계 제도화를 위해 국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남북관계 진전이 북미 협상을 촉진하도록 주도적 역할 지속

□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보 및 국제사회 협력 강화

- 대북정책 추진시 남북관계에 대한 다양한 국민의견을 고려
- 한반도 구상을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유하여, 국제적인 지지 속에 한반도 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여건 조성

□ 안보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강한 군대 구축

- 국방개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여 개혁조치를 적기 추진하고, 전작권 전환 검증 계획을 조속히 확정
- 병력자원 감소, 병역의무의 형평성 등 대체복무 관련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국민이 공감하는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주변국과의 협력외교 강화 및 한반도 평화를 북방·남방으로 확장

- 미·중·일·러 등 주변국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현안을 관리하고 협력 강화
- 신북방정책을 통한 동북아 경제·안보 공동체 구축, 신남방정책을 통한 무역 다변화 적극 추진

내삶을 책임지는 국가

- ❖ 국민의 삶 전 생애에 걸쳐 국가책임을 높여 국민 모두가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
- ❖ 노동이 존중되고 성평등이 실현되는 것을 포함하여 각 영역에서 차별없는 공정사회 추구

주요 실적

□ 함께 더불어 잘 살기 위한 포용적 복지 강화

- 아동수당 신규 지급* 및 기초연금 인상**(18.9월) 등 생애 주기별 소득보장 확대
 - * 월 10만원(만 0~5세 아동, 소득하위 90% 가구) / 224만명 혜택
 - ** 월 20.9만원 → 25만원 / 507만명 혜택
- 선택진료비 폐지, 상복부 초음파 및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뇌·혈관 MRI 건강보험 적용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 * 간 초음파: 6~16만원 → 3~6만원, 뇌 MRI: 38~66만원 → 9~18만원
- 시군구별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1:1 맞춤형 관리, 치매 의료·요양비 지원 확대* 등 치매 국가책임제 본격 시행
 - * 중증치매질환자 본인부담률 인하(최대60% → 10%), 경증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 지원토록 대상 확대 등
- 장애인연금 인상* 및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마련(18.9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시행(19.7월) 준비 등 장애인 지원 강화
 - * 월 20.9만원 → 25만원 / 26만명 혜택
 - ** 복지부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예산 : ('13) 6억원 → ('18) 85억원 → ('19) 427억원

- 한부모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및 양육비 이행률 제고(32.0 → 32.3%), 다문화가족의 정착·자립 지원 확대 등 다양한 가족 지원

* ('17) 13세 미만, 연 144만원(7.5만명 혜택) → ('18) 14세 미만, 연 156만원(8.3만명 혜택)

□ 생활비 부담 경감 및 서민주거 안정

- '100원 택시' 전국 시·군 단위로 확대 추진*, 주요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취약계층 통신타임금 감면 대상 확대** 등 서민 생활비 부담 경감

* ('17) 100개 시·군, 22만명 혜택 → ('18) 126개 시·군, 33만명 혜택

** (기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확대) 만 65세 이상(기초연금 수급자)도 포함

- 생애단계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18.10월)로 59만 가구 신규지원 등 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

* ('17) 12.7만호 → ('18) 17만호(신혼부부 3만호, 청년 3.5만호, 고령자 0.9만호 등)

□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

-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 및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 음주운전 기준·처벌수위 강화 등 교통안전 제도 정비

* 교통사고 사망자 : ('17.11) 3,830명 → ('18.11) 3,443명 (10.1% 감소)

- 소방인력 충원(3,695명), 해양사고 신고 접수체계 개선 등으로 소방*·해양** 현장 대응력 강화

* 골든타임(7분)내 화재현장 도착률 : ('17) 62.8% → ('18.11) 64.6%

** 사고접수 대응시간 : ('17) 51초 → ('18) 28.5초

- 메르스* 및 가축 전염병** 등 전염병 대응체계 진전, 살생물제 사전승인제 도입 등 가습기 살균제 유사사고 재발방지 기반 마련

* 메르스 상황 : ('15) 확진 186명, 사망 38명 → ('18) 확진 1명, 사망 0명

** AI발생 건수 : ('16.11~'17.5) 383건 → ('17.11~'18.5) 22건

□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 보장을 위한 토대 구축

- 노동자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계적 시행('18.7.1~) 및 최저임금 인상폭 확대('17년 6,470원 → '18년 7,530원 → '19년 8,350원)

- 산업재해 사망자 감소* 및 위험의 외주화 금지 등 하청노동자의 산업안전 강화기반 마련(「산업안전보건법」 개정, '18.12월)
 - * △타워크레인 사망자 : ('17) 17명 → ('18) 0명
 - △산업재해 사망자 : ('17.9) 755명 → ('18.9) 730명 (3.3% 감소)
- 직장 내 괴롭힘 근절 기반 마련* 및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예술인 보험적용 추진 등 소외된 노동자의 지원 강화
 - *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18.12), 사업주의 피해자 보호조치, 신 고시 불이익 처우 금지,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대한 정부 책무 등 규정

□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충('18년 574개·501학급),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전학년 확대 추진 (당초 1~2학년) 등 보육·교육 공공성 강화
- 저소득층 초·중·고생 교육비 지원 확대*, 국·공립대 입학금 폐지 및 대학 등록금 지원 확대** 등 국가의 교육책임 확대
 - * [초] ('17) 41,200 → ('18) 116,000원 / [중·고] ('17) 95,300 → ('18) 162,000원
 - ** ('17) 58만명 → ('18) 69만명 지원
- 일반고와 외고·자사고 등의 동시 입학 실시 및 교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장공모제 확대 (신청학교의 15% → 50%)

□ 실질적 성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기반 마련

-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협의회 운영 및 주요 부처 성평등정책담당관 신설 등 성평등 총괄·협력체계 구축
- 내각의 30%이상을 여성 장관급으로 임명, 주요 관리직 여성비율 확대 등 공공부문 여성참여 제고 노력 및 여성고용률 상승*
 - * 여성고용률(15~64세) : ('14) 55% → ('17) 56.9% → ('18) 57.2%
- 디지털 성범죄·스토킹·데이트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불법촬영물 심의기간 단축(11 → 3일) 등 피해자 지원 강화
 - * 피해자 지원건수 : ('14) 93만건 → ('16) 113만건 → ('18) 140만건

□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및 한류 확산 등으로 국격 제고

- 동계올림픽 사상 최대 규모* 및 흥행, 평화·문화·ICT 올림픽 달성 등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로 국민적 자긍심 고취
 - * 올림픽 : 92개국 선수 2,920명 참가 / 패럴림픽 : 59개국 567명 참가
- 해외 한류 커뮤니티 지원 및 한국어, 한국문화 보급 다양화 등 한류 확산기반 조성으로 관련 산업 활성화* 견인
 - * '방탄소년단' 연간 5조6천억원(방한관광객 79만명 증가, 화장품 수출 4.2억달러 등) 경제효과 (현대경제연구원, '18.12)

보안 필요 사항

□ 일상과 밀접한 안전사고 발생으로 국민 불안감 심화

- 사회기반시설 안전사고의 잇따른 발생* 및 대응 미흡으로 국민 불안 가중
 - * KT 통신구 화재(11.24), 백석역 운수관 파열(12.4), 강릉역 KTX 탈선(12.8) 등
- 침대, 베개, 마스크 등에서의 생활방사선 검출 및 미세먼지 고농도 사례 빈번 발생* 등으로 국민 건강 위협
 - * △PM₁₀ 나쁨 이상 발생 : ('17) 267회 → ('18) 338회 (26.6% 증가, 잠정)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감(통계청 사회조사, '18) : 82.5%

□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현장 애로 발생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영세사업자 등의 인건비 부담 등 경영상 어려움* 발생
 - * △폐업 자영업자 수 : ('16) 90.9만명 → ('17) 90.8만명 → ('18) 100만명 이상(잠정)
△고용률 : ('17) 66.6% → ('18) 66.6% (전년과 동일)
△실업률 : ('17) 3.7% → ('18) 3.8% (전년대비 0.1%p 상승)
- IT 업종 등 집중근로 불가피 업종에서 노동시간 단축 적용 애로 호소

□ 교육 비리 및 정책 일관성 부족으로 인한 국민 신뢰 저하

- 시험문제 유출 등 학사관리 부정,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 등 잇따라 불거진 교육비리로 교육 정책 공공성·투명성 저해
- 대입입시제도 혼선, 유치원 방과후과정 영어 수업 입장 번복* 등으로 교육정책 신뢰 저하
* 영어수업 금지 발표('17.12) → 재검토 발표('18.3) → 영어수업 허용 결정('18.10)

□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정교한 관리 미흡으로 국민 갈등·불신 유발

- 온라인 혐오표현 증가 등 각종 사회이슈에 대한 젠더 갈등이 격화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선 제적 대응 부족
- 국민연금 개혁 추진 과정에서 세밀한 상황 관리 미흡 등으로 인해 기금 고갈에 따른 지급불안 우려 등 국민연금 불신 여론 형성

개선·보완 방향

□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재정비 등 국민 생활 안전 강화

- 철도·통신·전력·가스 등 사회기반시설 운영 쏠 과정에 대한 점검·시정, 비상시 안정적 대응을 위한 관리 매뉴얼 개편 등 안전관리체계 재정비
- 미세먼지 대책 발생원인별 감축효과 점검 및 국제 협력 강화, 생활방사선 제품에 대한 철저한 단계별 관리·감독 시행

□ 노동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인상 현장안착 노력 강화

- 업종특성을 고려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및 고용사정 등 경제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저임금 결정기준·결정체계 개편
- 영세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선제적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 교육정책 공정성·투명성 제고 및 소통 강화로 국민신뢰 회복

- 교육현장의 부정·비리 엄정 대응,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령 개정 조속 추진 등 교육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 주요 교육현안 관련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사전 의견수렴 등 충분한 소통을 통한 합의 도출로 정책 혼선 최소화

□ 사회적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국민 갈등·불신 해소

- 젠더갈등이 극단적 대립·혐오로 흐르지 않도록 갈등 완화 대책 마련 등 섬세한 관리 노력 강화
-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등으로 국민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제도 개선·운영으로 공감대 확산 및 신뢰 회복

더불어 잘사는 경제

- ❖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의 3대 정책기조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등 '사람중심 경제'를 본격 추진
- ❖ 우리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을 강화하여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 구축

주요 실적

□ 벤처투자 활성화·신성장동력 투자확대를 통한 혁신성장 추진

- 신규 벤처투자 3.1조원(전년대비 51% 증가), 창업 증가(9.4만개, 전년대비 4.6% 증가), 투자 회수규모 확대(2.6조원, 전년대비 60% 증가)('18.11월 기준)
- 데이터·AI·수소경제 등 플랫폼경제 인프라 구축*, 세계최초 5G 전파발신('18.12월) 등 4차 산업혁명 대응 기반 마련

* 플랫폼경제 및 자율차·드론 등 선도사업분야 '18년 3.0조원, '19년 5.1조원 투자

- 신산업·신기술분야의 신속한 시장출시와 성장 지원을 위해 일정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 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 「산업융합촉진법」·「정보통신융합법」('19.1 시행), 「금융혁신지원특별법」·「규제자유특구법」('19.4 시행)

□ 과학기술분야 성과 창출 및 친환경 미래에너지산업 육성

- 국가 R&D 확대('19년 20.5조원, 0.8조원 증가) 및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의장 국무총리) 복원, 한국형 우주발사체 시험발사 성공('18.11월)

- 민간·공공기관 프로젝트, 국민참여형 발전사업 등으로 재생에너지 확산* 및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

*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4GW) 및 공기업·민간기업 134개 프로젝트(24.9GW) 추진, 한국형 고정가격계약제·농지보전부담금 감면(50%) 등 재생에너지 설비 2.99GW 보급

** (전기차)'18년 3.1만대('17년 누적 2.5만대) / (수소차)'18년 712대('17년 누적 177대)

□ 수출·국민소득 등 거시경제의 성과 창출

- 신남방·신북방 경제협력을 통한 교역 다변화 및 수출 품목다양화로 사상 최초 연간 수출 6,000억 달러 및 2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달성

* '18년 수출증가율(전년대비) : 아세안 5.3%, 러시아·CIS 등 17.7% / 반도체·일반기계·석유화학 최대 수출실적 성과 및 전기차·첨단신소재 등 8대 신산업분야 수출 6.9% 증가

- 외국인투자 4년 연속 200억 달러 이상 달성, 국민소득 3만 달러·인구 5천만이 넘는 경제 강국 3050클럽에 세계 7번째 진입 등 거시부문의 성과 창출

□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및 대·중소기업간 상생 정책 추진

- 하도급·가맹·유통 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 및 대기업집단 순환출자를 축소하고,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추진

* 하도급 불공정거래 개선 응답비율(하도급업체 9.5만개 대상 실태조사결과, '18.11) : ('17) 86.9% → ('18) 94.0%

-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하고,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통한 영세 업종에 대기업 진출 금지제도 마련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18.6)

□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경감 및 재기지원

-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연장(5 → 10년), 유류세 15% 한시 인하,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 확대**
 - * 우대 수수료를 적용 확대 및 부과방식 개선(정액→정률제), 수수료 상한인하(2.5→2.3%) 등
 - ** 소진기금 저금리 융자지원(2.1조원), 초저금리 대출프로그램(1조원), 지역신보 특례보증(1조원) 등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근로장려금(EITC),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 * '18.12월말 기준 2.5조원 집행(예산액 대비 84.5%), 66만개 사업체, 264만명 근로자 고용안정 기여
- 정책금융기관 연대보증 전면 폐지, 장기소액 연체채무자 신용회복 지원*, 영세자영업자 소액 체납세금 면제 등 경제적 재기지원
 - * 소멸시효 완성채권 332만건(32.7조원) 소각, 장기소액연체자 채무면제·추심중단·채무감면(32.8만명) 및 연대보증채무 일괄 면제(25.1만명) ('18.9 기준, 누적치)

□ 일자리 지원 강화로 고용창출의 버팀목 역할 수행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등 청년일자리 지원 및 지역산업 맞춤형 사업 추진**으로 일자리 창출 지원 강화
 - * 청년추가 고용시 1인당 지원금액 상향(667 → 900만원) 및 지원대상 업종 확대(성장유망업종 → 전체업종), 내일채움공제 3년형(3,000만원) 신설 등
 - ** 16개 시도의 25개 혁신프로젝트, 159개 지자체의 314개 일자리사업 추진
- 정부·공공기관 비정규직 10.3만명 전환 결정 완료, 현장민생 및 사회서비스 분야 등 공공일자리* 지속 충원
 - * 소방·경찰 등 현장민생공무원 2.4만명 충원 및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인력, 장애인 활동보조인,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2.3만명 충원 확정('18.12 기준)

보완 필요 사항

□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의 현장체감 성과 부족

- 최저임금 인상·임차료 등 비용부담, 중장년층 위주의 생계형 업종진입에 따른 영세·과밀화 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어려움 가중
 - * 자영업자 평균연령 53.2세 / 도·소매업, 숙박·음식업이 전체 자영업자 중 31.8% 차지
- 그간 여러차례 소상공인·자영업 대책을 통한 시급한 애로해소 등의 성과는 있었으나, 현장의 성과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상황
 - * 폐업 자영업자 수(만명) : ('16) 90.9 → ('17) 90.8 → ('18) 100 이상(잠정)
 - ** 자영업가구의 월평균 소득 492만원(상용근로자 가구의 81% 수준, '18.3분기)

□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의 생산과 투자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제 조업 중심지역의 어려움이 가중
 - * 조선기자재 밀집지역 산단 가동률('18.7) : 녹산(부산) 61.8%, 대불(전남) 64.8%
 - ** 군산시 광·제조업 취업자수(천명) : ('17.상) 28.7 → ('18.상) 25.1 (3.6천명·12.5% 감소)

□ 4차 산업혁명 등 미래대비를 위한 정책적 대응 부족

- 전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나, 관련 기술·인력수준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
 - * 4차 산업혁명 경쟁력 순위(무역협회, '17.12) : (싱)1위 (미)3위 (독)13위 (일)15위 (한)19위
 - ** AI·클라우드·빅데이터 등 인력 '18~'22년 약 3.2만 명 부족 전망('18, SW정책연)
- 이해관계자 갈등 등으로 미래 혁신선도 산업 분야의 성장기반 및 인프라 확충의 어려움
 - * 카풀 관련 택시업계 반발로 플랫폼 교통서비스 활성화 지연 / 수소차·연료전지 상용화 기술에도 불구하고, 생산·운송·이용 인프라 등의 생태계 조성은 미흡

□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 지원

-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 사회적경제 사업분야 다양화 및 금융·판로개척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지원*

* 사회적경제 3법안(「사회적경제기본법」·「사회적가치실현법」·「사회적경제판로지원특별법」) 국회 계류

개선·보완 방향

□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의 실질적 성과 창출

- 제로페이 확대시행,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근로장려금 확대 등 '19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대책의 차질없는 이행과 가시적 성과 도출
- '자영업 종합대책' 등 기 발표된 정책의 주기적인 추진상황 점검과 철저한 집행 관리, 필요한 입법조치의 신속한 이행 필요

□ 주력산업 경쟁력강화 및 지역경제회복을 통한 제조업 혁신

- 스마트 산단 구축 등 생산시스템 혁신 추진,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규제혁신을 통한 신산업 전환 등 제조업 혁신 가속화
- 노·사간, 대·중소간, 지자체·중앙간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지역일자리창출, 신산업 전환, 기업 유치 등 지역제조업의 활력회복

□ 신산업 규제혁신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및 혁신인력 양성

- 다양한 형태의 공유경제를 확대하고, 미래차·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 핵심규제 혁신을 위해 이해관계자 설득 및 상생방안 마련
- 미래변화·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체계 마련, 대학교육·연구 혁신, 해외우수인재 유치 등 종합적인 인재확보정책 추진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립

- 多부처·개별법으로 분산되어 있는 사회적경제 정책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한 사회적경제 3법 제정의 입법논의 가속화 필요
- 입법 전이라도 중장기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사회가치연대기금 출범, 홍보 강화, 지역사회 참여활성화 방안 등 제도적 기반 마련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 ❖ 획기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 분권을 통해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주민참여 확대로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
- ❖ 골고루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고, 살기 좋은 농산어촌 조성

주요 실적

□ 연방제에 준하는 자치분권 및 주민참여 기반 마련

- ‘제2국무회의’로서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간담회 정례화, 자치분권위원회 설립(18.3월), ‘자치분권 종합계획’* 발표(18.9월)를 통해 자치분권 방향 정립
 - *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등 6대 분야, 주민참여권 보장, 중앙-자치단체 간 사무 재배분 등 33개 과제
- 부단체장 설치 자율성 강화 등 자치분권 제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기능중심의 포괄적 사무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추진
 - * 주민 참여권 확대, 사무배분원칙 확립, 조직운영 자율성 확대 등
 - ** 19개 부처 571개 사무이양을 위한 66개 법률 일괄개정
- 주민소환 개표 요건 폐지, 주민조례발안제도 도입 등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 개정 추진

□ 지방재정 자립기준 마련 및 건전성 강화

- '22년까지 국세-지방세 비율 7:3 목표 설정 및 '20년까지 지방소비세율 10%p 인상, 3.5조원 규모 기능 이양 추진 ('재정분권 추진방안' 발표, '18.10월)
- 예산 초과정 주민참여 확대, 주민참여 예산기구 마련 등 재정운용의 투명성 강화 ('지방재정법' 개정, '18.3월)
-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및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으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 지방예산낭비신고 : ('16) 165억원 → ('17) 106억원 → ('18) 411억원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성장기반 마련

- 국가균형발전에 긴요한 공공인프라 사업 예비타당성 면제로 조기 착공 추진, 국가균형발전 위원회 컨트롤타워 역할강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18. 3월)
-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14개 시·도)으로 혁신도시·산업단지·대학 등 지역 혁신역량을 집중 하고, 기업·인재 등 혁신도시 성장기반 확충*
* 혁신도시에 691개 기업 입주,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비율 23.9% ('18.11)
- 도시재생 뉴딜사업 99곳 선정 및 특별재생지역 지정*,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하여 도서관·체육관 등 495개의 생활밀착형 SOC 사업 추진
* 「도시재생특별법」을 개정('18.4), 포항 흥해읍 지진피해 지역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18.11)하여 주거안정·다목적 스마트 대피소·문화공간 조성 등 지원
- 조선·자동차 등 지역산업 위기지역 6곳을 지정하여 자금·사업다각화 지원, 해양진흥공사를 통해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 발주(3.1조원 규모) 지원
-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18.9월)하여 공공주도 매립사업 추진체계 마련,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등 새만금개발 가속화

□ 살기 좋은 농산어촌 조성

- 쌀값 상승*, 쌀·수산 직불금 단가 인상** 등으로 농어가 소득 증대, 재해복구비 인상*** 및 보장성 강화로 소득안전망 확충

- * 쌀값 (원/80kg) : ('17.12) 155,579 → ('18.12) 193,376 (24% 상승)
- ** 직불금(밭, 수산) : ('17) 45만원/ha, 55만원/가구 → ('18) 50만원/ha, 60만원/가구
- *** 재해복구비(천원/ha) : (농약비용) 302 → 1,676, (파종비용) 2,968 → 4,103
- '100원 택시' 등 농촌 교통모델 확대(39개소 → 87개소), 낙후된 소규모 항·포구선착장 정비 등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으로 농어촌 생활 인프라 개선
- 조류독감(AI) 발생건수 전년대비 94% 감소* 등 가축전염병 최소화, 스마트 팜·양식장 등 농어업 혁신성장 추진
 - * AI 발생 건수 : ('16.11~'17.5) 383건 → ('17.11~'18.5) 22건 (94% 감소)
- 청년층 포함 농림어업 분야 취업자수 전년 대비 6.2만명 증가
- 경제수종 조림(2.2만ha) 및 숲가꾸기(20.9만ha) 등을 통한 산림의 경제적 가치 증대(9,100억원), 나무의사·목재등급평가사 등 산림 일자리 신설

보완 필요 사항

□ 자치분권 및 주민참여 실효성 제고 필요

-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자치입법은 주민직접발안제도만 도입, 자치복지는 부재하여 4대 지방 자치권* 보장에는 한계
 - * 4대 지방자치권 : 자치입법, 자치행정, 자치재정, 자치복지
- 조례제정·개폐 청구 시 오프라인 서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서명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활용 저조 (8.6%)

□ 지방재정 확대를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 지연

- '재정분권 추진방안'으로 국세-지방세 구조개편 방향 및 기능이양 규모('20년 3.5조원)는 제시했으나, 기능이양 대상 및 실행방안은 미비

□ 혁신도시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성과 가시화 필요

- 혁신도시 클러스터 내에 기업 입주 비율이 저조*하여 혁신·창업 생태계 경쟁력 저하 우려
 - * 기업입주율(%) : (전국평균) 20.3, (경북) 9.8, (충북) 7.3, (강원) 5.6 등
-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많은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어 사업성과에 대한 지역 주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
 - * 지자체 사업신청 및 공사 시작(1~2년) → 완공(4~5년 이상)

□ 농정 제도·시스템에 대한 농가와 소통 부족

- 직불금 제도가 쌀*·대농** 중심으로 운영되어 농가의 소득안정 효과와 공익적 기능 미흡
 - * 직불금 쌀 비중(%) : ('14) 69.8 → ('15) 77.3 → ('16) 80.7 → ('17) 80.7
 - ** 면적별 농가/직불금 비중(%) : (1ha이하) 71.6 / 28.8, (10ha이상) 0.7 / 9.8
- 스마트농정 사업 추진 시 농가의 다양한 이해관계* 고려 부족
 - * 지역내 부지선정, 소농 경쟁력 저하, 기존 농민의 IT기술 접근성 등 문제

개선·보완 방향

□ 자치분권 및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조기 확립

-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 실질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주민투표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등 조속한 개정
- 온라인 주민참여조례시스템 사용자 편의성 제고 및 홍보 강화로 주민참여 활성화 필요

□ 지방재정 자주역량 제고 필요

-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지방재정 확충 2단계 방안 논의, 지방이양 사무 확정 등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구체적 후속 조치 필요
- 지자체 새로운 세원 발굴, 체납징수율 제고 등을 지속 추진하여 지방재정 건전성 회복
- 지방세의 수입 등 지방재정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및 시스템 구축 등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 참여 및 모니터링 강화

□ 지역 균형발전사업 내실화 필요

- 혁신기업 참여확대, 창업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 혁신거점으로서 혁신도시 클러스터 기능 강화
-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행정절차 단축 등 사업 추진방식을 개선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여 지역 주민의 성과 체감도 제고

□ 농가 참여와 소통을 통한 농정 제도개선 추진

- 소농에 대한 배려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직불제 합리적 개편 등 농정 제도 개선
- 농축산물 생산·수급 효율 제고를 위한 스마트농정 사업을 농가와 적극적인 소통에 기반하여 추진

국민이 주인인 정부

- ❖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따르는 제도·관행의 개선, 반부패·권력기관 개혁 등 추진으로 국민주권 실현 기반 마련
- ❖ 과거사 진상규명 및 배·보상, 국가헌신에 대한 보답 등을 통한 국민통합 추진

주요 실적

□ 잘못된 제도와 관행 개선 및 부패 예방·감시체계 강화

- 국정농단 재발방지와 부패 예방을 위한 공공·민간 분야 반부패 중장기로드맵* 마련 및 민관 협력형 반부패 거버넌스** 구축
 - *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마련('18.4,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
 - ** 시민사회·언론 등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출범('18.3)

- 부처별 TF 활동을 통해 적폐를 청산*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문화 등 생활적폐 청산** 본격 추진
 - *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발표('18.2), 경찰 인권영향평가제 도입('18.6) 등
 - ** 출발선에서의 불평등, 우월적 지위 남용, 권력유착 및 사익편취 등 3개 분야에서 '생활적폐 9대 과제' 선정('18.11,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
- 공직자의 사익추구행위를 제도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이해충돌 방지제도 도입,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등 공직윤리 강화*
 - * 사적 이해관계 신고, 민간인에 대한 알선·청탁 금지 등('18.1,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전수조사* 및 후속조치(연루 임직원 기소(6건)·수사중(31건)·징계(292명)), 피해자 구제(240명) 등 추진
 - * 총 1,190개 공공기관·단체 중 946개에서 4,788건 적발, 82건 수사의뢰·255건 징계 요구

□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 국민의 안전·인권 보호를 위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 도출('18.6월) 및 제도개선 추진
 - * 경찰의 1차수사권·수사종결권 인정, 검찰에 보완수사·시정조치 요구 등 사법통제권 부여 등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검·경 개혁 추진
 - *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발표('18.11, 자치분권위원회), 제주 자치경찰 시범운영 확대

□ 피해자 중심의 과거사문제 해결 노력 및 국민 인권보호 강화

- 5·18 민주화운동*, 제주 4·3**, 형제복지원 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 추진을 통한 명예회복 및 배·보상 추진
 - * 5·18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18.2),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18.3) 등
 - ** 4·3 희생자 21,000여 명 추가신고 접수('18.1~12), 70주년 기념사업 추진 등
 - *** 형제복지원 사건 대법원 비상상고('18.11) 및 검찰총장 사과('18.11)
- 인권보호 및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을 위한 민주인권기념관 개관(舊남영동 대공분실) 추진 등 과거 국가권력에 대한 반성과 치유 노력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18.8월), 국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권리와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등 새로운 국가 인권정책 방향 제시

□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보답을 통해 국민통합 증진

- 보훈보상금 및 수당 인상*,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신설, 참전유공자 진료비 감면율 확대(60% → 90%) 등 예우·지원 강화
 - * '18년 보훈보상금 5% 인상, 참전명예수당·무공명예수당 월 8만원 인상 등
- 독립유공자 발굴·포상 확대*,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등을 통한 독립정신 계승 및 확산 노력
 - * 여성 독립운동가 202명 발굴, 독립유공자 포상 355명 (전년대비 86명 증가)
 - **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출범('18.7) 및 '100주년 기념사업 종합계획' 확정('18.12)

□ 국민 참여와 소통을 통한 정부혁신 추진

- 국민이 참여하는 자율적·상향식 정부혁신*, 국민편의를 제고하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혁신** 등 추진
 - *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수립('18.3), 민관합동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출범('18.10) 등
 - ** 공공자원 및 공공데이터 개방·공유 확대, 조례 제정 등 청구시 온라인 서명제, 온라인 출생신고제 등
- 국민과의 정책소통 공간인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 운영, 생활밀착형 사업·취약계층 지원 사업 중심으로 '국민참여예산제' 도입** 등
 - * 정책제안 72건 발굴, 모바일 자진신고로 통관절차 간소화 등 45개 과제 정책 반영
 - ** 생활밀착형 사업과 취약계층 지원사업 중심으로 38개 사업 928억원 반영('19년 집행)

□ 국민주권적 개헌 추진

- 민주정치 발전과 지방분권을 지향하고 새로운 국민주권 시대를 설계하기 위한 정부 개헌안* 발의('18.3월), 표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18.5월)
 - * 대통령 결선투표제 등 국민주권 실질화, 안전권 등 기본권 확대, 자치입법권 등 자치분권 강화 등

보완 필요 사항

□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 추진 지연

-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를 통해 방향성은 결정되었으나, 검·경 간 이견* 등 구체적 제도시행을 위한 후속논의 지연
 - * (검찰) 경찰의 사법적 통제 필요, (경찰)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자치경찰제 도입,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등 권력기관 개혁방안 ('18.1월) 실현을 위한 주요 입법* 지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치경찰법」, 「국가정보원법」 등

□ 과거사 문제 진상규명 등 해결 지연

- 진실규명 범위 등 일부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과거사 문제의 해결기반 마련 지연

*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재개를 통해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 등 해결되지 못한 과거사 문제들에 대한 포괄적 진상규명 체계 마련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3.13)에 따른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 지연

* 국회가 추천하는 9명(국회의장 1명, 여·야 각 4명)을 대통령이 임명(법 제7조 제2항)

□ 공공부문 채용·재취업 관련 비리 지속

-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이후에도 고용세습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 지속 제기
- 일부 부처 공직자의 부당한 재취업 의혹으로 취업제한 제도 및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제도 전반에 대한 실효성 의문 제기

개선·보완 방향

□ 권력기관 개혁 방안에 대한 신속한 제도화 추진

- (검·경 수사권 조정) 검·경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의 근본 취지를 반영한 법령 등 후속조치 마련 노력 필요
- (자치경찰제) 관련 법령 제·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시범운영(제주) 경험을 바탕으로 성과·보완방향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활용
- (공수처·국정원) 국회 사법개혁특위 논의 적극 지원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입법조치 신속 추진

□ 과거사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공감대 형성 필요

-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 등 과거사 문제 진상규명을 위해 대국민 홍보, 세미나 등을 통한 공감대 확산 필요
-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설득하여 위원회 조속 구성 노력

□ 기회균등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 채용비리 등 근절 필요

- 내부고발 활성화, 기관장 책임 강화, 채용과정·절차의 투명성 제고 등 철저한 채용비리 근절 방안 마련
- 퇴직공직자 재취업 실태 및 취업제한제도의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업무관련성 기준 등 문제점 보완

사람중심 일자리

- ❖ 사람중심 경제의 실현 기반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 ❖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및 일자리 질 개선 추진

주요 실적

□ 일자리 창출 인프라 강화

- 일·생활이 균형된 삶을 위해 '18년 최저임금 7,530원 시행('17년 6,470원 대비 16.5% 증가) 및 '19년 8,350원 결정, 주 최대 근로시간 단축*(68 → 52시간) 시행
 - * 「근로기준법」 개정('18.3) : 300인 이상 사업장('18.7~), 특례업종 축소(26 → 5개) 등
- 일자리사업 예산* 확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세제지원 및 근로장려금 확대**, 정책금융기관 연대보증 폐지 등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강화
 -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 ('17) 17.1조원 → ('18) 19.2조원 → ('19) 22.9조원
 - ** 지원대상, 지급금액 : (기존) 166만 가구, 1.2조원 → (개편) 334만 가구, 4.9조원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증가폭 확대*, 위험의 외주화 방지**, 화물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화물차 안전운임제 도입*** 등 일자리 안전망 구축
 - * ('17.12) 30만 6천명 → ('18.12) 47만 2천명 (전년동월대비)
 - ** 「산업안전보건법」('18.12, '20~)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18.4, '20~)

□ 청년·여성·신중년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 확대

- 청년일자리 대책 추진('18.3월~), 청년 채용 중소기업 및 취업 청년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으로 청년 고용률 상승·실업률 하락**
 - * 청년추가고용장려금(4.5→9만명, 전체업종), 청년내일채움공제(신규취업자 대상 3년형 신설), 청년구직촉진수당(30만원·3개월) 등
 - ** 청년고용률 : ('17) 42.1% → ('18) 42.7% / 청년실업률 : ('17) 9.8% → ('18) 9.5%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상한액 인상(150 → 200만원), 「남녀고용평등법」 전사업장 적용('19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확대('19년~)* 등 여성의 사회활동 촉진**
 - * 공공기관, 500명 이상 고용기업 등 → 공시대상 기업집단 중 300명 이상 고용기업 추가
 - ** 여성경제활동참가율·고용률(15~64세) : ('17) 59%·56.9% → ('18) 59.4%·57.2%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시행·연령별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등 신중년 인생3모작 지원 강화, 노인 일자리 지원 확대('17년 49.2 → '18년 54.4만명)

□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 경찰·소방·복지분야 등 부족한 현장민생공무원 확충을 위해 국가직 1.3만명*, 지방직 1.1만명** 충원, 효율적 재배치 추진
 - * 경찰 0.3만명, 교원 0.3만명, 군부사관 0.3만명, 생활안전 0.4만명
 - ** 소방 0.4만명, 사회복지 0.1만명, 생활안전 0.6만명
- 국민수요가 많은 보육·요양·보건의료분야 등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2.3만개* 창출로 돌봄서비스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 장애인활동보조인,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1단계('17~'20년, 20.5만명)계획*에 맞춰 전환 인원 10.3만명 결정**, 2단계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전환 추진
 - * (1단계) 중앙·지자체, 공공기관 등 → (2단계) 지자체 출연기관, 공공기관 자회사 등 → (3단계) 민간위탁기관
 - ** '18.12 현재까지 17.2만명 전환결정 ('17년 6.9만명, '18년 10.3만명)

□ 산업경쟁력 제고·혁신성장 등 미래 지속가능 일자리 지원

- 규제 샌드박스제도 도입* 및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세계최초 5G 전파 발신('18.12월), AI R&D 투자(2,700억원) 확대 등 미래 신산업 육성 기반 마련
 - * 「산업융합촉진법」·「정보통신융합법」('19.1~), 「금융혁신지원특별법」·「지역특구법」('19.4~)
 - ** 인터넷 전문은행 자본 보유한도 확대(4 → 34%), 유인드론 시범비행 허용('19.1~) 등
- 역대 최대 신규 벤처투자* 달성, 창업-성장-재도전 단계별 중소기업 자금 지원(4.4조원) 등 창업생태계 조성으로 신설법인 수 증가**
 - * 신규 벤처 투자 : ('16) 2.2조 → ('17) 2.4조 → ('18.11) 3.1조
 - ** 신설법인 수 : ('16) 9.6만개 → ('17) 9.8만개 → ('18) 10만개 (잠정)
- 제조업 혁신전략*('18.12월)을 마련, 반도체, 부품·소재 등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추진, 스마트공장 확산**으로 제조현장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역량 강화
 - * 반도체특화클러스터 조성, 소재·부품·장비 R&D 투자확대(연 1조원) 등
 - ** 스마트 공장 : ('17) 5,003개 → ('18) 7,427개
- 4차 산업혁명 대비 신기술분야 교육훈련 확대*, 한국형 온라인 강좌(K-MOOC)** 확충('17년 324개 → '18년 510개) 등 혁신형 인적자원 육성
 - * 관련분야 학과 신설(폴리텍 대학), 선도인력 양성 44개 과정선정·실시(서울대 등)
 - ** 로봇공학, 빅 데이터, 스마트 카, 블록체인, 클라우드 등

보완 필요 사항

□ 가시적인 일자리 성과 부족, 국민의 기대에 미달

- 범정부적 일자리 창출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용률 66.6%(15~64세, '18년)로 전년 동일 수준, 실업률 3.8%('18년)로 전년대비 상승*
 - * 고용률·실업률 : ('16) 66.1%·3.7% → ('17) 66.6%·3.7% → ('18) 66.6%·3.8%
- 취약계층 지원·공공서비스 맞춤형 일자리(5.9만개) 추진('18.10월~) 관련, 초단기 공공근로* 라는 비판 제기
 - * 직장체험형 단기인턴(1박2일) 채용, 길안내를 담당하는 체험형 인턴(3개월) 채용 등

□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포용적 노동정책의 현장 안착 미흡

-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의 경영악화, 고용위축 등 부작용 발생 논란* 심화, 현장의 충격완화 방안 요구 지속
 - * 폐업자 증가, 특정 업종의 신제품·신기술 개발을 위한 집중근무 제한 등

□ 청년고용 체감 부진 및 여성의 경력단절 심화

- 현재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15~64세)보다 높으며, 특히 청년층이 체감하는 실업률**도 여전히 높은 상황
 - * 청년실업률·전체실업률 : ('18) 9.5%·3.8%
 - ** 청년확장실업률(잠재경제활동인구 등 포함) : ('17) 22.7% → ('18) 22.8%
- 시간제 일자리 감소 등의 영향으로 경력단절 후 재취업한 여성 수가 감소, 경력단절여성*이 전년대비 증가
 - * ('16) 192.4만명 → ('17) 183.1만명 → ('18) 184.7만명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정에 대한 신뢰 저하

- 자회사를 통한 간접고용 등 전환방식 관련 갈등 발생, 기존 정규직 직원과의 노노 갈등, 신규 공개채용 감소의 역차별 우려 제기

□ 상생의 노사 소통·협의 기능 약화

- 노사정 합의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이 전부 개정·시행('18.9월) 되었으나, 민주노총 참여 없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18.11월)
-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는 협의 주체간 이견으로 합의 지연

개선·보완 방향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성과 창출에 총력

- 고용시장 활력 회복, 국민고통 해소를 위해 모든 일자리 정책의 강도와 추진속도를 높이고 추가·보완대책도 적극 마련·추진
- 고용 위기상황 타개를 위한 공공일자리 확충이 실수요와 적절히 연계되는지 면밀히 점검, 민간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 강화

□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의 현장 연착륙 촉진

- 최저임금 결정방식과 탄력근로시간제 조정 등 관련 이슈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조속한 현장 안착 추진

□ 청년·여성 일자리 확대 및 구직여건 개선

- 산업·교육·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 노력과 함께, 기업·지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청년 일자리 지원대책의 실효성 제고
- 경력단절 예방조치 강화,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복귀에 적합한 근로방식 다양화, 여성 창업지원 강화 등 재취업 발판 확대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이행의 형평성 제고

- 정규직 전환대상자 등과 지속적인 대화·협력 강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정비 등을 통해 공정한 기회 보장

□ 포용적 노사관계 구축 노력 강화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온전한 구성과 소통체계 정립으로 사회적 대타협 이슈에 대한 원활한 합의 추진
- 새로운 노사상생형 모델(광주형 일자리 등) 성공 사례 창출, 타 산업·지역으로의 확산 노력

2. 규제혁신

1 평가 개요

□ 평가목적

- 중앙행정기관의 규제혁신 노력과 성과를 점검·평가하여 규제혁신의 실효성 확보 및 국민 체감도 제고

□ 평가대상

- 29개 중앙행정기관

구분	기관명 (직제순)
장관급 (19개)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방통위, 공정위, 금융위, 보호처
차관급 (10개)	식약처, 관세청, 조달청, 병무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진청, 산림청, 특허청

* '18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상 과제수가 2개 이하인 14개 부처는 제외

□ 평가방법

- 평가의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규제혁신 평가단'*을 구성, 분야별 노력도 등 정성평가 실시

* 평가위원 :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규제관련 민간전문가 등

- 평가지표 특성에 따라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병행

* 규제정비(60%), 규제심사(20%), 규제혁신 체감도 노력(20%) 등

□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규제정비 (60)	기존규제 정비	• 규제정비 종합계획 과제 등 정비	10
		• 규제개혁신문고 건의 처리 실적	10
		• 현장 규제애로 개선 실적	5
	신산업 관련 과제 정비	• 네거티브 규제전환 및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실적	10
		• 신산업 규제애로 수용·이행 실적	10
일자리 창출 규제 정비	• 일자리 창출 규제개선 과제 수용 및 이행실적 등	15	
규제심사 (20)	규제심사절차 준수도	• 규제심사절차 준수 및 규제영향분석 등	15
	일몰규제 정비	• 재검도형 일몰규제 정비 및 일몰규제등록 실적	5
규제혁신 체감도 (20)	규제혁신 만족도	• 규제혁신 만족도 조사	10
	규제혁신 국민소통 실적	• 규제혁신 관련 언론소통·현장행보 등	10
기타 (+5)	가점	• 규제개혁 교육	+3
		• 적극행정 노력도	+2

2 평가 등급

* 각 등급 내 기관명은 직제순으로 표기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우수	과기정통부, 행안부,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식약처, 관세청, 산림청
보통	기재부, 법무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고용부, 여가부, 해수부, 중기부, 보훈처, 방통위	특허청, 병무청, 경찰청, 문화재청, 농진청
미흡	교육부, 공정위, 금융위	조달청, 소방청

3 총 평

□ 주요 성과

- 선제적 규제혁신으로 신산업·신기술 육성 적극 지원
 - '先허용·後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환*하고, 규제혁신법 입법**을 통해 신제품의 조속한 시장출시를 허용해 주는 획기적 제도인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
 -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18.1·10), 신산업 현장애로 해소('18.1·11), 혁신성장 선도사업('18.1),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구축·발표('18.11) 등
 - **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지역특구법」 입법 완료
 - *** 일정조건 하에서 규제를 면제·유예 (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 대통령 주재 회의를 통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Big Issue' 해결*
 - * 의료기기('18.7), 인터넷전문은행('18.8), 데이터규제('18.8) 등
- 창업·진입·입지 등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혁신*, 일자리 창출 유도
 - * 영업·입지규제('18.4), 창업규제('18.10), 시장진입규제('18.10) 등
 - 동일한 규제라도 상대적으로 부담을 크게 느끼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규제를 차등적용하는 제도* 도입·시행
 - *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시행('18.10) 및 매뉴얼 배포·교육
- 국민과 기업들의 규제 관련 불편·불만사항을 현장 소통* 및 온라인으로 상시 접수·해결**
 - * (현장소통) 국무총리 주재 규제혁신 현장대화, 지역간담회 등 추진
 - ** (규제개혁신문고) 인터넷으로 국민견의를 접수, 201건 개선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과 합동조직으로 153건 개선
 - 민생불편·부담을 초래하는 규제를 테마별로 혁신*, 체감도 제고
 - * 온라인 전자문서 규제혁신('18.5), 시험·검사기관 규제('18.6), 지자체 건의 해소('18.12) 등
- 공무원의 의식·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행정 유도조치 마련·시행*
 - * 적극행정 면책 및 사전컨설팅 감사, 신산업 분야 감사자제,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등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신산업, 일자리, 민생분야 등의 규제혁신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업의 규제혁신 체감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
- ⇒ △접근방법 다양화 △규제혁신 성과 창출·확산 △공무원 의식·행태 개선 가속화로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 필요

4 분야별 평가결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

주요 실적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 및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

- 신제품·서비스의 시장출시를 ‘先허용-後규제’하는 방식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 전환
 - * △포괄적 개념정의 △유연한 분류체계 △네거티브 리스트 △사후 평가관리 등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과제 103건 발표('18.1·10)
-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을 위해 규제혁신 5법*을 마련, 4개 법안 국회 통과('18.9·12월)
 - * 「행정규제기본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지역특구법」 핵심제도 : 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구축·발표('18.11월), 다른 핵심 신산업 분야(드론, 전기차, 수소차 등)로 확산 추진중
 - * 관·산·학·연 융합연구를 통해 신산업의 미래 발전단계를 미리 예측, 선제적으로 예상규제 및 규제혁파 로드맵 작성, 신제품 관련 기업들에게 제공

□ 'Big Issue' 및 신산업 현장애로 해소

-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현장방문행사·회의*를 통해 신산업 육성 및 사회적 파급효과가 높은 'Big Issue' 해결
 - * 의료기기('18.7), 인터넷전문은행('18.8), 데이터규제('18.8) 등
- 신산업 업계와 현장간담회(22회)를 통해 수소차·전기차, 드론 등 핵심테마 중심으로 현장애로 과제 집중 발굴·해소('18.1·11월, 171건)

개선·보완 방향

- 신산업 육성을 위한 획기적인 시스템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 도입과 규제샌드박스 제도 등 기반 구축을 토대로, 신산업분야에서 구체적인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확산할 필요

일자리 창출 분야 규제혁신

주요 실적

- 창업·영업활동 규제 등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 혁신
 - 영업요건 완화, 영업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등 영업·입지규제 개선과제 발표('18.4월, 38건)
 - * (주요사례) 산단내 산업시설용지에 신규업종 입주 허용, 시설경비업 인력 기준 완화(20명 → 5명 이상) 등
 - 창업규제 전수조사를 통해 ①다양한 분야에서 ②누구나 ③1인 또는 소규모로 ④쉽게 창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선과제 발표('18.10월, 105건)
 - * ① 창업업종 신설 ② 창업자격 완화 ③ 자본금·시설·인력 요건 완화 ④ 창업절차·입지 개선
 - 사회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시장진입과 영업활동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규제 개선('18.10월, 40건)
 - * (주요사례) 항공운송사업자 면허기준 완화("과당경쟁 우려" 삭제), 통신판매업(온라인쇼핑몰) 신고제 폐지 등
 - 신산업 분야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지원, 규제개선과제 발굴
 - * (주요사례) 수소차충전소 관련 단계별(생산, 운송, 충전소 설치·운영 등) 규제 일괄 개선, 전기 신산업을 신설하여 1MW 이하 소규모 전력중개거래 허용 등

□ 중소기업 규제부담 경감

- 규제신설·강화시 규제부담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영세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규제 차등화제도* 도입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시행, '18.10월)
 - * △(내용 차등화)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유예 △(시기·주기 차등화) 규제의 적용시점·주기·횟수 완화 △(순응확보 차등화) 지도·조사·감독·제재 완화 등

개선·보완 방향

- 어려운 경제·고용상황을 감안,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서비스산업(관광, 보건, 콘텐츠 등)과 기존 주력산업 규제혁신에 더욱 집중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과도한 기존규제도 발굴·혁파할 필요

민생불편·부담 분야 규제혁신

주요 실적

- 국민과 기업의 불편·불만사항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상시 접수·해결
 - 국무총리 주재 규제혁신 현장대화(2차례) 및 국무조정실 주관 지역간담회(5차례) 등을 통해 발굴한 현장건의과제 해결
 - 인터넷 규제혁신문고 운영을 통해 규제개선 (201건)
 - * (주요사례) 한옥체험시설에 대해 숙박업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선(위생·안전규정 별도 도입), 이·미용실에서 이·미용사 면허소지자 외에도 '머리감기' 가능

□ 국민불편과 기업활동 부담 규제들을 테마별로 발굴하여 혁파

- 행정서비스·영업 전반의 온라인·전자문서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 발굴('18.5월, 113건)
 - * (주요사례) 온라인 민원처리·교육·시험접수 확대, 정부 예산·기금 관련 영수증(4,800여만건) 종이문서 보관의무 폐지 등
- 정부인증을 받고자 시험·검사기관을 이용하는 중·소상공인 현장애로 해소('18.6월, 157건)
 - * (주요사례) 시험·검사 처리기간 명확히 규정, 이유없이 시험·검사 지연시 제재근거 마련 및 사유 사전안내, 불합격 통보시 사유 적시 등
- 지자체가 지역 주민·기업 등으로부터 발굴하여 건의한 규제개선과제 발표('18.12월, 33건)
 - * (주요사례) 소규모 과실주 제조업 허용, 도시공원내 벼룩시장 허용 등

개선·보완 방향

-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생활밀착형 규제(주거, 복지, 교통 등)를 혁신하고, 지방규제와 '보이지 않는 규제'(그림자규제 등)도 혁파하여 국민의 규제혁신 체감도를 제고할 필요

3. 정부혁신

1 평가 개요

□ 평가목적

- 중앙행정기관의 정부혁신 추진실적을 기관별로 평가하여 정부혁신의 공공기관 확산 도모 및 국민의 삶의 질 개선

□ 평가대상

- 43개 중앙행정기관

구분	기 관 명 (직제순)
장관급 (23개)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보건처, 방통위, 공정위, 금융위, 권익위
차관급 (20개)	인사처, 법제처,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방사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진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행복청, 새만금청, 해경청, 원안위

□ 평가방법

- 행안부 ‘정부혁신 평가단’* 구성·운영, 과제 주관부처** 평가단 활용
 - * 학계(16명), 연구원(3명), 시민단체(1명)로 등 20명
 - ** 여성 의사결정 권한·성평등 기여도(여가부), 인권개선(인권위), 중증장애인·중소기업 생산물품 구매(복지부, 중기부), 협업·조정·갈등관리(국조실), 신뢰도(외부 전문기관), 청렴도(권익위) 등 과제 주관부처가 평가하고 결과를 반영
- 평가지표 특성에 따라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 병행

□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혁신준비 (15)	사회적 가치를 위한 혁신 인프라	• 실행계획의 충실성	9
		• 혁신 추진 기반	6
혁신실행 및 성과 (75)	사회적 가치 중심 정부운영	•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균형인사, 인권개선 및 구매	11
		• 사회적 가치를 강화하는 정책 조정 노력	18
	참여와 협력	• 정책 모든 과정에 국민 참여 확대	13
		•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자원 개방	6
		• 협업·조정·갈등관리	10
	낮은 관행을 깨는 신뢰받는 정부	•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6
		• 국민중심 행정혁신 추진	11
대표사례(10)		• 기관대표 혁신사례	10

2 평가 등급

* 각 등급 내 기관명은 직제순으로 표기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우수	외교부, 행안부, 농식품부, 고용부, 해수부, 권익위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 병무청, 농진청
보통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국방부, 복지부, 환경부, 여가부, 국토부, 중기부, 보훈처, 방통위, 금융위	인사처, 법제처, 조달청, 경찰청, 문화재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행복청, 해경청
미흡	통일부, 문체부, 산업부, 공정위	방사청, 소방청, 새만금청, 원안위

□ 주요 성과

-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18.3월)을 수립, 사회적 가치 중심 정부운영, 참여와 협력 및 신뢰받는 정부 등 3대 전략을 본격 추진
- (사회적 가치) 기관 핵심정책에 안전·인권 등 사회적 가치 반영*을 확대, 정부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 추진
 - * (고용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산재 신청시 사업주 확인제 폐지
(외교부) 해외안전지킴센터 신설로 해외국민의 사건·사고 신속대응 등
 - ** △공직 내 여성 진출 확대(고공단·과장급 : (‘17) 6.1%·14% → (‘18) 6.8%·16.9%)
△사회적 가치 관련 예산 대폭 확대((‘18) 56.8조원 → (‘19) 65.8조원, 9조원 증가)
- (참여와 협력) 행정내부 분야까지 국민의 참여 확대*, 기관 간 협업 및 정보 공유**를 통한 국민 편의성 증진
 - * ‘정책결정 사전점검표’ 전 부처 시행, 국민참여 예산제 도입(38건, 928억원 반영), 국민참여 법령심사제 활성화(‘18년 52건)
 - ** (국세청 - 법원행정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없이 연말정산이 가능토록 개선
(병무청 - 국방부) 군 운전경력포함 병적증명서를 온라인(정부24)으로 즉시 발급
- (신뢰받는 정부) 공직사회 내 부패·성폭력 등의 개선 노력*, 디지털 행정서비스 혁신**을 통해 국민의 체감도 제고
 - * △종합청렴도 상승 : (‘17) 7.70 → (‘18) 8.17점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마련(신고접수 1,313건, 징계 등 조치 360건)
 - ** (외교부) 모바일을 통해 여권 유효기간 사전 알림 서비스 등 제공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혁신 성과의 다수 창출 필요
-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노력 및 장애인 의무고용,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등 법정 의무 준수를 위한 노력 필요
 - * 장애인 의무고용률(3.2%) 7개 기관, 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1%) 10개 기관 미달성
- 국민참여의 정책반영·활용도 제고 노력 및 기관 간·기관 내 협업을 보다 강화할 필요

4 분야별 평가결과

사회적 가치 분야

주요 실적

□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정책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개선

- 기관의 핵심정책에 안전, 인권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
 - * (외교부) 해외안전지킴센터 설치를 통한 해외국민의 사건·사고 상시대응체계 구축
(경찰청)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하여 인권침해요인 사전제거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현장소통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제도개선 사례* 다수 확인
 - * (고용부) 산재신청시 사업주 확인제를 폐지하여 산재신청 장애요소 제거
(해수부)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운영을 통한 도서지역민의 교통복지 증진

□ 정부운영 기반인 인사·예산 분야를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

- 공직 내 여성 관리직 확대* 및 정부위원회의 여성·비수도권 비율** 제고
 - * 고위공무원단 : ('17) 6.1 → ('18) 6.8% / 본부 과장급(4급 이상) : ('17) 14 → ('18) 16.9%
 - ** 여성 : ('17) 37.8 → ('18) 41.6% (목표 40% 既달성) / 비수도권 : ('18.2) 27.2 → ('18.9) 31.8%
-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재정배분 기준 마련('18.4월) 및 '19년도 관련 예산 확대*
 - * 안전·인권·사회적 약자 배려 등 주요과제에 대폭투자 ('18) 56.8 → ('19) 65.8조원, 9조원 증가)

개선·보완 방향

□ 사회적 가치의 공공서비스 내 확산·적용 미흡, 특히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노력 부족

⇒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및 선제적·예방적 서비스 제공 확대 필요

- * 중점대상 : 아동보호(결식·안전·학대 등), 학교 밖 청소년, 독거노인, 위기가구, 장애인

□ 장애인 의무고용,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등은 상당수 기관이 미흡

* 장애인 의무고용률(3.2%) 7개 기관 미달성, 중증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비율(1%) 10개 기관 미달성

⇒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법정 의무 준수를 위한 노력 강화

참여와 협력 분야

주요 실적

□ 정책·예산·법령 등 다양한 분야의 국민의 참여 확대

- 부처별 업무특성에 맞는 다양한 소통채널을 마련하여 국민참여 내실화

* △(식약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신설 △(과기정통부) 개인정보 보호·첨단의료 규제 혁신 해커톤 △(기재부) 국민참여 예산제 본격 도입 △(법제처) 국민참여 법령심사제 활성화('18년 52회) 등

- 정책형성 단계에서 국민,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결정 사전점검표' 전 부처 시행

* '18년 총 605건 / 필수작성대상(장차관 참석 회의체 안건) 582건 중 496건 작성(85.2%)

□ 기관 간 협업 및 정보 공유·공개를 통해 국민의 편의성 증진

- 기관 간 협업 및 정보공유를 통해 편리한 대국민 서비스 제공

* (국세청) 법원행정처와 정보를 공유,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없이 연말정산이 가능토록 개선 (병무청) 국방부·행안부 등과 협업, 군 운전경력포함 병적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

- 국민의 삶과 밀접한 정보공개를 확대, 국민의 합리적 선택 지원

* (복지부) 전국 3,751개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비교 정보 공개 등

개선·보완 방향

□ 국민제안의 정책 반영률, 국민생각함의 국민 참여 등 제도화된 국민참여 수단 활용도 저조*

* 국민제안 정책 반영률 2.2%, 국민생각함 안건당 국민참여(댓글, 투표 등) 평균 71건에 불과

⇒ 국민제안의 정부정책 반영 활성화 방안 마련 및 국민생각함 내 국민 호응도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등의 노력 필요

□ 우수 협업사례가 일부 제시되고 있으나, 상당수 기관들이 여전히 기관 간, 기관 내 협업 노력 미흡

⇒ 협업 기관 간 상호 평가 도입, 개인과 부서에 대한 협업 인센티브 강화 등 내실화 방안 필요

신뢰받는 정부 분야

주요 실적

□ 반부패, 성폭력 근절 등을 통한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노력

○ 중앙행정기관 종합청렴도(내·외부 청렴도, 정책고객평가 등) 전년 대비 상승*

* 중앙 행정기관 종합청렴도 : ('16) 7.61 → ('17) 7.70 → ('18) 8.17점

○ 공직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신고 - 피해자 지원 - 조치) 마련*,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비위 관리강화(업무배제및 퇴출, 피해자 구제강화)**

* '18년 성희롱·성폭력 신고 접수 1,313건, 징계 등 조치 360건

** 1,190개 기관 대상 특별점검 실시, 후속조치 추진(수사의뢰 82건, 징계·문책요구 255건, 피해자 구제 265건)

□ 디지털 행정서비스 혁신을 통해 국민의 체감도 제고

-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고, 모바일 기반으로 생활 정보 사전알림서비스 제공**
 - * (권익위) 빅데이터를 활용한 민원분석을 통한 국민 수요 파악
(농식품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한우 대상 축산물 이력제 시범사업 추진
 - ** 여권 유효기간, 영유아 예방접종일 등 사전 알림 서비스 제공
- 정부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제공* 및 모든 공문서를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서비스 전면 확대**
 - * 9만 여종의 정부서비스, 민원, 정책정보 등을 '정부24'로 통합·제공
 - ** 국민·기관 간 양방향 문서유통을 위한 '문서24' 확대·개편으로 국민편의 증진

□ 창의행정을 통한 행정내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 추진

- 언제·어디서나 스마트하게 일하는 방식 확산*하고, 혁신적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벤처형 조직 운영**
 - * 모바일 전자결재 : ('17) 465 → ('18) 4,525명 / 바로톡 이용자 : ('17) 4만7,000 → ('18) 9만6,000명 /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 이용자 : ('17) 4,994 → ('18) 7,175명
 - ** (해수부) 기업의 사내벤처를 벤치마킹, 드론을 활용한 해양 불법조업 감시체계 개선방안 마련

개선·보완 방향

□ 각종 행정조사, 진단 결과의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화 부족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 지체

- ⇒ 국민안전 관련 등 주요 행정데이터 발굴 및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한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 필요

4. 정책소통

1 평가 개요

□ 평가목적

-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에 대한 국민소통 추진노력 및 성과를 평가하여 국민의 정책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정책성과 체감 확산

□ 평가대상

- 43개 중앙행정기관

구분	기 관 명 (직제순)
장관급 (23개)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보훈처, 방통위, 공정위, 금융위, 권익위
차관급 (20개)	인사처, 법제처,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방사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진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행복청, 새만금청, 해양청, 원안위

□ 평가방법

-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정성평가의 경우 민관합동 ‘정책소통 평가지원단’ 구성*, 평가 실시

* 오프라인 평가 : 3개 그룹 각 7명(민간전문가 5, 문체부 국민소통실 2) 총 21명
온라인 평가 : 1개 그룹 14명(민간전문가 10, 문체부 국민소통실 4)

- 평가지표의 특성에 따라 정량·정성 평가 병행

□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정책소통 활동 (30)	정책소통 기획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소통 계획 수립 • 정책소통 계획 이행도 	6
	기관 간 정책소통 협업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정책 사전협의 • 정부·공공기관 보유매체 협업 활동 	14
	정례브리핑 및 언론 반영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례브리핑 운영 • 일일보도 반영실적 • 언론 반영 사례 평가 	10
정책소통 성과 (70)	방송·신문 보도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신문·인터넷 보도결과 • 외신소통활동 결과 	10
	기관 정책소통 활동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장 정책소통 활동성과 • 정책소통 월별 우수사례 	15
	온라인 정책소통 활동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SNS 활동성과, 콘텐츠 및 우수사례 • 온라인 이슈 점검 성과, 정책브리핑 활용 • 부처 협업 성과 	45

2 평가 등급

* 각 등급 내 기관명은 직제순으로 표기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우수	과기정통부, 국방부, 행안부, 농식품부, 산업부, 국토부	인사처, 식약처, 병무청, 경찰청, 산림청, 특허청
보통	기재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문체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해수부, 방통위, 공정위, 금융위	법제처,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방사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진청, 기상청, 새만금청
미흡	교육부, 중기부, 보훈처, 권익위	국세청, 행복청, 해경청, 원안위

3 총 평

□ 주요 성과

- 핵심 국정아젠다에 대한 범부처 협력 소통 활성화
 - △일자리 △포용국가 △남북관계 △혁신성장 등 핵심 국정아젠다 관련, 주기적·상시적 소통협의체* 운영을 통해 소통 메시지 조율 등 유기적 협력 소통 강화**
 - * 정책홍보전략회의(매주), 대변인협의회(매주), 온라인대변인협의회(격주) 개최 및 정책발표 사전협의('17) 199건 → ('18) 256건, 전년대비 28% 증가) 확대 등
 - ** 국정과제 인지도, 한국리서치('18.12.5~12.12) : 남북정상회담(92.6%), 최저임금 보장 및 노동시간 단축(90.6%), 부동산시장 안정대책(80.4%) 등

- 디지털 소통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 및 쌍방향 소통 확대
 - 13개 부처 디지털소통조직 신설(8개 부처 공식 직제화 완료), 디지털소통팀장 회의 신설 등 상시적 협력홍보 추진
 - * 각 부처 대표채널 활동실적(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등) 증가('18.3) 7천8백만건 → ('18.11) 1억2천만건으로 56.3% 증가)
 - **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트위터 채널 공식 공개 (전부처 대상, 12.20~)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국민 체감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소통 확대
 - 정책 수요자 맞춤형 특화된 매체 및 콘텐츠 활용, 구체적 정책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 제고

- 현안 이슈 관련 즉각적·체계적 대응 강화
 - 현안 이슈(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노동 문제 등)에 대한 사전 기획홍보 및 사후 대응 프로세스 고도화

4 분야별 평가결과

정책소통 활동 분야

주요 실적

□ 핵심과제에 대한 정책발표 전 사전협의 강화

- 쟁점사항 소통·대응방향 등에 대해 사업부처·문체부 간 사전협의를 확대('17년 199건 → '18년 256건), 메시지 전달력 강화
 - * 사전협의 통해 '여성안전' 관련 인식을 전환(여성 범죄취약지점 개선 → 불법촬영·성폭력 등 여성범죄 근절), 주요 일간지 보도 16건, 지상파 등 방송 8건 보도

□ 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한 소통노력 확대

- 다부처 관련 이슈*에 대해 부처 간 역할분담을 통한 체계적 홍보 추진
 - * '19년 예산안 : △전체예산안(기재부) △'포용국가'·'생활SOC' 등 키워드 홍보(각부처)

□ 핵심 현안에 대한 전략적 기획소통 추진

- 상황분석을 통한 구체적인 소통목표 제시 및 소통이슈 선정
 - * (통일부)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공감대 목표 설정(현재 60% → 목표 80%)하여 홍보 추진
 - (고용부) 베이비부머 퇴직 및 고령화 상황 고려, 장년층 인적자원 관리 정책 소통 강화

개선·보완 방향

□ 사회적 쟁점 사안에 대한 선제적 홍보전략 미흡

- 대입제도 개편, 새만금 태양광 사업 등에 대한 미온적·사후적 대응으로 부정적 이슈 확산
⇒ 정책준비 단계에서 소통계획 수립 및 예상쟁점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

□ 오보 등에 대한 대응 성과 미흡

- 오보에 대해 해명자료 등으로 대응하고 있으나(총 1,926건 해명), 기사에 해명이 반영된 사례는 871건(31%)으로 저조

⇒ 보도내용에 대한 정확한 분석·해명을 통해 오보 등을 감소시키는 노력 필요

정책소통 성과

주요 실적

□ 적극적인 정책현장 행보를 통한 대국민 소통 강화

- 장·차관 및 기관장 중심, △정책현장 방문 △지역 행사 연계 소통 △정책 토론회·강연 등 언론 및 현장소통 강화
 - * 기관장 현장소통 월평균 성과 : 장관급 기관 15.8회(전년 12.5회 대비 20.9% 증가), 차관급 기관 5.7회(전년 4.2회 대비 26.3% 증가)

□ 주요 정책 관련 언론 및 온라인 소통 내실화

- 남북정상회담*·평창올림픽** 등 주요 이슈에 대해 언론·SNS(‘2018 남북정상회담’ 온라인·모바일 플랫폼 운영)등을 활용한 전방위 홍보 추진
 - * 남북 고위급 회담(5회) 보도건수 : (주요방송) 1,825건, (신문·통신) 2,724건
 - ** 평창올림픽 입장권 107만8,000여장, 패럴림픽 34만5,000여장 판매 등 흥행목표 달성

□ 외신 관심이슈에 대한 적극적 해외 소통 추진

- 남북관계, 신남(북)방 정책 등 외신 관심이슈에 대한 적극적 대응
 - * (외교부) 남북·북미 정상회담 등 주요 계기시 ABC·CNN(장관), PBS·BBC(차관) 인터뷰

개선·보완 방향

□ 부정적 정책 이슈에 대한 전략적 대응 부족

- 부정적 정책 이슈 발생시 △상황 사전 인지 △언론·대국민 소통 △전략적 메시지 확산 등의 조치 미흡
 - * 라돈검출 침대, 재활용 폐기물 수거, 유치원 방과 후 영어교육 논란 등
- ⇒ 정확한 정책 메시지 전달을 위한 범정부 소통·홍보 체계 확립
 - * 리스크 대응팀(상황 분석) → 정책홍보전략회의(총괄적 홍보전략 수립) → 대변인협의회(오프라인 홍보전략 수립) → 온라인대변인회의(온라인 홍보전략 수립)

□ 온라인 채널특성 및 이용자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운영 강화 필요

- 온라인 채널별(블로그/페이스북/트위터 등)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동일한 콘텐츠 운영 등 맞춤형 콘텐츠 제작·운영 노력 부족
- ⇒ 모바일 트렌드에 부합하는 사용자 친화적 소통노력 강화

5. 소통만족도

1 평가 개요

□ 평가목적

-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에 대한 국민소통 추진노력 및 성과에 대해 일반국민 대상 만족도 평가 실시

□ 평가방법

- 43개 정책과제(부처별 1건)에 대한 소통 만족도를 조사하여 평가
- 설문조사는 객관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민간 전문조사기관에 위탁

□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정책소통 프로그램 효과	• 프로그램 인지도, 소통메시지 수용도 • 행동변화	30
정책소통 효과	• 상호성 차원, 개방성 차원 • SNS 정책소통 만족도	40
정책 효과	• 정책 지식도, 정책 수용 및 지지도 • 정부 신뢰도	30

2 평가 등급

* 각 등급 내 기관명은 직제순으로 표기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우수	행안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해수부, 방통위	국세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기상청, 해경청
보통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국방부, 문체부, 여가부, 국토부, 중기부, 보훈처, 공정위, 금융위, 권익위	인사처, 법제처, 식약처, 관세청, 통계청, 병무청, 농진청, 산림청, 특허청, 행복청
미흡	통일부, 법무부, 농식품부, 산업부	조달청, 방사청, 세관금청, 원안위

3

평가 결과

□ 주요 내용

- 소통만족도 평균은 57.4점(100점 만점)으로, '보통(50점)정도' 수준
 - 복지·안전 등 일상 생활과 밀접한 과제의 경우, 만족도 점수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
 -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복지부), 지진으로부터 국민안전 확보(기상청) 등
 - 방위사업·조달 등 일반국민이 성과를 상대적으로 체감하기 어려운 과제는 소통만족도가 낮은 수준
 - * 첨단무기 개발 및 방위산업 육성(방사청), 나라장터 벤처나라(조달청) 등

- 성별·연령별 특성에 따라 소통만족도에 대한 편차 발생
 - 여성은 문화 과제, 남성은 안전 과제의 소통노력에 대해 높게 평가*
 - * (여성) 문화유산 콘텐츠 활용 확대(문화재청) / (남성) 소방차 길 터주기(소방청)
 - 행정서비스·환경 관련 과제*는 50~60대 연령층에서, 노동·해양재난 관련 과제**는 20대에서 소통노력을 높게 평가
 - * 행정서비스 혁신(정부24·문서24)(행안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환경부)
 - ** 일·생활의 균형 실현(고용부), 해양재난 대비·대응역량 강화(해경청)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도가 낮은 정책의 경우, 정책의 실제적 효과 및 성과 중심의 콘텐츠를 통한 소통추진 전략 마련 필요

- 성별·연령별 관심 및 정보 접근성 등을 고려한 온·오프라인(유인물, 현수막, 신문·방송, SNS 등) 채널 활용 및 입체적인 소통 강화

6. 지시이행

1 평가 개요

□ 평가목적

- 각 부처의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상황 및 성과를 평가·환류하여 지시사항의 차질 없는 이행 및 성과 제고

□ 평가대상

- (대상 지시사항)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시달된 대통령 지시사항 중 부처별 추진 중이거나 '18년 종료된 지시사항(160건)
- (대상 기관) 43개 중앙행정기관

□ 평가방법

- 지시사항별로 ± 3 점 가감점 부여하여 부처별 산술 평균

□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계획수립 적절성	• 지시취지 부합여부, 내용 충실성 등	± 1
추진성과	• 추진계획의 실제 이행 여부 • 국민체감도 등 추진효과	± 1.5
점검체계 운영	• 자체점검 추진실적	± 0.5

2 평가 등급

* 각 등급 내 기관명은 직제순으로 표기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우수	과기정통부, 외교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여가부, 중기부	법제처, 국세청, 조달청, 경찰청, 새만금청, 해경청
보통	기재부, 교육부, 통일부, 법무부, 행안부, 복지부, 국토부, 해수부, 보훈처, 방통위, 금융위, 공정위	인사처, 식약처, 관세청, 병무청, 방사청, 소방청, 산림청, 기상청, 행복청, 원안위
미흡	국방부, 환경부, 고용부, 권익위	통계청, 문화재청, 농진청, 특허청

3 분야별 평가결과

주요 국정방향 관련 지시

주요 실적

□ 주요 국정과제 추진 보완방안 마련

- 고용·소득분배 지표 등의 부진에 따라 취약계층 일자리 안정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보완 대책 마련 (18.7·10월)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단기적 부담 해소를 위해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18.5월) 마련
 - * 신규채용·임금보전 지원 강화, 조기단축 기업 우대, 특례제외 업종 등 특화 지원·관리
- 자영업자 성장과 혁신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로드맵 마련 (18.12월)
 - * 구도심 상권육성, 제로페이 시행·정책자금지원확대, 창업·폐업·재기 지원, 자영업기본법 제정 등

□ 생활 속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 척결 지속

- 공공기관 채용을 지속 관리·점검할 수 있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 출범(18.11월) 및 정기 전수조사 실시(1,453개 대상, '18.11~'19.1월)
- 공공부문 갑질 종합대책 마련(18.7월), 민간분야 직장 괴롭힘 근절 종합대책 추진(18.7월)을 통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생활적폐 해소

□ 판문점 선언 및 평창·패럴림픽 후속조치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18.4월)·고위급 회담 개최(24회), 이산가족 상봉행사(18.8월) 및 확대방안 협의 등을 통해 평화체제 구축 뒷받침
- 우리문화 특성을 살린 평창올림픽 개·폐회식 진행 및 성과홍보,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18.8월) 등으로 올림픽 성과관리 지속

개선·보완 방향

□ △공공기관 채용 특혜의혹 제기에 따른 국민신뢰 하락 △고용·분배지표 하락에 따른 정책성과 체감도 낮은 상황

- ⇒ 철저한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기 발표된 정책들의 주기적 점검·관리 통한 현장 실행력 제고

주요 현안 대응 지시

주요 실적

□ 지역활력 제고 및 균형발전을 위한 현안대응

- 군산 등 6개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재취업·생계지원, 대체·보완산업 육성 등 지역대책 마련('18.3~8월, 4차례)

- 도서관, 문화·체육시설, 복지시설 등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확대('18년 5.8조 → '19년 8.6조)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균형발전 추진

□ 국민 생명·안전보호를 위한 현안대응

- 폭염대책 및 「재난안전법」 개정*('18.8월), 전기요금 주택용 누진제 한시완화·사회배려계층 지원 등으로 여름철 국민안전 보호 강화
 - * 폭염을 재난으로 인식, 폭염피해자 지원기준 마련 및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 제정 중
-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18.7월),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 마련('18.8월) 등을 통한 교통·안전사고 방지
 - * 폭염·강추위 시 작업기준개선, 임금·복리후생비 현실화, 지자체 위탁업체 관리감독강화

□ 사고발생에 대한 신속대응

- 라오스댐 사고 관련 긴급구호대 파견 및 지원('18.7월),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사고원인 조사 결과 발표('18.12월)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중

개선·보완 방향

□ 부처 간 협업부족, 이해관계자 협의 지연 등으로 지시사항 추진 지연

- *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관련, 관계부처 간 업무분담 협의로 계획수립 지연
△초등학교 정규수업시수 확대 관련, 교육계 반발 등으로 실질적 논의 진전 담보

⇒ 주관부처 중심의 신속하고 책임감 있는 지시사항 추진

□ 정책환경변화가 예견된 상황에도 뒤늦은 대응으로 국민불편 초래

- * '17.7월 중국 수입중단 예고에도 불구하고 대응미흡으로 '18.4월 폐기물 수거논란 발생, 대통령 지시 이후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수립('18.5)

⇒ 정책리스크 상황관리 및 선제적 현안대응으로 정책만족도 제고 필요

Ⅲ. 기관별 종합 평가

1 평가 개요

□ 평가목적

-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소통만족도 등에 대한 평가결과를 기관별로 합산·발표하여 기관 차원의 국정성과 제고 독려

□ 평가방법

- 일자리·국정과제(65점), 규제혁신(1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10점), 소통만족도(5점) 점수를 합산
- 지시이행은 가감점(±3점)으로 반영

2 평가 등급

* 각 등급 내 기관명은 직제순으로 표기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우수	과기정통부, 통일부, 농식품부, 복지부, 국토부, 해수부	법제처, 조달청, 병무청, 농진청, 산림청, 해경청
보통	기재부, 외교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산업부, 여가부, 중기부, 보훈처, 방통위, 공정위, 금융위, 권익위	인사처,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방사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특허청, 기상청
미흡	교육부, 법무부, 환경부, 고용부	통계청, 행복청, 새만금청, 원안위

IV. 후속조치 계획

□ 평가결과 환류 및 개선조치

- 일자리·국정과제 등 개선 필요사항을 각 부처에 통보, 개선계획 수립토록 조치
- 기관별 개선계획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19년도 정부업무평가지 반영

□ 평가결과 우수기관 및 유공자 포상

-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포상금 지급
- 성과창출에 기여한 공무원 등에 대한 훈·포장 수여

2019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2020. 1. 15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국무조정실

I. 평가 개요

1 평가대상

- 기관 : 43개 중앙행정기관 (장관급 23개, 차관급 20개)
- 기간 : '19. 1. 1 ~ 12. 31

2 평가부문

- ❖ 정부 3년차임을 감안, 각 부문별로 결과·성과 중심 평가항목 강화
- ❖ 포용국가, 생활적폐 청산, 생활 SOC 등 관련 과제를 평가대상에 추가
- ❖ '정책소통' 및 '소통만족도' 부문 통합·평가

- ① (일자리·국정과제) 일자리를 포함한 100대 국정과제 및 중앙행정기관별 주요정책 추진성과 평가
- ② (규제혁신)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신산업분야 규제개선, 적극행정 활성화 등 규제혁신 추진실적 평가
- ③ (정부혁신) 사회적 가치 실현, 신뢰받는 정부 구현, 국민참여 확대 등 정부혁신 추진실적 평가
- ④ (정책소통) 국정과제 등 주요정책에 대한 국민 이해도 제고를 위한 부처별 실적·성과 및 장관 홍보노력 등 평가
- ⑤ (가감 - 지시이행)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노력 및 성과를 평가, 책임성 강화

《 '18년도 대비 평가부문 개편사항 》

'18년도 평가		⇒	'19년도 평가	
① 일자리·국정과제	65		① 일자리·국정과제	65
② 규제혁신	10	② 규제혁신	10	
③ 정부혁신	10	③ 정부혁신	10	
④ 정책소통	10	④ 정책소통 (소통만족도 포함)	15	
⑤ 소통만족도	5			
가감 (지시사항 이행)	±3	가감 (지시사항 이행)	±3	

* 「정책소통」·「소통만족도」 부문을 통합하여 정책소통 활동 - 성과 - 체감(만족도)의 일원화된 평가체계 마련

③ 평가방법

- 평가부문별로 평가주관기관이 평가지원단을 구성, 시행계획 상 평가 항목에 따라 정량적·정성적 평가 병행
- 평가부문별 기관점수를 합산하여 기관종합 평가
-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평가결과 심의·의결

④ 평가결과 제시

- 장관급과 차관급 기관으로 구분하여 기관별 등급 부여 (S·A·B·C·D)
 - * 3등급(A 30%, B 50%, C 20%) 배분 후, 정평위 등 분야별 평가위원회에서 A그룹·C그룹 내 점수편차 및 탁월한 성과 창출여부 등 고려, S/D등급 부여(S·A·B·C·D)
-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보완사항 제시

II. 부문별 평가결과

1. 일자리·국정과제

1 평가 개요

□ 평가목적

- 43개 중앙행정기관별 100대 국정과제 또는 주요정책과제의 이행실적을 국민 눈높이에서 객관적으로 분석·평가
 - * 국정과제가 1개 이하이거나 일자리 과제 추가 선정이 필요한 28개 중앙행정기관 대상으로 주요정책과제(62개) 선정, 국정과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

□ 평가대상

- 43개 중앙행정기관

구분	기 관 명 (직제순)
장관급 (23개)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보훈처, 방통위, 공정위, 금융위, 권익위
차관급 (20개)	인사처, 법제처,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방사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진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행복청, 새만금청, 해경청, 원안위

□ 평가방법

- 정부업무평가위원을 중심으로 ‘국정과제 평가지원단’ 구성 (450명)
 - 분야별 민간 전문가 및 정책수요자 참여, 10개 분과로 구성
- 분과별로 평가지표에 따라 정량·정성평가 병행 실시

□ 평가지표

- 정책추진 노력(10%), 성과지표달성도(60%), 정책효과(30%)를 평가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정책추진 노력	• 과제 추진계획을 충실히 수립하고, 이에 따라 차질없이 이행했는지 여부	10
성과지표 달성도	• 사전에 설정된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 여부	60
정책효과	• 성과지표로 측정할 수 없는 정책의 체감성과를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 종합 평가	30

2 평가 등급

* 직제순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S	-	-
A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산업부, 해수부, 중기부, 금융위	법제처, 조달청, 소방청, 농진청, 특허청, 해경청
B	기재부, 교육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보건처, 공정위, 권익위	인사처, 국세청, 관세청, 병무청, 경찰청, 문화재청, 산림청, 기상청, 행복청, 새만금청
C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방통위	식약처, 통계청, 방사청, 원안위
D	-	-

3 총 평

정책 추진여건

- 미중 무역갈등 및 보호무역주의 심화, 글로벌 저성장 등에 대응하여 자유무역 확산 및 신남방 등 새로운 시장 개척 필요
- 수출·투자 부진, 소비 증가세 약화 등 경기둔화 과정에서 신산업 육성, 주력산업 경쟁력 회복 등 경제활력 제고 필요

- 저출산·고령화, 소득불평등 및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와 채용, 입시 등의 특권 및 불공정 관행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 요구
- 북미간 비핵화 협상 재개 지연, 남북관계 경색 등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정부 역할 필요

'19년도 주요 성과

❖ 포용적 복지 실현을 위해 쉰 생애에 걸친 국가책임 강화

- 기초·장애연금 인상(최대 25→30만원),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최대 26만명 신규 지원),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등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보강
- 초음파·MRI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치매 국가책임제 내실화(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 정식개소), 지역사회 통합돌봄 도입 등 국민 건강보장 확대
- 아동수당 대상 확대(만 6세→만 7세미만),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충(654개소·993학급), 초등돌봄 확대,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시행('19년 고3) 등 보육·교육의 포용성 강화
- 강원산불('19.4월) 조기 진화 및 아프리카 돼지열병·구제역 총력 대응, 교통·산업안전 강화(사망자 수 549명 감소), 미세먼지 범국가적 대응 등 안전한 대한민국 조성 추진
- 최저임금 인상 및 주 52시간 근로제 확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중앙부처 여성 관리직 확대(과장급 17.5→20.8%) 등 노동시장 내 격차 해소 기반 마련
- 근로장려금 확대(219만 가구↑, 3조원↑), 실업급여 및 고용·산재보험 보장성 강화 등 일자리 안전망 확충으로 소득분배지표 개선

❖ 경제 활력 제고 및 신산업 육성을 통한 혁신적 포용국가 토대 마련

- 주요국 대비 양호한 경제성장률, WEF 국가경쟁력 2년연속 2단계 상승, 국가부도위험 최저(CDS프리미엄 25bp), 외환보유액 최고치(4,088.2억불), 역대 최고 국가신용등급(S&P, AA유지) 등 견고한 대외평가 유지
- 미중 무역갈등·세계 경제 둔화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무역 1조불, 11년 연속 무역 흑자(수출 7위, 5,424억불), 5년 연속 외국인직접투자 200억불 달성
- 세계최초 5G 상용화, DNA + BIG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집중투자, 규제 샌드박스 도입(혁신금융 등 195건), 제2벤처붐 조성(유니콘기업 11개, 역대 최고 신규벤처투자액 4조원 달성) 등 혁신성장 기반 강화
- 조선 수주실적 1위, 반도체 세계 1위 초격차 유지 등 주력업종 경쟁력 회복,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등 제조업 혁신 추진
- 순환출자 해소, 불공정관행 개선, 상생결재규모 100조원(2년 연속) 등 공정경제 확산,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생계형적합업종 첫 지정(8개) 등 영세자영업 지원강화

- 대규모 공공·민간투자 확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누적 17.9만명),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11.3만명), 취업취약계층(청년·여성 등) 지원 강화 등으로 고용의 양과 질 개선

❖ 대화·협력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및 동아시아 평화·번영의 길 마련 노력

- 남북미 판문점 정상회담(6.30)·국제사회(UN 등) 지지 확보 등 북핵 해결 노력, 한미 정상회담(3회)·한일중 정상회의(12.24) 등 주변국과 협력 강화
- 핵심전력 구축(핵·WMD 대응을 위한 전력 강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한미 연합검증) 등 튼튼한 안보태세 확립, 장병 봉급 인상 등 복무여건 개선
- 남북 철도·도로 연결(자료 상호 교환) 등 남북경협 추진, 서해 5도 어장 확장, DMZ 평화의 길 조성(고성·철원·파주) 등 평화체험의 장 마련
- 아세안 10개국 순방 조기 완료,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 신남방정책 추진 가속화 및 RCEP·인니·이스라엘·중미와 FTA 타결 등 교역 다변화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자치분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 추가 조세부담 없이 국세의 지방세 전환(3.3조원), 중앙지방협력회의법(제2국무회의 신설, 制)·지방자치법(전부개정) 추진, 지방이양일괄법(400개 국가사무, 制) 국회통과('20.1월) 등 지방분권 가속화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23개 사업, 25조원 예타면제), 생활SOC 확충(8.6조원), 도시재생뉴딜(116곳)·어촌뉴딜300(70곳), 규제자유특구 지정(14개),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원(14개, 420억원),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 등으로 지역경제 활력 회복 추진
- 쌀값 안정화(19만원), 쌀 관세율 유지(513%), 공익형직불제 도입 등 농촌 소득안전망 확충, 3·6·5생활권 확대(1,058개) 등 주민 삶의 질 제고

❖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개혁 추진 및 나라를 위한 희생·헌신에 대한 예우 강화

- 공수처 설치법 제정·검경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 반부패 노력(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으로 국가 청렴도 제고(부패인식지수 역대 최고)
- 참정권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선거연령하향, 만19→18세), 표현의 자유 강화(언론자유지수 순위 지속 상승), 인권친화적 수사개혁 등으로 국민 권리 신장
- 3·1운동·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5.18 진상조사위 출범 등 독립·호국·민주화를 위한 희생·헌신에 대한 예우 강화

보완 필요 사항

- 저출산·고령화 심화, 1인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적 변화에 따른 교육·복지·고용 등 사회 전분야 대응 필요
- 공유경제, 규제 개혁 등 혁신성장 추진 과정에서의 사회적 갈등 해소 및 대타협 방안 마련
- 일자리(취업자 수·고용률) 및 소득분배(분위별 소득증가율) 지표는 개선되고 있으나,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다각적인 노력 필요
- 국민의 공정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특권과 불공정 해소 노력 필요
- 미중일리 등 주변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 남북관계 등 실질적 진전을 위한 역할 수행
- 신산업 육성, 공정경제, 노동자의 기본권 보호 강화, 자치분권 등 개혁정책 추진을 위한 입법 지연 해소

4 국정목표별 평가결과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 ❖ 국민의 전 생애에 걸친 기본생활 보장 및 국가책임 강화로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
- ❖ 노동 존중 및 성평등 실현 등을 통해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다함께 잘사는 나라' 조성

주요 정책성과

□ 모든 국민의 안정된 삶 보장을 위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 (저소득층)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대*, 긴급지원 대상 확대** 및 자활급여 인상(최대 26%↑) 등 저소득층 보호 강화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역대 최고('16년 163만명 → '19년 188만명)

** 긴급지원 대상 건수 : ('18.1~11월) 22.4만건 → ('19.1~11월) 30.7만건

-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19.7월~), 장애인연금 조기 인상*('19.4월) 등 장애인 권익 증진
 - *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인 25→30만원으로 인상(당초 목표 '21년) / 전체 37만명 지급('19.12월)
- (아동) 아동수당 대상 확대*, 위기아동 지원 통합·제공을 위한 아동권리보장원 신설('19.7월) 및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신규 지급**('19.4월) 등 국가책임 강화
 - * ('18년) 소득·재산 하위 90% 만 6세 미만 아동 → ('19년) 만 7세 미만 전체 아동
 - ** '17.5월 이후 보호 종료된 아동 5천여명 월 30만원 지급, 그 외에도 청년매입임대주택 제공(240호), 사회적기업 취업 지원 등 소득·주거·일자리 종합지원 강화
- (어르신) 기초연금 조기 인상* 및 치매 국가책임제 내실화**, 수요자 맞춤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 도입('19.4월) 등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
 - * 소득하위 20% 어르신 25→30만원으로 인상(당초 목표 '21년) / 전체 530만명 지급('19.9월)
 - **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 정식개소 완료, '19년 118만명 이용
 - ***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방문형 의료·요양·돌봄·주거 등 통합제공
- (다양한 가족) 한부모·조손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19.1월), 채무자 정보 확보 절차 간소화로 양육비 이행률 제고** 등 다양한 가족의 양육 지원 강화
 - * 저소득 한부모 : ('18년) 만 14세 미만, 월 13만원 → ('19년) 만 18세 미만, 월 20만원
조손가족 : ('18년) 만 14세 미만, 월 18만원 → ('19년) 만 18세 미만, 월 25만원
 - ** ('18년) 32.3% → ('19년) 35.6%

□ 국민 생활비 지원 강화로 체감 복지 증진

- (주거) '19년 공적임대주택 18만호* 공급 및 주거비용 지원 확대**, 신규공공택지 공급 확대 추진(28곳 11만호) 등 주거 안정성 강화
 - * 저소득층 5.7만호, 청년 2.8만호, 신혼부부 4.3만호, 고령자 0.9만호 등
 - **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한도(최대 2→2.4억원) 및 대상(혼인기간 5→7년 이내) 확대 등
- (의료) 초음파·MRI검사*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및 재난적 의료비 지원(소득하위 50%)**,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제공 등 국민 건강관리 지원 강화
 - * 하복부 초음파('19.2월 적용) : (기존) 5~15만원 → (적용 후) 2~5만원
두경부 MRI('19.5월 적용) : (기존) 50~72만원 → (적용 후) 16~26만원
 - ** 고액 의료비 발생 시 최대 3천만원 지원, '19년 11,142건(259억원) 지원
 - ***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 고혈압·당뇨병 환자 대상 연간 관리계획 수립, 비대면 환자 관리(블루투스 연동 혈압계 등 ICT 활용) 등 포괄적 의료·관리서비스 제공('19년 등록환자 : 17.2만명)

- (교통·통신)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및 '100원 택시' 확대**, 취약계층 통신비 요금 감면 및 선택약정 할인을 상향으로 연 2조원의 가계통신비 경감
 - * 구리-포천(3,800→3,600원), 천안-논산(9,400→4,900원)
 - ** ('18년) 126개 시군구, 36만명 이용 → ('19년) 136개 시군구, 40만명 이용

□ 국민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한 대한민국 조성

- 강원 산불('19.4월) 조기 진화* 및 태풍 피해 최소화** 등 자연재해 전력 대응, 포항지진특별법 국회 통과('19.12월)로 지진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기반 마련
 - * 청와대 중심 재난 컨트롤타워 구축 및 전국 소방장비·인력 총동원으로 조기 진화
 - ** 재산피해 2,172억원(최근 10년 평균 3,181억원, '02년 루사 5조 1,479억원)
- '19.9월 최초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총력 대응*,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선제적 예방 조치 등 가축전염병 피해 최소화**
 - * 살처분, 경계지역 야생멧돼지 집중포획 등 고강도 대책으로 경기북부 지역 외 추가확산 저지
 - ** AI 발생(건) : ('16/'17년 동절기) 383 → ('17/'18년 동절기) 22 → ('18.3월~현재) 0
구제역 발생(건) : ('15년) 185 → ('16년) 21 → ('17년) 9 → ('18년) 2 → ('19년) 3
-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교통안전·산업안전·자살예방) 추진으로 교통·산업안전 사망자 수 감소*,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등을 위한 법**·예산*** 기반 마련
 - * 전년동기 대비, 교통 : 12.5% 감소(△433명, '19.1~11월)/산업재해 : 11.9% 감소(△116명, '19년)
 - **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사망사고 가해자 가중처벌, 경사진 주차장 내 고임목 설치 의무화 등 근거 마련(「도로교통법」 등(일명 '민식이법', '하준이법') 개정)
 -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1,275억원(전년대비 6배), 소방 대형헬기 144억원(신규) 편성 등 '20년 주요 안전 예산 대폭 증액
-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에 포함,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19.4월), 고농도 시 비상저감조치 전국 확대 및 계절관리제 도입 등 범국가적 대응
 - *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사회재난의 범위에 미세먼지 포함('19.4월)
 - **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 ('16년) 26 $\mu\text{g}/\text{m}^3$ → ('19년) 23 $\mu\text{g}/\text{m}^3$

□ 노동시장 내 격차 해소를 차별 없는 일터 조성

- 최저임금 단계적 인상('18년 7,530원 → '19년 8,350원)으로 임금분배 구조 개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노동시장 양극화 완화
 - * 저임금노동자 비중 : ('17년) 22.3% → ('18년) 19.0%, 임금 5분위 배율 : ('17년) 5.06배 → ('18년) 4.67배
 - ** '17~'19년(누적) 17.9만명 전환, 정규직 전환 이후 연봉증가 : 391만원
- 주 52시간제('18.7월 단계적 시행) 현장안착* 지원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시행('19.7월),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등 일하는 방식·문화 개선
 - * 주 53시간 이상 취업자 수(천명) : ('17년) 5,318 → ('18년) 4,505 → ('19년) 4,027
 - ** 아빠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월 상한액 200 → 250만원) 등으로 남성 육아휴직자 수 증가
- 주요 관리직 여성 비율 확대* 및 여군 최초 소장 진급, 기업과의 자율협약 등을 통한 기업의 여성 임원 확대** 등 여성 대표성 제고
 - * 고위공무원 : ('18년) 6.7% → ('19년) 7.8%(잠정), 군인간부 : ('18년) 6.2% → ('19년) 6.8%
 - ** 매출액 500대 기업 여성임원 : ('15년) 2.4% → ('18년) 3.6%

□ 보육·교육의 포용성 제고로 함께 키우는 사회 구현

-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 강화를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충,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으로 초등돌봄 확대** 등 부모 양육부담 경감
 - * ('18년) 574개소·501학급 → ('19년) 654개소·993학급 확충
 - ** ('18년) 36.3만명 → ('19년) 39.6만명 이용
-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을 통한 회계 투명성 확보, 모든 어린이집의 운영 과정에 대한 의무 평가제 시행('19.6월) 등으로 학부모 신뢰 제고
 - * 200명 이상 유치원 567개원 100% 도입, 도입 희망 유치원 753개원 도입
-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시행*, 사립대학 입학금 단계적 감축 및 반값 등록금 지원 확대(기준중위 소득 120→130%), 대학 기숙사 확충** 등 교육비 부담 경감
 - * ('19년) 고3 → ('20년) 고2·고3 → ('21년) 숏학년
 - ** 수용인원 및 수용률 : ('18년) 2.9만명, 21.7% → ('19년) 3.6만명, 22.2%

□ 모두가 함께 누리는 문화 조성 및 관광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문화·체육 생활 SOC(체육관, 도서관 등) 확충('19년 348개), 근로자 국내휴가비 지원 확대* 및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금액 인상** 등 국민의 문화·체육 참여 확대***
 - * ('18년) 2만명 → ('19년) 8만명
 - ** ('18년) 7만원 → ('19년) 8만원
 - ***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 ('16년) 78.3% → ('19년) 81.8%
생활체육 참여율 : ('17년) 59.2% → ('19년) 66.6%
- 외래 관광시장 다변화(非중국 중화권 등) 및 고부가 관광산업 육성으로 외래 관광객 수* 역대 최대기록 및 세계경제포럼(WEF) 관광경쟁력평가 최고순위** 달성
 - * ('16년) 1,724만명(非중국 917만명) → ('17년, 사드배치 後) 1,334만명(非중국 917만명) → ('18년) 1,535만명(非중국 1,056만명) → ('19년, 잠정) 1,750만명(非중국 1,149만명)
 - ** ('15년) 29위 → ('17년) 19위 → ('19년) 16위

보완·개선 사항

□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복지 사각지대 발굴체계 보강

- 생활고로 인한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19.7월), 서울 성북구 네 모녀 및 인천 계양구 일가족 사망('19.11월) 등 복지 사각지대 사례 발생 지속
- 신청주의 복지의 근본적 한계,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등에 대한 보완 시급

☞ 포괄적 신청주의* 도입 등 신청주의 복지 보완, 연계정보 확대 등 사각지대 발굴 강화, 이웃의 단절을 보완하는 지역사회 통로 구축 등 기존 체계 보강

* 기존 복지급여 수급자에 신청 가능한 사업 사전제시, 원하는 사업 포괄적 신청토록 지원

□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적 대화 적극 추진

-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 수립, 특고 노동기본권 보장, 근로자 대표제도 개선 등 주요의제 경사노위 논의 지원*
 - * 경사노위 정상화('19.10월) 이후 노사정 간 논의 시작 단계

☞ 경사노위에서 적극적 소통과 협의를 통해 주요의제에 대한 합의안 도출 노력 강화

□ 의약품 안전 관리체계 개선

- 인보사케이주('19.5월), 라니티딘('19.9월) 등 의약품 안전사고 발생 및 사후관리 미흡으로 의약품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 불신 초래

☞ 환자 정보의 조속한 파악 및 피해보상 지원 등 조치, 재발 방지를 위한 허가·심사 단계에서의 안전성 검증 강화

□ 불법폐기물 관리 철저

- 불법폐기물로 인한 주민피해 지속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처리 지연*
* 연내 불법폐기물 전량 처리 목표 → 70% 처리(120만톤 중 84만톤 처리)

☞ 잔여 물량 조속 처리와 함께, 지자체의 책임 있는 공공관리 및 발생지 처리 확대, 민간 시장의 질적 성장 등 폐기물 관리 시스템 근본 개선

더불어 잘사는 경제

- ❖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의 3대 정책기조 아래 일자리창출·경제혁신·공정질서확립 등 '사람 중심 경제'를 본격 추진
- ❖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하에 우리경제 전반의 활력과 역동성을 강화하여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 기반 구축

주요 정책성과

□ 거시경제 성과창출로 한국경제의 국제적 위상 강화

- 30·50클럽 중 2위의 경제성장률, 국가신용등급 역대최고, 국가부도위험 최저·외환보유액 최고치, 양호한 재정건전성(OECD 4위) 등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
* △30·50클럽 '19년 경제성장률(%),IMF,'19.10월) (미)2.4 (한)2.0, (프)1.2 (영)1.2 (일)0.9 (독)0.6 (이)0.0
△국가신용등급 최고등급인 AA 유지(S&P,'16.8월~) △국가부도위험(CDS프리미엄, 12.12) 25bp
△외환보유액 4,088.2억불('19.12월) △GDP대비 일반정부부채 비율('18년) 40.1%(OECD 평균 109.2%)

- WEF 국가경쟁력평가 종합순위 13위*(2년 연속 2단계 상승), 기업환경평가 190개국 중 5위** 등 국제사회는 우리나라 경제를 견조하게 평가
 - * '19년 세계경제포럼 국가경쟁력평가 결과 거시경제 안정성·ICT보급부문 2년 연속 1위
 - ** '19년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결과 6년 연속 TOP 5달성, G20국가 중 1위
- 미중 무역갈등·세계 경제 둔화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무역 1조불, 11년 연속 무역 흑자*(수출 7위, 5,424억불), 5년 연속 외국인직접투자 200억불 달성
 - * 무역 1조불 이상 달성국 중 제조업 기반으로 흑자를 이룬 국가는 3개국(한국, 독일, 중국) 불과
- 신남방·신북방 경제협력을 통한 교역 다변화*, 세계 최대 메가 FTA인 RCEP 협정** 등 신규 FTA(인니, 이스라엘, 중미, 영국)로 교역 증진
 - * 신남방 지역 수출 비중 최초로 20% 돌파, 신북방 수출 전년 대비 23.3% 증가
 - **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16개국 참가, 세계GDP의 32%(27.3조불), 세계인구의 48%(36억명)

□ 민관협력을 토대로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적극 대응

- 일본의 3대 품목 수출규제(7.4)·백색국가 배제(8.28) 이후, 기업현장애로 해소* 및 단기공급 안정화를 위한 조치 추진(인허가 기간 단축, 특별연장근로 허용 등)
 - * 민관합동지원센터 통한 물량·대체처 확보, 생산설비 확충, 금융지원 등 1,600건 이상 지원
- 강력한 추진체계와 법적 기반 확보*, 일본 규제 3대 품목에 대한 수입국 다변화·국내생산 등으로 소재·부품·장비 공급안정 유지
 - *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을 20년만에 전면 개편('19.12월), 수출규제 대응 컨트롤 타워로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출범('19.10월), 긴급추경편성(2,732억원), 특별회계 신설('20년 2.1조원)
- 근본적 산업 체질 개선과 대외 의존도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100대 전략품목' 선정·개발에 착수, 자립화 기틀 마련
 - *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6대분야 핵심전략 품목 선정, R&D 5조원 이상 투자(~'22년) 및 긴급 기술개발이 필요한 대형 R&D사업 예타면제 등

□ 신산업육성 및 혁신성장기반 구축을 통한 선도형 경제로 전환

- 데이터·5G·AI 및 수소경제 집중 육성으로 세계 최초 5G 상용화('19.4월), 수소차 보급확대, ICT 분야 국가경쟁력 2년 연속 세계 1위 등 성장 가시화
 - * △빅데이터 플랫폼(10개)·센터(100개) 구축 △5G 가입자수 증가('19.4월 27만 → 12월 460만명)△수소차 보급 5,097대('19.12월), 수소충전소 54기(착공 포함)('19.12월), 수소시범도시 선정('19.12월, 3곳)

-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등 BIG3 분야의 집중투자* 및 드론·재생에너지·핀테크 등 신산업분야 성장세** 본격화
 - * 민간투자(~'30년) : 시스템반도체 133조원, 미래차 60조원, 바이오헬스 40조원
 - **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1.5배 초과달성('19년), 핀테크 도입지수(67%, '19년), 전기차(31,886대, '19.11월)
- 규제 샌드박스 도입*·규제자유특구 지정(14개 시·도)으로 신산업 분야의 先허용·後규제 체계로 전환, 규제입증책임제·적극행정 확산** 등 규제혁신체계 구축
 - * 4대분야(ICT·산업융합·금융혁신·지역특구) 195건 규제특례 승인('19.1~12월)
 - ** 규제입증책임제 도입(1,017개 정비),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19.8월) 및 공직사회 홍보·확산
- 국가 R&D 투자확대('19년 20조 → '20년 24조), 연구자 중심의 R&D 체계혁신*, AI 대학원 신설('19년 3개) 등 혁신인재 양성** 등을 통한 혁신기반 구축
 - * 연구비 관리시스템 통합(17개→2개, '19.9월) 및 사용방식 표준화·간소화(R&D관리규정, '19.9월)
 - ** KAIST·고려대·성균관대('19년), '20년 5개 추가 등을 통해 '23년까지 총 20만 혁신인재 육성

□ 벤처창업·투자활성화 및 주력산업 회복으로 경제활력 제고

- 신규 벤처투자 역대 최고치('19년 4조원), 유니콘 기업의 급격한 증가('18년 6개 → '19년 11개), 「벤처촉진법*」 제정('20.1월)으로 민간주도의 벤처생태계 조성
 - * 벤처투자제도 일원화, 투자제한업종 대폭 완화, 조건부지분인수방식 도입, 펀드운용 자율성 강화 등
- 대규모 기업투자를 촉진*하고,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확대·도시재생뉴딜 본격화** 등 공공부문의 투자확대를 통해 경제전반의 활력제고
 - * 120조 규모 최첨단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용인) 조성('19.3월) 등 44개 프로젝트 추가 발굴
 - ** 생활SOC : ('19년) 8.6조원 ('20~'22년) 30조원 / 도시재생뉴딜 : ('18년) 100곳 ('19년) 116곳
-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19.6월)에 따른 혁신가속화로 자동차·조선 등 주력업종의 꾸준한 성과* 및 반도체 세계1위 초격차 유지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회복
 - * 친환경차 수출 34.7% 증가('19.1~11월), 2년 연속 조선 수주 세계 1위 달성

□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및 대·중소기업간 상생 정책 추진

- 하도급·수위탁 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 및 순환출자 해소* 등을 통한 정당한 경쟁과 보상을 보장하는 공정경제 확산
 - * 대기업 순환출자 고리 90% 해소 : 순환출자고리 수 ('17년) 282개 → ('19년) 13개

- 상생결제금액 2년 연속 100조원, 민간기업의 상생기금 출연 최초로 2천억원 달성,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수* 증가, 중기중앙회의 납품단가조정협의회 참여 추진 등으로 대·중소 상생협력 기반 마련

* 성과공유기업 증가(누적) : ('18년) 10,794개 → ('19년) 31,171개(2만개↑)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강화 및 자생력 제고

- 생계형 적합업종 첫 지정(서점업 등 8종)을 통한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 「소상공인기본법」 제정('20.1월)으로 소상공인을 독자적인 정책영역으로 확대

* 소상공인정책심의회 규정, 사업영역보호, 사회안전망 확충, 공제제도 확립, 판로확보 등 신설

- 카드수수료 인하*, 영세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1~2등급→1~4등급), 노란 우산공제 확대, 제로페이 도입 확산 등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 카드수수료 인하('17.7월, '19.1월)로 연간 1.4조원 부담 경감

- 온라인쇼핑 증가·신기술 등장 등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 소상공인 온라인 시장 진출 지원*·스마트상점 보급** 등을 통해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지원

*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 구축, 온라인 판로채널별 입점 및 콘텐츠 제작 지원 등

** IoT, VR·AR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소상공인 사업장에 보급·적용, 스마트 기술개발 추진

□ 고용여건의 뚜렷한 회복세 및 가계소득증가로 포용성장의 성과 가시화

- 상생형 지역일자리 확산(광주 등 6개 지역), 정부·공공기관 비정규직 전환(17.9만명)·공공부문 일자리 충원(11.3만명, '19.11월),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으로 고용의 양과 질 개선*

* '19년 고용동향(전년비) △고용률 : 66.8%(0.2%p) △취업자 수 : 2,712.3만명(30.1만명↑) △실업률 : 3.8%(0%p) △상용직 비중 : 69.5%(0.9%p), 통계작성('89년) 이후 최대

- 유망서비스업 성장에 따른 취업자 확대*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서비스업 취업자 수(만명) : ('17년) 1,880→('18년) 1,885(+5만명)→('19년) 1,920(+35만명)

* 관광산업('19.10월 기준) : GDP내 관광산업 규모 52.3조('18년 대비 6.9% 증가), 관광산업 총고용 83.2만명('18년 대비 2.3% 증가)

- 근로장려금(EITC) 확대·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교통·통신비 등 생활비 부담경감, 서민용 안심전환대출(20조원)·중금리대출확대(7.2조) 등 금융지원확대로 가계소득증가*

* '19.3분기 분위별 소득증가율(전년동기비, %) : (1분위) 4.3 (2분위) 4.9 (3분위) 4.1 (4분위) 3.7 (5분위) 0.7

□ 경제활력제고 정책의 현장 체감도 강화

- 글로벌 경기둔화, 미중 무역갈등 등 대외적 불확실성으로 투자부진과 수출감소 지속 등 우리 경제의 어려움 지속
-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한 공공·민간투자 활성화, 수출활력 제고 대책을 추진 중이나, 국민 체감적 성과는 여전히 미흡

☞ 신산업육성, 벤처활성화 등 혁신성장의 성과를 가시화하되, 민생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현장 체감도 강화 방안 마련

□ 중장기 미래전략 강구

- 인구구조 변화·4차 산업혁명·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내외 환경변화로 기존의 추격형 경제 발전모델은 한계에 직면

☞ 미래성장동력 육성·4차 산업혁명시대 혁신인재 양성·수출구조 혁신 등 경제 전반의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을 담은 미래전략 마련 필요

□ 경제활력 및 공정경제를 위한 입법과제 추진

- 공정경제 및 경제활력·신산업 분야 성장에 필수적인 법령 제·개정이 지연되어 성과창출 본격화에 한계
 - * 공정거래법(전속고발제 부분 폐지 등), 상법(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등 국회계류중

☞ 주요 입법과제가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 필요성, 시급성 등에 대한 국민 이해 제고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입법적 노력과 병행하여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행정적 차원에 가능한 조치(체계 정비, 시범사업 등)는 적극 발굴하여 추진

사람중심 일자리

- ❖ 사람중심 경제의 실현 기반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 ❖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및 일자리 질 개선 추진

주요 정책성과

□ 인프라 확대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취업자 수 및 고용률 개선*, 상용직 근로자 비중 증가** 등 주요 고용지표 개선
 - * 취업자수(명): ('18년) 2,684만 → ('19년) 2,712만 / 고용률(15~64세, %): ('18년) 66.6 → ('19년) 66.8
 - ** 상용직 비중(%): ('16년) 66.4 → ('17년) 67.4 → ('18년) 68.6 → ('19년) 69.5, 통계작성('89년) 이후 최대
- 일자리사업예산 확대*,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강화, 고용서비스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방안」 마련('19.6월) 등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에 주력
 -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17년) 15.9조원 → ('18년) 18.0조원 → ('19년) 21.2조원 → ('20년) 25.5조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마련('20년~), 실업급여 보장성 확대(지급액 10%p ↑, 지급기간 30~60일 연장), 내일배움카드 발급 확대('19.7월~)** 등 일자리 안전망 강화
 - *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직촉진수당 지급(50만원×6개월) 또는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 45세 미만 대기업 저소득 근로자(월소득 250만원 미만) 포함 등, ('18년) 62만명 → ('19년) 71.4만명
- 근로장려금 확대*, 고용실적에 따른 중소기업 정책금융 이자환급 인센티브 확대 제공(최대 2%, 50백만원 → 납입이자 이내),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확대·연장 등
 - * 근로장려금: ('18년) 179만 가구, 1.3조원 → ('19년) 388만 가구, 4.3조원 / 219만 가구, 3조원 증가

□ 대상·지역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통한 고용기회 확대

- (청년·여성) 청년 취업·창업* 지속 지원, 여성 차별없는 일터 조성을 위한 적극적고용개선조치제도(AA) 및 경단여성 무료 직업교육 확대 시행 등으로 청년, 여성 고용 증가**
 -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18년) 12.8만명 → ('19년) 14.1만명 / 청년내일채움공제: ('18년) 15.5만명 → ('19년) 25만명 / 청년전용창업자금: ('18년) 1,822개사, 1,500억원 → ('19년) 1,536개사, 1,300억원 등
 - ** 청년고용률(15~29세) ('18년) 42.7% → ('19년) 43.5% / 여성고용률(15~64세) ('18년) 57.2% → ('19년) 57.8%

- (신증년·고령자)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확대*, 퇴직자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20.5월~), 노인 일자리 확대('18년 54만개 → '19년 67만개)로 퇴직·고령자 일자리 지원
 - *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 ('18년) 74개 직무, 1,159명 → ('19년) 213개 직무, 3,119명
- (지역) 노사상생형 지역 맞춤형 일자리모델 확산*, 고용위기지역(1년)**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조선업, 6개월) 지정연장 등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위기 대응 강화
 - * 광주(자동차), 경남 밀양(뿌리기업), 대구(자동차부품), 경북 구미(이차전지), 강원 횡성·전남 군산(전기차)
 - ** 군산, 울산 동구, 거제, 고성, 통영, 창원 진해구('19.4월→'20.4월), 목포·영암('19.5월→'20.5월)

□ 지속가능한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과 핵심인재 양성

- 규제샌드박스 4+1법* 시행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산업(수소차 등) 현장애로 규제혁신,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전략 투자('20년 1조7천억) 등 신산업 육성기반 마련
 - *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19.1월), 「금융혁신법」·「지역특구법」('19.4월), 「행정규제기본법」('19.7월)
 - ** 대구(스마트 웰니스), 충북(스마트 안전제어), 세종(자율주행), 제주(전기차 충전서비스) 등 14개
- 「제2벤처붐 조성방안」 마련, 신산업·고기술 스타트업 발굴, 민간주도 벤처투자 생태계 확산으로 유니콘 기업(6개 → 11개) 증가 및 사상 최대 신규 벤처투자 달성*
 - * 신규벤처투자액: ('17년) 2.4조원 → ('18년) 3.4조원 → ('19년) 4조원
- 소재·부품·장비 투자 확대('19년 8,327억원 → '20년 2.1조원), 반도체·조선업·섬유판선 등 업종별 혁신전략 수립, 시스템반도체·바이오·미래차 등 민간투자 프로젝트(185개, 490조원) 발굴·지원*
 - * 120조 규모 최첨단 반도체 단지(용인) 조성('19.3월)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민간투자 프로젝트 44개 추가 발굴
- 신기술분야 훈련*(폴리텍 하이테크과정 등) 강화, AI대학원 선정(3개교) 및 빅데이터 등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나노디그리 운영(3개 분야, 10개 교육과정) 등 인재 양성
 - * 4차산업 선도인력양성('18년 921명 → '19년 1,278명), 폴리텍 하이테크과정('18년 538명 → '19년 784명)

□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자리 확충

- 생활안전·복지·소방·경찰분야 등 일상생활 서비스 확충을 위해 현장민생공무원(국가직 19,182명, 지방직(~3분기) 11,705명) 충원

- 보육·요양·보건의료 분야 등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9.1만개 확충, 사회서비스원(서울, 대구, 경기, 경남 등 4개소 시범 운영) 설립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 확대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정규직 전환 추진('17~'19년 누적 17.9만명)

□ 근로여건 등 일자리 질 향상으로 일터와 삶의 변화

- 최저임금 단계적 인상('18년 7,530원 → '19년 8,350원) 등으로 임금분배구조 개선*, 주52시간제 현장안착 지원 및 애로 해소 노력** 등 근로여건 개선 견인
 - * 임금 5분위 배율: ('17년) 5.06배 → ('18년) 4.67배 / 조사 시작('08년) 이후 최저
 - ** 경사노위 합의한 탄력근로제 입법 추진, 계도기간 부여·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등 보완대책 마련
- 고용·산재보험 보장성 강화*, 비정규직의 임금(월평균 8.5만원↑)·사회보험 가입률(고용보험 1.3%p↑, 건강보험 2.1%p, 국민연금 1.3%p↑) 증가 등 근로자 권익보호 및 고용안정성 제고**
 - * (고용) 영세자영업자·기업 대상 확대 등, (산재) 건설기계업종 특고 산재보험 적용('19년~) 등
 - ** 상용직 비중(%): ('16년) 66.4 → ('17년) 67.4 → ('18년) 68.6 → ('19년) 69.5, 통계작성('89년) 이후 최대
- 근로시간단축청구권* 도입('19.8월), 가족돌봄휴직제도 대상 확대(조부모·손자녀 추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유급 3+무급 2→유급 10일) 등 일·생활 균형 기반 확산
 - * 가족돌봄·건강·은퇴준비·학업 사유로 단축, 단축 후 주15~30시간 근무 등('20년~)

보완·개선 사항

□ 경제 주력인 40대 고용회복에 정책역량 집중

- 주요 고용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고용 감소* 등으로 40대 취업자 수 감소세** 지속
 - * 제조업 취업자 증감(천명) : ('16년) △21 → ('17년) △18 → ('18년) △56 → ('19년) △81
 - ** 40대 취업자 증감(천명) : ('16년) △59 → ('17년) △50 → ('18년) △117 → ('19년) △162

☞ 제조업의 스마트화, 융복합화 등 경쟁력 강화와 함께, 중·장년층에 대한 교육·훈련 및 전직서비스 강화 등 고용지원 정책 마련 필요

□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에 주력

- 신산업 관련 규제(원격의료 등) 논란 지속 등으로 지속가능한 민간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저해

☞ 이해관계자간 소통 지원을 통한 이해 조절 강화로 신산업과 기존 산업의 상생기반 마련 및 일자리 창출 노력 필요

□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노력 강화

-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최근 빠르게 성장 중인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미비, 특고·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여전

* 연간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만명): ('16년) 34.9 → ('17년) 30.6 → ('18년) 35.8 → ('19년) 51.0

☞ 플랫폼 노동자 실태조사 및 개선 대책 마련,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관련 입법 조속 추진,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내실화 등을 통한 고용안전망 보완

□ 장애인 일자리 지원 강화

- 공공기관*·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 및 고용의무 이행비율 저조 지속

* 고용률: ('16년) 2.96% ('17년) 3.02% ('18년) 3.16% / 고용의무 이행비율: ('16년) 62.6% ('17년) 55.7% ('18년) 56.6%

** 고용률: ('16년) 2.56% ('17년) 2.64% ('18년) 2.67% / 고용의무 이행비율: ('16년) 46.6% ('17년) 45.0% ('18년) 44.4%

☞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제고 등을 통한 일자리 지원 강화 노력 필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 ❖ 남북미 대화·협력 및 강한 국방 구현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공고화 및 평화경제 기반 구축 추진
- ❖ 더 크게 협력하고 더 넓게 개방하여 동아시아 교량국가의 길 마련

주요 정책성과

□ 남북미 판문점 정상회담 등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에 적극적 역할

- 한미 정상회담(3회), 제2차 북미정상회담(2.27~28) 및 남북미 판문점 정상회담(6.30) 등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지속
- 대통령 스웨덴 연설(6.14), 유엔총회 기조연설(9.23), 한-아세안 공동비전 성명(11.25)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 국제사회 지지 확보 및 협력 촉구

□ 주변국과의 긴밀한 소통으로 안보·경제 등 외교 현안 적극 대처

- (미국)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조* 및 경제협력**으로 한미 동맹 강화
 - * 정상회담(3회) 등 고위급 교류, 한미 연합연습·훈련 조정, 전작권 전환 공동검증 등
 - ** 한-미FTA 개정협정 발표(1월), 한국산 철강관세 인하(6월), 미국산 LNG 추가수입 계약(9월) 등
- (일본) 과거사 문제·여타 현안을 분리 대응하는 투트랙 기조 하에 고위급 교류*등을 통해 열린 자세로 대화·협력 추진
 - * 한일 정상회담(12.24), ASEAN+3 계기 한일 정상간 환담(11.4), 한일 총리회담(10.24) 등
- (중국) 교류·협력 복원 가속화* 및 국민체감형 실질협력 추진**
 - * 한중 정상회담(6.27, 12.23), '19년 중국인 방문자수 전년 대비 25% 증가(601만명, 잠정) 등
 - ** 미세먼지 공동대응, 중국 불법조업 감소, 광복군 총사령부 복원('19.3월) 등

□ 한반도 평화정착을 뒷받침하는 튼튼한 국방 구현

- '20년 국방예산 최초 50조원 돌파로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
 - * F-35A 스텔스 전투기·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도입, 패트리엇 성능개량 추진 등
- 병 봉급* 인상·장병내일준비적금** 활성화, 일과후 휴대전화 사용, 여군 보직 확대 등 복무여건 및 인권 개선, 대체복무 개선으로 병역이행의 공정성 제고
 - * ('19년)40.6만원 → ('20년)54.1만원(병장), ** '19.12월 27.3만명('18.8월 출시, 입대인원의 약 85%)
- 미래 연합방위 주도를 위한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한국군 핵심군사 능력의 한미 공동평가('19.3~9월) 정상 추진으로 전작권 전환준비 차질없이 진행
 - * 검증단계 : 기본운용능력(IOC, '19.8월)→ 완전운용능력(FOC, '20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평화경제 및 국민이 체감하는 평화 추진

- 평화경제 실현을 위한 사업 발굴 추진 및 국내외 공감대 형성*,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항공·산림협력 등 남북 경협 지속 추진**
 - * 평화경제 청년 아이디어톤(8월), 한반도 평화경제 국제포럼(10월), 평화협력 국제포럼(11월) 등
 - ** 철도·도로 남북 공동조사 자료 교환(2월), 남북 국제항공로 신설을 위한 남측 항로 마련(4월), 양묘장 현대화 사업 대북제재 면제 확보(7월) 등
- DMZ ‘평화의 길’ 조성·개방* 및 국제평화지대화 제안**, 판문점 견학장소 확대 운영*** 등 평화 체험의 장 마련 및 평화관광 중심지 여건 조성
 - * 3개 구간(고성 4.27, 철원 6.1, 파주 8.10) 개방 후 누적 방문객 약 1만 5천명(~'19.12월)
 -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공동 등재, 대인지리 제거 협력 등(UN총회 기조연설, '19.9.24)
 - *** 도보다리·기념식수 장소 등 4.27남북정상회담 주요 현장, 2만 3천여명 견학(총 452회, '19.5~9월)
- 서해5도 어장 확장* 등으로 안전한 바닷길 조성, 평화경제 마중물 역할
 - * 연평어장 등 245㎢ 확장(여의도 면적의 약84배) 및 야간조업 1시간 허용(일출·일몰 전후 30분)

□ 남북간 소통 및 교류협력 동력 유지

-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를 통한 인도적 지원·협력 추진
 - * WFP·유니세프의 북한 영양지원·모자보건 사업에 900만불, WHO의 북한 의료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500만불 공여 완료 등 세계 최대 규모인 1,400만불 지원
 - ** 인도적 지원(의약품, 옥수수, 밀가루 등) : 총 46건, 174억원 상당 반출승인(~'19.12월)
- 365일 24시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으로 남북간 상시 소통체계 유지
- 전국 13개 화상상봉장 개보수 완료(3~4월), 화상상봉·영상편지 관련 대북제재 면제 확보(3월), 영상편지 제작사업(6~12월) 등 이산가족 상봉 준비
- 2032 올림픽 공동유치 추진 등 체육 분야 교류협력 유지
 - * 2032 올림픽 남북공동유치 의향서 전달 및 2020 올림픽 공동입장·4개 종목 단일팀 구성 합의 (남북-IOC 고위급회의, 2.15 스위스), WT-ITF 태권도 시범단 남북 합동공연(4월, 오스트리아·스위스) 등

□ 신남방정책 본격 추진 및 외교·교역 다변화로 보호무역주의 대응

- 아세안 10개국 순방 조기 완료(9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11.25-27) 개최 등 신남방정책 추진 가속화

- 러시아 실질협력 증진*, 중앙아 5개국 정상급 교류** 등 신북방정책 추진기반 강화
 - * 가스·철도 등 중점분야 협력을 위한 「9개다리 행동계획」 서명(2월), 한러 정상회담(6.29) 등
 - ** 대통령 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방문(4월), 국무총리 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 방문(7월)
- 세계 최대 메가 FTA인 RCEP 협정문 타결*(11.4), 신규 FTA 추진(인니, 이스라엘, 중미, 영국)**
 -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 세계GDP 27.3조불(32%), 인구 36억명(48%), 교역 9.6조불(29%)
 - ** 한-인니 CEPA 타결(11월), 한-이스라엘 FTA 타결(8월), 한-중미 5개국 FTA발효(10월), 한-메르코수르 FTA협상 실시(4회), 한-영 FTA 비준(10월)

보완·개선 사항

□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 필요

- 북미간 실무협상(19.10.4~5, 스톡홀름) 이후 비핵화 협상 재개 지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안보에 대한 우려 증대
- 국제사회 대북제재 및 북한 태도 등으로 남북 협력 사업 차질

☞ 북한과의 지속적인 대화, 북·미 대화 촉진 및 국제사회 지지 확보 등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다각적 역할 필요

□ 무역분쟁, 보호무역주의 등에 따른 국제 통상질서 변화 대비

- 미중 무역분쟁,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 WTO 상소기구 기능 정지* 등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 * 미국의 WTO 상소위원 임명 반대로 WTO 상소기구(Appellate Body) 작동 중단(19.12월)
- 불확실성 증대 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부정적 영향 우려

☞ 외교·무역 다변화로 새로운 통상 환경에 대비하고, 통상 규범 선진화 논의 및 WTO 등 다자 통상체제 발전에 적극적 역할 필요

* 신남방·신북방정책 고도화, 기존FTA 활용도 제고, 양자·다자간 신규 FTA 확대 등

□ 대화 등을 통한 한일관계 개선 모색 필요

- 경색되어 있던 한일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 중이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수출규제 조치, 지소미아 문제 등 주요현안 미해결 상태

* 한일 총리회담(10.24), 지소미아 종료 통보(8.23) 효력 일시정지 및 WTO 제소절차 정지(11.22) 등

☞ 한일 정상회담('19.12.24)에서 조성된 우호적 분위기를 토대로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대화를 통한 적극적 문제 해결 노력 필요

□ 외교 현장 공무원 등의 기강 확립 및 사고 방지 대책 필요

- 재외공관·외교현장의 잇단 사건·사고 발생으로 외교 신뢰도 저하 우려

* (해외) 한미정상 통화 내용 유출(5월), 주몽골대사 부당지시(5월), 주일총영사 성추행 파문(7월) 등
(국내) 구겨진 태극기 배치(4월), 발틱3국을 '발칸'으로 오표기(3월) 등

☞ 철저한 점검과 보안 관리, 시스템 보안 등을 통한 재발 방지책 마련 필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 ❖ 획기적 권한 이양 및 재정 분권을 통해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추진, 주민참여 확대로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
- ❖ 지역 혁신기반을 강화하여 국가균형발전 실현, 사람과 환경 중심 농정 구현을 통해 살고 싶은 농산어촌 조성

주요 정책성과

□ 연방제에 준하는 자치분권 및 주민참여 기반 마련

-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지방자치, 균형발전 등 현안을 논의하는 제2국무회의로서 중앙지방협력회의* 입법 추진,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시행('19.7월)

* 대통령(의장), 국무총리·시도지사협의회장(부의장), 17개 시도지사 및 중앙행정기관장으로 구성

** 중앙부처가 법령 제·개정시 국가·지방간 사무배분의 적정성, 자치권 침해 여부 등을 행안부와 사전 협의 (자치권 침해여부 421건, 지자체 의견조회 127건('19.7~12월))

- 주민중심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31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추진, 기능중심 포괄적 사무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 국회 통과('20.1월)
 - *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자치단체 실질적 자치권 확대, 자치단체 투명성·책임성 제고,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사무수행 능률성 강화 등 4개 분야, 21개 과제
 - ** 지방이 더 잘할 수 있는 16개 부처 소관 46개 법률의 400개 사무 일시에 지방 이양
- 주민투표 대상 확대를 위한 「주민투표법」 개정* 추진, 주민소환 청구요건 완화를 위한 「주민소환법」 개정** 추진, 조례발안 활성화를 위한 「주민조례발안법」 제정*** 추진
 - * 주민투표 대상 확대(투표대상 조례명시 → 삭제), 주민투표 청구시 전자서명 허용
 - ** 서명자 수 청구요건을 인구 규모별로 세분화·완화
 - *** 주민이 단체장을 경유하지 않고 지방의회에 직접 발의, 청구연령 하향(19세→18세) 등

□ 지방재정 확충 및 재정분권 확대

- '22년까지 국세-지방세 비율 7:3 달성을 목표로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통해 추가 조세부담 없이 '20년 국세 8.5조원('19년 3.3조원) 지방 이양
 - * 지방소비세율 : ('18년) 11% → ('19년) 15% → ('20년) 21%
- 2단계('21~22년) 재정분권 범정부 협의체 구성('19.9월)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 및 자율성 확대를 위한 제도 개편방안 논의 본격화
- 소방직 국가직화와 소방인력 충원을 위해 소방안전교부세 비중 확대*
 - * 담배분 개별소비세 중 소방안전교부세 비중 : ('18년) 20% → ('20년) 45%

□ 예산과정 국민·주민 참여확대 및 지역 자율성 제고

- 국민참여예산*(정부) 및 주민참여예산제**(지자체)를 통해 국민·주민 예산과정 참여강화
 - * ('19년) 38개 사업, 928억원 → ('20년) 66개 사업, 2,694억원
 - ** ('18년) 1.2만개 사업, 1.13조원 → ('19년) 1.9만개 사업, 1.38조원
- 3.5조원(균특회계) 규모 국가사업 지방 이양('20년 예산반영), 정부-지자체 간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도입*으로 지역의 자율적 사업 추진 역량 제고
 - * 흥성(유기농업), 원도(해양치유) 등 11개 사업 선정, 3년간 1,000억원 지원('19년 300억원)

□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19.1월) 및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타면제(23개 사업 25조원**, '19.1월)를 통해 지역주도 자립 성장기반 마련
 - * 5년('18~'22년) 간 총 175조원(국비 113조원, 지방비 42조원) 투입
 - ** 지역전략산업 육성(5개), 인프라 확충(7개),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5개), 삶의 질 제고(6개)
- 14개 국가혁신클러스터별 R&D 지원(19년 420억원), 부산(블록체인)·세종(자율주행) 등 14개 규제자유특구 및 경제자유구역 후보 지구 선정*을 통해 신산업 거점화 촉진
 - * 광주(미래형자동차, AI융복합 등 4개), 울산(수소산업, R&D밸리 등 3개), 황해(시흥 배곧)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연장*,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 및 지역 상생형 일자리 확산***을 통해 지역산업 활력 회복 촉진
 - * 5개 지역(거제, 통영·고성, 창원, 목포·영암·해남, 울산 동구), '19.5월 → '21.5월
 - ** 지자체·중앙정부가 보조금·자금 지원, 세제지원,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도로·용수 인프라 구축, 정주여건·근로환경 개선 등 제공('19.2월)
 - *** 광주('19.1월), 밀양('19.6월), 대구('19.6월), 구미('19.7월), 황성('19.8월), 군산('19.10월)
-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구상 발표('03년) 이후 과학기술기획평가원(충북 음성) 이전으로 16년 만에 수도권 소재 153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완료('19.12월)하여 혁신도시 활성화 기반 확보

□ 생활SOC 확충 및 도시재생·어촌뉴딜 사업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 생활SOC 3개년계획* 수립(19.4월), 문화·돌봄·공공의료시설 등 생활SOC 확충('19년 8.6조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
 - * 3년간('20~'22년) 간 국비 30조원 투입, 지역 생활SOC 시설 확충
-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노후 주거지 생활인프라 확충, 어촌뉴딜 300 사업**으로 쾌적한 어촌 정주환경 조성
 - * ('17년) 68곳 → ('18년) 100곳 → ('19년) 116곳
 - ** ('19년) 70곳 → ('20년) 70곳 이상 → ('22년까지) 300곳

□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세종시 기능 강화

- 행안부('19.2월)·과기정통부('19.8월) 이전, 세종의사당 설치 추진(설계비 예산 10억원), 세종 중심 근무 정착 방안* 추진 등으로 세종시 행정수도 기능 강화
 - * 국무회의·차관회의 등 정례회의체 원칙적 세종 개최, 세종소재 부처 장관 서울 집무실 폐쇄

- 서울-세종 고속도로 세종-안성 구간 1년 조기 착공('19.12월)으로 수도권과 세종시 간 접근성 제고

□ 농산어촌 소득 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 경영규모에 따른 단가차등 및 소규모 농가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공익형 직불제 도입으로 중·소농 지원강화, 쌀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율 513% 유지
- 쌀값 안정세 유지* 및 쌀·수산물직불금 인상** 등으로 농림어업인 소득 증가***
 - * 쌀값(80kg) : ('17년) 15.6만원 → ('18년) 19.3만원 → ('19년) 19.0만원
 - ** 쌀/수산물직불금 : ('18년) 50/60만원 → ('19년) 55/65만원
 - *** 농가 : ('17년) 3,824만원 → ('18년) 4,207만원 (10.0% ↑)
 - 어가 : ('17년) 4,901만원 → ('18년) 5,184만원 (5.8% ↑)
 - 임가 : ('17년) 3,459만원 → ('18년) 3,648만원 (5.5% ↑)
- 재해복구비 인상* 및 재해보험 보장성 강화**로 소득안전망 확충
 - * 25개 항목 단가 인상(실거래가 70% → 80%) 및 곤충, 곤충사육사 등 10개 항목 추가
 - **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 ('17년) 69개 → ('18년) 73개 → ('19년) 78개
- 선제적 예방조치, 철저한 방역체계 구축을 통해 조류독감(AI)·구제역 발생 감소*,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 등 가축전염병 피해 최소화
 - * AI 발생 건수 : ('17~'18년 동절기) 22건 → ('18.3월~현재) 0건
 - 구제역 발생 건수 : ('17년) 9건 → ('18년) 2건 → ('19년) 3건
 - ** '19.9.16 최초 발생(경기 파주), 민·관·군 총력대응으로 10.9 이후 추가 발생 차단

□ 농어촌 복지지원 강화

- 농촌 어디서나 편리하게 보육·보건서비스(30분), 문화·여가서비스(60분), 응급상황대응(5분)이 가능하도록 3·6·5 생활권 구축 확대*
 - * ('17년) 67개 → ('18년) 624개 → ('19년) 1,058개
- 농업인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월 지원액 확대** 등 농촌형 복지지원 강화
 - * 국민연금 최대지원액 : ('18년) 4만 950원 → ('19년) 4만 3,650원 (2,700원 ↑)
 - ** 건강보험 최대지원액 : ('18년) 9만 2,430원 → ('19년) 9만 5,660원 (3,230원 ↑)
- 청년층 포함 농림어업 분야 취업자수 5.5만명 증가(전년동기 대비), 귀농 지원강화 및 농어촌 환경개선 등으로 젊은 층 귀농·귀촌 지속*
 - * 연평균('17~'18년) 귀농·귀촌 인구 50만명 중 40대 이하 33만명(66%)

보완·개선 사항

□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험성 대비

-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인구 유출로 인해 지역 시군구 상당수가 사라지는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 증가

* 소멸위험지역 : ('13년) 75개 → ('18년) 89개 → ('19년) 97개 (고용정보원, '19.11월)

☞ 재정·일자리 지원, 교육·복지, 생활환경 개선 등 소멸위험지역 대상 정책 발굴 필요

□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 수립 가속화

- 국세의 지방세 전환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재정 상황이 열악*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자립 성장 및 지역 간 균형발전 제약

* 재정자립도 : ('17년) 53.7% → ('18년) 53.4% → ('19년) 51.4%

☞ 추가 지방세 확보, 중앙-지방 간 기능 조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 신속 수립

□ 혁신도시의 자족 기능 확충 및 지역거점 간 연계 강화

- 혁신도시 클러스터 내에 기업 입주율이 저조*하여 지역 혁신 및 창업 생태계 경쟁력 확보 한계

* 기업입주율('19.3분기) : (전국평균) 38.4%, (광주전남) 17.6%, (강원) 8.4%, (제주) 5.6% 등

☞ 혁신도시 정주여건 인프라 확충 및 혁신도시와 주변 산업단지 등 거점 간 연계 강화로 클러스터 내 기업입주 및 혁신창업 활성화

□ 동물감염병의 해외 신규질병 유입 가능성 대비

- 방역 취약국(중국·동남아 등) 인접*, 철새 등 야생동물 이동 및 출입국자 증가**로 바이러스 유입에 따른 신종 동물감염병 발생 가능성 증가

*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중국 선양지역 방문여행객 반입 물품에서 검출('18.8월)

** '18년 출입국자 8,890만명 ('14년 대비 212% ↑)

☞ 신규 질병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주변 인접국과의 동물감염병 정보교류 및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 추진

국민이 주인인 정부

- ❖ 권력기관 개혁과 반부패·공정사회 추진으로 정의로운 나라 실현
- ❖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보답 및 정부 신뢰도 제고

주요 정책성과

□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와 통제 장치 마련 및 민주적 개혁

- 검찰의 기소권 독점을 65년만에 폐지하는 공수처 설치법 제정('19.12월) 및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권력기관 권한 분산 및 상호견제체계 구축
 - * 검·경을 대등협력적 관계로 개선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20.1월)
- 특수부 축소 등 검찰 조직 개편* 및 검사 징계·감찰 등 통제 강화**로 검찰 중립성·공정성 제고
 - * 직접수사 축소 및 형사·공판 기능 강화, 검사 외부파견 제한을 위한 규정 제·개정('19.10월)
 - ** 징계부금 강제집행 근거 신설 등 「검사징계법」 개정('19.4월), 검찰에 대한 법무부 직접감찰 확대 등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19.10월)
-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경찰대학 개혁**, 정보경찰 축소*** 등 경찰권 비대화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 추진
 - * 국가·자치경찰의 조직·사무·운영 등을 규정한 「경찰법」·「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발의('19.3월)
 - ** 병역·학비 등 특혜축소 및 여성비율상한 폐지 등 경찰대학 개혁방안 발표('19.5월)
 - *** 정보경찰 인력 감축('19.2월) : 전년대비 11.3% ↓ ('18년) 3,358명 → ('19년) 2,979명

□ 국민 인권보호 강화 및 범죄로부터 안전 확보

-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추진* 등 수사절차에서 인권침해 방지**
 - * 수사단계까지 국선변호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법률구조법」 개정안 국회제출('19.11월)
 - ** 포도라인·공개소환·피의사실공표 금지 및 심야조사·부당별건수사 제한 규정 마련('19.10월), 인권감독관 구속피의자 면담제 전국시행('19.9월), 영장심사관 확대배치('18년 23명 → '19년 169명)

- 아동학대·성범죄 집중 단속*, 현장중심 경찰 증원·과학수사 장비 및 기법 도입 등 치안 인프라 강화**로 국민 안전 제고

* (아동학대) 전년대비 검거인원 22.1% 증가, ('18년) 4,143명 → ('19년) 5,058명
(여성범죄) 여성안전기획관 신설 등 여성범죄전담체계 구축, 특별단속 실시('19.2~5월)

** 경찰인력 증원('18년 2,057명 → '19년 4,582명), 3D 범인식별 기술개발 등

□ 반부패 개혁 및 생활 속 적폐 해소를 통해 공정사회 기반 조성

-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 시민참여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통한 전방위적 반부패 개혁으로 국가 청렴수준 개선*

* 부패인식지수(국제투명성기구, '19.1월) 역대 최고점수(57점), 45위('17년 대비 6단계 ↑)

- 생활적폐 개선 대책* 추진으로 국민 생활 속 불공정과 병폐를 해소

* (채용)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182건 적발), 피해자 구제 및 개선방안 마련('19.2월)
(교육) 학사비위 사학교원에 공무원 징계기준 적용('19.4월), 국공립 교원·자녀 상피제 도입('19.9월)
(공직) 공공감찰·전관특혜 방지 등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공직자윤리법」 개정('19.4·12월)

-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및 부정·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19.4월), 공익신고 관련 자문변호인단 구성('19.7월)

** 「공공재정환수법」 제정('19.4월), 「범죄수익은닉규제법」·「부패재산몰수법」 개정('19.4·8월)

□ 독립·호국·민주화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예우 강화

- 3·1운동·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및 국가유공자 지원 강화**

* 유관순 열사 최고등급 서훈 추서('19.3월), 충칭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복원('19.3월), 국외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예우 강화, 여성독립운동가 적극 발굴('17년 11명 → '19년 113명) 등

** 국가유공자 명패 증정('19.1월~, 18만5천가구), 국립 괴산호국원 개원('19.10월, 2만기 규모), 순직군인 보상을 강화하는 「군인재해보상법」 제정('19.12월) 등

-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공식 지정('19.9월) 및 과거사 해결 노력 강화*

* 제주 4·3 사건에 대한 군·경 공식 사과('19.4월), 5·18 진상조사위원회 출범('19.12월), 故박종철 고문치사 등 검·경 과거 잘못 공식 사과(검찰총장 '19.6월, 경찰청장 '19.7월)

□ 언론·정치적 자유 확대 및 정부신뢰 제고

- 참정권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19.12월)* 및 언론 등 표현의 자유 신장**
 - * 선거참여연령 하향(만19세→18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 ** 언론자유지수 순위 지속 상승 : ('17년) 63위 → ('18년) 43위 → ('19년) 41위 (아시아 1위)
- 정부 혁신*과 적극행정** 추진으로 국민의 정부신뢰도 상승***
 - * OECD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1위('19년), 온라인 통합민원 '정부24' 사용자 1천만명 돌파, 칸막이 없는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한 '정부합동민원센터' 개소('19.10월)
 - ** 적극행정 면책요건 완화 등 「공무원징계령」 개정('19.8월), 공무원 책임보험 도입('19.11월)
 - *** OECD 정부신뢰도 대폭 상승 : ('17년) 32위 → ('19년) 22위

보완·개선 사항

□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철저

- 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 입법 이후, 기관 간 조직이기주의 등으로 개혁 후속조치 지연 우려

☞ 하위법령 정비, 업무체계 개편 등 제도안착 단계에서 수사공백 등 국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처간 협업 강화 필요

□ 제도에 내재한 비리·불공정 개선

- 지속적 반부패 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사회지도층에 의한 채용·입시비리 등 편법·반칙 논란으로 국민들의 상실감은 여전

☞ 합법적 제도에 내재한 불공정까지도 해소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강화 및 기존 제도 사각지대 보완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 추진

□ '가짜 독립유공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로 보훈 정의 회복

- '독립유공자 공적검증위원회'의 허위공적·친일행적·중복포상 여부 등에 대한 전수조사 진행 부진*

* 우선 검증 대상자 587명 중 273명 조사 완료('19.12월)

☞ 조직·인력 확충 등을 통한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 조속 이행 및 허위등록자 서훈 취소, 보상금 환수 등 후속 조치 철저

□ 과거사 진상조사기구 조속 구성

- 진실·화해위원회 미구성*으로 과거사 진상조사 등 문제해결 지연

* 진실·화해위원회 설치근거인 「과거사정리기본법」 법사위 계류 중('17년 국회 발의)

☞ 「과거사정리기본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공감대 형성 등 지속적인 입법 노력 필요

2. 규제혁신

1 평가 개요

□ 평가목적

- 중앙행정기관의 규제혁신 노력과 성과를 점검·평가하여 규제혁신의 실효성 확보 및 국민 체감도 제고

□ 평가대상

- 26개 중앙행정기관

구분	기 관 명 (직제순)
장관급 (17개)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방통위, 금융위
차관급 (9개)	식약처, 관세청, 조달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진청, 산림청, 특허청

* '19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상 과제수가 2개 이하인 17개 부처는 제외

□ 평가방법

- 평가의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지표 특성에 따라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병행
 - '민관합동 규제혁신 평가단'*을 구성하여 분야별 노력도 등 정성평가 실시
 - * 평가위원 :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규제관련 민간전문가 등
 - 규제영향분석 충실성, 규제혁신 만족도의 경우 외부 전문기관(규제관련 연구원, 전문 리서치 기관)을 통해 정성평가 실시
 - 부처별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규제조정실 담당관이 정량평가 실시

□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규제정비 (60)	신산업 관련 과제 정비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규제 샌드박스, 신산업 현장애로 개선 실적	15
		• 기업 건의과제 개선 실적	5
	기존규제 정비	• 규제정비 종합계획 과제, 민생분야 규제 등 정비	15
		• 일자리 창출 규제, 규제개혁신문고 건의 등 정비	20
		•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도 운영	5
규제심사 (20)	규제심사 절차 준수도	• 규제심사절차 준수 및 규제영향분석 등	15
	일몰규제 정비	• 재검도형 일몰규제 정비 및 등록 실적	5
규제혁신 체감도 (20)	규제혁신 소통 실적	• 규제혁신 관련 언론·현장소통 실적 등	10
	규제혁신 만족도	• 규제혁신 만족도 조사	10
기타 (가감점)		•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	±2
		• 규제혁신 교육	+1

2 평가 등급

* 직제순

구분	장관급 기관 (17개)	차관급 기관 (9개)
S	과기정통부	식약처
A	농식품부, 환경부, 해수부, 금융위	관세청, 산림청
B	기재부, 법무부, 행안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고용부, 국토부, 중기부	조달청, 소방청, 문화재청, 특허청
C	여가부, 방통위	경찰청, 농진청
D	교육부	-

3 총 평

□ 주요 성과

- (先허용-後규제 확산) 규제 샌드박스 제도 본격 시행,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방식의 적용대상 확대 등 규제체계 패러다임 전환 확산
 - 특히,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성공적 정착으로 당초 목표인 100건을 상회한 195건을 달성하고, 일부 사회적 갈등 과제에 대한 돌파구 역할의 질적 성과 창출
 - * 과기정통부·산업부·중기부·금융위, 분야별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운영 → 총 195건 승인 (국토부)택시동승 중개서비스, (식약처)공유주방, (문체부)공유숙박 등
- (규제개선 방식 혁신) 정부가 직접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확대 적용하여 불필요한 규제 정비
 - * 소부처, ‘정부입증위’ 구축 완료(19.3월) / 건의과제·행정규칙 대상 총 1,017건 규제개선 (복지부) 난임부부 시술지원 신청 연령제한 폐지 (과기정통부) 세대단말기 등 공동주택 홈네트워크 의무설치 대상 설비범위 완화
- (적극행정 강화) △기관장 역할·책임 강화 △적극행정 면책지원·보상 등 적극행정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공직사회 붐업 등 적극행정 문화 확산
 - 적극행정지원위원회 등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 창출 뒷받침
 - * (국세청) 적극적 법령해석으로 수제맥주 키트 제조회사에 주류 제조업 면허 발급, (관세청)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우리 기업의 원재료 수입 시 24시간 통관지원
- (민생·현장중심 규제혁신) 국민·기업과의 전방위적 소통을 통해 개별 국민·기업들에게 ‘작지만 의미있는’ 현장 중심의 규제애로 해소*
 - * △신산업 현장애로(69건) △기업건의 해소(258건) △규제개혁신문고(241건) 등 (식약처) 어린이용 의약품이 없는 소아혈액암 환자에게 성인용 신약 사용 허용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공유경제 등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핵심규제(big issue)에 대한 전략적·단계적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국민·기업들의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 필요
- 각 부처별로 설치된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통한 경직적인 규제해석 관행 타파 필요

4 분야별 평가결과

‘先허용-後규제’ 패러다임 전환 확산

주요 실적

□ 규제 샌드박스 제도 본격 시행

- ICT·산업융합·금융혁신·지역특구 분야에서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총 195건 승인 (목표 100건 대비 약 2배 성과)
 - * 법적 근거(시행일): △정보통신융합법(’19.1.17, 과기정통부) △산업융합촉진법(’19.1.17, 산업부) △금융혁신지원특별법(’19.4.1, 금융위) △지역특구법(’19.4.17, 중기부) △행정규제기본법(’19.7.17, 국조실)
- 그간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신산업과 신기술에 시장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갈등 과제를 해결하는 돌파구로 작용하는 성과 창출
 - * (산업부)국회 수소충전소, (국토부)택시동승 중개서비스, (금융위)ON-OFF 방식 해외여행자 보험, (식약처) 공유주방, (문체부)공유숙박 등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입법방식 유연화) 확대 적용

- 「행정규제기본법」에 ‘우선허용-사후규제’ 방식 명문화(’19.7월)
 - * (국조실·법제처) 법령 제·개정시 유연한 입법방식 적용, 규제 및 법령심사기준 개정·시행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중앙법령·지자체 자치법규까지 확대 적용
 - * (중앙법령, ’19.4월) “산업단지 입주업종 규제방식 네거티브화(산업부)” 등 132건 개선 (자치법규, ’19.9월) “금융관련 서비스업 확대(부산시)” 등 142건 개선

□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구축

- 자율주행차(’18.10월)에 이어 드론 분야에 대해 미래 기술발전을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규제 이슈를 발굴, 정비방안 마련(’19.9월, 국토부·과기정통부)
 - * 드론 ‘활용’ 분야와 ‘국민안전’ 분야를 균형있게 고려 → 예상가능한 규제이슈(35건) 발굴·정비 추진 (국토부·해수부) ‘하늘길 신호등’(드론교통관제시스템, UTM) 도입

개선·보완 방향

-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사회적 갈등 이슈(공유경제, 바이오·헬스 등)에 대한 돌파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기업들의 실질적인 체감으로 이어질 필요

규제개선 방식 혁신

주요 실적

- 규제개선 과정에서 입증책임을 국민·기업에서 공무원으로 변경하는, 甲과 乙을 바꾸는 혁신 추진
 - 경제계 건의*에 따라 「정부 입증책임제 추진계획」수립(국조실, '19.1월)
 - 국조실 중심으로 일부 운영되던 것을 쏠부처로 확대 시행**('19.3월)
 - * 대통령 '기업인과의 대화'시 건의('19.1.15)
 - ** 권익위, 법제처 등 규제가 거의 없는 8개 기관을 제외한 35개 부·처·청 대상
 - 각 부처별로 민간전문가가 과반수인 '정부입증위원회'(위원장: 차관 또는 민간인) 운영
- 전 부처, 입증책임제를 본격 적용하여 총 1,017건 규제 개선(3~6월)
 - (건의과제) 각 부처에서 그간 “수용곤란” 또는 “중장기 검토”로 통보했던 건의과제를 부처별 규제입증위에서 재검토 → 1,248건 중 375건 개선(30%)
 - * (복지부) 난임부부 시술지원 신청 연령제한(44세) 폐지
 - (해수부) 노인 비율이 높은 도서민에 대해 여객선 승선시 신분증 검사 절차 간소화
 - (중기부) 중소기업 창업 후 면적 20% 이내 증가시 변경승인 면제
 - (행정규칙) 고시·예규 등 행정규칙(552개)에 대해 부처별 규제입증위에서 1차 정비 → 규제 3,527건 중 642건 폐지·완화(18.2%)
 - * (과기정통부) 공동주택 홈네트워크 의무 설치 설비를 20개에서 6개로 완화
 - (식약처) 제품 개발단계의 임상시험에 사용할 의료기기에 대한 승인절차 완화
 - (법무부) 외국 체류허가 등 위임장 제출 면제대상을 '배우자 및 직계가족'에서 '민법상 가족'으로 확대

개선·보완 방향

- 규제 정부 입증책임 방식을 법령 전반(법률~시행규칙)으로 확대 시행하고,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부처별 규제입증위 운영의 내실화 필요

공직사의 적극행정 강화

주요 실적

□ 법령·제도 정비 등 적극행정 추진체계 구축

- 범정부 종합대책인 ‘적극행정 추진방안’* 마련(국조실, '19.3월)
 - * △기관장 역할·책임 강화 △적극행정 면책·지원 및 보상 △소극행정 혁파 △현장과 소통하는 문화
- 관련 법령 제·개정^①, 사전컨설팅제 확대^②, 소극행정 혁파^③, 평가^④ 등 후속 제도 정비 신속 완료
 - ①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정('19.8.6, 인사처) 등 총 22개 법령 및 지침 제·개정
 - ② 44개 중앙부처, 쏠 지자체(17개) 도입 / ('18년) 679건 → ('19.10월말) 1,055건 활용
 - ③ 소극행정 신고센터 설치('19.3월, 권익위) → '19.11월말 기준 22,350건 접수
 - ④ 중앙행정기관 종합평가('20.1월, 인사처), 지자체 적극행정지도 작성('20.1월, 대한상의)
- 부처 특성을 반영한 ‘적극행정 강화방안’* 마련(금융위·공정위·국세청, '19.12월)
 - * △(금융위)의명성 보장의 의견개진 창구 마련, 핀테크 등 혁신금융 활성화 △(공정위)조사·제재 기준과 절차 개선 △(국세청)세무조사 부담완화 및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등

□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붐업 및 경제단체 등 민간과의 협력 강화

- 제도활용 + 사례발굴 및 교육 등을 통한 공직사회 붐업
 - * (30개 기관) 차관회의 릴레이 발표('19.9~11월, 7차례)
(인사처) 적극행정 성과 공유대회('19.10월), 우수사례 경진대회('19.11월) 실시
 - ** (국세청·기재부) 수제맥주 혁신기업 지원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개최, 주류 제조면허 발급 결정('19.11월) 및 포괄적 지원을 위해 주세법 개정절차 완료('19.12월)

- 경제단체와의 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한 민관협력 강화
 - * 국조실-중기중앙회 업무협약 체결 및 중기중앙회에 적극행정 소통센터 설치('19.12월)
 - ** (인사처) 대국민 온라인 플랫폼 '적극행정 올림' 오픈('19.5월)

개선·보완 방향

- 각 부처별로 설치된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통한 경직적인 규제해석 관행 타파 필요
- 경제단체의 규제애로 해소 요구가 많은 분야에 대해 기관별 특성에 맞는 적극행정 모델 수립 필요(환경·노동·산업 분야 등)

민생과 현장 중심 규제혁신 추진

주요 실적

- 국민·기업과의 전방위적 소통·협력을 통해 현장중심의 규제혁신 추진
 - 주요 신산업 분야(수소차, VR, IoT 등)를 선정, 현장애로 개선*(2차례, 69건)
 - * 현장소통('19년 14회)을 통해 과제 발굴 →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개선 추진
 - ** (산업부) 복층형 수소충전소 건설 허용, (문체부) 유원시설 VR 시뮬레이터에 영화탑재 허용
 - 주요 협·단체, 지자체 등과의 현장간담회 개최(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 * 업종별 협·단체 및 11개 시도 간담회 실시, 기업불편 규제애로 258건 개선
 - ** (관세청) 선박수리업 등록요건 완화(사업자등록증 추가) → 영세 조선소 해외수주 계약 성사
 - 인터넷·우편 등을 통해 규제개혁신문고로 접수된 다양한 규제건의 개선
 - * ('19.12월말 기준) 241건 규제개선
 - ** (식약처) 어린이용 의약품이 없는 소아혈액암 환자에게 성인용 신약 사용 허용

- 기타 중소기업,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규제개선
 - * (기재부) 혁신성장 옴부즈만 - 대한상의·관계부처와 협업, 30회 간담회 개최
 - (행안부) 지자체 규제건의 -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지방규제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
 - (중기부) 중소기업 옴부즈만 - 현장소통 74회, 규제애로 발굴 2,866건 및 872건 처리

□ 테마별 일괄정비를 통한 민생불편 규제혁신

- 지역제한으로 인한 국민불편*, 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업 전반 불편·부담** 규제혁신
 - * (지역제한) 영업·생활편의 제한, 행정서비스 이용 제한규제 개선 등 50건('19.4월)
 - (환경부) 타 지역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
 - ** (중기·소상공인) 창업-영업-폐업-재창업 생애주기 전반 규제정비 140건('19.10월)
 - (복지부) 반영구화장 시술자격을 비의료인으로 확대하는 방안 마련

개선·보완 방향

- 기업·지자체 및 일반 국민들과의 상시적인 소통 활동을 지속하여 규제건의 해소 차원에서 민간과 정부와의 신뢰관계 구축 필요

3. 정부혁신

1 평가 개요

□ 평가목적

- 중앙행정기관의 정부혁신 추진실적을 기관별로 평가하여 정부혁신의 공공기관 확산 도모 및 국민의 삶의 질 개선

□ 평가대상

- 43개 중앙행정기관

구분	기관명 (직제순)
장관급 (23개)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보훈처, 방통위, 공정위, 금융위, 권익위
차관급 (20개)	인사처, 법제처,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방사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진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행복청, 새만금청, 해경청, 원안위

□ 평가방법

- 행안부 정부혁신 ‘전문가 평가단’* 및 ‘국민평가단’** 구성·운영
 - * (전문가평가단) 학계(16명), 민간 전문가(2명), 연구원(1명), 시민단체(1명) 등 20명
 - ** (국민평가단) 주부, 대학생, 직장인 등 다양한 국민의 지역·성별·연령을 고려하여 선발(120명)
- 평가지표 특성에 따라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 병행

□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혁신역량·실행(10)		• 기관장의 혁신 리더십	5	
		• 실행계획의 충실성 및 교육·학습활동	5	
혁신 성과	핵심사업(13)	• 기관대표 핵심사업의 추진성과	13	
	포용적 행정 (21)	•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적 가치 강화 정책조정 노력	10	
		공공구매조달	•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 및 혁신지향 공공조달 우수성과 •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5 ±1.5
		균형인사	• 여성의 의사결정 권한 • 장애인 고용의무인원 충족도	3 3
	참여와 협력 (24)	국민참여	• 국민참여 제도 활용 성과 • 정책결정 사전점검표 활성화	6 2
		정보공개 및 데이터 개방	• 정보공개 • 공공데이터 개방 및 표준화 성과	2.5 2.5
		협업·조정·갈등관리	• 정책 협업·조정	2.5
			• 협업성과 • 갈등관리	3.5 5
	신뢰받는 정부 (17)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 부처별 신뢰도	±0.5
			• 부처별 청렴도(채용비리 실적지표 포함)	3
			• 성평등 기여도	2
		대국민 서비스 혁신	• 정부24에 공공서비스 목록 현행화	1
			• 선제적 서비스 성과 • 첨단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개선 성과	2 3
	행정 효율성	•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성과 • 일하는 방식 혁신 추진성과	2 4	
	혁신성과홍보(5)	• 혁신성과의 홍보노력	5	
	국민체감도(10)	• 국민평가단 및 일반국민 혁신성과 체감도 평가	10	
	적극행정	• 적극행정 추진성과	+5	

2 평가 등급

* 직제순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S	-	-
A	과기정통부, 행안부, 농식품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인사처,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산림청
B	기재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문체부,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보건처, 방통위, 권익위	법제처,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진청, 특허청 기상청, 해경청
C	통일부, 여가부, 공정위, 금융위	방사청, 행복청, 새만금청, 원안위
D	-	-

□ 주요 성과

- 2019년은 정부혁신을 본격 추진하여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혁신성과가 창출되기 시작했고, 정부 신뢰도가 상승*
 - * 정부신뢰도(OECD) 10단계 상승(2년) : ('17년) 32위→('18년) 25위→('19년) 22위, 부패인식지수(국제투명성기구) 6단계 상승 : ('17년) 51위→('18년) 45위
- (혁신역량·실행) 「기관장 혁신 리더십」평가를 새로 도입하여 정부혁신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기관 간 학습을 통한 우수사례 벤치마킹 활성화*
 - * 혁신사례의 학습·공유의 장인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개최(7회), '정부혁신 사례지도' 공유(446건), 범정부 젊은 공무원 혁신모임 '정부혁신 어벤져스' 구성·활동(43개기관 497명)
- (포용적 행정) '5대 중점 개선분야'를 중심으로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추진**
 - * 아동, 장애인, 독거노인, 복지 위기가구, 학교 밖 청소년
 - ** (복지부) 장기결석 데이터 등 활용하여 위기아동 조기발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바우처 제공(6,500명)
(환경부) 스마트 검침으로 독거노인의 물 사용패턴을 분석, 이상 감지 시 지자체 자동통지(840가구)
- (참여와 협력) 환경·안전 등 다양한 정책분야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기관 간 협업, 민·관 협력을 통해 국민 체감형 성과 창출**
 - * (환경부) 국민정책참여단을 통해 '차량2부제', '봄·겨울 석탄발전소 가동중단' 등 미세먼지대책 발굴 (과기정통부) 국민 참여를 통한 과학기술 기반 리빙랩 R&D 추진(미화원과 야간작업복 개발 등)
 - ** (농식품부-해수부 등) 농축수산물식품 원산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중복단속으로 인한 현장불편 최소화 (경찰청-카카오택시) 택시기사에 강력범죄자·치매노인 정보를 전파하여 조기 문제해결에 도움
- (공공서비스) 임신·출산·사망 등 생애주기별 주요시기에 따른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디지털 기반의 편리한 공공서비스를 제공**
 - * (행안부) 정부24를 통해 '맘편한임신', '행복출산', '안심상속' 등 생애주기 통합서비스 제공
 - **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서비스('손택스')를 통해 세금 신고·납부, 연말정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관세청) 종이로 된 세관신고서 대신 모바일로 여행자 휴대품 세관신고(자진신고 비율 4%p ↑)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적극행정 기관평가 강화, 개인과 부서에 대한 적극행정 인센티브 확대 등 공직사회 적극행정 확산을 위한 내실화 방안 필요
- 국민참여가 단순 의견수렴·모니터링*에서 벗어나, 정책 결정과정에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필요
 - * 국민참여 범위 : 의견수렴(40%), 심의(22%), 자문(13%) 順('19.9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4 분야별 평가결과

포용적 행정

주요 실적

□ '5대 중점 개선분야*' 중심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추진

* 아동, 장애인, 독거노인, 복지 위기가구, 학교 밖 청소년

○ 아동·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안전망* 강화

* (복지부) 장기결석 데이터 등 활용하여 위기아동 조기발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바우처 제공(6,500명)
(환경부) 스마트 검침으로 독거노인의 물 사용패턴을 분석, 이상 감지 시 지자체 자동통지(840가구)

○ 소외받는 국민이 없도록 취약계층의 공공서비스 접근성* 제고

* (고용부) 장애인 취업지원 통합전달체계를 마련하고, 취업지원 서비스 연계('19년 375건)
(식약처) 소아 혈액암 환자 치료기회 확대(354명) 및 치료비용 절감(1인 3,600만원→300만원)

□ 재정·조직·인사 등 공공부문에 사회적 가치를 실현

○ 공동체·취약계층 배려 등 사회적 가치를 강화하는 국가예산을 편성*하고, 사회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정부조직·인력 운영**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19년 35억→'20년 165억), 다함께 돌봄('19년 106억→'20년 338억),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19년 616억→'20년 813억), 사회적 기업 육성('19년 895억→'20년 1,131억)

** (유연성) 긴급한 사회현안(긴급대응반) 및 미래성장 과제(벤처형조직) 추진조직 설치 지원
(현장성) 현장공무원 중심의 충원으로 경찰 현장출동시간 단축('16년 6분51초 →'19.6월 5분54초) 및 소방 구급차 3인(운전원+전문응급인력) 탑승률 제고('16년 39.5% →'19.6월 71.2%)

○ 공직 내 여성 관리직 확대* 및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제고**

* 위공무원단 : ('18년) 6.7% → ('19년) 7.8%(잠정), 본부과장급(4급이상) : ('18년) 17.5% → ('19년) 20.8%(잠정)

(경찰청) 첫 여성 중앙경찰학교장 임명 / (국방부) 첫 여군 소장 임명(항공작전사령관)

** 여성위원 : ('18년) 41.9% → ('19년) 42.8%, 성과목표(40%) 조기 달성

개선·보완 방향

- 현장에서 복지안전망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여, 서비스 혜택이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 집중 발굴·해소

* 북한 이탈주민 모자사망('19.7월), 서울 성북구 70·40대 네 모녀 생활고로 인해 자살('19.11월)

- 타기관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장애인 의무고용,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등 법정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 강화

* 장애인 의무고용률(3.4%) 9개 기관, 중증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1%) 10개 기관 미달성

참여와 협력

주요 실적

- 정책·예산·조직 등 다양한 분야에 국민의 참여 확대

- 예산·조직·법령 등 핵심과정*에 국민 참여 강화

* '국민참여 예산제' 사업 확대('19년 38개 사업, 928억원→'20년 66개 사업, 2,694억 편성), '국민참여 조직진단' 도입 및 인력배치(17개 부처, 제도개선안 258건 발굴), '국민참여 법령심사제' 운영(100건)

- 환경, 안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

* (환경부) 국민정책참여단을 통해 '차량2부제', '봄·겨울 석탄발전소 가동중단' 등 미세먼지대책 발굴 (과기정통부) 국민 참여를 통한 과학기술 기반 리빙랩 R&D 추진(미화원과 야간작업복 개발 등)

- 정보와 데이터를 국민 실생활에 유용한 내용·형태로 제공

- 안전·건강 등 국민 관심분야*를 집중 공개하고, 핵심예산** 집행정보 공개 확대

* (행안부) 교통사고·치안 등 생활안전지도 확대(4종→8종), (복지부) 전국 병원 비급여 진료비용 비교공개

** 기관장 외 실·국장까지 업무추진비 공개, 항공·숙박 등 집행내역별 해외출장경비 상세 공개

- 데이터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가데이터맵** 구축·공개
 - * OECD 공공데이터 개방평가 3회 연속 1위('15,'17,'19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18년 77개→'19년 96개)
 - ** 국가데이터맵 1단계 구축·공개('19.4월), 개방데이터의 날짜·번호 등 표준화('19.4~6월)

□ 기관 간 협업, 민·관 협력을 통해 국민 체감형 성과 창출

- 협업에 대한 보상체계를 제도화*하고, 협업의 범위를 공공·민간으로 확대**
 - * 협업 우수부서에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협업 우수직원에게 특별승진에 준하는 가점 부여 등
 - ** (농식품부-해수부 등) 농축수산물식품 원산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중복단속으로 인한 현장불편 최소화 (경찰청-카카오택시) 택시기사에 강력범죄자·치매노인 정보를 전파하여 조기 문제해결에 도움

개선·보완 방향

□ 국민참여가 단순 의견수렴·모니터링*에서 벗어나, 정책 결정과정에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필요

* 국민참여 범위 : 의견수렴(40%), 심의(22%), 자문(13%) 順('19.9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상당수 기관이 협업을 정보공유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단순한 정보공유를 넘어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협업성과 창출 필요

공공서비스

주요 실적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편리하고 유용한 공공서비스 제공

- 모바일을 기반으로 생활밀착형 대민서비스* 편의성 제고

- * (행안부) 「정부24」를 통해 종이 대신 모바일로 전자증명서 발급, 전자지갑으로 문서유통(주민등록등초본)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서비스(손택스)를 통해 세금 신고·납부, 연말정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관세청) 종이로 된 세관신고서 대신 모바일로 여행자 휴대품 세관신고(자진신고 비율 4%p↑)
-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을 활용하여 국민 실생활에 유용한 서비스* 지원
 - * (고용부) 인공지능(AI)이 이력서를 기반으로 구직자에 맞는 일자리 추천(더워크, The Work)
 - (외교부) 블록체인을 통해 재외공관에서 공증한 위임장에 대한 실시간 확인 시스템 마련(14개 은행)

□ 통합서비스를 확대하여 이용자 중심으로 공공서비스 개선

- 임신·출산·사망 등 생애주기별 주요시기에 따른 서비스 통합안내·신청*
 - * (임신) 임신 후 받을 수 있는 패키지 서비스 통합신청, '맘편한임신' 도입 추진
(출산) '행복출산'을 통해 양육수당 등 출산지원 서비스 통합신청('19년 이용률 99.4%)
(사망) '안심상속'을 통해 상속인이 금융·토지 등 사망자의 재산(11종)을 통합조회
- 관할을 넘어 한 곳에서, 한 번에 통합 민원서비스* 제공
 - * 정부합동민원센터 개소('19.10월),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확대('18년 2곳→'19년 21곳)

개선·보완 방향

- 확대되는 디지털 기반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등 기존 서비스 전달 창구를 개선하고, 취약계층에게 실생활 중심의 디지털 활용교육을 지원하여 디지털 격차 해소
- 이용자 중심의 통합서비스 혁신이 은행 등 국민 생활영역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민간 서비스까지 협력기반 확대

적극행정

주요 실적

□ 공직사회 적극행정 확산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19.8월)하고, 기관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이행*
 - * 기관장 책임 하에 적극행정이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부내확산 추진, 적극행정 교육기반 마련 및 우수성과 인센티브 등 환류방안 도입
-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확산* 및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본격화**
 - * 절차 간소화로 신속행정 구현, 신기술 활성화 지원, 사회적 약자 보호규정 확대해석 등 일선 공무원의 적극적 법령해석을 위해 분야별 사례 추가·반영
 - ** 사전컨설팅제도 쏠부처 확산('18.12월), 접수건수 증가('18년 679건→ '19년 768건)

□ 국민편의 증진, 국제적 위상 강화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도출

- 기존관행에서 벗어나 주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국민편의 증진*
 - * (산림청·소방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소방력 동원, 13시간 만에 강원(고성) 산불 신속진압('05년 32시간) (고용부) 자체개발한 근로시간 분석프로그램으로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 적발·시정지시(610억)
-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강화*
 - * (산업부)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한 WTO 분쟁 최종 승소('19.4월) (식약처) 유럽에 의약품 수출시 품질관리기준 확인서를 면제하는 'EU 화이트리스트' 등재('19.5월)

개선·보완 방향

- 적극행정 기관평가 강화, 개인과 부서에 대한 적극행정 인센티브 확대 등 공직사회 적극행정 확산을 위한 내실화 방안 필요
-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공무원의 공무상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공무원 책임보험' 등 적극행정에 따른 면책제도 활성화

4. 정책소통

1 평가 개요

□ 평가목적

-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에 대한 국민소통 추진노력 및 성과를 평가하여 국민의 정책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정책성과 체감 확산

□ 평가대상

- 43개 중앙행정기관

구분	기 관 명 (직제순)
장관급 (23개)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보훈처, 방통위, 공정위, 금융위, 권익위
차관급 (20개)	인사처, 법제처,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방사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진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행복청, 새만금청, 해경청, 원안위

□ 평가방법

- 문체부 민관합동 ‘정책소통 평가지원단’ 구성* 운영
 - * 오프라인 평가 : 3개 그룹 각 7명(민간전문가 5, 문체부 국민소통실 2) 총 21명
 - 온라인 평가 : 1개 그룹 민간전문가 10명
- 평가지표의 특성에 따라 정량·정성 평가 병행

□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정책소통 활동 (30%)	정책소통 기획	• 주요정책 소통 계획 수립, 사전협의	45
	언론소통 활동	• 정례브리핑 활동, 일일보도 관리	
	온라인소통 활동	• 기관 SNS 운영, 온라인이슈 관리	
정책소통 성과 (50%)	기관장 정책소통 성과	• 언론·국민소통 성과, 위기상황 이슈관리	75
	언론소통 성과	• 방송·신문·인터넷·외신 소통활동 성과	
	온라인 정책소통 성과	• 기관 SNS 활동 성과, 디지털 캠페인 효과	
	부처협업 성과	• 보유매체·디지털소통 협업 성과	
	정책소통 기획 성과	• 정책소통 분기별 우수사례	
정책소통 체감도 (20%)	수용도	• 접촉도 / 관심도 / 필요도	30
	만족도	• 상호성 / 개방성 / SNS 소통만족도	
	지지도	• 정책 이해도 / 정책 전달 의도 / 기관 신뢰도	
	공감도	• 빅데이터 분석	

* 가감점 : 쉽고 바른 보도자료 사례 평가(±2점)

2 평가 등급

* 직제순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S	-	-
A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인사처, 식약처, 국세청, 병무청, 경찰청, 행복청
B	교육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산업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보건처, 공정위, 금융위, 권익위	법제처,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문화재청, 농진청, 산림청, 특허청, 해경청, 원안위
C	기재부, 법무부, 중기부, 방통위	방사청, 소방청, 기상청, 새만금청
D	-	-

3 총 평

□ 주요 성과

○ 기관장 언론홍보 및 현장소통을 통한 국민 신뢰 제고

- 기관장 중심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하여 정책에 대한 국민 이해 증진 및 소통 노력 강화

* 기관장 SNS 채널 계정 보유 : ('18년) 16개(37%) → ('19년) 39개(91%), 전년 대비 54%p ↑

** 기관장 현장소통 월평균 : 장관급 기관 18.9회(전년 15.8회 대비 19.6% 증가), 차관급 기관 7.9회(전년 5.7회 대비 38.6% 증가)

○ 범 정부 현안에 대한 협업 홍보 활성화

- △일본수출규제 △아프리카돼지열병 △미세먼지 등 범정부 현안에 대한 주기적·상시적 소통협의체* 운영, 유기적 협력 소통 강화**

* 정책홍보전략회의(매주), 대변인협의회(매주), 온라인대변인협의회(격주) 개최, 정책발표 사전협의 ('18년) 273건 → ('19년) 330건, 전년 대비 21% 증가

** '19년 주요정책 인지도 및 홍보 효과(한국리서치) : 일본 수출규제 대응(92.8%),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88.9%), 미세먼지 정부대책(86.5%)

○ 디지털 소통 강화를 통한 국민 참여 및 소통 활성화

- 총 31개 기관* 디지털 소통팀 구성('18년 13개, '19년 18개) 및 정부 디지털 소통 역량 강화, 소통 채널 다변화로 다양한 정보 제공**

* 31개 기관의 콘텐츠 반응 : 좋아요·댓글·공유 등 전년 대비 5억회 증가

** 43개 부처 SNS 채널 디지털 콘텐츠 증가 : ('18년) 8.8만개 → ('19년) 9.4만개, 6.7% 증가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단발성 협업 홍보가 아니라, 정책대상에 관계된 다수 부처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속 홍보함으로써 국민 체감도 제고

○ 디지털 소통팀 전부처 확대(13개 부처 추가) 및 인기 캐릭터 활용 등 파급력 있는 핵심 콘텐츠 위주의 홍보 강화 필요

4 분야별 평가결과

기관장의 정책 소통 및 부처 협업 활성화

주요 실적

□ 기관장 언론홍보 및 현장소통을 통한 국민 신뢰 제고

- 장·차관 중심 방송출연, 인터뷰 등 언론활동 및 정책현장 설명회, 강연회 등 현장소통 활동 강화
 - * (행안부) 행안부 장관 강원도 산불 현장서 이·취임식 및 점검회의 실시
(농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역 현장을 수시 점검(23회)하여 방역 효과 및 정책 신뢰 제고
(문체부) VR, 모바일 게임산업 현장에서 간담회 실시, 실감형 게임 제작 지원 등 정책 제시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공급현장 방문(4회) 및 관련 사항 영상·카드뉴스로 제작·연계 홍보
(특허청)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여 반도체 등 현장 방문(5회), 지식재산권 애로 기업 간담회(4회) 등
(고용부) 최저임금 현장 안착을 위해 자동차업종 현장방문, 소상공인 등 간담회(7회) 실시

□ 범정부 현안에 대한 협업 홍보 활성화

-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소통 전략 마련을 위한 사전협의 강화
 - * 정책발표 사전협의 : ('18년) 273건 → ('19년) 330건, 21% 증가
- 시의성 높은 소재 및 다부처 관련 이슈에 대한 협업 확대로 정책홍보 시너지 효과 제고
 - * (과기정통부·산업부·기재부) 일본수출 규제에 따른 범정부 대응
(농식품부·외교부) 아프리카 돼지열병 추가확산 방지 및 해외 유입방지 캠페인
(환경부등 16개부처) 미세먼지 엔드게임 웹툰 제작 및 유튜브 홍보

개선·보완 방향

□ 소통 전주기적 협업 강화

- 단발성 협업 홍보가 아니라, 정책대상에 관계된 다수 부처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속 홍보함으로써 국민 체감도 제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소통 확대

주요 실적

□ 범부처적 디지털 소통 역량 강화

- 총 31개 부처에 디지털 소통팀을 구성('18년 13개, '19년 18개)하는 등 디지털 소통 역량 강화
 - * SNS 채널 디지털 콘텐츠 : ('18년) 8.8만개 → ('19년) 9.4만개, 6.7% 증가
 - ** 31개 기관의 콘텐츠 반응 : 좋아요·댓글·공유 등 전년 대비 5억회 증가

□ 국민 체감형 콘텐츠 제작·확산

- 국민의 삶과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낸 연성 콘텐츠 생산
 - * (고용부) '웹툰 빨강머리 N'과 연계 직장내 괴롭힘 사례를 제작, 인스타그램 등 SNS 확산
(환경부) 부족한 물을 핵심 컨셉으로 환경 예능 유튜브 채널 운영
(농진청) 요리 레시피, 농촌체험 등 실생활 연계 콘텐츠를 제작하고 포털(네이버 'FARM')을 통해 전파하여 농업가치 공유·확산
- 인기 캐릭터 및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디지털 콘텐츠 확대
 - * (외교부) EBS의 '핑크수'를 활용하여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홍보
(인사처) 유튜브 채널(인사처TV) P크맨, 공무원 체험 콘텐츠 제작
(행복청) 세종시의 문화 여가 환경을 '자연소리 ASMR'이라는 콘텐츠 형태로 제작

□ 쌍방향 소통으로 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 확대

- 온·오프라인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쌍방향 소통을 확대하고 정책에 국민의 참여기회 확대
 - * (국세청) 근로·자녀 장려금 공모전, 특특기자단, 소상공인 현장간담회 등 공감 소통
 - (병무청) 인기 플랫폼(틱톡)을 통해 '고맙군화' 해시태크 챌린지 실시, 좋아요 63만회 등 성과

개선·보완 방향

□ 디지털 소통팀 운영 전부처 확대(13개 부처 추가)로 디지털 콘텐츠 공급물량 확대 및 적시성 제고

□ 인기캐릭터 활용 등 파급력 있는 핵심 콘텐츠 위주의 홍보 강화 필요

5. 지시이행

1 평가 개요

□ 평가목적

- 각 부처의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상황 및 성과를 평가·환류하여 지시사항의 차질 없는 이행 및 성과 제고

□ 평가대상

- (대상 지시사항)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시달된 대통령 지시사항 중 부처별 추진 중이거나 '19년 종료된 지시사항(145건)
- (대상 기관) 38개 중앙행정기관
 - * 지시사항이 없는 5개 기관(병무청, 행복청, 새만금청, 해경청, 원안위) 평가대상에서 제외

□ 평가방법

- 지시사항별로 ±3점 가감점 부여하여 부처별 산술 평균

□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계획수립 적절성	• 지시취지 부합여부, 내용 충실성 등	±1
추진성과	• 추진계획의 실제 이행 여부 • 국민체감도 등 추진효과	±1.5
점검체계 운영	• 자체점검 추진실적	±0.5

2 평가 등급

* 직제순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가점	과기정통부, 국방부, 산업부, 고용부, 국토부, 권익위	관세청, 경찰청, 특허청, 산림청
보통	기재부, 통일부, 법무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복지부, 환경부, 여가부, 방통위, 공정위, 금융위, 보훈처	인사처, 법제처, 식약처, 국세청, 조달청, 소방청, 통계청, 문화재청, 농진청, 기상청
감점	교육부, 외교부, 해수부, 중기부	방사청

3 평가결과

주요 실적

주요 국정방향 관련 지시

□ 경제활력제고 및 사회 안전망 확충 통한 포용성 강화

-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한 공공·민간투자 활성화, 대통령의 적극적 소통 행보*를 통해 투자심리 회복 촉진

* 간담회 : 중소기업·벤처기업, 대기업·중견기업('19.1월), 소상공인('19.2월), 외국인투자기업('19.3월), 경제계('19.7월) 등

현장방문 : CES전시회('19.1월), 삼성전자('19.4월), 효성첨단소재, 현대모비스('19.8월), 삼성디스플레이('19.10월) 등

- 주력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전략'('19.6월) 수립, 서비스산업 육성 및 내수진작을 위한 관광·물류·콘텐츠 혁신전략 발표

* 관광혁신전략('19.4월, 대통령 주재 관광전략회의), 물류('19.6월), 콘텐츠산업전략('19.9월, 대통령 주재 발표회)

-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지원강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으로 분배지표 개선, 정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최저임금·노동시간 단축 정책 보완*

* '20년 최저임금은 예년보다 낮은 2.8% 인상, 주52시간제 보완(계도기간 부여, 탄력근로제 확대시행 등)

□ 신산업 육성, 혁신친화적 벤처·규제환경 구축 등 혁신성장 가속화

- 대통령 주재 현장간담회를 통해 시스템반도체('19.4월)·바이오('19.5월)·미래차('19.10월) 3대 신산업 발전전략 수립, 민간투자 프로젝트 발굴 등 대규모 투자* 추진

* '30년까지 투자계획 : (시스템반도체) 133조원, (바이오헬스) 40조원, (미래차) 60조원

- 데이터·AI·5G 등 플랫폼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방안 마련

* '혁신성장 확산전략 및 전략투자방향'('19.8월) 통해 D·N·A 분야 1.7조원 투자 발표

** 대통령, 인공지능 컨퍼런스('19.10월)에서 정책지원 및 방향제시, 이후 '인공지능 국가전략' 발표('19.12월)

- 제2벤처분 확산전략('19.3월)을 통해 민간주도 벤처활성화 및 혁신 창업생태계 구축, 신규벤처투자(4조원)·신설법인수(2년연속 10만개) 역대최고치, 유니콘 기업수 급증(11개)

- 규제샌드박스 홍보 및 기업참여 독려 등으로 195건 적용사례 발굴, 규제입증책임제 도입*·적극행정 확산**을 통해 규제추진체계의 혁신적 전환

* 대통령 주재 기업인과의 대화시 경제계 건의('19.1월) → 전부처 규제입증위원회 구축('19.3월), 1,017건 규제개선

** 수제맥주 키트 회사의 주류제조면허 발급을 위한 '적극행정지원위원회' 개최, 주세법 개정('19.12월)

□ 국민 삶 속에 내재된 특권 및 불공정 개선

-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 개최('19.6월, 11월) 및 확대 개편(부패→공정성 대책 포괄), 전관특혜 근절*, 불공정 탈세행위 대응 강화 등 불공정 개선대책 추진

* 고위공직자 안전·방산·사학에 대한 취업심사 강화, 연고관계 변호사 회피·재배당 절차 도입 등

-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19.11월),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및 제도개선안('19.2월)·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으로 교육·채용비리 등 생활속 불공정 개선

- 병역자원 부족문제 해결 및 공정성 제고 위해 병역 대체복무 개선방안 마련('19.11월)

주요현안 대응 지시

□ 일본수출규제 적극 대응

-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긴급 추경안 편성,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특허대책 마련 등 즉각 대응으로 공급안정성 확보 및 자립화 기반 마련
 - * 대통령 주재 경제계 간담회('19.7월), 기업현장방문(효성탄소섬유, 현대모비스 등, '19.8월), 현장국무회의(KIST, '19.9월)
- WTO 제소 및 외교적 대화 노력 병행, 한일정상회담('19.12.24)을 통한 해결 모색

□ 국민건강·안전보호를 위한 현안대응

- 일본수산물 분쟁 관련 WTO 승소('19.4월), 석탄재 등 4개 주요 수입폐기물 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19.8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19.11월)
-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음주운전 단속·처벌 강화 및 집중 홍보 실시
 - * 통학버스내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화('19.4월), 스쿨존 과속단속 카메라 의무화·사망사고 가해자 가중처벌 근거 마련('19.12월), 스쿨존 개선 예산 증액('20년 1,275억원, 전년대비 5배)
- 강원산불 조속 진화('19.4월),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대응('19.5월)

개선·보완 방향

□ 권력기관 개혁, 방산비리 근절 등 구조적 개혁과제의 정책성과 체감도가 낮은 상황

- ⇒ 법제화 지속 추진 및 법 통과이후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 추진 철저
 - * △(검경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자치경찰제) 「경찰법」·「경찰공무원법」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국정원법」 △(방산비리 근절) 「방위사업법」 등

□ 부처간 협업부족으로 추진이 지연되거나 장기화에 따른 추진동력 미흡

- * 위기청소년 선제적 발굴 및 지원을 위한 통합정보망 구축 지연(e-아동행복시스템, NEIS, 행복e음 등과 연계)
- ** 스텔라데이지호 침몰('17.3월) 이후, 심해수색('19.2월)에도 불구하고, 사고원인 규명 등 지연
- ⇒ 부처간 협업·신속한 절차추진·이해관계자 소통 등으로 진전된 성과 창출

Ⅲ. 기관별 종합 평가

1 평가 개요

□ 평가목적

-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에 대한 평가결과를 기관별로 합산·발표하여 기관 차원의 국정성과 제고 독려

□ 평가방법

- 일자리·국정과제(65점), 규제혁신(1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15점) 점수를 합산
- 지시이행은 가감점(±3점)으로 반영

2 평가 등급

* 직제순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S	농식품부	-
A	과기정통부, 산업부, 복지부, 중기부, 금융위	법제처, 관세청, 조달청, 소방청, 농진청, 특허청
B	기재부, 교육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보훈처, 공정위, 권익위	인사처, 식약처, 국세청, 병무청, 경찰청, 문화재청, 산림청, 행복청, 새만금청, 해경청
C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방통위	통계청, 방사청, 기상청, 원안위
D	-	-

IV. 후속조치 계획

□ 평가결과 환류 및 개선조치

- 일자리·국정과제 등 개선 필요사항을 각 부처에 통보, 개선계획 수립하도록 조치
- 기관별 개선계획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20년도 정부업무평가지 반영
- 미흡 기관에 대해서는 컨설팅 추진

□ 평가결과 우수기관 및 유공자 포상

- 우수(S·A등급) 기관에 대해서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포상금 지급
- 성과창출에 기여한 공무원 등에 대한 훈·포장 등 수여

2020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2021. 1. 26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국무조정실

I. 평가 개요

□ 평가 대상

-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43개(장관급 23, 차관급 20) 중앙행정기관의 2020년도 업무 추진 성과를 종합 평가
 - * 2020년도 신설 기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질병관리청)은 제외

□ 평가부문·방법

- (평가부문)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4개 부문
- (평가방법)
 -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위해 민간 전문가평가단에 의한 평가 및 일반국민 대상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 활용
 - 각 부처 코로나19 극복 추진동력 극대화를 위해 각 부처 코로나19 대응 및 Post-코로나 준비 노력을 중점 평가

평가부문	배점	평가항목	주관 기관	평가단	일반국민
일자리·국정과제	65	100대 국정과제, 62개 주요정책과제 추진성과,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노력 등	국조실	100명	17,550명
규제혁신	10	규제혁신 성과·체감도 등	국조실	21명	2,954명
정부혁신	10	참여·협력, 공공서비스, 일하는 방식 등	행안부	20명	8,401명
정책소통	15	국민소통 활동, 소통만족도 등	문체부	57명	17,550명

□ 추진경과

- (19.12월) '20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립, 국무회의 보고
- (20. 6월) '20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 국무회의 보고
 - * 코로나19 대응에 범부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대응노력 중심으로 평가계획을 개편하고, 부처의 평가부담을 대폭 경감하도록 평가방식도 개선

- ('20. 6월) '20년도 특정평가 세부지침 수립,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의결
- ('20. 7월) '20년도 특정평가 부처설명회(온라인 영상회의)
- ('20. 12월) 각 부문별* 평가 시행
 - *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 2020년도 평가 결과

- 기관 종합 평가 결과

* 직제순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A	기재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식약처, 관세청, 조달청,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B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문체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보건처, 방통위, 금융위, 권익위	인사처, 법제처, 국세청, 통계청, 병무청, 방사청, 문화재청, 농진청, 특허청, 해경청
C	통일부, 법무부, 여가부, 공정위	기상청, 행복청, 새만금청, 원안위

- 일자리·국정과제 부문

* 직제순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A	기재부, 과기정통부, 국방부, 농식품부, 복지부, 해수부	식약처, 관세청, 조달청,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B	교육부, 외교부, 행안부, 문체부, 산업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중기부, 보건처, 방통위, 금융위, 권익위	인사처, 법제처, 국세청, 통계청, 병무청, 방사청, 문화재청, 농진청, 특허청, 해경청
C	통일부, 법무부, 여가부, 공정위	기상청, 행복청, 새만금청, 원안위

- 규제혁신 부문

* 직제순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A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중기부, 금융위	식약처, 관세청, 조달청, 경찰청
B	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문체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방통위	국세청, 소방청, 농진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해경청
C	법무부, 국방부, 보건처, 공정위	문화재청, 원안위

○ 정부혁신 부문

* 직제순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A	교육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농식품부, 복지부, 환경부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산림청, 특허청
B	기재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문체부, 산업부,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보훈처, 금융위, 권익위	인사처, 법제처,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진청, 기상청, 해경청
C	통일부, 여가부, 방통위, 공정위	방사청, 행복청, 새만금청, 원안위

○ 정책소통 부문

* 직제순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A	행안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중기부	인사처, 법제처, 식약처, 국세청, 경찰청, 산림청
B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국방부, 농식품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보훈처, 방통위, 금융위, 권익위	관세청, 통계청, 병무청, 소방청, 문화재청, 특허청, 기상청, 행복청, 해경청, 원안위
C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공정위	조달청, 방사청, 농진청, 새만금청

II. 부문별 평가결과

1. 일자리·국정과제

1 평가 개요

□ 평가목적

- 43개 중앙행정기관별 100대 국정과제 또는 주요정책과제*의 이행실적을 국민 눈높이에서 객관적으로 분석·평가

* 국정과제가 1개 이하이거나 일자리 과제 추가 선정이 필요한 28개 중앙행정기관 대상으로 주요정책과제(62개) 선정, 국정과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

□ 평가대상

- 43개 중앙행정기관

구분	기관명 (직제순)
장관급 (23개)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보건처, 방통위, 공정위, 금융위, 권익위
차관급 (20개)	인사처, 법제처,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방사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진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행복청, 새만금청, 해경청, 원안위

□ 평가방법

❖ 코로나19에 따른 각 부처 평가 부담 경감을 위해 정량평가 없이 정성평가만으로 평가 시행

- 정부업무평가위원을 중심으로 ‘국정과제 평가단’* 구성

* 분야별 민간 전문가 참여, 10개 분과 (총100명)

- 일반국민 대상 국민만족도 조사 (17,550명)
- 코로나19 대응 및 Post-코로나 준비 노력을 중점 평가

□ 평가지표

- (국정과제) 정책추진 노력(30%), 정책성과(60%), 국민만족도(10%)를 평가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이행 노력	• (투입노력) 각 부처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예산·인력 증가, 제도신설 등 투입한 노력 평가	15
	• (일하는 방식 개선) 각 부처가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존 관행을 뛰어넘는 적극적·혁신적 행정, 부처간 협업·지원 등 전개 노력 평가	15
	• (기관장 노력 가점) 정책추진과정에서 기관장이 일상적 수준을 뛰어넘는 특별한 노력을 직접 투입하여 난제 해결, 집행기관 단축, 이견 조정 등 성과를 창출한 경우 가점 부여	최대 +6
정책성과	• (당초 의도한 성과) 과제별 정책목표·기대효과 달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50
	• (장기적 효과) 정책효과의 지속가능성, 향후 기대효과 등 정책의 장기적 효과의 크기 및 중요성 등 평가	10
국민만족도	• 과제별 정책성과 및 효과에 대한 만족도	10

- (코로나19 대응) 기관별 코로나19 대응 및 Post-코로나 대비 노력*을 평가(가점 10점 반영)
* 코로나19 대응 및 Post-코로나 대비 등과 관련된 선제적 조치, 위기 적시대응, 혁신적 정책 시행, 적극행정, 부처간 협업, 기관장 노력 등을 종합 고려

2 평가 등급

* 직제순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A	기재부, 과기정통부, 국방부, 농식품부, 복지부, 해수부	식약처, 관세청, 조달청,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B	교육부, 외교부, 행안부, 문체부, 산업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중기부, 보건처, 방통위, 금융위, 권익위	인사처, 법제처, 국세청, 통계청, 병무청, 방사청, 문화재청, 농진청, 특허청, 해경청
C	통일부, 법무부, 여가부, 공정위	기상청, 행복청, 새만금청, 원안위

-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2020년은 유례없는 위기와 시험의 행정환경 직면
- 이에 국정의 핵심을 코로나 위기극복에 두고 전 부처가 총력 대응, 국민의 협조 속에 방역과 경제 운용에서 적절한 대처를 한 것으로 평가
- 완전한 봉쇄없이 코로나 확산세를 최대한 억제하고, 극심한 세계경제 침체속에서도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의 경제성장률 달성 전망
- 권력기관 개혁 등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였고 특히 “한국판 뉴딜”을 통해 뉴노멀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
- 향후 코로나19의 완전 극복을 중심으로 지연된 국정과제의 재정비,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충격 완화와 부동산·가계부채의 안정화, 권력기관 개혁의 성공적 안착 등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

'20년도 주요 성과

❖ 코로나19 대응과 함께 포용적 복지 강화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대

- 신속한 방역 거버넌스 구축(중대본 개편, 질병관리청 승격 등)과 3T(진단검사·역학조사·환자관리) 전략으로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을 방지하고 충분한 해외백신 확보(5,600만명분)로 국민 건강 보호에 만전
- 기초연금 확대(월 30만원 대상 소득하위 20%→40%), 재난적 의료비 지원(330억원), 산재·고용보험 가입 확대(방문서비스·예술인 등) 등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충(581개소, 885학급), 고1 무상교육 조기 시행(당초 21년), 긴급돌봄 시행(유·초등 75.4만명 이용) 등 보육·교육의 포용성 제고
- 현장 소방인력 증원(4,155명),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8.0%↓), ILO 핵심협약 관련 노동관계법 개정('20.12월) 등 국민안전과 노동기본권 강화

❖ 모범적 경제운용으로 경제 회복을 견인하고, 혁신성장 기반 강화

-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의 경제성장률 달성 전망, 국가 신용등급 유지(Aa2, 무디스) 등 긍정적 평가 속에서 한국판 뉴딜 대책으로 경제활력 제고 견인
- 3대 신산업(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육성, 벤처펀드 역대최대 6.6조원 조성, 유니콘기업(11개, 세계6위) 육성, 규제자유특구 지정(24개) 등 혁신성장의 기반 강화

- 공정경제 3법 제·개정을 통한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과 함께 긴급 재난지원금(31.3조원), 소상공인진흥기금 확충(9.67조원), 온누리상품권 역대 최대발행(4조원) 등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강화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누적 18.5만명),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14.5만명), 고용유지 지원금(2.1조원) 지급 등 고용충격을 완화하고 고용의 양과 질 개선

❖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하고, 과거사·개인정보보호 등 권익보호 강화

- 공수처 제도 완비('20.12월), 검·경 수사권 조정·시행('21.1월), 자치경찰제 시행('21.1월), 국정원법 개정('20.12월) 등 권력기관 개혁 완성
- 과거사정리법 개정('20.5월), 진실화해위원회 재출범('20.12월) 등 과거사 규명의 기반을 구축하고, 위탁병원 확대(320→418개소), 강원권 보훈요양원 건립 등 국가유공자 의료·복지시설 확충
- 디지털 정부혁신을 지속 추진(OECD 1위, '20.10월)하고, 데이터 3법 개정('20.2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20.8월) 등 개인정보 보호체계 일원화

❖ 자치분권 기반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가균형발전 촉진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12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20.1월) 등 실질적 자치분권 기반 마련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교부(3,475억원),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401곳), 쪽방촌(2곳)·위험건축물(10곳)·빈집(1,200호) 정비 등 국가균형발전 촉진
- 농어촌 공익형 직불제 도입, 농업재해보험 지원 확대(3,807→5,912억원), 생활SOC 복합센터 조성(693개소) 등 농어촌 소득 및 복지 기반 확충
- 조선업 위기 지역 지원(울산·거제 등), 해운업계 긴급자금 지원(1.7조원), 조선업 수주 1위('20년) 등 조선·해운산업 경쟁력 제고

❖ 외교지평 확장과 강한 국방으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구현 노력

- 남북대화 의지 표명(3주년 특별연설, 유엔 기조연설 등), 대북 인도적 지원(세계식량계획에 1,000만불 공여) 등 한반도 평화 구축 노력 지속
- 글로벌호크(고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배치 등 핵심 전력을 강화하고, 단체 의료보험 도입, 휴대전화 사용 등 군 복무여건 개선
- 전세기·군용기 투입을 통한 귀국 지원(5만명) 등 재외국민 보호와 함께 진단키트·마스크 인도적 지원(6,700만불) 등 글로벌 보건협력 선도
- 12개 미군기지 반환('20.12월), 한중 신속통로 구축('20.5월),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 시행('20.10월) 등 주변국과의 실질협력 강화

- RCEP 서명('20.11월), 러시아 LNG선 수주(6조원) 등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성과창출 가속화
- 2050 탄소중립 선언('20.10월), 제1회 푸른 하늘의 날 기념식('20.9월) 등 그린뉴딜 추진 의지를 국제사회에 표명

개선·보완 필요사항

- 방역 상황에 대한 안정적 관리, 경제적 충격 완화,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등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한 조기 극복 노력 지속
- 한국판 뉴딜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통해 새로운 경제 질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부동산, 가계부채 등 경제 리스크 요인 관리 필요
-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등 권력기관 개혁 과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
- 저출산·고령화 대응, 친환경 미래에너지 전환, 대학경쟁력 강화, 재벌개혁과 상생협력, 재정 분권 등 사회구조적 변화에 적극적 대응
- 주변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남북대화 재개 여건 조성을 위한 적극적 역할 요구

4 국정목표별 평가결과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 ❖ 국민의 전 생애에 걸쳐 국가책임 강화로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
- ❖ 국민생명 보호 강화 및 노동 존중 등을 통해 '차별없는 공정사회' 조성

주요 정책성과

□ 코로나19 위기에서 방역과 의료역량 강화를 통해 국민 건강권 확보

- 방역 거버넌스 구축* 및 K-방역**을 통해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을 방지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개편, 질병관리청 승격, 보건차관제 도입, 역학조사관 증원(223명)

** 3대 원칙(개방성, 투명성, 민주성) 하에 드라이브스루 선별검사, 생활치료센터, 전자출입명부, 마스크 5부제 등 창의적 방안 신속 도입

-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자주권 확보* 기반 마련 및 전 국민이 접종 가능한 해외 백신 확보 (5,600만명분)

* 치료제 : '21년초 개발 목표, 백신 : '21년말 개발 목표

□ 맞춤형 사회보장 강화로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 기초연금 상향* 및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의 생활안정 지원**
 - * 월 30만원 수급대상자 : ('19년)소득하위 20% → ('20년)소득하위 40%
 - **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2,171만 가구), 저소득층 생활지원(169만 가구), 위기가구 생계지원(55만가구), 건보료 경감(1,160만명, 1인당 평균 91,559원 경감)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가계 의료비 부담 경감('18.1월~'20.6월) : 약 7조원
- 산재·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 * 산재 : 방문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차주('20.7월), 고용 : 예술인(20.6월), 특수형태근로자(20.12월)

□ 보육·교육의 포용성 제고로 함께 키우는 사회 구현

-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충*을 통해 양질의 보육·교육 서비스 제공 및 돌봄 서비스 확충**을 통해 돌봄 공백 완화
 - * ('20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 581개소, 국공립 유치원 확충 : 885학급
 - ** 코로나19에 따른 긴급돌봄 서비스 등 : 유치원생 49.8만명, 초등학교생 25.6만명
- 고 1 무상교육 조기 시행(당초 21년), 대학등록금 지원* 등 교육비 부담완화
 - * 대학 등록금 수혜자 비율 : ('18년) 49.52% → ('19년) 49.58% → ('20년) 51.18%
- 원격교육체제 구축* 등 다양한 유형 수업 지원 등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의 학습권 보장
 - * 공공플랫폼 구축(일일 접속 가능인원 600만명), 스마트기기 무상대여(28.3만명)

□ 노동기본권 강화를 통한 노동존중 사회 실현

- 노동 3법 개정*(20.12월) 및 근로자대표제도 개선(20.10월, 노사정 합의)** 등 노동기본권을 국제적 수준으로 강화
 - * 노조법·교원노조법·공무원노조법 : 해직자 노조가입 허용, 공무원 노조가입 직급제한 폐지 등
 - ** 근로자대표 선출방법 개선(직접·비밀·무기명 투표), 활동시간 근로시간 인정, 임기 3년 보장 등
- 특별연장근로 개선(20.1월)* 및 주52시간 보완입법(20.12월)**을 통해 기업 현장애로 해소 및 노동자 보호 강화
 - *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에 재해·재난 수습 외 돌발상황, 예기치 못한 업무량 증가 등 추가
 - ** 탄력근로제(단위기간 확대, 3→6개월), 선택근로제(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정산기간 최대 3개월 확대), 특별연장근로(사용자의 근로자 건강 보호조치 의무화 등)

□ 국민생명 보호 및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한 기반 구축

- 범정부 교통안전대책 추진, 소방 사고현장 대응능력 강화 등으로 사고·재난으로 인한 인명 피해 최소화*
 - * △ 교통사고 사망자 수: ('19년) 3,349명 → ('20년) 3,080명(8.0% ↓)
 - △ 울산(20.3월) 및 고성(20.5월) 대형 산불, 울산 고층 주상복합화재(20.10월) 사망자 0명
- 미세먼지 감축대책 추진 등으로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 및 장기 저탄소발전전략 마련 등 탄소중립 사회 이행 기반 확충**
 - *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 ('16년) 26ug/m³ → ('18년) 23ug/m³ → ('20년) 19ug/m³
 - ** 대통령 2050 탄소중립선언('20.10월),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 UN 제출('20.12월) 등

□ 여성에 대한 안전 기반 강화 및 전 국민 문화향유 인프라 보강

-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마련(20.4월) 및 종합적·체계적인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기반 구축*
 - * 한국여성인권진흥원('19.12월 출범)을 통한 젠더폭력 대응 효율화·체계화, 여성폭력방지기본법('19.12월 시행)에 따른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수립('20.2월)
- 문화기반시설 확충(생활문화센터, 공공도서관, 공립박물관 등 3,017개) 및 온라인 문화 콘텐츠 서비스 강화*로 비대면 수요에 부응
 - * 온라인 공연 생중계 지원(48만명 시청), 문화유산채널 웹서비스(896편) 제공 등

개선·보완 필요사항

□ 고용·주거·교육 중심의 저출산 대책 강화

- 범정부적 저출산 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 하락세 지속*으로 '20년말 기준으로 사상 처음 인구가 감소

* 합계출산율 : ('18년) 0.98명 → ('19년) 0.92명 → ('20.1~3분기) 0.86명

☞ 출산·양육 지원 확대에서 나아가, 고용, 주거, 사교육 등에 대한 사회 구조적 대응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품질 제고

- 공공임대주택을 당초 목표 이상으로 공급*하고 있으나,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공급 부족** 및 기존 공급주택의 시설수준도 미흡

* 공급실적(계획) : ('18) 14.8만호(13.2만호), ('19) 13.8만호(13.6만호), ('20) 14.9만호(14.1만호)

** 사례) 동탄 A단지외의 경우 총 1,640 가구 중 407가구(25%)에서 공실 발생('20.12월 기준)

☞ 국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임대주택(청년, 신혼부부 특화 등) 공급 및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 방안 강구

□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대학구조조정방안 마련

- 대입 가능자원 감소 추세('19년 52.6만명→ '24년 37.3만명)에 따라 현 입학정원 유지 시 '24년에는 약 12만명의 대학정원 미달 발생 예상

☞ 대학간 통·폐합 및 사립대학 자율적 정원 감축 또는 폐교 지원, 지역 특화 대학 혁신 모델 마련 등 강구

□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방안 마련

-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병행, 실시간 쌍방향 수업*보다는 동영상 제공방식 등이 다수 활용되어 기초학력 저하 및 교육격차 발생** 우려 제기

* 쌍방향 수업 실적 : 55.7%('20년 11월기준, 교육부 조사)

** 코로나19 이후 학습격차 발생 응답 : 96% (서울시교육청 학생·학부모·교수 대상 설문조사, '20.11월)

☞ 실시간 쌍방향 수업 확대, 학생별 맞춤형 원격교육 체계 마련 등 원격수업 효율화 방안 강구

더불어 잘사는 경제

- ❖ 방역과 경제의 조화를 통한 '위기에 강한 한국경제' 입증
- ❖ 경제혁신·상생도약 등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 구축

주요 정책성과

□ '위기에 강한 한국 경제' 입증, 국제적 위상 공고화

-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의 경제성장률 달성 전망 등 모범적인 경제 지표* 실현
 - * △'20년 경제성장률 전망(%), OECD, '20.12월) (한) △ 1.1 (미) △ 3.7 (일) △ 5.3 (독) △ 5.5 (프) △ 9.1
 - △국가신용등급(Aa2, 무디스) 中·日보다 상위로 안정적 유지 △외환보유액 4,431억불('20.12월)
- 극심한 글로벌교역 위축속에도 세계 7위 수출국 위상을 공고화하였으며, 6년 연속 외국인직접투자 200억불 달성
 - * 수출실적(매년12월 기준) ('17.12월) 490 → ('18.12월) 482 → ('19.12월) 457 → ('20.12월) 514억불
- 국가발전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정책」 수립·추진, 새로운 경제질서에 선제적 대응
 - * '25년까지 총 160조원 투자, 190만개 일자리 창출하는 종합계획 마련(7월)
 - ** OECD('20.8월) : 디지털·그린·사람투자를 통해 환경친화적·포용적 경기회복 기대

□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신산업·미래에너지 육성 및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3대 신산업 육성 및 전통 주력산업 총력 지원
 - * △시스템반도체 수출 역대 최대치 기록(303억불) △바이오헬스 사상 첫 100억불 돌파
 - △세계최초 수소차 1만대(국내,누적) 보급('20.11월) △자동차생산 세계 5위(2계단 ↑) △조선업 수주 세계 1위
- 규제샌드박스·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4차산업 대비 신기술·신산업 육성
 - * △규제샌드박스: 공유주방·숙박,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안면인식 비대면계좌 개설 등
 - △규제자유특구 지정(24개): 민간투자(7,309억원), 공장설립(13개), 기업이전(115개) 유치

- 디지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투자여건 조성으로 그린 에너지 확산 기반** 마련

* △데이터센터용 AI반도체 국내최초 개발 △디지털배움터(1,000개소)·전환교육(6,600명) 추진

** △신규재생에너지설비(4.7GW, 잠정) 3년연속 초과달성 △세계최대 연료전지 발전시장 조성(597MW)

□ 벤처투자 활성화 등 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 구축

- 벤처펀드 결성액 역대 최대인 6.6조원 조성, 유니콘기업* 발굴·육성, 창업·벤처기업 제도정비를 통해 투자 중심의 혁신생태계 조성

* 'K-유니콘 발굴·육성사업'으로 아기(40개)·예비유니콘(30개) 선정, 세계6위 유니콘기업(11개) 보유국

** 창업지원법, 벤처기업법에 분산된 제도를 일원화하여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시행(8월)

- 4대 핵심연구분야를 비롯한 국가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우수기술 중소기업의 창업·성장촉진을 위한 R&D 강화**

* 감염병대응, 뉴딜, 소재·부품·장비 등 '20년(24.4조원) 대비 11.8% 증가한 27.4조원('21년)

** (중기R&D) '19년 1.7 → '20년 2.3조원 / (스마트공장) '20년 목표(1.8만개) 초과달성(1.9만개)

□ 건강한 시장질서 확립 및 상생·협력의 기업 문화 확산

- 공정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제·개정으로 총수일가의 전횡방지, 부당내부거래 근절 등 기업경영의 투명·건전성 제고기반 조성

* (상법)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공정거래법) 사익편취 규율대상 확대, 사인의 금지 청구제도 등,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감독체계 구축

- 성과공유제* 확산으로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문화 확산을 제고하고,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문화 확산

* 성과공유제 도입현황(누적) ('18) 10,794 → ('19) 31,171 → ('20) 51,275

** 자상한기업을 15개 추가발굴(누적25개)하여 관련 협·단체와 연결하는 등 상생협력문화 지속 확산 중

□ 소상공인·자영업자 자생력 제고 및 일자리·민생대책을 통한 고용충격 완화

- 정책자금 지원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강화하고, 온누리상품권 판매확대, 동행세일 등을 통해 소비분 촉진

* △소상공인진흥기금 확충(3.15조원 → 9.67조원) △VR·AR·IoT 적용 스마트상점 보급지원(4천개)

△온누리상품권 역대 최대발행(4조원), 판매(3.4조원) △동행세일 기간 전통시장 매출 증가(+11%)

-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14.5만명), 코로나19 피해계층 대상 맞춤형 대책*을 통해 급격한 고용 약화에 대응, OECD국가 중 상대적으로 양호한 고용지표 시현**

* 취약계층 생계·재취업 지원(3.2조원), 고용유지지원(2.1조원), 고용보험 지급기간·지급비율 상향

** 취업자증감률(% , '20.1~11월, 동기비) (한)△0.7 (일)△0.7 (독)△0.9 (캐)△5.4 (미)△6.2

실업률상승폭(%p, '20.1~11월, 동기비) (한)+0.1 (일)+0.4 (독)+1.0 (캐)+3.9 (미)+4.5

개선·보완 필요사항

□ 코로나19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경제회복 추진 필요

- '21년은 세계경제 회복 등 대외여건 개선이 기대되지만, 코로나19 재확산,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물류비용 상승 등의 리스크 요인 상존
- 코로나19 정책자금 등으로 증가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방안 마련 필요

☞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에 최우선 방점을 두어 내수경기를 신속히 재생·진작시키고, 투자·수출 개선을 병행·추진

- 가계부채 증가가 우리경제와 금융에 큰 위협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 등 마련

□ 탄소중립을 향한 친환경·저탄소 이행 본격화

-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혁신적인 온실가스 감축 조치 요구
 - * 온실가스 배출정점('18년) 이후 탄소중립 소요기간(32년) 및 산업구조(탄소 다배출업종의 높은 비중) 등을 감안할 경우 도전적인 과제로, 이행과정에서 기업·국민의 부담 발생 우려
- 에너지와 산업을 비롯한 주요 경제분야에서 '2050 탄소중립' 추진계획을 구체화하고 사회 구성원 모두의 참여와 실천을 유도할 필요

☞ 탄소중립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조속히 수립하고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속도감 있게 이행

- 아울러, 탄소중립 정책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산업계, 시민, 전문가 등과 충분한 소통·공감대 형성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

□ 사회적가치 및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제 추진

- 사회적가치 회복 및 상생·협력 강화에 필요한 법령 제·개정이 지연되어 성과 창출에 한계
 - * (사회적가치기본법) 21대 국회 재발의중으로, 기본법안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
 - (사회적경제기본법) 한국사회적경제원 설립관련 부처간 이견, 구매의무비율에 대한 견해차이 등
 - (유통산업발전법) 복합쇼핑몰 입점·영업제한 관련 이해관계자 등 반발로 21대 국회에서 재논의 중

☞ 주요 입법과제가 지연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법안별 주요쟁점 해소전략을 수립하고 당정의 긴밀한 협력 등 속도감 있는 처리 필요

국민이 주인인 정부

- ❖ 권력기관 개혁 완성과 일관된 반부패 정책 추진으로 국가 투명성 향상
- ❖ 국민 인권보호 및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예우 강화

주요 정책성과

□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 완성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출범을 위한 법제도 및 운영 기반 완성*으로 공직사회 신뢰도 및 국가 투명성 제고
 - * 공수처설립준비단을 설치하여 관련 규정 마련, 장소 확보, 공수처장 추천 및 인사청문 관련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국회규칙」 제·개정(20.8월) 완료
-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핵심 하위법령 제·개정* 완료(20.10월)로 검·경간 상호협력의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정립
 - *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20.1월) 이후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일에 관한 규정 등 마련
-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 경찰개혁 법제화(20.12월)로 주민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및 경찰수사의 공정성·전문성 제고 기반 마련

-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국내정치 개입 차단 등 국가정보원의 직무 명확화(국정원법 개정, '20.12월)로 정보기관의 위상 재정립 및 국민 권익 증진

□ 민생·인권 우선 국민 보호 및 치안 역량 강화

- 변호인 조력 확대*, 인권수사제도 개선**, 경찰관 인권행동강령 선포 등 인권친화적 검·경像 정립
 - * 변호인 참여권을 피의자 이외 피해자, 참고인 등으로 확대, 조사내용 무제한 메모 허용 등
 - ** 범죄정보 수집 목적의 수용자 소환 등의 수사관행 개선, 출국금지 인권개선 표준화 방안 마련 등
- 디지털 성범죄 엄정 대응*, 과학수사 기반 강화**로 민생치안 역량 강화
 - * 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본부 설치(3월), 박사방·N번방 관련 피의자 535명 검거, 피해영상 삭제
 - ** 경찰·국과수 합동 법과학감정실 설치(충남·경북), 첨단 장비·기법 개발
- 범죄피해자지원 기금 확충, 교정시설 내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인력·조사시스템 확대 등 촘촘한 인권보호망 구축 노력

□ 반부패·공정 개혁 및 불공정 관행 감시 강화

-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 시민 참여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 반부패 현안 해소 등 우리나라 반부패·청렴 수준 대내외 평가 상승*
 - * 부패인식지수(국제투명성기구, '20.1월) 세계 30위권('17년 51위→'18년 45위→'19년 39위)
 - '20년 공공기관 청렴도 8.27점으로 4년 연속 상승('17년 7.94점→'18년 8.12점→'19년 8.19점)
- 생활 속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 개선, 공공부문 채용 비리 근절 노력
 - * (의료) 시도 의료기관 개설허가위원회를 통한 사무장 병원 진입 사전 차단(의료법('20.3월) 개정)
 - (보조금) 공익신고 대상에 보조금법 포함(공익신고자보호법('20.5월) 개정)
 - (채용) 공공기관채용비리 전수조사(83건 적발), 피해자 구제(122명) 및 개선방안 마련('20.6월)

□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보상으로 영예로운 삶 보장

- 「과거사정리법」 개정('20.5월) 및 진실화해위원회 재출범('20.12월)으로 미해결 과거사 진실 규명을 통한 피해자 명예회복 추진
-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 강화(보상금 5% 인상), 의료·복지·안장시설 확충*
 - * 위탁병원 확대('19년 320 → '20년 418개소), 강원권 보훈요양원 개원, 치과·요양병원 및 재활시설 건립(6개소, '18~'23년), 대전현충원·제주국립묘지(6만기, ~'21년) 등

- 6.10만세운동 국가기념일 지정, 독립·호국·민주화 10주기 기념사업 추진*
 - * 봉오동·청산리전투 100주년(6.7, 10.21.), 6·25전쟁 70주년, 4·19혁명 60주년,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위기상황 극복 및 국민통합 메시지 전달

□ 디지털 선도국가 도약 및 개인정보 보호체계 정립

- 공공서비스의 디지털 혁신*노력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높게 평가**
 - * 공공데이터 개방, 정부행정서비스 창구 일원화(정부24), 모바일 신분증 도입 등
 - ** 제1회 OECD 디지털정부평가 종합 1위('20.10월), UN 전자정부평가 온라인참여지수 세계 1위('20.7월)
- 생애주기 서비스 등 국민 삶과 밀접한 서비스 확대*를 통해 편의 제고
 - * △전자증명서 발급 : ('20.2월) 13종 → ('20.12월) 100종, △디지털원패스 확산 : ('19년) 24만명 → ('20년) 104만명, △출산·임신·돌봄·상속 등 일괄신고·조화가 가능한 '생애주기 서비스': ('19년) 2종 → ('20년) 6종
-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하는 데이터 구현*을 위한 기반 마련
 - * 개인정보체계 일원화·가명정보 도입 등 개인정보보호법 시행('20.8월),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20.9월), 한-EU 적정성 평가를 위한 고시 제정('20.9월)

개선·보완 필요사항

□ 완료된 개혁 과제의 연착륙 도모

- 공수처,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및 국가수사본부의 본격 운영을 앞두고 실제 적용상 혼란 및 국민 불편 가중 우려*
 - * 국가경찰-자치경찰-국가수사본부 간 업무 분장, 경찰의 정치중립성 약화 지적, 치안 공백 등

☞ 하위법령 정비, 조직·인사체계 완비 등 치밀한 준비와 기관 협력 강화로 권력기관 개혁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 필요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보완

- 선출직 공직자 및 고위공직자의 부적절한 수의계약, 의사결정 참여 등 공직자의 이해관계 관련 부패사건*으로 국민적 불신 야기
 - * 국회의원 일가의 건설인허가 특례 및 편법증여 의혹, 퇴직공직자 전관예우 등

☞ 사익추구 금지대상 확대(행정부 이외 입법부·사법부·지자체 등 포함) 등 국민의 높아진 기대에 맞춰 공직자의 청렴성 향상 노력 지속

□ 공익법인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 정의기억연대의 기부금 유용 의혹('20.6월) 등 공익법인 부실 관리로 비영리단체(NPO)에 대한 국민 불신 증대

☞ 공익법인에 대한 통일적·전문적 관리방안 조속 마련으로 특혜성 공익법인 남설 방지, 투명성 확보 계기 마련

□ 과거사의 완전 해결을 위한 통합적 후속조치

- 진실화해위원회 재출범 등으로 진상규명 성과가 기대되고 있으나, 후속조치가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과거사 문제의 균형있는 해결에 한계*

* 과거사별 지원 기준 등 형평성 문제, 피해자별 배·보상 지연 등

☞ 과거사 후속조치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 등 종합적·체계적 추진 필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 ❖ 자치분권 제도화 및 재정분권 추진을 통해 실질적 자치분권 시대 구현
- ❖ 국가균형발전 촉진 및 농산어촌 복지 지원으로 지역의 자립적 성장 기반 확립

주요 정책성과

□ 주민자치 제도화를 통한 자치분권 기반 확립

- 중앙·지방 정례 협의체 운영*을 통해 국정운영의 동반자 관계 구축, 32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12월)으로 실질적 자치분권 기반 마련

* 시·도지사 간담회(2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매일), 중앙지방정책협의회(11회)

** 주민 참여권 강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자치 정보 적극 공개 등

- 「지방일괄이양법」 제정('20.1월)으로 중앙부처 사무 지방 이양(16개부처 400개), 초빙교사 임용결정 권한 이양 등 교육자치 저해 규제 정비(지침·사업 122개)

-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법안 제·개정 추진(주민투표·소환·조례발안법, '20.12월 발의)
 - * 투표 최소구역 조정(읍면동→통리반), 주민소환 요건 완화(투표율 1/3→1/4), 청구연령 하향(19세→18세) 등

□ 지방재정 확충 및 주민참여 강화로 지방재정의 자주역량 제고

- 지방소비세율 및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 등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일 반사업 전환(3.6조원) 등 재정사업 자율성 확대
 - * △지방소비세율 인상('18년11%→'20년21%) : 지방세수 8.5조원 확충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18년20%→'20년45%) : 지방재정 0.4조원 확충(소방·안전분야 지출재원)
- 주민참여예산제 확산*을 통해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의 통제 강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징수 강화를 통한 체납률 감소**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 * 주민참여예산액(조원)/비중(%) : ('19년) 1.4/0.53 → ('20년) 1.6/0.60
 - ** 지방세 체납률 : ('17년) 4.71% → ('18년) 4.13% → ('19년) 3.73%

□ 산업 인프라 조성, 도시재생 등 지역경쟁력 강화로 국가균형발전 촉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교부 결정(3,475억원), 지역산업활력펀드 조성(260억원), 스마트그린산단 추가 선정(광주첨단·대구성서·여수) 등 지역균형 성장 도모
-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속 추진(401곳), 도심내 쪽방촌·위험건축물·빈집 정비*를 통해 지역도 시의 활력 제고
 - * (쪽방촌) 대전역, 부산동구, (위험건축물) 전남 해남 매일시장 등 10곳, (빈집) 1,200호
-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로 입주기업 증가*, 새만금 동서도로 개통('20.11월), 세종 스마트 시티 착공('20.6월) 등 혁신도시를 지역 경제발전 거점으로 성장 지원
 - * 입주기업 수(개) : ('16년) 249 → ('17년) 412 → ('18년) 693 → ('19년) 1,425 → ('20년) 1,663

□ 농어촌 소득기반 확충 및 조선·해운산업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공익형 직불제 도입·시행*으로 농어가 소득보전 강화, 코로나19 상황에도 비대면 마케팅 지원 등으로 농식품 수출액 증가(전년대비 7.7%↑)
 - * 「농업농촌직불법」 제정('19.12월, 시행 '20.5월), 「수산업어촌직불법」 제정('20.5월, 시행 '21.3월)

- 친환경농업지구 및 스마트팜 확대* 등을 통해 농림어업 취업자 증가**
 - * 친환경농업지구(개소) : ('19년) 47 → ('20년) 65, 스마트팜 축사(호) : ('19년) 2,390 → ('20년) 3,463
 - ** 취업자 수(만명) : ('17년) 128 → ('18년) 134 → ('19년) 140 → ('20년) 145
- 조선밀집 위기지역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유동성 위기를 겪는 해운업계 긴급자금 (1.7조원) 지원 등으로 조선*·해운산업 경쟁력 회복
 - * '20년 숲 세계 선박 발주물량의 42.6% 수주(세계 1위 달성)

□ 농산어촌 복지 제도·시설·서비스 강화를 통해 지역 정주여건 개선

- 농촌지역 '365생활권*', 교통서비스**, 생활SOC 복합센터(693개소) 지속 확충
 - * 보육(30분)·문화(60분)·응급상황(5분) 대응시설 : ('18년) 624개 → ('19년) 1,058개 → ('20년) 1,311개
 - ** 100원택시·마을버스 수혜인원 : ('18년) 194만명 → ('19년) 296만명 → ('20년) 410만명
- 농업재해보험 및 농업인안전보험 재정지원 확대*, 국민연금 지원액 인상**
 - * 재해보험(억원) : ('19년) 3,807 → ('20년) 5,912, 안전보험(억원) : ('19년) 712 → ('20년) 834
 - ** 월 최대지원액 : ('15~18년) 40,950원 → ('19~20년) 43,650원
- 산림복지시설* 확충 및 어촌뉴딜 300사업('20년 120개소) 차질없이 추진
 - * 자연휴양림·산림욕장 등 : ('18년) 664개 → ('19년) 786개 → ('20년) 834개

개선·보완 필요사항

□ 혁신도시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거점 도시로 육성

- 혁신도시 정책이 공공기관 이전 중심으로 추진되어 정주인구* 등은 증가하였으나, 주변지역과의 동반 성장 등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거점화에는 한계
 - * 정주인구 : ('14년) 5.9만명 → ('16년) 15만명 → ('18년) 19.3만명 → ('20년) 22.4만명

☞ 공공기관이 지역특색을 고려하여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는 등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발전 필요

□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민간부문의 적극적 참여

-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공적재원이 투입되는 마중물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성과의 지속적 확대를 위한 민간투자가 부진

* '20.5월 현재 도시재생뉴딜사업지(330곳) 중 36%(120곳)만 민간투자사업계획이 있음

☞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 민간투자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민간투자 유인 방안 마련 필요

□ 코로나19로 인한 농어촌경제·지역산업 위기 대응

- 농촌체험마을 관광 방문객 및 매출 급감, 수산물 수출 감소, 지역별 주력산업 위기 등이 지역 경제 전반의 위기로 전이될 우려

* (전년대비) 농촌체험마을 관광 방문객 56%, 매출액 54.2%, 수산물 수출액 7% 감소

☞ 농촌관광업체 지원,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산업 육성,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 강화 등 다각적인 위기극복 대책 마련 및 추진 필요

□ 지역균형 뉴딜의 성과 창출을 위해 중앙·지방간 협업 강화

- 한국판 뉴딜사업 대부분이 지역에서 추진되는 점을 감안할 때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지방간 협업 절실

* 한국판 뉴딜 투자총액(160조원) 중 지역사업 규모는 47%(75.3조원) 비중

☞ 지역균형 뉴딜을 규제자유특구, 경제자유구역 등 기존 지원체계 및 지역경제정책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시너지 창출 필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 ❖ 강한 국방을 바탕으로 한반도 영구 평화를 위한 일관된 정책 추진
- ❖ 더 넓고 깊은 교류와 협력으로 동아시아 선도국가의 길 마련

주요 정책성과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및 평화경제 구현 노력 지속

- 다양한 계기*를 통해 남북대화 의지 표명, 남북 합의사항 이행 촉구
 - * △취임 3주년 특별연설('20.5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사 △6.25 70주년 기념사 △9.19 평양 공동선언 2주년 메시지 △제75차 유엔총회 기초연설('20.9월) 등
- 북한 개별관광*, 물물교환 방식의 작은 교역 등 남북관계 돌파구 마련을 위한 창의적·현실적 방안 제시
 - * 금강산 관광 재개 해법으로 '북한 개별관광' 구상('20.1월, △이산가족·사회단체 중심의 북한 방문 △제3국 경유 개별관광)
- 동해북부선 철도(강릉~제진) 복원 추진('20.4월) 등 남북 철도연결 재개 대비,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으로 국민의 평화 체감도 제고
 - * 분단 이후 최초 DMZ 내 문화재·생태 등 실태조사로 구석기 시대 석기 등 유물 수습, 'DMZ 평화의 길' 파주 구간 및 판문점 견학 재개·운영('20.11~12월)

□ 한반도 평화와 비전통 안보 환경에 대비하는 튼튼한 국방

- 글로벌호크(고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전력화, 핵·WMD 및 비전통 위협(재난·테러)에 대응한 국방 예산 편성('21년 예산 52.8조원) 등 국방력 강화
- 연합방위체계를 규정한 전략문서 초안 합의('20.4월),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예행연습('20.8월) 등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한미 전작권 전환 노력
- 지자체 협업으로 대구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20.8월), 범정부 코로나19 대응 총력 지원*, 비전통 위협 역량 강화** 등 국방의 새로운 역할 모색
 - * 군 의료인력(4.9만명), 공항·항만 검역 및 진로·검체·감시인력(17.5만명) 등 연인원 47만여명 지원
 - ** 지자체 통합관제센터-군 상황실간 정보 공유 시범사업(12월), 재난·테러 대응 매뉴얼 개정 등
- 단체 의료보험 신설, 휴대전화 사용 전면 시행, 자기개발비·주거 지원* 확대 등 장병 복무 여건과 삶의 질 개선
 - * (자기개발) '19년 20억 → '20년 80억, (민간 전월세 공급, 전세대) '19년 7.8 → '20년 9.4

□ 코로나19 적극 대응 및 주변국과 당당한 외교로 실질협력 강화

- 재외국민 안전 귀국 지원*(총 121개국 5.2만명), 진단키트·마스크 인도적 지원**, K-방역 경험 공유 등 글로벌 보건협력 선도
 - * 정부 임차 전세기·군용기 투입(10회), 재외공관 현장 지원 등
 - ** 총 120여개 국가 대상으로 총 6,700만 달러 규모의 방역물품(진단키트, 마스크 등) 지원
- 12개 미군기지 반환('07년 이후 최대, '20.12월), 화상·유선협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과의 호혜적 책임동맹 관계로의 발전 지속
 - * 정상간 통화(3회), 대통령-바이든 당선인 통화('20.11월), 외교장관간 통화(4회) 등
- 한중 신속통로 최초 구축('20.5월), 중국군 유해송환('20.9월), 비대면 소통채널 적극 활용* 등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
 - * 정상통화(2회) 및 서신교환(11회), 외교장관회담('20.2월), 외교장관 통화(2회), 한중 경제공동위('20.8월), 양제츠 국무위원 방한('20.8월), 왕이 외교부장 방한('20.11월) 등
- 강제징용, 수출규제 등 민감 현안은 원칙에 입각하여 대응하는 한편,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시행('20.10월) 등 한일간 실질협력 제고 동시 추진

□ 신남방·신북방 정책 성과창출 가속화 및 외교 저변 확대

- 신남방정책플러스 수립*('20.11월), 세계 최대 FTA인 RCEP 최종 서명('20.11월) 등 對아세안 및 인도와의 교류·협력 고도화
 - * 아세안 정상회의('20.11월) 계기 발표, 7대 분야(보건, 교역, 비전통안보 협력 등) 중점 추진
- 조선 등 9개 다리 협력분야*를 중심으로 신북방국가와 실질협력 강화
 - * 러시아 LNG선 수주(약 6조원), 투르크메니스탄 버스 계약 체결(약 730억원), 조지아 수력발전사업 참여(약 3,800억원), 우즈베키스탄 정유공장 현대화 사업 설계 계약(약 86억원) 등
-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설정('20.10월), 제1회 푸른 하늘의 날 기념식('20.9월) 개최 등 우리 정부의 그린뉴딜 추진 의지를 국제사회에 표명

□ 대북 인도적 지원과 협력으로 한반도 생명·안전 공동체 구현 추진

- 남북관계 경색국면 지속, 코로나19 확산 등 교류 제한에도 국제기구·민간단체를 통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지속
 - *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영유아·여성 지원사업에 1,000만불 공여('20.8월), 민간단체의 의료장비·방한용품 지원 및 ASF방역·농업협력사업 등에 12.6억원 지원

- 접경지역의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20.10월), 보건의료협력 민관협의체 운영*, 산림협력센터 조성** 등 보건의료·산림협력 추진기반 조성
 - * 감염병 공동대응 등 남북 생명·안전 공동체 구현을 위한 보건의료 협력방안 논의('20.7월, 11월)
 - ** 남북산림협력센터 조성·운영('20년 파주·고성), 산림협력용 종자·묘목 등 확보

개선·보완 필요사항

□ 남북대화 재개 여건 조성 및 개선시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 준비 필요

- 北 미사일 발사(5회),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20.6월), 코로나19로 북중 국경폐쇄 등 남북 관계 경색 및 남북 협력사업 난항

☞ 북측에 합의사항 이행 지속 촉구, 남북연락채널 조속 복원, 남북협력 재개시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 필요

□ 국제정세 변화에 대한 외교적 대응 필요

- 美 바이든 행정부 출범, 日 스가 총리 취임 등 주요국 지도부 교체에 따라 대북정책, 강제징용 문제 등 주요 현안 관련 변화 예상

☞ 각 행정부 외교 특성에 맞는 우리나라의 외교 전략을 마련하여 주요 외교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 필요

□ 한·미간 군사 분야 협력체계 강화 필요

- 연례적인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타결 지연 등 한·미관계에서 원활한 협력 부족

☞ 당면한 외교 현안이 조속 해결될 수 있도록 각급 대화 등 보다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안 모색 등 합리적 해결방안 강구 필요

□ 군 경계태세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우려 해소 필요

- 북한 접경 지역에서의 잇단 사건* 발생으로 기본적인 군 경계태세 관련 국민들의 불신·우려 증대
 - * 탈북민 재월북('20.7월), 서해상 어업지도공무원 실종('20.9월), 북한 주민 GOP 귀순('20.11월) 등

☞ 군 기강 강화 및 접경 지역 상시 경계체계 등 점검 강화

코로나19 대응 및 Post-코로나 준비 주요 사례

① 신속한 방역 거버넌스 구축 및 효과적 운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총리 주재) 개편 ▲ 질병관리청 승격 ▲ 보건차관제 도입 등

② K-방역을 통해 코로나19 대규모 확산 방지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창의적 방안 신속 도입

▲ 드라이브스루 선별검사 ▲ 생활치료센터 ▲ 전자출입명부 ▲ 마스크 5부제 등 도입

○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자주권 확보 기반 마련 및 해외 백신 확보

▲ (국내 치료제·백신) 치료제 '21년초 개발 목표, 백신 '21년말 개발 목표

▲ (해외 백신) 전 국민이 접종 가능한 5,600만명분 해외 백신 확보

○ 철저한 방역 하에 국가 차원의 대규모 행사 성공적 관리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4.15) ▲ '21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2.2) 등

③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 조치

○ 「한국판 뉴딜정책」 수립 등 새로운 경제질서에 선제적 대응

▲ '25년까지 총 160조원 투자, 190만개 일자리 창출하는 한국판 뉴딜정책 마련(7월)

▲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3대 신산업 육성 ▲ 4차례 추경편성을 통한 위기 대응

※ OECD 최고수준 경제성장률 달성 전망('20.12월), 국가 신용등급 유지(Aa2, 무디스) 등

○ 고용충격 최소화를 위한 맞춤형 대책 추진

▲ 고용유지 지원금(2.1조원) ▲ 소상공인진흥기금 확충(9.67조원)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속 지급(2.7조원) ▲ 고용보험 확대 ▲ 국민취업지원제도 마련 등

○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확대

▲ 긴급 재난지원금(31.3조원) ▲ 온누리상품권 역대 최대 발행(4조원) ▲ 저소득층 생활지원(169만 가구) ▲ 위기가구 생계지원(55만가구) ▲ 건보료 경감(1,160만명) 등

④ 긴밀한 외교적 노력을 통한 국제사회 협력 주도

▲ 한중 신속통로 구축('20.5월) ▲ 한일기업인 특별입국('20.10월) ▲ 재외국민 귀국지원(5만명)

▲ 진단키트·마스크 인도적 지원(6,700만불) 등

2. 규제혁신

1 평가 개요

□ 평가목적

- 중앙행정기관의 규제혁신 노력과 성과를 점검·평가하여 규제혁신의 실효성 확보 및 국민 체감도 제고

□ 평가대상

- 33개 중앙행정기관

구 분	기 관 명 (직제순)
장관급 (20개)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보건처, 방통위, 공정위, 금융위
차관급 (13개)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진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해경청, 원안위

* 부처별 '20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상 과제수 등을 고려하여 10개 부처는 제외

□ 평가방법

- 평가지표 특성에 따라 정성·정량평가를 병행 실시하였으며, 평가의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관합동 규제혁신평가단'*을 별도로 구성

*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규제 관련 민간전문가 등 21명

- (정성평가) 규제혁신 분야별 노력도 등 평가 + 만족도 조사
- (정량평가) 규제조정실 담당관이 부처가 제출한 추진실적을 토대로 평가

□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규제혁신 성과 (60)	신산업혁신	• 규제샌드박스 운영 성과	5
		•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등 신산업 규제정비 성과	7
		• 신산업 현장애로 개선 성과	3
		• 기업 건의과제 개선 성과	5
	민생혁신	• 민생분야 규제정비 성과	10
		• 규제개혁신문고 건의 처리 성과	10
	공직혁신	•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 추진성과	10
		• 정부 입증책임제도 운영성과	10
규제품질관리 (20)	신규 규제	• 규제심사절차 준수 실적	2
		• 규제심사 품질 향상 노력	2
		• 규제영향분석 내용의 충실성	6
		• 규제비용관리제 운영 성과	4
		•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적용 성과	2
	기존 규제	• 재검토형 일몰규제 정비 실적	4
	규제혁신 소통 및 체감도 (20)	규제혁신 소통	• 국민소통 및 콘텐츠 제작·확산 실적
• 기관장 등 국민소통 노력			6
규제혁신 만족도		• 규제혁신 만족도 조사	10
코로나 대응 (가점)		• 코로나19 대응 규제혁신 노력	+5

2 평가 등급

* 직제순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A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중기부, 금융위	식약처, 관세청, 조달청, 경찰청
B	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문체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방통위	국세청, 소방청, 농진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해경청
C	법무부, 국방부, 보건처, 공정위	문화재청, 원안위

'20년도 주요 성과

- (경제분야)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투자·고용 등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고, 신산업 기본계획 최초 수립 등 미래 유망 분야에 대한 선제적 규제혁신 추진**
 - * 209건 승인('19~'20년 총 404건, 투자 1조 252억원 유치, 매출 513억원 증대, 고용 2,743명 창출) (복지부)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서비스, (중기부) 10개 특구 지정('19~'20년 총 24개) 등
 - ** 친환경차·VR·AR·로봇·AI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수립(과기정통부, 산업부)
- 기업·신산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발굴·개선*(총 240여건)
 - * (산업부) 수소충전소 내 상업시설 설치 허용, (국토부 등) 드론인증 접수창구 단일화 등
- (민생분야) 공유경제 활용, 인증제도 개선 등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규제부담을 낮추고*, 지역 주민들의 불편 개선**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
 - * (식약처) 주방 공유영업 허용, (중기부) 성능인증 유효기간 연장기간 확대 등
 - ** (국토부) 농림지역에 농기계수리점 입지 허용, (금융위) 보조사업 대상자 은행계좌 신설요건 완화 등
-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규제애로 해소*
 - * (복지부) 공유미용실 허용, (교육부)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통지방식 확대 등
- (공직분야) '19년 마련한 적극행정 제도의 공직사회내 성공적 확산으로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K-방역의 솔루션 역할 수행*
 - * (복지부) 고령자 전화상담·처방 시행, (산업부) 기업인 예외적 입국 지원, (식약처) 진단키트 신속허가(80일→7일), (조달청) 마스크 공적공급 과정에서 수의계약으로 신속 체결 등
- 국민·기업과의 현장소통을 강화하여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 노력
 - * 국무총리 현장대화, 목요대화, 민관 규제혁신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다양한 소통 추진

개선·보완 필요사항

- 신기술·신산업 분야 규제샌드박스 성과를 산업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실증 효과가 확인된 사업을 중심으로 법령정비를 적극 추진 필요
- 코로나19 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기존산업(제조업 등)의 반등을 지원하기 위해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선정, 집중 개선 필요

4 분야별 평가결과

경제분야 규제혁신

주요 성과

□ 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차, 실질적 성과 창출

- 209건('19~'20년 404건)을 승인하여 신기술의 신속한 시장진출을 지원하고, 그 중 47건은 법령개정까지 완료하여 산업 전반에 규제개선 효과 파급

* (특례승인) '19년 195건, '20년 209건 / (법령개정) '19년 13건, '20년 47건

→ (경제효과) 투자 1조 252억원 유치, 매출 513억원 증대, 고용 2,743명 창출 등 성과

사례 (복지부)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 (중기부) 10개 특구 지정('19~'20년, 24개), (금융위) 5인 미만 사업장의 단체보험 가입 서비스, (농식품부)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 (경찰청) 모바일 운전면허증, (식약처)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 등

□ 미래유망 신산업에 대한 선제적 규제혁신

- 미래 산업구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산업 분야 규제정비 3개년 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하고, 유망 분야에 대해 규제혁신 로드맵 수립

사례 D·N·A·비대면 분야 등 5대 분야 20개 핵심 신산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20.12) 친환경차(산업부), VR·AR(과기정통부), 로봇(산업부), AI(과기정통부) 분야 로드맵 수립

- 기업의 경제활동에 영향이 큰 131개 공공기관* 규정 대상 네거티브 적용

*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5개 대상으로 총 206개 과제 발굴 및 전환

□ 현장 중심 규제혁신 강화

- 수소경제, 드론 등 주요 신산업 분야의 현장애로 총 66건 해소('20.6월, 12월)

사례 (산업부) 수소충전소 내 상업시설 설치 허용, (식약처) 젤리제 의약품 허용,
(국토부 등) 드론인증 접수창구 단일화(과기정통부·국토부·농식품부 → 국토부) 등

- 주요 경제단체(중기중앙회·대한건설협회 등) 및 산업 전 분야를 망라한 305개 협·단체 대상 비대면 간담회를 통해 총 170여건 규제 개선

사례 (국토부) 산업단지 복합시설용지 면적제한 완화, (국세청) 주류 스마트오더 허용 등

개선·보완 필요사항

- 규제샌드박스 특례 성과를 산업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법령정비 적극 추진 필요

- 신산업·신기술 발전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既구축된 규제혁신 로드맵에 대한 주기적 점검·재설계(Rolling Plan) 및 정합성 제고 필요

민생분야 규제혁신

주요 성과

-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규제부담 완화

- 공유경제 활용을 통해 창업기회 확대 및 영세·중소기업 비용절감 촉진

사례 (복지부)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MRI, CT 등) 공동활용 확대, (중기부) 공공조달시
중소기업간 생산시설 공유 허용, (식약처) 주방 공유영업 허용 등

- 중소기업 인증 부담 해소를 위해 중복인증 등 28건 과제 개선

사례 (중기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유효기간의 연장기간 확대(6개월→1년), (산업부) 굵기, 재료, 강도 등이 동일한 용접철망의 경우 규격별 별도인증 부담 해소

- 규제 신설·강화시 중기·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규제 차등적용

사례 (식약처) 보건용마스크 1만개, 손소독제 500개 미만 소규모 판매업자는 판매 신고의무 면제 등

□ 지역건의,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한 주민불편·부담 해소

- 지역개발 촉진 등 지자체 주민과 지역기업이 건의한 규제 개선('20.2)

사례 (국토부) 농림지역에 농기계 수리점 입지 허용, (금융위) 보조사업 대상자 은행계좌 신설요건 완화, (고용부) 관할 외 고용센터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허용 등

-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국민·중소상공인 생활과 밀접한 규제애로 300여건 해소

사례 (복지부) 공유미용실 허용, (교육부)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온라인 통지 등 통지방식 확대, (산업부) 산업단지내 공동 구내식당 허용, (환경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판단기준을 업종 특성에 따라 합리화(사업장 면적 200㎡ → 실제 폐기물 발생량) 등

□ 불합리한 자치법규 종합정비

- 상위법령 미근거·일탈·미반영 자치법규(조례·규칙) 2만여건 정비('20.8)

사례 법령에 근거없이 공공시설 운영·공사 업자에게 보증금 예치 의무 부과 등

개선·보완 필요사항

- 민생불편에 대한 전방위적인 규제정비와 함께 평소 규제애로 개선 요구가 빈발한 분야를 선정, 중점 정비할 필요

-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비대면영업·조달·인증 분야 등에 대해 종합적인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

공직분야 규제혁신

주요 성과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행정 집중 추진
 - 적극행정 면책과 현장의 창의적 해법 장려 등을 통해 일선 현장의 공무원들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코로나19 위기에 대응
 - 사례** (복지부) 고령자 전화상담·처방 시행, (조달청) 마스크 공적공급 과정에서 수의계약으로 신속 체결, (식약처) 진단키트 신속허가(80일 → 7일), (산업부) 20개국 약 2만명 기업인 예외적 입국 지원 및 중국 등과 ‘신속통로’ 제도화
- 규제 정부입증책임제 방식 확대
 - '19년 행정규칙·건의과제에 이어 법령까지 입증책임제 대상을 확대
 - 사례** 법령 일제정비 결과 1,594건 개선(수출용 해양플랜트 수입기자재 관세 보류 등) 건의과제 재검토 결과 270건 개선(온라인 게임 본인인증 의무 완화 등)
- 현장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
 - 국무총리 현장대화, 목요대화, 민관 규제혁신정책협의회 등을 개최하여 기업과 관련 학계·이해관계자 등과의 다양한 소통을 통해 규제혁신 추진
 - 사례** (현장대화) 로봇(산업부), VR·AR(과기정통부) 분야 현장어로 청취 및 대책 발표 (목요대화) 바이오·헬스(복지부), Data·Network·AI(과기정통부) 분야 규제애로 심층 논의 (민관규제혁신정책협의회) 경제단체, 민간연구소, 관계부처 간 쌍방향 소통·협업

□ 규제비용 감축 등 규제품질 향상 노력

- '20년에 규제 완화 및 신설·강화 억제를 통해 총 1,930억 원의 규제순비용 감축

사례 (국토부) 건설업자 자본금 보유의무 완화(-239억원) 등

- 타당성 낮은 일몰규제 정비(폐지 4, 완화 122)를 통해 규제품질 제고

사례 (과기정통부) 전자문서유통 시설·장비 변경신고 의무 폐지, (경찰청) 경비업 허가 인력 요건 완화, (관세청) 보세공장 생산 잉여물품 처리요건 완화 등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적극행정의 성과를 코로나19 방역에서 국정과제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해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

- 기존규제 정비 외에 규제 신설·강화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주요 규제에 대해서는 일몰을 적극 설정할 필요

3. 정부혁신

1 평가 개요

□ 평가목적

- 중앙행정기관의 정부혁신 추진실적을 기관별로 평가하여 정부혁신의 공공기관 확산 도모 및 국민의 삶의 질 개선

□ 평가대상

- 43개 중앙행정기관

구 분	기 관 명 (직제순)
장관급 (23개)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보훈처, 방통위, 공정위, 금융위, 권익위
차관급 (20개)	인사처, 법제처,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방사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진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행복청, 새만금청, 해경청, 원안위

□ 평가방법

- 행안부 정부혁신 ‘전문가 평가단’* 및 ‘국민평가단’** 구성·운영
 - * (전문가평가단) 학계(16명), 민간 전문가(2명), 연구원(1명), 시민단체(1명) 등 20명
 - ** (국민평가단) 주부, 대학생, 직장인 등 다양한 국민의 지역·성별·연령을 고려하여 선발(200명)
- 평가지표 특성에 따라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 병행

□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기관의 혁신역량(7)		• 기관장의 혁신리더십, 혁신 학습활동	7
혁신 성과 (78)	참여와 협력 (25)	• 국민참여 및 협업 성과	13
		• 공공데이터 개방·연계·보호	7
		• 갈등관리	5
	신뢰받는 유능한 정부 (28)	• 국민 체감 공공서비스 혁신성과	12
		• 공직내 일하는 방식 혁신성과	10
		• 공정행정 및 청렴도	6
	적극행정(6)	• 적극행정 추진성과	6
	혁신적 포용행정 (19)	• 혁신지향 공공조달	7
• 사회적가치 제고 정책성과 또는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성과		7	
• 균형인사(여성, 장애인, 청년)		5	
국민체감도(15)		• 국민평가단·일반국민 체감도 평가	15

2 평가 등급

* 직제순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A	교육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농식품부, 복지부, 환경부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산림청, 특허청
B	기재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문체부, 산업부,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보훈처, 금융위, 권익위	인사처, 법제처,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진청, 기상청, 해경청
C	통일부, 여가부, 방통위, 공정위	방사청, 행복청, 새만금청, 원안위

'20년도 주요 성과

-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 대처과정에서 그간의 정부혁신 축적을 기반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 도출*
 - *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등 코로나19에 신속·효과적 대응(K-방역) OECD 디지털정부 평가 종합 1위('20.10월) / 부패인식지수 상승 : ('17년)51위 → ('18년)45위 → ('19년)39위
- (참여와 협력)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 해결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기관 간 협업 및 민·관 협력을 통해 국민 체감형 성과 창출**
 - * 대국민 사회문제 해결방안 공모 및 정책화를 지원하는 '도전.한국' 추진(11개 과제, 1,712건 해결방안)
 - ** (농산물꾸러미) 농식품부-교육부 협업하여 531만 학생가정에 급식농산물 재고물량 공급(45천톤) (공적마스크업) 행안부·과기정통부의 공적마스크 데이터를 활용하여 마스크 재고알림 민간 앱 개발
- (공공서비스) 국민 중심의 통합·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공공서비스 제공**
 - * '맘편한임신', '온종일돌봄', '전입신고' 등 생애주기별 통합서비스 신규 발굴·확대
 - ** (경찰청) 이동통신 3사(SK·LGU+·KT)와 연계하여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제공
- (일하는 방식) 업무자동화 등 디지털 기반으로 스마트 업무환경을 구축*하고, 범정부 적극행정 추진을 통한 코로나19 대응성과** 창출
 - * (환경부) 환경피해자(가습기·석면) 제출자료 정리 자동화로 업무시간 단축(1,972→224시간)
 - ** (식약처)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마스크 생산량 증대 신속처리 및 물량 안정공급, 가격 정상화 추진
- (혁신적 포용행정) 소외받는 국민이 없도록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추진
 - * (행안부) 카드사·은행사와 연계하여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3주만에 신속 지급(2,132만 가구) (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서비스'로 노인·장애인 등에게 주거·보건의료·요양 등 통합서비스 제공

개선·보완 필요사항

- 국민참여 방식과 접근을 다양화하고, 국민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는 프로세스 마련 필요
- 국민 선호가 높은 모바일 기반 공공서비스 확대와 함께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공공서비스 대책 마련 필요

4 분야별 평가결과

참여와 협력

주요 성과

□ 정책·예산·평가 등 핵심과정에 국민참여의 폭과 깊이를 확대

- 예산·성과평가 등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국민 참여 강화
 - * (예산) '국민참여 예산제' 사업 확대(^(20년)38개 사업, 1,057억원→^(21년)63개 사업, 1,168억원 반영)
(평가) 공모사업 선정, 경진대회 등 다양한 평가에 국민평가 도입·확대(^(19년)91개→^(20년)270개)
-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 해결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
 - * (과기정통부) 지역맞춤형 생활문제 해결 리빙랩 추진(주차공유플랫폼 구축, AI 활용 폐기물 관리 등)
(행안부 등) 대국민 해결방안 공모 및 정책화를 지원하는 '도전.한국' 추진(11개 과제 1,712건 해결방안 접수)

□ 국민 수요와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를 신규 개방·연계

-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기관 간 데이터 연계·공유**로 국민 삶의 질 개선
 - * 공공데이터 개방 누적건수(^(19년)33,600개→^(20.10월)54,581개), 국가중점데이터 개방(^(19년)96개→^(20년)121개)
 - ** (복지부) 단전, 단수 등 데이터(33종)를 연계하여 위기가구 발굴·지원(^(19년)22.8만명→^(20년)34만명)
(식약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통계청 등과 데이터를 연계하여 마스크·손소독제 수급정책 마련
- 코로나19 관련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여 다양한 민간서비스 창출
 - * (코로나맵) 대학생이 복지부의 코로나19 발생·완치 데이터를 활용하여 코로나19 현황지도를 제작
(공적마스크앱) 과기정통부·행안부의 공적마스크 데이터를 활용하여 마스크 재고알림 민간 앱 개발

□ 기관 간 협업 및 민·관 협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도출

- 협업 추진체계 제도화* 및 생활 밀착형 협업성과 도출**
 - * 온라인 협업매칭 플랫폼 '협업이음터' 개설('20.8월) 및 '협치형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마련(9월)
 - ** (농식품부-교육부) 농산물꾸러미 사업으로 531만 학생가정에 급식농산물 재고물량 공급(45천톤)
(환경부-KT올레 등) 자동차 네비게이션사와 연계하여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제도 운영

개선·보완 필요사항

□ 국민참여 방식과 접근을 다양화하고, 국민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는 프로세스 마련 필요

- * 정책제안 미참여 이유 : "정책제안을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38.3%) 1위('20.11월, 행안부)

공공서비스

주요 성과

□ 모바일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공공서비스 지원

- 비대면 시대에 맞게 간편하게 이용하는 모바일 기반 생활서비스 제공*
 - * (행안부) 모바일 전자증명서(96종) 발급·유통으로 서류제출 없는 금융거래·요금할인 지원
(경찰청) 이동통신 3사(SK·LGU+·KT)와 연계하여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제공(203만명 이용)
(국세청) 모바일 신고세목 확대(3→13종), 생체인증 도입 등 모바일 국세서비스(손택스) 확대
- 인공지능(AI),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안전한 국민의 일상을 구현*
 - * (관세청) 인공지능(AI)이 위험물품 판독데이터를 학습하여 총기·화약 등 위험물품 정보 자동 표시
(산림청) 스마트 CCTV·드론감시단 등을 활용하여 산림재해 대응('19년 고성산불 대비) 피해면적 90% 감축
- 빅데이터, QR코드 등 ICT 기술 활용으로 코로나19에 신속·효과적 대응*
 - * (복지부)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KI-Pass)로 신속한 역학조사 지원('20.11월) 3억7천건 이용
(국토부) 통신사·카드정보 등 스마트시티 빅데이터로 코로나 역학조사 시스템 구축(269억 절감)
(특허청) 코로나19 치료제·백신 후보물질 관련 AI 특허 빅데이터 분석으로 기업·연구기관 자료 제공

□ 국민 중심의 통합서비스 확대 및 개인별 맞춤형 공공서비스 제공

- 전입·임신·돌봄 등 생애주기별 통합서비스 지속 발굴·확대*
 - * (전입) 취약계층이 온라인 전입신고 시, 지역난방·전기·도시가스 등 요금감면을 한 번에 신청(임신) 엽산제, 철분제 지원 등 임신지원 서비스 13종을 온·오프라인으로 한 번에 안내·신청(돌봄) 다함께돌봄, 아동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등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서비스 통합제공
- 국민체감도가 높은 공공서비스 정보를 맞춤형으로 안내·제공*
 - * (행안부) 정부24에서 연금·건강검진일·병역·세금 등 생활밀착형 맞춤 서비스 확대(58→67종)
(중기부) 중소벤처24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각종 창업지원을 위한 맞춤형 정보·서비스 제공

개선·보완 필요사항

□ 국민 선호가 높은 모바일 기반 공공서비스 확대와 함께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공공서비스 대책 마련 필요

* 공공서비스 개선 필요분야 : 모바일 서비스(44.3%), 취약계층 서비스(38.8%) 등('20.12월, 행정안전부)

일하는 방식

주요 성과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한 업무환경 구축 및 행정업무 효율화

- 단순·반복 업무의 자동화로 업무시간 단축 및 생산성 제고*
 - * (환경부) 환경피해자(가습기·석면) 제출자료 정리 자동화로 업무시간 단축(1,972→224시간)
(농진청) 공무직 근로자 급여계산 전 과정 자동화로 업무시간 단축(2,695→802시간)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비대면 업무환경 조성* 및 공직사회 디지털 역량 강화**
 - * (농식품부) 모바일 기반 '스마트 비축농산물 관리시스템'으로 비대면 재고관리(업무시간 70% 감소)
(해수부) 불법어업 지도·단속 분야에 드론 도입·운용으로 원격 현장 감시체계 구축
 - ** 데이터 직류 신설('20.9월), 빅데이터·AI 관련 교육과정 운영 등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확대

□ 국민 눈높이에 맞게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행정 확립 추진

- 정부-국민 간 관계*, 공직사회 내부**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특권 해소
 - * (농식품부) 수입축산물 검역업무에 민원인 대상 사후관리 '그린콜' 및 '민원인 참관제' 도입
 - ** (인사처) 부처 경력채용시험에 외부 참관인제도 신설 및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처벌 강화 (특허청) '퇴직자 영향력 배제방안 공모전' 개최, 심사·심판관 윤리강령 제정 등 전관특혜 차단 노력

□ 범정부적 적극행정 추진을 통한 코로나19 대응 우수사례 도출

-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적극행정 의사결정 지원제도 활용도 제고*
 - * 적극행정위원회(42→457건), 사전컨설팅(174→278건) 등 적극행정 제도 활성화
- 창의적인 대책 마련 및 신속한 집행을 통한 코로나19 대응성과 창출*
 - * (식약처)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마스크 생산량 증대 신속처리 및 물량 안정공급, 가격 정상화 추진

개선·보완 필요사항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기반 업무방식 변화에 따른 공직사회 구성원의 체계적인 디지털 역량 제고 노력 필요

혁신적 포용행정

주요 성과

□ 소외받는 국민이 없도록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추진

- 코로나19 위기상황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서비스 확대
 - * (행안부) 카드사·은행사와 연계하여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3주만에 신속 지급(2,132만 가구)
 - (국세청) 생계가 어려운 영세납세자에 대해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실시(776.9만건)

- 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의 공공서비스 접근성 제고
 - * (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서비스’로 노인·장애인 등에게 주거·보건의료·요양 등 통합서비스 제공
(교육부) 최저교육비 개념을 재정의(결핍 충족→성장 지원)하여 저소득 학생 교육지원 확대(186.8천원↑)

□ 재정·인사·조달 등 정부운영 기반에 사회적 가치를 실현

- 취약계층 배려·인권 보호 등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국가예산을 편성*하고, 혁신지향 공공 조달을 통해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
 - * 취약계층 의료급여(7.0조→7.7조), 소상공인 용자 지원(2.3조→3.6조),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285억→362억), 디지털 성범죄 대응(131억→221억) 등
 - ** 기관별 물품구매액의 1%를 혁신제품 구매에 활용하는 ‘혁신구매목표제’ 목표치 초과달성(4,230억), ‘스마트 음압격리모듈’로 코로나19 대응 선별진료소 활용 및 ‘음압캐리어’로 감염환자 이송
- 공공부문에 여성*, 청년**, 장애인*** 등의 대표성 제고
 - * 고위공무원단 : (‘19년)7.9% → (‘20년)8.2% / 본부 과장급(4급 이상) : (‘19년)20.8% → (‘20년)22.7%
(기재부) 예산실 최초 고위공무원(행정국방예산심의관) 임명 / (법무부) 첫 교정본부장 임명
 - ** 「청년기본법」 시행(‘8.5.)에 따라 청년 관련 정부위원회의 청년위원 위촉 확대 추진
 - *** 중증장애인 경력채용 직위 확대((‘18년)29개 → (‘20년)50개) 등을 통해 고용률 상승((‘19.6.)3.49% → (‘20.6.)3.67%)

개선·보완 필요사항

- 상당수 기관이 혁신지향 공공조달 제도에 대한 인식·참여·노력도가 저조하여 혁신 지향 공공조달 제도에 대한 범정부 교육·홍보 확산 필요

4. 정책소통

1 평가 개요

□ 평가목적

-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에 대한 국민소통 추진노력 및 성과를 평가하여 국민의 정책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정책성과 체감 확산

□ 평가대상

- 43개 중앙행정기관

구분	기 관 명 (직제순)
장관급 (23개)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보훈처, 방통위, 공정위, 금융위, 권익위
차관급 (20개)	인사처, 법제처,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방사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진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행복청, 새만금청, 해경청, 원안위

□ 평가방법

- 각 기관별 국민소통 활동 및 성과에 대해 정량·정성 평가
 - * 문체부 주관 「민관합동 정책소통 평가단」 구성 운영, 소통만족도 조사는 국조실 주관 외부 전문기관(전문 리서치 기관)을 통해 평가
- 분기·반기별 등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연말 종합평가에 반영

□ 평가항목

평가 항목		평가 지표	배점
정책소통 활동	주요정책 협의	• 협의회 참여도, 사전협의 참여도	16
	언론 소통 활동	• 일일보도관리	
정책소통 성과	언론소통성과	• 언론보도 및 소통활동 성과, 외신소통활동 성과	59
	온라인소통성과	• 기관SNS활동성과, 디지털활동성과, 온라인이슈관리	
	기관장소통성과	• 언론맞현장소통 성과, 위기상황 이슈관리	
	보유매체 등 활용성과	• 보유매체 활용성과, KTV 활용 성과	
정책소통 체감도	소통 만족도	• 소통 만족도(여론조사)	25
	온라인 체감도	• 빅데이터 분석	

2 평가 등급

* 직제순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A	행안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중기부	인사처, 법제처, 식약처, 국세청, 경찰청, 산림청
B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국방부, 농식품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보훈처, 방통위, 금융위, 권익위	관세청, 통계청, 병무청, 소방청, 문화재청, 특허청, 기상청, 행복청, 해경청, 원안위
C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공정위	조달청, 방사청, 농진청, 새만금청

'20년도 주요 성과

-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투명하고 신속한 대국민 소통
 - 투명하고 신속한 소통을 통해 국민들의 협조를 얻을 수 있었고, 각국으로부터도 모범적인 대응국가로 평가
 - * 중대본 및 방대본 차원의 코로나19 상황 공식 브리핑 연 536건 실시

- 부처별 역할 분담 및 협업 강화를 통한 홍보 시너지 극대화
 - '코로나19' 방역 및 경제지원 대책 등 범정부 현안에 대해 주기적·상시적 소통협의체* 운영, 유기적 협력 소통 강화로 확산력 제고
 - * 정책홍보전략회의(매주), 대변인협의회(매주), 온라인대변인협의회(격주) 개최
 - ** △마스크 5부제, 생활 속 거리 두기 방역지침 등 범정부 홍보 → K-방역 국내외 호평, △재난지원금·고용유지지원금 등 민생 대책 협업·홍보 → 민생 대책 효과 극대화
 - *** '20년 인지도 결과(한국리서치) : 코로나19 방역대책(99.7%), 경제지원정책(97.3%)

- 온라인 국민 참여 확대 및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소통 강화
 - 쌍방향 콘텐츠 활성화로 국민 참여 확산, 국민만족도 조사에 소통부문 포함, 측정 대상 과제와 응답 인원수를 늘려 국민 체감도 평가 강화
 - * '19년 대비 증가율 △(구독자) 유튜브 84.7%, 페이스북 8.5%, 블로그 28%, 트위터 5.8%, 인스타그램 132.9%, △(조회수) 유튜브 37.1%, 페이스북 82.9% 트위터 44.7%

개선·보완 필요사항

- 미디어 환경과 뉴스 소비 행태 변화에 따라 일일 정책 이슈에 대한 선제적 조치와 온·오프라인을 망라한 신속 대응

- 코로나 이후 대비, 한국판 뉴딜, 탄소 중립 등 주요정책에 대한 종합 홍보 기획, 정부 광고, SNS 채널 운영 등 소통 전략 마련 필요

4 분야별 평가결과

‘코로나19’위기 관리 소통 강화

주요 성과

□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투명하고 신속한 대국민 소통

- 투명하고 신속한 소통을 통해 국민들의 협조를 얻을 수 있었고, 각국으로부터도 모범적인 대응국가로 평가
 - * 중대본 및 방대본 차원의 코로나19 상황 공식 브리핑 연 536건 실시
- 부처 특성에 적합한 캠페인 등 소통 강화로 국민 불안 완화 및 위기 대응
 - * (복지부) ‘덕분에 챌린지’를 국민 응원 캠페인 ‘국민 덕분에’로 확장 실시
 - (문체부) ‘집콕 문화생활’ 온라인 중계 등 비대면 문화생활 콘텐츠 제공
 - (중기부) ‘선결제’ 및 ‘대한민국 동행 세일’ 캠페인 등 내수 활성화 지원
 - (식약처) 올바른 마스크 착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마스크 실천 서약 ‘SNS 캠페인
- 음원, 영상, 이벤트 등 다양한 포맷을 활용하여 국민 반응 긍정 효과 제고
 - * (기재부) ‘한국판 뉴딜’ 페이스북 소문내기 이벤트, 유튜브 퀴즈 이벤트
 - (환경부) ‘자가격리자 폐기물 안전처리 가이드’ 인포그래픽 및 영상 콘텐츠 제작
 - (산림청) 집에서 즐기는 식목일, ‘아주 특별한 나무 배달부’ SNS 이벤트

□ 부처별 역할 분담 및 협업 강화를 통한 홍보 시너지 극대화

- 다수 부처 협업 확대로 시너지 효과 제고 및 국민 신뢰 상승
 - * (중기부·기재부·문체부·산업부·농식품부·해수부) 대한민국 동행세일, 내수 활성화
 - (산업부·과기정통부·환경부)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 (고용부·중기부·기재부) 자영업 위기 극복을 위한 자영업자 지원제도 홍보

개선·보완 필요사항

- 미디어 환경과 뉴스 소비 행태 변화에 따라 일일 정책 이슈에 대한 선제적 조치와 온·오프라인을 망라한 신속 대응 필요
 - 주말 온라인 기사를 활용한 정보 제공, 오보 및 왜곡 보도에 대한 신속 대응

더 가까이 다가가는 정책소통

주요 성과

- 쌍방향 콘텐츠 확대를 통한 국민과의 소통 강화
 - 국민들의 궁금증을 설명하는 형식의 정책 Q&A 콘텐츠 등 상호 소통형 정보 제공으로 국민의 정책 이해도 제고
 - * (금융위) 전세대출 관련 조치 상황별 Q&A
(행안부) 온라인 이벤트 '긴급재난지원금 댓글 답변 왔습니다'
(국세청) 부동산 관련 세금사례와 Q&A 제시 설명 및 댓글 답변
(법제처) 코로나19 시행 법령 'OX 퀴즈'
 - 부처 업무 담당자의 생생한 현장 콘텐츠 제작, 소통의 적극성, 진정성 강화로 국민의 긍정적인 반응과 인식 제고
 - * (경찰청) 여성 경찰관 출연, 아동학대 현황 설명 등 SNS 라이브 방송(풀-Live, 유튜브)
(고용부) 담당자가 알려주는 정책 알람 시리즈 영상 제작 유튜브 중심 민원 안내
(산림청) 유튜브 채널 실시간 '산불현장' 정보 제공
(인사처) 인사처tv 유튜브 '지역인재 채용 설명회' 생중계

□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한 국민 관심 증대

- 다양한 분야의 인플루언서를 활용하여 분위기 조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친근한 설명으로 콘텐츠 제작 확산, 조회수 등 국민 관심 증가

* (산업부) 방송인 강호동, 코세페 특별 이벤트 ‘엄지척 챌린지’ 응원 캠페인 참여
(문체부) 아나운서 배성재, 북튜버 출연, ‘슬기로운 거리두기, 집콕 문화생활’ 진행
(교육부) 박미선의 ‘미션 임파서블’을 통해 학교방역, 거리 두기, 등교 수업 등 소개
(농식품부) 유명 유튜버와 함께 직접 만들어 선물하는 한우 세트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정책 수요자인 국민 눈높이에 맞는 소통 강화 필요

- 코로나 이후를 대비한 한국판 뉴딜·탄소 중립 등 중점 추진정책에 대한 홍보 채널 다양화(종합 홍보 기획·정부 광고·SNS 채널 운영 등) 등을 통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 및 달라지는 생활상 홍보

Ⅲ. 기관별 종합 평가

1 평가 개요

□ 평가목적

-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에 대한 평가결과를 기관별로 합산·발표하여 기관 차원의 국정성과 제고 독려

□ 평가방법

- 일자리·국정과제(65점), 규제혁신(1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15점) 점수를 합산

2 평가 등급

* 직제순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A	기재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식약처, 관세청, 조달청,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B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문체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보건처, 방통위, 금융위, 권익위	인사처, 법제처, 국세청, 통계청, 병무청, 방사청, 문화재청, 농진청, 특허청, 해경청
C	통일부, 법무부, 여가부, 공정위	기상청, 행복청, 새만금청, 원안위

IV. 후속조치 계획

□ 평가결과 공개

- 공개범위 : △부문별·기관종합 각 부처 '등급' (A·B·C)
△국정과제 등 부문별 주요실적, 개선·보완필요사항
- 공개방법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홈페이지

□ 성과확산

- 설 연휴 계기 주요성과 홍보(2월)
- 문재인 정부 4주년 계기 국정과제 성과 홍보(4월말)

□ 우수기관 포상금 지급 및 유공자 포상

- '기관종합 및 부문별 A' 등급기관에 대해 포상금 지급
 - 부문간 배점 비중 차이를 고려하여 포상금 배분
 - * 배점 비중 : 일자리·국정과제(65%), 규제혁신(10%), 정부혁신(10%), 정책소통(15%)
- 유공자 30명 포상(훈장, 포장 등)

□ 개선·보완사항 개선조치

- 평가시 지적된 개선·보완필요사항에 대해 부처별로 개선 추진

2021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2022. 1. 25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국무조정실

I. 평가 개요

□ 평가 대상

-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45개(장관급 24, 차관급 21) 중앙행정기관의 2021년도 업무 추진 성과를 종합 평가

□ 평가부문·방법

- (평가부문)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4개 부문
 - * 기관종합 결과 산출시 적극행정 평가결과(3점)를 합산
- (평가방법) 평가부문별로 평가주관기관이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상 평가 지표에 따라 정량적·정성적 평가 병행
 -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위해 민간 전문가평가단에 의한 평가 및 일반국민 대상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 활용

평가부문	배점	평가항목	주관	평가단	일반국민
일자리·국정과제	65	100대 국정과제, 64개 주요정책과제 추진성과 등	국조실	100명	17,550명
규제혁신	10	규제혁신 성과·체감도 등	국조실	19명	2,027명
정부혁신	10	기관의 혁신역량 및 성과, 체감도 등	행안부	20명	7,566명
정책소통	15	국민소통 활동, 소통만족도 등	문체부	61명	17,550명
적극행정(가점)	3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 성과, 체감도 등	인사처 국조실	10명	1,618명

□ 추진경과

- ('21. 2월) '21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립, 국무회의 보고
- ('21. 3월) '21년도 특정평가 세부지침 수립,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의결

- ('21. 4월) '21년도 특정평가 부처설명회(온라인 영상회의)
- ('21. 12월) 각 부문별* 평가 시행
 - *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적극행정(가점)

□ 2021년도 평가 결과

- 기관 종합 평가 결과

* 직제순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A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복지부, 환경부, 해수부, 중기부	법제처, 식약처, 농진청, 산림청, 질병청, 해경청
B	기재부,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산업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보건처, 공정위, 권익위, 개인정보위	인사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특허청, 기상청
C	통일부, 법무부, 방통위, 금융위	방사청, 행복청, 새만금청, 원안위

- 일자리·국정과제 부문

* 직제순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A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복지부, 환경부, 해수부, 중기부	법제처, 식약처, 농진청, 산림청, 질병청, 해경청
B	기재부,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산업부, 고용부, 여가부, 보건처, 방통위, 공정위, 권익위, 개인정보위	인사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방사청, 소방청, 문화재청, 특허청, 기상청
C	통일부, 법무부, 국토부, 금융위	경찰청, 행복청, 새만금청, 원안위

- 규제혁신 부문

* 직제순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A	과기정통부, 행안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해수부	식약처, 조달청, 특허청, 해경청
B	기재부, 교육부, 국방부, 문체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중기부, 방통위, 금융위, 개인정보위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문화재청, 농진청, 산림청, 질병청
C	법무부, 여가부, 보건처, 공정위	소방청, 기상청, 원안위

○ 정부혁신 부문

* 직제순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A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복지부, 고용부, 해수부, 중기부	인사처, 식약처, 통계청, 경찰청, 산림청, 기상청
B	기재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문체부, 산업부, 환경부, 여가부, 국토부, 보건처, 공정위, 개인정보위	법제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병무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진청, 특허청, 질병청, 해경청
C	권익위, 금융위, 방통위, 통일부	방사청, 행복청, 새만금청, 원안위

○ 정책소통 부문

* 직제순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A	과기정통부, 행안부, 산업부, 환경부, 고용부, 보건처	법제처, 식약처, 경찰청, 산림청, 특허청, 질병청
B	기재부,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농식품부, 복지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공정위, 금융위, 권익위	인사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소방청, 문화재청, 기상청, 행복청, 해경청
C	통일부, 법무부, 방통위, 개인정보위	방사청, 농진청, 새만금청, 원안위

○ 적극행정 부문

* 직제순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A	교육부,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환경부, 고용부, 해수부	식약처, 병무청, 문화재청, 특허청, 질병청, 해경청
B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여가부, 국토부, 중기부, 보건처, 공정위, 금융위, 권익위	법제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방사청, 소방청, 농진청, 산림청, 기상청
C	기재부, 통일부, 방통위, 개인정보위	경찰청, 행복청, 새만금청, 원안위



II. 부문별 평가결과

1. 일자리·국정과제 (65점)

1 평가 개요

□ 평가목적

- 45개 중앙행정기관별 100대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과제*의 이행실적을 국민 눈높이에서 객관적으로 분석·평가

* 국정과제가 1개 이하이거나 일자리 과제 추가 선정이 필요한 28개 중앙행정기관 대상으로 주요정책과제(64개) 선정, 국정과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

□ 평가대상

- 45개 중앙행정기관

구분	기관명 (직제순)
장관급 (24개)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보건처, 방통위, 공정위, 금융위, 권익위, 개인정보위
차관급 (21개)	인사처, 법제처,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방사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진청, 산림청, 특허청, 질병청, 기상청, 행복청, 새만금청, 해경청, 원안위

□ 평가방법

- 과제별로 ①정책효과에 대한 정성평가, ②이행노력·목표달성도에 대한 정량평가, ③국민만족도 조사 결과를 합산하여 점수 도출

- (정성평가)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10개 분과, 100명)이 평가
 - (정량평가) 연초 제시한 계획이행, 목표달성 정도에 대해 평가
 - (만족도) 일반국민 17,550명 대상으로 과제별 정책 만족도 조사
- 기관별 국정현안 대응 노력을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평가하여 가점 도출

□ 평가지표

- 정책추진 노력(25%), 목표달성도(25%), 정책효과(35%), 국민만족도(15%)를 평가

평가항목		평가지표	비중
이행 노력		• (계획이행도) 연초 수립한 이행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했는지 평가	25%
		• (성과창출 노력) '투입노력', '일하는 방식 개선', '기관장 노력', '갈등관리 노력' 등 국정성과 창출을 위해 기관이 추진한 노력 평가	
목표달성도		• (성과 목표 달성도) 사전에 설정된 성과지표의 연간 목표치를 달성했는지 평가	25%
성과	정책 효과	• (당초 의도한 효과) 과제별 정책목표·기대효과 달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장기적 효과) 정책효과의 지속가능성, 향후 기대효과 등 정책의 장기적 효과의 크기 및 중요성 등 평가	35%
	국민 만족도	• 과제별 정책성과 및 효과에 대한 만족도	15%

- 국정현안 대응 노력 평가 (가점 5점 반영)

* 기관의 국정현안과 관련된 선제적 조치, 위기 적시대응, 혁신적 정책시행, 부처간 협업, 기관장 노력 등에 대해 평가

2 평가 등급

* 직제순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A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복지부, 환경부, 해수부, 중기부	법제처, 식약처, 농진청, 산림청, 질병청, 해양청
B	기재부,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산업부, 고용부, 여가부, 보훈처, 방통위, 공정위, 권익위, 개인정보위	인사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방사청, 소방청, 문화재청, 특허청, 기상청
C	통일부, 법무부, 국토부, 금융위	경찰청, 행복청, 새만금청, 원안위

- 2021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국제 경제의 급격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
- 정부는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해 백신 확보와 신속한 접종 등 방역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손실보상 등 포용적 민생회복에 주력
-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역대 최고의 수출액을 달성하는 등 국제 경제질서 변동에도 성공적으로 대응
-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등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였고, 탄소중립 목표상향 등 기후위기 선도국으로서의 위상 공고화
- 앞으로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 및 일상회복과 함께, 물가상승·가계 부채 등 경제 리스크에 대한 관리 강화, 국정과제의 성공적 마무리 등을 위해 계속 노력할 필요

'21년도 주요 성과

❖ 코로나19로부터 국민 생명·안전을 보호하고, 사회 전반의 포용성 제고

- 충분한 백신 확보(1.9억회분) 및 신속한 접종(접종완료율 83.0%), 방역·의료 역량 강화(PCR 검사역량 확대, 역학조사관 확충 등) 등을 통해 코로나 확산을 최대한 억제
- 초·중·고 전면 무상교육 실시,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대(515개소·1,030학급 ↑), 초등돌봄교실·마을돌봄기관 확충(496실·302개소 ↑) 등 보육·교육의 공공성 강화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21.10월), 기초·장애인 연금 인상(월 30만원), 국민연금 가입대상 확대(단기 근무 일용근로자 등) 등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보강
- ILO 핵심협약 비준('21.4월) 등 노동기본권을 강화하고, 5인 이상 쉼 사업장 주52시간 시행('21.7월) 등 근로여건 개선
- 재난지원금 지급(16.2조원),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손실보상 법제화('21.7월), 금융지원(380조원) 등 위기 극복과 포용적 민생회복에 총력
- 「스토킹처벌법」 제정('21.4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처벌 근거 마련('21.9월) 등 아동·여성에 대한 보호 기반 강화

❖ 위기로부터의 빠른 회복을 토대로 선도형 경제로의 이행 준비

- G20 선진국 중 '20~'21년 평균 성장률 최고 수준(1.5%, OECD) 전망 등 코로나19 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빠른 회복세 시현
- 반도체(메모리 세계 1위), 자동차(생산량 세계 5위) 등 주력산업의 견고한 실적을 바탕으로 역대 최고 수출(6,445억불), 외국인 직접투자 역대 최대(295억불) 달성
- 4차 산업혁명 핵심기반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집중투자, 제2벤처붐 확산(역대 최대 벤처투자 6.5조원, 유니콘기업 15개, '21.11월 기준) 등 혁신성장 기반 강화
-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21.9월), 온실가스인지예산제도 법적 근거 마련('21.5월)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기반 확충

❖ 부패방지과 국민권익보호를 추진하고,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예우 강화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21.5월), 부동산 관련 공직자 재산등록 강화('21.10월), 범죄수익 환수대상 확대('21.12월) 등 부패방지 제도 개선
-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21.1월), 다중인명피해로부터 국민 권익 보호
-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보상금 3% ↑)하고, 흥범도장군 유해 봉환('21.8월),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완공('21.11월) 등 독립정신 계승 노력 지속
- '국민비서(구비)' 서비스 개시('21.3월),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발급('21.12월), EU와 동등한 수준의 개인정보보호체계 인정('21.12월) 등을 통한 국민 편의 제고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자치분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21.7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21.10월) 등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확충
- 2단계 재정분권 추진(연 5.3조원 지방재정 확충),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21.10월) 등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교부(1,923억원), 「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법」 제정('21.8월), 세종 국회의사당 건립 확정('21.11월) 등 지역위기 극복과 도약 기반 마련
- 농·수산물 수출액 100억불 돌파(113.6억불), 조선산업 호황기 이후 13년만의 최대 수주량 달성(1,744만CGT)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성과 가속화

❖ 국방력 강화와 국제사회 협력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구현 노력

- G7 정상회의의 2년 연속 초청('20~'21년), 우리 정상 최초 5년 연속 유엔총회 기조연설 등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제고

-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주도, P4G 서울정상회의('21.5월) 개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21.11월)시 상향된 온실가스 감축목표(~'30, 26.3%→40%) 발표 등 보건·기후대응 관련 선도국으로서의 입지 공고화
- 국방예산 확충('22년 54.6조원, 3.4% ↑),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F-35A) 도입 등 국방력을 강화하고,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시행('21.4월), 무기체계 국산화(한국산 우선구매제도 등) 추진 등 방위산업 역량 강화 기반 마련
- 대통령 유엔총회 종전선언 제안('21.9월), 통일국민협약안 채택('21.6월) 등 통일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국내외적 공감대 형성 노력
- 남북통신연락선 복원('21.7월), 동해북부선 철도 복원('21.12월 착공), 민간단체를 통한 인도적 지원(100억원) 등 남북관계 개선 노력 지속

개선·보완 필요사항

- 코로나19 장기화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 및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대응방안 마련 필요
- 美 기준금리 인상 등 국제경제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민생경제 대책을 강구하고, 물가 상승·가계 부채 등 경제 리스크 요인에 대한 관리 강화
- 저탄소경제로의 이행 등 국제사회 변화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고, 저출산·고령화, 지역간 불균형 등 사회구조적 문제에 적극 대응
- 주변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남북대화 재개 여건을 조성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다각적 교류·협력방안 모색 필요

4 국정목표별 평가결과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 ❖ 국민의 전 생애에 걸친 국가책임 강화로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
- ❖ 노동 존중 등 '차별없는 공정사회' 조성 및 국민생명 보호 강화

주요 정책성과

□ 코로나19 방역·의료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건강 보호

- 역학조사·검역 강화* 및 중증도에 따른 병상 추가 확보·재택치료 병행 추진,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등 의료 대응체계 강화
 - * PCR 역량(일 2만 → 75만건), 신용카드 정보연계·전자출입명부 활용 등 역학조사시스템 고도화(소요시간 12시간→5분), 역학조사관 확충('20년 80명→'21년 514명)
-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쏠단계 적기 지원을 통해 국내 생산기반 마련*, 백신 적극 확보 및 신속한 접종으로 예방접종 목표 조기 달성**
 - * 치료제 개발('21.9월) 및 EU승인('21.11월), 백신 임상3상 진입('21.8월)
 - ** '21.10.23. 전체 인구 대비 70% 2차 접종 목표달성 / '21.12.31. 2차 접종률 83.0% (3차 35.9%)

□ 맞춤형 사회보장 강화로 국민의 기본생활 및 건강한 삶 보장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1.10월), 기초·장애인 연금 인상*, 노인일자리 82만개 창출** 등 국민의 생활안정 지원
 - * 기초·장애인 연금 인상(월, 만원) : ('17년) 20 → ('18년) 25 → ('21년) 30
 - ** 노인일자리 확충(누적, 만개) : ('17년) 47 → ('20년) 74 → ('21년) 82
-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17.9월~)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 약 12.1조원 경감*
 - * 비급여의 급여화(7.5조원), 취약계층 부담완화 등(3.9조원), 한방·만성질환 등(0.7조원)
-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 * 국민 : 일용·단시간 소득기준 개정('21.7월), 고용 : 예술인('20.12월)·특수형태근로종사자('21.7월) 적용

□ 보육·교육 사회적 책임 강화 및 결혼·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대*로 양질의 보육·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초등돌봄교실(학교) 및 다함께돌봄센터(마을) 확충**으로 돌봄부담 완화
 - * '18~'21년, 국공립 어린이집 2,255개소('21년 +515), 국공립유치원 3,382학급('21년 +1,030)
 - ** 초등돌봄교실(실) : ('17년) 11,980 → ('20년) 14,278 → ('21년) 14,774(+496)
마을돌봄기관(개소) : ('17년) 4,189 → ('20년) 4,992 → ('21년) 5,294(+302)

- 초·중·고 전면 무상교육 실시, 대학등록금 지원 확대* 등 교육비 부담완화
 - * 국가장학금 50% 이상 수혜비율(%) : ('17년) 24.3 → ('20년) 32.1 → ('21년) 33.2
- 신혼희망타운 분양 확대, 주거 대출 지원강화 등 신혼부부 주거 안정 지원
 - * 분양(만호) : ('20년) 0.7 → ('21년) 1.7, 구입·전세 대출(조원) : ('20년) 5.7 → ('21년) 5.8

□ 노동기본권 강화 및 일·가정 양립 지원으로 노동존중 사회 실현

- ILO 핵심협약 비준('21.4월)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시행, 근로자대표제도** 개선('21.2월, 경사노위 의결) 등 국제적 수준으로 노동기본권 강화
 - * 노조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20.12월), 병역법 개정('21.4월)
 - ** 근로자대표 선출방법 마련, 활동시간 근로 인정, 임기 3년 보장 등
- 5인이상 쉼사업장 주52시간 시행('21.7월), 탄력·선택근로제* 및 모성보호제도** 확대로 노동자의 휴식있는 삶 보장 및 출산·육아 지원
 - * 탄력근로제 기간 3→6개월 ('21.4월), 연구개발분야 선택근로제 기간 1→3개월 ('21.4월)
 - **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21.11월), 비정규직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설('21.7월) 등

□ 국민생명 보호 및 지속가능한 환경 구현을 위한 기반 구축

- 「안전속도 5030」 전국 시행('21.4월) 등 범정부 교통안전대책 추진, 소방 사고현장 대응능력 강화 등 사고·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
 - * 교통사고 사망자 : ('20년) 3,081명 → ('21년) 2,900명 잠정치 (약 5.9% ↓)
 - 화재 사망자 : ('20년) 365명 → ('21년) 270명(26.0% ↓)
-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바다 내비게이션 도입*('21.1월) 등 해양사고 예방 강화
 - * 세계최초로 좌초위험 안내·전자해도를 제공, 해양사고 감소('20년 3,156건→'21년 2,662건)
- '2050 탄소중립' 법제화 등* 탄소중립 사회 이행 기반 확충, 석탄발전소 점진적 폐쇄 등 미세먼지 감축대책 추진으로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
 - * 탄소기본법 제정('21.9월), 2030 국가감축목표 상향('18년비 △26.3% → △40%, '21.10월)
 - **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목표: '24년 16 $\mu\text{g}/\text{m}^3$) : ('17년) 25 → ('20년) 19 → ('21년) 18

□ 아동·여성에 대한 안전 기반 강화 및 국민 문화향유 인프라 확충

-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처벌 근거 마련('21.9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및 「인신매매방지법」·「스토킹처벌법」 제정('21.4월) 등 젠더폭력 대응체계 확립
- 생활 문화공간 확충*(도서관, 미술관 등) 및 온라인 박물관·미술관 전시(241만명 관람)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국민의 문화향유 확산**

* 문화기반시설(개소) : ('18년) 2,749 → ('20년) 3,014 → ('21년) 3,083

** 프로그램 수혜자 : ('20년) 283만명 → ('21년) 290만명 (2.5%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지속가능한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 마련

- 단계적 일상회복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코로나19 장기화 및 대규모 확진자 발생에도 대응 가능하도록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확보 필요

* 중증병상 가동률 : ('21.10.31.) 45.1% → ('21.11.30.) 78.8% → ('21.12.29.) 67.4%

☞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여 의료인력 확충 및 병상운영 효율화 등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 의료체계로 전환 추진

□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하는 학교 내 방역 강화

- 소아·청소년의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은 여전히 낮은 상황*, 학생 확진자 증가, 신종변이 발생 등으로 감염병의 학교 내 확산 우려 확대

* 2차 접종 완료율('21.12.31. 기준) : 인구 전체 83.0%, 18세 이상 93.3%, 12~17세 50.7%

☞ 접종방식 다양화 및 정보제공 확대 등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학교 내 방역강화 대책 마련을 통해 조속히 추진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층간소음 제도 개선

- 국민불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층간소음 인정기준의 합리적 조정 및 관련 처리 절차(전화상담·현장진단 등)의 실효성 제고 필요

* 현행 기준('14.6월 제정, 주간 43dB·야간 38dB)은 세계보건기구(WHO) 수면방해소음기준(30dB)보다 높으며, 현장측정 시 기준초과율은 7.9%('14년~'21.11월)에 불과하여 조정 필요

* 제4차 「소음·진동관리종합계획」(관계부처 합동, '21.1월)을 수립·추진 중이나, 층간소음
 보다는 공사장·도로·철도·항공 등 야외 소음 위주로 구성되어 층간소음 대응 한계

☞ 법정부적 대응을 통해,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공동주택 건설 및 층간소음 인정기준 개선 및 분쟁해결의 실효성 제고 등 대책 마련 필요

□ 추락·끼임 산재사고 감축을 위한 예방 강화

○ 산재 사고사망자 및 사고사망만인율은 감소 추세*이나, 추락·끼임 등 재래형 사고** 감축을 위해 지속 노력 필요

* 산재 사고사망자 및 만인율 : ('17년) 964명, 0.52‰ → ('19년) 855명, 0.46‰ → ('20년) 882명, 0.46‰

** 추락, 끼임 사고 비율(%) : ('17년) 48.5 → ('18년) 50.4 → ('19년) 53.0 → ('20년) 48.3

☞ 추락·끼임 방지시설 설치·교체사업 확대, 예방적 지도·점검·감독 강화, 민간 자율 안전관리 및 인식개선을 위한 집중 홍보·계도 추진

더불어 잘사는 경제

- ❖ 위기 극복을 넘어 '경제 정상궤도로의 진입' 본격화
- ❖ 공정경제 및 상생협력 확립을 통한 '포용적 성장' 기반 구축

주요 정책성과

□ 빠르고 강한 회복으로 경제 정상궤도 진입 본격화, 대외 위상 제고

○ '20년 역성장폭을 최소화(△0.9%, G20 중 3위)한 데 이어, '21년에는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빠른 회복세, '20~'21년 평균 성장률은 G20 국가 중 최고 수준 전망

* '20~'21년 평균성장률(%), OECD) 한국(1.5) vs. 미국(1.0), 호주(0.6), 일본(△1.4), 이태리(△1.6)

○ 역대 최고 수출실적*을 기반으로 무역강국(세계 8위)으로서 위상 공고화, 외국인 직접 투자실적** (FDI)도 역대 최대 달성

* 수출액(억불) : ('19) 5,422 → ('20) 5,125 → ('21) 6,445(전년대비 +25.8%)

** FDI(누적, 신고기준, 억불) : ('19) 233.3 → ('20) 207.5 → ('21) 295.1(전년대비 +42.3%)

- ODA 규모 확대('20, 3.4조 → '21, 3.7조(+8.3%)), G7 정상회의 2년 연속 초청, UNCTAD의 세계 최초 '개도국 → 선진국' 지위 인정 등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제고

□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육성 및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 3대 신산업* 중심으로 시장 선점 및 생태계 강화 총력, 디지털 뉴딜 2.0 추진으로 4차 산업혁명 핵심기반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역량 강화**

* (미래차) 수소차 점유율('16→'21.11월): 3.6→55.9%(세계 1위), 전기차 수출('16→'21.11월): 1.1→13.4만대 (시스템반도체) 수출액(억불) : ('16) 205 → ('18) 265 → ('20) 303 → ('21) 398
(바이오) 수출액(억불) : ('16) 45 → ('18) 84 → ('20) 139 → ('21) 162

** AI 공급기업수 : ('19) 220 → ('21) 991 / 데이터 공급기업수 : ('19) 393 → ('21) 1,126

국내 Data산업 시장규모(조원) : ('17) 14.4 → ('18) 15.6 → ('19) 16.9 → ('20) 19.3

-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 기존 주력산업*이 경제 회복세 견인, 민·관 협력 강화 및 수출 물류 대란 총력지원**을 통해 역대 최고 수출액 달성

* (메모리) 세계점유율(58.9%) 1위('21.1-3Q), (高부가선박) 세계 발주비중(64.5%) 1위 ('19~'21)
(자동차 생산량) ('16~'17년) 6위 → ('18~'19년) 7위 → ('20년~'21년) 세계 5위

** 국적해운사의 임시선박 투입, 수출 바우처 지원, 대기업 운반선에 중기화물 선적 등

□ 벤처투자 활성화 및 중소기업 성장기반 강화

- '제2벤처붐' 확산으로 역대 최대 벤처투자액* 달성, 벤처생태계 경쟁력 강화 및 규제혁신으로 유니콘 기업 대폭 증가** 및 기술창업 활성화***

* (벤처투자, 조원) : ('17) 2.38 → ('18) 3.42 → ('19) 4.27 → ('20) 4.30 → ('21.1~11) 6.5

** (유니콘 기업 수, 개) : ('17) 3 → ('18) 6 → ('19) 10 → ('20) 13 → ('21.9) 15

*** 기술창업(만개): ('17) 19.9 → ('18) 21.2 → ('19) 22.1 → ('20) 22.9 → ('21.10) 19.8

- 중소기업 전용 R&D 예산 확대*,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한 제품혁신으로 중소기업 성장기반을 강화하고, 인력난 해소 지원*** 병행

* 중기 전용 R&D (조원) : ('17)1.17 → ('18)1.54 → ('19)1.72 → ('20)2.31 → ('21)2.47

** 스마트공장 보급(개, 누적) : ('18) 7,903 → ('19) 12,660 → ('20) 19,799 → ('21) 25,039

*** '21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규채용 8.5만명 지원('21.11월, 누적 46만명),

'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목표인원 10만명 조기 달성('21.11월, 누적 50만명)

□ 공정경제 확립 및 상생협력 모델 구축으로 '포용적 성장' 기반 강화

- 총수일가의 부당내부거래 근절을 위한 제재 강화 및 거래관행 개선* 유도, 공정거래 감시역량 확충 등으로 기업경영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 *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단체급식·물류·IT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내부거래 정보공개 시 '매출' 뿐만 아니라 '매입'까지 공개토록 하여 일감개방 문화 확산 유도
- 협력이익공유제*를 통한 상생협력 확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상생모델**(상생형 스마트공장, 소부장 상생모델 등) 도입 등으로 '포용적 성장' 기반 강화
 - * ('19년) 56개사, 561과제 → ('20년) 106개사, 1,992개 과제 → ('21년) 164개사, 4,747개 과제(누적)
 - ** 상생형 스마트공장을 통한 K-방역 신속지원(삼성전자-풍림파마텍) : 단 1개월 만에 월 1천만개 이상의 최소 잔여형(LDS) 주사기 대량생산체계 구축

□ 고용충격 최소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

-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가동(25회), 고용·일자리 유지 및 소비·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각종 대책*(120여건)을 추진하여 국가적 고용위기 극복**에 기여
 - * (고용유지) 8.1만개 기업, 88.8만명 근로자 일자리 유지('20~'21년, 순인원)
(공공·민간 일자리) '20년 158.5만개, '21년 145.6만개(~'21.11월) 일자리 창출
 - ** 취업자수(전년대비, 만명) : (17년)31.6 ('18년)9.7 ('19년)30.1 ('20년)△21.8 ('21년)36.9
- 16.2조원 규모 재난지원금 지급, 손실보상 법제화(세계 최초) 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생계 지원, 경영안정자금 대출 등 금융지원*으로 민생경제 충격 완화
 - * 소상공인 1차(14.82조원)·2차(7.82조원) 금융지원, 소상공인·中企특례보증 18.8조원, 중소·중견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54.8조원, 만기연장 284.2조원

개선·보완 필요사항

□ 코로나19 재확산 등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민생경제 지원 지속 필요

-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대외여건도 개선되고 있으나, 코로나19 재확산,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민생경제 피해 및 어려움이 여전

- 비대면 소비 확대, 유통 플랫폼 진화 등 영업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으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생력이 상대적으로 부족

☞ 코로나19 재확산, 물가상승 등으로 발생한 민생경제 피해 회복지원 확대, 재난지원금 및 손실보상의 사각지대 해소 등 민생경제 지원 노력 지속 필요

☞ 디지털·온라인 교육 및 온라인 진출 지원, 시장정보 분석·제공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 병행 필요

※ 시장정보 및 상권통계 분석·예측 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추진중(~'22.2) → 빅데이터 플랫폼화(~'23)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참여 유도 필요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중간경로(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설정되었으나, 경제 주체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문화적 기반 미흡
- ※ GDP 대비 제조업 비중('20년 기준, %) : (韓) 26.1, (日) 19.5, (EU) 14.0, (美) 10.6

☞ 급변하는 국제 경제질서 변화에 우리 산업계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재정적·제도적 지원 강화 필요

- 탄소중립은 산업부문의 변화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관심과 실천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생활 속 탄소저감 사례 발굴 및 홍보 노력 병행 필요

□ 가계부채 관리 시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세심한 고려 필요

-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서민·실수요자의 불편·피해가 발생*하는 등 정책효과에 대한 세밀한 예측·관리 부족
- * 은행권의 대출억제 과정에서 급격한 대출금리 상승(가산금리 상승, 우대금리 하락), 대출 축소에 따른 전세자금대출, 잔금대출 등 실수요자의 자금조달 어려움 가중

☞ 가계부채 위험해소를 위한 관리강화 방향은 바람직하나, 서민·실수요자 피해가 없도록 정책 미세조정 및 소통강화 노력 필요

국민이 주인인 정부

- ❖ 권력기관 개혁 추진, 부패방지 시스템 정비로 국가 신뢰도 제고
- ❖ 민생치안 역량 강화, 개인정보 보호체계 강화를 통한 국민안전·권익 향상

주요 정책성과

□ 권력기관 개혁 지속 추진을 통한 국민의 인권 보호 강화

- 공수처 출범('21.1월),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조치* 등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 안착 기반 마련
 -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 및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핵심 하위법령 시행('21.1월)
- 인권 보장을 위한 수사관행 개선*, 검찰인사 중립성·독립성 강화**, 전국 경찰관서 인권전담 부서 설치 등 검·경 조직 혁신 지속
 - * 별건범죄 발견시 : 인권보호관 검토 → 검사장 승인 → 대검 보고 이후 별도 부서 배당 등
 - ** 「검사징계법」 개정('21.1월)으로 검사징계위에 외부위원을 과반 이상으로 구성(9명 中 5명)
- 국가수사본부 출범('21.1월)으로 경찰수사의 책임성·완결성 강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21.7월)을 통해 맞춤형 치안정책 추진체계 구축
- 국가 인권정책의 통합적 추진(총리 소속 위원회 신설 등)을 위해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 마련('21.12월 국회 제출), 인권존중 문화 확산 선도

□ 공직사회 부패방지 기반 마련 및 부동산 투기 등 중대 범죄 엄정 대응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21.5월), 「공직자윤리법」 개정*('21.6월, 10월)을 통해 공직 윤리를 강화하는 등 공직사회 청렴도 제고 기반 마련
 - * 부동산 관련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산등록 확대 등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근절 기반 마련
-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대통령 주재), 청렴사회민관협의회(사회각계 참여) 운영 등 반부패 현안 적극 대응을 통해 국가청렴도 지속 상승*
 - * 부패인식지수(국제투명성기구, '21.1월) 세계 30위권('17년 51위→'18년 45위→'19년 39위→'20년 33위)

- 대검 및 전국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 등을 설치하여 부동산 투기사범 엄단 및 범죄수익 환수 추진*
 - * (대검) 투기사범 37명 구속 및 793억원 보전, (전국 청) 투기사범 16명 구속 및 282억원 보전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21.1월) 통해 사업장 인명피해시 사업주 형사처벌 강화*,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개정(21.12월)으로 범죄수익 환수대상 범죄 확대
 - * (사망사고 발생시) 하한형을 징역 1년 이상으로 규정하는 등 강도 높은 형사처벌 부과

□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 범죄 취약지역 환경개선, 탄력·지역안전순찰 등 공동체 중심 예방치안 활성화로 범죄율 감소 성과(전년 대비 총범죄 11.1%, 5대범죄 13.3% 감소)
- 여성 대상 범죄 수사 인력 확충*,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집중 관리, 아동학대 전담수사체제 구축 등을 통한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효과적 보호**
 - * 경찰서 여성청소년강력팀 추가 운영('20년 14개서 → '21년 149개서) 등
 - ** 전년 대비 △성범죄(강간·강제추행) 8.8% 감소, △아동학대 검거 116% 증가, △보복범죄 우려 피해자 신변보호 건수 53.5% 증가(스마트위치·CCTV설치·주거지 순찰 등)

□ 적극적인 대내외 보훈정책 추진으로 국가유공자 삶의 질 개선 및 국격 제고

- 「4·3사건법」 개정(21.2월) 통해 제주4·3사건 희생자 피해보상 근거 마련, 「여순사건법」, 「3·15의거법」 제정을 통해 국가 차원의 진실규명 기반 확보
-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개보수 활성화,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완공(21.11월)을 통한 독립 정신 계승·확산, 6.25 전사자 유해발굴 지속 추진
- 20년 이상 2만원 내외로 유지된 전상수당 4배 인상(20년 2.3만원 → '21년 9만원), 국가 유공자 보상 강화(보상금 3% 인상), 의료·안장시설 확충*
 - * 부산·광주재활센터 완공, 국립묘지 2개소 확충(제주호국원 1만기, 대전현충원 5만기) 등

□ 코로나19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국민 정보주권 강화

- 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 도입(21.2월) 등 국민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백신접종 등 행정정보를 개인맞춤형으로 알려주는 ‘국민비서’ 서비스 개시(21.3월)
 - * 디지털 정보주권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전면개정 추진(21.9월, 국회제출)

-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발급('21.12월~), 온라인 여권서비스 확대*, 격리면제서 발급 온라인 서비스(15.8만건) 등 국민 신분보호 강화 및 출입국 편의 제고
 - * 이용건수 : '20년 대비 약 3.2배 증가('20년) 10백만건 → ('21년) 32백만건)
- 한-EU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이 최종 통과('21.12월) 되어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EU 회원국에 준하는 지위 획득*
 - * EU시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국내로 이전·처리 가능하여 디지털 분야 국제무역 활성화 기대

개선·보완 필요사항

□ 경찰관의 현장 대응능력 강화 및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 필요

- 층간소음난동 사건(인천)·신변보호 대상자 사망사건(서울) 등 경찰의 현장대응 능력 우려가 지속 제기되는 등 민생치안 공백 다수 발생

☞ 경찰 채용·교육과정 개편, 경찰장비 인프라 개선 등 경찰관의 현장 대응능력 강화 및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 필요

□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대응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필요

-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신변보호자 가족살해), 인공지능 식별사업의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출입국 관리시스템) 등 개인정보 침해 지속 발생

☞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 활용사업 등에 대한 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등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필요

□ 환경변화에 대응한 보훈대상자 의료·요양 사업 정비 필요

- 보훈대상자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참전유공자의 대부분이 고령으로 전체 보훈대상자* 지속 감소가 예상됨
 - * '17년 85.4만 → '18년 84.6만 → '19년 84.3만 → '20년 84.1만 → '21년 83.9만

☞ 의료·요양인프라 신규 건립 수요를 면밀히 점검하고, 민간기관과 협력강화 등 보다 내실 있는 사업추진 도모 필요

□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관련

- 수사단계부터 변호인 조력을 지원하고자 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법률구조법」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 중*

* 법원·대한변협·예산당국 등 유관기관 및 관계부처와 이견으로 입법절차 지연

ESF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 관련 유관기관 간 합의점 마련을 통해 조속한 피의자 인권향상 필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 ❖ 자치분권 제도화 및 재정분권 추진을 통해 실질적 자치분권 시대 구현
- ❖ 국가균형발전 촉진 및 농산어촌 복지 지원으로 지역의 자립적 성장 기반 확립

주요 정책성과

□ 자치분권 및 주민참여 제도화를 통한 실질적 자치분권 기틀 마련

- 중앙·지방 소통과 협력 활성화를 위해「중앙지방협력회의법*」을 제정('21.7월)하고, 「지방자치법」 시행('21.1월)을 통해 자치분권 가속화

* 대통령, 시·도지사, 주요 중앙행정기관장(기재·교육·행안부 장관 등)이 모여 주요 정책 등 논의

-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 시행*('21.1월) 및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 마련을 통해 지방권한 확대 강화

* 중앙부처 사무 400개 지방이양, 신규이양사무(87개)에 대해 비용 지원(1,549억원, 균특)

** 13개 부처, 37개 법률, 262개 사무 이양(제정안 확정 후 국회 제출 예정)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21.10월) 및 주민자치회 시범지역 확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제정('21.7월) 등을 통해 주민직접참여 활성화

*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안 청구 가능, 청구연령 하향 조정(19 → 18세) 등

** 시범지역 현황(개) : ('18년) 95 → ('19년) 408 → ('20년) 626 → ('21년) 1,013

□ 재정분권 강화 및 지역일자리 창출로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활력 제고

- 지방소비세율 인상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통해 연 5.3조원의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국세·지방세간 세입체계** 등 지방재정 구조 개선
 - * 지방소비세율 4.3%p 인상으로 연 4.1조원 확충, 지방소멸대응기금 연 1조원 지원 등
 - ** 국세·지방세 비율(%) : '18년 77.7 : 22.3 → '19년 76.4 : 23.6 → '20년 73.7 : 26.3 → '21년 이후(잠정) 72.6 : 27.4
-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개정('21.12월), 지방세 체납률 관리* 및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등 징수활동 강화를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
 - * 지방세 체납률(%) : ('18년) 4.1 → ('19년) 3.7 → ('20년) 3.1 → ('21년) 3.2(잠정)
-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정('21.10월), 지역사랑상품권(21.6조원, '21.11월) 판매 지원 및 지역일자리 사업 지원으로 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 희망근로 지원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역방역일자리 등 15.8만명 참여

□ 지역산업 인프라 조성 및 도시재생뉴딜 추진 등으로 국가균형발전 촉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교부(1,923억원), 민간투자(1조7천억원), 스마트그린산단 추가 선정(3곳), 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법 제정('21.8월) 등 지역균형 성장 도모
-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지속(21년 누계, 488곳 선정) 및 특별공모를 통한 도심내 위험건축물 정비사업 추진 등 주민주도 도시재생 추진 기반 강화
 - * 선정 수(곳) : ('17년) 68 → ('18년) 100 → ('19년) 116 → ('20년) 117 → ('21년) 87
-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로 입주기업 지속 증가*, 새만금 교통 여건 개선, 세종 국회의사당 설치 「국회법」 개정('21.11월) 등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마련
 - * 입주기업 현황(개) : ('18년) 693 → ('19년) 1,425 → ('20년) 1,663 → ('21년) 1,949

□ 농산어촌 복지서비스 강화 및 촘촘한 소득망 확충 등을 통해 삶의 질 개선

- 기초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지역에 복합적인 생활 SOC를 확충*하고, 교통사각지대 농어촌(82개 군) 주민에게 버스·택시 등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
 - * 생활SOC 구축(누계, 개소) : ('18년) 624 → ('19년) 1,058 → ('20년) 1,311 → ('21년) 1,672
 - ** 농촌형 교통모델 이용자(만명) : ('18년) 194 → ('19년) 296 → ('20년) 482 → ('21년) 549

- 국민쉼터 및 힐링공간 제공을 위한 산림복지시설 확충* 및 낙후된 어촌 활력 제고를 위한 어촌뉴딜 300사업('21년까지 250개소) 차질 없이 추진
 - * 자연휴양림/나눔숲 조성(누계, 개소) : ('19년)175/832 → ('20년)181/913 → ('21년)184/981
- 쌀 수급 안정* 및 공익직불제 등을 통해 중소농 소득 안정, 재해보험 개선** 및 재해복구 지원
 - * 수확기 쌀값(10~12월, 20kg기준, 원) : ('18년) 48,392 → ('20년) 54,121 → ('21.10월) 55,355
 - **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개) : ('18년) 73 → ('19년) 78 → ('20년) 83 → ('21년) 83
 - *** 지원 단가 현실화율(%) : ('18년) 66 → ('19년) 72 → ('20년) 73 → ('21년) 83

□ 수출기업 지원 및 해운·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활력 부여

- 선박부족, 운임상승 등 전 세계적 물류대란 적극 대응*을 통해 물류난 해소, 수출기업지원·판로확대 등으로 농·수산식품 수출액 100억불** 돌파
 - * 임시선박 투입(척/TEU) : (미주)61/152,483, (유럽)4/9,586, (동남아)19/13,197
 - ** 농·수산식품 수출액(억불) : ('17년) 91.5 → ('19년) 95.3 → ('21년) 113.6
- 조선분야 13년만의 최대 수주량 달성*, 캠코·수출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 등을 통해 한진해운 파산('16년) 이전 수준의 해운경쟁력 회복**
 - * 수주량(만CGT) : ('08년)1,739 → ('11년)1,330 → ('16년)131 → ('20년)314 → ('21년)1,744
 - ** 해운매출(40조원)·원양 컨테이너 선복량(105만TEU)·지배선대(9,338만DWT) 등 달성 예상

개선·보완 필요사항

□ 지방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필요

- 「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 「마을공동체법」 등 자치분권 관련 법률의 조속한 입법 및 고향사랑기부제 시행('23.1월) 대비 후속조치* 마련 필요
 - *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및 조례 제정, 기부시스템 구축 및 홍보 등

☞ 실질적인 자치분권 시대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법률 제·개정, 고향사랑기부제 후속조치 추진 등 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마무리할 필요

□ 종료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면밀한 성과분석 필요

-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 연차별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있으나, 종료사업('20년, 4개소, '21년 9개소)에 대한 종합성과평가는 미완료

☞ 종료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성과를 면밀히 평가하여, 향후 추진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개선 방향을 모색할 필요

□ 어촌 소멸방지를 위한 대책 추진 필요

- 농촌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어가인구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며 고령화율도 전국평균 수준을 상회하는 등 어촌 소멸 우려

* 어가인구(만명) : ('19년) 11.4 → ('20년) 9.7 / 고령화('20년기준, %) : 전국 15.7, 어촌 36.2

☞ 인구이동 및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어촌소멸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 필요

□ 국회 세종의사당의 차질 없는 건립을 위해 긴밀한 협력 필요

-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기본계획 수립('21.11월) 등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나, 기관별로 역할이 분산되어 있음

* (국토부·행복청)행복도시기본·개발계획, (기재부)예산·총사업비 검토, (국회)설계, 건축공사 등

☞ 차질 없는 건립을 위해 건립 규모나 예산 편성 등에 있어 관계부처·지자체 등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력 필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 ❖ 정상외교 및 국제협력 다변화를 통해 경제·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국제위상 공고화
- ❖ 고성능 전력증강, 국방기술력 제고, 비전통위협(재난·테러) 대응 역량 강화 등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주요 정책성과

□ 한반도 평화정착 및 남북 교류협력 동력 확보 노력 지속

- 대통령 유엔총회 기조연설('21.9월) 계기 한반도 영구적 평화와 종전선언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 확보 및 협력 촉구
 - * 美 연방하원의 한반도평화법(종전선언, 북미 이산가족 상봉 등) 발의(11월) 성과
- 남북통신연락선 복원('21.7월), 동해북부선 철도(강릉~제진) 복원 추진('21.12월 착공) 등 남북 경협 재개를 위한 기반 마련
- 코로나19로 인한 교류 제한에도 민간단체를 통한 인도적 지원* 지속,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플랫폼** 구성('21.11월) 등 보건의료 협력기반 구축 노력
 - * 국내 민간단체 인도협력사업에 대북 영양·보건협력 정책사업 기금 100억원 지원 의결
 - ** 정부, 의사협회 등 민간단체, 지자체, 국제기구(UNICEF 등), 국제 NGO, 전문가 등 구성
- 「통일국민협약안」 채택('21.6월), 남북대화 50년 기념사업**, DMZ 평화의 길 걷기 행사(8회) 등을 통해 통일·평화 공감대 확산
 - * '18~'21년간 총 60여회, 6천여명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여 국민적 합의 도출
 - ** 50년 기념식·학술포럼, 남북대화 화보집, 대학생 모의남북회담 경연대회 등

□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대비한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 '22년 국방예산 54.6조원(전년대비 3.4% 증액) 편성,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F-35A)와 SLBM 탑재 중형잠수함을 전력화하는 등 국방력 강화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21.4월), 국방연구개발 투자 예산 확대*, 무기체계 국산화 제도** 도입 등 국방 R&D 혁신 환경 구축
 - * 미래도전국방기술 예산(억원) : ('18년) 69 → ('19년) 200 → ('20년) 580 → ('21년) 1,204
 - ** 한국산 우선구매제도(8월),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제(6월), 국산개발부품등록제도(7월)
- '국방신속지원단' 제도화로 군의 대민지원 기반 마련, 관군 통합 정보공유체계 구축('21.1월, 서울·용인시) 등을 통해 재난·테러 등 비전통위협 대응역량 강화

□ 국방환경 개선으로 장병 인권보호 강화

- 공무상 부상 민간치료비 지원 확대*, 육·해·공군 내 인권센터 구축, 자기개발·주거지원 확대** 등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 * (기존) 건강보험 70%, 본인부담 30% → (개선) 건강보험 70%, 국가지원 24%, 개인부담 6%
 - ** (자기개발) '20년 80억 → '21년 235억, (전월세 지원 기준액) '19~'21년 1.64억 → '22년 1.82억
- 군 사법제도 개혁*으로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급식체계 개편**, 여군 보직 확대 등 군 복무여건 개선
 - * 입대전·비군사범죄의 민간인관, 평시 관할관 제도 폐지 등 「군사법원법」 개정('21.8월)
 - ** '先 식단편성, 後 식재료 조달 체계'로 개편하고, 군 급식 수의계약 단계적 폐지(~'24년)

□ 주변국과의 빈틈없는 외교로 협력관계 지속 강화

- 美 새 행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한미동맹을 공고화하고,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타결('21.3월) 및 「미사일지침」 종료('21.5월) 등 성과 거양
 - * 정상회담('21.5월) 외 외교·국방 장관회의, 외교장관회담(7회), 외교장관 통화(3회) 등
- '한중 문화교류의 해('21-'22년)' 선포,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 출범('21.8월) 및 '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21-'25년)' 채택 등 한중 양국간 교류 활성화에 주력
- 對日 투트랙 기조를 유지, ▲ 과거사 문제 ▲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 등 이슈에는 단호히 대응하면서도, 양국간 경색 해소를 위한 소통 지속*
 - * 기시다 내각 출범 후 축하서한 및 정상통화('21.10월), 외교장관회담(2회), 외교장관통화(1회) 등
- 신남방 국가들과 7대분야*에 대해 집중적인 협력을 추진하면서, 신북방 국가들과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 확대에 합의(8월 카자흐, 9월 몽골)
 - * 보건, 교육, 문화, 무역·투자, 인프라, 미래산업, 비전통안보 ('20년 신남방정책 플러스 발표내용)

□ 경제·방역·기후대응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제적 위상 공고화

- G7 정상회의 2년 연속 초청('20-'21년), 우리 정상 최초로 5년 연속 유엔총회 참석·기조연설 등 국제사회 내 주도적 역할 확대
- 방역 모범국으로서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등 국제협력을 주도하고, 백신 공여*, 코로나19 대응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코로나 대응에 기여
 - * 베트남 139만 회분('21.10월, 11월), 이란 100만 회분('21.10월) 등 4개국 대상 총 340만 회분
 - ** ('20-'21년) 의료시설 개선 등 5,400만불 규모, 진단키트·산소발생기 등 1,337만불 규모 지원

- P4G 서울 정상회의('21.5월) 성공 개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21.11월)시 상향된 기후행동 목표 발표* 등 기후대응 선도국으로서 입지 공고화

* 대통령,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 제시: 26.3% → 40%

개선·보완 필요사항

□ 남북 교류협력 기반 지속 강화

- 남북관계 경색 및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북한의 미호응으로 북한 개별관광, 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등재 등 남북 협력사업에 난항
- 이산가족 상봉, 대북 인도지원 등 인도적 차원의 대북 민간교류·협력도 실질적 성과 도출이 미흡

☞ 남북 교류협력 재개에 대비한 사전준비 철저 및 남북간 인도적 차원의 민간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경제안보 분야 외교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

- 미·중 갈등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 문제가 대두되면서,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국제질서 변화가 예상

☞ 수입의존 핵심품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동시에, 국제질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인 외교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 필요

□ 국가 차원의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발전

- 잇단 국내 방산업체 해킹사고* 발생 및 랜섬웨어 공격의 지능·다변화로 국내 핵심안보기술의 해외 유출 우려

* ('21.5월) 한국항공우주산업-KF21 전투기 개발, ('21.10월) 대우조선해양-3000t급 잠수함 건조

☞ 민·관·군 사이버안보 협력체계 공고화 및 산업보안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 강화 필요

□ 군 장병 인권 침해에 대한 근본적 개선책 마련

- 병영 내 성폭력 및 고충처리, 부실급식 문제 등 병영 전반에 걸쳐 군 장병의 인권 침해사태가 지속 제기

* 부실급식 문제 제기(5월, 12월), 특별신고기간(6월) 내 성폭력 사건 80건 접수 등

☞ 성폭력 등 군 장병의 인권 침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 및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군 복무여건 개선 노력 필요

2. 규제혁신 (10점)

1 평가 개요

□ 평가목적

- 중앙행정기관의 규제혁신 노력과 성과를 점검·평가하여 규제혁신의 실효성 확보 및 국민 체감도 제고

□ 평가대상 및 내용

구분	기관명 (직제순)
장관급 (21개)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보건처, 방통위, 공정위, 금융위, 개인정보위
차관급 (14개)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진청, 산림청, 특허청, 질병청, 기상청, 해경청, 원안위

- (대상) 35개 중앙행정기관
 - * 규제 심사·정비 과제, 업무성격 등을 고려 10개 기관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내용) 각 부처의 규제혁신 노력과 성과, 이를 통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및 국민체감도, 각종 규제혁신 제도 운영 성과 등을 평가

□ 평가방법

- 평가지표 특성에 따라 ①정성·정량평가를 병행하고, ②국민체감 반영을 위해 '민관합동 규제혁신평가단' 운영 및 규제개혁만족도 조사 실시
 - ① 정성평가 : 규제혁신 노력·효과·만족도 등
정량평가 : 규제혁신 실적치, 달성율 등
 - ② 민관합동 규제혁신평가단 :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등 민간전문가 포함 19명 구성
규제개혁만족도 조사 : 일반국민·전문가·내부고객 등 3,900여명 대상 조사 실시

□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 지표	비중
규제혁신 노력·성과	• 신산업분야 규제혁신 노력·성과	60%
	• 신산업분야 규제혁신 효과	
	• 민생 규제혁신 노력·성과	
	• 민생 규제혁신 효과	
규제혁신 제도 운영	• 국민소통 및 규제챌린지	30%
	• 규제 전주기 관리체계	
규제혁신 국민 체감도	•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	10%

2

평가 등급

* 직제순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A	과기정통부, 행안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해수부	식약처, 조달청, 특허청, 해경청
B	기재부, 교육부, 국방부, 문체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중기부, 방통위, 금융위, 개인정보위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문화재청, 농진청, 산림청, 질병청
C	법무부, 여가부, 보훈처, 공정위	소방청, 기상청, 원안위

'21년도 주요 성과

- (규제혁신 플랫폼) 규제샌드박스, 신산업 규제혁신 로드맵, 규제챌린지 등 각 제도별 성과를 확대하고, 규제전주기 관리도 강화
 - 규제샌드박스 신규 승인*(228건) 및 안전성 검증과제 제도화('19~'21, 136건)로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였으며 규제혁신 로드맵**도 지속 확대
 - * (과기부) 지역케이블TV 활용 상품 판매 (식약처) 건강기능·일반식품 결합제품 판매
 - ** (해수부·해양청) 자율운항선박 로드맵 마련 (국토부) 자율차 로드맵 개선·보완
 - 규제챌린지를 통해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적극행정으로 코로나19 대응과 탄소중립 등 주요정책 성과 지원**
 - * (복지부) 인간대상연구 등 동의요건 개선 (국토부) 공유주택 건축규제 완화
 - ** (중기부·식약처·조달청·기업) 코로나19 백신주사기 LDS 양산체제 구축
 - 규제비용관리·일몰제도 등 규제품질관리 지속
 - * 규제비용관리를 통해 약 2,700억 원 규제순비용 감축 및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69건 정비
- (분야별 규제혁신) 신산업 핵심규제* 및 기업활동과 국민생활 전반의 불편·부담규제** 정비
 - * (산업부) 스마트그린산단 개념·지원근거 마련 (복지부) DTC 유전자검사 범위 확대
 - ** (산업부) 대구·광양 산단 입주업종 확대 (조달청) CCTV 등 정부물품 내용연수 적용 완화(교육부) 일반대학 온라인 석사 허용 (환경부) 상표띠 없는 생수병 허용
 - 기업·국민 소통을 통한 현장체감형 규제혁신 추진
 - * 신산업 현장애로(63건), 기업건의과제(131건), 신문고 건의과제(253건) 등

개선·보완 필요사항

- 규제샌드박스와 규제혁신 로드맵의 분야 확대 및 정합성을 제고하고, 갈등 규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노력 강화
- 현장 소통을 통해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이고, 일상방역·인구변화 등 새로운 규제환경에 선제적 대응 필요

4 분야별 평가결과

규제혁신 플랫폼 내실화 및 규제 관리

주요 성과

□ 규제샌드박스 성과 확대를 통한 신산업 발전 촉진

- 6개 분야*에서 228건('19~'21, 총 632건) 승인으로 신제품 실증 및 시장 출시를 지원하여 투자 약 4.9조원, 매출 1,501억원, 고용 6,355명 창출

* 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사례 (과기부) 지역케이블TV 활용 상품 판매 (복지부) 비대면 재활훈련·상담 서비스 (금융위)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서비스 (행안부) 차량 뒷유리창 투명 디스플레이 (식약처) 건강 기능식품·일반식품 결합제품 제조·판매

- 5개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등 총 29개 특구 운영 및 부산 블록체인 등 10건 과제 임시허가 전환으로 지역혁신 산업 육성 지원

사례 (강원) 정밀의료 특구 (충북) 그린수소 특구 (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특구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특구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특구 신규지정

- 안전성 등이 검증된 과제(총 136건)는 신속한 법령개정으로 전면 허용하고, 실증특례 사업자의 사업중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실시

* 사업자 법령정비요청제 신설 및 '실증특례→임시허가' 전환 근거 마련('21.5)

사례 (고용부) 가사서비스 플랫폼 (금융위)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

□ 신기술 출현 환경 조성을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 및 네거티브 규제전환

- 자율운항선박 규제혁신 로드맵('21.10), 자율차 규제혁신 로드맵 2.0('21.12)을 통해 신기술 발전 시나리오에 따른 규제개선 과제(71개) 발표

사례 (해수부·해양청) 사고대응 가이드라인, 데이터·통신 표준 마련 등 자율운항선박 분야 31건
(국토부) Lv.4 자율차 안전·보험기준 마련 등 자율주행차 로드맵(18.11) 개선·보완 40건

- '先허용-後규제' 방식을 위한 네거티브 규제전환 과제(123개) 지속 발굴

사례 (과기부) 데이터산업법 제정(21.10월)을 통해 데이터 개념 범위 확대
(산업부) 재제조 대상 품목을 네거티브 리스트로 전환

□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 개선을 위해 규제챌린지 추진

- 기업·경제단체 등이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제안한 규제를 민관합동 검토*를 통해 적극 개선

* 입증위(건의기업·전문가 참여) → 국조실 주관 협의·조정 → 민관 합동회의 확정

사례 (국토부) 공유주택 건축규제 완화 (여가부) 게임 셋다운제도 개선
(복지부) 인간대상연구 등 동의요건 개선

□ 적극행정을 통한 핵심분야 규제개선 추진

- 코로나19 대응, 탄소중립 등 주요정책 추진시 적극행정 활성화로 성과창출 지원

사례 (산업부) 적극해석을 통해 국유지에 지자체 운영 수소충전소 설치
(중기부·식약처·조달청·기업) 코로나19 백신주사기 LDS 양산체제 구축
(금융위·여신금융협회·금융결제원·카드사)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 규제비용 감축관리 등을 통한 규제품질 제고

- 규제완화 및 신설·강화 억제를 통해 약 2,700억 원의 규제순비용 감축

사례 (국토부) 전세버스 등 기본차령 연장(-857억원) (과기부) 전파사용료 감면기한 연장
(-218억원) (식약처)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표시제 변경(-76억원)

- 타당성 낮은 재검토키한 도래 일몰규제 69건 폐지·개선(폐지 2, 개선 67)으로 정비율 2년 연속 증가('19년 16.3% → '20년 18.5% → '21년 21.0%)

사례 (환경부) 잔류성오염물질 측정기관 지정기준 합리화(모든분야 장비보유 → 해당분야 장비만 보유) (산업부) 대규모점포 등 개설시 제출서류 간소화(운영관리계획 등 제외)

개선·보완 필요사항

- 모빌리티, 바이오 등으로 다양한 규제샌드박스를 확대하고 실증결과 안전성 등이 입증된 과제는 법령정비 신속 추진
- 신기술 및 신산업 변화에 맞게 既구축된 규제혁신 로드맵을 적시에 업그레이드하고 로드맵 분야를 확대할 필요
- 규제비용관리제 실효성 강화를 위해 운영실태를 분석·검토하여 보완방안 마련 필요

분야별 규제혁신

주요 성과

- 신산업 핵심규제 개선 및 현장 중심 규제혁신 추진
 - 기반산업 스마트화, 그린산업 확대, 바이오·의료산업 육성 등을 위한 미래 유망 신산업 분야 핵심규제 집중 정비
 - 사례 (산업부) 스마트그린산단 개념·지원근거 마련 (복지부) DTC 유전자검사 범위 확대 (환경부) 재활용사업 환경산업 범위 포함 및 지원 확대
 - 기업 소통을 통해 ICT융합, 의료기기 등 신산업 현장애로 해소(63건)
 - 사례 (과기부) 지하철 공유기 출력제한 완화 (식약처) SW의료기기 임상시험 승인절차 간소화

□ 기업활동 전반의 규제 부담 해소를 기업 활력 제고

- 제조기업의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한 공장입지 규제개선 추진(11건), 판로확대 및 공공조달 개선 등을 통한 중기·소상공인 영업 활성화 지원(27건) 등

사례 (산업부) 대구·광양 산단 입주업종 확대 (농식품부) 지역특산주 주원료 기준범위 완화 (조달청) CCTV 등 정부물품 내용연수 적용 완화

- 주요 협·단체(240개) 등과의 현장소통으로 기업 애로 해소(131건)

사례 (행안부) 지역상품권 가맹점 등록 간소화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시 직접생산 요건 완화

□ 국민 일상생활 불편 해소 및 지역현안 규제혁신 추진

- 비대면 활동 일상화에 따라 온라인 행정서비스·교육 규제정비(79건)

사례 (국방부) 예비군 훈련 모바일 전자고지 (교육부) 일반대학 온라인 석사과정 허용

- 규제개혁신문고 등을 통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일상 불편을 해소(253건)하고 지역 맞춤형 규제 혁신 추진(61건)

사례 (환경부) 상표띠 없는 생수병 허용 (행안부) 6개월내 주민등록증 재발급시 사진제출 생략 (산업부) 자유무역지역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 입주 허용

개선·보완 필요사항

- 기업·지역과의 소통 강화로 현장의 규제애로와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집중 발굴·정비함으로써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

- 방역관리 일상화 등 정책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규제혁신 분야를 선정하고 개선할 필요

3. 정부혁신 (10점)

1 평가 개요

□ 평가목적

- 중앙행정기관의 정부혁신 추진실적을 기관별로 평가하여 정부혁신의 공공기관 확산 도모 및 국민 삶의 질 개선

□ 평가대상

- 45개 중앙행정기관

구분	기 관 명 (직제순)
장관급 (24개)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보훈처, 방통위, 공정위, 금융위, 권익위, 개인정보위
차관급 (21개)	인사처, 법제처,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방사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진청, 산림청, 특허청, 질병청, 기상청, 행복청, 새만금청, 해경청, 원안위

□ 평가방법

- 행안부 정부혁신 ‘전문가 평가단’* 및 ‘국민평가단’** 구성·운영
 - * (전문가평가단) 학계(16명), 민간 전문가(2명), 연구원(1명), 시민단체(1명) 등 20명
 - ** (국민평가단) 주부, 대학생, 직장인 등 다양한 국민의 지역·성별·연령을 고려하여 200명 선정
- 평가지표 특성에 따라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 병행

□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비중
기관의 혁신역량		• 기관장의 혁신리더십, 혁신 학습활동	10%
혁신 성과	참여와 협력	• 국민참여 성과	75%
		• 기관 간 협업 추진성과	
	국민체감 공공서비스	• 디지털 기반 서비스 혁신	
		• 포용적 서비스 확대	
일하는 방식 혁신	• 데이터 기반 업무효율화		
	• 조직문화 혁신		
대표 혁신성과		• 기관의 대표 혁신 누적성과	
국민체감도		• 국민평가단·국민 체감도 평가	15%

2 평가 등급

* 직제순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A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복지부, 고용부, 해수부, 중기부	인사처, 식약처, 통계청, 경찰청, 산림청, 기상청
B	기재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문체부, 산업부, 환경부, 여가부, 국토부, 보건처, 공정위, 개인정보위	법제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병무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진청, 특허청, 질병청, 해경청
C	권익위, 금융위, 방통위, 통일부	방사청, 행복청, 새만금청, 원안위

※ 정부혁신 평가주관기관(행안부)은 등급 산정에서 제외

3 총 평

'21년도 주요 성과

-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디지털 기반 비대면 공공서비스 혁신을 가속화하는 성과 창출 및 우리 정부의 국제적 위상 강화*
 - * 국민비서 '구삐', '보조금24', 코로나19 백신예약시스템 등 디지털 행정서비스 혁신
OECD 정부신뢰도 : '19년22위→'21년20위 / 부패인식지수 : '19년39위→'20년33위
- (참여와 협력)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정책과정에 국민참여를 확대*하고, 기관 간 협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도출
 - * (농식품부) 주민주도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로 악취감소 및 주민갈등 해소(홍성 원천마을)
 - ** (기상청-국토부-행안부) 도로 살얼음 발생가능성 정보서비스 개발(거창~안동IC, 220km)
- (공공서비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국민 불편 해소 및 안전*을 지키고, 사회적 약자를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포용적 서비스 확대**
 - * (경찰청) 실종경위·인적사항 등을 담은 '실종경보문자제도' 시행(문자발송 297명 중 288명 발견)
(식약처) 의약품적정정보 제공으로 노인 약물 오남용 등 부적절한 처방 감소(24.6억원 절감)
 - ** (복지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먼저 알려주는 '복지멤버십' 도입(106만명, 827만건 안내)
- (일하는 방식) 조직 구성원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직문화를 자율적으로 개선*하고, 데이터기반 행정체계를 구축하여 업무 효율화**
 - * (중기부) 세대간 업무노하우 공유 및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대화방' 운영(만족도 91.7점)
 - ** (경찰청) 범죄 위험도를 분석 및 예측하여 순찰경로 조정 등 선제적 순찰에 활용(식약처) 위해 환경, 오염정보 등을 종합·분석한 식품안전정보지도 구축

개선·보완 필요사항

- 단순한 의견 제안을 넘어 국민이 직접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실질적 국민참여* 프로세스 확대 필요
 - * 정부혁신 중점추진 필요 분야 : 실질적 국민참여 확대(36.7%) 1위('21.11월, 행안부)
- 개방하는 공공데이터의 품질과 활용 수준을 제고하고, 데이터기반 행정*에 대한 기관 역량강화 지원 필요
 - * 법 시행('20.12월) 후 제도 정착 초기 단계로 기관 간 데이터기반행정 수준 편차 확인

4 분야별 평가결과

참여와 협력

주요 성과

□ 정책·예산 등 핵심과정에 국민참여의 폭과 깊이를 확대

- 국민참여 플랫폼을 활성화*하고, 예산 등 의사결정과정에 국민 참여 강화
 - * (플랫폼) '광화문 1번가' 국민회원 가입 및 활동 활성화('19년 285,988명 → '21년 537,758명)
 - (예산) '국민참여 예산제' 사업 확대('21년 63개 사업, 1,168억원 → '22년 71개 사업, 1,429억원 반영)
-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 해결 정책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
 - * (해수부) 여객선 안전관리 현황점검 및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국민안전감독관 운영(64척 점검)
 - (과기부) 지역 사회문제해결 리빙랩 R&D추진(cctv 사각지대 순찰, 지하수 관정 오염 해결)

□ 국민 수요와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 개방·활용 지원

- 사회 경제적 활용가치가 높은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 * 공공데이터 개방 누적건수('20년 55,189개 → '21년 67,441개), 국가중점데이터 개방('20년 121개 → '21년 147개)
- 기관별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창출* 지원
 - * (농식품부) 국민의 안전과 위축된 외식산업 경기회복을 위해 '안심식당 검색서비스' 제공
 - (경찰청)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악성 앱을 탐지하는 '전화사기 탐지 앱' 개발(가입자 19.8만명)

□ 기관 간 협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도출

- 생활 밀착형 협업성과 도출* 및 코로나19 극복 지원**
 - * (행안·국토부-경찰·소방청) 긴급차량 무인차단기 자동통과시스템으로 출동시간 단축
 - ** (중기부-기재부-국세청 등) 대상자DB를 사전구축하여 별도서류 증빙없이 소상공인재난지원금 신속지급(신청 후 당일 또는 익일 새벽 이체, 6일만에 1조원 지급)

개선·보완 방향

- 공공데이터의 높은 개방 수준에 비해 데이터 활용이 저조하여, 민간 활용도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 및 지원 노력에 대한 보상 강화

공공서비스

주요 성과

-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취약계층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추진
 - 가계경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 * (농식품부)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에게 농식품바우처 지원(중위소득 50% 이하 2.8만가구)
(중기부) 폐업점포의 폐업비용 지원(1.5만명) 및 재도전 지원(24.9만명) 확대
 - 국민의 불편과 생계 위기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도록 선제적 서비스* 제공
 - * (고용부) 택배기사 등 고용 취약계층인 특고 12개 직종에 신규 고용보험 적용(50.3만명)
(복지부)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 방지를 위해 긴급돌봄지원단 운영(18,045건 지원)
- 확산되는 디지털·비대면 정책환경에 적합한 공공서비스 개발·지원
 - 간편하게 이용하는 모바일 기반 생활서비스 제공*
 - * (경찰청) 이동통신 3사(SK·LGU+·KT)와 연계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제공(300만명 이용)
(고용부) 민간 플랫폼과 연계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모바일 전자증명서비스 지원(207만건)
 - 거래비용 절감*, 온라인 공공서비스 창구 일원화**로 국민 편익 증진
 - * (농식품부) 유통비용을 절감한 '온라인 도매시장'(양파: 소비자가격 △62원/kg, 생산자가격 +77원/kg)
 - ** (중기부) 30여개 분야로 분산된 정보검색, 증명서 발급 등을 원스톱서비스(중소벤처24) 구현

□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행정서비스 품질 개선

- 데이터 수집 확대 및 ICT 기술을 이용하여 국민 안전 강화*
 - * (해수부) 세계최초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e-Nav'으로 해양사고 방지('20년2,641건 → '21년2,229건)
(산림청) 산악기상관측망 운영을 통해 산사태 예측경보 조기 제공(1시간 전→12시간 전)
- AI, 빅데이터 활용으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 * (행안부) 백신접종·운전면허 갱신 등 국민 알림·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삐' 운영(1,370만명 안내)
(과기부) 난치병 진단 정확도를 개선한 '닥터앤서' 개발(소아희귀질환 판독시간 5년→15분)

개선·보완 방향

- ## □ 국민의 편리한 삶을 지원하는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이 가속화·본격화되도록 우수 사례 확산 및 학습과 정보공유 필요

일하는 방식

주요 성과

□ 스마트한 업무체계 구축 및 행정업무 효율화

- 비대면 업무방식 도입* 및 연구개발**을 통한 업무 프로세스 혁신
 - * (중기부) AI챗봇 등으로 정책자금 상담부터 약정까지 전 과정 비대면화(대출기간 60일→10일)
 - ** (농식품부)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 개발(분석비용 40만원→1만원 / 분석시간 4일→5분)
- 단순·반복업무의 자동화·디지털화*로 업무시간 단축 및 생산성 제고
 - * (고용부) 국가기술자격 시험 디지털전환(CBT)으로 시험지 인쇄 및 운송비용 절감(△16억원)
(산림청) 국유림 사용료, 변상금 부과 반복업무 자동화(건당 소요시간 10분→30초)

□ 모든 세대가 일하기 좋은 공직문화 혁신 추진

- 효율적인 보고문화*, 수평적 사무실 디자인** 등을 통해 업무 환경 개선
 - * (통계청) 워크다이어트 공모전 및 1:1:1 캠페인 실시로 업무보고 간소화(청장 대면보고 29.8%→18.7%)
 - ** (중기부) 직원이 직접 사무실 파티션 제거 및 테마가 있는 회의실 조성 등 수평적 사무공간 디자인
- 자유로운 소통*과 혁신사례 공유·학습**을 통한 조직문화 혁신 역량 함양
 - * (통계청) 직원간 자유로운 소통사례인 '가면토론회' 공유·확산(울산시 의회, 대전서구청 벤치마킹)
 - ** (행안부) 중앙·지자체가 조직문화 혁신 사례 공유·확산하는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운영(7회)

□ 데이터기반행정법 시행에 발맞춘 데이터기반행정 운영체계 구축

- 정확한 데이터 수집체계 구축* 및 데이터 분석결과의 정책 활용**
 - * (해수부) 시가반 어획량 카운팅 '스마트 어업관리 시스템' 개발로 수산자원 보호 강화
 - ** (식약처) 의약품 생산·수입, 공급·사용 정보 등을 토대로 의약품 안정공급 예측모델 개발

개선·보완 방향

- 데이터기반 행정은 법 시행('20.12월) 후 제도 정착 초기 단계로 향후 기관별 공동 활용 데이터의 등록·활용에 대한 교육·컨설팅 강화 필요

대표 혁신 누적 성과

주요 성과

□ 국민참여와 기관 간 협력을 통한 국민이 원하는 행정 구현

- 실질적인 국민참여를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
 - * (식약처) 국민 관심사와 트렌드를 반영한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실행('18년~, 부적합 50품목 적발)
(경찰청) 지역 치안협의체 운영(3,945회) 및 '탄력순찰'('17년188만→'21년669만건)로 지역치안 강화

- 기관 간 협업을 통한 행정비용 절감* 및 국민불편 해소**
 - * (인사처-보훈처-법제처-행복청) 부처합동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으로 예산절감('21년 92억원)
 - ** (행안부-과기부 등) 간편인증 등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 구축(예약시간 최대 111시간→2~3분 단축 / 시간당 30만건→200만건 처리)

□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응하여 혁신적 포용행정 확대

-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터전을 보호**
 - * (고용부) 고용보험 적용을 못하는 취약계층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21년 40만명)
 - ** (중기부) 경영난에 빠진 우수 소상공인을 '백년가게'로 선정하여 밀키트 생산·유통 지원(5만개)
- 장애인, 치매환자 등 사회적 약자의 불편·부담 개선*
 - * (식약처) 시청각장애인 대상 음성안내·동영상을 활용한 의약품 정보 간편검색서비스 제공
 - (복지부) 돌봄 인프라·의료비 지원하는 치매국가책임제 운영('17년~, 중증환자 본인부담금 72만원 감축)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서비스 지원

- ICT기술을 활용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 (기상청) 지진조기경보 발표시간의 획기적 단축으로 생존률 80%증가('16년50초 → '21년5~10초)
 - (산림청) 산불감지 센서, 드론 활용으로 대형산불 발생 최소화('19년653건 → '21년310건)
- 국민 수요에 맞는 새로운 맞춤형 공공서비스 제공*
 - * (농식품부) 귀농귀촌 희망국민에게 '농촌한번 살아보기' 지원('21년, 599가구 참여)
 - (통계청) 이용자맞춤 통계 제공(청년층 생활권역 통계→상권분석 / 중장년층 연금통계→노후대비)

개선·보완 방향

- 그간의 누적된 혁신성과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고도화하고, 부처간 제도화된 우수사례 공유·학습을 통해 정부혁신 내재화 필요

4. 정책소통 (15점)

1 평가 개요

□ 평가목적

-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에 대한 국민소통 추진노력 및 성과를 평가하여 국민의 정책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정책성과 체감 확산

□ 평가대상

- 45개 중앙행정기관

구 분	기 관 명 (직제순)
장관급 (24개)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보훈처, 방통위, 공정위, 금융위, 권익위, 개인정보위
차관급 (21개)	인사처, 법제처,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방사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진청, 산림청, 특허청, 질병청, 기상청, 행복청, 새만금청, 해경청, 원안위

□ 평가방법

- 각 기관별 국민소통 활동 및 성과에 대해 정량·정성 평가
 - * 문체부 주관 「민관합동 정책소통 평가단」 구성 운영, 소통만족도 조사는 국조실 주관 외부 전문기관(전문 리서치 기관)을 통해 평가
- 분기·반기별 등 주기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연말 종합평가에 반영

□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비중
정책소통 활동	주요정책협의	• 협의회 참여도, 사전협의 참여도	14%
	언론소통활동	• 일일보도대응	
정책소통 성과	언론소통성과	• 언론보도 및 소통활동 성과, 외신소통활동 성과	63%
	온라인소통성과	• 누리소통망 활동성과, 디지털캠페인 성과, 온라인 현안대응	
	기관장소통성과	• 언론 및 현장소통 성과, 위기상황 이슈관리	
	보유매체 등 활용성과	• 보유매체·KTV 활용성과, 국민과 함께하는 소통성과	
체감도	소통만족도	• 소통만족도, 갈등 소통	23%
	온라인체감도	• 빅데이터 분석	

2 평가 등급

* 직제순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A	과기정통부, 행안부, 산업부, 환경부, 고용부, 보건처	법제처, 식약처, 경찰청, 산림청, 특허청, 질병청
B	기재부,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농식품부, 복지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공정위, 금융위, 권익위	인사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소방청, 문화재청, 기상청, 행복청, 해경청
C	통일부, 법무부, 방통위, 개인정보위	방사청, 농진청, 새만금청, 원안위

※ 정책소통 평가주관기관(문체부)은 등급 산정에서 제외

'21년도 주요 성과

- 일상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대국민 소통
 - 기관장의 적극적인 언론과 현장소통으로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노력 강화
 - * 기관장 활동 월평균 실적 : 장관급 기관 24.9회(전년 대비 10.2% 증가), 차관급 기관 12.9회(전년 대비 3.2% 증가)
 - 잘못된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바로잡아 정책에 대한 이해를 증진
- 범정부 현안에 대한 부처협업 강화
 -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탄소 중립 등 범정부 현안에 대한 주기적·상시적 소통협의체* 운영, 유기적 협력 소통 강화**
 - * 정책홍보전략회의(매주), 대변인협의회(매주), 온라인대변인협의회(격주) 개최, 정책발표 사전협의 ('20년) 212건 → ('21년) 281건, 전년 대비 32.5% 증가
 - ** '21년 인지도 결과(한국리서치) :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93.1%), 탄소중립(88.4%)
- 디지털소통 다각화로 국민 참여 소통 확대
 - 국민 참여형 캠페인 및 인플루언서와 협업 강화로 긍정 반응 확산,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활용하여 국민소통 확대
 - * '20년 대비 증가율 △(구독자) 유튜브 53.1%, 페이스북 12.3%, 인스타그램 54.2% △(조회수) 유튜브 44.7%

개선·보완 필요사항

- 주요정책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 증가 및 외신홍보 여건 다변화에 따라 부처별 핵심성과 중심으로 외신홍보 강화 필요
- 사회 다변화에 따른 융복합 정책 과제가 지속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정책소통 방식도 전략적으로 개선 필요

4 분야별 평가결과

코로나19 위기관리와 주요정책 성과 확산

주요 성과

□ 일상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대국민 소통

- 기관장 주도 방송 출연, 인터뷰 등 언론과 현장소통 활동 강화로 국민 불안 해소 및 신뢰 제고
 - * (복지부) 추석 특별 방역대책 및 방역체계 전환 관련 KBS 뉴스 방송 출연
(환경부) 페트병 재활용 업체 현장점검, 1회용 컵 줄이기 캠페인 참여
(식약처)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심사와 허가 브리핑 및 인터뷰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전문적이면서 이해하기 쉽도록 콘텐츠를 제작 확산하여 국민 관심 및 신뢰 제고
 - * (행안부·IT전문가) 디지털 뉴딜을 유명 전문가를 통해 소개
(복지부·변호사) 아동학대 신고 제도 및 구제정책 소개

□ 범정부 현안에 대한 부처협업 강화

- 주요정책발표 사전협의로 이해하기 쉬운 용어 사용 등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재구성, 언론 보도 및 정책성과 확산
 - * (해수부) '해수욕장 방역대책' 관련 수용자 관점에서 메시지 전달력 강화 반영
(국세청)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안내' 관련 신청요건 등 관심 사항 반영
- 정책소통 콘텐츠 제작과 활용 시 부처 역할 분담과 협업 확대로 시너지 효과 창출 및 대국민 수용성 제고
 - * (산업부·농식품부·해수부·과기부·관세청) 코로나19 위기를 이겨낸 대한민국 수출 캠페인
(행안부·기재부·중기부)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캠페인
(환경부·문체부) 예술로써 환경을 말하다 '지구를 구하는 예술인' 캠페인

개선·보완 필요사항

- 국내 주요정책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 증가 및 외신홍보 여건 다변화에 따라 부처별 핵심성과 중심으로 외신홍보 강화 필요
 - 기관장 참여, 외신 관심 맞춤형 콘텐츠와 소통행사 등 적극 활용, 외신보도의 국내 선순환 홍보로 성과 극대화

디지털소통 다각화로 국민 참여 소통 확대

주요 성과

- 국민 참여형 캠페인 및 인플루언서와 협업 강화로 긍정 반응 확산
 - 국민 참여형 캠페인을 통한 국민 호응, 공감대 형성 및 자발적 확산
 - * (복지부) 금연 관련 국민 참여형 이벤트 '노담 태그 캠페인'
(고용부) 취업 지원제도 관련 ZOOM 활용 온라인 설명회 및 상담 이벤트 추진
(경찰청) 교통법규 준수 노력 다짐하는 릴레이 이벤트 '챌린지 캠페인'
(질병청) 예방접종 인증 및 소감을 본인 계정에 올리는 캠페인 '고마워 백신'
 - 웹툰 작가, 유명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와 협업을 통하여 정책에 대한 친근한 이미지 콘텐츠와 영상 제작 등으로 국민의 긍정 반응 확산
 - * (중기부) 유명 웹툰 작가와 협업하여 '제2벤처붐' 대표 이미지 제작
(특허청) 위조상품 구매 피해사례 주제로 유명 유튜버와 콜라보 영상 제작
(행안부) 인기 작가와 협업하여 국민 비서 백신 접종 안내 인스타툰 제작
(산림청) 건강한 숲의 가치 공유를 위한 사회공헌활동가 참여 영상 제작

□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활용하여 국민소통 확대

- 메시지를 간결하고 속도감 있게 표현한 모션그래픽, 부처 대표 캐릭터 활용, 웹드라마 제작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활용하여 국민소통 확대

* (금융위) 뉴딜펀드 관련 옥외 전광판 및 유튜브 광고용 모션그래픽 영상 제작
(통계청) 캐릭터 '보통씨' 활용 공익광고 패러디 K-통계시스템 소개 영상
(경찰청) 시골 경찰관이 근무 중 겪는 에피소드 '모두의 갑' 웹드라마 제작
(보훈처)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 일정별 실시간 쇼츠(Shorts) 영상 제작

개선·보완 필요사항

□ 사회 다변화에 따른 융복합 정책 과제가 지속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정책소통 방식도 전략적으로 개선 필요

- 다수 부처 관련 정책에 대한 범정부 통합 홍보 추진 등 협력 강화

5. 적극행정 (가점 3점)

1 평가 개요

□ 평가목적

- 중앙행정기관의 적극행정 활성화 실적을 기관별로 점검·평가하여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의 확산·정착 지원

□ 평가대상

- 45개 중앙행정기관

구 분	기 관 명 (직제순)
장관급 (24개)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보훈처, 방통위, 공정위, 금융위, 권익위, 개인정보위
차관급 (21개)	인사처, 법제처,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방사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진청, 산림청, 특허청, 질병청, 기상청, 행복청, 새만금청, 해경청, 원안위

□ 평가방법

- 평가지표 특성에 따라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 병행
 - (정량평가) 기관 자체적으로 설정한 목표 수준 달성시 기본점수 부여, 초과 달성시 달성 정도에 따라 상위점수 부여
 - (정성평가) ‘적극행정 종합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 ‘적극행정 추진성과’ 항목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별도 평가하여 합산
 - * 적극행정 및 정부 업무에 대한 이해와 평가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가 등 10명
- ‘적극행정 체감도’의 경우 별도 용역을 통한 설문조사 실시

□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비중
적극행정 추진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행계획의 적정성, 제도개선 노력도 	8%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장 적극행정 이행노력도 	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행정 제도활용 실적(적극행정위원회, 사전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부여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활성화 노력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 노력도 	
적극행정 추진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과제 추진실적 제출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과제 적극행정 성과 	
적극행정 체감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적극행정 체감도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적극행정 체감도 	

2 평가 등급

* 직제순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A	교육부,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환경부, 고용부, 해수부	식약처, 병무청, 문화재청, 특허청, 질병청, 해경청
B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여가부, 국토부, 중기부, 보훈처, 공정위, 금융위, 권익위	법제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방사청, 소방청, 농진청, 산림청, 기상청
C	기재부, 통일부, 방통위, 개인정보위	경찰청, 행복청, 새만금청, 원안위

※ 적극행정 평가주관기관(인사처)은 등급 산정에서 제외

3 총 평

'21년도 주요 성과

- 「국가공무원법」, 「행정기본법」 등에 적극행정 근거 규정을 마련, 지속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도입·시행, 기관별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운영 활성화** 등 적극행정 추진과정 전반에 걸쳐 국민 참여 확대
 - * 국민이 정부에 적극행정을 신청하면, 공무원이 적극행정 지원제도 등을 활용해 문제 해결 추진('21.12월말 기준, 총 1,667건 접수, 적극적 처리 권고 92건)
 - ** ('20년) 적극행정 경진대회 심사 → ('21년) 기관별 중점과제 발굴, 우수공무원 선발, 홍보 등 참여
-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축적된 적극행정 추진 경험이 2050 탄소중립, 한국판 뉴딜 등 주요 국정현안への 신속한 대응과 성과 창출로 확산
 - * (환경부) 투명페트병 재활용 확대, (과기부) 토종 인공지능 주치의 '닥터앤서' 개발
- 적극행정이 필요한 도전적 과제를 기관 간 협업 및 민·관 협력으로 해결
 - * (중기부·조달청·식약처·삼성) 코로나19 백신주사기 LDS 양산체제 구축

〈 주요 지표로 보는 적극행정 〉

- ▶ (국민체감도 상승) 적극행정에 대한 국민체감도가 지속적 상승
 - * 국민체감도 : '19년 61.6% → '20년 62.2% → '21년 64.0%
- ▶ (활발한 제도 이용) 적극행정위원회 및 사전컨설팅 제도 활용 확대
 - * 적극행정위원회(코로나외) : '19년 42건(42건) → '20년 486건(152건) → '21년 382건(237건)
 - * 사전컨설팅(코로나외) : '19년 174건(174건) → '20년 299건(151건) → '21년 259건(219건)
- ▶ (보상 확대) 우수공무원 보상 확대로 공무원 자발적 참여유인 증가
 - * 우수공무원 선발/파격적 인센티브(명) : '19년 (294/85) → '20년 (934/504) → '21년 (1,700/1,149)

개선·보완 필요사항

-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더 두텁게 하는 한편, 일상 속 적극행정 실천 의지 제고를 위한 다양한 동기부여 방안 필요
- 주요 국정현안 해결에 정부의 적극행정 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기관별 중점과제 추진과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간 연계 강화 필요

4 분야별 평가결과

적극행정이 공직문화로 정착

주요 성과

□ 적극행정 법률상 근거 마련 및 제도 운영 활성화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행정기본법」에 적극행정 근거 규정을 마련, 지속적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완비
 - * 국가공무원법 제50조2(적극행정의 장려), 행정기본법 제4조(행정의 적극적 추진) 등
- 공무원의 적극적 업무처리 지원을 위한 제도가 현장에 빠르게 안착, 코로나19 대응 외에도 기관별 다양한 현안 해결에 활용

사례 (농식품부)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활용, 113만 농가 공익직불금 적기 지원
(병무청) '사전컨설팅' 활용, 입영예정자 신체치수 사전 제공으로 맞춤형 군수품 보급

□ 적극행정 추진과정 전반에 걸쳐 국민참여의 폭과 깊이를 확대

- 국민이 직접 적극행정 의제를 제기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도입·시행
 - 사례** (복지부) 31만 결식 아동을 위한 아동급식 지원 최저 단가의 법령상 근거 마련
- 주요정책 평가, 체험 홍보 등 기관별 '적극행정 국민 모니터링단' 참여 확대
 - 사례** (해수부) 중점과제 발굴 및 정책 평가에 참여, 적극행정 현장체험기 홍보 등

□ 범정부 적극행정 문화 확산 및 체감도 제고

-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확실한 우대·보상으로 자발적 참여 동기 확산
 - 사례** (해경청) 항공기 항공보험 통합계약을 통해 연간 50억원을 절감한 공무원 특별승진

- 공무원의 적극적 업무수행에 대한 공직사회 내·외 인식 개선
 - * 범정부 적극행정 추진 필요성 및 효과성 등에 대한 체감도 상승(직전조사 대비) :
(국민) '19년 61.6% → '20년 62.2% → '21년 64.0%, (공무원) '19년 61.6% → '21년 68.5%

개선·보완 필요사항

- 공직자의 적극행정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보호·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할 필요
- 국가공무원의 약 40%를 구성하는 MZ세대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일상 속 적극행정 실천 동기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국민체감 성과 창출

주요 성과

□ 코로나19 위기 극복, 탄소중립 등 국정현안의 신속한 대응과 성과 확산

- 전부처 대상 280개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선정·발굴, 격주 단위로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하여 의미있는 성과 다수 창출
 - * 총 280개 중점과제에 대해 1,584개 적극행정 실천사례 접수, 398개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차관회의 릴레이 발표' 등을 통해 전 기관 공유·전파

사례 (코로나19 방역) 코로나19 백신 및 백신용 주사기 안전 수송(국방부), 코로나19 예방 접종 사전예약시스템 개선 지원 (과기부·행안부) 등
(2050 탄소중립) 투명페트병 재활용 확대(환경부), 국유지에 지자체 운영 수소충전소 설치(산업부) 등
(한국판 뉴딜) 온라인 통신판매업 신고 시스템 개선(공정위), 토종 인공지능 주치의 '닥터앤서' 개발(과기부) 등

□ 행정 사각지대로 인한 국민불편을 적극적인 노력과 조치로 해소

- 주요정책에 대한 중점과제 외에도 일상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굴한 국민불편 사항을 적극 행정으로 해소

사례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요건 완화(집합금지 업종 추가 등)로 고용안전망 강화
(병무청) 코로나로 국내에서 국외대학(원격수업) 재학중인 자에 대한 입영연기 허용
(문화재청) 부처 협업 및 국제 지지교섭으로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 적극행정이 필요한 도전적 과제를 기관 간 협업 및 민·관 협력으로 해결

- 유관기관 및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적극행정 추진 상의 난관을 극복하고, 부처 협업 필요사항은 합동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문제 해결

사례 (중기부·조달청·식약처·삼성) 코로나19 백신주사기 LDS 양산체제 구축
(금융위·여신금융협회·금융결제원·카드사)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환경부·식약처) 화장품 리필 매장 조기활성화 지원

개선·보완 필요사항

- 주요 국정현안 해결에 정부의 적극행정 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기관별 중점과제 추진과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간 연계 강화 필요

Ⅲ. 기관별 종합 평가

1 기관종합 평가 개요

□ 평가목적

-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에 대한 평가결과를 기관별로 합산·발표하여 기관 차원의 국정성과 제고 독려

□ 평가방법

- 일자리·국정과제(65점), 규제혁신(1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15점), 적극행정(가점 3점) 점수를 합산

2 기관종합 평가 등급

* 직제순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A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복지부, 환경부, 해수부, 중기부	법제처, 식약처, 농진청, 산림청, 질병청, 해경청
B	기재부,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산업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보건처, 공정위, 권익위, 개인정보위	인사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특허청, 기상청
C	통일부, 법무부, 방통위, 금융위	방사청, 행복청, 새만금청, 원안위

IV. 후속조치 계획

□ 평가결과 공개

- 공개범위 : △부문별·기관종합 각 부처 '등급' (A·B·C)
△국정과제 등 부문별 주요실적, 개선·보완 필요사항
- 공개방법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홈페이지

□ 우수기관 포상금 지급 및 유공 포상

- '기관종합 및 부문별 A' 등급기관에 대해 포상금 지급
 - 부문간 배점 비중 차이를 고려하여 포상금 배분
 - * 배점 비중 : 일자리·국정과제(65%), 규제혁신(10%), 정부혁신(10%), 정책소통(15%)
- 유공 포상 30점(훈장, 포장 등)

□ 개선·보완 필요사항 개선조치

- 평가시 지적된 개선·보완 필요사항에 대해 부처별로 개선 추진

정부업무평가 백서

(2017~2021)

1판 1쇄 발행 2022년 4월

1판 1쇄 인쇄 2022년 4월

발행기관 국무조정실

주소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전화번호 044-200-2472

팩스번호 044-200-2481

기획·편집 제일기획